한국 일생 의례 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일생의례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Rites of Passage

한국일생의례사전

발행일	2014년 11월 25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3704-3230)
발행인	천진기
총괄	정명섭
기획	김태우·안혜경
편수원	김윤지 백민영 변혜민 은현정 이경민 조선영
윤문·교열	모노그래프·황치영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174-01
ISBN	978-89-289-0085-5 94380 : 비매품 978-89-92128-58-2 (세트) 94080

9 788928 900855 9438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4032732)

한국 일생 의례 사전

국립민속박물관

발간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의례들을 흔히 일생의례 혹은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라고도 일컬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유교적인 예법을 받아들여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유교적인 예법과 한국적인 풍습이 혼합된 독특하면서도 정교한 일생의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일생의례의 풍속은 한민족의 사상과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에 자칫 어렵고 고루한 풍속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의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이 사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일생의례에 대한 현지 조사와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성과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집약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이 사전을 편찬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삼신에게 비는 전통적인 풍속에서부터 조산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요즘 세태까지, 혹은 전통적인 혼례뿐만 아니라 결혼식 후에 부케를 던지고 받는 풍속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전은 특히 민속학·인류학 분야는 물론이고 예학, 역사학, 가정학 등 인접학문의 연구자가 총망라되어 집필되었습니다. 이번 사전이 한국의 의례 문화를 조망해 보고 법고창신(法古創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사전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집필진, 자문위원, 감수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을 비롯해서 도움을 준 우리 관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1월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환기와 저변확대를 위하여《한국민속대백과사전》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제1주제인 〈한국세시풍속사전〉전5권이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되었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 〈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2009년에 '무속신앙편'(1·2권), 2010년에 '마을신앙편'(1·2권), 2011년에 '가정신앙편'(1·2권)이 발간되었다. 2012년에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이 시작되어 같은 해 '설화편'(1·2권), 2013년에 '민요편'과 '판소리편'이 발간되었다. 올해는 제4주제인 〈한국일생의례사전〉(1·2권)이 발간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일생의례사전〉은 표제어 538항목, 원고 6,500여 매, 사진 700여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 타 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 사전은 관내·관외의 일생의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 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일생의례의 각 분야를 전공한 89명의 연구자가 원고를 집필하였다.
수합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검수를 거친 후 업체와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쳤다. 최종 원고는 각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지닌 외부 학자로 구성된 감수위원단이 감수하였으며 감수위원단이 문제점을 제기한 원고는 필자들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등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사전은 일생의례를 크게 출생의례, 관·계례, 혼례, 수연례, 상장례, 제례로 구분하고 사전에 실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으로 구성되었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함께 분야별 차례를 제시하였다. 가나다 차례는 일반적인 사전 찾기 방식으로서 비교적 편리하게 표제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분야별 차례를 병행한 것은 출생의례에서 제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해당되는 관련 절차와 용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집필자란에는 집필자가 작성한 표제어와 쪽수를 기재하여 이를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일러두기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일생의례사전〉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일생의례'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출생의례·관·계례·혼례·수연례·상장례·제례를 말한다. 단, 왕실에서 왕이 주체가 되어 행해진 일생의례는 제외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일생의례의 역사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수용하였다. 일생의례와 관련하여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제도종교의 의례도 포함하였다.
2. 표제어는 『사례편람』 등의 예서와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등 현장조사 보고서, 일생의례와 관련된 최근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표제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와 관외 자문을 거쳐 최종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3.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4. 표제어는 출생의례, 관·계례, 혼례, 수연례, 상장례, 제례, 자료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표제어 중에 분야별로 중복되는 것들은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자료의 경우는 관혼상제에 관련된 예서 위주로 표제어를 선정하였으며 근현대의 가정의례준칙 등을 추가하였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차례의 경우는 각 분야 안에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3. 분야별로 중복되는 표제어의 경우에도 각각의 분야별 차례에 모두 포함시켜 중복적 성격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가표제어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가표제어도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표기방법

1.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0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2. 이 사전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자를 위 첨자로 표기하였다.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표기하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 현실음에 따랐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단,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한 경우에는 [ ] 안에 넣어 구별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외국 인명의 경우에도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사진과 도판

사진, 도표, 삽화, 서식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를 본문 해당 부분에 첨부하였다. 시각 자료에 대한 정보는 내용, 장소, 시기 순으로 표기하고 촬영자 혹은 출처,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사진 제공

경향신문 ·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무형유산원 · 국립중앙박물관 · 동아일보 · 부산박물관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서울역사박물관 ·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안성맞춤박물관 · 충현박물관 · 하회동탈박물관 · 학봉종택 · 한국국학진흥원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 표제어 일람표

표제어의 영역과 연관 색인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표제어 일람표를 제시하였다.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관내 자문위원은 김영재, 이관호, 정연학, 정현미, 최순권, 최은수가 맡았다.
2. 관외 자문위원은 고영진(광주대), 구미래(불교민속연구소), 김명자(전 안동대), 김상보(대전보건대),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나경수(전남대), 박혜인(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3. 감수위원은 이길표(성신여대), 이범직(건국대), 이필영(한남대), 지두환(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한국일생
의례사전

1

차례

가나다순

ㄱ 기역

가가례 22
가례 24
가례도감의궤 25
가례언해 26
가례원류 27
가례의절 27
가례증해 28
가례질서 29
가례집람 30
가례향의 31
가묘(사당) 230
가복 31
가정의례준칙 31
간납 32
감모여재도 33
감실 35
갑사(사갑제) 229
강복 38
강신 38
개영역 39
갱(대갱) 122
갱기 41
갱물 41
건전가정의례준칙 42
격몽요결 43
견전 43
결혼기념일 44
경례유찬 45
계녀서 46
계례 46
계문 48
계반개 49
계반삽시 49
계빈 50
고려사 예지 52
고복(복) 191
고사당 52
고이성 53
고임새 54
곡 56
공포 58
곽 59
관(冠) 60
관(棺) 61
관대벗김 63
관례 63
관례벗김(관대벗김) 63
관례홀기 65
관혼상제 66
광중 70
교배례 71
교의 72
교환혼 73
구일 차례(중구 차례) 595
국궁 74
국수 74
국제결혼 76
국조오례의 78
궁합 78
궐명 80
근친 81
근친혼 82
금줄 83
급묘 85
기럭아비 86
기신재 86
기일비망기 87
기자도끼 88
기자부적 89
기자의례 89
기제(기제사) 92
기제사 92
길례요람 96
길제 97
까마귀 모른 식게 99

ㄴ 니은

남계선생예설 100
남귀여가혼 101
납골(봉안) 201

납길 103
납주 103
납징 104
납채 105
납채서 107
납폐 108
납폐물목 110
납폐서 111
널(관) 60
녜제 112
노제 113
뇌주 114

디귿 ㄷ

다비 114
다시래기 117
단설 119
담제 120
당내 121
대갱 122
대공 123
대렴 124
대렴금 125
대례 126
대례상 128
대반 130
대상 131
도적 133
독(주독) 587
독축 134
돌 135
돌복 137
돌잡이 139
동상례(신랑다루기) 356
떡 140
떡국 차례(설 차례) 312

미음 ㅁ

막편지 143
만사(만장) 144
만장 144
망주석 145
맞선 146
매안(조매) 570
매장 147
메 148
멱목 149
면(국수) 74
면기 150
명기 151
명당 153
명당도 154
명자례(자관자례) 512
명재선생의례문답 155
명정 156
모란병 157
모사기 158
목기러기 159
목욕 160
묘제 161
묘지 163
묘표 166
무복친 167
무인석 168
문명 169
문상 170
문안인사(새벽문안) 303
문인석 171
문중 173

비읍 ㅂ

반곡 174
반기 175
반친영 176
반함 178
반혼(반곡) 174
발상 178
발인 179
방상시 180
배냇머리자르기 183
배냇저고리 184
백수백복도 186
백일 186
벌초 188
별전 189
보공 190
복 191
복수결혼 192
복인 194
복차장 196
본종오복제도(오복제도) 461
봉사대수 197
봉사혼 199
봉선잡의 200
봉안 201
봉제사접빈객 203
봉치시루 204
부고 205
부의 207
부제 208
부조 209
부조록 210
부케 210
분상 211
분재기 212
분정기 213
분축 214
분향 215
불교화혼식 216
불천위 218
불천위제사 220
불천지위(불천위) 218
빈 224
빈상여놀이 226
빈소(장례식장) 527
빈장 228

시옷 ㅅ

사갑제 229
사당 230
사당도(감모여재도) 33
사당제 233
사대봉사 234
사돈 236
사돈지 238
사례집요 238
사례편람 239
사마씨서의 239
사시제 240
사신 242
사십구재 242
사의 245
사자상 245
사주단자 246
사처방 248
삭망전 249
산골 249
산신제 250
산실 252
산전의례 253
산파 256
산후의례 258
산후조리 259
삼가례 261
삼가르기 262
삼내흠 262
삼년상 263
삼색나물 264
삼신 266
삼신받기 267
삼신상 269
삼실과 270
삼우제 271
삼일장 272
삼칠일 274
삼헌(종헌) 585
삽 275
삽시정저 276
상객 277
상견례 277
상두계(상포계) 302
상례 279
상례비요 282
상례언해 283
상문살 283
상변통고 284
상복 285
상수 287
상식 288
상여 289
상여장식 293
상용영반 295
상장 297
상장례 298
상주 300
상청 301
상포계 302
새벽문안 303
생신제 304
서옥제 305
석문가례초 306
석문상의초 307
석물 307
석수 310
선종 311
설 차례 312
설위 313
성년식 314
성년의 날 316
성묘 317
성복 319
성분제 320
세종실록 오례 321
소공 321
소렴 322
소렴금 323
소목 324
소병 326
소상 326
소천예배 327
속절 329
수서(수연문) 337
수성노인도 331
수시 332
수연례 333
수연문 337
수유 338
수의 339
수장 342
수조 342
수질 343
순장 344
시가례 345
시다림 347
시도기 348
시마 349
시묘살이 350
시사전 353
시접 353
시제(묘제) 161
시집살이 354
시향(묘제) 161
식혜 356
신랑다루기 356
신방엿보기 358
신부가마 359
신부대 360
신알례 361
신주 362
신줏단지 364
신행 366
신혼여행 368
심상 369

이응 ㅇ

아헌 430
악수 430
안산법 432
안태 434
앙장 436

애장 437
약혼 439
어육 440
어육기 441
여막 442
역복 444
연길 444
연도(위령기도) 470
연애혼 446
염습 447
염습구 448
염포 449
영결식 451
영구 453
영구차 454
영안실(장례식장) 527
영여 455
영정 456
영좌 457
영혼결혼식 457
예기 458
예의유집 459
오낭 460
오복제도 461
오복친(복인) 194
오선생예설분류 463
외손봉사 464
요질 465
우귀(신행) 366
우암경례문답 466
우인 466
우제 467
운상 468
위령기도 470
위령미사 472
위령제 473
위토 475
위패 476
위호 477
유감주술 477
유골용기 478
유사고(고사당) 52
유산법 480
유식 482
유월장 483
육아의례 484
윤도 486
윤회봉사 488
음복 490
음양오행 491
의례 494
의례경전통해 494
의례문해 495
의례준칙 495
의복 495
의양 496
의혼 497
이레잔치(일훼잔치) 503
이바지음식 499
이장 500
이혼 502
인줄(금줄) 83
일훼잔치 503
일생의례 506
임종 509
입관 510
입맷상 511

지읒 ㅈ

자관자례 512
자리걷이 513
자연장지 515
작명 517
잔반 519
잔치 520
장례 521
장례미사 525
장례식장 527
장명등 530
장사택일지 531
장지 532
재가례 534
재계 534
재실 536
재우제 537
재최 538
재행 539
재혼 540
적 542
적기 543
전 544
전안례 545
접촉주술 546
정복 547
정침 548
제관 549
제기 550
제기함 552
제례 552
제례홀기 557
제문 559
제물 560
제복 563
제사(제례) 552
제사도구 565
제사분할 566
제상 567
제주(祭酒) 568
제주(題主) 569
젯메(메) 148
조매 570
조문 571
조상숭배 572
조상신 574
조석전 576
조전 577
조혼 577
졸곡 578
종가 579
종계 581
종법 583
종중(문중) 173
종헌 585
좨주 586

주과포 586
주독 587
주례 588
주병 589
주술기자 590
주육례 592
주자가례(가례) 24
주자사례 593
준 594
중구 차례 595
중매인 596
중매혼 598
중상 598
증보사례편람 599
지관 600
지방 601
지방함 603
지석 604
지요 606
진기 607
진다(헌다) 718
진새례 607
진설 609
진설도 610
진설법 611
진적 613
진찬 614

치읓 ㅊ

차례 615
참례 618
참사자 619
참신 620
참최 621
천구 622
천금 623
천기대요 624
천도굿 624
천도재 627
천인천자문 629
철상 629
철시복반 631
첨작 631
첫국밥 632
첫나들이 633
첫날밤 634
청기 635
청장 636
청첩장 637
청혼서 638
체천 639
초가례(시가례) 345
초례(대례) 126
초분 639
초야(첫날밤) 634
초우제 640
초접 641
초종 642
초행 644
초헌 646
초혼(복) 191
촛대 647
최장방 647
추도식 648
추석 차례 650
축문 651
축판 653
출산금기 653
출생의례 655
출입고 659
출주 659
충이 660
취토 661
치성기자 662
치장 664
치전 665
친영 666
친전(노제) 113
친진 669
칠성판 669
침주 670

키읔 ㅋ

큰상받기 671

티읕 ㅌ

탈상 673
탕 674
탕기 675
태교 676
태교신기 678
태몽 679
태점 680
태처리 682
태항아리 684
택일 685
토장(매장) 147
통과의례 687
통혼권 690
퇴계상제례답문 692
퇴주기 693

피읖 ㅍ

패철(윤도) 486
편기 693
편적 694
평생도 695
폐백 696
폐백음식 698
포 700
풍장 701

히읗 ㅎ

하관 702
한식 절사 703
함 705
함진아비 706

합궁례(신방엿보기) 358
합근례 707
합문 708
합사 708
합설 710
합장 711
합환주 712
해산의례 713
향로 715
향상(향탁) 716
향탁 716
향합 716
허혼서 717
헌다 718
헌식 719
헌작 720
현구고례 722
혈식군자 726
호상 727
호석 729
호피 730
혼담 731
혼례 732
혼례복 736
혼례식 739
혼례홀기 741
혼반 743
혼백 745
혼사계 746
혼서물목(납폐물목) 110
혼서지(납폐서) 111
혼수 747
혼인 749
혼인권(통혼권) 690
혼인법 752
혼인성사 754
혼인신고 756
혼인여탐굿 758
혼주 759
화장 760
화장장 762
환갑(회갑) 764
회갑 764
회갑상 766
회격 769
회근(회혼례) 771
회다지 770
회혼례 771
효 775
후토제 776
후행 777
휘장 778
흠향 779
희생 780

한국일생
의례사전

1

차례

분야별

관혼상제 66
일생의례 506
통과의례 687

금줄 83
기자도끼 88
기자부적 89
기자의례 89
돌 135
돌복 137
돌잡이 139
배냇머리자르기 183
배냇저고리 184
백일 186
별전 189
산실 252
산전의례 253
산파 256
산후의례 258
산후조리 259
삼가르기 262
삼신 266
삼신받기 267
삼신상 269
삼칠일 274
수유 338
안산법 432
안태 434
애장 437
유감주술 477
유산법 480
육아의례 484
인줄(금줄) 83
작명 517
잔치 520
접촉주술 546
주술기자 590
천인천자문 629
첫국밥 632
첫나들이 633
출산금기 653
출생의례 655
치성기자 662
태교 676
태몽 679
태점 680
태처리 682
태항아리 684
택일 685
해산의례 713

계례 46
계빈 50
관례 63
관례홀기 65
명자례(자관자례) 512
삼가례 261
성년식 314
성년의 날 316
시가례 345
자관자례 512
재가례 534
진새례 607
초가례(시가례) 345

결혼기념일 44
고사당 52
고임새 54
관대벗김 63
관례벗김(관대벗김) 63
교배례 71
교환혼 73
국수 74
국제결혼 76
궁합 78
근친 81
근친혼 82
기럭아비 86
남귀여가혼 101
납길 103
납징 104
납채 105
납채서 107
납폐 108
납폐물목 110
납폐서 111
대례 126
대례상 128
대반 130
동상례(신랑다루기) 356
막편지 143
맞선 146
모란병 157
목기러기 159
문명 169
문안인사(새벽문안) 303
반친영 176
복수결혼 192
봉사혼 199
봉치시루 204
부조 209
부조록 210
부케 210
불교화혼식 216
사돈 236
사돈지 238
사주단자 246
사처방 248
상객 277
상견례 277
상수 287
새벽문안 303
서옥제 305
시집살이 354
신랑다루기 356
신방엿보기 358
신부가마 359
신부대 360
신행 366
신혼여행 368
약혼 439
연길 444
연애혼 446
영혼결혼식 457
우귀(신행) 366
우인 466
음양오행 491
의양 496
의혼 497
이레잔치(일훼잔치) 503
이바지음식 499
이혼 502
일훼잔치 503
입맷상 511
잔치 520
재행 539
재혼 540
전안례 545
조혼 577
주례 588
주육례 592
주자사례 593
중매인 596
중매혼 598
첫날밤 634
청기 635
청첩장 637
청혼서 638
초례(대례) 126
초야(첫날밤) 634
초행 644
친영 666
큰상받기 671
택일 685
통혼권 690
평생도 695
폐백 696
폐백음식 698
함 705
함진아비 706
합궁례(신방엿보기) 358
합근례 707
합환주 712
허혼서 717
현구고례 722
호피 730
혼담 731
혼례 732
혼례복 736
혼례식 739
혼례홀기 741
혼반 743
혼사계 746
혼서물목(납폐물목) 110
혼서지(납폐서) 111
혼수 747
혼인 749
혼인권(통혼권) 690
혼인법 752

혼인성사 754
혼인신고 756
혼인여탐굿 758
혼주 759
후행 777

백수백복도 186
수서(수연문) 337
수성노인도 331
수연례 333
수연문 337
평생도 695
폐백 696
환갑(회갑) 764
회갑 764
회갑상 766
회근(회혼례) 771
회혼례 771

가복 31
강복 38
개영역 39
견전 43
고복(복) 191
고이성 53
곡 56
공포 58
곽 59
관(冠) 60
관(棺) 61
광중 70
급묘 85
길제 97
납골(봉안) 201
널(관) 60
노제 113
다비 114
다시래기 117
담제 120
당내 121
대공 123
대렴 124
대렴금 125
대상 131
만사(만장) 144
만장 144
망주석 145
매장 147
멱목 149
명기 151
명당 153
명당도 154
명정 156
목욕 160
묘지 163
묘표 166
무복친 167
무인석 168
문상 170
문인석 171
반곡 174
반함 178
반혼(반곡) 174
발상 178
발인 179
방상시 180
보공 190
복 191
복인 194
복차장 196
본종오복제도(오복제도) 461
봉안 201
부고 205
부의 207
부제 208
분상 211
분정기 213
빈 224
빈상여놀이 226
빈소(장례식장) 527
빈장 228
사십구재 242
사자상 245
삭망전 249
산골 249
산신제 250
삼년상 263
삼우제 271
삼일장 272
삽 275
상두계(상포계) 302
상례 279
상문살 283
상복 285
상식 288
상여 289
상여장식 293
상장 297
상장례 298
상주 300
상청 301
상포계 302
석물 307
석수 310
선종 311
성복 319
성분제 320
소공 321
소렴 322
소렴금 323

소상 326
소천예배 327
수시 332
수의 339
수장 342
수질 343
순장 344
시다림 347
시도기 348
시마 349
시묘살이 350
시사전 353
심상 369
악수 430
여막 442
역복 444
연도(위령기도) 470
염습 447
염습구 448
염포 449
영결식 451
영구 453
영구차 454
영안실(장례식장) 527
영여 455
영정 456
영좌 457
오낭 460
오복제도 461
오복친(복인) 194
요질 465
우제 467
운상 468
위령기도 470
위령제 473
유골용기 478
유월장 483
윤도 486
음양오행 491
의복 495
이장 500
임종 509
입관 510
자리걷이 513
자연장지 515
장례 521
장례미사 525
장례식장 527
장명등 530
장사택일지 531
장지 532
재우제 537
재최 538
전 544
정복 547
제문 559
제주(題主) 569
조문 571
조석전 576
조전 577
졸곡 578
중상 598
지관 600
지석 604
지요 606
참최 621
천구 622
천금 623
천도굿 624
천도재 627
초분 639
초우제 640
초종 642
초혼(복) 191
충이 660
취토 661
치장 664
치전 665
친전(노제) 113
칠성판 669
탈상 673
택일 685
토장(매장) 147
패철(윤도) 486
풍장 701
하관 702
합장 711
호상 727
호석 729
혼백 745
화장 760
화장장 762
회격 769
회다지 770
후토제 776

가가례 22
가묘(사당) 230
간납 32
감모여재도 33
감실 35
갑사(사갑제) 229
강신 38
갱(대갱) 122
갱기 41
갱물 41
계문 48
계반개 49
계반삽시 49
고사당 52
고이성 53
고임새 54
교의 72
구일 차례(중구 차례) 595
국궁 74

국수 74
궐명 80
기신재 86
기일비망기 87
기제(기제사) 92
기제사 92
까마귀 모른 식게 99
납주 103
녜제 112
뇌주 114
단설 119
당내 121
대갱 122
도적 133
독(주독) 587
독축 134
떡 140
떡국 차례(설 차례) 312
매안(조매) 570
메 148
면(국수) 74
면기 150
모사기 158
묘제 161
문중 173
반기 175
벌초 188
봉사대수 197
봉제사접빈객 203
분재기 212
분정기 213
분축 214
분향 215
불천위 218
불천위제사 220
불천지위(불천위) 218
사갑제 229
사당 230
사당도(감모여재도) 33
사당제 233
사대봉사 234
사시제 240
사신 242
산신제 250
삼내흠 262
삼색나물 264
삼실과 270
삼헌(종헌) 585
삽시정저 276
상용영반 295
생신제 304
설 차례 312
설위 313
성묘 317
소목 324
소병 326
속절 329
수조 342
시도기 348
시접 353
시제(묘제) 161
시향(묘제) 161
식혜 356
신알례 361
신주 362
신줏단지 364
아헌 430
앙장 436
어육 440
어육기 441
외손봉사 464
위령미사 472
위령제 473
위토 475
위패 476
위호 477
유사고(고사당) 52
유식 482
윤회봉사 488
음복 490
잔반 519
재계 534
재실 536
적 542
적기 543
정침 548
제관 549
제기 550
제기함 552
제례 552
제례흘기 557
제물 560
제복 563
제사(제례) 552
제사도구 565
제사분할 566
제상 567
제주(祭酒) 568
젯메(메) 148
조매 570
조상숭배 572
조상신 574
종가 579
종계 581
종법 583
종중(문중) 173
종헌 585
좨주 586
주과포 586
주독 587
주병 589
준 594
중구 차례 595
지방 601
지방함 603
진기 607
진다(헌다) 718
진설 609
진설도 610
진설법 611

진적 613
진찬 614
차례 615
참례 618
참사자 619
참신 620
철상 629
철시복반 631
첨작 631
청장 636
체천 639
초접 641
초헌 646
촛대 647
최장방 647
추도식 648
추석 차례 650
축문 651
축판 653
출입고 659
출주 659
친진 669
침주 670
탕 674
탕기 675
퇴주기 693
편기 693
편적 694
포 700
한식 절사 703
합문 708
합사 708
합설 710
향로 715
향상(향탁) 716
향탁 716
향합 716
헌다 718
헌식 719
헌작 720
혈식군자 726
효 775
휘장 778
흠향 779
희생 780

가례 24
가례도감의궤 25
가례언해 26
가례원류 27
가례의절 27
가례증해 28
가례질서 29
가례집람 30
가례향의 31
가정의례준칙 31
건전가정의례준칙 42
격몽요결 43
경례유찬 45
계녀서 46
고려사 예지 52
국조오례의 78
길례요람 96
남계선생예설 100
명재선생의례문답 155
봉선잡의 200
사례집요 238
사례편람 239
사마씨서의 239
사의 245
상례비요 282
상례언해 283
상변통고 284
석문가례초 306
석문상의초 307
세종실록 오례 321
예기 458
예의유집 459
오선생예설분류 463
우암경례문답 466
의례 494
의례경전통해 494
의례문해 495
의례준칙 495
주자가례(가례) 24
증보사례편람 599
천기대요 624
태교신기 678
퇴계상제례답문 692

가가례
家家禮

정의 동일한 의례가 집안이나 지역, 학파에 따라 달리 행해지는 방식을 이르는 말.

역사 기록에 나타나는 가가례家家禮의 시작은 아마도 현종대顯宗代에 일어난 기해예송己亥禮訟(1659)과 갑인예송甲寅禮訟(1674)일 것이다. 이 예송은 효종孝宗의 계모인 장렬왕후莊烈王后가 효종과 효종의 비妃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상喪에 입을 복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정치적인 당쟁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문제는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일찍 죽자 둘째 아들인 효종이 왕위를 이은 데에 있었다. 인조仁祖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국가의 왕통王統을 이어 주손이 되지만, 가통家統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송시열宋時烈(1607~1689)·송준길宋浚吉(1606~1672)을 비롯한 서인西人들은 효종이 비록 대통을 이었지만 인조의 차자次子이므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장렬왕후가 기년복朞年服(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허목許穆(1595~1682)·윤휴尹鑴(1617~1680) 등은 효종이 대통을 이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효종을 인조의 장자長子로 간주하여 장렬왕후가 참최복斬衰服(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인이 실세였기에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기년복을 입는다.

15년이 지나 인선왕후 장씨가 죽자 장렬왕후의 복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서인들은 효종의 상에 준거하여 둘째 며느리에 해당하는 대공복大功服(9월)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남 유생 도신징都愼徵(1604~1678)이 소疏를 올려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시열이 효종의 사례에 따랐다고 하자 현종은 선왕을 '체이부정體而不正'으로 규정한 것은 박한 처사라며 국제國制에 따라 기년복을 입도록 명하여 시비는 종결되었다.

이 예송은 예禮의 적용을 왕과 백성에게 동일하게 하느냐 아니면 다르게 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남인은 대통을 이었으면 장자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서인은 왕실이라 하더라도 종법宗法에 따라 차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세기 중·후반에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될 정도로 예의 해석이 달랐기에 가가례의 조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17~18세기에 고례古禮를 저본으로 『가례家禮』를 재해석해 약 200종의 예서가 출간된 것을 보면 그만큼 이견의 여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가례』를 철저하게 보완한 것도 있지만,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부분도 많다. 따라서 학파, 집안, 지역에 따라 다른 예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 의례의 행례行禮 방식은 그 본질보다 그것을 구성하는 제 요소를 둘러싼 신분·사회적 질서체계와 의식의 적합성,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 의례의 행례 방식은 예서라는 규범에 따르지만, 『가례』 등 대부분의 예서가 행례의 기본 원칙만 기술하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행례 집단이나 지역, 학파에 따라 다른 행례 방식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례變禮에 대한 대응은 집단을 중심으로 모색 및 설정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른 예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면서 가가례로 고착되어 버린다.

이러한 가가례는 의례 전체의 맥락이 아니라 예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 잘 알려진 가가례는 첫째, 제사의 봉사대상에 대한 가가례이다.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서는 기제사의 봉사대상에 해당하는 조상만 모시는 단설單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서 봉사대상의 배우자를 함께 모시는 합설合設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계退溪나 율곡栗谷 역시 합설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상차림의 가가례이다. 상차림은 가문별로 가장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다. 이는 예서에서 과일은 과果, 고기는 육肉, 생선은 어魚 정도로만 표시하고, 제물의 종류와 숫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노론에서는 '홍동백서紅東白西', 남인에서는 '조율이시棗栗梨柹'라고 의도적인 구분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일의 숫자를 홀수, 짝수로 정하

는 이유는 과일의 생장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생선은 숭어와 고등어, 문어를 쓰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혼례婚禮나 흉제凶祭의 상차림에서도 나타난다. 그 이유는 예서에서 과일이나 생선, 고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 산물을 중심으로 준비하다 보니,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른 종류를 사용하면서 차이가 나타난다.

셋째, 상례에서 매장할 때 입관 여부의 가가례이다. 이는 매장할 때 관을 해체하고 시신만을 매장하느냐, 입관한 채로 매장하느냐의 차이로 풍수와도 관련이 있다.

넷째, 헌작 방법의 가가례이다. 여기에는 『가례』나 『가례의절家禮儀節』 등의 예서에서 규정한 방법이 있고, 『국조오례의』에서 규정한 방법이 있다. 『가례』에서 규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인이 올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간다. 그다음에 집사자 한 명이 술 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동쪽)에 선다. 주인은 진홀搢笏하고 직접 고위의 잔을 받들고 향탁 앞에서 동향하여 선다. 우집사자가 맞은편에서 서향하여 잔에 술을 따른다. 주인이 받들어 원래의 자리에 드린다. 그런 다음 홀을 들고 신위 앞 향탁 앞에 북향하여 선다. 집사자가 고위의 잔을 받들고 주인의 왼쪽에 선다. 주인이 진홀하고 꿇어앉으면 집사자도 같이 꿇어앉는다. 주인이 집사자로부터 고위의 잔을 받아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어 세 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모사에 좨주[祭酒]한다. 잔을 다시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원래의 자리에 되돌린다. 『국조오례의』의 헌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인이 올라와 신위 앞 향탁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잔을 가져다가 술을 떠내어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집사자로부터 잔을 받아 받들었다가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잔을 원래의 자리에 올린다. 주인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

다섯째, 계반개啓飯蓋 시기의 가가례이다. 『가례』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는 초헌에서 메의 뚜껑을 열고 합문闔門에서 삽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삽시정저插匙正箸'라는 말이 생겼다. 그러나 합문할 때 메의 뚜껑을 열고 삽시하는 사례도 많아 계반삽시啓飯插匙라는 용어도 탄생하였다.

이 외에도 길제를 지낼 때 주부의 예복, 혼례의 함 싸는 방법과 받는 방법, 혼례복, 초례상의 상차림,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 짚불을 넘거나 바가지를 깨는 일, 노적섬 밟기 등 세부적인 부분은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이에 따라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도랑 건너면 집사하지 않는다" 등의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가가례에 따른 예론은 분분했던 것 같다.

가가례는 기본적으로 예학의 범주에 속한다. 예학파는 이미 그 자체로서 분파 형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성리학의 분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퇴계와 율곡의 문인들이 퇴계학파(영남학파)와 율곡학파(기호학파)로 분파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학 역시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인 분파와도 관련이 있다.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 등이 그것이다. 예학에서는 노론과 남인을 구분하는 것이 위의 학파 구분과 상통한다. 그러나 하나의 예학 계통에 있는 퇴계 선생의 제사상 차림과 학봉 선생의 제사상 차림이 다르기도 하여, 가가례는 일정한 원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례 가가례의 지역 사례는 무척 많아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시한다.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에서는 적炙을 하나의 적틀에 모두 쌓는 도적都炙을 쓴다. 그러나 기호학파에서는 적을 따로따로 차리는 산적散炙을 쓴다.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에서는 생선으로 숭어를 차리지만, 안동 지역에서는 고등어와 문어를 차리는 차이가 있다. 영남학파에서는 대부분 『국조오례의』식 헌작獻爵을 하고, 기호학파에서는 『가례』식 헌작을 한다. 안동 지역에서는 길제吉祭 때 주부가 혼례복을 예복으로 입는다. 경기도와 충청도 등에서는 헌작할 때 젓가락을 시접에 세 번 구르는 전저奠箸를 하지만 영남지역에서는 하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가가례의 특징은 세부적인 부분에 한정된다. 이는 예서가 세부적인 행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집안마다 다른 실천 방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사실 가가례는 전통의 고수라는 미명 아래 원래의 규정을 찾아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전승하다 보니 변이형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적용

기준 역시 매번 달라지다보니 변형된 가가례는 더욱 고착되었다. 이러한 '가가례'는 예서와의 차이에 대한 시비를 무마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참고문헌 가가례로 보는 경기지역 제사의 특성(김시덕, 민속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묻는다–실천민속학 새책2, 실천민속학회, 2001), 가가례를 통해 본 영남 예학의 특징(김미영, 국학연구13, 한국국학진흥원, 2008),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민속원,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가례
家禮

정의 성리학性理學을 완성한 주희朱熹의 저작으로 알려진 관혼상제冠婚喪祭의 가례서.

내용 조선 태조太祖(재위 1392~1398)는 즉위교서卽位敎書의 네 번째 강령을 통해, 나라의 큰 법인 관혼상제를 실시하여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한 예제의 실천과 사당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예치사회에서는 가家에서 국國까지의 모든 질서와 권위가 사당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었다. 주자가 『가례家禮』에서 통례를 가장 앞에 둔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나왔다.

『주자가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시된 교화서이며, 모든 가례의 전범이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고려 말경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중국 송대宋代의 주희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권1부터 권5까지 모두 다섯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권1은 통례通禮이며, 관혼상제의 사례四禮가 그다음부터 차례로 수록되었다.

가례는 보통 관혼상제를 가리킨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관례冠禮'는 성년에 이른 사람이 성인의 예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성인식이다. 성인의 예를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아우로서, 신하로서, 연소자로서 예에 알맞게 행동하는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례는 유교의 효제충순孝悌忠順이 반영된 의례임을 알 수 있다. 여자의 성인식은 '계례笄禮'라고 한다.

'혼례婚禮'는 육례六禮를 간편화하여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사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친영이었다. 조선 초기의 혼속은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서류부가제壻留婦家制)이었다. 유교 이념에 배치되는 이 혼속은 당연히 폐기하고 친영을 시행해야 했다. 그러나 친영을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반친영半親迎의 형식이 행해지기 시작하여 점차 관행화하였다.

'상장례喪葬禮' 역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불교사회에서 유교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불교식 상장례는 쇠퇴하고 그 밖의 민간신앙은 음사淫祀로 규정되어 모두 배격당했다.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주자가례』에 근거한 예제의 강요와 이를 기준으로 한 예제의 시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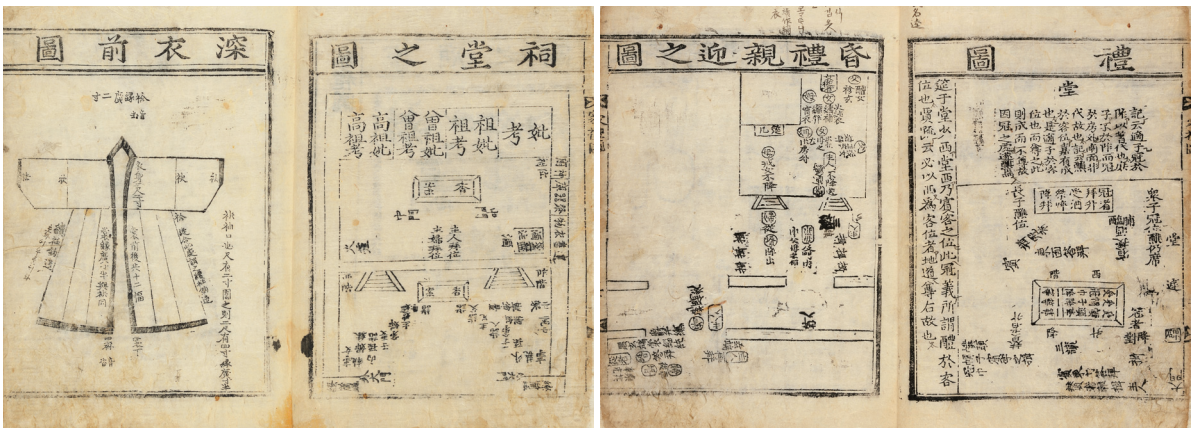

가례 | 국립민속박물관

상장례는 상례喪禮와 장례葬禮를 합성한 말이다. 상례는 3년의 복상 기간에 행하는 모든 의례이며, 장례는 그중에서 특히 시신을 땅에 묻어 무덤을 조성하는 일체의 의례를 가리킨다. 그 절차는 초종初終에서 시작하여 27개월 만에 행하는 담제禫祭를 마지막으로 탈상함으로써 끝이 난다. 상장례는 통과의례通過儀禮의 측면에서 이탈과 전이, 통합의 순환 모델을 갖추고 있다. 국가 통합 및 사회질서 확립에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장례는 그럼으로써 길례(제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주자가 가장 강조한 오복제도五服制度는 가계의 적장자 상속을 통해 수직적 질서의 원리인 종법宗法을 합리화·정당화하는 관념의 소산이었다.

'제례祭禮'는 관혼상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종법사회에서 제사보다 더 크고 중요한 예는 없었다. 제사는 시조를 비롯한 조상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제사의 종류로는 시조제始祖祭 혹은 초조제初祖祭부터 시작해서 사시제四時祭, 선조제先祖祭, 녜제禰祭,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이 있다. 묘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의 거행 장소는 모두 사당이었다. 사당은 종법의 질서체계에 따라 조상을 모신 제사 공간이다. 사당에서 치르는 신성한 제사는 종자宗子의 일원적인 가족지배 질서를 상징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이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유교 이념에 입각한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집안의 화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가례는 정부의 적극적인 교화정책으로 널리 보급되고 이해되면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가례와 관련 있는 각종 주석서와 연구서가 쏟아져 나왔다. 16세기 중반 이래로 정계에 진출한 사림들은 고례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임진왜란 직후의 무너진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의를 강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편찬된 가례서로는 이언적李彦迪(1491~1553)의 『봉선잡의奉先雜儀』를 비롯하여 신의경申義慶(1557~1648)의 『상례비요喪禮備要』,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가례집람家禮輯覽』, 조호익曺好益(1545~1609)의 『가례고증家禮考證』, 유계兪棨(1607~1664)의 『가례원류家禮源流』,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 이재李縡(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례의 연구와 보급은 예속이 사회와 가정생활의 준칙으로 보편화하면서 뚜렷한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였다.

인간의 감정 중시에서 비롯된 사회의 여러 의식이 사회와 인정의 수요에 응하여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허다한 의절로 설계되어 하나의 제도로 정해진 『주자가례』는 예의를 통한 사회의 안정과 국가 흥성의 중요한 기초로 기능한 예서이다.

필자 임민혁(任敏赫)

가례도감의궤
嘉禮都監儀軌

정의 조선시대 왕실의 혼례婚禮 행사를 기록한 의궤儀軌.

내용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에서 거행한 주요 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보고서 형식의 책이다. 의식儀式과 궤범軌範을 합한 말로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다. 의궤는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궤로는 1601년(선조 34) 선조의 비妃인 의인왕후懿仁王后(1555~1600)의 상喪을 치르고 편찬한 것이다. 가례嘉禮는 왕실의 경사스런 행사에 관한 예禮를 의미하는데, 조선시대에 편찬된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는 모두 왕실의 혼례의식을 정리한 것이다. 현존하는 『가례도감의궤』는 모두 20종으로 인조대仁祖代부터 대한제국 시기 사이에 편찬된 것이다. 국왕의 가례의궤가 9종, 왕세자의 가례의궤가 9종, 왕세손의 가례의궤가 1종, 황태자의 가례의궤가 1종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1627년(인조 5) 소현세자昭顯世子와 세자빈 강씨의 가례의식을 기록한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이며, 제일 나중의 것은 1906년 순종純宗과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의 결혼식을 기록한 『순종순정효황후가례도감의궤純宗純貞孝皇后嘉禮都監儀軌』이다.

조선시대 가례는 다른 국가전례와 마찬가지로 숙종대肅宗代와 영조대英祖代를 거치면서 재정비되었으며, 이와 함께 가례의식을 기록한 『가례도감의궤』의 편찬체제도 정비되었다. 인조仁祖·효종대孝宗代에는 체계가

숙종인경후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조선시대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없고 내용과 분량이 매우 소략하였지만, 현종顯宗·숙종 대에는 목록을 작성하고 체제와 내용의 기본 틀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영조대에는 기본 항목과 형식을 확립하고 기록도 더욱 정밀하고 체계화하였으며, 순조대 이후에는 분량과 제작 건수가 증가하고 기본 항목이 더욱 세분화하였다. 특히, 영조와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의 가례의식을 기록한『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는 영조대에 새로이 제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기존의 1책에서 2책으로 제작하고 내용과 부합하도록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며 반차도班次圖의 분량을 크게 늘림으로써『가례도감의궤』의 전형을 이루었다.

『가례도감의궤』의 체제는 크게 권수목록卷首目錄, 도청의궤都廳儀軌, 각방의궤各房儀軌, 일방의궤一房儀軌, 이방의궤二房儀軌, 삼방의궤三房儀軌,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 수리소의궤修理所儀軌, 반차도班次圖 등으로 구성된다. 도청의궤는 가례 행사를 주관한 도청의 각종 문서와 의궤청의 문서를 수록한 것이며, 각방의궤는 가례도감의 업무를 분담한 하부기관인 일방·이방·삼방의 의궤와 지원부서인 별공작·수리소의 의궤를 수록하였다. 반차도는 가례 행사의 주요 장면을 채색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당시 결혼식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필자 고영진(高英津)

가례언해
家禮諺解

정의 신식申湜(1551~1623)이『주자가례朱子家禮』를 언해諺解한 책.

내용 고려 말 신흥사대부들에 의해 성리학과 함께 도입된『주자가례』는 학문적인 주목을 받기보다 불교나 민간신앙적인 생활관습에 대응하기 위한 유교 의례의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더 강조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성리학적 소양을 지닌 관료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그 시행이 장려되었다. 학문적 관심이 본격화한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였으며, 그에 따라『주자가례』에 대한 주석과 언해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련 예서禮書들이 다양하게 편찬되었다.『주자가례』에 대한 언해 작업은 선조宣祖 초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림 개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6세기 중반 이황李滉(1501~1570)이『주자가례』에 대해 주석과 언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작업은 제자인 이덕홍李德弘과 김륭金隆(1549~1594)에게 영향을 미쳤다.『가례언해家禮諺解』는 신식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16세기 말에 저술한 것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가례언해서家禮諺解書라고 할 수 있다. 1632년(인조 10) 둘째 아들인 신득연申得淵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원주에서 간행하였다.

10권 4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일 앞부분의 범례凡例와 가례도언해家禮圖諺解에 이어 제1권은 가례서家禮序와 통례通禮의 사당祠堂, 심의제도深衣制度, 제2권은 통례의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 제3권은 관례, 제4권은 혼례, 제5권은 상례의 초종初終~대렴大斂, 제6권은 상례의 성복成服, 제7권은 상례의 조석곡전朝夕哭奠~치장治葬, 제8권은 상례의 천구遷柩~반곡反哭, 제9권은 상례의 우제虞祭~조부모망답인계장祖父母亡答人啓狀, 제10권은 제례에 대한 언해를 수록하였다.『주자가례』의 큰 글자로 된 항목과 본문은 원문 그대로 한자로 쓰고, 그 밑에 한글 음音과 토吐를 달고 언해하였으며, 작은 글

자로 된 설명 부분과 주註들은 원문을 쓰지 않고 언해한 것만 수록하였다. 아울러 연호, 선유先儒, 역대 인물, 서적 편명, 물건의 명칭이나 주에서 따로 해석이 필요한 용어들은 각 장의 윗부분에 표제標題하였다. 『가례언해』의 저술은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어려운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주자가례』가 여성과 서민계층까지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16세기의 다양한 국문 어휘를 수록하고 있어 국어사적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 고영진(高英津)

가례원류
家禮源流

정의 유계兪棨(1607~1664)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해 주석을 붙인 책.

내용 고려 말 도입된 『주가가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화하는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였다. 그 결과, 다양한 예서가 편찬되었다. 김인후金麟厚(1510~1560)의 『가례고오家禮考誤』는 『주자가례』의 의문점을 자기 나름대로 수정한 최초의 예서禮書로 초보적인 가례주석서家禮註釋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화하는 시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가례주석서의 흐름은 이후 이덕홍李德弘의 『가례주해家禮註解』, 김륭金隆(1549~1594)의 『가례강록家禮講錄』, 송익필宋翼弼(1534~1599)의 『가례주설家禮註說』 등을 거쳐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이르러 분수령을 이루었다. 유계가 1640년대 전반에 저술한 『가례원류家禮源流』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 책은 1713년 손자 유상기兪相基(1651~1718)가 용담현령으로 있을 때 임금의 허락을 받아 간행되었다. 그러나 유계의 제자이기도 했던 윤증尹拯(1629~1714)이 자신의 아버지 윤선거尹宣擧(1610~1669)도 『가례원류』를 같이 편찬했다는 이의를 제기해, 두 집안 간에 분쟁이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니시비懷尼是非에 이어 노론과 소론 사이에 다시 배사론背師論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4권 8책으로, 제1권은 통례通禮 사당祠堂, 제2권은 통례 심의제도深衣制度, 제3권은 통례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 제4권은 관례, 제5권은 혼례, 제6권은 상례 초종初終~대렴大斂, 제7권은 상례 성복成服, 제8권은 상례 조석곡전朝夕哭奠~분상奔喪, 제9권은 상례 치장治葬, 제10권은 상례 천구遷柩~반곡反哭, 제11권은 상례 우제虞祭~담禫, 제12권은 상례 거상잡의居喪雜儀~조부모망답인계장祖父母亡答人啓狀, 제13권은 제례 사시제四時祭, 제14권은 제례 초조初祖~묘제墓祭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중간중간 종법, 반장의절보反葬儀節補, 개장의절보改葬儀節補, 길제비요보吉祭備要補, 사토지의절보祀土地儀節補, 사조의절보祀竈儀節補 같은 『주자가례』에 없으나 『가례의절家禮儀節』 등에서 보완한 항목들도 눈에 띈다. 이 책은 『주자가례』의 본문을 경經으로 하고 『의례儀禮』, 『주례周禮』, 『예기禮記』 등 경전에서 취한 것을 큰 글씨로 주석을 달아 '원源'이라 하고, 후대 중국과 조선 학자들의 예설 가운데 참고할 만할 것을 취하여 작은 글씨로 기록하고 '류流'라 하여, 『주자가례』의 연원과 전개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주자가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주석한 이전의 가례주석서와는 달리 『주자가례』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주석을 붙인 최초의 가례주석서라 할 수 있다.

필자 고영진(高英津)

가례의절
家禮儀節

정의 명대明代 구준邱濬(1421~1495)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재구성하고 보완한 책.

내용 가례家禮는 본래 삼례三禮에 포함된 것으로, 국가·왕실의 예禮인 오례五禮를 정리·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사회변동 및 가족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분화한 것이었다. 가례는 후한後漢 말엽에 정착되어 여러 문벌에 의해 윤리적 생활규범으로 행해졌으며, 위진남북조시대魏晋南北朝時代에는 서의書儀라는 형식으로 발달하였다. 『사마씨서의司馬氏書儀』는 북송대北宋代 사마광司馬光이 『의례儀禮』를 바탕으로 서의류書儀類와 당시 속례俗禮를 참고하여 저술한 대표적인 가례서家禮書였다. 그러나 이 책은 번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적지 않아 사람들이 행하기가 어려웠다. 『주자가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책으로, 남송대南宋代 주자朱子가 『사마씨서의』를 바탕으로 여러 경전과 학자의 설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재편성한 것이다. 『주자가례』는 이후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수많은 주석서가 편찬되었다. 1474년(조선 성종 5, 명明 성화成化 10)에 명나라 사람 구준이 저술한 『가례의절家禮儀節』은 『주자가례』를 재구성하고 보완한 대표적인 가례주석서이다. 조선에는 1518년(중종 13)에 수입·간행되어 널리 참조되었으며, 일본에서는 그 자체 '주자가례'란 이름으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8권 4책으로 가례의절서家禮儀節序와 문공가례서文公家禮序에 이어 제1권은 통례通禮, 제2권은 관례, 제3권은 혼례, 제4권은 상례 초종初終~성복成服, 제5권은 상례 조석곡전朝夕哭奠~반곡反哭, 제6권은 상례 우제虞祭~담禫, 제7권은 제례, 제8권은 가례잡의家禮雜儀·가례부록家禮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준은 『주자가례』조차 난해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람들이 쉽게 행하도록 『주자가례』의 본주本註, 즉 항목의 설명 부분을 의례를 행하는 절차 중심으로 서술하여 '의절儀節'이라 이름 붙였다. 아울러 권마다 '여주餘註'와 '고증考證' 항목을 새로 설정하여, '여주'에는 『주자가례』의 본주 가운데 '의절'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을 수록하고, '고증'에는 『주자가례』의 내용에 대해 삼례三禮와 후대 여러 학자의 예설을 참고하여 검토한 내용과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한편, 『주자가례』의 맨 앞부분에 있던 〈가례도家禮圖〉는 각 권의 제일 뒷부분으로 옮겨 배치하였다. 『주자가례』가 편찬된 지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준은 이 책이 의례를 행하는 데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도 부족하다고 보고, 전체 내용을 구체적인 시행절차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학문적으로 보완하여 새로운 체제의 가례주석서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필자 고영진(高英津)

가례증해
家禮增解

정의 조선 정조正祖 때의 학자 이의조李宜朝(1727~1805)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관한 여러 학자의 예설과 변례變禮를 수집하여 설명한 가례家禮 해설서.

내용 『가례증해家禮增解』는 총 14권 10책(별책 목록 1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에는 송환기宋煥箕의 서문(1792년)과 이의조의 소서小序, 범례, 가례서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고, 본문은 통례通禮(권1~권2), 관례冠禮(권3), 혼례婚禮(권4), 상례喪禮(권5~권12), 제례祭禮(권13~권14)로 편성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정만석鄭晩錫의 발문(1824년)이 실려 있다. 별책에는 '가례증해 인용예서목록'과 '가례증해 변례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전자에는 중국 서적 28종, 우리나라 서적 48종 등 총 76종의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례증해』가 18세기까지의 『주자가례』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집성한 저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에는 『주자가례』에 규정이 없거나 다르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인 행례行禮의 과정에서 마주치는 실생활에서의 예법, 즉 변례變禮의 목록을 집성하였다. 국역본으로는 최근 한국고전의례연구회가 번역한 『국역가례증해』가 있다.

『가례증해』는 이의조가 아버지 이윤적李胤積(1703~1756)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자가례』의 학문적인 연구 성과와 가학적家學的 예학을 바탕으로 이룩한 수준 높은 『가례』 해설서이다. 이윤적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저자인 도암陶菴 이재李縡(1680~1746)의 문인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가례 해설서를 만들고자 하여 『주자가례』의 예설과 변례를 수집하여 해설하였다. 그의 사후 아들인 이의조가 이것을 가져다가 다시 10여 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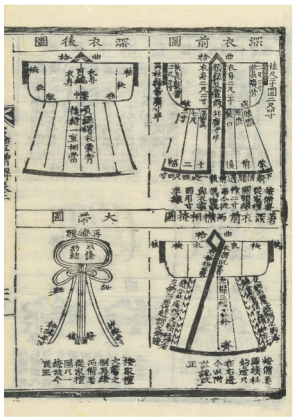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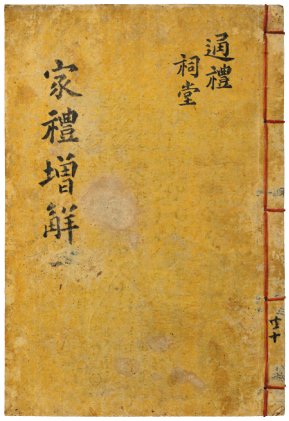

가례증해 | 1824 | 국립민속박물관

교정하고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이의조는 『가례증해』에서 『주자가례』가 변질될 수 없는 가치관과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그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가례증해』는 『주자가례』의 정통성을 드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례증해』는 가례의 여러 변례變禮를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고례古禮의 본질을 자세하게 해설한 점에서도 특색이 있다. 따라서 『가례증해』는 가례적 정통을 고수하면서도 그 시의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가례와 속례의 조화를 기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례증해』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과 시남市南 유계兪棨의 『가례원류家禮源流』, 이재의 『사례편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주자가례』의 주석을 통하여 사대부의 예제禮制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론계 예설을 집대성한 예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노론 계열 주요 학자의 예설禮說을 절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호계 예학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가례질서
家禮疾書

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1763)이 가례家禮에 관한 여러 학설을 모아서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새롭게 분석하고 해석한 예서禮書.

내용 『가례질서家禮疾書』는 필사본 3권 3책의 가례서이다. 제작 시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일명 『성호가례질서星湖家禮疾書』라고도 한다. '질서疾書'는 원래 송나라의 학자 장재張載가 "공부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빨리[疾] 기록[書]했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했다.

책머리에는 1731년(영조 7)에 저자가 쓴 「자서自序」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의 생전에 필사筆寫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서」에서 이익은 편찬 동기에 대해, "예禮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 시의時宜에 맞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18세기의 실학자였던 이익의 무실적務實的 예학사상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가례질서』의 본문은 도설圖說·통례通禮·관례冠禮·계례笄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은 도설, 즉 가례도家禮圖 1편·통례 31편·관례 17편·계례 5편·혼례 25편·상례 15편으로 되어 있고, 권2~3은 상례 134편·제례 38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사례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상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의 제설諸說에 대해서 비판적·실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례질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례도와 통례이다. 이익은 가례도(권1)에서 가례도가 주자의 『가례』의 본문과 다른 부분이 많고, 특히 그 안에 "1213년에 반시거潘時擧가 지은 지識"가 부록된 것으로 보아, 가례도가 주자朱子(1130~1200)의 『가례』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주자가 지은 도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례에서는 사당의 구조에 관한 설명에서 "신분의 귀천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당에 배속할 제전祭田의 면적에 관한 설명에서 "제사는 생활 정도에 따라 지내야 하므로 농민의 경우 배위당配位當 위토位土의 면적을 자기가 소유한 전토田土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할 것"을 말하고 있다.

예禮를 역사적인 관점과 실용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형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에

서, 『가례질서』는 실학實學을 집성한 이익의 무실적 예학 성향이 확연히 드러나는 예서라 할 수 있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가례집람
家禮輯覽

정의 조선 중기의 학자 김장생金長生(1548~1631)이 가례家禮에 관련된 여러 학자의 예설을 취사선택하고 고례古禮를 참작하여 『가례』의 각 조목에 주註를 달고 해설한 예서禮書.

내용 『가례집람家禮輯覽』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본문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고례와 여러 학자의 관련 예설을 주석으로 붙인 것이다. 권1은 통례通禮, 권2는 관례冠禮, 권3은 혼례婚禮, 권4~9는 상례喪禮, 권10은 제례祭禮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예서는 『사계전서沙溪全書』에는 본문 6권과 도설圖說 2권 등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685년(숙종 11) 문인 송시열宋時烈이 「후서後序」를 붙여서 이 책을 간행할 때에는 10권 6책으로 분권分卷하였다. 현재 규장각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김장생은 『가례집람』의 「서序」에서 이 책이 친구 신의경申義慶과의 강론으로 시작된 것이고, 또 사문師門(여기서는 이이李珥와 송익필宋翼弼)의 취정就正(도道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질정을 받음)을 거쳐서 제작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후일 송시열은 「후서後序」에서 이 책이 특히 주자가 교정하지 못한 상제례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것을 지적하고, "선생이 상제喪祭 이례二禮에 깊이 공을 쏟아 물을 담아도 새지 않을 정도가 되게 했다."라고 평하였다.

『가례집람』의 특색은 도설圖說과 예설의 체계적 집성에 있다. 도설은 독자들이 이 책을 참고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한 시도로서 『가례』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또 『가례집람』에는 조선학자들의 예설과 국제國制 및 국속國俗이 160여 회나 수록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여기에는 또한 80여 종의 인용서목을 적고 편목篇目을 밝혔으며, 자기 의견일 경우에는 '우愚'자나 '안按'자를 써서 구분하였다. 또 인용 예전禮典으로는 『오례의五禮儀』와 함께 『경국대전經國大典』, 『경제육전經濟六典』 등의 법전류法典類가 망라되어 있다. 이 책이 가례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적인 가례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록된 예설은 이황의 예설이 전체 인용 예설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판적 수용이 주조를 이룬다. 『가례집람』이 단순히 기호畿湖의 예설만을 집성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기호·영남의 예설을 조화롭게 수용한 예서임을 보이는 측면이다.

『가례집람』은 광범한 예설의 집성과 철저한 고증으로 우리나라의 예학을 학문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표적 예서이고, 또한 조선의 예설과 예속禮俗을 광범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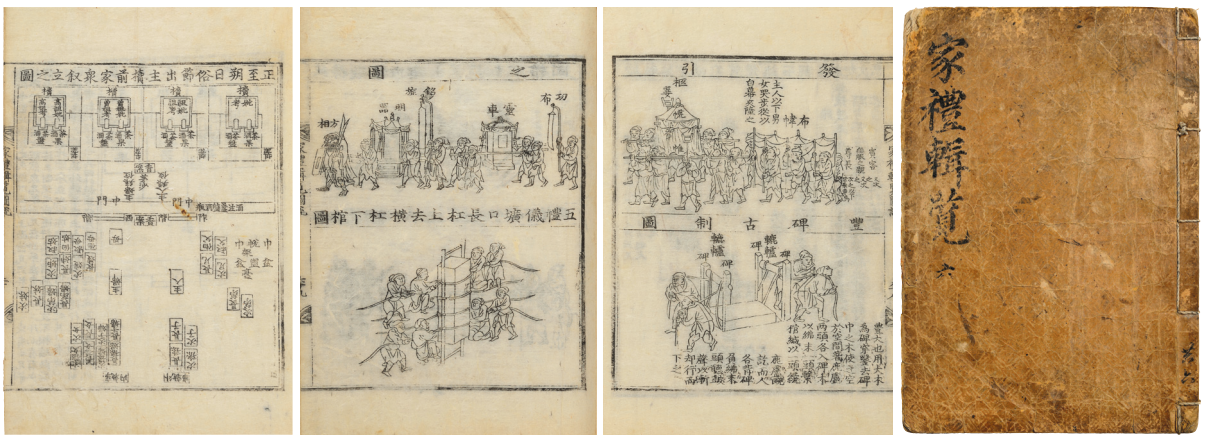

가례집람 | 국립민속박물관

정리하여 '조선적 가례의 집성'을 이룬 예서이며, 그 계몽성과 정밀성으로 인하여 예의 사회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예서였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가례향의
家禮鄕宜

정의 조선 중기의 학자 겸 관료 조익趙翼(1579~1655)이 지은 가례家禮에 대한 계몽적인 해설서.

내용 『가례향의家禮鄕宜』는 7권 2책의 필사본 예서이다. 이 책은 양반층이 기준으로 삼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양반용 『가례』와는 달리, 일반 민가民家에서 손쉽게 행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쉽고 간략하게 편집한 가례 실천서이다. 그러나 예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제가 갖추어지도록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상례喪禮의 비중이 가장 크고, 관례·혼례·제례의 순서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과 일반 백성의 예절 실천은 그 생활 정도와 사회적인 활동에 따라 차등을 두어 운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서민의 경제적 형편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예절의 실천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경제력이 약한 일반 백성은 『가례』의 조문을 준수하는 예절의 실천을 처음부터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조익은 일반 민가에서 가례를 소화하여 따를 수 있도록 계몽적인 성격의 이 책을 저술한 것이다. 그런데 조익의 서민 가례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1613년 계축화옥癸丑禍獄 이후 그가 수도권인 광주廣州를 떠나 호서의 신창현新昌縣으로 내려와 도고산道高山 아래에 집을 짓고 살면서 은거하던 10여 년 동안, 호서의 박지계朴知誡, 권득기權得己 등과의 학술 토론을 통해서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권득기의 『가례참의家禮僭疑』에서도 이른바 빈부난제론貧富難齊論(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예를 동일하게 실천하기는 어렵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후일 실학자들에게 이어졌다. 18세기에 이익李瀷(1681~1763)이 '서인가례庶人家禮'를 별도로 만들어 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한 데에서 그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가복
加服

정의 특별한 의리의 발생으로 정복正服보다 더 무거운 복으로 올려 입는 복제.

내용 적손嫡孫(맏손자)으로서 아버지가 죽고 없을 때, 할아버지 또는 증조부, 고조부를 승중承重한 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삼 년간 입는다. 조모, 증조모, 고조모가 사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재최복을 삼 년간 입는다. 조부, 증조부, 고조부가 살아 있으면 재최장기齊衰杖朞(재최복에 지팡이를 짚고 일 년간)이다. 아버지가 적자嫡子가 되어 남의 뒤를 잇는 경우도 같다. 시집간 여자가 곤제昆弟(형제) 중 아버지의 후사後嗣된 자를 위하여 입는다.

특징 및 의의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조부모상, 증조부모상, 고조부모상을 당했을 때 입는 복제로,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식의 도리를 다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朱子家禮, 상례 오복제도 연구(김시황, 퇴계학과 유교문화22,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필자 김시황(金時晃)

가정의례준칙
家庭儀禮準則

정의 전통적인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번잡성과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지양하고 의례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정·공표한 의례에 관한 규칙.

가정의례준칙 홍보물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가정의례준칙은 허례허식을 일소一掃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관혼상제의 의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제시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57년 국민재건운동본부의 「표준의례」와 1961년 보건사회부의 「표준의례」를 모태로 하여,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반포되면서 시행되었다. 이 당시의 법률은 법령으로 공포는 되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내용이 없는 권고적·훈시적인 법률이었다.

그러나 1973년 6월 1일에 「가정의례준칙」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제10조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가정의례를 강제하고자 하였다. 이 법령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다가,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법령의 대표적인 특징은 추석에 지내는 차례를 '절사節祀', 양력 1월 1일에 지내는 차례를 '연시제年始祭'라고 구별하여 규정한 것이다. 연시제를 별도로 구별한 것은 당시 양력설을 권장하였던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기제忌祭'를 지내는 시간에 대해서도 '사망한 날 해진 뒤'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이 또한 당시에 있었던 통행금지라는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은 정부에서 관혼상제의 가정의례를 국가적으로 간소화하여 규제하고자 한 것이나, 실제로는 전통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관혼상제가 거행됨으로써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간납

정의 다지거나 얇게 저민, 또는 꼬챙이에 꿴 육류·어패류·채소류 등의 재료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을 입힌 다음, 기름에 부쳐 만든 전류나 적류 등의 제수용 음식.

역사 '간납'은 그 어원이 '간남肝南'에서 온 것으로, 조선 후기학자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는 "특이한 음식물로 잘게 썬 고기인데, 세속에서 간으로 만든 적炙의 남쪽에 차려 놓고 간남肝南이라고 한다."고 기록하였다. 19세기 말 『시의전서是議全書』 「제물부祭物部」에서 '어육각색간랍'을 일명 '전유어'라 하였고, 『명물기략名物紀略』에서는 "간남이 전하여 간납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간납'은 원래 간적肝炙의 남쪽에 놓인다는 뜻의 '간남'에서 유래하였으며, 이후 간납·간랍·갈랍·전유어 등으로 불리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이후에는 전류나 적류 등의 제수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내용 간납은 육류·어패류·채소류 등을 각각 작게 잘라서 쓰거나 꼬챙이로 꿰어서,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을 입힌 다음 기름에 부쳐 지져낸 음식으로서, 제수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고기로 만들면 육간납, 생선으로 만들면 어간납이라 하고, 여러 간납을 통틀어서 각색 간납이라 한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생선 전유어 등 30여 가지 이상의 간납 조리법이 나오며, 『조선요리법』에는 꼬챙이에 꿰어서 만드는 적류도 간납에 포함하고 있다. 제수로서 간납의 진설법이나, 제기에 담는 법, 올리는 순서 등은 각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간납은 주로 제상의 제3열에 놓으며, 어동육서魚東肉西 원칙에 따라 생선전은 동쪽에, 고기전은 서쪽에 놓는다. 그러나 도산서원 소장 「묘사의절」에는 제사상의 오른쪽에 '우간남'으로 육간납, '좌간남'으로 어간납을 놓는다고 한다. 또한, 제기에 담는 법도 차이가 있다. 서울 반가음식 특성을 갖는 맹현가에서는 생선·간·소고기로 만든 3간납을 쓰는데, 간전을 맨 아래 놓고 그 위에 생선전, 육전의 순서로 고여 쌓지만, 경상남도의 정여창 종가에서는 맨 아래 육전을 놓고 어전, 소전 순서로 3간납을 차례로 고여 쌓는다. 경

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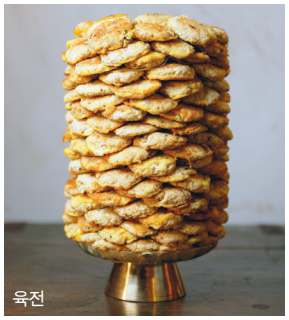
육전

간납 | 충남 논산 사계 김장생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상북도 안동 정재 유씨 종가에서는 두 가지 간납을 준비하여 제사상에 미리 진설하는 대신, 초헌初獻에 어간납, 아헌亞獻과 종헌終獻 때 육간납을 올린다. 맹현가에서는 제례 후 음복 시 간납을 웃기로 사용한다.

특징 및 의의 민간에서는 제삿날에 간납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집안에 풍겨야 비로소 조상이 알고 오신다고 말할 정도로, 간납은 제사를 지낼 때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음식이었다.

참고문헌 名物紀略, 星湖僿說, 서울의 전통음식(이귀주,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안동지역의 불천위제례와 제수(윤숙경,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11-2, 한국식생활학회, 1996), 종가의 제례와 음식9(국립문화재연구소, 월인, 2006), 한국요리문화사(이성우, 교문사, 1985).

필자 정현미(鄭賢美)

감모여재도
感慕如在圖

정의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붙이도록 마련한 사당을 그린 그림.

역사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는 기록이 없어 그 역사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브루클린 미술관(Brooklyn Museum) 소장 〈감모여재도〉에 1811년(가경嘉慶 16 신미년辛未年) 6월 동향각東香閣에서 그렸다는 화기畫記가 있어 참고로 삼을만하다. 종이에 채색으로 그린 이 그림은 지방 자리를 연좌대로 만들고, 불교식 위패를 그리는 등 불교식 색채가 강한 감모여재도이다. 이로 보아 감모여재도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그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감모여재도의 등장 배경은 첫째, 유교식 제사의 실천이다. 이는 성리학에 기초한 제도와 의례체계를 확립하려는 조선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유교식 의례 확립을 위해 유교식 제사와 상례를 강조하고 사당 건립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1402년(태종 2)에 도성 안에는 대지가 좁아 사당 건립이 어려우므로 궤에 신주神主를 보관하게 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공아公衙의 동쪽에 임시 사당을 지어 적장자는 신주를 모시고 가도록 하며, 그 외는 지방紙榜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를 어기면 파직한 연후에 계문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1427년(세종 9)까지도 사당 건립이 지지부진하자 1430년(세종 12)까지 신분에 따라 기한을 달리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신주를 모시도록 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1555년(명종 10)에도 사당을 세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를 엄히 단속할 정도로 사당 건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 유교식 의례가 일반화하면서 사당 건립도 자연스러워지고, 18세기 중반이면 사대봉사가 일반화할 정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으로서는 여전히 경제 사정으로 사당을 건립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사당을 지어 신주를 모시는 사대부들은 이미 세거지를 형성하고 있어 임지로 떠나더라도 1년도 채 안 되는 부임 기간을 위해 신주와 사당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감모여재도였다. 따라서 감모여재도는 조선 후기에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불교의 영향이다. 브루클린 미술관 소장 〈감모여재도〉에서 보듯 민간의 불교의식을 위해 감모여재도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감모여재도〉는 민간인을 위한 천도재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조선 후기 귀족 불교가 민간불교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신흥사新興寺에서 보급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문자도 목판은 사찰이 서민들을 위해 유교 교화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유교제사를 위해 유교와 불교가 융화된 감모여재도를 그

렸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유교식 제사가 강조되면서 유교 덕목, 선비정신을 강조하는 감모여재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내용 감모여재도는 사당을 그린 그림이어서 사당도祠堂圖라고도 한다. 그러나 '감모여재도'라는 화제畫題가 이 그림의 대명사가 되었다. 감모여재란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실제 모습이 나타난 것과 같다."라는 의미이다.

감모여재도는 형태상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족자형으로 사당 그림을 벽 등에 걸어서 사용한다. 둘째는 병풍형으로 제상 뒤에 둘러치는 형태이다. 셋째는 세폭병풍(가리개)형으로 신주 뒤를 가리는 신주 병풍 혹은 지방틀형도 있다. 그림으로 본 분류는 첫째, 커다란 교의交椅를 그린 교의형이다. 둘째, 사당 건물과 지방 붙이는 자리를 강조한 사당형이다. 셋째, 사당 그림 앞에 제물을 차린 제상을 설치한 제상형이다. 넷째, 지방 자리가 하나인 단설형과 둘인 합설형이다.

감모여재도 도상은 여러 종교와 사상적 의미가 복합되어 있다. 첫째, 연좌대蓮座臺, 불교식 전패殿牌 등에 지방 붙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불교의례를 모방했다. 둘째, 사당에 담장을 두르고 사당 건물 처마에 휘장을 치거나 주위에 고목을 배치하여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든 것은 유교식 사당을 그린 것이다. 셋째, 청대에 유행한 선세도先世圖나 집안 역대 선조를 그린 가당도家堂圖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조종화는 삼대봉사이고 고위考位와 비위妣位의 위치가 『가례家禮』의 규정과 반대여서 초상화에 가깝다.

이 외에 제주도 〈문자도文字圖〉는 효제충신예의염치孝悌忠信禮儀廉恥 여덟 글자 중 충신과 예의 폭의 상단에 사당을 상징하는 선사루先思樓, 향연루香煙樓 등 현판의 건물이 있고, 아래쪽에는 제사상을 상징하는 고팡상이 있어 제사 때 사용하는 병풍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경 유배자流配者가 유교식 제사를 전파하였는데, 자식의 분가 때 부모는 반드시 이 병풍을 살림살이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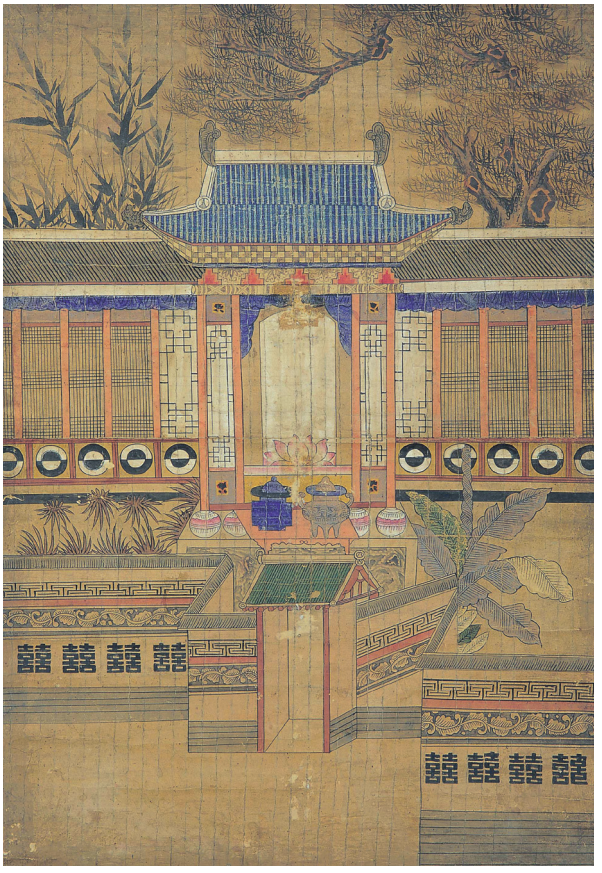

감모여재도 | 국립민속박물관

감모여재도는 다양한 화재畫材가 그림의 의미와 상징을 풍부하게 한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사당 건물이 등장한다. 한국의 신성 건물이 대부분 맞배지붕인 것에 비해, 감모여재도의 지붕 모양은 중국풍 팔작지붕, 일본식 신성건물의 지붕 모양도 있다. 건물의 크기는 예서의 규정처럼 세 칸이나, 정자각형丁字閣形, 2층 누각형도 있다. 처마에 풍경風磬을 단 것도 많다. 그림의 화재로 사용한 사당을 신성건물로 표현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수목이 등장한다. 건물 뒤쪽에 그린 고송古松은 '수壽'자 형상인데, 이는 집안의 영속성을 상징한다. 또한, 소나무는 장수, 의리, 뇌를 파먹는 망상罔象이라는 해충 방지 등을 상징한다. 향나무를 그린 그림은 백수도柏壽圖로 장수를 상징하고, 좌우에 소나무와 함께 서 있는 오동나무는 봉황이 천 년에 한 번 앉는 나무로서 신성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수목은 장수하고 신성하였으므로, 사당 역시 신성하고 오래 영속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감모여재도에 등장한 것이다.

셋째, 다양한 꽃이 그려진다. 모란은 부귀영화, 연꽃은 불교·신선·군자청빈·다남, 국화·대나무·매화 등은 사군자로 선비정신, 불로초는 영구존속, 패랭이는 축수祝壽를 의미한다. 이는 집안의 영속성을 기원하려는 것이다. 넷째, 다양한 새도 그려진다. 학은 선비, 원앙은 다산, 메추라기는 자식 사랑, 팔가조는 부모 보은을 상징한다. 다섯째, 제구와 제물이 나온다. 제사 도구는 제상·향로·향탁·향합·촛대·술잔으로 유교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다. 제물은 통상적인 조율이시棗栗梨柿·포 등과는 전혀 다르다. 참외·수박·석류·포도 등이 주로 등장하는데, 이는 집안의 대를 잇는 다남多男을 기원하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판과 화제가 나온다. 영모당永慕堂이라는 현판 아래의 지방 자리에 적힌, 소리가 없어도 들린다는 청어무성聽於無聲, 형체가 없어도 보인다는 시어무형視於無形이라는 글귀는 조상에 대한 후손의 심정을 그대로 전해준다. 건물의 기둥에 원형이정元亨利貞·인의예지仁義禮智·충신효제忠信孝悌·수복강녕壽福康寧 등 유교 덕목을 주련柱聯으로 달아 유교식 사당도임을 강조한다. 누각 건물 2층의 혼유헌魂遊軒, 아래층의 상락당常樂堂이라는 현판은 이 그림이 조상신을 모시는 곳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감모여재도에는 신위를 중심으로 우주를 인식하는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뒤쪽을 넓게, 앞쪽을 좁게 그린 제상과 교의 그림에 대해 서양화 기법을 동원하여 역원근법이라 해석하였다. 그러나 감모여재도가 사당 그림으로서, 신위인 지방을 붙이는 장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위를 우주의 중심으로 인식하여 모든 사물을 그렸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정침시제지도正寢時祭之圖'에서 신주는 바로 쓰고, 제물과 참여자를 거꾸로 쓴 것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신위의 자리에서 내려다보았기에 당연히 신위 쪽이 넓고, 그 앞쪽이 좁을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원근법이 적용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감모여재도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그림, 즉 일종의 종교화宗教畫로서 다양한 의미와 상징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집안의 영속성을 기원한다. 둘째, 집안의 부귀영화를 기원한다. 셋째, 사당의 신성성을 강조한다. 넷째, 유교 덕목을 실천하는 선비 집안임을 상징한다. 다섯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상징한다. 이처럼 감모여재도는 유교가 종교임을 스스로 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더라도 유교가 종교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사라는 의례를 강조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속에서 유교와 불교의 융화 관계를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감모여재도 연구(이상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조선시대 감모여재도 연구(지은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유교식 제사 실천을 위한 감모여재도(김시덕, 종교와 그림, 2008), 조선 민화에 끼친 유교의 영향(정병모,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2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필자 김시덕(金時德)

감실
龕室

정의 신상神像이나 초월적 존재의 신체神體를 모셔두는 신성한 공간이자 시설.

역사 유교에서 감실龕室은 기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신주를 주독主櫝에 넣어서 모셔두는 목제 시설이다. 원래 감실은 불교에서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만든 작은 공간이었는데, 유교·불교·도교 등의 종교에서도 상징적인 물체나 신상을 만들어서 안치해 두는 공간을 감실이라 한다.

당대唐代 이전에는 종묘의 신주를 벽에다 보관하였는데, 송宋나라에서 신주를 보관하기 위해 감실과 같이 만들었다.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이를 받아들여 "사당 안에 조상의 신주를 봉안해 두는 공간으로, 하나의 도리에 네 개의 감실을 만들고 감실마다 탁자를 두어 서쪽에서부터 고조·증조·조부·아버지 순으로 신주를 모신다. 신주는 주독 속에 보관하여 탁자 위에 놓고 남향한다. 감실 바깥에는 각각 작은 발을 드리우고, 발 바깥에는 향탁香卓을 당堂 가운데 설치하여 향로와 향합香盒을 그 위에 놓는다."라고 하였다.

『주자가례』에는 구체적인 감실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는 〈사당감실지도祠堂龕室之圖〉가 나온다. 이를 보면 당에 설치한다는 향탁만 제시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주자가례』의 감실 구조 그대로인데, 사실상 감실은 전면에 발이 드리워진 하나의 방이나 마찬가지이다.

내용 유교에서 감실은 일반적으로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주독을 안치하는 사당 내 공간이자 시설이다. 물론 사당이 없는 상태에서도 감실을 설치하여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예가 많다. 우리나라 감실의 형태로는 『주자가례』의 감실구조와 『가례집람』의 〈사당감실지도〉를 따르는 방형房形 감실, 『주자가례』에서 설명한 감실 구조를 한국화한 벽장형 감실, 『주자가례』에서 사당의 형태로 설명한, 맞배지붕으로 된 사당형 감실, 기단 위에 보전寶殿을 앉힌 고급스러운 보전형 감실, 팔작지붕의 목조가옥 형태를 취한 가옥형 감실, 격자문살의 문과 안상문眼象紋이 조각된 기본 형태인 상자형 감실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고식古式에 해당하는 것은 방형 감실과 벽장형 감실이라 판단된다.

감실의 규모는 봉사하는 대수代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불천위不遷位와 4대조를 모시기 위한 다섯 칸 형태의 감실, 그리고 4대조를 모시기 위한 네 칸 형태의 감실이 어느 정도 일반적이다. 불천위만을 모시기 위한 한 칸 형태의 감실, 그 밖에 불천위와 다른 조상을 함께 모시는 두 칸 형태 감실도 있다. 감실의 문은 일반적으로 창살문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창호지로 발라둔다. 감실에 신주와 주독을 모실 때, 서쪽에 윗대 조상을 모시고 동쪽에 아랫대 조상을 모신다. 사후세계에서는 동쪽보다 서쪽이 더 우위라는 인식에 기초하는 현상이다.

사당이 없는 경우에도 감실을 설치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사당 건립이 어렵거나 감실 혹은 신주를 소실하여 새로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는 후손들이 사는 살림채의 대청이나 사랑방의 한쪽에 감실을 설치한다. 이처럼 사당 없이 벽에 설치한 감실을 '벽감壁龕'이라고 한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의 임연재臨淵齋 배삼익裵三益(1534~1588) 종가[琴易堂]에서는 한 채의 사당 북쪽 벽면으로 총 다섯 개의 문이 달린 벽장형 감실을 길게 만들었는데, 그 내부는 칸막이 없이 모두 하나의 칸으로 되어 있다. 이 감실의 가장 서쪽에 불천위를 모시고, 이어서 그 동쪽에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의 순서로 4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 영덕 창수면 인량리에 있는 재령 이씨 운악 이함李涵(1554~1632) 종가 충효당忠孝堂에서는 하나의 사당에 불천위 조상과 4대 조상을 함께 모시는데, 역시 서쪽 끝에 불천위를 모시면서 간이벽[隔板]을 만들어 구획하고 있지만 감실이 없다. 불천위는 교의交椅 위에 주독을 올리고, 그 나머지는 탁자(제상) 위에 주독을 올려두고 있다. 대전광역시 송촌동의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1606~1672) 종가에서는 탁자 뒤쪽으로 교의를 놓고 그 위에 상자형 감실을 올려두었으며, 탁자 밖으로는 발을 치고 그 앞에 향탁을 놓았다.

한편, 사당은 없더라도 사당방을 마련하여 감실을 모시거나, 건물의 일정 지점에 독립된 벽감을 설치하기도 한다. 경기도 여주 해평 윤씨가에서는 사당방을 마련하여 전면이 터진 벽장과 같은 시설을 하고, 세대별로 조상의 신주를 모신 감실을 그 속에 넣어 둔다. 경북 영덕에 있는 강파江波 권상임權尙任(1622~1700) 종가에서는 사랑방 머리에 벽장형 감실을 만들고 불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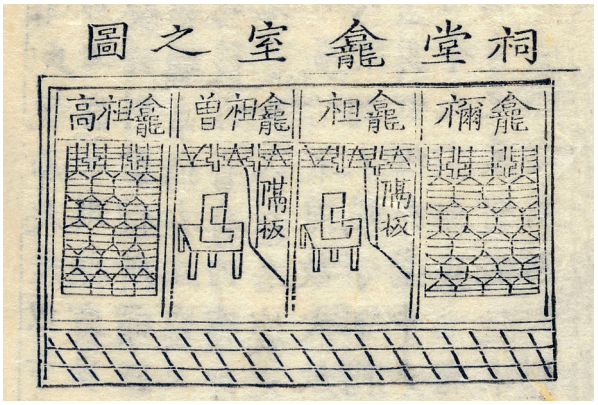

사당감실지도 | 가례증해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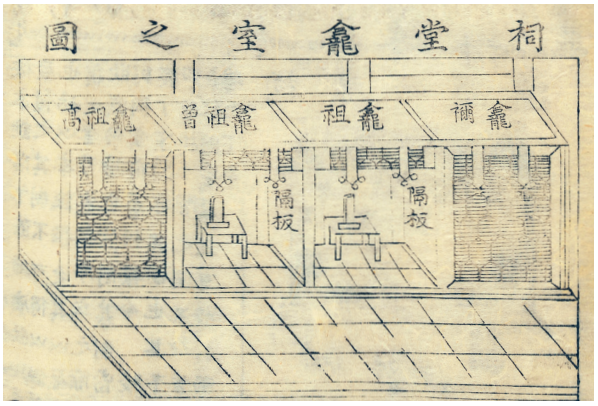

사당감실지도 | 가례집람 | 국립민속박물관

사당 안의 감실 | 경북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감실 | 19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감실장 | 국립민속박물관

사당 없이 대청에 설치한 벽감

벽감 안의 주독

벽감 | 경북 안동 하회마을 지산 고택 | 2011 | 배영동

와 4대조를 모신다. 경기도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 종가에서는 아파트 서재 벽에 한 칸짜리 감실을 설치하고 이이의 신주를 모시는데, 감실 앞에는 발 대신 커튼 모양의 앙장仰帳을 둘렀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 지산芝山 류지영柳芝榮(1828~1896)의 고택에서는 사랑대청 한쪽에 두 칸 형태의 벽감을 설치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감실은 사당·신주와 함께 조선시대 조상제사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신주를 모신 주독을 보관하는 공간이자 시설이다. 주독에 넣은 신주를 다시 감실에 보관하여 모신다는 점에서 신주의 중요성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조상신의 성향이 얼마나 조용하고 안온한 곳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상을 모시는 감실의 규모와 형태를 통해서 가문의 위상과 경제적 규모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감실과 주독에 대한 고찰(최순권, 생활문물연구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조선시대 유교 감실의 수용과 변용(박종민, 문화재4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종가의 사당을 통해 본 조상관(배영동, 한국민속학39, 한국민속학회, 2004),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주자가례에 나타난 사당의 구조에 관한 연구(장철수, 한국의 사회와 문화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의 사당제도에 대하여(김시황, 동양예학2, 동양예학회, 1999),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배영동(裵永東)

강복
降服

정의 규정한 복服보다 한 등급 더 낮추어 입는 상복제도.

내용 양자로 간 아들이나 출가한 딸이 자기 생가生家의 부모나 형제, 친정의 부모나 형제가 사망했을 때, 이 복제에 따라 한 등급 더 낮추어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강복에 따라 상복을 입는 친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강재최부장기降齊衰不杖朞(강복하여 재최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지 않고 1년복): 양자로 간 아들, 며느리, 출가한 딸이 상을 당했을 때 입는다.
②강대공구월降大功九月(강복하여 9월): 양자로 간 손자, 양자로 간 아들의 아들, 양자로 간 아들의 출가하지 않은 딸, 양자로 간 형제 및 본생가의 형제가 상을 당했을 때 입는다.
③강소공오월降小功五月(강복하여 5월): 양자로 간 손부, 양자로 간 질부 및 본생가 질부, 양자로 간 아들의 시집간 딸이 상을 당했을 때 입는다.
④강시삼월降緦三月(강복하여 시마 3월): 양자로 간 아들의 손녀, 출가한 종손녀, 종질로서 양자로 간 사람 및 본생가의 종질, 출가한 종질녀가 상을 당했을 때 입는다.

특징 및 의의 양자를 갔거나 출가한 여자에게는 한 등급 강복한다. 촌수가 1촌씩 멀어졌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朱子家禮, 상례 오복제도 연구(김시황, 퇴계학과 유교문화22,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필자 김시황(金時晃)

강신
降神

정의 혼령魂靈을 모시기 위하여 향을 피우고 술을 잔에 따라 모사茅沙 위에 붓는 제사의 한 절차.

역사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분향 후에 재배하는 규정이 없다.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분향 후 재배하는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 사시제四時祭 강신降神 조에서는 '강신'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주인이 분향재배하고, 조금 물러나 선다. 집사 한 사람이 술병을 열어 수건으로 술병 위를 닦고, 술[玄酒]을 주전자에 붓는다. 한 사람은 동쪽 층계의 탁자 위에 놓인 잔대를 받든 채 주인의 왼쪽에 서고, 한 사람은 주인의 오른편에 서서 주전자를 잡는다. 주인이 꿇어앉으면 잔대를 받든 이도 꿇어앉는다. 잔대를 주면 주인이 받고, 주전자를 가진 이도 꿇어앉아 잔에 다 술을 따른다. 주인은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茅沙에 붓는다. 그런 다음 잔대를 집사에게 주고 구부리고 일어나 재배하고 내려와 자리로 간다.

분향

재배

뇌주

강신 | 경북 고령 점필재 김종직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신령神靈을 강림하게 하는 의식이다. 처음 잔을 올리기 전에 신이 내려오도록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모사 위에 붓는다. 주인이 분향하고 잔에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거나 석상 아래 땅에 붓고서 강신재배한다. 주인이 앞으로 나아가 분향하고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선다. 집사 한 사람이 강신 잔반(잔과 잔대)을 집어서 주인의 왼쪽에 서고, 또 한 사람이 주전자를 잡고 오른쪽에 선다. 주인이 꿇어앉으면 잔반을 잡은 자도 꿇어앉아 잔반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이를 받으면, 주전자를 잡은 자도 꿇어앉아 잔에 술을 따른다. 주인은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그릇에 세 번 기울여 붓는다. 그런 다음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선다.

하늘과 땅에서 조상의 혼백을 인도하는 의식이 강신降神이다. 주인이 신위전에 나아가 하늘에서 혼魂(양기)을 모시기 위해 향을 사른다. 즉, 향을 향로에 태워 그 연기를 통해 하늘로부터 혼을 인도하는 것이다. 『상례비요』에는 사당에서 참례할 때 분향하고서 분향재배한다고 하여, 기제사에도 분향재배를 한다. 이를 준행하는 사계沙溪 종가, 우암尤庵 종가 등 기호 지역에서는 분향 후에도 분향재배한다.

하늘의 혼에 이어서, 땅에서 백魄(음기)을 모시기 위해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는다. 즉, 띠풀과 모래를 담고 있어 땅을 상징하는 모사기에 술을 부음으로써 땅의 백을 인도하는 것이다. 모사기에 띠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주례周禮』의 주석에서는 "그 몸체는 순하며, 결이 곧고 부드러우며 깨끗하니, 제사를 받드는 덕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우암 송시열宋時烈은 "띠를 붉은색으로 묶는 이유는 그 문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이고, 모래를 담은 이유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인은 하늘과 땅에서 혼백이 모두 오셨다고 하여 강신재배한다. 퇴계退溪 종가, 서애西厓 종가 등 영남지역에서는 『주자가례』를 따라 분향과 뇌주酹酒 후에 강신재배한다.

특징 및 의의 초헌 전에 하늘에서 혼魂을 모시려고 분향하고 땅에서 백魄을 모시려고 뇌주를 하는 것으로, 제사에 조상의 혼백을 모시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의식이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개영역
開塋域

정의 관을 매장할 무덤 자리를 파내서 광壙을 조성하는 작업.

내용 영역塋域은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마련한 구역으로, 묘역墓域이라고도 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기일 전에 장사지낼 만한 땅을 고른다."라고 하였다. 즉, 주자는 무덤 자리의 좋고 나쁨을 점치는 풍수지리설을 수용했던 것이다. 정자程子가 '흙빛이 윤기가 나고 초목이 무성한 곳'이 좋은 땅이라 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손자는 기운이 같으니, 저쪽이 편안하면 이쪽도 평안하고 저쪽이 위태로우면 이쪽도 위태로운 것이 역시 그 이치이다."라고 하여,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을 인정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정부에서는 『주자가례』에 근거한 예제의 시행을 교화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서운관書雲觀에 풍수학을 두어 적극적으로 풍수지리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흉례凶禮」의 치장조治葬條에서도 기일 전에 예조의 당상관堂上官과 풍수학제조風水學提調가 서운관 관원을 거느리고 땅의 장사지낼 만한 곳을 가린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조선 이전부터 내려온 관습의 영향으로 조선사회에서는 길흉吉凶을 점쳐 땅을 정하는 일이 유행하였다.

무덤 자리를 파는 날은 길일吉日을 점쳐서 정하였다. 정해진 길일이 되면, 주인은 아침에 곡哭하고 나서 집사를 거느리고 구해 놓은 땅으로 간다. 지관地官이 혈 자리의 좌향坐向과 사표四標를 표시해둔 곳을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 인부들이 무덤을 파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방식이 있다. 사방 네 귀퉁이의 흙은 바깥쪽으로 파내고, 가운데 흙은 남쪽으로 파낸다. 즉, 장사지낼 때 시신의 머리를 북쪽에 두므로 흙을 발이 놓이는 위치로 퍼낸다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각각 푯말을 하나씩 세운다. 남쪽 문에 해당하는 곳에는 푯말 두 개를 세운다. 이것은 정혈正穴을 표시하고 무덤의 좌향坐向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혈穴 자리와 좌향을 정하면, 이 사실을 후토신后土神에게 고유告由해야 한다. 고유는 주인을 대신하여 먼 친척이나 손님 한 사람을 택하여 행했다. 먼 친척 등으로 정하는 이유는, 복이 없는 사람을 아뢰는 자로 택해야만 길복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기집설禮記集說』에서도 빈우를 택하여 제사를 주관하고 효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흉복으로 신령과 교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진설 절차는 축祝이 집사를 이끌고 중간 푯말의 왼쪽에 남향하여 신위를 설치한다. 잔, 주전자, 술, 과일, 포, 해를 그 앞에 차리고, 대야와 수건을 두 개씩 동남쪽에 놓는다. 동쪽의 받침대가 있는 대야에는 아뢰는 사람이 손을 씻고, 서쪽의 받침대가 없는 대야에는 집사가 손을 씻는다.

진설을 마치면, 아뢰는 사람은 길복을 입고 신위 앞에 서서 북향한다. 집사는 그 뒤에 서는데, 동쪽을 윗자리로 한다. 모두 재배한다. 아뢰는 사람과 집사는 모두 손을 씻는다. 집사 한 사람은 주전자를 들고 서향하여 무릎 꿇고, 한 사람은 술잔을 들고서 동향하여 무릎 꿇는다. 아뢰는 사람은 술을 따르고 나서 주전자를 돌려주고 잔을 들어 신위 앞에 강신降神을 한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선다. 축이 축판을 들고 아뢰는 사람의 왼쪽에 서서 동향하여 무릎 꿇고 읽는다. "모년 아무 해 아무 달 초하루에 아들 모관 아무개가 감히 후토신에게 아룁니다. 지금 모관 아무개를 위해 무덤을 영건하오니, 신께서는 보우하셔서 훗날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삼가 맑은 술과 포·해를 공경히 신령

개영역 | 국립민속박물관

개영역 | 경남 창녕 | 1993 | 국립민속박물관

께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은 붕괴 같은 뜻밖의 일을 가리킨다. 마치면, 자리로 돌아간다. 아뢰는 사람이 재배하면, 축과 집사도 모두 재배한다. 철상撤床하여 내간다. 주인은 돌아가서 영좌靈座 앞에서 곡하고 재배한다.

특징 및 의의 조선사회에서 풍수지리설은 매우 유행하였다. 조선 이전에 전래한 도참사상圖讖思想과 함께 정자와 주자가 풍수지리설을 수용한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갱기
羹器

정의 제례 때 제물인 국을 담는 그릇.

내용 국은 한자로 '갱羹'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국을 담는 제기를 '갱기羹器'라고 한다. 자료에서 '메탕'이라는 용어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국의 높임말이라고 되어 있다. 제사에 쓰는 밥을 높여 '메'라고 부르니, '메탕' 또는 '갱'은 제사에 쓰는 국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갱기는 제사상에 국을 담아 올리는 그릇으로,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두 사용한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 은대접·놋대접·사기대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윗부분은 넓적하고 아래는 평평하며 운두(그릇이나 신 따위의 둘레나 둘레의 높이)가 낮다.

갱기 | 국립민속박물관

갱기는 사기沙器, 유기鍮器, 목기木器의 순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갱기 대신 물(숭늉)이나 국을 담는 그릇인 대접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갱기에 담는 국은 일상식의 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서禮書를 보면, 원래 고깃국을 담았지만 콩나물국을 담는 경우도 많았다.

특징 및 의의 제사에서 밥과 짝을 이루는 국을 담는 그릇이다.

참고문헌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권삼문(權三文)

갱물

정의 제례 때 계문啓門 후 차 대신에 신위神位에게 올리는 물.

내용 갱물의 유래는 밥과 갱이 한 조가 되는 식생활을 했던 『의례儀禮』나 『예기禮記』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기』「내칙內則」에서는 "식食과 갱羹(국)은 제후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같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식'이란 밥을 뜻하며 밥을 먹을 때에는 국이 반드시 따라다녔다는 이야기로, 식의 기본은 밥과 국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 말이다.

밥과 국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더 구차한 생활이 되면 밥과 물만 먹는다. 『논어論語』에서는 "현명하구나, 안회顔回여.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을 먹으며 누추한 곳에서 머물고 있으면, 남들은 그 괴로움을 참을 수 없을 텐데, 안회는 변함없이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말과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꿈치를 구부려 베개로 삼아도, 즐거움은 그 안에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밥과 물만으로 식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밥상 차림이지만, 군자는 욕심 없는 삶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물은 갱을 대신한 것이다.

갱물 | 경북 영덕 갈암 이현일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어찌 되었든 밥과 물만 먹는다는 것은 가장 검소한 식사이기 때문에, 『예기』「상대기喪大記」에서는 "매장이 끝나고 나서 상주喪主는 조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경우는 가난해서 밥에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진精進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이 갱을 대신한 것이다. 갱물의 원래 의미는 바로 갱을 대신한 물이다.

그런데 제례에서 올리는 갱물은 이상에서 언급한 국의 대용만이 아니고, 차茶의 성격도 있다. 12세기 남송南宋의 유학자 주희朱熹(1130~1200)가 쓴 『주자가례朱子家禮』는 불교에 대항해서 예의범절을 완성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관념禮觀念을 종합한 것이지만, 이 책이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는 이미 중국인의 정신생활 속에 충분히 흡수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불교적 생활이 몸에 배어있었으며, 주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주희는 불교문화의 산물인 진다進茶를 채택하여 제례의례에 포함하였다.

조선왕조가 채택한 『주자가례』를 기반으로 한 예치주의는 조선사회에 널리 보급되었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사시제四時祭」를 예로 들면, 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진다進茶·수조受胙·사신辭神·납주納主·철상撤床·준餕(음복)으로 제례의례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진다 부분에서는 물로 차를 대신한다고 하였다.

현재 경상북도 안동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 집안에서 행하는 기신제忌晨祭에서도 계문 후에 진행되는 진다에서 차 대신에 숭늉(물)을 올린다. 집사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숭늉을 올리는데, 숭늉의 의미로서 물에 밥을 세 번 떠서 말고 숟가락을 그릇에 걸쳐 놓은 후 숭늉 드시는 동안 잠시 국궁鞠躬하였다가 평신平身한다. 식사가 모두 끝나면 수저를 내리고 메(밥) 뚜껑을 닫는다.

특징 및 의의 차 대신에 올리는 숭늉은 차 대용이 아니라 갱 대용에 가깝다. 숭늉에 밥을 말기 때문이다. 즉, 진다 형식으로 올린 숭늉은 음료가 아니라 갱물의 성격에 가깝다. 밥과 숭늉을 함께 먹는 역사는 음다飮茶 풍습이 없어진 조선왕조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밥 먹고 숭늉 안 먹은 것 같다", "숭늉은 아랫목같이 따끈해야 하고, 찌개는 부뚜막같이 뜨거워야 한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와 같은 속담이 생겼다.

참고문헌 論語, 禮記, 儀禮, 朱子家禮, 增補四禮便覽,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6), 조선시대의 음식문화(김상보, 가람기획, 2006), 종가의 제례와 음식8-서애 류성룡 종가의 제사(국립문화재연구소, 월인, 2005).

필자 김상보(金尙寶)

건전가정의례준칙
健全家庭儀禮準則

정의 1999년 8월 31일,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가정의례에 대한 준칙.

내용 1973년부터 개정·시행해 오던 「가정의례준칙」의 벌칙조항이 실생활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99년에 기존의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령이다. 이후 2008년에 한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령은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

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조장함으로써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정 목적을 적시하고 있다.

이 법령이 기존의 「가정의례준칙」과 달라진 내용은 '성년례成年禮'를 새로운 항목으로 포함시켰고, '회갑연回甲宴' 항목을 '수연례壽宴禮'로 바꾸어 회갑연과 고희연古稀宴 등으로 그 범주를 넓힌 점이다. 그리고 '연시제年始祭'를 없애고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 속에 포함시켰으며 제사를 지내는 시각에 대한 규정도 없앰으로써, 음력설을 명절로 인정하고 통행금지가 해제된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격몽요결
擊蒙要訣

정의 조선 중기에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가 초학자를 위하여 초등과정의 교재로 개발한 유교적 수신서修身書.

내용 2권 1책의 인본印本이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1577년(선조 10) 이이가 유교적 덕행과 지식의 함양을 위한 초등과정의 교재로 개발한 것이다. 중국의 『소학小學』과 같은 책으로, 초학자가 『천자문千字文』·『동몽선습童蒙先習』·『훈몽자회訓蒙字會』에 이어 읽는 책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근세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이는 "해주의 은병정사隱屛精舍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향방을 정하지 못하여 굳은 뜻이 없는 초학初學의 제자들에게 뜻을 세우고 몸을 삼가며, 부모를 봉양하고 남을 접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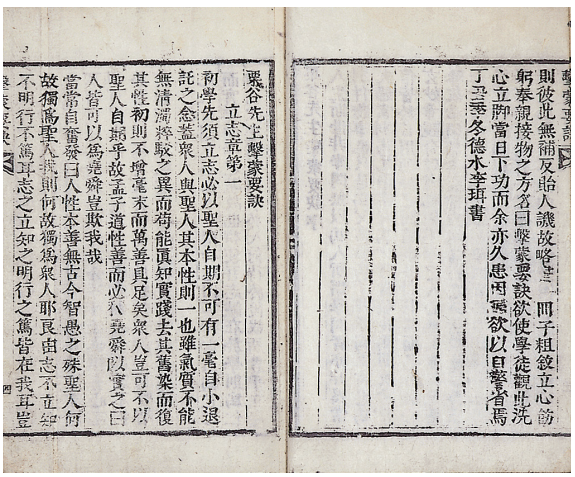
擊蒙要訣
栗谷先生擊蒙要訣
立志章第一
初學先須立志必以聖人自期不可有一毫自小退
託之念蓋衆人與聖人其本性則一也雖氣質不能
無清濁粹駁之異而苟能眞知實踐去其舊染而復
其性初則不增毫末而萬善具足矣衆人豈可不以
聖人自期乎故孟子道性善而必以堯舜以實之曰
人皆可以爲堯舜豈欺我哉
當常自奮發曰人性本善無古今智愚之殊聖人何
故獨爲聖人我則何故獨爲衆人耶良由志不立知
不明行不篤耳志之立知之明行之篤皆在我耳豈
則彼此無補反貽人譏故略述一冊子粗敍立心飭
躬奉親接物之方名曰擊蒙要訣欲使學徒觀此洗
心立脚當日下功而余亦久患困惡欲以自警省焉
丁丑季冬德水李珥書

격몽요결 | 국립민속박물관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본문은 입지立志·혁구습革舊習·지신持身·독서讀書·사친事親·상제喪制·제례祭禮·거가居家·접인接人·처세處世 등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는 사당도祠堂圖·시제도時祭圖·설찬도設饌圖와 제의祭儀의 출입의出入儀·참례의參禮儀·천헌의薦獻儀·고사의古事儀·시제의時祭儀·기제의忌祭儀·묘제의墓祭儀·상복중행제의喪服中行祭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상제喪制·제례祭禮와 책의 말미에 실린 각종 의식 예절, 그리고 부록의 『제의초祭儀抄』 등이 율곡의 예설을 담은 내용이다.

이 책은 주자의 『소학』(내편內篇 4권, 외편外篇 2권의 전 6권으로 구성됨)과 견줄 수 있는, 초학자를 위한 유교적 수신서이다. 1187년 문인 유자징劉子澄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소학』이 중국의 정서와 학풍을 반영한 데에 견주어, 율곡의 『격몽요결』은 조선의 시각으로 조선의 정서와 학풍에 맞게 초학자들을 위한 내용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자주적 특색이 돋보인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견전
遣奠

정의 발인發靷 당일 새벽에 상여를 떠나보내며 작별하고자 올리는 전제奠祭.

내용 견전遣奠은 발인 당일 상여가 출발하기 직전에 행하는 절차이다. 새벽이 되면, 청사에 모신 영구를 상여로 옮기고 유택幽宅으로 떠나가는 영구를 작별하는 전

견전 | 경남 김해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제를 드리는 절차가 견전이다. 『가례집설家禮集說』에서도 "장차 유택으로 가니, 전제를 올려서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장차 전제를 올릴 때 보자기에 생체牲體를 싸서 가니, 빈객을 전송하는 예를 사용하기 때문에 견전이라 한다."고 하였다.

견전은 영구를 상여에 실은 뒤 영좌를 그 앞으로 옮겨놓고 행하는 의절이기 때문에, 먼저 상여꾼은 큰 상여를 청사의 가운데뜰에 들여놓고 영구를 실을 수 있도록 기둥 위에 가로놓인 빗장을 빼낸다. 집사가 앞서 마친 조전祖奠을 거두면, 축祝은 북향하여 무릎 꿇고 "지금 영구를 상여로 옮깁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고한다. 그러고는 영좌를 옮겨 옆에 놓는데,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역부가 영구를 상여로 옮겨 싣고서 빗장을 하고 쐐기를 박고 새끼로 묶어 아주 단단하게 한다. 주인은 영구를 따르면서 곡하고 내려와 싣는 것을 살펴본다. 부인은 휘장 안에서 곡한다. 싣는 것이 끝나면, 축이 집사를 거느리고 영좌를 영구 앞으로 옮기되 남향이 되게 한다.

영구를 옮길 때에는 축이 역자役者를 지휘한다. 사마광司馬光은 "축이 잿물로 빤 석 자 정도의 베로 영구를 인도할 때 역자를 지휘한다."라고 하였다. 상여에 옮겨 싣기 전에 관을 털고 덮는 것에 대해 『의례儀禮』에서는 "상축商祝이 관을 터는 데는 공포功布를 쓰고, 덮는 데는 이금俟衾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주석에서는 "공포는 관 위의 먼지나 흙을 털어내는 것이다. 이俟는 시신을 말하니, 이금은 시신을 덮은 이불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공포로 관의 먼지나 흙을 닦아내고 구의柩衣를 덮는다. 공포는 대공大功의 굵은 베로 만든 일종의 건巾이다. 이금을 지금은 구의라고 한다. 유장劉璋의 주에서는 "공포는 곧 대공大功의 포를 방망이로 두드려서 잿물로 빤 것"이라 하였다.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또 "공포라는 것은 영구가 갈 때 낮추고 높이는 것을 절도 있게 하는 바, 공이라 이른 것은 사람의 공을 더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발인 때 상여꾼을 지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영구를 상여에 싣고 나면, 곧 견전을 차린다. 음식은 조전朝奠과 동일하게 채소와 과일, 포脯, 해醢 등을 차린다. 조전과 한 가지 다른 것은 포가 있다는 점이다. 부인은 참석하지 않는다. 견전례가 끝나면 집사가 포를 거두어서 보자기로 싸서 들고 가는 상 위에 놓는다.

견전을 치우면 축은 바로 영좌靈座의 혼백을 받들어서 영거靈車에 올리고 분향한다. 신주는 따로 상자에 담아서 혼백의 뒤에 놓는다. 이때 부인은 머리가리개를 하고 휘장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서 곡한다. 부인들이 영구를 따라가기가 불편할 듯하면 집 지키는 자를 따라 곡하며 사직해도 무방하다. 집을 지키는 자도 슬픔을 다하여 곡하며 사직하는데 재배하고 돌아간다. 존장은 절을 하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살던 곳을 떠나 먼 길을 가는, 사망한 조상에게 후손들이 음식을 차리고 작별을 고하는 절차이다. 살아생전에 먼 길을 떠나는 집안 어른을 배웅하는 예법과 직접 연결되는 의례이다.

참고문헌 家禮輯覽, 家禮集說, 喪禮備要, 儀禮,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결혼기념일
結婚記念日

정의 부부가 결혼한 날을 기념하여 해마다 축하하는 행사.

역사 결혼기념일은 주로 19세기 서구의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매년 결혼한 날에 축하예배를 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결혼 5주년, 15주년, 25주년, 50주

년, 60주년 정도를 축하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1주년,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45주년 등의 기념일이 생겨났으며, 최근에는 거의 해마다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금혼식金婚式과 결혼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60주년 회혼례回婚禮가 가장 성행하고 있다.

내용 부부가 결혼한 날을 축하하는 결혼기념일은 부부는 물론 가족들도 함께 축하를 해 주는 자리이다. 결혼 후 1년이 되어서 맞는 결혼 1주년은 지혼식紙婚式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부는 서로에게 종이로 된 선물을 나누어 준다. 예를 들어 책이나 그림 등을 선물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편지를 나누기도 한다. 연수가 쌓여 결혼 25주년인 은혼銀婚, 30주년인 진주혼眞珠婚, 35주년인 산호혼珊瑚婚, 40주년인 녹옥혼綠玉婚, 45주년인 홍옥혼紅玉婚, 50주년인 금혼金婚 등은 모두 보석의 이름이 붙었는데, 그때에는 이름에 맞는 보석을 선물하며 함께 살아온 것을 축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50주년인 금혼식과 결혼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회혼례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결혼해서 50년을 함께 산 것을 축하하는 금혼식은 25주년 기념일인 은혼식과 함께 대표적인 결혼기념일 행사이다. 금혼식 때는 결혼식에 참석했던 일가친지 및 지인을 불러 잔치를 하고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순금으로 된 물건이나 보석을 선물로 건넨다. 오늘날은 도별, 시별, 구청별로, 또는 노인회에서 '장수부부 금혼식'이라고 해서 해마다 한 번씩 잔치를 무료로 치러주고, 잔치 후에 관광 명승지 등을 유람하는 등의 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결혼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회혼례는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치르는데, 이는 유교를 신봉하던 전통사회에서 효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특징 및 의의 결혼기념일은 혼자가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한 세월을 기념하는 만큼,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축하해 주어야 하는 자리이며, 이들 부부가 해로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덕담과 함께 각 시기에 따른 선물을 하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매너와 이미지메이킹(최기종, 백산출판사, 2006), 지향가정의례(김득중, 중화서원, 2007).

필자 이향숙(李香淑)

경례유찬
經禮類纂

정의 조선시대 문신 미수眉叟 허목許穆(1595~1682)이 『예기禮記』, 『주례周禮』, 『의례儀禮』를 토대로 상례와 제례에 관한 본문과 주석을 모아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책.

내용 『경례유찬經禮類纂』은 허목이 상례와 제례에 관하여 집필한 예서로서, 모친의 상중에 집필을 시작하여 55세인 1649년(인조 27) 2월에 상례喪禮 부분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허목이 작성한 초고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조빙朝聘, 연사燕射, 순수巡狩, 정벌征伐, 학교學校, 양로養老부터 방국왕조邦國王朝 및 사대부의 예에 이르는 내용까지 총 10권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1882년(고종 19) 의령에서 처음 간행할 당시 책의 체재는 전체 5권 4책으로 정리되었다. 권1에서 권4까지는 상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고, 권5에는 제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구체적으로 권1에는 초종지례初終之禮 등 15항목, 권2에는 비흉사備凶事 등 25항목, 권3에는 계빈啓殯 등 23항목, 권4에는 적유상適有喪 등 15항목, 권5에는 장사掌事 1항목이 수록되었다.

허목은 『경례유찬』을 통해 『예기』, 『주례』, 『의례』로 대표되는 고례古禮를 기반으로 경전의 본문과 후대의 주석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다. 이렇듯 『경례유찬』은 기본적으로 고법을 따르되, 시대 상황이나 왕·제후·대부·서인 등 신분에 따른 예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효종의 죽음 이후 효종의 계모였던 장렬왕후莊烈王后의 복상 기간을 놓고 벌어진 논쟁에서 송시열宋時烈(1607~1689)을 위시한 서인 세력은 주자의 『가례家禮』에 따라 차남의 예법을 적용하여 복상 1년을 주장하였고, 허목을 위시한 남인 세력은 왕에게 사대부 집안에나 적용하는 예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들어 복상 3년을 주장하였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계녀서
戒女書

정의 조선시대 문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안동 권씨 가문에 출가하는 맏딸을 위해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한글로 적어 전해준 교훈서.

내용 『계녀서戒女書』는 우암 송시열이 한산 이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맏딸을 권유權惟에게 시집보내면서 반가의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각종 규범을 정리하여 전해준 책으로서, 한글로 기록된 자료이다. 현재까지 송시열이 작성한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고, 몇 군데 소장처에서 등사한 자료가 발굴되어 해당 자료 몇 종이 각각 영인 발간되었다. 이렇게 발굴된 자료들은 전래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글의 전체 체제는 크게, 글의 첫머리에 나오는 '전언前言 부분', 부모 섬기는 도리로부터 옛사람들의 선행 등을 다룬 20개 항목의 '본문 부분', 마지막으로 당부를 남긴 '발문跋文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본문에 수록된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부모 섬기는 도리라', '지아비 섬기는 도리라', '시부모 섬기는 도리라', '형제 화목하는 도리라', '친척을 화목하는 도리라', '자식 가르치는 도리라', '제사 받드는 도리라', '손 대접하는 도리라', '투기하지 말라는 도리라', '말씀을 조심하는 도리라', '재물 존절이 쓰는 도리라', '일 부지런히 하는 도리라', '병환 모시는 도리라', '의복·음식하는 도리라', '노비 부리는 도리라', '꾸이며 받는 도리라', '팔고 사는 도리라', '비수원하는 도리라', '중요로운 경계라', '옛사람 착한 행실이라'로 시작하는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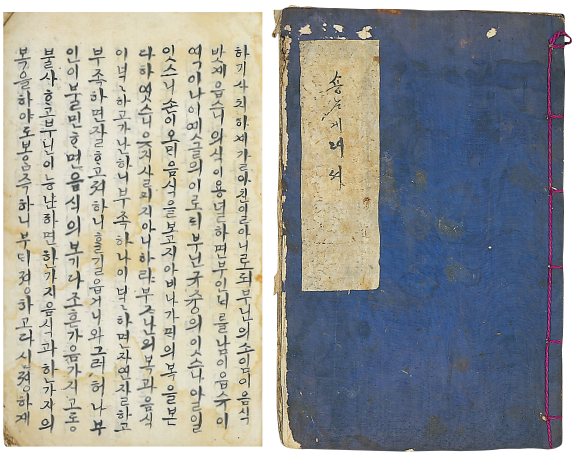

계녀서 | 191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듯이 송시열은 당시 남성들이 어려서부터 『소학小學』의 덕목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듯이, 출가하는 딸이 이 책을 늘 옆에 두면서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경계로 삼기를 원했다. 이렇듯 『계녀서』는 당시 소학으로 대변되는 유교적 윤리 및 처세관에 맞추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계례
笄禮

정의 혼례하기 전에 여자가 쪽을 찌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성년의례.

역사 부인婦人은 관冠을 쓰지 않고 단지 비녀로 쪽을 단단하게 할 뿐이므로 계례笄禮라고 한다. 또한, 남자의 성인식을 관례라고 하기 때문에 계례를 여자의 성인식이라 하여 '여자관례'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가례家禮』의 영향으로 남자는 '관례冠禮', 여자는 '계례'라는 성인식을 하였다. 여자는 15세 전후에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행하였는데, 혼례로 성인식을 대신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혼례 전에 행하였다.

『가례』에 따르면, 여자의 시집을 허락하면 계례를 하는데, 15세가 되면 시집을 가지 않았더라도 자기 집안의 제부諸婦들로 하여금 계례를 거행하게 하였다. 다만, 이때에는 비록 이미 계례를 올렸더라도 나이 어린 여자로 처신하였다. 여자가 15세에 계례를 행하는 것은, 여자는 음陰이고 15는 양陽이므로 15세에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또 달은 15일日에 둥글어지기 때문에 여자의 나이가 이 수에 이르면 계례笄禮를 올리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례가 실제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계례는 남자의 관례만큼 보편화되지는 않았으며, 관례와 달리 혼례 속에 흡수되어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권상하權尙夏(1641~1721)의 『한수재선생문집寒水齋先生文集』에서는 계례를 행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였고, 이세구李世龜(1646~1700)의 『양와집養窩集』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계례는 행하지 않아 이미 풍속이 되었고, 혹 고례에 의해 계례를 행하더라도 혼례가 임박했을 때 계례를 한다."라고 하였다. 즉, 혼인 전날에 댕기머리를 풀고 머리를 땋아 틀어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식으로 계례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윤봉구尹鳳九(1683~1767)의 『병계선생집屛溪先生集』에서는 "지금 풍속에 혼례가 지난 후에 반드시 혼가에서 머리를 올려주기를 기다린다."라고 하였고, 『금곡선생문집錦谷先生文集』에서는 "근세에는 각 집안마다 달리 하여 우귀于歸 뒤에 시가[舅家]에서 관례를 행한다."라고 하였으며, 송래희宋來熙(1791~1867)의 『성재선생문집省齋先生文集』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례적으로 신부가 시부모를 뵙는 다음 날에 머리 장식을 올리고, 이를 관례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해응成海應(1760~1839)의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에서는 "지금의 풍속을 보면 딸이 시집을 간 이후에 비로소 신랑 집으로부터 계례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혼례 후에 비로소 비녀를 꽂거나 화관 등을 쓰는 계·관례를 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계례도 관례처럼 1895년 단발령 이후 크게 쇠퇴하였다. 그리고 1934년 「의례준칙」에는 관례 및 계례 내용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중추원 조사 자료에, 결혼식 당일 친척 여자 중에 수모隨姆를 정하여 늘어뜨린 머리를 들어 올려 머리를 묶고 용잠龍簪을 꼽고 축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례는 혼례와 연관된 성인례成人禮이기 때문에 전통혼례와 병행하여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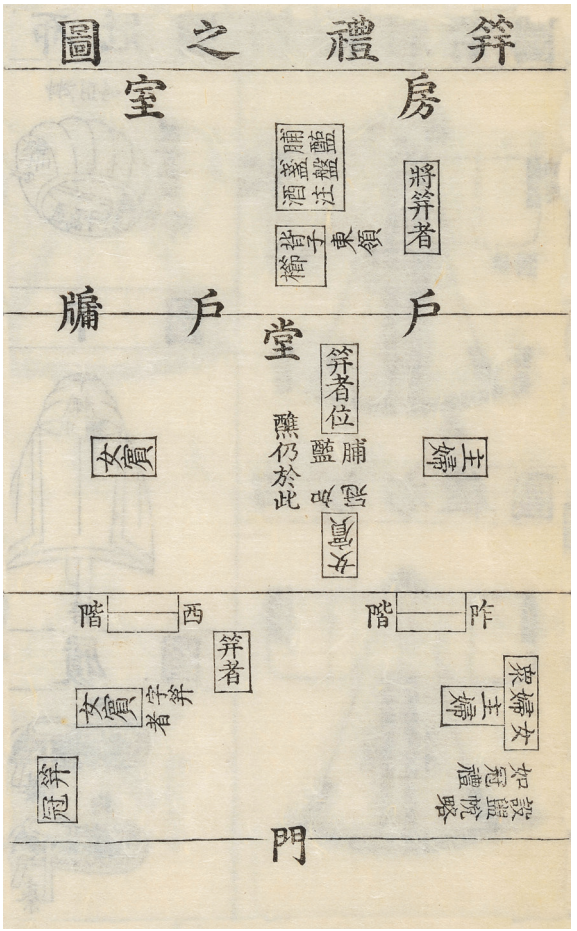

계례지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계례의 주인은 어머니이다. 계례도 관례와 같이 3일 전에 계례의 주례를 맡을 빈賓에게 알리고[戒賓], 하루 전에 빈에게 거듭 알려서[宿賓] 잊지 않고 준비하게 한다. 빈賓은 친인척 여자 중에서 어질고 예를 아는 사람을 골라 삼고, 편지를 써서 사람을 시켜 보낸다. 주자朱子는 시집을 허락하기 이전에 계례를 하는 경우는 여빈女賓을 모시지 않고 자기 집안의 제부 중 한 사람이 계례를 행한다고 하였다.

계례 당일 계례 장소에 계례에 필요한 배자背子와 관冠(족두리), 계笄(비녀)를 준비하고, 계례자는 쌍계雙紒(두 갈래 머리)를 하고 삼자衫子를 입는다. 빈賓이 이르면 주인은 맞이하여 들어가 당에 오른다.

계례자笄禮者가 먼저 쌍계를 풀어 합발合髮하여 계髻(쪽)를 만들면, 빈賓은 관례의 시가 축사식과 동일하게 "좋은 달 좋은 날에 처음으로 원복元服(관)을 씌우니, 너의 어린 마음을 버리고 너의 성숙한 덕을 따라 길하게 오래 살고, 네 큰 복을 더욱 크게 하여라吉月令日, 始加元服, 棄爾幼志, 順爾成德, 壽考維祺, 以介景福."라고 축사를 하고 관을 씌운 다음 비녀를 꽂아준다. 만약 축사를 하지 못하면 생략한다.

이어 초례醮禮를 한다. 먼저 술 한 잔을 내린다. 관례와 같이 어른이 된 것을 인정하고 그를 축하하는 뜻에서 빈이 한 잔을 주면 받아 마시되 반배返杯는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례字禮를 하는데, 관례와 같이 자를 준다. 계례를 마친 후에는 관례와 같이 사당에 고한 후에 친척과 빈을 대접한다.

특징 및 의의 예전과 같이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의 식은 사라졌다. 그렇지만, 화관을 씌우는 '성년의 날' 의식이 여성의 성년을 기념하는 의례로 실행되고 있으므로, 계례가 갖는 성인식이라는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家禮, 錦谷先生文集, 屛溪先生集, 省齋先生文集, 養窩集, 硏經齋全集, 寒水齋先生文集.

필자 최순권(崔順權)

계문
啓門

정의 제사 의식에서 음식 드시기를 권한 다음 문을 닫고 기다리다가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문을 여는 절차.

역사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이 의식에 차를 올린다고 설명했지만,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사시제四時祭」 계문조啓門條에서는 '봉다奉茶' 항목 아래에 "국속國俗에서는 물로 대신한다."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내용 문을 닫고 기다리다가 축祝이 세 번 헛기침을 하여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문을 연 다음 국 대신 차나 숭늉을 올린다. 식사 후에 숭늉을 마시는 것처럼, 주인과 주부는 국을 물리고 차를 받들어 올리는데, 이를 '진다進茶' 또는 '헌다獻茶'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귀하였기 때문에 차 대신에 물을 올리며, 숭늉의 의미로서 물에 밥을 세 번 떠서 말고 그릇 안에 숟가락을 걸쳐 놓기도 한다. 이때에도 숭늉 드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절하지 않고 서서 조금 기다리거나, 또는 몸을 굽히는 국궁鞠躬을 한다. 잠시 후에 숭늉을 다 드신 것으로 여겨 집사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시접에 내려놓고[下匙箸, 落匙箸] 밥뚜껑을 닫는다[合飯蓋].

기제와 같이 밥과 국을 올렸을 경우에는 숭늉을 드린다. 하지만 메와 갱을 올리지 않은 때에는 합문 및 진다가 생략되고 바로 사신재배를 한다.

계문의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축은 기침을 세 번하고 방문을 열고, 각자 맡은 위치로 들어가시오.
- 철갱진숙수: 집사는 갱(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리시오.
- 철시숙수접중: 집사는 숟가락으로 반(메)을 세 번 말고 숟가락을 숭늉그릇에 놓으시오.
- 국궁: 초헌 이하 모든 자손은 잠시 허리를 굽히시오.
- 하시저합반개: 집사는 수저를 시접에 거두고 반(메) 그릇과 제수의 뚜껑을 덮으시오.

특징 및 의의 계문의식을 통해 우리 조상들은 평소에 음식을 먹은 후 차나 숭늉을 권하는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합문

계문

계문 | 충남 논산 사계 김장생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계반개
啓飯盖

정의 메 그릇의 뚜껑을 여는 절차.

내용 술을 올리고 나서 식사를 권하기 위해 메의 뚜껑을 연다. 제사의 순서에서 계반개啓盤蓋의 예를 별도로 두기도 하고 두지 않기도 하는데, 삼헌三獻 후 유식侑食 때 삽시扱匙·插匙하려면 자연히 계반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비요備要』에서는 초헌初獻하고 독축讀祝 전에 계반개를 하고 삼헌을 마친 뒤 유식 때 삽시정저插匙正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는 유식 때 계반개와 아울러 삽시정저를 한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인의 밥상에 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제사상에도 반드시 메가 올라야 한다. 조상신이 모든 제수를 다 흠향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메의 뚜껑을 열어 신령에게 올리는 절차가 계반개이다. 이 절차는 삽시정저(숟가락을 밥 위의 중앙에 꽂음)와 동시에 하는 의식이다.

참고문헌 備要, 광주향교지(광주향교, 2012).

필자 이희재(李曦載)

계반삽시
啓飯插匙

정의 밥뚜껑을 열고 수저를 꼽는 의식.

내용 밥뚜껑을 열고 밥에 숟가락을 꽂는 것을 말한다. 초헌初獻 때 육적을 올리면 이때 밥뚜껑을 연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으나, 『상례비요喪禮備要』에는 이때 밥뚜껑을 열어 그 뚜껑을 그릇 남쪽에 놓는다고 하였다. 즉,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제사 지낼 때 숟가락을 밥 가운데 꽂는 것은 유식侑食 때 하지만 밥뚜껑을 여는 것은 응당 초헌을 하고 축문을 읽기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때 밥뚜껑을 연다. 다른 집안에서는 이때 밥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시접匙楪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기도 하며, 종헌 후 유식 때에 밥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

충남 논산 명재 윤증 종가

경북 상주 구복 정경세 종가

계반개 | 경북 상주 | 국립무형유산원

계반삽시 | 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을 가지런히 올려놓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초헌에 진적進炙을 하고 계반삽시啓飯插匙를 하는 것은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계빈
筓賓

정의 관례冠禮를 치를 때에 주례를 청하는 일.

역사 성리학 도입과 함께 널리 보급된 관례의 시행 단계에서 행하는 계빈筓賓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례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기록이 나타난다. 즉, 『고려사高麗史』에 광종光宗·예종睿宗·의종대毅宗代에 왕태자의 관례를 행한 기록이 보인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하면서 사대부 집안에서는 예서에 따라 관례를 행하였지만, 대부분 예서보다 더 간소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근래에는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단발령으로 '상투틀기'라는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졌고, 다만 여자들의 계례筓禮만 구식 혼례식에 흡수되어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관례를 치를 때 주례자 역할을 청하는 계빈 또한 예서에서 규정한 것과는 달리 마을에서 복 있는 자로 초빙하는 것으로 변해, 우리 전통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예기禮記』「관의冠義」에 의하면, "옛날 관례에 주례자를 점쳐 가린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진 사람을 택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계빈으로 청할 때는 벗 중에서 어질고 예의 바른 사람을 가리면 된다. 이날 주인은 심의深衣(선비들이 입는 소매가 넓은 흰 윗옷)를 입고, 그 집에 나아가 평상시의 예절대로 서로 만난다. 초청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에게 아들 ○○가 있는데, 앞으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자 하니, 당신께서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 "제가 불민하여 일을 제대로 돕지 못하여 당신께 폐가 될까 두려워 감히 사양합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초청하는 사람이 다시 "당신이 끝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청하면 "당신께서 거듭 청하시니 제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한다. 이렇듯 고례에는 첫 번째 요청은 사양하고 두 번째 요청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지금은 간략함을 취한다."라고 하였다. 통상적으로 계빈은 관례일 3일 전에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편지를 보내는데, 처음에 초청하는 말을 써서 자제를 시켜 보낸다. 초청받은 사람이 사양하면, 심부름한 사람이 굳이 청하여 허락을 받아낸 후 답장을, "당신께서 명하시니, ○○○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쓴다. 종자宗子가 스스로 관례를 하는 경우에는 고하는 말을, "○○○가 장차 머리에 관을 쓰고자 합니다."라고 한다.

관례를 치르기 하루 전날 숙빈宿賓(빈에게 고함)을 하는데, 자제를 시켜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내일 ○○○가 장차 아들 ○○에게 관례를 시키고자 하오니, 당신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감히 예고합니다. ○○○는 ○○○께 올립니다."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제가 감히 일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 ○○○께 올립니다."라고 한다. 만약 종자가 스스로 관례를 할 때에는 계빈하는 말과 같이 한다. 어떤 이는 숙宿을 '나아감'으로 해석했으나, 정약용은 '숙'을 '엄숙하고 삼가 함'이라 풀이하였다. 빈賓이 자기 집에 잔다면 글을 보내야 하지만, 주인집에서 묵는다면 숙빈의 예를 하지 않는다.

계빈 | 국립민속박물관

계빈할 때의 준비물인 심의深衣, 치관緇冠(검은색 관, 유생들이 평소에 쓰던 것으로 검은색 베로 만든 치포관緇布冠이 있었음), 복건幅巾(검은 천으로 만든 관모, 만들 때 온폭의 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건이라 이름함), 큰 띠, 실띠, 신발 등은 주인과 빈자가 입는 것이다. 아울러 글을 쓰기 위한 전지牋紙와 보자기를 준비해야 한다.

계빈을 청하는 서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계빈을 청하는 서식
○○마을의 ○○○는 두 번 절하고 ○○벼슬의 집사에게 봉계奉啓(받들어 아룀)합니다. ○○에게 아들 ○○가 있는데(종자 스스로 관을 쓸 때에는 '아들 ○○가 있는데'를 뺀다) 나이가 어른이 되어, ○월 ○일에 그(종자 스스로 관을 쓸 때는 '그'는 뺀다)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자 하여, 이를 지도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모두가 덕으로나 연세로나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 당신께서는 그날 저버리지 마시고 왕림하셔서 은혜로이 지도해 주시면, ○○○부자(종자 스스로 관을 쓸 때는 '○○○부자'는 뺀다)는 지극히 고맙겠습니다. 직접 댁에 가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년 ○월 ○일 구위具位(직위를 갖추어) ○○○ 재배再拜

아울러 봉투 쓰는 법은 다음과 같다.

상장上狀
○○ 벼슬 집사執事(편지글에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칭호) 구위具位 ○○○ 근봉謹封

계빈을 청하는 편지글에 대한 답장 서식은 다음과 같다.

계빈을 청하는 편지글에 대한 답장 서식
○○마을 ○○○는 두 번 절하고 ○○벼슬 집사 ○○○께 답장을 드립니다. ○○○는 변변치도 못한데 당신께서 저버리지 않고 관빈冠賓(관례의 빈자)으로 초대해 주심을 입으니, 일을 제대로 못 하여 훌륭한 예에 누가 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엄명을 더하시니, 어떻게 감히 힘써 따르지 않겠습니까? 관례일에 삼가 직접 나아갈 것을 편지로 아뢰니, 경건하지 못하옵니다. 나머지는 뵙고 다 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구위 ○○○는 두 번 절하고 답서答書를 바칩니다.

답장에 대한 봉투 쓰는 법은 위에 소개했던 양식과 같다. 하루 전날 숙빈할 때에도 편지글을 쓸 전지를 준비해야 하며, 편지글 서식은 다음과 같다.

편지글 서식
○○○는 ○○벼슬 집사께 올립니다. ○○○가 내일 아들 ○○(종자가 스스로 관을 쓸 때는 '아들 ○○'라는 글자를 뺀다)에게 관을 씌우고자 합니다(종자의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밑에 '○○의 친속 ○○○의'라는 말을 더해야 한다). 당신께서 이미 왕림해 주시기를 허락하셨으니, 왕림해 주시기를 감히 예고합니다. ○○○는 두 번 절하고 올립니다.

숙빈 편지글에 대한 답장 서식은 다음과 같다.

숙빈 편지글에 대한 답장 서식
○○○는 ○○벼슬 집사께 답장을 올립니다. 내일 예를 행하라는 명을 받들어 이미 예고함을 받았으니, 감히 일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는 두 번 절하고 올립니다.

계례笄禮를 행할 때의 계빈 역시 사흘 전에 행하고, 하루 전날 숙빈한다. 빈은 친인척 여자 중에서 어질고 예를 아는 사람을 골라 삼고, 편지에 그 말을 써서 사람을 통해 보낸다.

이때의 편지글 서식은 다음과 같다.

편지글 서식
"첨친忝親(변변치 못한 친속) ○○○가 절하고 ○○친親 ○○봉封(친속이 아니면 '○○봉封 부인夫人' 혹은 '유인孺人' 등의 칭하는 바에 따른다) 장차粧次(부인에 대한 존칭)께 아룁니다. 저에게 딸이 있어 나이가 마침 계례를 할 만하여 예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듣건대, 우리 친속께서 예법에 익숙하시다 하니, 굽어살피시어 왕림하여 가르쳐 주셨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월 ○일 ○씨 배백拜白(절하고 아뢰옵니다)

이에 대한 답장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답장 서식
첨친忝親 ○○○가 ○○친親 ○○봉封 장차粧次께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계빈으로 불러주심을 받자오니, 스스로 생각하건대 거칠고 속되어 성대한 예를 돕는데 부족하다 생각되오나, 이미 명이 있사온지라 감히 힘써 따르지 않겠습니까? 삼가 이에 답서를 올립니다.
○월 ○일 ○○○ 배복拜復(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특징 및 의의 관례의 절차는 준비, 시행, 종결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계빈은 시행 단계의 첫머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의 택일이나 사당에 고하는 의식 못지않게 빈객을 선택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빈객의 조건에 대해 예서에서는 어질고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마을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 상례였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與猶堂全書, 朱子家禮, 관혼상제(이민수, 을유문화사, 1975), 조선시대 관혼상제-1(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조선의 관혼상제(사회과학원, 중심, 2002),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필자 박홍갑(朴洪甲)

고려사 예지
高麗史 禮志

정의 조선 개국 후 1451년(문종 원년)에 완성된 『고려사高麗史』내의 여러 지志 가운데 하나로서 예禮와 관련된 항목을 모아 전체 11권으로 편찬한 편명.

내용 『고려사』는 조선 초기 왕명에 의해 김종서金宗瑞(1383~1453), 정인지鄭麟趾(1396~1478) 등이 1449년(세종 31)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1451년(문종 원년)에 완성한 책으로,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이다. 편찬 체재는 기전체紀傳體 방식을 취하여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총 139권 75책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지志는 천문天文 3권, 역曆 3권, 오행五行 3권, 지리地理 3권, 예禮 11권, 악樂 2권, 여복輿服 1권, 선거選擧 3권, 백관百官 2권, 식화食貨 3권, 병兵 3권, 형법刑法 2권으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지志 가운데서도 예지禮志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예지의 서문을 보면 평장사 최윤의崔允儀가 편찬한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바탕으로 『주관육익周官六翼』·『식목편록式目編錄』·『번국예의蕃國禮儀』 등의 책을 참고하여 길吉·흉凶·군軍·빈殯·가嘉의 오례五禮로 구분하여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점은 『고려사』 예지가 고려시대 의례의 대부분을 해당 시기의 각종 문헌을 근거로 정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와 강화되고 있는 유교 이념을 중심으로 고려의 제반 의례들을 편성했음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선의 관점에서 유교에 바탕을 둔 의례가 주가 되고, 불교나 도교 등의 비유교적 의례에 대해서는 소략하거나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고사당
告祠堂

정의 집안에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등의 의식儀式이 있거나, 과거科擧 급제及第 등과 같이 큰일이 있을 때 사당祠堂에 고하는 의식.

개관 『가례家禮』 사당조祠堂條에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한다有事則告."라고 하여 고사당이라 한다. 사당에 고하는 내용에 따라 출입고出入告와 유사고有事告로 나눌 수 있지만, 출입고는 주인主人이나 주부主婦가 외출 등 집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 간단하게 고하는 의식이고, 유사고는 음식 등을 진설하고 고사告辭, 告詞(축문)를 준비하여 고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를 보통 고사당이라 칭한다.

내용 고사당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의식 이외에 과거에 급제했을 때, 벼슬을 제수除授하거나 강등되었을 때, 추증되어 개제하고 분황焚黃할 때, 임금으로부터 음식을 하사받았을 때, 적장자嫡長子를 낳았거나 후사後嗣를 세울 때 등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사당에 고하는 의식이다.

고사당은 설날, 동지, 초하루의 참례의식[朔參儀]과 같으나, 『가례』에는 술과 차를 올리고 재배하면 축祝이 고사를 읽고,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술을 올리면 축이 고사를 읽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축이 주인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축문을 읽고 나면, 주인은 재배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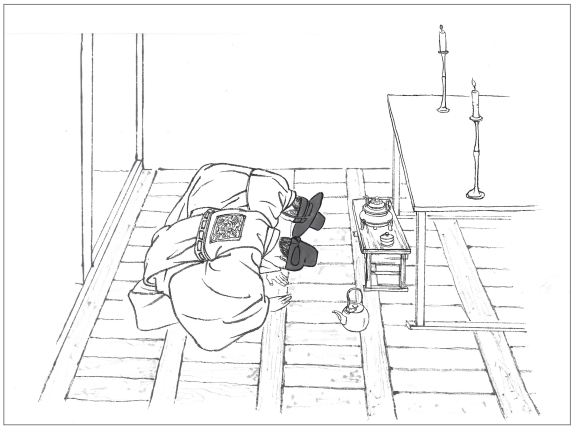

초행 전 고사당 | 국립민속박물관

이李珥(1536~1584)의 『격몽요결擊蒙要訣』「제의초祭儀抄」에서는 신주의 이안移安이나 환안還安처럼 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 삭참의朔參儀와 같이 하고, 사당의 기물을 새로 비치하거나 잠시 사당에 비가 새는 곳을 수리하여 신주가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망참의望參儀와 같이 하되, 고사는 임시로 지어서 쓰게 하였다.

벼슬을 제수除授하거나 강등되었을 때, 추증되어 개제를 할 때에도 사당에 고한다. 다만, 추증을 고할 때는 단지 추증된 감실에만 고하고 신주에 쓴 내용을 바꾼다. 이때 별도로 향탁을 감실 앞에 설치하고, 또 탁자 하나를 그 동쪽에 설치하여 청수淸水·백분白粉·잔·술·벼루·붓·먹을 그 위에 둔다. 주인은 술을 올리고 향탁의 남쪽에 있다가 축이 주인 왼쪽에서 독축을 마치면 재배한다. 주인이 나아가 신주를 받들어 탁자 위에 두면, 집사자는 옛 글자를 씻어 없애고 따로 백분을 바르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명하여 추증된 관직과 봉호로 고쳐 쓴다. 글자를 씻은 물은 사당의 네 벽에 뿌린다. 주인은 신주를 받들어 원래 있던 곳에 두고 내려와 자리로 돌아온다.

적장자를 낳았을 때에는 석 달이 지난 뒤 고유를 하는데, 축이 독축을 하지 않고 주인이 직접 축문을 읽는다. 이때 주인은 향탁 앞에 서서 고사를 읽은 후 향탁 동남쪽으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 있고, 주부는 아들을 안고 두 섬돌 사이에서 재배하고 물러난다.

고사의 축문은 4대의 신위를 축판 하나에 함께 적되, 자칭自稱은 그중 가장 높은 존자尊者를 위주로 한다. 만약 고조를 계승하였다면 현손이라고만 칭한다. 정위正位에만 고하고 부위祔位에는 고하지 않는다.

축문을 읽을 사람이 없을 때, 이황李滉은 "축문을 진설하되 읽지는 않았는데, 몹시 간략하여 예를 갖추지 못하는 중에도 스스로 그 마음을 다했으니 그 뜻은 좋다. 다만, 이는 한때 임시로 행할 일이지, 세상의 교훈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고, 정구鄭逑는 "자식에게 시키든지 혹은 자기가 스스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고할 말이 많으면 축판을 사용하고, 적으면 입으로만 고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고사당은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어른에게 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당에 계신 조상에게 고하는 의식으로, 유교적인 실천 윤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문헌 家禮, 擊蒙要訣, 四禮便覽, 常變通攷.

필자 최순권(崔順權)

고이성
告利成

정의 제사를 잘 마쳤음을 고告하는 절차.

역사 『예기禮記』「사우례士虞禮」에서는 '이利'를 '봉양하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고이성은 흠향歆饗의 예를 모두 마쳤음을 의미한다. 고이성은 『가례家禮』의 보급과 함께 당시 가장 엄수되었던 제례절차 중 하나였다. 조선 후기 조시경趙時經의 『중애일고中厓逸稿』「잡저雜著」의 '고이성변告利成辨'은 고이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로 이성이 제례의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면서 자구字句 해석을 비롯하여 비중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 고이성은 제사를 잘 마친 것을 고하는 절차로, 신위神位에게 음식을 올리는 일이 끝났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상·제례 과정에서 신위에게 음식을 올리는 일은 망자를 아직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 사람 대하듯이 하여 의례를 치르는 전奠, 망자를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치르는 제祭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전을 드릴 때에는 망자를 여전히 산 사람으로 간주하여 신에 대한 흠향의 예를 마쳤음을 고하는 고이성은 행하지 않는다. 반면, 망자의 죽음이 처음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본격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는 우제虞祭에서는 고이성을 행한다. 『가례』에서도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는 전奠을 올리되 제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술을 따라 올리고 음식을 진설하고 재배한다. 우제에 비로소 제사를 한다."라고 했다. 즉, 우제 이전에 차리는 음식은 신에 대한 봉양이 아니므로 우제 때가 되어서야 신에 대한 봉양을 하고 동시에 고이성을 행하는 것이다. 한편, 우제 역시 아직 완전한 제사로 전이되지 않았기

고이성(길제) | 경남 김해 장유면 화재 이우섭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고이성(길제) | 경북 영덕 길암 이현일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때문에, 축관이 주인의 오른쪽에 서서 서향하여 이성을 고한다. 이에 반해 졸곡卒哭 이후부터는 축관이 주인의 왼쪽에 서서 서향하여 고이성을 행하게 되어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사시제 때 "(수조 이후) 주인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한다. 그런 뒤 동쪽 계단 위에 서서 서향하고 축관은 서쪽 계단 위에 서서 동향하고 흠향이 잘 이루어졌음을 고한 뒤 내려와서 제자리로 간다. 참여자와 함께 모두 재배한다. 주인은 절하지 않고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했다.

고이성은 제사에서 흠향의 절차가 모두 끝나 축관이 '이성'이라고 세 번 큰 소리로 고하면, 주인이 이에 답해 읍揖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이성의 절차는 조상의 흠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시동尸童으로 신주를 대신했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시동은 신주의 원초적인 형태로, 신위의 손자를 제사상에 앉혀 두고 이를 조상의 현현顯顯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시동이 흠향하는 것을 신이 흠향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했는데, 이런 점에서 고이성은 시동의 흠향이 끝나면 고하는 소리를 통해 시동에게 물러날 것을 알리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고이성告利成은 제사를 통해 조상의 흠향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졌음을 고하는 절차로, 상례 과정에서 망자의 죽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우제虞祭 때부터 실시한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中庵逸稿,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김미영(金美榮)

고임새

정의 그릇에 떡·과자·과일 등을 모양내어 높이 쌓아 올리는 솜씨, 또는 모양내어 괴어 놓은 모양.

내용 조선왕조는 손님을 접대할 때[聘禮], 혼례나 생신 연향을 치를 때[嘉禮],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누어 제사를 올릴 때[吉禮] 등, 기쁜 행사에서 차리는 음식을 고임새로 담았다. 1887년(고종 24)에 행한 대왕대비의 팔순잔치를 예로 들어, 어떠한 찬품饌品(음식)을 어떤 고임새로 담아 차렸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각색 경증병은 고임 높이를 한 자[尺] 세 치[寸]로 하여 고인다. 각색 점증병은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각색 조악·화전·단자병은 고임 높이를 한 자로 하여 고인다. 대약과는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다식과는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만두과는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각색 다식은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삼색매화강정은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삼색세건반강정은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오색강정은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사색빙사과는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삼색매화연사과는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양색세건반연사과는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사색감사과는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삼색한과는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양색세건반요화

기제사 떡 준비(경북 안동 퇴계 이황 종가)

기제사 떡 준비(경북 안동)

묘제 고임 전과 산적(대전 동구 은진 송씨 묘소)

고임새 | 국립민속박물관

는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각색당은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용안龍眼은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여지荔枝는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조란·율란·강란·전약·백자병은 고임 높이를 한 자로 하여 고인다. 감자는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유자柚子·석류石榴는 고임 높이를 한 자 세 치로 하여 고인다. 생이는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준시는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생률은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황률은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대조는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호도는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송백자는 높이 한 자 세 치로 고인다. 각색 정과는 고임 높이를 한 자로 하여 고인다. 각색 절육은 고임 높이를 한 자 다섯 치로 하여 고인다. 편육·족병은 고임 높이를 한 자로 하여 고인다. 삼색전유화는 고임 높이를 한 자로 하여 고인다. 전복초는 높이 한 자로 고인다. 해삼전은 높이 한 자로 고인다. 각색 화양적은 높이 한 자로 고인다. 전치적은 꿩 50마리로 고인다. 각색 갑회는 고임 높이를 한 자로 하여 고인다.

만경전萬慶殿에서 대왕대비에게 올린 정일진찬正日進饌은 47기를 차렸다. 건면乾麪·약반藥飯·이숙梨熟·금중탕錦中湯·열구자탕悅口子湯·잡증雜蒸·백청白淸·개자芥子·초장醋醬을 제외한 38기를 한 자에서 한 자 다섯 치 높이의 고임새로 하였다. 병류(경증병·점증병·조악병·화전·단자병), 유밀과류(약과·다식과·만두과·다식·강정·빙사과·연사과·감사과·요화·각색당·조란·율란·강란·전약·백자병·정과), 실과류(용안·여지·감자·유자·석류·생이·준시·생률·황률·대추·호두·잣), 포류(육포·어포), 찬류(편육·족병·전유화·전복초·화양적·전치적·갑회) 등 물기가 없는 찬품 거의 모두를 고여 담아 차렸다. 그런데 한 가지만을 한 그릇에 고여 담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색깔을 달리하여 여러 종류의 것을 아름답게 모양을 내어 높이 쌓아 올리고자 했다.

궁중 연향의 고임새는 반가를 포함한 민간의 혼례·환갑례·제례 상차림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1606~1672) 집안에 내려오는 『덕은가승德恩家乘』에는 은진恩津 송씨宋氏의 시조모始祖母인 유씨부인柳氏夫人(1371~1452)을 위한 시사時祀에서의 고임새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 대추: 대추 고인 것 위에다 율란栗卵 약간을 얹는다.
- 밤: 밤 고인 것 위에다 조란棗卵 약간을 얹는다.
- 정과: 밑에서부터 연근정과·생강정과·산수유정과를 고인다.
- 다식: 밑에서부터 쌀다식·흑임자다식·송화다식을 고인다.
- 포: 밑에서부터 북어포·홍어포·상어포·문어포·전복포를 고인다.
- 누르미: 맨 밑에는 누르미를 고이고 위에는 진누르미를 고인다.

가운데에 쌀을 부어 균형을 잡는다.

꼬챙이를 꽂은 은행을 제기 테두리에 빙 둘러 놓는다.

한 단마다 종이를 얹고 반복하여 쌓는다.

고임새 | 국립무형유산원

- 수육: 밑에서부터 쇠머리·쇠지레·쇠혓바닥을 고인다.
- 육전: 밑에서부터 두부전·허파전·간전·쇠고기전을 고인다.
- 적: 밑에서부터 쇠고기적·갈비적·쇠족적·어적·계적을 고인다.
- 탕: 밑에서부터 무·두부·고기·고명지단을 담는다.
- 떡: 밑에서부터 팥고물메시루떡·녹두고물찰시루떡·흑임자고물찰시루떡·녹두고물찰시루떡·백편·물편·조약편을 고인다.

특징 및 의의 궁중의 고임새는 반가의 고임새에 영향을 미쳤다. 생일잔치든 제례든 고임새 형태는 매우 비슷한 형태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궁중의 점증병과 경증병은 찰시루떡과 메시루떡으로, 궁중의 화양적은 누르미로, 궁중의 전유화는 전 등으로 표현되어, 집안에 기쁜 행사가 있을 때 각종 찬품을 모양내어 괴어 놓아 상차림을 장식한다.

참고문헌 德恩家乘, 進饌儀軌, 생활문화 속의 향토음식문화(김상보, 신광출판사, 2007).

필자 김상보(金尙寶)

곡 哭

정의 상장례喪葬禮 때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울음소리.

내용 상제喪制에는 애척哀戚의 지극함을 나타내는 각각의 단계가 있다. 슬픔을 절문에 따라 조절하면서 그 표현을 바꾸도록 설계한 것이다. 『예기禮記』「단궁하檀弓下」에서는 이것이 지극한 슬픔으로 성性을 해칠까 염려해서라고 하였다. 슬픔을 나타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곡哭이다. 곡은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울음소리이다.

최초의 곡은 초종初終 때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 행하였다. 『의례儀禮』「상대기喪大記」에서는 "비로소 죽으니, 주인은 울고 형제는 곡하며, 부인은 곡하면서 발을 동동 구른다. 우는 것은 애통함이 심해 오열하여 곡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인은 애통함이 심하여 감정에 북받쳐서 울음을 울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곡을 한다는 것이다. 곧 곡은 일정한 격식을 갖춰서 내는 울음소리이다.

이러한 곡의 차이는 다음에서도 알 수 있다. 『예기』「잡기하雜記下」를 보면, "증신曾申이 '부모의 상에 애곡哀哭

할 때 일정한 소리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증자曾子가 '길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고 울 때 일정한 소리가 있더냐?'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학봉전집鶴峯全集』「거상잡의」에서는 "이는 애통함이 극도에 달하면 다시는 음절音節에 맞춰 울지 못하는 법으로, 이른바 '곡은 흐느껴 울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곡은 슬픔이 북받쳐 오르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었다. 그런데 예법상으로는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곡의 횟수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왕이던 정종이 승하했을 때, 세종은 소복을 입고 오대烏帶를 띠고서 청양산과 청선으로 인덕궁에 가 곡림하였다. 이때 세종이 곡한 횟수는 사배하고서 열다섯 마디였다. 중국 황제의 훙서에 대한 거애擧哀에도 열다섯 번의 곡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가례에서는 곡의 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뵙지 못하게 되면 고고呱呱라고 하면서 우니, 고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라고 하였다.

『가례家禮』에서 곡의 종류는 무시곡無時哭, 신혼곡晨昏哭, 조석곡朝夕哭, 삭망곡朔望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기』「상복喪服」의 소疏를 보면, 곡에는 세 가지 때가 없는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가 처음 죽어서 빈소를 차리기 이전의 곡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무시곡이다. 초종 때 외에, 복復한 후에도 남녀가 곡을 하면서 가슴을 수없이 두드리는 것이 이것이다. 소렴小殮 때에는 염이 끝나자마자 주인이 서향하고 주부가 동향하여 시신에 기대어서 곡을 하고 가슴을 두드린다. 그러고는 단袒(윗옷의 어깨는 벗는 것)·괄발括髮(삼으로 머리를 묶는 것)·문免(베로 머리를 싸는 것)·좌髽(부인이 머리를 올리는 것)하고서 전제奠祭를 올리는데, 이때에는 곡으로 슬픔을 다한다. 이후부터는 바꾸어 곡을 하여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대곡代哭이라 하는데, 『의례』의 주에서는 '대代'가 경更, 즉 '바꾸다'는 뜻이라고 했다. 효자가 어버이의 상을 당해서 슬퍼하고 초췌해지므로 죽은 사람 때문에 몸을 상할까 염려하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곡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렴大殮 때에는 시신을 관에 안치하고 이불을 덮어 관 안을 평평하고 가득 차게 한 다음에, 주인과 주부가 기대어 곡으로 슬픔을 다한다. 그 후 장인이 덮개를 덮고 못을 박는다. 이에 대해 사마광司馬光은 "시신을 움직이고 관을 들 때에는 곡하고 가슴을 두드리기를 수없이 하지만, 염빈할 때에는 마땅히 곡을 그치고 가서 지켜보기를 침착하고 안정되게 하도록 힘써야지 곡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대렴전에 곡을 하는 것은 소렴전 때와 같다. 그리고 대곡은 그치게 한다.

두 번째는 이미 빈소를 차린 이후 졸곡卒哭 이전에 조계의 아래에서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여막廬幕 안에서 생각이 나면 곡하는 것이다. 성복成服하는 날 아침에는 복을 입고서 조곡朝哭을 하고 서로 조상弔喪한다. 여기서 서로 조상한다는 것은 친족 간의 존비尊卑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역시 곡으로 슬픔을 다한다. 이때부터는 아침저녁으로 전을 올리고 곡으로 슬픔을 다하는데, 이를 조석곡전朝夕哭奠이라 한다. 그리고 아침저녁의 사이라도 슬픔이 이르면 상차喪次에서 곡하니, 곡하는 것에 때가 없다. 문상聞喪과 분상奔喪에는 어버이의 상을 들었으면 곡으로 슬픔을 다한다. 가는 도중이나 묘소 혹은 집에서 곡하는 절차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최齊衰 이하 친족의 상을 들으면 자리를 만들어 곡을 한다.

개영역開塋域 때에는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한 후, 주인은 돌아와 영좌靈座 앞에서 곡하고 재배한다. 천구遷柩를 아뢸 때 역시 곡하고, 영구를 옮길 때 주인 이하는 따라가면서 곡한다. 이때부터 발인發靷할 때까지 역시 대곡한다. 『가례집설家禮集說』에서는 이에 대해, 장사를 지내면 사라져 없어지니, 어버이가 장차 없어지는 것을 효자가 슬퍼하기 때문에 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예법을 만드는 자가 지나치게 상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바꾸어 대신하게 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낮 신시申時(오후 4시 전후)에 차리는 조전祖奠은 조석전의 의식과 동일하게 하는데,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석전夕奠과 겸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튿날에 영구를 상여로 옮길 때 주인은 이를 따르면서 곡하고 부인은 휘장 안에서 곡한다. 견전遣奠은 조전朝奠과 같이 하고, 부인은 참석하지 않는다.

발인에는 부인들과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봉사례奉辭禮를 하며 슬픔을 다하여 곡하고, 묘소에 이르기까지 주인 이하의 남녀는 영구차를 따라가면서 곡한다. 도중에 슬픔이 지나치면 역시 곡한다. 묘소가 멀면 30리마

다 영구 앞에 영좌를 차려놓고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전을 올린다. 이내 영구가 묘소에 도착하면, 주인과 남녀는 각각 자리로 가서 곡한다. 하관下棺할 때에는 곡을 그치고 가서 살펴본다. 제주전題主奠과 묘소를 떠날 때에도 역시 곡하고, 반곡反哭에는 도중에 슬픔이 이르거나 집의 문이 보이면 곡한다. 문을 들어와서 주인 이하는 청사에서, 부인은 당堂에서 곡하며, 곧이어 영좌 앞에 이르러서 곡한다. 우제虞祭 때에는 주인과 형제, 참석자들이 모두 들어가 영좌 앞에서 곡하고 그친다. 초헌初獻에 독축讀祝하고 나서 주인이 곡하고 재배하며, 사신辭神에도 곡하고 재배한다. 이후 아침저녁의 전제는 파하지만,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슬픔이 이르면 역시 곡한다. 재우再虞와 삼우三虞 때에도 초우와 똑같이 한다.

세 번째는 졸곡卒哭 이후로 아침과 저녁 사이에 슬픔이 이르러도 곡하지 않고 아침과 저녁에만 곡하는 것이다. 졸곡은 상제喪祭에서 길제吉祭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다. 『예기』「단궁」에서 "졸곡은 성사成事라고 하는 바, 이날은 길제로 상제를 바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때에는 주인 이하가 모두 들어가 곡하는데, 절차는 모두 우제와 같다. 다만, 축판祝板의 위치와 독축의 자리가 길제의 형식에 따라 바뀐다. 졸곡은 '곡을 그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초종 이래로 슬픔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공언은 '졸곡이라는 것은 여차廬次 안에서의 곡을 마치고, 다만 조석으로 계단 아래에서 때로 곡하는 것'이라 하였다.

졸곡 다음날에 부묘祔廟를 거행할 때에는 날이 밝자마자 주인 이하가 청사에 모셔진 영좌 앞으로 가서 곡하고, 사당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곡하며, 새 신주를 사당으로 모시고 갈 때 곡하면서 따라가 문에 이르러서 그친다. 제사의 절차는 우제 및 졸곡 때와 같으나, 곡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제사가 끝나면, 신주를 모시고 돌아올 때 곡하면서 따라와 슬픔을 다하고 그친다.

소상小祥에 주인 이하는 곡하고서 연복練服으로 갈아입고 다시 들어가 곡한다. 이 연제를 마치면 드디어 조석곡을 그친다. 이 이후부터는 복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삭망 때에 모여서 곡하니, 이것이 삭망곡이다. 친척 가운데 아직도 서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복을 벗었더라도 곡으로 슬픔을 다한 후에 차례로 절을 한다. 또 여막 안에서 10일 만에 혹은 5일 만에 생각이 나면 곡하니, 이것이 가장 낮은 크기의 곡례哭禮로서 세 번째 때가 없는 곡이다.

대상大祥에는 고쳐 쓴 신주를 사당으로 모시고 갈 때에 주인 이하가 곡하면서 따라가 문 앞에 이르러서 그친다. 대상 후 중월에 지내는 담제禫祭에는 참신參神과 사신 때 곡하지만, 이제부터는 신주를 전송하여 사당에 이르러도 곡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제를 마치면 이는 상례의 마침이니, 이후의 제사는 완전한 길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는 곡하지 않는다. 이외에 시묘살이하거나 묘소에 올라서 아침저녁으로 하는 곡이 있는데, 이를 '신혼곡晨昏哭'이라 한다.

조상하고 곡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다. 살아있는 사람을 아는 자는 조상하고, 죽은 사람을 아는 자는 곡한다고 한다. 『예기』「단궁」에서는 "죽었는데도 조상하지 않는 자는 세 가지이니, 두려워하여 죽은 자와 압사당한 자, 물에 빠져 죽은 자"라고 하였다. 그 부분의 주석에서는 "압사당한 자는 가다가 위험한 곳 아래에서 머무른 자이며, 물에 빠져 죽은 자는 다리나 배에 오르지 않은 자"라고 하였다. 노식盧植은 두려워하여 죽은 자는 무기로 죽은 것이라 하고, 왕숙王肅은 법을 범하여 감옥에서 죽은 자를 두려워하여 죽은 자라고 하였다. 『이아爾雅』에서는 두려워하여 죽은 자는 형을 당한 자라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흉례의 절문은 성性을 해치지 않도록 슬픔을 조절하여 그 정도를 바꾸어 나가는 단계이다. 곡도 이에 비례하여 그 크기를 줄여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우제와 졸곡에서 단적으로 잘 나타난다.

참고문헌 家禮集說, 家禮箚錄, 國朝五禮儀, 石灘集, 禮記, 儀禮, 朝鮮王朝實錄, 鶴峯全集,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공포
功布

정의 발인發靷할 때 상여 앞에 들고 가는 깃발로 글을 쓰지 않은 기다란 대나무에 삼베를 매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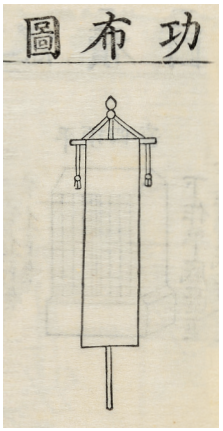

공포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공포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공포功布는 굵은 베로 만든다. 크기는 석 자(약 90 cm)로 상단을 접어 꿰맨 후 대를 끼우고 좌우에 술을 단다. 깃대는 대나무를 쓰고, 상단에 깃봉을 단다. 장지에 도착해서 광중壙中에 널을 묻을 때 명정銘旌을 덮기 전 공포로 관 위의 먼지나 흙을 털어낸다.

특징 및 의의 공포는 장지로 갈 때 상여를 메고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도로의 사정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상여 앞에 가면서 길이 낮거나 높을 경우, 혹은 기울거나 떨어져 나간 곳이 있을 때 공포를 가지고 내리고 올리거나 좌측, 우측으로 흔들어 방향 전환을 알린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四禮便覽, 儀禮, 朱子家禮.

필자 정종수(鄭鍾秀)

곽
槨

정의 주검을 안치한 관을 담기 위하여, 관의 외부에 나무 또는 돌 등으로 만든 궤, 또는 그와 같은 시설물.

역사 곽槨은 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다. 그러므로 곽은 묘실墓室의 설치와 관련이 있다. 묘실은 관을 안치하기 위해 만든 넓은 방으로, 묘실 안에 관만을 안치하기도 하지만, 관과 곽을 모두 안치한 경우도 있다. 간혹 묘실 같은 커다란 공간이 없을 때는 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을 담는 곽을 설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묘실보다는 곽을 만들었다. 곽은 주검을 안치하기 위한 주곽主槨, 부장품이나 순장자를 안치하기 위한 부곽副槨으로 이루어진다.

곽은 관과 동시에 사용되었거나, 관이 사용된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시대에는 관을 사용했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에, 곽도 신석기시대부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황하黃河 유역의 산동 대문구大汶口 유적, 장강長江 하류 유역의 항주杭州 양저良渚 유적 같은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목곽의 사용이 분명히 확인된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곽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곽의 존재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묘제인 고인돌의 하부구조에서 잘 드러난다. 고인돌의 덮개돌 아래에는 돌판을 조립하여 만든 석관과 깬돌로 사방을 쌓아 덧널, 즉 석곽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옹관 등을 묻은 흔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돌로 만든 덧널의 흔적은 주로 한반도 남부지역의 남방식 고인돌 또는 기반식 고인돌의 하부구조에서 발견된다. 초기 철기시대에는 황해도 서흥 천곡리, 대전시 괴정동, 충남 아산 남성리, 충남 부여 연화리, 충남 예산 동서리, 전남 함평 초포리, 전남 화순 대곡리 등에서 구덩이를 파고 돌로 사방을 두른 석곽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유적에서는 관재棺材 나뭇조각이 석곽 안에서 발견되었다. 석곽 안에 목관을 안치한 석곽목관묘石槨木棺墓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석곽목관묘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묘제였음이 확인된다. 고구려에서는 적석총積石塚의 상부에 강자갈을 쌓아 비교적 작은 규모로 조성한 석곽 안에 목관을 안치한 예가 확인되고 있다. 백제와 가야 지역에서도 깬돌을 이용하여 석곽을 만든 다음에 목관이나 옹관을 안치한 예가 보인다. 경북 경주의 천마총天馬塚과 황남대총皇南大塚 같은 신라시대의 대형 봉토분이 목관을 안치하기 위해 목곽과 목곽 외부에 강자갈을 쌓아 만든 적석목곽묘積石木槨墓라는 것은 퍽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려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석곽목관묘를 조성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초기까지 석곽목관묘가 만들어졌으나, 이후 목곽목관묘木槨木棺墓와 회곽목관묘灰槨木棺墓

가 일반화되었다. 구덩이를 파고 목곽을 만들어 안치한 후, 다시 외곽에 회곽을 만드는 묘는 지배층의 묘제로도 채택되었다. 중국 남송대南宋代의 장제葬制가 명나라를 통해 도입된 이후에 유행한 묘제로, 그 유습이 얼마 전까지 남아있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석회 대신 시멘트를 사용하여 곽을 조성한 사례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손자인 이준용李埈鎔(1870~1917)의 묘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내용 곽은 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으므로 관보다 더 크고 넓지만, 그 형태는 관과 동일하다. 관을 내관, 곽을 외관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특히 회곽묘에서 구덩이 바깥을 둘러싼 회삼물을 곽으로 보고, 그 안의 목관과 목곽을 내외의 이중관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렇지만 곽은 관을 담기 위한 시설이므로 관 밖의 것은 모두 곽이라고 보아야 한다. 목곽을 외관이 아닌 내곽으로, 회곽을 외곽이라고 보아 이중곽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곽의 재료는 나무와 돌, 석회 등이다. 목곽을 만들 때에는 관과 같은 종류의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재료 조달의 편의성 때문으로 보인다. 대개 조선시대에는 관의 재료로 쓰인 소나무와 잣나무 등을 곽의 재료로도 사용하였다. 돌로 곽을 만들 때는 무덤 주변의 돌을 깨서 사용하거나 강자갈을 가져다가 사용하였다. 석회로 곽을 만들 때는 널빤지로 틀을 만들거나, 관과 곽을 안치한 후 주변에 석회와 가는 모래, 황토를 섞어서 만들었다. 최근 들어 회곽묘를 회격묘 또는 회묘라고 부르고 있으나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회격은 회를 사용하여 관이나 곽을 놓을 자리를 만들거나 관과 곽을 감싸는 것을 말할 뿐이다.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석곽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목곽이 가장 일반화되었고, 회곽도 널리 사용되었다. 신라의 적석목곽분이나 조선시대의 회곽묘에서 보듯이, 관의 외곽이 이중인 경우 돌과 석회가 목곽의 외곽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회곽묘는 조선 세조가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라고 유언한 이후 지배층에 보편적으로 채용되어 유행한 묘제였다. 관과 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관만 따로 쓸 때보다 품과 비용이 더 많이 들었으므로, 부유한 계층에서 주로 채용한 장례방식이었다.

특징 및 의의 곽은 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나무와 돌, 회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고, 석곽과 목곽, 회곽 등으로 크게 나눈다. 다만 오늘날에는 목곽이나 석곽의 사용은 거의 사라졌고 회곽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常變通考, 喪禮備要. 개정신판 한국 고고학 강의(한국고고학회, 사회평론아카데미, 2010), 동아시아의 고분문화(중앙문화재연구원, 서경문화사, 2011),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5).

필자 김영관(金榮官)

관 冠

정의 상중에 상주喪主가 착용하는 관冠.

내용 상주가 착용하는 관은 너비가 세 손가락만 한 포布의 뒤쪽에 종이를 배접하여 뻣뻣하게 하고 세 개의 주름[襞積]이 지는 굴건屈巾과 굴건을 머리에 고정하는 수질首絰이 연결된 형태로, '무굴관武屈冠'이라고도 한다. 주름을 만드는 법은 한쪽으로부터 7푼 반을 재고 그 이외에 또 7푼 반을 반으로 접어서 골을 만든다. 이처럼 하기를 세 번 한다. 나머지를 또 7푼 반으로 하여 주름을 잡으면 너비가 3촌이 된다. 혹은 너비 5촌 2푼 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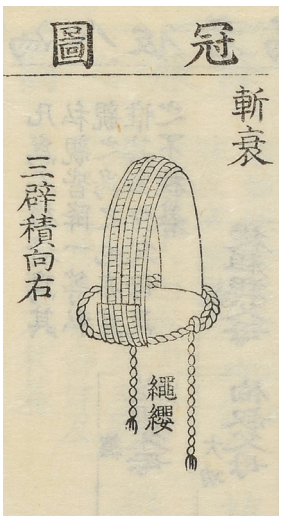

관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관 | 국립민속박물관

감으로 일곱으로 나누어 표시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가운데를 접어서 골을 만들면 그 법대로 된다.

관의 아래에는 두건頭巾을 쓰며, 이는 부모에 대한 효孝를 나타내는 의미로 '효건孝巾'이라고도 한다. 두건은 『의례儀禮』, 『가례家禮』 등 중국 예서禮書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선시대의 국속國俗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는 이 두건의 제도가 예에 어긋나기는 하나 국속에 따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기록이 있다. 제작법은 한 폭의 포布를 머리에 맞게 접어서 합봉合縫하고, 그 합봉한 선이 머리 뒤의 중심으로 가게 한다. 양 모서리를 접어 안으로 넣고 그 위를 봉합하여 뒤집는데, 앞에서 보면 모가 난 관과 비슷하다. 상중에 착용하는 관, 즉 굴건과 의상衣裳 등의 일습을 굴건제복屈巾祭服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대표적으로 상주의 상복喪服을 의미한다.

특징 및 의의 관은 의상衣裳보다 조금 더 고운 베를 사용한다. 삼년상에는 잿물을 쓰지 않고 누이고[生布] 1년상 이하에는 잿물을 써서 누인다[熟布]. 굴건의 주름 세 개를 접는 방향은 참최斬衰·재최齊衰·대공大功 시에는 오른쪽이고, 소공小功·시마緦麻 시에는 왼쪽이다. 수질에 다는 끈[纓]은 참최에는 승영繩纓, 재최에는 포영布纓으로 하되, 소공 이하는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사가의 상복에 관한 연구(이정옥 · 김희숙, 민족문화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7),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필자 조우현(趙又玄)

관
棺

정의 장례를 치를 때에 주검을 담는 상자.

역사 구석기시대에는 주검을 처리할 때 땅에 구덩이를 파서 그냥 묻었다. 신석기시대에는 나무로 만든 목관 등을 사용했으리라 추측되나,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이후부터는 통나무의 속을 파낸 통나무형 목관 또는 흙으로 만든 옹관甕棺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돌판을 조립하여 만든 석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 이후에는 나무를 켜서 만든 널빤지를 조립해 만든 목관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옹관과 석관도 계속 사용되었으며, 흙으로 빚은 도관陶棺과 기와로 만든 와관瓦棺도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목관과 석관, 옹관 등이 여전히 사용되었고, 이런 경향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내용 관은 유해를 바로 땅속에 묻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나, 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묘곽이나 묘실을 만들고 그 안에 두는 경우도 있다. 관의 형태는 주검을 담기 위한 것이므로 보통 머리 쪽이 넓고 발치 쪽이 좁은 두광족협형頭廣足狹形의 장방형이다. 그러나 복차장複次葬을 행한 경우에는 유골 등을 담기에 적당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주검을 그대로 안치한 경우, 관의 크기는 주검보다 약간 더 길고 체적이 더 크게 만들었으나, 복차장은 일차장보다 주검의 길이나 부피가 더 줄어들었으므로 유골 등을 담기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다. 관을 감싸는 또 다른 구조물인 곽과 분명히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관을 내관, 곽을 외관으로 부르기도 한다.

관의 재료는 나무·돌·토기·도기·옹기·기와 등이었지만, 나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초기철기시대의 무덤인 경상남도 창원 다호리 유적의 목관은 상수리나무의 몸통을 파내어 만들었고, 경상북도 경산 임당동 고분의 목관은 밤나무와 산뽕나무·느릅나무, 전라남도 화순 대곡리 목관은 굴피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북 경주시 황남대총皇南大塚과 천마총天馬塚에서 출토된 목관, 부산광역시 복천동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목관은 느티나무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경북 경주의 금관총金冠塚과 98호분 및 창녕 송현동의 가야 고분에서는 녹나무,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는 일본산 금송, 충청남도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는 비자나무를 켜서 만든 널빤지로 조립한 목관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삼국시대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사용하여 목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목관의 재질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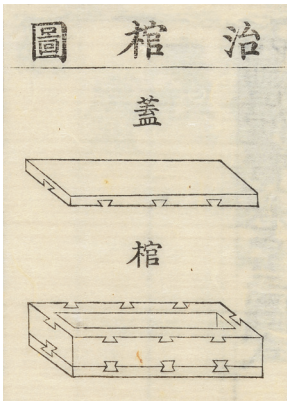

치관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목관 | 16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되지 않아, 고려시대에 관의 재료로 사용된 나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소나무와 잣나무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는 관의 재료로 소나무와 잣나무 외에도 오동나무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 가끔 은행나무도 쓰인다. 이처럼 목관 재료가 다양한 이유는 시기별로 가장 구하기 쉬운 나무를 선택하여 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목관에 못 같은 금속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관의 조립에 화려한 금속 장식을 사용하였고, 못을 이용해 관을 짜는 것이 보통이었다.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나비 모양의 홈을 나무에 파거나, 요철凹凸 형태의 홈을 나무에 만들어 관을 짜는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나무에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홈을 파서 관을 짜는 방법은, 금속제 장식과 못이라는 별도의 재료 및 공정 때문에 부담하는 추가 비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풍속으로 추정된다.

돌로 만든 석관의 경우, 청동기시대에는 충남 부여 송국리 무덤이나 제천 황석리 고인돌처럼 판석을 조립하여 사용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석관을 사용한 예가 많지 않으나, 경북 경주 문무대왕 수중릉 같은 특이한 경우가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전남 광양 옥룡사에서 발굴된 석관처럼 세골장洗骨葬 용도로 석관이 사용된 예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사신도四神圖를 새긴, 비교적 작은 크기의 석관이 많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석관이 사용된 예가 거의 없다. 오늘날에는 석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다.

토기를 이용하여 주검을 처리하는 옹관은 신석기시대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인돌의 하부구조에 옹관이 매장된 여러 사례에 비춰 보면, 옹관은 청동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옹관은 토기 하나를 통째로, 또는 두 개를 이어 붙여 사용하였다. 또한, 옹관을 땅속에 묻을 때에는 가로로 눕히거나 세로로 세워서 매장했다. 영산강 유역에서 주로 사용한 대형 옹관은 장례용으로 특별 제작된 것이다. 충남 부여 염창리에서 발견된 백제의 호관壺棺 역시 옹관의 다른 형태이다. 옹기로 만든 독을 사용하여 어린아이를 매장하는 풍습이 얼마 전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옹관을 사용한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옹관을 사용하여 매장하는 풍습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흙으로 빚어 만든 도관은 드물게 보인다. 황해도 은율에서 출토된 초기 철기시대 도관과 충남 공주 마암리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도관은 모두 크기가 작아 어린아이를 매장하거나 유골만을 수습하여 매장하는 복차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와를 사용하여 만든 와관은 매우 드물다. 충청남도 공주 동대리, 충남 서산 여미리, 전라북도 완주 상운리 등에서 백제시대의 와관이, 충청북도 옥천 옥각리에서는 고려시대의 와관이 발굴된 바 있다. 이 밖에 뼈항아리가 관의 기능을 하였다. 불교의 도입으로 화장火葬이 유행하였고,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뼈항아리가 백제와 신라, 고려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도 화장의 유행과 함께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뼈항아리가 사용되고 있다.

석관(돌널) | 고려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관의 사용은 장례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나무와 돌, 토기와 도기, 기와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관은 짐승이나 곤충, 나무뿌리 따위의 침해로부터 주검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은 목관이었다. 지금도 목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考, 개정신판 한국 고고학 강의(한국고고학회, 사회평론아카데미, 2010), 동아시아의 고분문화(중앙문화재연구원, 서경문화사, 2011),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5), 영원한 만남 한국 상장례(국립민속박물관, 1990).

필자 김영관(金榮官)

관대벗김

정의 전통 혼례에서 대례를 마친 신랑이 사모관대紗帽冠帶를 벗고 신부 집에서 마련한 옷으로 갈아입는 절차.

내용 대례를 마친 신랑과 신부는 시자侍者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가 잠깐 서로 얼굴을 본다. 신부가 방을 나가면 신랑은 입었던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 집에서 마련해 놓은 옷으로 바꿔 입는다. 이때 옷을 갈아입는 절차를 '관대冠帶벗김'이라고 한다. 연길단자涓吉單子를 받은 신랑 집에서는 신부 집으로 신랑의 옷 치수를 적은 의양단자衣樣單子를 보낸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보낼 때에는 '장제章製'라 하여 신랑의 옷 치수를 적어 보내기도 한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그 치수에 맞게 신랑의 옷을 지어 두었다가 대례를 마친 후에 신랑에게 주어 입게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 화성 지방에서 신랑은 관대를 벗기 전에 장인과 후행後行으로 온 부친께 인사를 드린 후, '생우리'라고 해서 신부와 잠깐 한 방에 합석한 다음 관대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 예전에는 신부 집에서 신랑의 옷 치수를 받아 옷을 마련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로 오면서 신랑의 옷 치수를 적어 보내는 대신에 신랑을 한복집에 데리고 가서 옷을 맞추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신랑의 옷과 함께 신부의 옷도 맞추는 것으로 변화했다. 옷이 다 지어지면 신랑의 옷은 신부 집에 두고, 신부의 옷은 납폐納幣 때 신부 집으로 보낸다. 그래서 대례가 끝난 뒤에 신랑과 신부가 각각 그 옷으로 갈아입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통 혼례를 올리는 사람보다 예식장에서 신혼예식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신혼예식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신랑은 양복,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서 신혼예식을 한 뒤에 폐백실幣帛室에 가서 폐백幣帛을 한다. 이때 신랑과 신부는 한복으로 갈아입는데, 이것을 '관대벗김' 또는 '관례벗김'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관대벗김은 신랑 집에서 납채納采와 납폐 때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낸 것에 대한 답례의 성격과 신랑이 동복童服을 벗고 어른의 옷으로 갈아입는 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서울민속대관4(서울특별시, 1994),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전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2004), 한국인의 삶과 문화(최운식, 보고사, 2006).

필자 최운식(崔雲植)

관례
冠禮

정의 남자가 성인이 됨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의례 절차.

역사 우리나라의 관례冠禮는 고려 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유입으로 사대부 계층에 정착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성인 의식과 비슷한 신라시대의 원화源花·화랑花郎 같은 제도가 있었다. 또한, 『고려사高麗史』에는 광종光宗 때 왕자에게 원복례元服禮를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니, 고려시대에 이미 관례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는 『주자가례』 등의 예서禮書에 따라 관례를 행하였는데, 집안의 형편에 따라 간소하게 행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화하여 널리 행해졌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두발頭髮을 깎게 됨으로써 전통적으로 거행하던 관례는 점차 사라졌다.

내용 관례는 전통사회에서 남자가 치르는 성인의식으로, 서양의 성년식成年式과 유사하며 20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세 이전에 결혼하면, 결혼 전에 날을 정해 관례를 행하였다. 관례를 치른 뒤에는 어엿한 어른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어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진다.

관례는 ①택일擇日 ②준비準備 ③시가례始加禮 ④재가례再加禮 ⑤삼가례三加禮 ⑥초례醮禮 ⑦자관자례字冠者禮 ⑧현우사당見于祠堂의 순서로 진행한다.

①택일: 『주자가례』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남자는 15~20세에 관례를 행하였다. 15세 이상이 되어야 예禮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택일에 대해서는, 좋은 날을 가려 예를 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정월 중에 날을 정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면 4월이나 7월 초하루에 하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관을 쓰는 것이 인도人道의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②준비: 관례를 행하기 3일 전에 주인은 축문祝文을 지어 조상을 모신 사당에 고告한다. 그리고 관례에서 의식을 주관하는 빈賓을 미리 정해 초청해야 한다. 예서禮書에서는 종손宗孫의 친구 가운데 어질고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을 골라 빈賓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례일 하루 전에는 대청의 동북쪽에 휘장을 쳐서 관례를 행할 장소를 마련한다. 관례 당일 아침 일찍 필요한 도구를 진설陳設하며, 관복冠服을 꺼내 준비한다. 그 뒤, 주인 이하 집안사람이 차례로 서서 빈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빈이 찬贊과 함께 도착하면, 주인은 그들을 맞이하여 방으로 인도한다.
③시가례: 처음 관을 쓰는 예를 '시가례' 또는 '초가례初加禮'라 한다. 시가례는 빈이 관례를 하는 사람에게 읍揖하면서 시작된다. 관례를 하는 자는 처음 쌍계雙髻(쌍상투)를 하고, 사규삼四襟衫을 입고, 늑백勒帛이라는 띠를 두르고, 채리彩履(무늬 있는 신)를 신는다. 이런 복장으로 행사장에 입장하여 제자리에 나와 꿇어앉는다. 옆에 빈賓을 돕는 찬贊이 관례를 하는 자의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면, 빈이 관례를 하는 자 앞에서 축사를 읽은 뒤 치포관緇布冠을 씌우고 비녀를 꽂아 준다. 관례를 하는 자는 방으로 들어가 사규삼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으며, 대대大帶(큰 띠)를 두르고, 흑리黑履(검은 신)를 신는다. 그리고 방에서 나와, 제자리로 가서 남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④재가례: 관례를 하는 자가 정해진 장소에 앉아 있으면, 빈이 관례를 하는 자의 앞에 나아가 축사를 한 뒤, 갓을 씌워준다. 이어 관례를 하는 자는 방으로 들어가 심의를 벗고 소포素袍(흰 도포)를 입으며(조삼皂衫을 입는다고도 하였음), 혁대革帶를 두르고 나온다.
⑤삼가례: 관례를 하는 자가 정해진 자리에 꿇어앉아 있으면, 빈이 나아가 축사를 한 뒤, 유건儒巾을 씌워준다. 관례를 하는 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소포素袍를 벗고 청삼靑衫(푸른 도포)을 입으며, 흑사대黑絲帶를 차고 나온다. 복두幞頭를 쓰고 공복公服을 입고 혁대를 띠고 가죽신을 신고 홀笏을 든다고도 하였고, 작변爵弁을 쓰고 난삼襴衫을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고도 하였다. 또한, 입자笠子(갓)를 쓰고 도포道袍를 입고 흑사대黑絲帶를 띤다고도 하였다.
⑥초례: 술을 마시는 예이다. 관례를 하는 자가 정해진 자리에 나아가 남쪽을 향해 꿇어앉아 있으면, 빈이 관례를 하는 자의 앞에 나아가 축사를 한다. 관례를 하는 자가 두 번 절하고 술잔을 받으며, 빈이 답례한다. 관례를 하는 자가 상 앞으로 나아가 잔을 들고 물러나 마신 다음, 찬贊에게 준다. 그리고 빈에게 두 번 절하면 빈이 답례한다.
⑦자관자례: 빈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자字를 지어 주는 예이다. 빈과 관례를 하는 자가 마당으로 내려간다. 빈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축사를 하면서 자를 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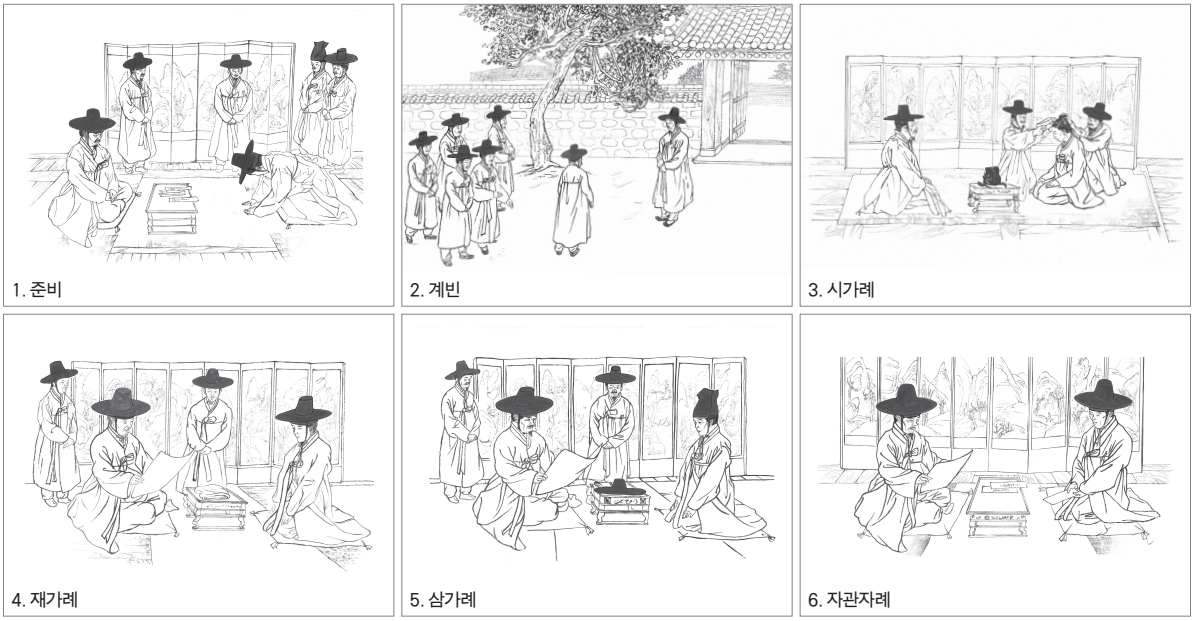

관례 | 국립민속박물관

관례를 하는 자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절하면, 빈은 절을 받되 답례하지 않는다.
⑧현우사당: 주인이 관례를 행한 아들을 데리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고하는 예이다.

이상으로 관례의 중요한 행사는 끝난다. 그러나 이 뒤에 관례를 치른 자는 찾아온 친척과 손님들에게 절한다. 또 밖으로 나가 동네 어른과 아버지 친구들에게 두루 절을 올리는 예가 있다.

특징 및 의의 관례는 남자가 성인이 됨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어른으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하나의 의례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20년 동안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리道理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익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에 기여 및 봉사하며,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일생에서 한 가지 큰 고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사회의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인公認을 받는 의례와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관례를 통해 가족은 물론 친척이나 친지親知들과 함께 성인이 된 기쁨을 나누고 축하와 격려를 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계기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관례와 여자의 관례인 계례笄禮를 혼례, 상례, 제례와 함께 사례四禮의 하나로 보아 대단히 중하게 여겼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이자 대단한 고급문화로서 관례는 오랜 세월 지속하고 발전해 왔다. 성인이 된 사람은 성인으로서 예禮를 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성인으로서 예를 책임진다는 것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동생으로서, 신하로서, 젊은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례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모든 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禮記, 朱子家禮.

필자 김시황(金時晃)

관례홀기
冠禮笏記

정의 관례冠禮를 거행하기 위한 의식儀式절차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글.

내용 홀기笏記는 의례의 진행을 위해 만든 일종의 식순

으로, 들고 읽기 편하도록 두루마리·판·병풍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다. 관례홀기冠禮笏記는 관례를 거행하는 의례절차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집례자가 홀기를 큰 소리로 읽으면, 관례에 참여한 참례자들이 이 홀기에 따라서 의례를 거행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하여 관례홀기의 대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주인이하서립主人以下序立(주인 이하 차례로 선다): 주인은 동쪽 계단 아래 조금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관자는 방에서 남쪽을 향해 선다.

②빈지주인영입승당賓至主人迎入升堂(빈이 이르면 주인이 맞이하여 당 위로 오른다): 빈이 대문 밖에 이르면 주인이 대문 밖으로 나가 빈을 맞이하여 당 위로 오른다. 주인은 먼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서향해 서고, 빈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동향해 선다. 관자는 방 밖으로 나와 남향해 선다.

③빈읍장관자취석, 위가관건, 관자적방, 복심의납리출賓揖將冠者就席, 爲加冠巾, 冠者適房, 服深衣納履出(빈이 관자에게 읍하고 자리에 나아가서 관과 건을 씌운다. 관자는 방으로 가서 심의를 입고 신발을 신고 나온다): 빈이 읍하면, 관자는 자리에 가서 서향해 꿇어앉는다. 찬자贊者는 자리로 가서 관자를 향해 꿇어앉아 관자의 머리를 빗질하고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운다. 빈은 관자에게 축사를 하고, 꿇어앉아 관을 씌운다. 빈이 일어나 자리에서 읍하면, 관자는 방으로 들어가 사계삼四襈衫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고 큰 띠와 신발을 신고 방을 나와서 용모를 바르게 하고 남쪽을 향해 선다.

④재가모자, 복조삼혁대계혜再加帽子, 服皁衫革帶繫鞋(두 번째 모자를 씌운다. 조삼을 입고 혁대를 하고 가죽신을 신는다)

⑤삼가복두, 공복혁대납화집홀, 약난삼납화三加幞頭, 公服革帶納靴執笏, 若襴衫納靴(세 번째 복두를 씌운다. 공복을 입고 혁대를 하고 가죽신을 신고 홀을 잡거나, 또는 난삼을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⑥내초乃醮(이에 초례한다): 찬자가 방에서 술을 따라 나와서 관자의 왼쪽에 선다. 빈이 읍하면 관자는 자리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남향한다. 빈이 술을 가지고 자리로 나아가 북향하여 축사한다. 관자는 두 번 절하고 자리 위로 올라가 남향해 잔을 받는다. 빈은 자리로 돌아가 동향하여 답배한다. 관자는 꿇어앉아 술을 바닥에 제사 지내고, 자리의 끝으로 가서 술을 마신다. 일어나 자리 아래로 내려가서 찬자에게 잔을 주고 남향하여 두 번 절하면 빈은 동향하여 답배한다. 빈이 찬자에게 절하면 찬자는 빈의 왼쪽 뒤편에서 동향하여 답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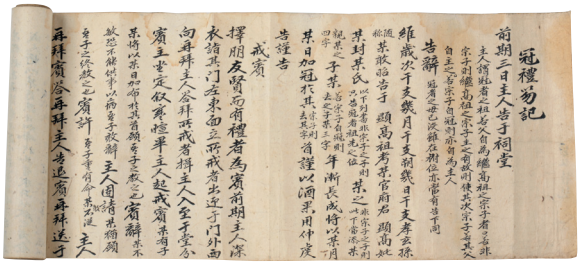
冠禮笏記

관례홀기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⑦빈자관자賓字冠者(빈이 관자에게 자를 지어준다): 빈은 계단을 내려와 동향하고, 주인은 계단을 내려와 서향한다. 관자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조금 동쪽에서 남향한다. 빈이 자字를 내려주고, 관자가 대답한다.

⑧예필禮畢(관례절차를 모두 마친다)

⑨출취차出就次(빈은 나가서 막차幕次로 나아간다)

⑩주인이관자 현우사당主人以冠者 見于祠堂(주인은 관자를 데리고 사당에 뵌다)

⑪관자현우존장冠者見于尊長(관자가 웃어른을 뵙는다)

특징 및 의의 관례홀기는 관례를 거행할 때 관자와 빈, 찬자 등이 행해야 할 의식절차를 정해놓은 식순으로, 실제 홀기의 내용은 의례 참석자의 행위와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당히 자세한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우리의 생활예절(전례연구위원회, 성균관, 2011), 조선시대 관혼상제1-관례 · 혼례(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필자 도민재(都民宰)

관혼상제
冠婚喪祭

정의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의례인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를 총칭하는 말.

역사 관혼상제冠婚喪祭라는 말은 『예기禮記』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그리고 여러 예서禮書에서 이미 관혼상제를 기본 의례로 다루고 있어 이 용어의 역사가 유구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유교식과 유사한 혼례와 상례가 행해졌으나 유교식 관혼상제의 개념이 확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혼례와 상례는 중국의 예禮를 원용하였다는 단편적인 기록들이 있지만, 그 형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예기 등의 고전적인 의례의 일부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에서 서옥제壻屋制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남귀여가男歸女家의 풍속을, 동옥저東沃沮의 10세 혼인약속 기록으로 혼인의 사전 약속 및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는 신랑이 백마를 타고, 초례 때 산 닭을 올리고 남녀가 서로 절을 하며, 예식 후에는 잔치를 하였다는 기록에서 유교식 혼례와 유사한 의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등의 기록을 보면, 상복을 입는 기간과 장사 지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동옥저에서는 곽槨을 사용하여 복차장複次葬을 하였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곽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 신라에서는 지증왕 5년에 순장殉葬을 금하고, 상복법을 제정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혼인을 하면 곧바로 장사에 사용할 물건을 준비하고, 빈장을 하는 풍속이 있었으며, 풍악을 울리며 장사를 지냈다. 또한 상이 나면 곡을 하고 부모와 남편은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등의 상기喪期가 정해져 있었다. 백제에서도 고구려와 같은 풍속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유사한 상례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시대에도 유교식과 유사한 혼례, 상례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고려 초에 송宋에서 대묘당도大廟堂圖, 제기도祭器圖 등 유교식 의례 관련 그림을 가져오고 성종대成宗代에 국가의 주요 제도를 유교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중국의 유교 의례가 본격적으로 수입된다. 965년(광종 16)에 세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기록으로 광종光宗·예종睿宗·의종대毅宗代에 관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혼례의 자세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자유혼이 많았고 예물을 주고받거나 술이나 쌀로 서로 호의를 교환하였다.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있었다. 고려 때에는 삼년상의 제도가 있었으나 역월제易月制를 적용하여 27일에 대상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985년(성종 4)에는 오복제도에 따라 복제를 정하고, 이에 따른 휴가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상례를 치렀던 것으로 보인다. 경종대景宗代에는 부모 기일에 1일 낮과 2일 밤의 휴가를 주고, 성종成宗·헌종獻宗·문종文宗·명종대明宗代에는 조부모의 기일, 처부모의 기일은 물론 삭망제, 시제時祭(2일간)에도 휴가를 주었다. 이와 함께 절에 빈소를 마련하고 화장하는 등 불교식 상례가 번창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상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유교식 상례나 불교식 상례는 상류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은 체계적인 상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려는 거의 전 시대에 걸쳐 유교식 상례로 전환을 시도했던, 고례古禮의 모방시대였다.

고려 말기 신진 사대부들이 『가례家禮』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례와 제례를 중심으로 유교식 관혼상제가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제도는 물론 관혼상제 역시 유교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한다. 또한, 숭유억불정책으로 불교와 불교의례를 억압하고 승려를 혁파함과 동시에, 유교식 관혼상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나간다. 유교식 의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파하는 일은 성리학을 연구하는 신진사대부들의 몫이었다. 그 결과 16세기 초반부터 이미 조선식으로 저술된 예서禮書들이 등장한다. 정책적으로도 7품 이하 관료에게 의무적으로 『가례』를 시험 보게 하는 등 유교식 의례 보급에 전력한다. 특히,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1394), 『경제육전經濟六典』(1397),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 『경국대전經國大典』(1485) 등 법전을 편찬하여 정책적으로 모든 제도와 의례를 유교식으로 일원화해 나간다.

16~17세기가 되면 성리학자들의 예학 연구와 실학자의 실천예학 연구 등에 힘입어 한국인의 일생의례는 유교식 관혼상제라는 이름으로 일반화하기에 이른다. 200여 종이 넘는 예서가 출간되었다는 것은 유교식 관혼상제에 그만큼 관심이 컸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관혼상제는 『가례』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조선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면서 수용한다. 『가례』가 유교식 관혼상제의 법전처럼 '고정된 규정'이었다면,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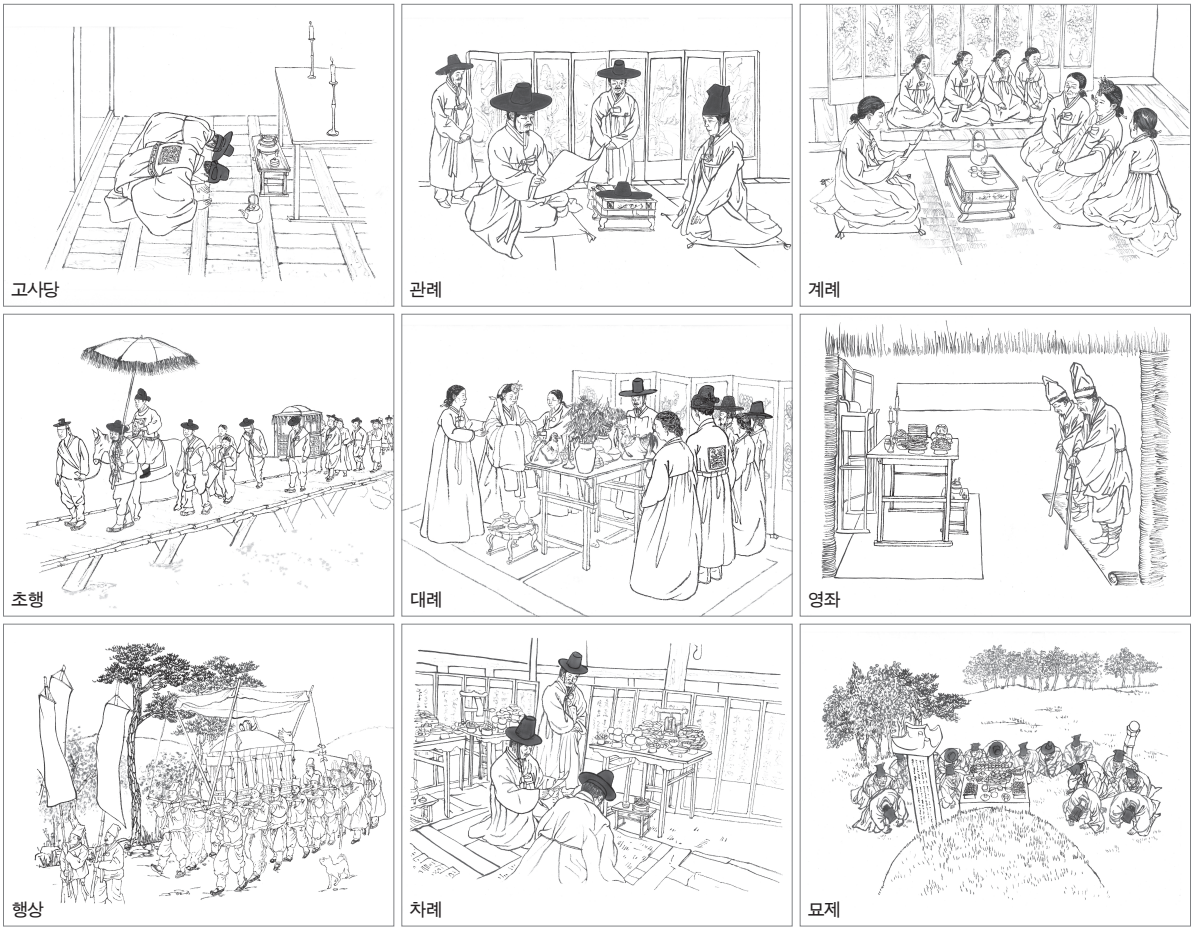

관혼상제 | 국립민속박물관

모본으로 하여 조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저술한 예서들은 '비고정적 변화'였던 것이다. 여기서 변화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교식 관혼상제가 조선의 사정과 환경에 적합한 유교식 관혼상제로 재탄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관례가 보편적인 성년식이 되고, 혼례는 친영親迎과 반친영半親迎을 수용함과 동시에 주자朱子 사례四禮와 주육례周六禮를 동시에 받아들인다. 상례는 삼년상을 기본으로 삼았고, 제례는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사대봉사를 하는 등 유교식 관혼상제가 조선의 의례문화로 완전히 정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개항과 함께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관혼상제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조선 말기 단발령 시행으로 관례와 계례笄禮가 쇠퇴하고, 전통 혼례 대신에 면사포와 웨딩드레스가 상징인 서구의 예배당 결혼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일제강점기가 되면 더욱 심화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관혼상제는 일제의 탄압과 근대화의 영향으로 문화적 전통의 격변이라는 큰 위기를 맞는다. 혼례에서는 전통 혼례와 예배당 결혼식에 일본식 예식장 혼례가 도입된다. 제사는 사대봉사가 약화하고, 상례에는 일본식 화장을 도입하는 등 변화의 물결이 밀려든다. 급기야 1934년 조선총독부가 근대화를 명분으로 의례의 간소화를 강제하는 「의례준칙」을 공포함으로써 관혼상제 역시 바뀌는데, 관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혼·상·제례만을 의례로 인정하였다. 혼례에는 약혼約婚을 강조하고, 예배당이나 신사, 절에서도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상례는 기존의 삼년상을 축소하여 14일, 복을 입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였고, 양복을 상복으로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견전遣奠을 없애고 단체장에서나 볼 수 있는 영결식永訣式을 발인發靷 전에 행하도록 하였다. 제사는 기제사와 묘제만을 인정하여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따랐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사례편람四禮便覽』(1844)이 1900년에 개정·증보되고, 이후에도 계속 출판되는 것을 보면 유교식 관혼상제의 문화적 전통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과 함께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고, 1999년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례는 의례로 인정되지 않다가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다시 의례로 인정을 받는다. 혼례는 1973년부터 종교 의식을 특례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회갑연도 의례로 인정받는다. 상례는 상기의 축소, 상복의 간소화 등이 강화된다. 제례는 기제사의 이대봉사, 절사, 연시제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단속의 대상이 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로 상기의 단축, 상복의 변화, 봉사대수의 축소 등 많은 변화가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혼례의 이벤트화로 기획결혼식이 성업하고, 장례식장과 상조회사相助會社가 상례를 대행하면서 장례지도사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등장하였다. 제사는 제사음식 대행업체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직업군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개인의 상례를 대행하여 개인이 의례의 절차나 방법을 모르더라도 의례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의례의 전문직업화 시대가 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종교 의례가 제 모습을 갖추어 현대사회의 관혼상제는 다양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내용 어떤 사회에 속한 개인이든 일생을 살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게 된다. 태어나서 부모의 부양을 받다가 신체의 성장에 따라 성인이 되고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며, 늙으면 노인으로서 부양을 받다가 죽음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관혼상제라는 하나의 통합된 가정의례의 질서 속에 수용하여 그 변화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관례는 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감을 알리는 성년의례成年儀禮로서 이것을 거쳐야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였다. 관례라 한 것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의관 정제를 정복으로 인정하였고, 관이나 머리쓰개를 써야 성인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을 쓰는 의례가 곧 성인으로 인정하는 의례인 것이다. 가족을 구성하는 최초의 의례인 혼례는 일생의 가장 큰 행사로 여겨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하였다. 그 때문에 혼인을 의논하는 의혼議婚, 예물을 교환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납채納采와 납폐納幣 등의 의례를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의 친영 제도보다는 반친영이나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변화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가족 구성원의 사망, 즉 식구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 질서의 위기는 엄격한 상례 절차를 거치면서 극복하였다. 이를 위해 오복제도五服制度에 입각한 상복제도를 엄격히 하였고, 삼년상을 치르면서 혼란을 극복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또한, 제례를 통해 조상과 자손의 유대를 지속하며 집의 영속성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화합과 질서를 추구하였다.

지역사례 조선시대의 정책적 장려로 보급·정착된 관혼상제였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집안이나 학파, 지역의 사정에 따라 실행 차원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집안, 학파, 지역에 따라 의례의 다름을 표현한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또한, 중국에 근거를 둔 『가례』는 조선의 상황에 맞게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고유문화와 융화하면서 지역 차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유교식 관혼상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작獻爵 방법이 학파에 따라 다르고, 제사상의 과일 진설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유교식 관혼상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의 작은 진통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관혼상제라는 의례의 전체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세부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혼례상에 반드시 용떡을 차린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 집으로 가는 기간이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달라 당일우귀當日于歸, 삼일우귀三日于歸, 심지어는 달묵이, 해묵이도 나타난다. 상례의 규정에는 없지만 성복제成服祭를 올리는 집안이 있고, 초분草墳을 만드는 서남 해안, 매장할 때 입관入棺하는 영남지역, 퇴관退棺하는 기호지역 등으로 차이가 있다. 제례에서는 제사상에 적을 올릴 때 도적都炙을 올리는 경상도, 산적散炙을 올리는 기호지역의 차이가 있다. 집안에 따라 고위와 비위를 합설하느냐 단설하느냐의 차이는 학

문적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가가례라는 지역, 학파, 집안의 차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을지 모른다.

특징 및 의의 서구의 영향을 받아 근대 학문으로서 수용된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 개인의 일생의례를 보는 틀은 출생, 성년식, 혼례, 상례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관례, 혼례, 상례, 제례라는 틀로 짜여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일생의례는 제사를 범주에 넣지 않고 출생을 중요시하는 반면, 관혼상제는 출생을 배제하고 제례를 매우 중요시한다. 관혼상제가 관례부터 시작하는 것은 성년 전에는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祈子나 출산과 관련한 의례는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나 갓 태어난 상태에서는 의례의 중심이 될 수 없으므로 의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례를 포함한 것은 가족공동체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집안의 영속을 중요시하는 성리학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조상에게까지 효孝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구의 일생의례에서는 사후의 효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 출생 자체를 중요시하여 출생을 의례에 포함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혼상제는 조선시대의 성리학 이념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된 유교식 관혼상제가 한국 의례의 문화적 전통이 된 특성이 있다. 한국 의례의 문화적 전통으로 확립된 유교식 의례는 한국의 고유문화 및 신앙 등과 서로 융화하여 한국만의 관혼상제로 전승되었다는 점이 관혼상제의 특징이다.

참고문헌 三國志, 高麗圖經,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김시덕, 역사민속학12, 역사민속학회, 2001), 관혼상제례의 지역적 다양성과 조사방법(정승모, 역사민속학1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박정희정권 시기 가정의례준칙과 근대화의 변용에 관한 연구(고원, 담론201 9-3,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일생의례의 역사(김시덕,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朝鮮原始諸種族の婚姻(張承斗, 朝鮮282, 朝鮮總督府, 1938).

필자 김시덕(金時德)

광중
壙中

정의 널을 안치하기 위하여 판 구덩이.

내용 사망한 지 3개월이 되면 매장을 하게 되는데, 『가례家禮』에 따르면 이를 위한 준비과정은 "기일 전에 장사지낼 만한 땅을 택하고[地之可葬], 날을 택하여 묘역을 열어 후토에게 제사를 지낸[擇日, 開塋域, 祠后土] 뒤 광을 파고[遂穿壙] 회격을 만드는 것[作灰隔]."이었다. 사마광司馬光은 "광중壙中은 곽이 겨우 들어갈 정도면 되고, 곽槨은 관이 겨우 들어갈 정도면 된다."라고 하여 크게 만들지 말 것을 당부하는데, 이는 도굴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광을 파는 것과 관련하여 『가례』 및 『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신의경申義慶의 『상례통재喪禮通載』와 『상례비요喪禮備要』 그리고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금정틀[金井機]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금정틀은 관의 크기와 횟가루의 양을 감안하여 네 개의 나무 조각의 네 귀에 구멍을 파고 결합하여 만든 틀로서, 땅 위에 놓아두고 광중을 파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정틀은 하관할 때와 방위를 살필 때도 이용된다.

광을 판 뒤에는 먼저 숯가루를 바닥에 깔고 굳게 다지는데, 두께가 두 치에서 세 치 정도 되게 한다. 그런 뒤에 석회와 가는 모래, 황토를 고루 뒤섞은 것을 그 위에 깐다. 별도로 얇은 판을 사용하여 회격을 만들되, 곽의 모양처럼 한다. 안에는 역청瀝青을 세 치 정도의 두께로 바르는데, 가운데는 관이 들어갈 정도가 되게 한다. 회벽은 관보다 네 치 정도 높게 하며, 석회 위에 놓고 곧바로 사방에 사물四物을 붓되, 또한 얇은 판으로 막는다. 숯가루는 밖으로 가도록 하고, 나머지 세 가지 물건은 안으로 가게 하여 바닥의 두께와 같게 한다. 다진 것이 굳으면 널판을 도로 위쪽으로 뽑아 올리고, 다시 숯과 회 등을 내려서 다지되 칸막이와 수평이 되면 그친다. 이것이 회격을 만드는 과정이다.

숯은 나무뿌리와 개미 등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석회는 개미나 도적이 모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모래·흙과 합쳐져 굳어진 석회는 접착력이 생겨, 세월이 오래 지나면 쇠나 돌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격을 만드는 이유는 시신의 부패 방지가 아니라, 부패할 때까지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광중에 흙을 떠 넣는 모습 | 충남 태안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의 묘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이전에는 석실石室과 석곽묘石槨墓가 중심이었다가, 『가례』 방식의 회격묘가 17세기 중반 이후 조성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이르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충남 지역의 경우 하관을 위해 광을 팔 때는 1m 남짓 외광外壙을 먼저 파고 그 중앙에 시신만 안치할 수 있도록 내광內壙을 판다. 시신이 안치될 내광을 '내지內地'라고 한다. 내광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위에 홍대를 덮는다. 상주들이 돌아가면서 취토를 한 뒤 내광과 외광의 1/3 정도 까지는 흙과 석회를 섞어서 채우고, 외광에 어느 정도 흙이 채워지면 달구질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儀節, 전통 상례(임재해, 대원사, 2000), 조선시대 사대부 회격묘 연구(어원선,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장동우(張東宇)

교배례
交拜禮

정의 전통혼례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맞절을 하는 예식.

역사 고려시대에 들어 온 송나라 『주자가례朱子家禮』나 1844년(헌종 10)에 나와 널리 행해진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친영親迎의 절차가 있다. 교배례交拜禮는 신랑이 신부를 맞는 친영의 한 절차로, 지금까지 전통혼례에서 행해지고 있다. 1428년(세종 10)에 세종은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친히 아내를 맞아들이는 친영의 예禮는 예로부터 있었던 풍속이니, 갑자기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낭자나 공주의 혼인도 이 풍속을 따라야 한다."라고 교지敎旨를 내린 바 있다.

내용 교배례는 대개 신부 집에서 하는데, 대청이 넓은 집에서는 대청에,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마당에 차일遮日을 치고 큰상을 놓는다. 지방과 가문에 따라 다르나, 상 위에는 대개 홍 촛대와 청 촛대·소나무와 대나무를 꽂은 화병·밤·대추·쌀·표주박잔 한 쌍·보자기에 싼 암탉과 수탉 등을 올려놓는다. 화병에 꽂은 소나무 가지에는 홍실을, 대나무 가지에는 청실을 걸친다. 이를 '교배상交拜床' 또는 '대례상大禮床'이라고 한다. 대례상의 동쪽과 서쪽에 술 주전자와 술잔을 올려놓은 작은 상을 놓고 돗자리를 편다. 교배상의 동쪽과 서쪽에는 물대야와 수건을 준비해 둔다. 시간이 되면 홀기笏記를 부르는 사람(집례)의 진행에 따라 식을 시작한다.

①신랑 측 시자侍者는 붉은 책 초에, 신부 측 시자는 푸른 책 초에 불을 켠다. 요즈음에는 신랑·신부의 어머니가 홍초와 청초에 불을 붙인다. ②혼례복을 입은 신랑과 신부가 나와 신랑은 교배상의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준비해 놓은 대야의 물에 손을 씻는다. ③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읍揖하고, 신부는 답례로 신랑을 향해 읍한다. ④신랑은 교배상의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마주 선다. ⑤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하면 신랑은 한 번 절한다. ⑥신부가 다시 두 번 절하고, 신랑은 한 번 절한다. 이것이 교배례의 절차인데, 신혼예식에서는 '신랑·신부 맞절'로 바뀌어 선 채로 맞절을 한다.

지역사례 대례상의 상차림은 지방에 따라 다른데, 강원도 원주에서는 대례상에 밤·대추·용떡·콩(메주콩)·살아 있는 닭을 놓는다. 신랑·신부가 절하는 횟수도 지방에 따라 달라서 경기도 화성에서는 신부가 세 번 절하면 신랑은 두 번 절하고 반절한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신부가 4배를 하면 신랑은 2배를 한다. 전라북도 순창 지방에서는 신부가 재배하면 신랑은 한 번 절하는 것을 한 차례만 한다.

교배례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신랑이 동편에 서고, 신부가 서편에 서는 것은 남동여서男東女西의 전통에 의한 것이다. 신부가 두 번 절하고, 신랑이 한 번 절하는 것은 여성은 음陰이므로 음의 수인 짝수 중 가장 작은 수로 절하고, 남성은 양陽이므로 양의 수인 홀수 중 가장 작은 수로 절하는 것이다. 초례상에 수탉과 암탉을 올려놓는 것은 '수탉 같은 신랑', '암탉 같은 신부'가 되라는 뜻을 지닌 것이다. 수탉은 암탉과 병아리를 잘 보호하며 먹이를 구해 주고, 생활권生活圈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집 수탉과 용감히 싸우며, 시간의 흐름을 알아 울어준다. 신랑은 이러한 수탉을 본받아 처자식을 잘 보호하며 먹여 살리고, 생활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히 싸울 줄 알며, 세상의 흐름을 잘 알아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뜻일 것이다. 암탉은 수탉의 보호를 받으며 병아리를 잘 기르는데, 신부는 암탉처럼 살림 잘 하고, 자녀를 잘 기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교배례는 신랑·신부가 서로 큰절하며 백년해로百年偕老할 것을 서약하면서 삶의 교훈을 주는 의례이다.

참고문헌 우리의 생활예절(성균관, 1992),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종합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2004), 한국인의 삶과 문화(최운식, 보고사, 2006),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최운식(崔雲植)

교의
交椅

정의 제례를 올릴 때 신주神主를 모시는 의자.

내용 원래 교의交椅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던, 다리를 접을 수 있는 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례를 행할 때 '시동尸童'이라 불리던 어린 사내아이를 의자에 앉혀 놓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후에 '시동'이 '신주'라는 상징적 매체로 바뀌면서, 교의는 '앉다'라는 실용적 목적보다 '신주를 봉안한다'는 상징성을 더 갖게 되었다. 교의는 제상祭床보다 더 높아야 했으므로 다리만 높게 만들었다.

탈상 전 궤연几筵을 모실 때 쓰는 것은 영좌교의靈座交椅, 제사나 사당에서 쓰는 것은 신좌교의神座交椅라고 한다. 전자가 궁중용일 경우는 당망칠을 하였고, 민간용일 경우 전혀 칠을 하지 않았다. 상례喪禮 때에는 요거腰擧에 다리는 없고 좌대만 있는 무부교의無趺交椅를 사용하였다.

교의는 신주를 모셔 두는 다리가 긴 의자인데 자리는 매우 협소한 편이다. 교의 등받이에는 팔걸이가 붙어 있으며, 제상의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런 장식이 없는 밋밋한 나무를 이용해 짜서 만들며, 제례 때에는 교의 위에 '좌욕座褥'이라 하여 천을 깔고 그 위에 신주를 모셨다.

교의는 제사를 지낼 때 주독主櫝과 신주 및 혼백상자를 올려놓는, 다리가 긴 의자 형태의 받침대이다. 앞에 위치하는 제사상보다 더 높게 보이기 위하여 길게 뻗은 다리가 사방탁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사상에 가려 상단만 보인다. 조상의 넋을 의자에 편안히 모시려는 의도인데, 정교한 조각과 풍혈로 정성을 다한 것이 있는가 하면 투박하게 형태만 갖춘 것 등 외형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의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제상 뒤쪽에 놓아 주독(위패함)이나 지방함을 모시는 자리이다. 산 사람이 앉는 의자처럼 생겼으나 작은 크기이며 높이는 제상과 가지런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사전(두산동아, 1995), 민족생활어 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 미의 재발견-목칠공예(솔출판사, 2005).

필자 권삼문(權三文)

교환혼
交換婚

정의 신랑 집과 신부 집에서 자기 집단에 속한 여성을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성립되는 혼인.

내용 교환혼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은 호주 원주민의 경우, 한 집단을 반족半族(moiety)이라는 두 집단으로 구분한 뒤에 여자를 서로 교환하였다. 이렇게 제한된 집단 내에서 여자를 맞교환하는 것을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Claude)는 '한정 교환혼(marriage by restricted exchange)'이라고 불렀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대칭적 교환혼(marriage by symmetrical exchange)'이라고도 불리는 '한정 교환혼' 이외에 '일반 교환혼(marriage by generalized exchange)', '비대칭 교환혼(marriage by asymmetrical exchange)'도 존재한다. 이 교환혼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여자를 주고 그 집단에서 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집단으로부터 여자를 받는 혼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환혼은 인도 북동부와 동남아시아 등에 분포되었다.

이광규에 따르면 신라 왕실의 혼인 체계에는 '한정 교환혼'과 '일반 교환혼'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데, 신라시대 후기에 오면 '일반 교환혼'이 지배적이 되었다. 백제와 고구려 왕실의 경우에는 '일반 교환혼' 형태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교환혼 형태는 사라지게 되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최근까지도 존재하였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보고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하층민 사이에서 삼각 혼인이 거행되었다고 한다. 삼각 혼인은, 갑·을·병 세 사람에게 혼인 적령기의 자녀가 있다면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각각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교환혼'에 해당한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이를 '물레혼'이라고도 불렀다.

극히 드물지만 '한정 교환혼'도 한국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함경남도의 하층민 사이에서는 두 남자가 여동생을 서로 교환하여 혼인하였다고 한다. 서울 주변에도 '누이바꿈혼'이 존재하였다.

특징 및 의의 교환혼은 혼인의 역사에서 족외혼이나 족내혼이라는 규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친족 집단에 기반을 둔 교환혼은 거의 사라진 혼인 방식이다.

참고문헌 인류혼인사(Westermack, Edward, 정동호·신영호 역, 세창출판사, 2013),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한국가족의 사적구조(이광규, 일지사, 1977), The elementary sturctures of kinship(Lévi-Strauss, Claude, Beacon Press, 1969).

필자 강정원(姜正遠)

국궁
鞠躬

정의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이 식사를 다 마쳐 고맙다는 의미의 표시로서 일동이 일어서서 허리를 75도 정도로 가볍게 구부렸다 반듯이 펴는 행위.

내용 국궁鞠躬의 기원은 중국 상대商代의 제천祭天의식인 '국제鞠祭'이다. '국鞠'은 희생인 소나 양을 죽이지 않고 통째로 굽혀서 원형으로 올리는 것, 즉 제물을 굽혀 올린다는 의미였다. 후에는 사람이 몸을 굽히는 동작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궁은 예의의 표시로 허리를 굽혀 상대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오늘날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일반인은 이러한 인사를 한다. 제사에서 국궁은 큰절을 하지 않고 서서 몸을 굽힌다는 의미로 쓰인다.

국궁은 원래 국가제사에서 배례하기 전에 몸을 숙이는 일을 말하지만, 영남지방에서는 헌다獻茶하고 고개를 숙이고 잠시 묵념하는 것을 국궁이라고 한다. 국궁할 때는 두 손을 몸 앞에 모으고 허리를 굽힌다. 두 손을 몸 앞에 모을 때는 남자는 왼손이 위에, 여자는 오른손이 위에 오도록 한다.

특징 및 의의 상반신을 굽혀 절하는 모양인 국궁은 '곡신曲身' 또는 '염신斂身'이라고도 한다. 『예기禮記』와 『논어論語』에 보이는데, 마치 문이 좁아서 들어가지 않는 듯 몸을 굽히는 것으로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모양이다.

참고문헌 유교대사전(성균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1),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12).

필자 이희재(李曦載)

경북 고령 점필재 김종직 종가

경북 안동 풍산 류씨 묘소

국궁 | 국립민속박물관

국수

정의 반죽한 밀가루·메밀가루 따위를 얇게 밀어 가늘게 썰거나 국수틀에 눌러 가늘게 뽑아낸 식품의 총칭, 또는 그것을 삶아 국물에 말거나 비벼 먹는 음식.

역사 국수는 옛 기록에 면麵, 麪, 麵, 국수掬水, 匊水, 탕병湯餠 등으로 나온다.

『고려도경高麗圖經』 제22권 향음조鄕飮條에 "나라 안에 밀이 적어 장사치들이 경동도京東道에서 사오므로 면의 값이 대단히 비싸 성례盛禮 때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고려사高麗史』에서도 "제례祭禮에는 면을 쓰는데 사원에서 만들어 판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당시 밀은 매우 고가의 귀한 재료로 판매되었고,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혼례 등의 잔칫날이나 제례를 지내는 특별한 날에 먹을 수 있었던 별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의례음식으로 국수를 쓰는 식생활 풍속은 이 때부터 생겨난 것 같다.

한편 고려 말의 중국어 회화책인 『노걸대老乞大』에 "우리 고려인은 습면濕麵을 먹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였고,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에서는 '습면'을 '국슈'로 번역하였다. 18세기의 『재물보』 탕병조湯餠條는 '탕병'을 '국슈'라 하였고, 『아언각비』는 면의 방언을 '국수匊水', 서유구의 『금화경독기』는 '국수掬水'라 기록하

였다. 조선시대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옹치잡지饔食熙雜志』, 『요록要錄』 등에도 메밀국수, 녹두녹말국수 등 총 50여 종에 가까운 국수 종류가 나오는데, 밀가루·메밀·녹말·콩·칡가루·밤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면에, 쇠고기나 꿩고기 육수, 오미잣 국물, 깻국물을 만 형태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냉면과 비빔국수에 대한 기록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국수문화가 다채롭게 발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통시대의 조리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수의 주재료는 메밀가루·밀가루·녹말가루 순이었으나, 해방 후 수입 밀가루가 많아지면서 밀국수요리가 일반화된 것 같다.

내용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국수는 돌잔치, 생일, 회갑잔치 등 수연례壽宴禮를 비롯한 관례冠禮, 혼례婚禮 등의 축하 잔치와 제례祭禮 등의 추모 의례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의례음식이었다. 우리 민족은 잔칫날 국수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함께 기뻐하고 경사스러워 했으며, 제례음식을 음복함으로써 추모의 의미를 함께했다. 국수는 접대 음식이자 잔치 음식으로서, 그리고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로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일례로 출생과 연관된 국수 관련 식생활 풍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나 『매천집梅泉集』에 출생 후 3일째 되는 날에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손님[湯餠客]들이 국수[湯餠]를 먹던 풍속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국수는 오랫동안 출생 관련 축하음식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돌잔치를 열어 주는 것이 전통 풍속인데, 이때 돌상에는 흰밥과 미역국, 나물과 구이, 백설기와 수수경단, 과일 등의 음식 외에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는 국수도 함께 놓고, 점심에는 국수장국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국수잔치'를 벌인다. 또한, 상에 쌀·돈·국수 등을 놓고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는 '돌잡이' 풍속을 통해, 아이가 국수를 집으면 장수할 것이라고 여긴다. 61세 생일인 '회갑回甲' 같은 수연례에도 주인공 앞에 국수장국상을 차려 주면서 장수를 기원하고, 오신 손님들께 잔치음식으로 국수를 대접한다. 이를 보면, 국수는 출생의례에서 중요한 의례음식이자 접대음식이면서 잔치음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면 | 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식생활풍속』에서는 국수를 주식으로 차린 국수장국상을 '면상麵床'이라고 하는데, 잔치에 국수로 손님을 접대하는 풍속이 상례가 되자 '잔치국수'라는 음식명까지 생겨났다. '잔치국수'에는 국수장국 외에 편육, 전유어, 찜, 잡채, 신선로, 느리미, 회, 김치, 식혜나 화채, 과일, 떡 등을 함께 차린다. 계절에 따라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면溫麵을,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면冷麵을 말아 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일명 '잔치국수'가 온면의 형태인 것으로 보아,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국수는 주로 온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면은 국수를 삶아서 헹군 뒤 사리를 만들어 두었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장국에 '토렴'하여 데운 후 그릇에 담고 쇠고기볶음·편육·달걀지단 등의 꾸미를 얹어 더운 장국을 부어 만든다. 옛 기록에는 장국으로 쇠고기나 꿩고기 육수를 썼으나 20세기 이후 멸치육수를 많이 쓰고 있다. 한편 냉면은 차갑게 식힌 육수에 동치미나 배추김치·나박김치 국물을 섞어 쓰거나 육수만 단독으로, 혹은 동치미나 김칫국물만 따로 쓴다. 면을 만 다음, 오이절임, 배, 편육, 동치미 무 썬 것, 달걀 등을 얹어 낸다.

또한 제례와 관련된 국수 풍속을 보면, 면이 고려시

대에 이미 제례용으로 판매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조상에게 올리는 제례에서 국수를 제수로 사용했고, 이러한 풍속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 중기 『쇄미록瑣尾錄』의 저자인 오희문吳希文의 기해년(1599) 일록을 보면, 임진왜란이 나서 피란살이 중임에도 메밀국수를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니 제수로서 국수가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수의 진설은 각 집안에 따라 달리 행하는 예법이 다르지만 주로 제2열에 면(국수)과 편片(떡)을 올린다. 제례상에 편이 있으면 반드시 면을 놓는다고 인식되었고 면서병동麵西餠東이라 하여 국수를 서쪽에 떡을 동쪽에 놓는다. 제수로 올리는 국수를 '메국수'라 부르기도 한다. 국수를 놓을 때는 국수를 삶아서 면기 등 제기에 건더기만 건져 담고 국물은 붓지 않으며 계란채 등을 고명으로 얹어 놓는다. 『시의전서是議全書』에도 "국수사리를 합에 담고 위에 계란채를 뿌려 쓴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 얹는 고명은 잣, 깨소금 등으로 다를 수 있다. 음복 시에는 장국밥이나 비빔밥 등 제삿밥에 메국수를 고명처럼 얹어 먹기도 한다. 한편 제수 준비에 엄격한 종가에서는 국수를 직접 만들어 올리기도 하지만 국수를 구하기 쉬워지면서 시중에서 구매한 국수로 제수를 준비하는 종가가 많아졌다.

특징 및 의의 국수가 일생의례 음식으로 이용되었던 이유는 국수의 모양이 길게 이어진 것처럼 '수복壽福'과 '장수長壽' 또는 '추모追慕'의 의미가 길게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출생·생일·돌·회갑 등 출생의례에는 '국수'의 길쭉한 모양처럼 수명이 길기를 기원하는 '장수'의 뜻을, 혼례에는 결연結緣이 길어지기를 바라는 '백년해로'와 '수복'의 뜻을, 제례에는 '추모'의 뜻을 담았다. 이처럼 국수는 기원이 담겨 있는 음식이었다.

한편 국수가 혼례잔치 음식으로 자주 쓰이면서, 국수 자체가 혼례를 상징하기도 했다. 민간에서 "국수를 언제 먹여줄래?"라는 물음은 "결혼을 언제 하느냐?"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는 혼인 잔치에 찾아오신 손님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음식문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잔치음식으로 '국수장국상'을 차린 이유에 대해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서는 "국수장국상에는 편육 한 접시라도 놓으니 대접 중에 낫고, 온갖 잔치나 아침, 점심으로 안 쓰는 데가 없다."라고 하였다. 즉, 국수장국과 더불어 편육 등 다른 귀한 음식도 함께 대접할 수 있으므로 손님에게 더 나은 대접을 할 수 있는 손님 접대음식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시아 면류문화(윤덕인, 동아시아 식생활학회 춘계학술대회, 2006), 우리나라 식생활문화의 역사(윤서석, 신광출판사, 1999), 종가의 제례와 음식9(국립문화재연구소, 월인, 2006), 한국식생활풍속(강인희, 이경복, 삼영사, 1984), 한국요리문화사(이성우, 교문사, 1999), 한국전래면류음식사연구(장지현, 수학사, 1994).

필자 정현미(鄭賢美)

국제결혼
國際結婚

정의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의 결혼.

내용 국제결혼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결합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국제결혼에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샌즈(Saenz)와 같은 학자는 국제결혼을 '전쟁신부 결혼'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미국이 아시아에 오래 주둔하면서 미군과 주둔국의 여성 사이에 전쟁신부가 발생한 데서 비롯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신부인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고유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특성을 지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통일교도에 의해 국제결혼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발생은 주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에 이루어졌고 종교적 목적과 상관없이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국제결혼은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 총각의 신붓감이 부족해지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에서 이들을 찾았고,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려

는 동북아시아 지역 처녀들과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 매우 증가하였다. 통계청 인구동태에 의하면, 1990년에 1.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율이 2005년에 13.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6년에는 11.9%, 2007년 11.1%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3년 국제결혼의 비율은 전체결혼의 8.0% 수준을 차지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 동안 결혼하는 부부 12~13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어 국제결혼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1990년 전체 국제결혼의 13.1%에 불과하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2010년에는 76.7%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70.5%에 이른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2000년대 초에는 중국·일본·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러시아 등 다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 여성과의 결혼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2001년 70.0%에 달하던 것이 2009년에는 45.2%, 2013년에는 33.1%로 그 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비중은 매우 증가하였다. 2001년에 1.3%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34.1%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1.5%에 이르러 꾸준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중국 및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전체의 63.6%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편,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은 2013년 전체 국제결혼의 29.5%를 차지한다.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미국(22.9%), 중국(22.6%), 일본(17.8%) 순이다. 중국·일본·나다 남성과의 혼인은 2012년보다 감소하였고, 베트남·호주·미국 등 다른 국가 남성과의 혼인은 증가하였다.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결혼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동기와 기대로 인해 한국남성과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실제로 특정한 직업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에게 국제결혼은 노동 이주보다 접근이 용이한 이주 방식이며,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 보장과 취업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 배우자로서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과정 없이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주 초기부터 직면하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기대 상실,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및 사회의 편견에서 오는 차별 등 사회·문화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인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결혼 적령기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해졌고, 농촌 지역 및 도시 노동자계층의 남성이 결혼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비교적 낮아 이들이 국내의 결혼시장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이들과 결혼하고자 하는 국내 여성의 수가 부족해졌다. 따라서 이들에게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배우자 선택의 주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국제결혼은 좀 더 나은 삶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의 요구와, 독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인 남성들의 요구가 부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은 증가하여 2013년 전체 결혼의 8.0%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대부분이며 중국·베트남 여성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국적도 다양해져서 2000년대 초에는 중국·일본·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러시아 등 다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가(정찬석,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2009),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유철인, 한국문화인류학20-2, 한국문화인류학회, 1996), 인구동태(통계청, 2013).

필자 박성용(朴晟慵)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

정의 조선 성종成宗(재위 1469~1494) 대에 신숙주申叔舟(1417~1475)·정척鄭陟(1390~1475) 등이 왕명에 의해 오례五禮를 중심으로 조선의 기본적인 예법과 절차 등을 규정해놓은 책.

내용 조선 초기 세종世宗(재위 1418~1450)은 국가의 기본예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허조許稠(1369~1439) 등에게 명하여 오례五禮에 관한 책의 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세조도 강희맹姜希孟(1424~1483) 등을 통해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비롯한 고금의 각종 예서들을 참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지만, 이 또한 완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종대인 1474년(성종 5)에 이르러 신숙주·정척 등이 오례를 중심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였다. 『국조오례의』의 체재는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로 나누어 예별로 세부 조목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길례 56개 조목, 가례 50개 조목, 빈례 6개 조목, 군례 7개 조목, 흉례 91개 조목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8권 5책으로 간행되었다.

『국조오례의』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함께 실질적으로 조선의 기본 예전禮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유교 이념을 통치기반으로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조선에서 『국조오례의』는 국가와 민간에서 준수해야 할 예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례를 위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제로 적용할 부분은 많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주자의 『가례』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점차 강화되었다. 『국조오례의』는 성종조 이후에도 수차례 중간되었고, 이를 토대로 『서례序禮』,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등의 편찬이 이어졌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궁합
宮合

정의 혼인을 하려는 남녀의 띠[年支]나 사주四柱를 일정한 법칙에 대입해서 앞으로 혼인 생활의 길흉吉凶을 미리 헤아려 보는 것.

역사 혼인을 앞두고 길흉을 점치는 가취점嫁娶占 관습은 적어도 춘추시대(B.C.E. 770~403)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궁합의 기원은 가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춘추시대에 쓰인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에는 혼인을 앞두고 남자 쪽에서 길흉을 점쳐, 점괘가 길하면 여자 쪽에 알린다는 내용이 나온다. 반고班固(32~92)는 『백호통의白虎通義』에서 『의례』「사혼례」의 문명問名 내용을 인용하면서 아내를 맞이할 때 두 사람이 서로 마땅한지를 알아보려고 점을 친다고 하였다. 주자朱子(1130~1200)는 납길納吉할 적에 점괘가 불길하게 나오면 혼인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취점 풍속은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전해져 왔으며 조선시대까지는 가취점이 널리 행해졌다. 조선 중기의 윤휴尹鑴(1617~1680)는 『백호전서白湖全書』에서 혼례의 모든 행사는 사당에서 점을 쳐서 그 명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능화李能和는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1927)의 '남녀복명男女卜命' 항목에서 "우리나라 습속에 딸을 출가시키고자 할 때, 먼저 운명을 점쳐 보는 풍습이 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진 것이다. 조선 초기에 이 풍속이 성행하였고 관신가官紳家에 그 예가 더 많았다."라고 하였다. 세자빈을 간택할 때 길흉을 점치고 상相을 봤다는 『세종실록』의 기사와 『부계기문涪溪記聞』(1612)에 실린 남이南怡(1441~1468) 이야기도 가취점이 궁합 보는 것을 대신하는 좋은 예이다.

'궁합宮合'이란 용어는 명대明代 임소주林紹周가 펴낸 택일서인 『천기대요天機大要』「혼인문婚姻門」의 '남녀구궁궁합법男女九宮宮合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한漢 고조高祖(재위 B.C.E. 202~B.C.E. 195) 치세에 북방 유목민인 흉노匈奴가 침입해오자 왕실의 여자를 흉노에 시집보내는 등의 조건으로 화친조약을 맺었고, 당대唐代까

지 이런 폐단이 계속되자 흉노의 청혼을 거절하는 핑계로 삼으려고 여재呂才(605~665)가 구궁궁합법九宮宮合法과 합혼개폐법合婚開閉法 등의 궁합법을 비로소 만들어 시행하여, 그 후로 궁합을 보는 관습이 전해졌다고 널리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636년(인조 14) 성여춘成汝椿이 『천기대요天機大要』를 도입하여 간행하면서 '궁합'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82년(고종 19)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상上이 이르기를 '궁합은 어떠한가?'하니, 안경린 등이 아뢰기를 '복덕福德의 궁합입니다. 천지가 덕을 합하여 만물이 의뢰하여 살아가니, 수부귀다남자壽富貴多男子의 격입니다.'라고 하였다."라는 기사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궁합'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타난다.

내용 옛날에 자식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등짐장수가 신세를 비관하여 못에 빠져 죽으려다가 산신령으로부터 기이한 안경을 얻었다. 집에 돌아와 그 안경을 끼니 마누라는 개[戌], 자신은 닭[酉]으로 보였다. 그는 자기 부부가 닭과 개 사이다 보니, 그동안 자식도 없었고 가난하게 살았음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다른 등짐장수 부부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왔는데, 안경을 끼고 보니 남편은 개, 아내는 닭이었다. 그 부부 역시 자식이 없었고 매우 가난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날 이후 부부간의 인연을 서로 바꾸어 살았다. 그러자 두 부부 모두 아들을 낳고 많은 재산을 모으며 유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궁합이 생긴 까닭에 관해 민간에서 전해오는 이 이야기는 궁합이 갖는 의미를 잘 나타낸다

궁宮은 집[宀] 안에 여러 개의 방[呂]이 있음을 의미하는 글자로, 궁합宮合은 '가문과 가문 간의 긴밀한 결합'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통속적으로는 '한 지붕[宀] 밑에서 두 개의 입[口]이 어떻게 조화[合]를 이루며 잘살 수 있을까?'를 의미한다. 따라서 궁합은 '가문(배경·지위·재력·학력·직업) 간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의미에서부터 '성적性的 조화'라는 생리적 의미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궁합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겉궁합'이라 하고, 생리적 의미를 '속궁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주에 사람의 운명이 나타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혼인 때 반드시 사주를 주고받는 풍속이 있었다. 신랑 될 사람과 신부 될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보아, 두 사람이 혼인하기에 적합해야 비로소 혼사를 진행했다. 정혼定婚한 뒤에는 신랑 될 사람의 사주를 적은 사성四星·사주단자四柱單子를 여자 쪽에 보냈다. 사주단자가 없으면 저승에 가서도 부부가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여겨서, 여성은 사주단자를 평생토록 장롱 속에 잘 간직했다. 그리고 여성이 죽으면, 사주단자를 관 속에 같이 넣어 주었다.

혼삼재婚三災는 특정 띠와 띠가 만나면 부부가 생사이별하고 가산이 흩어지며 병액病厄으로 고통을 받고 모든 일을 중도에서 작파하게 된다는 악재를 말한다. 첫째, 연지年支 인寅·오午·술戌은 연지 자子·축丑·인寅을 꺼린다. 즉, 호랑이띠·말띠·개띠인 사람은 쥐띠·소띠·호랑이띠를 만나면 혼삼재가 된다. 둘째, 연지 해亥·묘卯·미未는 연지 유酉·술戌·해亥를 꺼린다. 즉, 돼지띠·토끼띠·양띠인 사람은 닭띠·개띠·돼지띠를 만나면 혼삼재가 된다. 셋째, 연지 사巳·유酉·축丑은 연지 묘卯·진辰·사巳를 꺼린다. 즉, 뱀띠·닭띠·소띠인 사람은 토끼띠·용띠·뱀띠를 만나면 혼삼재가 된다. 넷째, 연지 신申·자子·진辰은 연지 오午·미未·신申을 꺼린다. 즉, 원숭이띠·쥐띠·용띠인 사람은 말띠·양띠·원숭이띠를 만나면 혼삼재가 된다.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오늘날에도 성행하고 있는 궁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구궁九宮 궁합법, 납음오행納音五行 궁합법, 신살神殺 궁합법, 사주四柱 궁합법 등이 있다. 구궁 궁합법은 생기복덕 궁합법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남녀의 나이를 갖고서 일상생기一上生氣, 이중천의二中天醫, 삼하절체三下絕體, 사중유혼四中遊魂, 오상화해五上禍害, 육중복덕六中福德, 칠하절명七下絕命, 팔중귀혼八中歸魂 식으로 생기복덕을 차례로 따져 생기·천의·복덕에 해당하면 길한 궁합, 절체·유혼·귀혼이면 보통 궁합, 화해·절명이면 흉한 궁합으로 보는 방법이다.

납음오행 궁합법은 남녀 간 생년 간지의 납음오행納音五行이 서로 생극生剋하는 관계로 궁합의 길흉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생년 간지의 납음오행이 남녀 간에 상생 관계면 좋고, 상극 관계면 나쁘며, 상극이라도 남자가 여자를 극하는 관계면 무난하다. 또한, 오행이 같은 비화比和 관계

면 토土와 수水의 비화는 좋으나, 금金·목木·화火의 비화는 나쁘다. 구궁 궁합법보다 납음오행 궁합법이 민간에서 더욱 널리 활용되었다. 왜냐하면 납음오행의 생극 관계로 궁합을 보는 것이 구궁을 순역順逆으로 짚어서 보는 것보다 훨씬 쉽고 더 간편하기 때문이다.

신살 궁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진살怨嗔煞, 元嗔煞이다. 이능화도 『조선여속고』에서 "우리 혼가 풍속에서 원진을 꺼리니, 원진은 곧 성상星相의 흉살을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즉, 쥐띠와 양띠[子-未], 소띠와 말띠[丑-午], 범띠와 닭띠[寅-酉], 토끼띠와 원숭이띠[卯-申], 용띠와 돼지띠[辰-亥], 뱀띠와 개띠[巳-戌]가 혼인하면 부부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평생 불화하며 심지어 생이별이나 사별까지 한다고 여겨 궁합에서 매우 꺼리는 풍속이 지금도 항간에 성행한다. 원진살처럼 서로 만나면 나쁘다는 궁합으로 육충六沖이 되는 관계가 있다. 호랑이띠와 원숭이띠[寅-申], 뱀띠와 돼지띠[巳-亥], 쥐띠와 말띠[子-午], 토끼띠와 닭띠[卯-酉], 용띠와 개띠[辰-戌], 소띠와 양띠[丑-未]이다.

서로 만나면 좋은 궁합이라는 띠도 있다. 육합六合이나 삼합三合이 되는 관계인데, 육합은 쥐띠와 소띠[子-丑], 호랑이띠와 돼지띠[寅-亥], 토끼띠와 개띠[卯-戌], 용띠와 닭띠[辰-酉], 뱀띠와 원숭이띠[巳-申], 말띠와 양띠[午-未]로, 서로 좋은 배합이라고 한다. 삼합은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申-子-辰],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亥-卯-未], 호랑이띠와 말띠와 개띠[寅-午-戌], 뱀띠와 닭띠와 소띠[巳-酉-丑]로, 서로 좋은 궁합이라고 본다.

사주 궁합법은 띠만 갖고 보는 여느 궁합법과 달리, 남녀 모두의 연월일시 사주 전체를 갖고 음양오행의 중화中和 여부와 육친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궁합의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할 때 사주를 적은 종이(사성·사주단자)를 혼인 전에 교환해 보는 풍습이 있다. 혼인할 두 사람의 사주를 따져 보고 비교해 봄으로써 두 사람이 혼인하기에 길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궁합의 적합 여부가 혼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이 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문명적 사고의 영향으로 설령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징 및 의의 혼인하려는 남녀의 띠나 사주를 가지고 앞으로 부부 금실은 어떠하며 평생 해로할 수 있는지 등 장래 혼인생활의 길흉을 미리 점치는 궁합이 전통사회의 중매혼 풍조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졌으나, 근래 자유혼 풍조가 일반화되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역학대사전(조성우 외, 명문당, 1994), 조선여속고(이능화, 동양서원, 1927), 한국구비문학대계7-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 사주명리 연구(김만태, 민속원, 2011).

필자 김만태(金萬泰)

궐명
厥明

정의 날이 바뀌는 첫 새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사 의례에서 망자가 사망한 당일 새벽시간을 말함.

내용 궐명厥明은 '먼동이 틀 때', 질명質明은 '날이 밝아올 때'를 말한다. 즉, 날이 밝을 무렵을 말하는 궐명은 질명보다 더 어두운 새벽 시간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자면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 해당하는 때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바른 예절이었다.

특징 및 의의 제사는 망자가 사망한 당일에 지낸다. 사망 전날은 제사를 준비하는 재계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제사를 준비하는 날 저녁에 일찍 제사를 마침으로써 마치 제사를 지내는 날이 망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것처럼 되었다. 전통적으로는 사망한 날 새벽에 제사를 지냈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에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궐명행사厥明行事의 정신은 고인에 대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聞韶家禮, 二禮畧解.

필자 이희재(李曦載)

근친
觀親

정의 시집온 신부가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뵙는 일.

역사 근친觀親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조실록太祖實錄』에 근친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 초에 근친을 행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근친은 고려 때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인 출신 지규식池圭植이 1891년에서 1911년까지 쓴 『하재일기荷齋日記』의 1895년 11월 8일 기사를 보면, "남한산성의 둘째 며느리가 귀녕歸寧하러 가는데, 인아仁兒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며느리도 근친하러 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건대,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근친을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친은 특히 신식혼례로 인해 변화했지만, 1980년대에 용인 지역에서 근친을 갔다는 조사보고에 의하면 그 시기까지도 근친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근친은 신부가 혼인 후 친정 부모를 뵈러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시집 생활 3일,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만에 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친정 부모의 생일이나 제삿날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첫 아이를 분만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첫 아이를 낳은 후 산후 조리하는 기간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이나 집안, 신식혼례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친을 갈 때에는 간단한 차림으로 갈 수 없다. 원래 근친은 처음 수확한 햇곡식으로 떡과 술 등을 빚어 신랑·신부가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이때 가지고 가는 근친 음식을 '사돈음식'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신부가 시댁 음식을 가지고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도 신부가 시댁으로 돌아올 때 정성 들인 음식을 함께 보냈다. 그래서 사돈음식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갚아야 하므로 언제나 받으면 부담된다고 하였다. 근친 가는 신부를 따라온 신랑은 장모 또는 처남의 안내를 받아 신부의 친척 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한다. 이때 신부의 친척 집에서는 신랑·신부를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신랑은 며칠을 놀다가 신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신부가 더 오래 쉬다가 올 때도 있다. 신부가 시댁으로 돌아올 때도 떡·술 등을 마련하여 갖고 온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를 '차반'이라고 한다. 이처럼 시집온 신부가 친정에 다녀오는 근친까지 끝내야 혼례는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태조실록』 1년 9월 21일 기사에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경우에는 부모가 죽었으면 근친하는 의례가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친정 부모가 사망하면 근친을 안 간 것 같다. 아울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근친을 못 하게 될 때에는 '반보기[中路相逢]'를 하여 친정어머니를 만났다. '반보기'란 양가에서 미리 연락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시댁과 친정의 중간쯤 되는 경치 좋은 적당한 곳을 택하여 친정어머니와 출가한 딸이 만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모녀가 그동안의 회포도 풀고 음식도 권하며 즐기다가 저녁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한편, 혼인한 지 3년 안에 근친을 못 가면 일생 친정에 못 간다는 말도 있고, 3년 안에 근친을 못 가면 신부의 명이 짧다는 속신俗信도 있다. 이는 시집살이 처음 3년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3년 안에 근친을 보내라는 경구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지역사례 일부 지방에서는 근친을 '인재행引再行', '달신행', '묵신행'이라고도 했다. 이는 신부의 신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근친도 따라서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에서는 시집온 신부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재행再行'이라 하는 곳도 있고, '근친간다'라고 하는 곳도 있다. 또 전라남도에서는 '재행간다', '재행걸음', '근행간다'고도 한다. 전남 강진에서는 춘하추동 계절마다 친정을 다녀온다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행은 시집온 후 제달로 가는 '제달 근친'이 아니면 '석 달 근친'이었다. 경상북도에서는 근친 때 시아버지와 신랑이 함께 가기도 하는데, 이때 친정 식구의 옷을 해 간다고 한다. '차반'이라고 부르는 떡·엿·과일·고기·술 등의 음식도 준비해 가면 친정에서 동네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곧 돌아가고, 신랑도 며칠 뒤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시댁으로 돌아갈 때에는 친정아버지가 데려다 주든가, 신

랑이 데리러 오든가 한다. 이때 역시 차반을 장만하여 시가에 돌아온다. 경기도 용인지역에서는 "며느리 근친은 무릎 밑에 접어 넣고, 딸의 근친은 세 동네가 나누어 먹는다."라는 속담이 전해온다. 이는 며느리가 근친을 가서 가지고 온 음식은 별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딸이 근친 올 때 가지고 온 음식의 양으로 딸이 얼마나 시집을 잘 갔느냐를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편, 제주도에서의 근친은 신부 집에서 열리는 '사둔잔치'가 이에 해당한다.

특징 및 의의 근친은 전통혼례과정의 마지막 순서로, 엄격한 유교적 가족제도가 빚어낸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시집 생활 후 근친을 가는 전통적 형식의 준행遵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가치관과 가족제도 등이 변화함에 따라 근친은 사라져가거나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한편, 근친은 사위가 장모를 위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갈암집葛庵集』에 "근친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보면, 근친이 시집생활을 하는 여자들에게 얼마나 가슴 설레고 중요했던가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太祖實錄, 荷齋日記, 육례이야기(권광욱, 해돋이, 2000), 한국 의례의 연구(송재용, 박문사, 2010),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필자 송재용(宋宰鏞)

근친혼
近親婚

정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내용 모든 사회에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정하는 규칙이 있다. 족내혼族內婚과 족외혼族外婚 규정에 따라 사람들은 혼인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족내혼은 일정한 집단 내에서만 혼인해야 한다는 것이, 족외혼은 집단 외부에서만 배우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친혼은 인간 사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근친상간 타부(incest taboo)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혈족 사이의 혼인이다. 즉, 범위는 다르지만 근친 사이의 혼인을 금하는 타부는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근친혼이라 할지라도 이 근친상간 금지범위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근친혼은 그 사회에서 전혀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거나 적어도 용인되는 친척 사이의 혼인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에서 근친상간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혼인이며, 이를 제외하면 각각의 사회마다 근친상간 금기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근친혼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한국에서 근친혼에 대한 가치 부여는 시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왕실의 혼인 자료를 볼 때, 신라와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친인척 관계에서 혼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근친혼이 상당한 정도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근친혼은 일체 금지되었고, 족외혼의 범위가 동성동본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현재 다시 근친혼이 법률적으로 8촌 이내가 아니면 가능해졌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동성동본불혼이 중요한 족외혼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촌 간의 혼인이 한국에서는 일체 금지가 되지만, 인접한 일본이나 서양 및 아랍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근친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 근친혼 금기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한다.

특징 및 의의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간의 혼인을 말하는 근친혼은 한국사회에서 금기에 해당한다. 근친혼 금기는 현대 한국사회가 계승한 중요한 전통으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사회의 근친혼 금기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문화민족'이라고 규정짓는 중요한 도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인류혼인사(Westermack, Edward, 정동호 · 신영호 역, 세창출판사, 2013), 한국가족의 사적구조(이광규, 일지사, 1977), Kinship & Marriage(Fox, Rob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1996).

필자 강정원(姜正遠)

금줄

정의 부정不淨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대문이나 마을 어귀, 장독대, 당집, 당나무 등에 치는 특별한 새끼줄로서, 아기의 출생 혹은 송아지의 출생처럼 새로운 생명체가 출생했을 때와 동제洞祭, 기우제祈雨祭, 성주 봉안 의례와 같은 제의를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례용 장치.

내용 금줄은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또는 제의를 행할 때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 부정을 막으려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일종의 문화적 안전장치이다. 일반적으로 금줄은 '금지를 나타내는 줄'로 이해되지만, 어원상으로는 경계선이나 한계선을 의미하는 '금'에, 새끼와 같은 형태의 '줄'이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계선을 의미하는 금은 "금을 그어놓고 일하자."라는 말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원래는 '검줄'에서 파생되어 '신神'의 고어인 'ᄀᆞᆷ'이 변화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래서 금줄은 신줄[神繩]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금줄은 악귀와 부정의 접근을 막기 위한 벽사辟邪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성과 속, 부정과 정淨을 분리하는 신호(sign)와 상징(symbol)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의 양쪽 기둥 사이에 금줄을 가로로 걸어 아기의 출산을 알린다. 동시에 상가喪家를 비롯한 궂은 곳에 다녀온 사람이나 궂은 것을 보고 궂은 음식을 먹은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난 신성한 곳임을 나타낸다. 인간의 문화를 성과 속이라는 대립적 범주에서 살펴보기도 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는 모든 인간사에 오염되지 않은 성스러운 존재지만, 면역력이 약하여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된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험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을 접하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긴다.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쳐서, 아기가 태어난 공간 밖 사람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부정한 것을 멀리한다. 그와 동시에 집안사람의 일상적 행동도 조심하도록 한다. 결국, 금줄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한다.

금줄 | 경기 평택 | 국립민속박물관

금줄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일정 기간 쳐 두는데, 삼칠일 동안 쳐 두는 것이 보편적이고, 길게는 '일곱이레'까지 쳐 둔다. 이후에는 금줄을 걷어 깨끗한 곳에서 태우거나 삭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두기도 한다. 금줄을 오래 걸어두면 아이가 부정한 것을 볼 수도 있으며, 말을 늦게 배우거나 훗날 결혼할 배우자를 쉽게 만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금줄을 걸어두는 동안 아기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으며, 점차 속俗의 질서에 적응하고 통합되어 간다. 따라서 아기가 태어난 후에 치는 금줄은 성의 질서를 속의 질서로 변환하는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아기 출생 후에 치는 금줄은 왼쪽으로 꼰 왼새끼로 만든 줄에 드문드문 숯, 길쭉한 한지, 솔가지(소나무 가지), 빨간 고추 등을 꽂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다만, 아기의 성별에 따라 금줄에 꽂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고추를 꽂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숯을 꽂는 것이 전국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남자 아기의 금줄에는 숯과 고추를, 여자 아기의 금줄에는 숯과 솔가지 등을 꽂기도 하는 등 차이가 있다. 평소에 사용하는 새끼는 오른쪽으로 꼰 오른새끼인데, 금줄을 만들 때 왼새끼를 사용하는 것은 왼새끼가 비일상적이고 신성한 새끼이므로 악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새끼의 재료가 되는 짚은 도작문화稻作文化를 반영한 것으로 토지, 청정한 식물, 다산多産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숯은 더러운 것을 태운 다음 남은 것으로 다른 물질을 정화淨化하는 작용을 하므로 금줄에 꽂는다. 길쭉하게

잘라 꽂은 한지는 가장 깨끗한 색으로 눈에도 잘 띄어 신성한 공간임을 표시하는 데에 적절하며, 우리 조상들이 흰색을 신성하게 여겼던 뜻도 담고 있다. 솔가지는 푸르고 바늘처럼 뾰족하여 어떠한 부정한 것이라도 찔러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여자 아기의 출생 시에 꽂는 솔가지는 늘 푸른 상록수처럼 여자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남자 아기가 출생했을 때 빨간 고추를 꽂는 이유는, 귀신이 빨간색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므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축귀逐鬼, 축사逐邪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과 고추의 형상이 남아의 성기와 닮았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러나 고추가 금줄에 꽂히기 시작한 것은 재배가 일반화된 18세기 이후부터였다.

한편, 아기 출생 후에 치는 금줄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농가에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외양간에 금줄을 치기도 한다. 소는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주요한 자산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의 삼신이나 사람의 삼신이나 같다."라는 민간의 말처럼, 갓 태어난 송아지 역시 불안한 생명체로 간주하여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

지역사례 아기를 낳으면 이를 외부에 알리고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대문에 금줄을 치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역별로 금줄을 치는 기간이나 아기의 성별에 따라 금줄에 꽂는 내용물에 차이가 있다.

충청남도 대부분 지역은 삼칠일 동안 금줄을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내포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곱이레까지 금줄을 걸어두기도 한다. 대개 아들인 경우에는 숯과 고추를 꽂고, 딸인 경우에는 숯과 솔잎을 꽂거나 목화를 꽂기도 한다.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장수한 어른이 아이를 품고 금줄 밑에 서 있다가 금줄을 풀어주어 아이의 무병장수를 빌기도 한다. 충청북도 옥천에서는 아들의 금줄에 짚으로 만든 방망이를 꽂기도 한다. 제천에서는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돌멩이를 꽂기도 한다. 보통 삼칠일 동안 금줄을 쳐 두는데 지나치게 오래 두면 아기가 말을 늦게 배운다 하여 걷어 버리기도 한다.

전라남도에서는 아들일 경우 보통 왼새끼에 고추, 숯, 백지, 연필 등을 세 개씩 꽂고, 딸일 경우에는 고추 대신에 솔잎을 꽂는다. 금줄에 연필이나 붓을 꽂는 사례는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전주 지역에서는 금줄을 탯줄과 같이 여겨 '쌈줄'이라고도 하며, 아들일 경우에는 숯과 고추를 끼우고 아들을 상징하는 조그마한 짚 뭉치를 매달아 두기도 한다. 숯과 연필은 공부를 잘하라고, 솔잎은 바느질을 잘하라고 끼운다. 딸을 낳았을 경우에 다음에 아들을 낳기 위해 '아들 금줄'을 치는 경우도 있다. 광양 지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세이레 오전 중에 금줄을 걷는데, 오래 걸어 두면 훗날 결혼할 배우자를 쉽게 고르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아들의 금줄에 미역을 걸어두기도 하며,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들을 상징하는 큰 돌을 금줄의 중앙에 달기도 한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금줄을 '숫'이라고 하는데, 본래 금줄을 치는 경우가 없었고, 간혹 금줄을 치더라도 아무것도 꽂지 않은 왼새끼만 걸어두거나 아들일 경우에는 고추, 딸일 경우에는 숯을 달았다. 경기도 동북부지역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금줄을 걸고, 딸을 낳으면 송침(대문 양옆에 솔가지를 꺾어다 꽂아 둠)을 걸거나 금줄을 함께 걸기도 하였는데, 송침을 걸어두는 것은 지리적으로 강원도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금줄은 사회적 약속이면서 신호이다. 아기가 출생하였을 때 일정 기간 치는 금줄은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였음을 알림과 동시에 그 생명체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 점차 세속적 질서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이다. 즉, 집안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아기의 출생을 알림으로써 모두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 약속과도 같다. 한편, 아기가 출생하면 치는 금줄은 전국적으로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금줄에 끼우는 물품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고추의 상징화 과정에 대한 일고(주영하, 역사민속학1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금줄의 의미와 기능(배영동, 비교민속학5, 비교민속학회, 1989), 남도민속학(지춘상, 태학사, 1998),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배영동(裵永東)

급묘
及墓

정의 영구가 묘소에 도착하여 장사를 치르는 절차.

역사 급묘는 묘소에 도착한다는 뜻으로 발인發靷한 뒤 장지에 도착한 영구를 땅에 묻어 장사를 치르는 유교식 상장례 절차의 하나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의 급묘 관련 내용은 『상례비요喪禮備要』및 『사례편람四禮便覽』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나중의 두 책에 사토지지구祠土地之具 등 의식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 항목이 추가되고 성분成墳이 독자적인 제목으로 설정되었을 뿐이다. 근대에는 '급묘'보다 '하관'과 '성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급묘 관련 사항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화장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급묘 절차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내용 『주자가례』에서는 '급묘·하관下棺·사후토祠后土·제목주題木主·성분成墳'이라는 제목 아래 급묘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먼저, 영구가 도착하기 전에 영좌를 모실 영악靈幄을 설치하고 친척과 빈객의 상차喪次와 부인의 장막 등을 설치한다. 방상시方相氏가 도착하여 광壙에 들어가 창으로 사방 모퉁이를 친다. 명기明器 등이 도착하고 영거靈車가 도착하면 혼백을 영좌에 모시고 신주 상자는 혼백 뒤에 놓는다. 전奠을 차리고 물러난다. 영구가 도착하면[柩至] 광의 남쪽에 안치하고 머리를 북쪽으로 한다. 주인과 남녀는 각각 자리로 가서 곡한다. 빈객은 절하며 작별하고 돌아간다. 이에 하관한다. 신경 써서 관을 내리고 관을 옷과 명정으로 덮는다. 주인이 검은 비단 여섯과 붉은 비단 넷을 영구 옆에 놓고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린다. 회격灰隔 안팎의 덮개를 덮는다. 석회·모래·황토 섞은 것을 아래에 깔고 재를 위에 편다. 이어 흙을 채우고 점점 다진다. 묘소의 왼쪽에서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 드린다. 명기 등을 넣고 지석誌石을 묻는다. 다시 흙으로 채우고 견고하게 다진다. 신주를 쓰고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른 다음 축문을 읽는다. 신주는 영좌에 모시고 혼백은 상자 속에 보관하여 신주 뒤에 놓는다. 축관이 신주를 받들고 수레에 오른다. 집사자가 영좌를 거두어 떠나면 자식 중 한 명을 머물게 하여 봉분을 완성할 때까지 살펴보게 한다. 봉분의 높이는 넉 자이며 그 앞에 작은 돌비석을 세우는데, 역시 높이가 넉 자이고 받침대의 높이는 한 자 정도이다.

『상례비요』에서는 '성분'을 독자적인 제목으로 설정하여, 급묘 내용을 '급묘'와 '성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그리고 후토신에게 제사 드릴 때와 신주를 쓸 때 필요한 축문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사례편람』에서는 제목을 다시 '급묘'로 통합하고, '명기등지'와 '장명기등'의 명기 관련 두 항목을 삭제하였다.

1934년 공포된 「의례준칙」의 '하관급성분下棺及成墳' 항목과 1969년 공포된 「가정의례준칙」의 '하관 및 성분' 항목에서는 급묘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특히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하관하도록 하고 회격과 지석의 매장은 허용하였으나, 하관 후 장사를 끝내는 제사와 현훈玄纁을 폐백으로 올리는 것은 금지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에는 급묘의 내용 가운데 관이 장지에 도착해서 하관할 때까지의 절차와 후토신에게 제사 드리거나 신주를 쓰는 절차 등은 거의 사라지고 '하관'과 '성분'에 해당하는 내용만 부분적으로 남아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초종初終에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확인함으로써 임종을 앞두었던 사람은 고인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다시 습과 소렴·대렴을 거치면서 혼백과 명정을 고인을 표상하는 상징물로 인식하게 된다. 이어 급묘를 통해 영구가 매장되면서 혼백과 신주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였다가, 마침내 초우제初虞祭를 지내며 혼백을 묻음으로써 고인을 표상하는 상징물은 신주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급묘는 고인을 표상하는 상징물, 영혼이 혼백에서 신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인이 이제 이승과는 분리되어 저승의 영역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하는 절차인 것이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정종수 외, 국사편찬위원회, 2005), 의례준칙, 조선중기 예학사상사(고영진, 한길사,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고영진(高英津)

기럭아비

정의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서 초행할 때 기러기를 들고 신랑 앞에 서서 가는 사람.

역사 예전에는 산 기러기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나무로 조각한 목기러기를 사용한다. 기러기를 들고 가는 사람을 '기럭아비'라고 한다.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번 짝을 지으면 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내용 초행은 목기러기를 든 기럭아비의 인도로 신랑이 신부 집에 백년해로百年偕老의 상징인 기러기를 예물로 드리고 신부를 대례청으로 모시고 나오는 의식이다. 기럭아비는 주사립朱絲笠(융복을 입을 때 쓰는 붉은 갓)을 쓰고 흑단령黑團領(벼슬아치들이 입는 검은색의 둥근 옷)을 입는다. 또한, 기럭아비가 흑단령에 분홍 띠를 두르고, 붉은 구슬을 단 빛갓을 쓰고 목화를 신는 곳도 있다. 신랑 측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 기럭아비로 선정되며, 그는 붉은 보자기에 싼 목기러기를 들고 초행길 대열의 선두에 서서 신부 집으로 간다. 신랑 측에서 기러기를 지참한 이유는 남녀를 음양으로 나눌 때 기러기가 양에 해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부 집으로 갈 때, 신랑은 조랑말을 타고 가는 것이 보통이다. 기러기 한 쌍을 들고 신랑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기럭아비이며, 그가 신부 집에 당도하여 기러기를 내려놓으면 신부의 어머니나 혼례를 돕는 여자가 기러기의 입을 벌려 국수 가락을 넣어준다. 오늘날 혼기에 찬 총각들을 만나 "국수를 언제 주려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랑이 기럭아비와 함께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 측에서는 '팔머리'가 나와 맞는다. 팔머리란 나이 어린 소년으로, 신랑을 안내한다. 전국적으로 기럭아비 의식은 전통예식을 하는 곳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특징 및 의의 기럭아비의 역할은 목기러기를 가지고 신랑과 함께 출발하여 신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기러기를 간수하는 것이다. 신부 집에 도착하여 신랑에게 목기러기를 건네주면, 그것으로 기럭아비의 임무는 끝난다. 주로 함진아비가 맡는 수가 있다.

참고문헌 완역 이옥전집2(고전문학연구회, 휴머니스트, 2009), 韓国の冠婚喪祭(韓東龝, 國書刊行會, 1973).

필자 최인학(崔仁鶴)

기신재
忌晨齋

정의 기신忌晨(기일 새벽)에 재齋를 올리는 것으로, 주로 궁중에서 선왕의 제사를 지낼 때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고 지내는 제사.

내용 기신재는 불교식 제사이다. 부처를 공양할 때에는 선왕과 선후의 신주를 먼저 욕실에 보내어 목욕한 후 뜰에 꿇어앉아 예불한다. 이는 조종祖宗의 신령들이 목욕한 상태에서 예불을 올리라는 뜻이다. 먼저 부처와 승려에게 공양을 올린 다음, 선왕에게 제사한다.

이 의례는 부처에게 먼저 예를 올리므로, 결과적으로 왕이 부처보다 더 하위로 이해된다. 그래서 왕의 영혼이 모셔진 것으로 인식된 신주는 깨끗한 상태가 된 후에야 비로소 불상 앞에 놓일 수 있었다. 또한, 선왕의 신주는 정문으로도 못 가고 옆문을 통해서야 불상 앞에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먼저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야 왕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기신재는 주로 왕실에서 사망한 왕을 제사하는 불교적 의례이다. 사망한 왕과 왕후의 신령을 상징하는 신주를 깨끗하게 하여 그 신령들이 예불하게 하고, 승려들이 부처 대신 공양을 받는다. 그런 다음 비로소 현재 왕의 제사를 지내는 형태이다.

기신재를 지내기 위해서는 기일 전날 저녁에 승려가 불러 선왕과 선후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거행하고 신주를 모신다. 제사 장소는 봉선전奉先殿이며, 저녁마다 승려들이 사망한 대왕과 왕후의 혼을 높은 소리로 부른다. 이때 조종祖宗의 위판位板을 뜰 아래에 놓고 예불한다. 소문疏文에서는 "부처님을 받드는 제자 조선국왕……"이라고 한다.

신주는 판자로 만들어 백평상白平床이나 백의자白椅子 위에 놓고, 지전紙錢으로 사방을 모두 두른다. 그런 다음 여러 승려들이 둘러서서 징과 북을 두드리며 신주를 맞이한다. 불상은 상단의 법당에 두고 신주는 아랫방에 둔다. 승려들이 재를 주재하며, 비용은 왕실의 내수사內需司에서 맡아 마련한다.

특징 및 의의 왕실의 불교적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기신재는 연산군대燕山君代에도 승과를 두게 된 연유가 될 정도로 왕실에서 중시했다. 이를 통해 조선조에도 능침에서 행하는 기신재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왕실의 불교사찰은 왕릉 등의 근처에 존재하면서 재실齋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실뿐만 아니라 양반과 호족들은 입이나 글로는 불교를 힘껏 배격하였지만, 자신의 부모가 사망하면 묘가 있는 산 아래 재궁齋宮을 만들고 재전齋田을 붙이고 불단을 만들었다. 또한, 승려를 불러 아침저녁으로 독경하고 향을 올리며 망자에게 회향했던 일이 빈번했다.

참고문헌 高麗史, 中宗實錄, 한국의 예와 윤리(이희재, 한국학술정보, 2012).

필자 이희재(李曦載)

기일비망기
忌日備忘記

정의 조상의 제삿일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비망록.

내용 조상의 제삿날을 월별, 혹은 조상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비망록으로, 한 집안에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치러야 할 제사를 잊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기록한 일종의 일정표이다. 기일비망기는 주로 조상의 제삿날을 기록한 것이지만, 가족의 생일, 세계도世系圖, 가례오복家禮五服, 조장식弔狀式 등을 첨부하여 참고하기도 한다. '기일록忌日錄' 또는 '기안忌案'이라고도 한다. 여성들이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작성하여 보관한 기일비망록도 있다. 일정한 형식이 없이 사용하기에 편한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두꺼운 한지를 병풍식으로 접어 항상 휴대할 수 있게 만든 수진본袖珍本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가족의 생일을 기록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기일생신첩忌日生辰帖'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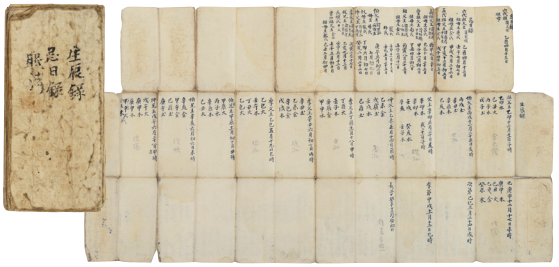

기일록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기일판 | 1834 | 국립민속박물관
전주 이씨 계성군파 조상의 제삿날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판.

기일판 | 국립민속박물관
조상의 기일이나 제삿날을 적은 종이를 붙여 놓은 판.

특징 및 의의 조상의 계대별로 제사일을 한데 모아 기록한 문서로 제사를 중시하는 예속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사진으로 보는 가정의례(조선일보사, 1989), 생활문화와 옛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0).

필자 이해준(李海濬)

기자도끼

정의 지니고 다니면 남아를 출산하게 된다는 도끼 모양의 장신구.

내용 기자도끼[祈子斧]는 도끼 모양의 장신구로, 이를 몸에 지님으로써 아들을 출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 목적과 기능으로 볼 때 기자도끼는 부적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자도끼는 자루가 없는 도끼의 머리 부분을 작은 크기로 만들어 끈을 꿰어 몸에 착용하는데, 세 개의 도끼를 연이은 '삼태도끼부적[三台斧符籍]'은 태어날 아이가 삼정승三政丞의 운을 받길 바라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도끼를 기자와 관련된 상징물로 사용하게 된 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관련된 설화와 연결 지어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한 예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등장하는 원효대사元曉大師의 노래를 들 수 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 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받칠 기둥을 찍으련다."라는 노래를 듣고, 무열왕武烈王이 요석공주瑤石公主를 연결해주어 후에 설총薛聰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도끼와 남아의 탄생을 연결 짓게 된 계기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상 도끼는 설총보다는 요석궁의 공주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견해는 약간 무리가 따른다.

또 다른 예로는,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의 부인조婦人條에 등장하는 전여위남법轉女爲男法(태어날 여아를 남아로 바꾸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닭이 알을 낳은 뒤 그 밑에 도끼를 놓아두면 수평아리로 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근거로 기자도끼의 연원을 『동의보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끼의 상징성에 관해 동시대에 통용되던 관념을 반영한 것일 뿐, 이것으로 기자도끼를 설명하는 것은 역시 무리가 따른다.

기자도끼 | 국립민속박물관

도끼의 상징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고려부터 조선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도교道敎의 개념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1441년(세종 23) 5월 18일자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록에는, 당시 병을 앓던 세종世宗에게 의관醫官이 권유한 내용이 등장한다. 의관은 『태평광기太平廣記』에 "벼락이 떨어진 곳에서 도끼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벽력설霹靂楔이라 한다. 이것을 어린이에게 채워 주면 경기驚氣와 사기邪氣를 없애주고, 잉태한 부인이 갈아 복용하면 아이를 빨리 낳게 하는 효험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음을 고하고, 빨리 사람을 풀어 찾아보기를 종용한다. 『태평광기』란 977년(북송北宋 태평흥국太平興國 2)에 이방李昉 등이 한漢에서 당唐까지 전해지던 설화와 패설稗說을 모은 책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뇌부雷斧는 '벽력설' 혹은 '벽력침霹靂鍼'이라고도 하는데, 도교에서 숭상하는 뇌신雷神 혹은 뇌제雷帝가 사용하는 도끼를 의미한다.

사실 뇌부는 매장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돌도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8세기 무렵 중국에서는 뇌부가 하늘에서 떨어진 뇌신의 무기로, 이를 지니면 사기邪氣를 쫓고, 달여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 더불어, 당시의 도교적 개념으로 볼 때 뇌신의 번개는 강한 남성성을, 그의 무기인 도끼는 남성의 생식능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임금의 예복 하의에 자수로 새긴 도끼무늬인 보불黼黻 역시 남성적 권력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특징 및 의의 역사 상의 여러 기록을 살펴볼 때, 당시 도끼는 일종의 신물神物임과 동시에 남성적인 힘, 남성적인 생식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도끼 형태의 부적을 착용하는 것은 곧 남아를 잉태하고자 하는 주술적 믿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아들을 많이 낳은 집의 식칼을 훔쳐다가 도끼 모양으로 만들어 착

용한 것도 주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東醫寶鑑, 三國遺事, 朝鮮王朝實錄, 벼락도끼와 돌도끼(이선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 부적의 역사와 기능(김영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필자 김창호(金昌鎬)

기자부적
祈子符籍

정의 아들을 낳기 위해 지니거나 가까이 두는 주술적 물건.

내용 자식으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것은 부계 혈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널리 성행했던 관념이다. 특히 유교적 기반을 가진 조선시대의 경우 가계家系를 계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아를 선호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물리적·주술적 방법이 전해졌는데, 기자부적은 아들을 낳는 데 효험이 있다고 믿는 특별한 물건이나 종이에 그려진 문양, 글귀 등을 통칭한다.

대표적인 기자부적은 종이 위에 주사朱砂로 아들을 기원하는 글씨나 문양, 그림 등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적은 종이의 형태로 제작되어 통용된다. 주로 무당巫堂이 써 주거나 사찰에서도 만들어 주는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 밖에도 아들을 얻기 위해 특정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특정 물건은 대부분 남성성을 상징하거나 남성적 생산력을 상징하는 주술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의미상 부적의 일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작은 도끼를 몸에 지니거나 베개 속에 넣고 자는 행위, 남아를 낳은 여인의 월경대를 훔쳐와 몸에 두르거나 출산할 때 입었던 속옷 혹은 겉옷 등을 얻어 입는 행위, 남아를 낳은 집 대문에 걸린 금줄을 훔쳐 집에 보관하는 행위, 그리고 남자가 죽어 나가는 상여의 헝겊 등을 훔쳐 속옷에 달고 다니는 행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상여의 헝겊을 훔치는 것은, 남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다른 남성 한 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밖에도 별전別錢에 남아를 바라는 문양과 글귀를 새겨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남전男錢'이라 불렀다.

특징 및 의의 기자의례祈子儀禮는 여성에게 평생의례였다. 이는 아들 낳는 것을 여성 자신이, 혹은 가족 모두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기자의례가 중요시되었던 이유는 사대부 집안에서 아들은 제사를 통해 가문을 이어가는 뼈대이며, 평민 집안에서는 집안의 중심이자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 민속신앙의 탐구(이종철, 민속원, 200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 부적의 역사와 기능(김영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한국의 성신앙(김종대, 인디북, 2004).

필자 김창호(金昌鎬)

기자의례
祈子儀禮

정의 자녀를 갖기 위해 행하는 의례儀禮.

역사 기자의례祈子儀禮는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타나는 '시조탄생'에 관한 기록을 볼 때, 이미 역사의 이른 시기부터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수록된 단군신화에는, "웅녀熊女가 그와 혼인해 주는 이가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가서 아이를 잉태하고자 정성을 다해 빌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웅녀가 신단수 아래에서 정성을 올리는 것은 곧 기자의례를 뜻한다. 특히 신단수 아래에서 정성을 드렸다는 것은 신수神樹에 깃든 정령과 같은 초월적인 힘을 지닌 존재의 힘을 빌려 아이를 낳고자 한 행위로 이는 수목숭배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기자의례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큰 나무에 아들 낳기를 비는 기자의례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또한 금와왕金蛙王 탄생신화에도 기자의례 관련 기록이 보인다. "북부여의 왕 해부루解夫婁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후사後嗣를 구하고자 산천에 제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런데 왕이 탄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자, 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 그곳을 들춰보니 금색 개구리 모양을 한 어린아이가 있어 데려다 키웠다. 그가 바로 동부여의 2대 왕인 금와왕이다."라는 기록처럼 해부루 왕은 산천에 제사함으로써 금와왕을 얻는다. 이는 후대에 전해내려오는 기자의례 가운데 산이나 하천·기암괴석·기자암·기자석 등에 치성드리는 기자의례와 연결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당의 힘을 빌어 자식을 갖고자 했던 기자의례 풍속은 조선 후기에 출간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월 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청도 진천 풍속에 음력 3월 3일 삼짇날부터 4월 초파일까지 여자들이 무당을 데리고 우담牛潭의 동서 용왕당과 삼신당에 가서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비는데, 그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내용 기자의례는 일생의례 가운데 출생의례에 포함되는 의례이다. 남녀가 혼인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갖기 위해 의례를 행한다. 이를 기자의례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기자속祈子俗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기자의례는 자녀가 없을 때 행하지만, 딸만 얻어 아들을 원할 때에도 행한다. 사실상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무자無子, 곧 아이을 갖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하나일 만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아이를 갖기 위한 의례는 실로 중요했다.

기자의례는 그 정성을 드리는 방법과 대상도 다양하다. 이를테면 빌거나 굿을 하는 치성행위,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식음행위食飮行爲, 주술적인 물건이나 주술적인 힘을 이용하는 주술행위呪術行爲, 좋은 일과 선심을 쓰는 공덕행위功德行爲, 남녀 성기 모양의 돌이나 바위, 그리고 나무에다 잉태나 출산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모의행위模擬行爲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치성의 유형은 초월적인 존재나 영험이 있다고 믿는 자연물에 아이가 점지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기원 대상은 집밖일 경우 산이나 바위·나무·절·산신당·삼신당·칠성당·용왕당 등이며 집안일 경우 마루나 뒤꼍·부엌·윗방 등이다. 의례방법은 제물을 진설해놓고 비손을 하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한다.

비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개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사월초파일, 오월단오 유월유두, 칠월칠석, 시월상달 등 절기나 명절과 관련된 날에 이루어진다. 기자의례는 남모르게 비의秘儀로 해야 효험이 있다고 하여 대개 밤이나 새벽시간을 택한다. 의례를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재계를 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것을 가린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산에 가서 3일·7일·21일·100일 기도를 드린다. ②절이나 산신각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③집안에서 성주·칠성·삼신·조왕·터주 등 가신家神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 ④샘이나 거목, 선바위와 같은 거암 등을 대상으로 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자암이나 기자석으로는 서울 인왕산 중턱에 있는 '선바위'와 충북 제천 송학면 무도리의 '공알바위', 전라도 지리산의 '선바위', 제주도 용담 냇가의 '석불' 등이 대표적이다. ⑤서

기자의례 | 국립민속박물관

남해가천암수바위(경남 민속자료 제13호) | 경남 남해 | 정상박

낭당이나 해변에 나가 용왕님께 빈다. ⑥정월 인일(寅日)에 부산 금정산 위 선바위에 가서 굿을 한다. ⑦칠석날 부산 봉래산 아래 당산나무에 가서 빈다.

둘째, 식음의 유형은 특정한 약물이나 음식을 마시거나 먹는 것이다. 남성을 상징하는 생식기나 물건, 또는 아들과 관련된 열매나 음식 등을 먹음으로써 그 기(氣)를 받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약물의 경우 허준許浚이 편찬한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泰集要』에서는 부녀자가 잉태를 바랄 때는 조경종옥탕調經種玉湯이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②수탉의 생식기를 생으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황소의 생식기나 살을 삶아 먹거나 설날에 낳은 달걀을 삶아 먹는다. 또 수평아리가 될 달걀을 매월 달 수 대로 삶아 먹는다. ③삼신당에 올려놓은 쌀을 훔쳐다 밥을 지어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④남의 집 금줄에 매단 고추를 훔쳐서 달여 먹는다. ⑤산모에게 첫 국밥을 해주고 그 산모와 함께 첫 국밥을 먹는다. ⑥한 개나 두 개만 열린 홍도 또는 석류를 따 먹거나 동쪽으로 뻗은 뽕나무 가지의 오디를 먹는다. 이밖에도 금줄에 끼워둔 미역을 먹기도 한다. ⑦석불이나 미륵불의 코를 갈아 그 삶은 물을 마신다. ⑧아기를 잘 낳는 집의 행주나 주걱을 몰래 가져와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그 행주는 잘 간직해 두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물가에 가서 태운다.

셋째, 주술의 유형은 특정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한 물건은 대개 남성을 상징하거나 생산을 상징하는 주술적인 물건을 말한다. 그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다산한 여인의 월경대를 훔쳐와 몸에 두른다. ②아기 낳은 집 대문에 걸어놓은 금줄을 몰래 훔쳐와 자기 집에 모셔둔다. 또는 다산한 여인이 출산할 때 입었던 치마를 얻어다 입는다. ③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베개 속 또는 문 위에 붙인다. ④작은 도끼를 베개 속에 넣고 잔다. 특히 아들을 많이 낳은 집의 부엌칼을 훔쳐다가 작은 도끼를 만들어 여자가 베개 밑에 놓고 자거나 속옷에 차고 다닌다. 또는 기자 도끼를 여자 허리에 차고 다닌다. ⑤상여가 나갈 때 공포 조각을 훔쳐다 속옷에 매달고 잔다. ⑥친정어머니가 준 은장도를 치마 끝에 달고 다니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문턱 밑에 석 달 간 묻어 두었다가 꺼내 허리에 차고 다닌다. ⑦아들 삼형제를 둔 집의 수저를 훔쳐다가 부인의 베개 밑에 몰래 감추어 둔다. ⑧붉은 고추나 알밤 또는 은행을 주머니에 넣어 치마 속에 차고 다니거나 남편 베개 속에 몰래 숨겨둔다. ⑨호랑이 발톱이나 수탉의 생식기를 지니고 다닌다. ⑩신부가 신랑 집에 신행갈 때 신랑 집 마을에서 아들을 낳은 집 금줄을 몰래 떼어다가 가마 앞에 걸어둔다. ⑪임신할 때 까지 옷 속에 구슬을 간직한다.

넷째, 공덕의 유형은 여러 사람에게 공덕을 베풀어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 따라 소원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불교적 관념에서 생긴 습속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①정월대보름날 밤에 남편이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아 많은 사람들이 편히 건너다닐 수 있게 해준다. ②칠월칠석에 마을 공동우물을 퍼 마을 사람들이 늘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 ③허물어진 길을 잘 닦고, 마을길을 쓸어 마을을 깨끗하게 한다. ④부부가 절대로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며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⑤시주승이 오면 시주를 정성껏 한다.

마지막 모의 유형은 남녀 성기 모양의 돌 또는 나무에 잉태와 출산의 모의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주술유형과도 상관성이 있다. 흔히 아들바위·성기암 등으로 불리는 남근석男根石이나 공알바위·치마바위 등으로 불리는 여근석女根石, 그리고 남근 또는 여근형국에서 행해지는 풍수상의 암석숭배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은 성교를 상징하는 유사한 것들과의 접촉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보다 적극적인 주술행위로 보통 치성행위와 더불어 행해진다. 구체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아이를 낳지 못한 부녀자들이 밤에 몰래 남근석에 음부를 비벼대며 기도한다. 또는 여근석에 돌을 돌리면서 비벼 돌을 붙인다. ②기자석 앞에 실 한끝을 매놓고, 다른 한쪽은 부인의 하복부에 둘러메고 기도한다. 하복부에 찌르는 고통이 올 때까지 며칠을 두고 계속한다. 이 방법은 조금만 움직여도 실이 끊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고역이 따른다. ③어멈바위라는 평평한 바위표면을 애돌[子石]로 갈아 오목하게 파놓고, 그 애돌을 붙여두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한밤중에 이 붙임바위

를 찾아가 어멈바위를 갈면서 아들 낳기를 빈다. ④두 나뭇가지가 엉켜 한 나무처럼 된 연리지목連理枝木이나, 사람의 다리 모양처럼 생긴 Y자형 나뭇가지가 있는 근처에서 부부가 동침한다. 또는 Y자형 나뭇가지에 돌을 끼워놓는다. ⑤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입었던 속옷을 입고 산실産室 아랫목에 앉아 아기 낳는 흉내를 내며 하룻밤을 지낸다. ⑥강원도 삼척 원덕읍 갈남리 해신당에 있는 남근에게 빈다. 이 남근은 해랑이란 처녀에게 바친 나무로 깎아 만든 신체神體이다. ⑦전북 순창 팔덕면 산동리 팔당마을에는 남근석이 있어 아기를 바라는 부녀자들이 이곳에서 빈다. ⑧경북 울릉 북면 나리 해안가 바위산 왼쪽에 있는 암굴에서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음부陰部에 쬐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석양 무렵에 이곳에 와서 치마를 걷어 올린다.

특징 및 의의 기자의례는 글자 그대로 자식 갖기를 원해서 행하는 의례이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산력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대상이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자식을 간구하는 마음은 누구나 공통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민속의례에서 중시되는 '정성'이 바탕이 된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속담이 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그 정성에 답한다는 뜻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종교적 심성의 표출이 곧 기자의례 특징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양아록(이문건, 이상주 역, 태학사, 1997), 증보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97), 한국의 성 숭배 문화(이종철, 민속원, 2003), 한국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연구13,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4),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산속 상 · 하(문화재연구소, 1994), 한국민속학논고(임동권, 선명문화사, 1971), 한국의 여속(장덕순, 배영사, 196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김명자(金明子)

기제사
忌祭祀

정의 조상의 죽음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유교의례儒教儀禮로서, 조상이 돌아가신 날 가장 이른 시각에 지내는 제사.

역사 중국 고대에는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는 풍속이 없었고, 망자의 기일이 되면 살아있는 그 자손이 상喪을 당한 것처럼 예를 행하였다. 송대에 이르러 비로소 기제사의 예를 만들게 되었다. 이는 '종신지우終身之憂'라는 말처럼, 기일이 되면 상을 당했을 때의 마음으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 옳다는 정신으로 만든 의례이다. 유교에서 제사는 '기복행사祈福行事'로서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만, 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상례와 같아 흉례凶禮에 속한다. 따라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수록된 기제사에는 상례의 연장선에서 초헌初獻을 한 다음 "주인 이하는 곡哭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1390년(공양왕 2)에는 『주자가례』에 의거하였으나 "대부大夫 이상은 3대를 제사 지내고, 6품관 이상은 2대를, 7품관 이하 평민들은 부모제사를 지내도록"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둔 규정을 법령으로 제정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게 되자, 고조부모까지도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기제사가 정착되었다.

내용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의 전날인 입제일入祭日에 제물을 준비하여 돌아가신 날인 파제일罷祭日의 가장 이른 시각에 지낸다. 조상이 돌아가신 날짜에 기제사를 지내는 까닭은, 조상이 돌아가신 슬픈 일이 생겨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파제일의 가장 이른 시각인 자시子時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날짜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각에 제사를 지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상이 돌아가신 날짜의 가장 이른 시간에 조상제사를 지냄으로써, 다른 모든 일보다 더 우선해서 조상을 받들어 모신다는 것이다. 둘째, 조상신이 활동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심야의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면서 자손들이 파제일 자시에 기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렵게 되자 파제일의 저녁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사례가 많아졌다.

기제사의 방식으로는, 신주神主(또는 지방紙榜)를 제상 앞에 모시는 방식에 따라 기일을 맞이한 조상만 모시는 '단설單設', 기일을 맞은 조상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그 배우자, 즉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를 함께 모시는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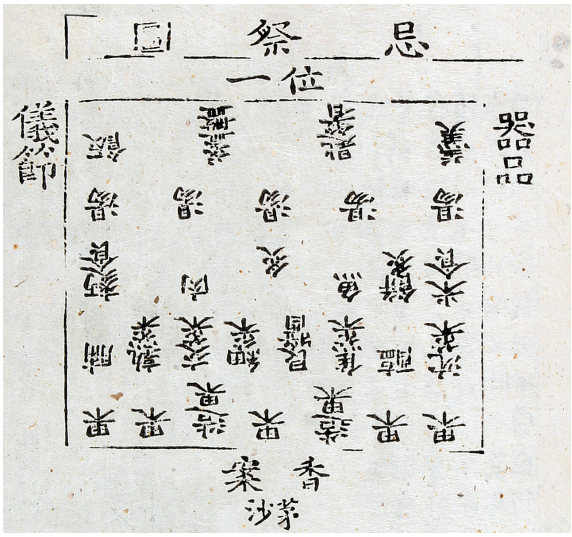

기제도 | 겸암선생문집 | 국립중앙도서관

설合設'이 있다. 그리고 합설을 하더라도 고위와 비위의 상을 각각 차리는 '각설各設'도 있다. 기제사의 본디 뜻을 생각해 볼 때, 조상이 죽었기 때문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고위와 비위가 같은 날짜에 죽지 않았다면 단설이 맞다. 그런데도 조선시대의 기제도忌祭圖를 보면, 단설과 합설이 공존하고 있다. 퇴계 이황李滉은 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禮로 보면 단설이 맞지만, 정情으로 합설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합설을 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남편이 밥을 먹을 때면 부인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한편, 대략 1990년대부터는 고위와 비위의 기일에 모두 제사를 지내지 않고 동시에 한 번만 지내는 '합사合祀'의 방식이 나타난다. 합사하는 경우, 보통 고위의 제사 때 비위도 함께 모셔와 제사 지내고, 비위의 기일에는 따로 제사 지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4대에 걸친 여러 조상을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합사하는 방식도 있다.

기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대청이나 안방이다. 반가班家의 전통이 남아있는 종가와 고택 등에서는 대청에서 기제사를 지내고, 여염집에서는 안방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러 가옥의 규모가 크고 유서 깊은 종가에서는 제사 전용의 제청祭廳이 별도로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일반 기제사는 안대청에서 지내고,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 제사만 제청에서 지낸다.

자시가 다가오면 제물을 진설할 준비를 하고 축문을 미리 써두는데, 요즈음의 기제사에서는 축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당이 없어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는 지방을 미리 써둔다. 기제사에 참여하는 제관과 참사자들은 직계자손과 당내堂內의 친인척으로 구성된다. 제관과 참사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다. 기제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설위設位: 신위(신주 또는 지방)를 모시는 자리를 마련한다.
②진기陳器: 제사에 사용되는 기물을 늘어놓는 절차로, 이때 축문이나 지방을 작성한다.
③진설陳設: 설소과設蔬果라고도 하는데, 포·잔·수저·실과·채소처럼 식어도 되는 제수祭需를 미리 진설한다.
④출주出主: 신주를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곳으로 모셔오는 것인데, 지방을 붙이고 지내는 제사의 경우에는 이때 지방을 부착한다.
⑤참신參神: 참사자 전원이 신위에 재배한다.
⑥강신降神: 주인主人이 분향하고 술을 모사기茅沙器에 세 번 따른 다음 빈 잔을 원래의 자리에 올린다. 간혹 분향 이후에 재배하는 사례도 있다.
*신주를 모셨으면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을 써 붙였으면 강신을 먼저 한다.
⑦진찬進饌: 진설에서 차리지 않은 나머지 제수를 진설한다.
⑧초헌初獻: 주인이 신위에 첫 번째 잔을 올린다. 이때 적炙을 올리고 밥의 뚜껑을 연 다음, 축관이 주인의 서쪽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이어서 주인이 재배한다.
⑨아헌亞獻: 신위에 두 번째 잔을 올린다. 『주자가례』에는 주부가 아헌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안의 연장자나 주인의 동생이 하기도 한다.
⑩종헌終獻: 신위에 세 번째 잔을 올린다. 보통 귀한 손님이나 사위, 연장자 등이 한다.
⑪유식侑食: 주인이 종헌에서 다 채우지 않은 잔에 술을 가득 채우는 첨작添酌을 한 다음, 메에 숟가락을 꽂고 적이나 편에 젓가락을 올리는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한다. 가정에 따라 계반삽시啓飯揷匙를 하기도 하고 주인은 재배, 주부는 4배를 하기도 한다.
⑫합문闔門: 조상이 음식을 드시도록 기다리는 절차이

1. 개독

2. 분향

3. 헌작

4. 진적

5. 유식

6. 삽시정저

7. 합문

8. 사신 재배

기제사 | 국립민속박물관

1. 진설

2. 분향

3. 헌작

4. 헌작재배

5. 철작

6. 삽시정저

7. 진다

8. 철상

기제사 | 강원 속초 청호동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다. 제상 앞에 병풍을 친 후 참사자들은 부복하여 조상이 수저를 아홉 번 뜨는 시간만큼 기다린다.

⑬계문啓門: 합문의 문을 연 다음 갱을 물로 바꾸고, 메 세 숟가락을 푸는 헌다獻茶를 진행한다. 물에 메를 푸는 것은 숭늉을 의미한다. 이후 조상신이 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참사자는 선 자세로 묵념하는 국궁鞠躬을 한다. 국궁이 끝나면 집사자가 수저를 거두고, 메 등의 뚜껑을 닫는 철시복반撤匙覆飯을 행한다.

⑭사신辭神: 참사자 전원이 재배하는 것으로, 신을 돌려보내드린다.

⑮납주納主: 신위를 사당으로 다시 모셔드린다. 지방으로 제사를 지낸 경우에는 지방을 태운다.

⑯분축焚祝: 축문을 태운다.

⑰철撤: 제수를 모두 거두어들인다.

⑱준餕: 제관과 참사자들이 음복주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을 한다. 원래 기제사에는 음복 절차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행한다.

2012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경상북도 안동에 거주하며 기제사를 지내는 5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실시한 「조상제사의 실태 및 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제삿날은 돌아가신 날(25.4%)보다 돌아가신 전날(74.6%)이 약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돌아가신 전날에 지낼 경우에는 밤 11시~12시 사이에 지내는 비율이 51.9%로 매우 높았다. 이것은 파제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경우에도 밤 11시~12시 사이에 지내는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밤 8시~9시 사이에 지내는 것이 그다음이었다. 제사의 방식은 단설보다 합설을 하는 경우가 66.0%로 2배 이상 많았다. 축문은 생략하는 경우가 81.4%로 많았고, 술은 한 번이나 두 번 올리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이는 관습에 따르거나 참사자의 인원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아헌을 주부가 하는 경우는 32.3%이며, 그 외에는 맏며느리 또는 며느리가 술을 올렸다. 돌아가신 조상을 한꺼번에 모셔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5.6%로 적었으나, 합사할 경우에는 남녀 모든 조상을 한꺼번에 지내거나 여성의 제사를 생략하고 남성과 함께 지내는 사례가 비등했다. 기제사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제물의 종류와 조리법, 참사자의 대상이었다. 즉, 제물의 종류와 조리법이 간소화였으며, 참사자의 대상이 가족 중심으로 변화했다.

우리말에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있는데, 의례를 행하는 예법이 가정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제사 역시 가정마다 예법의 차이가 있어 제사 시간, 절차, 제물의 종류와 양이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기제사는 현대인들에게 복잡한 제의 절차와 고향 땅까지 이동하는 고단함을 던져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제사의 전통이 유지되는 것은, 기제사를 통해 조상을 숭배하고 예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기제사는 유교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로서 조상에게 예를 다하고, 친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유교의례에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제사는 유교적 전통문화에서 '효'의 실천과 맞닿아 있다. 특히 기제사는 사대봉사를 원칙으로 하여 생전 면식面識이 있는 조상에 대한 예와 효를 다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우리의 전통예절(김득중·유송옥·황혜성,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8), 전통적 기제사를 통해 본 조상관(배영동, 비교민속학23, 비교민속학회, 2002), 제사와 제례문화(박원재·유권종·배영동 외, 한국국학진흥원, 2002),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한국국학진흥원, 2012),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배영동(裵永東)

길례요람
吉禮要覽

정의 1870년(고종 7)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1820~1898)이 대군·왕자·왕손의 관례冠禮·가례嘉禮·출합出閤, 공주·옹주·군주·현주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의절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

내용 『길례요람吉禮要覽』은 1870년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관례·가례에 관한 의절을 상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당시에 남아있는 자료와 전례를 근거로 편찬한 책이다. 필사본 자료로서 전체 2책으로 구성되

어 있다. 1책에는 흥선대원군의 친필로 알려진 서문, 대군관례, 왕자관례, 왕손관례, 대군가례, 대군출합, 왕자가례, 왕자출합, 왕손가례, 왕손출합이 수록되어 있고, 2책에는 공주가례, 공주출합, 옹주가례, 옹주출합, 군주가례, 군주출합, 현주가례, 현주출합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항목들은 대부분 실제 행해진 사례를 정리해 놓았으므로, 조선 왕실에서 행해진 관례·가례·출합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왕자 관례의 경우는 1703년(숙종 29) 연잉군延礽君의 관례, 왕손 관례의 경우는 1765년(영조 41) 은언군恩彦君의 관례, 왕자 가례의 경우는 1704년(숙종 30) 연잉군의 가례, 공주 가례의 경우는 1822년(순조 22) 명온공주明溫公主의 가례, 공주출합의 경우는 1823년(순조 23) 명온공주의 출합, 옹주가례의 경우는 1803년(순조 3) 숙선옹주淑善翁主의 가례 등 실제 행해졌던 사례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당시에 실제 행해졌던 해당 의례의 절차부터 거기에 소용되었던 물품의 명세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책의 편찬은 경복궁 중건 등의 사업과 더불어 왕실의 권위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흥선대원군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대군·왕자·왕손·공주·옹주·군주·현주로 상징되는 왕실 혈손들에 관한 의례를 재정립함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기강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길제
吉祭

정의 죽은 이의 신주를 사당에 안치하기 위해 담제禫祭를 지낸 다음 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역사 길제吉祭가 언제부터 행해졌으며, 또 언제부터 상례의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예기禮記』에 "길제를 지내면 평소의 거소로 되돌아온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상례 절차에는 고대부터 길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종실록太宗實錄』 8년(1408) 9월 15일 기사에서 "상喪이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길제를 행하는 것은 의義에 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태조太祖의 신주神主를 부묘祔廟하는 제사祭祀는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고부告祔하지 말고, '삼년상을 마친 뒤에 행한다.'는 정강성鄭康成(정현鄭玄)의 설에 의거하여 대상大祥을 기다린 뒤에 영부永祔의 예禮를 행하는 것이 거의 의에 합할까 합니다."라고 예조禮曹에서 아뢴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조선 초기에 길제를 행한 것은 확실하다. 길제는 고려 말기부터 행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례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관혼상제冠婚喪祭의 근간이 된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는 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길제가 예서禮書에 수록된 것은 명나라 구준邱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이 처음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장생金長生의 『상례비요喪禮備要』에 길제가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에 발간된 여러 예서는 물론 『사례편람四禮便覽』에도 길제가 상례의 마지막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 길제는 상례의 절차 중에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절차이다. 담제를 지낸 뒤에 상주가 날짜를 정하는데, 한 달 뒤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담제를 중월仲月(2월·5월·8월·11월)에 지냈으면, 그달 정일이나 해일에 길제를 지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달들은 정제正祭의 달이고, 상제喪祭를 마친 뒤에는 길제를 빨리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달이라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길제는 대체로 사당祠堂에 신주神主를 모실 때 지내는 의례로, 새로운 신주가 추가되면 사대봉사의 원리에 의해 5대조의 신주를 사당에서 물리는 제사이다. 이것은 신주를 사당에 정식으로 모시는 절차임을 의미한다. 사당에서 예전에 모시던 신주는 한 세대 이전의 종자宗子가 주관하던 것이므로, 이제는 호칭과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위神位의 자리를 바꾸어 옮기는 의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천祧遷'이라고 한다.

길제를 지내는 순서는 『사례편람』 등을 참고하여 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담제를 지낸 이튿날 점을 쳐 담제를 지낸 달의 다음 달 정일이나 해일을 택일한다. 제사 3일 전에 목욕재계

1. 출주

2. 신주 분면 자우기

3. 함중과 분면

4. 개제

5. 초헌

6. 독축

7. 매안할 5대조 신주 싸기

8. 신주 매안

길제 | 경북 영덕 갈암 이현일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한다. 하루 전날 사당으로 옮길 것을 아뢴다. 신위神位의 자리를 설치한다. 기구를 진설하고 짐승을 잡고 제기를 씻는다(시제 때의 의식대로 함). 차서次序를 결정하고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 그날 새벽에 일어나 채소와 과일을 진설한다(시제 때의 의식처럼 함). 날이 밝으면 신주를 모셔 자리로 간다. 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독축 포함)·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聞·수조受胙·사신辭神·신주 봉납·철상撤床을 하고 남은 음식을 나눈다. 물린 신주(5대조)를 묘소 옆에 묻는다. 침소로 되돌아온다. 참고로 길제를 지낸 이튿날부터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삼년상을 지키는 집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기喪期를 마친 다음, 이에 따른 의례로 반드시 길제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길제는 신주를 모신 사당이나 벽감壁龕이 있는 집은 물론, 선대의 모든 신주를 이미 조매祧埋하고 지방紙榜으로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도 거의 지내는 편인데, 이들은 불천위를 모신 종가와 큰집이다. 요즈음은 불천위 종가와 10대 종의 주손 또는 이에 버금가는 큰집에서 더러 사당이나 벽감에 신주를 모시는 경우가 있다. 사대봉사를 하지 않는 소종에서도 제주를 맡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신주가 있으면 상기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길제를 행했다고 한다. 1960~1970년대에는 대개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더욱 격식과 법도를 갖춘 길제를 행했던 것을 보면, 길제의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어 온 듯하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이 있거나 자손의 수가 적은 집에서는 대체로 정월 설날의 차례나 가을 추석 같은 천신薦新의 절기에 길제를 지내기도 한다.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 종가와 청계靑溪 김진金璡 종가는 지금도 계속 길제를 지낸다. 이들 종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아헌관이다. 두 집 모두 아헌례를 올릴 때의 아헌관은 종부宗婦이다. 그런데 아헌관은 색목色目·가문·지역 등에 따라 종부 또는 주부가 올리는 집도 있고, 종손이나 주인의 동생이 올리는 집도 있다. 농암 종가에서는 종부가 원삼족두리로 단장한 화복華服을 입고 올렸다. 청계 종가 역시 아헌관은 종부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종손의 동생이 맡아 헌작獻爵하였다. 그리고 종헌관은 농암과 청계 두 종가 모두 종손의 외가 사람이 맡아 올렸다.

특징 및 의의 길제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즉 고인故人의 사후세계까지 의례의 근간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길제는 상례가 끝난 다음, 산 사람이 망자에게 베푸는 상례가 종결되었으며, 망자에 대한 제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상인이 된다. 따라서 길제는 망자와 연결된 상례의 최종 절차이고, 사당에 모신 신주의 대수를 소목昭穆에 따라 이어 나가는 절차이다. 또한, 친진親盡한 조상신을 성대히 모셔 보내는 의례이며, 상중喪中의 기간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통과의례이다. 이렇게 볼 때, 길제는 상례의 마지막 절차를 의미할 뿐 아니라 한 집안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의례로 자리매김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四禮便覽, 喪禮備要, 禮記, 길제의 정치적 성격(김시덕, 비교민속학26, 비교민속학회, 2004), 향촌의 유교의례와 문화(권삼문 · 김영순, 민속원, 2003).

필자 송재용(宋宰鏞)

까마귀 모른 식게

정의 후손이 없는 망자의 영혼을 위한 제사.

역사 '식게'는 제주 민간에서 제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큰굿에서 노래로 불리는 〈차사본풀이〉에 따르면, 까마귀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존재이다. 이처럼 신령스런 까마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제사 지낸다는 의미가 있다. 아들이 둘 있는 집에서 미혼으로 형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죽은 아들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 훗날에는 동생이 이 제사를 맡는다. 그리고 딸만 둔 부모가 사망하면 사위가 처부모의 제사를 받든다. 이러한 제사가 더 이어지면, 삼촌의 제사는 조카가 맡고, 사위가 지내던 처부모의 제사는 외손이 맡게 된다. 이처럼 후손이 없어 다른 가족이 치르는 제사를 '까마귀 모른 식게'라고 한다.

내용 후손이 없는 망자에 대한 제사이므로 참석자는 망자의 가족이 중심이다. 영혼은 저승에 있다가 제삿날에 찾아오는데, 그 영혼을 잘 대접하면 보답을 받게 되며, 잘 대접하지 않으면 해코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망자에게 제사를 지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가족에 한정되므로 외부에서는 제사를 지내는지 알 수 없다. 참례자가 없으니 음식도 많이 만들지 않고, 가족들의 일상 음식 정도로 준비한다. 집안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제물을 준비하여 제상을 차리고,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끝낸다. 이러한 제사는 죽은 자의 무덤에 대한 벌초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조카가 망자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경우라면, 친족들이 양자를 들여 제사를 받들도록 함으로써 후손을 이어주고, 벌초의 의무도 지운다. 하지만 시집간 딸의 경우는 양자도 들이지 못하고, 제사도 당대에 그친다. 혹은 몰래 제사를 받들다가 외손에게 물려주기도 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드물다. 외조부모의 제사를 담당하는 외손들이 벌초까지 담당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래서 '까마귀 모른 식게'는 주로 시집간 딸이 후손이 없는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지내는 제사를 이른다.

특징 및 의의 망자의 영혼에 대한 대접은 선조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지만, 망자에 대한 후손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관념의 표시이기도 하다.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는 동안은 망자의 영혼이 후손을 보호해 준다는 의식이 있다. 여기에는 미혼으로 사망하는 경우라도 살아있는 자가 잘 대접해야 망인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무속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양자를 들여 망자의 뒤를 이으면 망자의 영혼이 선조로서 대접을 받게 된다. 후손이 없는 경우는 제사를 받지 못해 대가 끊기는 일이 벌어지기에 이 제도는 남아선호사상과 관련이 깊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제주인의 일생(현승환, 국립민속박물관, 2007), 제주유맥600년사(제주유맥600년사편찬위원회, 1996), 한국인의 일생의례-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필자 현승환(玄丞桓)

남계선생예설
南溪先生禮說

정의 1718년(숙종 44)에 조선 후기 문신 박세채朴世采(1631~1695)의 문집인 『남계집南溪集』에 수록된 예설 관련 내용을 별도로 모아 편찬한 책.

내용 『남계선생예설南溪先生禮說』은 남계 박세채의 저작 가운데 예설에 관하여 논한 자료를 별도로 모아 발간한 책이다. 박세채의 문인 김간金幹(1646~1732)이 주도하여 전체 20권 10책으로 엮였고, 1718년(숙종 44)에 김유金楺(1653~1719)가 비용을 대어 간행했다. 김간은 박세채의 문집인 『남계집』을 토대로 예설에 관한 내용만 뽑아서 편목을 정하고 거기에 적절한 자료들을 배치하였다. 각 편목별로 박세채가 평소 교유한 인물들과 예禮에 관하여 의견에 나누면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답을 한 서간書簡이 주로 수록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관련된 수필록隨筆錄, 설說, 의議, 변辨, 고증考證 등이 부가되어 있다. 서간의 경우 예설에 조예가 깊었던 동시대 인물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 명재明齋 윤증尹拯(1629~1714)과 왕래한 것이 많이 수록되었다.

내용은 사서인士庶人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예로부터 왕실에서 지켜야 할 예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관혼상제를 모두 다루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상례喪禮와 제례祭禮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박세채는 조선 후기 예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서 『육례의집六禮疑輯』·『삼례의三禮儀』·『가례요해家禮要解』 등의 예서도 남겼다. 박세채의 예설은 기본적으로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고례古禮를 기준으로 하였고, 현실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남귀여가혼
男歸女家婚

정의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婚禮를 치르고 신부 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한국의 전통적 혼인방식.

역사 '남귀여가男歸女家'란 남자가 여자집에 의탁한다는 의미이다.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 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고례古禮'인 친영혼에 대칭된다는 의미에서, 당시에 흔히 '속례俗禮'로 칭해졌다.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데릴사위혼·솔서혼率壻婚 등으로 부르는 연구자도 있다. 데릴사위라는 용어는 진秦의 췌서제贅壻制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서漢書』「가의전賈誼傳」에 "진나라 사람은 부유한 집 아들이 장성하면 분가해 나가고, 가난한 집 아들이 장성하면 데릴사위로 나간다[出贅]"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 문집에서 자주 언급 된 진췌秦贅·췌랑贅郎·췌서贅壻·췌객贅客 등은 모두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에서의 데릴사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1920년대 전후하여 성행한 것으로 알려진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의 혼인풍속인 솔서혼도 데릴사위혼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남귀여가혼은 그 기원이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로 추정된다. 『삼국지』「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서는 고구려의 혼속婚俗으로 서옥제의 내용에 대해 "혼약이 이루어지면 신부 집 뒤에 작은 집을 지어 '서옥'이라 칭하는데, 신랑이 저녁에 문밖에서 2~3번 간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서옥으로 가며, 아이를 낳아 장성하면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옥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후대의 '남귀여가혼'에서와 같이 여자 집에서 성혼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옥제와 남귀여가혼은 혼인 후의 거주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서옥제가 혼인 후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물다 마침내 남편 쪽으로 거주지가 정해지는 부처혼夫處婚이었다면, 남귀여가혼은 혼인 초기를 지난 후의 거주지가 남편의 집으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달랐다. 고려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신랑이 신부 집에서 평생 사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 부인과 함께 돌아가거나 분가해 나가는 경우 등 다양한 거주형태가 나타난다. 손자가 생긴 후에도 처가에 머무는 경우나 아예 처가가 있는 고장을 자손 대대의 삶의 터전으로 잡는 경우까지 있었다.

내용 남귀여가혼은 친영혼親迎婚과 달리 여러 날에 걸쳐 혼례가 진행되었다. 성혼 첫째 날에는 신랑이 자신의 아버지나 큰아버지 등을 상객上客으로 동반하여 저녁 무렵 신부 집에 도착한다. 이때 신부 집에서 성찬을 차려 신랑 측의 손님을 대접하며 신랑은 별다른 의식을 치르지 않고 신부와 동침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는 상견례 이전의 납채·납폐의 절차로 이미 성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는 등 법적·사회적으로 부부로 공인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날에는 신부 집의 친척과 신랑의 친구 및 기타 많은 하객에 대한 잔치를 벌였다. 셋째 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비로소 상견례를 치렀다. 이때 교배례交拜禮에 이어 표주박잔으로 함께 합환주를 드는 합근례合巹禮, 함께 음식을 드는 동뢰연同牢宴 등이 시행되는데, 성혼 3일 만에 부부가 비로소 대면하여 음식을 함께 든다는 의미에서 이를 '삼일대반三日對飯'이라고도 칭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날을 잡아 신부가 시부모를 찾아뵙는 의식인 현구고례見舅姑禮를 치렀는데, 이는 시집에서 살기 위해 들어가는 신행의 현구고례와는 별개의 의식이었다.

남귀여가혼은 조선에 들어오면서 친영혼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이 성리학 이념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해 혼인을 모두 친영례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영은 전통적 혼속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데 대한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국가와 일부 사대부가 민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영례를 시행하려 하였던 것은 속례인 남귀여가혼의 절차가 성리학적 질서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이었다. 처방거주妻方居住를 전제로 하고, 성혼일에 동침부터 먼저 한 후 혼례 3일째 되는 날에야 상견례를 한다는 점이 친영혼에 비해 무례하게 비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민간에서 남귀여가혼이 끈질기게 계속된 이유는 거주제의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거부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시대 이래 남녀균분상속에 의한 경제적

지원이나, 사위에게 아들 못지않은 혜택을 주었던 음서제 등도 전통적 혼인제를 뒷받침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친영혼을 솔선수범 해야하는 성리학자들도 속례인 남귀여가혼의 혼인방식을 고수하였다. 조선 전기 대표적 성리학자인 김종직金宗直을 비롯해, 정여창鄭汝昌·김굉필金宏弼·이황李滉·류성룡柳成龍 등의 가문 연고지로서 외가·처가·처외가 등이 내세워진 것도 남귀여가혼의 혼인방식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친영례 시행이 여의치 않자 친영례를 강요하는 대신 삼일상견례만이라도 당일상견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명종대를 전후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였던 사람은 서경덕徐敬德과 조식曺植이었다. 당일상견례는 중종대中宗代에 서경덕 아들의 혼인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명종明宗·선조대宣祖代를 거치며 조식·이황 등의 자녀들이 혼인할 때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남귀여가혼의 혼인절차 일부를 수정한 당일상견례가 어느 정도 사족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하자, 이에 고무된 일부 인사들이 좀 더 친영제에 가깝게 하고자 명종대에 명일현구례를 첨가하여 반친영을 주창하였으나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다. 명종대 이후 일반 사서인의 혼례는 전통적 남귀여가혼의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당일상견의 절차를 수용한 남귀여가혼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전기 이래 끈질기게 친영례 시행을 시도하였던 사대부는 친영의 요건 중 당일상견례만을 시행하여, "사정私情을 앞세우고 예의는 뒤로 한" 삼일상견례의 '무례한'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명종대에서 인조대仁祖代 사이에 발간된 문집들에서 당일상견의 절차를 밟은 다음 거주지를 처가로 택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 이를 일컬어 '시속時俗'·'속례'·'속제俗祭'라고 칭하였던 사례가 자주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일상견의 절차를 수용한 새로운 남귀여가혼은 중종대에 서경덕이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조선 중기를 지나며 새로운 속례(이하 신속례新俗禮)로 널리 수용되었다.

신속례의 성립으로 친영제를 도입하려는 성리학자들의 노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17세기 예학의 심화와 함께 고례의 시행이 다시 화두로 등장하였다. 거주제를 일단 논외로 하는 것은 반친영과 다름없으나, 반친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친영제의 요소를 좀 더 보강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인조대 무렵 나타났다. 신랑집과 신부 집 사이에 임시로 관소館所를 마련하여 혼인의식을 진행한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가 그것이다. 그러나 가관친영례는 의례 자체가 가진 문제와 시행상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인조대부터 50여 년간 호서 사림을 중심으로 시도되다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변형된 형태로라도 친영례를 시행하려던 사대부들의 노력조차 중단되고 신속례로서의 남귀여가혼이 조선 후기 혼례의 주류가 되었으니, 이러한 사실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사대부의 문집이나 일기 등에, 신부 집에서 혼인 당일에 상견례를 한 후 신랑은 본가와 처가를 오가나 신부는 1~2년 자신의 집에서 머물다 시집으로 가는 사례가 간혹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조선사회는 건국 이후 왕실부터 일반인의 혼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영례를 시행하려 진력하였으나, 왕실을 제외한 일반인의 혼례에서는 반친영이나 가관친영 등 변형된 형태의 친영례조차 조선 후기까지 끝내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전통적인 남귀여가혼을 약간 변형한 신속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록 혼례 후 친정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은 엿보이지만, 전통적인 남귀여가혼의 끈질긴 잔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친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선사회의 강박의식은 친영이라는 용어의 남발을 초래하여 마치 친영혼이 정착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당일상견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남귀여가혼조차 친영이라 부르거나, 일본강점기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다'는 어의에만 초점을 맞추어 신랑이 '신부 집에 (혼례를 치르기 위해) 가는 것'을 친영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친영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남귀여가혼은 거주방식이 처처혼妻處婚과 유사하다. 그러나 신혼기간 외에 전 혼인생활을 처가 또는 처가 근처에서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식이 처가의 친족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혼인절차에서 상견례 전에 부부가 동침한다는 점과 혼인 후 상당기간 신부가 신랑 부모를 뵙는 정식 절차를 갖지 않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남귀여가혼은 중국 문화의 막대한 영향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 신랑이 신부의 부모·형제·자매를 비롯한 처가 식구와 돈독한 관계를 갖게 되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지위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가족제도(노명호, 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조선 혼인의 주요 형태인 솔서혼속고(손진태, 조선 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조선전기 혼인의례와 혼인에 대한 규제(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장병인, 조선시대사학보45, 조선시대사학회, 2008),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장병인, 역사와현실58, 한국역사연구회, 2005),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혼례의 절차 및 의미에 대한 고찰(정종수, 민속학연구6,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필자 장병인(張炳仁)

납길
納吉

정의 주육례周六禮의 세 번째 혼례 절차로 '문명問名'을 통해 신부의 이름을 알아온 후, 그것을 가지고 혼인의 길흉을 점쳐 길함을 얻으면 그 결과를 신부 집에 알리는 의식.

역사 납길納吉의 의식은 주周나라의 주공周公이 저술했다고 하는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송대宋代에 이르러 『가례家禮』의 혼례가 의혼議昏·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의 네 가지 절차로 축약되면서 납길은 『가례』에서 간략히 의미만 언급되었다.

내용 『의례』에 기록된 납길은 기러기를 예물로 쓰며 의식절차는 납채의 예와 같다고 되어 있다. 납길할 때 사자使者가 말하기를 "어른께서 명을 내리시는 바에 따라 ○○○가 점을 쳤는데 결과가 길합니다. 이에 부족함을 무릅쓰고 ○○○를 보내어 어른께 알립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신부 집의 주혼자가 말하기를 "제가 딸을 잘 가르치지 못했는데 혹 배필감이 되지 못할까 걱정이 될 따름입니다. 어른께서 길함을 얻으셨다니 저 또한 조금이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이에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주자朱子도 『가례』에서 납길의 의미를 사당에서 점을 쳐 길한 조짐을 얻으면 다시 사자로 하여금 혼사가 정해졌음을 알리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납길에 대해 『가례작의嘉禮酌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며칠이 지난 뒤에 납길의 예를 행한다. 고례古禮에는 납길에 납채 때와 같이 기러기를 썼다. 그때의 말은 '어른께서 명을 주시어 ○○○가 점을 쳐보니, 길吉이라 하였습니다. ○○○를 시켜 이에 고합니다.'라고 한다. 신부 집의 주혼자가 답하기를 '○○○의 자식은 잘 가르치지 못해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되오나, 길하다 하오니 감히 사양하지 못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가례』에는 납길의 절차가 없다. 살펴보건대, 옛사람은 하늘의 밝음을 잇는다 하여 복서卜筮를 중히 여겼으나 지금은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니, 다음과 같이 납길의 말을 글로 써서 서신으로 보내도록 한다. '아름다운 허락을 받잡고 종족에게 의논하여 점을 대신하였는바 모두 길하다 하여 이에 고합니다.' 이에 신부 집에서는 답신하기를 '거듭 명을 받잡고 길하다 말씀하시니 ○○○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옵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한 후 다산은 당시 풍속으로 신랑 집에서 먼저 신랑의 의복 치수를 적은 의양衣樣을 신부 집으로 보내는데, 이를 납길하러 갈 때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납길은 신랑과 신부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쳐 길함을 얻은 후 양가에서 두 사람의 혼인 이행을 더욱 확고히 결정하는 의의를 갖는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이 길함을 얻게 되면 신랑의 의양단자衣樣單子를 신부 집으로 보내는 것과 같이 혼인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작점으로서도 특징을 지닌다.

참고문헌 家禮, 嘉禮酌儀, 儀禮,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허인욱, 돌베개, 2012).

필자 최배영(崔培英)

납주
納主

정의 제사를 지낸 뒤에 신주神主를 다시 제자리에 모시는 일.

경북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충남 논산 사계 김장생 종가

납주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제사를 다 지내고 사신辭神한 뒤에는 신주를 다시 주독主櫝에 담고 제자리에 모시는데, 이를 납주納主라고 한다. 지방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을 태우는 '분축焚祝'을 납주라 하기도 한다. 신주를 감실에 옮길 경우,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를 한 광주리(혹은 상)에 같이 담아 옮긴다. 주인이 함을 닫고 고위의 신주를, 그리고 주부는 비위의 신주를 받들어 광주리나 혹은 상에 올려 옮긴 뒤 사당에 모신다.

특징 및 의의 신주는 돌아가신 조상의 친속과 관작, 봉사자의 이름 등을 쓴 것으로 대표적인 신위의 상징이다. 신주는 장례식 때 묘지에서 제작하여 사당에 모신다. 신주를 대신한 지방은 조선 초기부터 일회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일반가정에서는 거의 지방을 사용하므로 납주의 의식은 생략되었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이희재(李曦載)

납징
納徵

정의 주육례周六禮의 네 번째 혼례 절차로 혼인이 이루어지게 됨을 표시하고자 폐백을 신부 집으로 보내는 의식.

역사 납징納徵은 중국 주周나라의 주공周公이 저술했다는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송대宋代에 이르러 『가례家禮』의 혼례가 의혼議昏·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의 네 가지 절차로 축약되면서 『의례』의 납징은 『가례』의 납폐에 포함되었다.

내용 『의례』에 기록된 납징은 현훈玄纁 두 가지 색의 속백束帛과 녹비鹿皮 한 쌍을 폐백으로 삼는다. 그 의식 절차는 납길의 예와 같다. 주자朱子도 『가례』에서 납징의 의미를, 사자使者에게 폐백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이를 신부 집에서 받아들이면 혼례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납징에 대해 『가례작의嘉禮酌儀』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혼례 하루 전 날 납징의 예를 행한다. 고례古禮에는 납징에 현훈 두 가지 색의 속백과 녹비 한 쌍을 썼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폐백에는 색 있는 비단을 쓰는데 빈부에 따라 적당하게 하되 적어도 둘이고 많아도 열을 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의례』에 피백皮帛은 옷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백帛은 주척周尺으로 40척이 한 필匹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척尺에 해당하니, 면포綿布 두 필을 하나는 현玄으로 하고 하나는 훈纁으로 하여 쓰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색 있는 보자기로 싸서 작은 칠함漆函에 넣고 다시 보자기로 싼다. 살펴보건대 속백이란 다섯 필을 말한다. 아마도 비단 한 필에 두 끝이 있으니 10단端이란 5량兩인 듯하다. 5량 중에 현은 3, 훈은 2이니 천天의 수는 3이고, 지地의 수는 2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의 면포는 증백繒帛(비단) 못지않으니, 가난한 선비의 집에서는 이를 써야 할 것이다. 또

한, 두 필의 면포도 가난한 집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 주자는 '적으면 양兩에 지나지 않고, 많아도 열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주자도 한 양을 나누어 현과 훈으로 쓰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 가난한 집에서는 면포 한 필을 둘로 나누어 20척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20척은 엷은 홍색으로 하여 예를 행하면 될 것이다. 요즘 회현방會賢坊의 정씨鄭氏는 대대로 녹비 두 벌을 전한다고 한다. 부유한 집에서도 이것만을 폐백으로 쓰고 증백을 감히 쓰지 않으니 아름다운 법이라 하겠다. 고례에 납징 때 신랑 집의 사자가 전하기를 '어른께서 ○○에게 아내를 주신다는 가명嘉命이 있어 ○○○는 선인의 예에 따라 녹피와 속백을 가지고 ○○○를 시켜 납징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한다. 신부 집의 주혼자가 답하기를 '어른께서 선인의 법에 따라 중례重禮를 내리시니 ○○○는 감히 사양하지 못합니다.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한다. 성호가 말하기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폐幣만 말하고 징徵은 말하지 않고 있다. 내 생각에 고례에는 납채에 안雁(기러기)을 쓰고 납징에는 폐를 썼으니 지贄나 폐는 정성과 공경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자는 납징하기 위해서 폐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납폐를 하고자 가는 것이 아니다. 징이란 성成이다. 만약 납폐라고만 한다면 폐를 보내는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납폐를 납징으로 고쳐 부르니 고례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다음과 같이 서신을 보낸다. '댁의 아름다운 따님을 ○○○의 아들 ○○의 아내로 주신다는 가명을 받자와 ○○○는 선인의 예에 따라 현훈 두 백帛을 납징케 하오니 살펴 주십시오.' 답서에서는 '선인의 법을 따라 중례로서 내리시는 은혜를 받자왔습니다. 저의 딸은 어리석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였사온데 명하시니 ○○○는 감히 사양하지 못합니다.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납징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사자를 통해 혼서와 폐백을 보내어 두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됨을 정식으로 표시하는 증표로서의 의의가 있다. 음양陰陽이 갖추어짐을 뜻하는 현색玄色과 훈색纁色의 폐백은 다산이 『가례작의』를 저술할 당시 청색과 홍색으로 대치되기도 한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家禮, 嘉禮酌儀, 儀禮, 가례서를 통해 본 혼례관 연구(최배영,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필자 최배영(崔培英)

납채
納采

정의 혼례에서 주육례周六禮의 첫 번째 절차이자 주자사례朱子四禮의 두 번째 절차로 의혼이 이루어진 뒤 신랑 집에서 신부를 채택하는 예를 신부 집에서 받아들이는 의식.

역사 중국 주周나라의 주공周公이 저술했다는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의 납채納采 절차는 『가례家禮』의 의혼 과정과 납채 과정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가례』를 토대로 저술된 조선시대의 예서禮書들에서 납채는 혼례의 두 번째 의식으로 기술되었다. 한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의례』와 『가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우리 고유의 풍습을 참작해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쓴 『가례작의嘉禮酌儀』에서 납채·문명·납길·납징·청기·친영의 절차를 기록한 혼례를 저술하였다.

내용 『의례』의 기록에 따르면, 신랑 집에서는 중매인을 신부 집에 보내어 혼인에 대한 말을 건넨 후 납채의 예를 행한다. 납채를 행할 때는 기러기를 예물로 쓴다. 사자使者는 현단복玄端服을 입고 간다. 신부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인 빈자儐者가 문밖으로 나와 어떤 일로 왔는가를 묻고 들어가 알린다. 이때 사자가 말하기를 "어른께서 따님을 ○○의 아내로 주시니 ○○○가 선인의 예에 따라 저를 시켜 납채를 청하게 하였나이다. 납채의 예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한다. 그러면 빈자가 답하기를 "○○○의 딸은 어리석고 또한 잘 가르치지 못하였는데 어른께서 명하시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다. 사자가 이에 감사의 말을 하기를 "부족함을 무릅쓰고 납채를 받드나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신부 집의 주혼자가 빈賓과 동일한 예복을 입고 대문 밖으로 나가 맞이한다. 신부 집의 주혼자가 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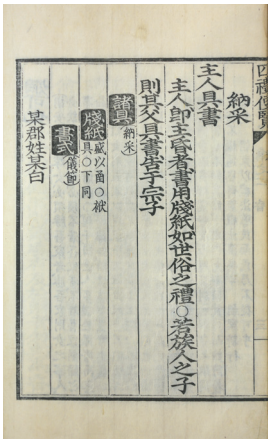

납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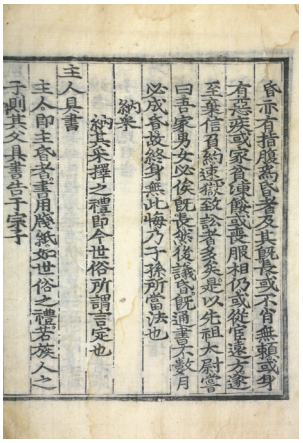

납채 | 가례 | 국립민속박물관

하되 빈은 답배하지 않는다. 빈과 신부 집의 주혼자가 서로 읍하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사당 문에 이르러 다시 서로 읍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며 세 번 읍揖하고는 사당 앞 계단 아래에 이르러 세 번 사양한다. 신부 집의 주혼자는 당 위로 올라가 서쪽을 향해 서고, 빈은 서쪽 계단을 통해 당 위로 올라가 기둥 아래에 이르러 동쪽을 향해 선다. 신부 집의 주혼자가 동쪽 계단의 위쪽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고 재배한다. 사자는 당 위의 두 기둥 사이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기러기를 드린다. 빈이 당에서 내려와 사당 문밖으로 나간다. 주인이 당에서 내려와 나이 많은 가신家臣에게 기러기를 건네준다.

『주자가례』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다. "납채란 채택하는 예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곧 세속에서 말하는 언정言定의 의미이다. 신랑 집의 주혼자는 서신을 작성해 새벽에 일어나 사당으로 가져가 아뢴다. 그러고 나서 자제를 사자로 삼아 신부 집으로 보낸다. 사자는 성복盛服을 하고 가고, 신부 집의 주혼자도 성복을 하고 나와 사자를 맞이한다. 사자가 서신을 전하며 '어른께서 ○○에게 아내를 주시니 선인의 예에 따라 ○○○를 시켜 납채를 청하나이다.'라고 하면 신부 집의 주혼자는 '○○○의 딸은 어리석고 또한 잘 가르치지도 못하였습니다만 어른께서 명하시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하고 북향하여 재배한다. 사자는 물러나 답배하지 않는다. 신부 집의 주혼자는 받은 서신을 받들어 사당에 아뢴 뒤 답신을 사자에게 주고 그를 술과 음식으로 대접한다. 또한, 사자와 함께 온 종자도 별실別室에서 대접하고 모두에게 폐백을 주어 보낸다. 사자가 신랑 집에 돌아와 아뢰면 주혼자가 다시 사당에 아뢴다."

다산은 옛 문헌들을 통해 과거에 행해졌던 납채의 내용을 연구하여 고례와 『가례』에 나타난 납채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가례작의』에서 언급하였다. 첫째, 고례古禮에는 납채의 예를 사당에서 행하였는데, 주자가 이를 바꾸어 사당에 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고례에는 사자가 구전으로 말을 전했지만 주자가 이를 서신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모두가 풍속을 따르고 인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셋째, 고례에는 빈과 주혼자가 모두 현단복을 입었는데, 주자는 빈과 주혼자가 모두 성복을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에 다산은 이들 예서를 참작하여 납채의 예를 행하는 의식으로서 서신에 "혼인을 허락하시는 가명嘉命을 받자와 ○○○는 선인의 예에 따라 경첩庚帖을 드림으로 납채의 의儀에 가늠하옵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경첩은 세속에서 말하는 사주단자四柱單子로 신랑의 생년월일을 쓴 것임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답신에는 "가명을 받잡고 경첩을 주시오니, 제가 어찌 감히 사양하오리까. 삼가 받자옵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옵니다."라고 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다산은 경첩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돈을 주는 풍습이 예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포백布帛으로 대신하여 두어 자를 주든가 여덟 내지 아홉 자를 주어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를 아는 댁은 자제나 집안사람을 사자로 보내는 것이 옳음을 강조하였다.

다산보다 약 90여 년 정도 더 앞선 시대를 살았던 도암陶菴 이재李縡(1680~1746)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의 혼례를 기술하는 가운데 납채를 행할 때는 자제를 사자로 삼고 중매인이 동행하도록 하며, 서신은 함에 넣어 보자기로 싸서 종자가 이를 가지고 가게 한다고 하였다. 이에 신부 집에 도착해 중매인이 먼저 들어가 고한 뒤 신부 집의 주혼자가 나와 맞이하면 사자가 들어가고 종자가 함을 가지고 따라 들어간다고 하였다. 1893년경에 저술된 『광례람廣禮覽』의 기록에 혼례 제구는 풍속대로 따른다고 하여 사주단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랑 집에서는 먼저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쓴 단자單子를 보내니, 이것이 속칭 주단柱單이다. 대

간지大簡紙 한 폭을 써서 겉봉을 만들고 여기에 사주四柱라고 두 글자를 쓴다. 종이를 접어 가운데 칸에 연월일시를 쓴다. 사주단자를 백지에 사선으로 싸고 싸릿가지를 반으로 내어 그 사이에 끼우고 붉은 실로 그 아래를 묶고 그 나머지를 위로 끌어올려 상단에 묶는다. 사람을 시켜 신부 집으로 보내면 신부 집에서는 음식을 대접하고 예전例錢으로 오전五錢을 준다." 1924년경의 활판본인 『현토주해사례편람懸吐註解四禮便覽』에서는 예부터 내려온 상류사회의 혼례의식으로 두 집안이 약혼한 뒤에 신랑 집에서 사주단자를 신부 집으로 보내는데 약혼에 단자를 보내는 것은 친구나 중매쟁이의 소개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신랑 집에서 갖추어야 할 도구는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대전지大牋紙 한 장, 종이를 묶는 청홍사靑紅絲 두 타래, 종이를 싸는 붉은 보자기[紅袱] 한 개로 제시되어 있다.

지역사례 전라북도에서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사성四星을 보내는 과정을 납채라고 하는데, 신부 집에서 신랑의 사주단자를 받아 신랑·신부의 궁합이 맞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신랑 집에서 납채서와 사주를 동봉하여 신부 집으로 보낸다. 충청남도에서는 납채에 사주를 보내면 신부 집에서는 마루에 청수 한 그릇을 상에 받쳐두고 사주를 받을 채비를 한다. 사주가 도착하면 상 위에 공손히 올려놓는다. 사주를 가져간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주는 신부의 혼수를 담은 의양 그릇에 넣어두었다가 시집갈 때 함께 보낸다. 신부는 사주를 한평생 잘 보관하였다가 죽은 후에 관 속에 넣기도 하고 탈상脫喪할 때 상복과 함께 태운다. 강원도에서도 혼담이 성사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사주를 보낸다. 신부 집에서는 사주를 받을 때 예를 갖춘다. 신부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이 사주는 평생 간직해야 하는 '평생사주'이다. 이를 평생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사주의 반을 잘라 남편의 관에 넣어 준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죽으면 관에 넣어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저승에 가면 각자 가지고 간 사주를 맞춰서 신랑·신부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경상남도에서는 신랑의 사성을 보낼 때 봉투에 넣고 사성보로 싼다. 사성보로는 청조靑鳥 한 쌍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사용한다. 청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함께 지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하게 될 신랑·신부가 그와 같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납채서(청혼서)와 신랑의 사주를 신부 집으로 보내는 것이 곧 정혼定婚의 의미이다. 사주는 두꺼운 간지(가로 36~41㎝, 세로 27~30㎝)를 다섯 칸으로 접어, 가운데에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쓰고 봉투에 넣는다. 그러고 나서 가는 싸릿가지를 봉투의 길이 보다 위·아래로 1㎝ 정도 길게 자른 뒤, 위의 1㎝를 남기고 가운데를 갈라 사주 봉투를 끼운 다음, 청홍 타래실을 싸릿가지 끝에 걸어 감고, 나머지 타래실을 위로 올려 묶는다. 그리고 사주 봉투를 금전지가 달린 홍색 겹보로 싸고 근봉謹封을 끼운다.

특징 및 의의 납채는 혼례절차 가운데 실제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온 오랜 관습이다. 이는 청혼의 의미를 지닌 서신을 통해 언약을 하는 절차로서 의의를 지닌다. 본래 자제 혹은 집안사람 중에 예를 아는 사람을 선정해 정중한 구전의 예로 이행되었던 납채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서신과 신랑의 사주단자를 보내는 경첩庚帖의 의미로 변화해 오늘날까지 관행이 되어온 특징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家禮, 嘉禮酌儀, 廣禮覽, 四禮便覽, 儀禮, 懸吐註解四禮便覽, 조선시대 혼례문화콘텐츠(최배영, 이노북스, 2013),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최배영(崔培英)

납채서
納采書

정의 남자 집안 혼주가 여자의 집안으로 혼인을 청하기 위해 보내는 편지.

개관 고례古禮에는 시자侍者(심부름꾼)가 구전口傳으로 말을 전했는데, 주자朱子는 이를 편지便紙로 바꾸었다. 또한, 사당에서 행行하던 것을 고告(알림)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는 납채의 예를 경첩으로 대신했다.

내용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는 "반드시 중매인이 양가를 왕래하여 혼인의 말을 전하고, 여자 집안에서 허락하기를 기다린 후에 납채한다."라고 하였다. 납채의 순서는 우선 혼주가 간지簡紙를 사용하여 납채 서식에 따라 납채서를 쓴다. 그런 다음 혼주는 일찍 일어나 납채서를 가지고 사당에 고하고, 사주서四柱書와 함께 함에 넣은 다음 보에 근봉謹封하고, 자제를 시자로 삼아 청혼할 여자 집으로 보낸다. 그러면 여자 집의 혼주가 나아가 시자를 맞이한다. 그런 뒤 납채서를 받들어 사당에 고하는데, 사당이 없는 상민常民의 경우는 사당에 고하는 행사가 자연히 생략되어서 편지를 교환하지 않고, 단지 사람을 보내어 언약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자 집안으로부터 납채답장納采答狀을 받은 남자 집안에서는 주인이 사당에 고한다. 이 납채 의식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양가의 혼인이 이루어진다.

납채서 서식(증보사례편람)
○○고을 ○○○는 ○○고을 ○○벼슬의 집사執事께 여쭙습니다. 어른께서 저희의 한미寒微함을 낮춰보지 않으시고 중매의 의논에 좇아 따님(또는 상황에 따라 고모·자매·질녀·손녀 등을 쓴다)을 저의 아들 ○○의 아내로 주심을 허락받아, 이에 예법에 따라 삼가 사람을 시켜 납채納采합니다. 어른께서는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년 ○월 ○일
○○ 고을 ○○○사룁니다.

납채서를 보내는 사람은 남자집안의 가장家長이며, 반드시 신랑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인奉祀人(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받는 사람은 여자 집안의 가장이므로, 신랑 집의 경우와 같다. 받는 사람이 관직이 없을 경우에는 '○○ 벼슬 집사執事' 대신 '석사碩士'라는 칭호를 씀이 타당하다. 가족관계에 따라 호칭은 달라진다. 청혼을 받는 여자가 딸일 때에는 '영애令愛', 질녀나 손녀일 때에는 '영질녀令姪女', '영손녀令孫女'라고 쓴다. 납채서를 보내는 사람이 관직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관직을 기입하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납채는 신랑 집안에서 청혼하고 신부 집안에서 허혼하는 혼약婚約에 관한 의례로서 『가례家禮』에서는 "채택採擇하는 예禮를 납納함이니, 이제 세속世俗에 이른바 정諟함이라."하였다. '채採'는 기녀其女를 채택한다는 뜻이지, 납폐納幣(예물을 보냄)의 뜻이 아니다. '납納'이라는 용어는 남녀 양쪽 집안에서 서로 채택하여야 하므로 여자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용한 것이다. 납채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반드시 중매인을 통한다. 둘째, 납채서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주인(혼주)이고, 그 자제를 시자로 삼아 여자 집으로 보낸다. 셋째, 납채서를 보내는 사람은 관직이 있어도 기입하지 않으며, 납채서를 받는 사람이 관직이 없을 때에는 받는 사람의 관직 대신 '석사'라고 기입하여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 넷째, 집안의 재산보다는 인물과 인품을 존중했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酌儀, 增補四禮便覽, 결혼풍속의 변천(조풍연, 여성동아 2월호 별책부록, 1961), 이씨 조선의 혼인제도 연구(이길표, 우당 조기홍선생 회갑기념 가정학논문집, 1968), 한국의 혼속연구(김종흥, 대성문화사, 1981), 한국혼인고(김완선, 고려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이길표(李吉杓)

납폐
納幣

정의 전통 혼례에서 납폐納幣는 폐백을 보낸다는 뜻으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혼서婚書인 서신과 물목을 함께 넣어 보내는 절차.

역사 전통사회에서 납폐는 혼례 전날 또는 며칠 전 밤에 행하는 절차로, 채단과 혼서지 등을 넣은 함을 함진아비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납폐의 예물로 비단을 썼으므로 '채단綵緞'이라고도 한다. 고례古禮에는 검은 비단[玄緞]과 붉은 비단[纁緞]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검은색[玄]이 푸른색[靑]으로 바뀌어 '청단', '홍단'이라 했다. 중국에서는 검은색과 붉은색을 썼는데, 우리나라의 관습은 검은색 대신 푸른색을 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납폐는 가문이나 지방, 또는 가정의 형편에 맞게 보냈다.

내용 납폐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예물을 보내는 절차로 납폐에는 혼서지와 납폐물목을 넣어 보낸다. 혼

서는 신부 측에서 혼인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선인先人의 예禮로 납폐의 의식을 행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납폐물품은 청홍채단, 혼수婚需, 혼서, 물목物目 등이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납폐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어야 하며, 많아도 열 가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시대와 지역, 그리고 개별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 내용물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사계 김장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사혼례士昏禮에 납징納徵할 때 현훈玄纁 속백束帛을 10단端으로 제한하였다. 현훈(검은 천과 붉은 천)은 음양이 갖추어지는 것을 상징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에도 납폐의 피백皮帛은 제한을 두고, 성誠과 신信의 마음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경계하였다.

납폐는 사치금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세종世宗 17년 2월 29일에는 납폐納幣할 때 사용되는 주紬 혹은 포布, 즉 명주나 베의 수량을 신분에 따라 명시하였고, 중종中宗 36년 12월 29일에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라 납폐할 때 자신의 신분에 맞게 현훈채단을 마련할 것을 논의했다. 그러나 사치풍속이 성행하여 이를 법으로 규찰해야 한다는 상소가 인조仁祖 15년 5월 12일, 명종明宗 8년 8월 29일, 영조英祖 9년 12월 10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왔다. 납폐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조선 후기의 『광례람廣禮覽』에 따르면, 함函, 현훈, 청홍사靑紅絲, 청홍지靑紅紙 등이 있다.

납폐를 넣은 납폐함에는 한지를 깔고 오곡주머니와 청홍채단, 물목기物目記 등을 넣는다. 오곡은 각각 자손과 가문의 번창을 뜻하는 목화씨, 잡귀나 부정을 쫓는 팥, 며느리의 심성이 부드럽기를 바라는 노란콩, 부부의 인연과 해로를 기원하는 찹쌀, 장래의 길함을 기원하는 향 등을 넣기도 하고, 잡귀를 물리친다는 고추씨나 일부종사를 의미하는 차茶를 넣기도 한다. 이는 지역이나 가문의 관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청색 채단은 홍색 종이에 싸서 청홍실로 아래위를 묶고, 홍색 채단은 청색 종이로 싸서 청홍실로 아래위를 묶는다. 그리고 청홍양단의 채단을 넣는데, 음을 상징하는 청단을 먼저 넣고, 양을 상징하는 홍단을 넣는다.

납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랑 집과 신부 집에서는 둥근 시루에 찹쌀 두 켜와 붉은 팥고물을 넣고, 시루 한가운데에 밤 한 톨을 박고 대추 9개(홀수)를 밤 주위에 박아서 찌는 봉치떡을 준비한다. 신랑 집에서는 함을 시루 위에 올려놓았다가, 함진아비는 함을 지고 신부 집으로 간다. 신부 집에서는 대청이나 뜰에 자리를 깔고 병풍을 두른 다음, 자리 위에 소반을 놓고 붉은 보를 덮은 뒤 기다리다가, 함이 들어오면 시루를 상위에 갖다가 놓고 그 위에 함을 올려놓았다가 받는다. 신부 측 혼주가 상의 동쪽에서 함을 향해 두 번 큰절을 한 후, 함이 옮겨지면 혼서를 펴서 읽고, "예를 갖추어 납폐를 행하시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나이까?"라고 응대한다. 이어 신랑 측 집사와 그 일행을 대접하고 약간의 거마비를 주기도 한다. 혼서지는 당시 혼인의 유일한 증거였으므로, 신부는 친정에서 받은 혼서지를 평생 간직하고 죽게 되면 관속에 넣었다. 이는 평생 남편만을 섬기며 살았다는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지역사례 조선후기 서울 양반가의 혼례사례를 보면, 함속에는 혼서와 두 가지의 채단이 들었던 것은 공통점이다. 두 가지 채단의 경우, 동래 정씨가에서는 분홍색과 비취색, 그 외의 가정에서는 청색과 홍색의 채단을 넣었다. 채단은 각기 반대색의 종이로 싼 뒤 타래실로 동심결을 맺어 함 속보에 그 두 가지를 함께 싸서 넣었다. 함의 내용물로는 마분향을 홍색종이에 싸서 함의 네 귀퉁이에 넣고, 가운데는 콩 한 알, 팥 다섯 알, 면화 한 송이(씨가 일곱 개나 아홉 개)를 넣은 황낭을 놓았다. 그 위에 함속보로 싼 두 가지 채단을 넣고 넣고 맨 위에는 흑색 겹보로 싸서 근봉 세 개를 끼운 혼서를 올려 놓았다. 그리고 함의 뚜껑을 덮은 뒤 자물쇠로 잠그지 않고 자물통을 끼워놓은 채 함 겉보로 함을 싸서 네 귀를 모아 위로 올려 근봉을 끼웠다. 붉은 색의 함질비는 무명 스물한 자로 마련하여 석 자는 땅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로 고리를 만들어 함을 지도록 하였다. 한편 신부 집에서는 봉치떡을 만들어 그 시루를 소반 위에 올려 놓고 함을 받았다. 이때 봉치떡은 가운데 대추와 밤을 박아서 쪘는데, 그 대추와 밤의 개수는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었다.

조선 후기 서울 반가의 혼례 – 사례별 혼례의 함

구분	동래 정씨	한산 이씨	안동 김씨	전주 이씨	여흥 민씨
함	1개				
혼서	1개				
채단	2개 (분홍,비취)	2개 (청색, 홍색)			
황낭	1개/콩1알, 팥1알, 면화1송이	1개 (면화)	없음	없음	1개/콩9개, 팥1알, 면화1송이
마분향	4개	4개		없음	
봉치떡	1시루 (밤1개, 대추9개)	1시루 (밤없음, 대추7개)	1시루 (밤없음, 대추7개)	1시루 (밤없음, 대추9개)	1시루 (밤없음, 대추7개)

특징 및 의의 오늘날에는 그 의미나 절차가 많이 희박해지고 있지만, 납폐는 전통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왔던 혼례의 절차로서 가치가 있다. 첫째, 납폐는 양가가 성혼에 합의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둘째, 납폐는 양가에서 혼인허락과 관련된 서신과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므로, 필요한 예법에 따라 정중하게 시행해야 했다. 셋째, 납폐의 서신이나 납폐물목은 시대와 지역, 개별 가정의 형편과 가문에 따라서 달랐고, 그 다름을 인정해 왔다. 넷째, 납폐할 때에는 사치나 지나침을 경계하고 검소함을 중시했으며, 형편에 따른 예법만 갖추면 합당한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서울 사람들의 혼인, 혼례, 결혼(박혜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전통혼례에서의 함(이길표, 전통생활문화학회지7-2,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2004), 조선시대 관혼상제1-관례 · 혼례(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조선시대 혼례문화 콘텐츠(최배영, 이노북스, 2013), 조선 후기 서울 반가의 혼례(이길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2000).

필자 주영애(朱英愛)

납폐물목
納幣物目

정의 납폐함納幣函 속에 넣는 물건의 목록.

내용 납폐물목納幣物目은 혼인 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보내는 예물이 많을 때, 그 물목을 별도로 적어 신부 집으로 보낸 문건을 말한다.

납폐納幣는 전통혼인의 기본의식인 육례六禮의 하나이다. 납채 뒤 혼인의 모든 의사가 합의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서신과 폐물을 보내는 의식을 말하는데, '납징'이라고도 한다. 연길涓吉절차를 마친 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낸 예물도 '납폐'라 하는데, 이때 예물을 담은 상자를 납폐함納幣函이라 한다. 신랑 집에서는 약혼의 표시로 혼서지婚書紙와 함께 신부 치맛감 등 혼수품을 납폐함에 담아 신부 집에 보냈다. 납폐함은 혼인을 상징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자손번창子孫繁昌이나 가내평안家內平安을 뜻하는 '수복壽福' 문자와 박쥐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납폐물목은 납폐함 속에 넣는 물건의 목록인 물목단자物目單子이다. 보통 혼례일 며칠 전이나 적어도 하루 전에 예장지禮狀紙와 함께 보냈다. 흔히 '혼수물목' 또는 '물목단자'라 부르는데, 물목에는 주단綢緞·명주·옥양목·비녀·장도·화장품·가락지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물목을 적은 봉투 겉봉에는 '물목物目', 밑에는 '근봉謹封'이라고 쓰는 것이 통례였다. 납폐물목은 대개 한문필사본에 낱장 고문서 형태로 전하며, 여기에는 예물의 물목과 수량 등이 적혀 있다. 다양한 종류의 옷감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비녀, 화장품, 가락지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서명書名은 '물목단자', '물목物目', '단자單子' 등으로 나타난다.

특징 및 의의 납폐물목은 혼례와 관련되는 혼구물목,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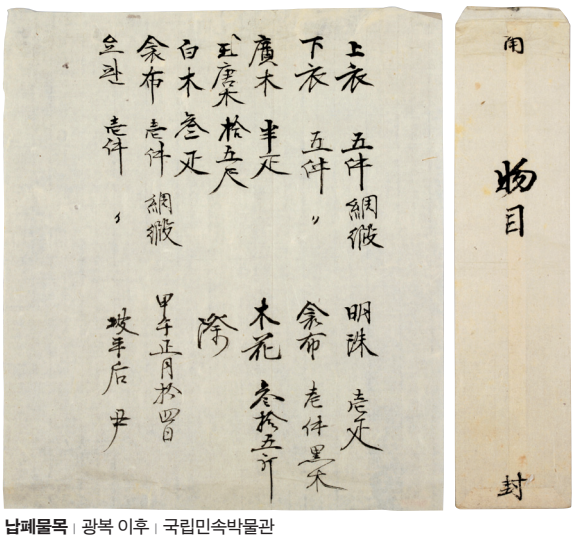

납폐물목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귀물목, 부조록 등의 혼례물목의 하나로, 전통혼례의 절차·내용·풍습과 민간의 생활상을 실증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신랑 측의 부와 위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로 신분 또는 계층별 예물 문화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생활문화와 옛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0), 혼례물목류 고문헌자료를 활용한 민간 전통혼례문화 연구(김정녀, 한민족문화연구38, 한민족문화학회, 2011).

필자 이해준(李海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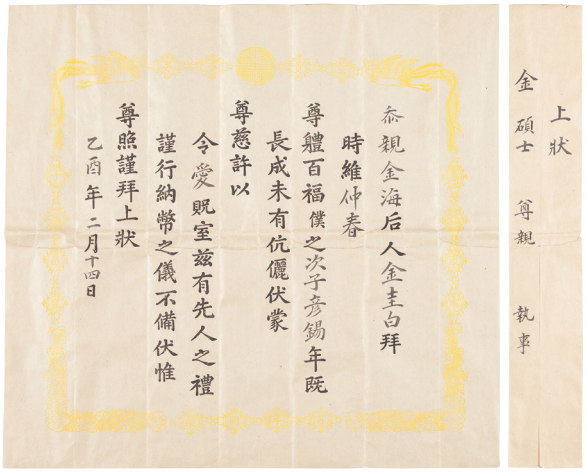
上狀
金 碩士 尊親 執事
恭親金海后人金圭白拜
時維仲春
尊體百福 僕之次子彥錫年既
長成未有伉儷伏蒙
尊慈許以
令愛睨室茲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不備伏惟
尊照謹拜上狀
乙酉年二月十四日

납폐서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납폐서
納幣書

정의 혼인할 때,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예물을 보낼 때 함께 보내는 혼서婚書 서식書式.

내용 신랑 측에서는 혼례식 며칠 전이나 당일 새벽에 납폐納幣를 보내는데, 신부 측에 보내는 납폐는 어디서 보내온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중하게 서식과 함께 보낸다. 이를 납폐서納幣書또는 혼서지婚書紙라고 하며, 혼인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혼서는 두꺼운 한지를 이용해서 쓰며, 봉투의 아래와 위는 봉하지 않고, 붉은색 금전지를 단 흑색 겹보에 싼 뒤 상중하에 근봉謹封이라고 쓴 봉함지를 세 개 끼운다. 혼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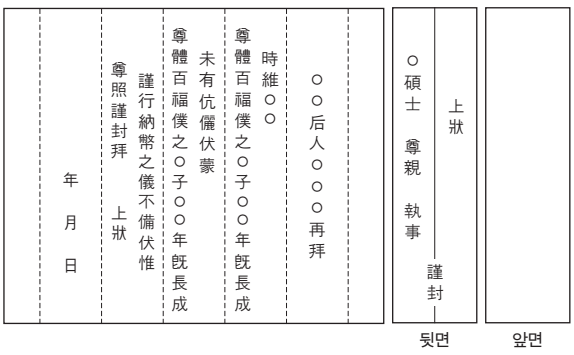

먼저 납폐를 보내는 시기에 맞는 계절 인사를 한 뒤 사돈이 될 가정의 다복多福을 기원하면서, "저의 아들 ○○가 나이 이미 차있으나 아직 배필이 없더니, 어른께서 어진 뜻으로 따님을 저의 집 며느리로 허락하여 주심에, 선인의 예에 따라 사람을 시키어 납폐하오니 살피시기를 바라오며, 다 갖추지 못한 채 삼가 올린다."라는 내용을 보낸다. 『오례의五禮儀』에 따르면 존체尊體라는 용어도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기록했으며, 이품二品 이상이면 태후다복台候多福, 삼품三品은 중후다복重候多福, 사품四品부터 육품六品까지는 아후다복雅候多福, 칠품七品이하는 재후裁候라고 하였다. 이때 신부가 주혼자의 딸이 아닌 여동생인 경우에는 영애令愛 대신 영매令妹, 조카인 경우에는 영질令姪이라고 쓴다. 또한, 신랑 측의 주혼자가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僕之次子○○之子○○', 숙부인 경우에는 '僕之從侄○○'이라 하여 신랑과 주혼자와의 관계를 밝혔다.

특징 및 의의 납폐서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보내는 정성이 담긴 예물과 함께 아들의 혼인을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혼인 서식 중 가장 정중한 서식이며, 혼인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서식이다. 신랑 측의 주혼자가 신랑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 예의를 갖춤으로써 신부 측에 혼인의 뜻을 표한다. 이는 혼인의 정중함과 혼인을 통하여 가문과 가문이 결합함을 상징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례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서울 반가의 혼례 문화(이길표 외,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2-1,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1999), 전통혼례에서의 함(이

길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7-2,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2004), 조선시대 관혼상제1-관례 · 혼례(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혼례유물에 대한 내용분석(최배영, 한국가정관리학회지21-5,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필자 주영애(朱英愛)

녜제
禰祭

정의 음력 9월 중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올리는 제사.

역사 아버지를 모신 가묘를 '녜禰', 부모에 대한 제사를 녜제라고 하며, 『가례언해家禮諺解』에서도 '녜제'라고 한다. '녜'는 '가깝다[近]'는 뜻으로, 이이李珥는 "녜묘禰廟에만 제사하는 것은 아마도 친근한 분에게만 풍후豐厚하게 대하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정자程子는 "계추季秋는 만물이 성숙하는 시작이니, 또한 그 비슷한 유를 형상하여 녜제를 지내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제일祭日은 9월 중에 길일로 택일하였다. 다만, 주자朱子는 예전부터 녜제를 지내왔는데, 마침 자신의 생일이 계추이기 때문에 이날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녜제를 생일제로 인식하여 자신의 생일이나 부모의 생일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가례家禮』와 『소학小學』에 그 의식이 자세히 실려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실제 관행으로는 거의 이행되지 않아서, 이이의 『격몽요결擊蒙要訣』 및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생략하였다. 이에 이식李植은 마음은 있으면서도 미처 행하지 못한 것은 9월의 녜제禰祭라고 하였고, 정경세鄭經世는 자식 된 도리로 자기의 생일에 생시와 같이 술과 과일을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삼헌三獻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선현들이 제정한 선례가 없어 선뜻 지낼 수 없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재李縡는 주자의 예에 따라 자신도 녜제祭를 지내야겠다고 하여,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녜제를 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임곡선생문집林谷先生文集』에는 구체적 행례 절차와 진설 내용을 기술한 녜제의禰祭儀가 제시되어 있다.

내용 『가례』의 사시제와 기일제의 대상은 4대친까지인 반면에, 녜제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9월에 지내는데, 고비합설考妣合設로 지낸다. 그러나 녜제는 장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계승하여 지내므로 다른 형제나 자손은 제사에 참여하기는 하나 제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형이 죽은 이후에 조카가 제사를 계승하더라도, 여러 형제가 살아 있으면 녜제는 지낼 수 없었다. 그래서 삼년상 동안 자기 생일이나 부모 생일에 생일제를 지내거나, 3년 이후에는 자기 대에 내내 지내기도 하였다.

예서에 나타난 녜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를 지내기 한 달 전 하순에 9월의 상순, 중순,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중 하루를 점쳐 날짜를 정한다. 사흘 전부터 재계하고 하루 전날 정침에 자리를 마련한다. 절차는 사시제와 같은데, 사당으로 가서 재배하고 안으로 들어가 분향한 다음에 고사告辭만 해당 감실 앞에서 행한다. 이어 주독主櫝을 정침으로 옮긴 다음 주인은 고위의 신주를, 주부는 비위의 신주를 내어 모신다. 그다음은 일반적인 제사의 순서에 따라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수조受胙, 사신辭神, 납주納主, 철상撤床 그리고 준餕(음복)의 절차를 행한다.

녜제 축문은 "지금 가을이 되어 만물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때를 맞아 추모하는 마음이 하늘과 같이 넓고 한없이 지극합니다. 감히 세사에 맑은 술과 음식을 정성껏 바치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今以季秋, 成物之始, 適丁顯考, 降生之辰, 感時追慕, 昊天罔極, 敢以淸酌, 庶羞祗薦歲事, 尙饗."이라 쓰고, 수조受胙의 하사嘏辭는 사시제 고사를 참고하여 쓴다.

특징 및 의의 녜제는 실행에 옮길 만한 확고한 기준과 사례가 없어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공식적인 제사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관습조사보고서慣習調査報告書』에서도 녜제 시행은 상류층 사이에서 간혹 나타날 뿐 중류 이하 층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諺解, 陶菴先生集, 同春堂先生文集, 四禮便覽, 愚伏先生文集, 林谷先生文集, 澤堂集, 朽淺先生集, 慣習調査報告書.

필자 최순권(崔順權)

노제
路祭

정의 장례 절차 중 한 과정으로 상여가 장지로 가는 도중 거리에서 지내는 제사.

개관 예서에서는 '친전親奠'이라고 하는 절차이다. 고인의 생시 행적이 깃들어 있는 곳에서 간단한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성문 밖이나 마을 어귀에서 조문객들이 장막을 쳐 제사 지낼 장소를 마련하고 상여를 기다리다가 지내기도 하였고, 친척 집 앞을 지날 때에도 지냈다.

내용 유교식 상례의 절차에서 영구를 상여에 싣고 장지로 운반하는 발인發靷 중 행상을 나가다가 친척과 빈객이 길가에 장막을 치고 전을 올리는데, 이를 '노제路祭'라고 한다. 망자의 집을 나와 장지로 가는 길에 고인과 절친했던 친구나 친척이 제물을 준비하였다가 상여가 지나가면 제를 지내는 노제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제사상은 평평한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상 위에 영정 사진과 혼백상자를 올린다. 그리고 과일, 술, 과일, 포를 차린다. 상주가 재배한 후 뒤따라온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재배한다. 망자의 친구가 제문祭文을 지어 낭독한다. 이때 상여도 세 번 절한다. 노제를 지낼 때는 상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나무를 'X'자로 엮어서 그 위에 잠시 올려 둔다.

지역사례 경기도 김포에서는 대문을 나서서 중간쯤 가다가 노제를 지낸다. 이때는 미처 조문하지 못한 사람들의 조문을 받는다. 노제 제물은 주로 작은아들이 준비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이천과 화성에서는 장지로 가는 도중 친척 집을 지나갈 때 노제를 지낸다. 수원에서는 고인의 직장이었던 곳을 지날 때는 그대로 지나갈 수 없다 하여 노제를 지내고 가기도 한다. 안산에서는 '내 집 앞에서 지내는 노제는 당연히 내가 친구를 위해 음식 대접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노제 음식을 친구가 차려 주기도 한다. 구리에서는 장지로 가는 길에 세 번 정도 쉰다. 쉬는 횟수도 짝을 맞추지 않는다.

충청남도 공주에서는 장지로 향하는 길에 다리를 건너게 되거나 삼거리가 나오면 행상을 멈추고 노제를 지낸다. 다리를 신설해야만 망인의 저승길이 편하다는 속언이 있을 정도로 노제를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보령에서는 마을에 망인의 자손이 살고 있을 때 그 집을 들러서 간다. 이때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잠시 쉬면서 제사를 지낸다. 당진에서는 요즘 대부분 병원 영안실에서 발인하므로 장지에 가기 전 집에 들러서 제를 지내는 것을 노제라고 한다.

전라북도 전주와 김제에서는 상여가 장지로 향하는 도중에 마을 어귀, 버스 정류장 등에서 길상제(노제)를 모신다. 길상제가 끝나고 상여가 다시 장지로 향할 때 여자들은 더는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상남도 거제에서 노제는 시집간 딸과 사위가 준비하는 제사이다. 음식 장만에서부터 고인에게 술을 봉작하는 것까지 딸이 장만하며 노제가 끝나면 문상객에게 모두 나눠 준다. 미혼의 남녀가 죽은 경우에는 노제를 지내지 않는다. 양산에서는 노제를 지낼 때 별도로 제문을 작성한다. 노제의 제문은 고인의 행적,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생전의 친분, 고인의 인생 등의 내용을 담는다.

경상북도 울진에서 노제는 고인이 타지에서 생활하다 죽었을 경우 고향 마을을 거쳐 장지로 향하는데, 이때 고향 마을 어귀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거리제' 외에 갯가에서 상을 차려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잔 붓는다'라고 표현한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노제 제물로 주·과·포 및 과일, 탕, 적, 편, 적을 올린다. 노제 제물은 발인 제물과 같이 그 자리에서 다 처리해야 하며, 집안으로 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속신이 있다.

특징 및 의의 노제는 망자를 태운 상여가 장지로 가는 도중에 지내는 제사로 망자가 평소 살던 곳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하는 절차이다. 망자의 가족, 친척, 친구도 마지막으로 만나고 떠나게 된다. 상가에서 미처 문상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고인과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고인의 생시 행적이 깃들어 있는 곳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제사를 올려 고인을 편하게 보내고 지인들의 서운함도 달랜다는 의미가 있다. 상두꾼들에게는 힘든 운상 길에 쉬어 가라는 뜻도 담고 있

어 상장례 절차 중 서로의 마음을 가장 위로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 노제가 끝나면 부인과 딸 등 여자들은 더는 장지까지 따라가지 못한다. 노제에서 고인과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해야 한다. 노제를 지낼 때 상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상여를 구부려 같이 절을 하는 것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마지막 인사절차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포군지(김포군지편찬위원회, 1993), 김포시사(김포시사편찬위원회, 2011), 모현면지(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3), 수원시사(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7), 안산시사(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화성시사(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

필자 김지욱(金志昱)

뇌주
酹酒

정의 술을 땅에 부어 강신降神을 비는 절차, 또는 그 술.

역사 『주자가례朱子家禮』,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 강신降神 조에서는 모두 "주인은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茅 위에다 붓는다主人左手執盤, 右手執盞灌于茅上"라고 했다.

내용 술로 땅을 적시는 것을 '뇌酹'라고 한다. 뇌주는 향기로운 술을 땅에 부어 적셔[酹酒灌地] 지하에 있을 백을 모시는 것이다. 강신할 때 술을 바닥에 세 번 지우는 것은 '땅에서 백을 찾는[求魄於地]' 상징적 행위로서 '뇌주관지酹酒灌地'라 한다. 그러나 술을 올렸다가 그 잔을 내려 바닥에 조금씩 세 번 지우는 '삼제우지三除于地'는 술로 지낸다는 뜻인 '좨주[祭酒]'이다. 강신 때 세 번 지우는 것은 조상의 신을 청하는 '뇌주酹酒'이고, 술잔을 올릴 때마다 세 번 지우는 것은 매번 조상께서 술을 드시는 것을 상징하는 '좨주'이다.

뇌주 | 경북 고령 점필재 김종직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하늘의 혼을 부르는 분향을 한 후에 당에서 백魄(음기)을 모시기 위해 술을 따라 모사기茅沙器에 붓는다. 즉 띠 풀과 모래를 담아 땅을 상징하는 모사기에 술을 부음으로써 땅의 백을 인도하는 것이다.

모사기에 띠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주례周禮』 주에서는 "그 몸체는 순하며, 결이 곧고 부드러우며 깨끗하니, 제사를 받드는 덕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띠를 붉은색으로 묶는 이유는 그 문채를 빛나게 하려 함이고, 모래를 담는 이유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퇴계 종가, 서애 종가 등 영남지역에서는 『주자가례』를 따라 분향과 뇌주 후에 강신재배한다.

특징 및 의의 강신할 때 땅에서 조상의 백魄을 모시는 의식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행한다. 제사는 조상이 실재하는 것처럼 지내야 하는데, 분향과 더불어 혼백을 부르는 행위이므로 제사에서 중요한 의식이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다비
茶毘

정의 시체를 불태워 유골을 묻기까지의 행법, 또는 상례로부터 화장火葬 및 입탑入塔까지 거행되는 불교식 상장례喪葬禮의 전체 과정.

역사 다비는 팔리어 jhāpeti의 음역으로, '차비茶毘', '사비闍毘', '사비闍鼻', '야유耶維' 등으로 쓰인다. 분소焚燒, 연소燃燒로 의역되며, 불교식 화장제도 일반을 일컫는

다. 화장은 수장·매장·임장林葬 및 조장鳥葬·호장虎葬과 함께 인도의 일반적인 장법葬法 중 하나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와 『가미니경伽彌尼經』 등 초기 불전佛典에 의하면 이 모든 예가 불교 장법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외의 불교 장법으로 『불설관정총묘인연사방신주경佛說灌頂塚墓因緣四方神呪經』에서는 수장과 화장, 탑총지장塔塚之葬 등 3종을 들고 있으며, 『석씨요람釋氏要覽』에서는 "천축의 장법에 4종이 있으니, 강하江河에 시신을 던지는 수장, 불에 태우는 화장, 언덕에 묻는 토장, 한림寒林 노지露地에 놓아 짐승들이 먹게끔 하는 임장이 그것이다."라고 하여 다양한 장법의 예를 전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장법이 행해졌음에도, 의정義淨의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에 "필추苾芻가 사망하면 죽음을 확인한 후 당일 시신을 메고 소처燒處(화장장)로 가서 평소와 같이 화장한다."라고 하여 불교에서 화장이 가장 보편화된 장법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중 화장하고 |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내용 『불설정반왕반열반경佛說淨飯王般涅槃經』에는 부처의 부친인 정반왕의 죽음에 따른 최초의 불교식 다비 행법이 전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상주인 세존께서) 상여 앞에 향로를 받쳐 듦, ②사천왕의 운구 및 운구 행렬, ③화장장에 다비소 설치: 향나무를 쌓고 관을 올려 둠, ④거화擧火, ⑤무상無常과 관련한 법문, ⑥금함金函에 유골을 수습, ⑦유골 위에 탑 세움, ⑧비단천 및 번개幡蓋와 방울 등 장엄으로 탑묘 공양

이렇듯 부처님께서 정반왕의 장례에 화장을 채택한 후, 화장은 불교도 사이에서 보편화되었다. 부처의 제자 사리불과 목건련 역시 분소공양焚燒供養을 하였고 부처의 모친 대애도 비구니 역시 화장을 행하였다.

다비와 관련해 『불설관정총묘인연사방신주경』에는 부처와 전륜성왕을 위한 장법의 예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륜성왕 명종시命終時 왕후와 태자 및 제신諸臣 백관百官은 왕의 몸을 곱고 깨끗한 하얀 천으로 3백여 겹 묶고 미세한 향을 왕의 몸에 바른 후 3종의 관을 준비한다. 제1관은 자마황금紫磨黃金 관이요, 제2관은 철鐵로 만든 관이며, 제3관은 전단잡향栴檀雜香 관이다. 이 세 개의 관에 왕의 몸을 넣은 다음 소유향蘇油香을 붇고 땔나무를 태운다. 불이 꺼진 후 뼈를 거두고 네거리 길목의 깨끗한 이슬이 있는 곳에 총탑塚塔을 세운다. 표찰은 높이 49척에 이르게 하며, 오색 무늬[雜綵]로서 번호幡號를 삼는다. 그리하여 사방의 백성이 보고, 보는 자가 슬픔과 기쁨을 나타내며 왕의 바른 다스림을 신하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한다. 내가 반열반般涅槃한 후 장법 역시 이처럼 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는 일반 출가자의 장법에 대해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비구가 죽으면 응당 분소焚燒로 공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비구의 장례를 치를 때에는 『무상경無常經』을 세 번 외우고 아울러 게송을 읊어 주원呪願해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한 『법원주림法苑珠林』에서는 "『오분율五分律』에 이르되, 화장할 때에는 돌 위에 시신을 눕히는데, 수풀 위에서 혹 벌레를 손상치 않을까 염려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다비에 관한 세세한 행법이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불교의 동점東漸과 함께 다비 행법이 중국에 확산되어 화장이 보편화함에 따라, 상의喪儀에 사용되

탄허스님 다비식 | 강원 평창 | 1983 | 국립민속박물관

는 기물, 의식의 차례, 참여자의 복식, 염송법, 이감移龕, 개관蓋棺, 송망送亡, 하화下火 등 각종 상장喪葬제도가 정립되었다. 특히 송대宋代 이후 선림禪林의 상의법喪儀法 중 주지住持에게 적용된 「존숙상의법尊宿喪儀法」, 일반 승니僧尼에게 적용된 「망승상의법亡僧喪儀法」, 재가신도에게 적용된 「재가장의법在家葬儀法」 등이 형식화되었다.

인도 및 중국의 다비의식은 불교 전래와 함께 한국에 유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백제의 경우 한강 유역에서 당唐의 개원통보開元通寶 등 부장품과 함께 화장 분묘가 출토된 것을 보면, 7세기 초에 불교식 다비 행법이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라에서는 "자장慈藏이 마침내 쓰러져 죽으니 다비하고 뼈를 석혈石穴 가운데 안치하였다."라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해 7세기경부터 다비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에서는 현존하는 승탑僧塔을 통해 다비가 행해진 예를 찾을 수 있다. 한편, 681년(문무왕 21)에 "임종 뒤 10일이 되면 곧 궁문宮門 밖 뜰에서 인도 의식에 따라 불살라 장葬을 지내라."라는 유언과 함께 동해 대왕암 수장묘가 건립되었고, 이후 효성왕으로부터 경명왕에 이르기까지 8명의 왕을 화장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또한, 문무왕 이후 귀족과 민간에까지 화장이 확산되어, 경주 일대에서 다수의 골호 및 석함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고려의 경우, 현존하는 탑비와 송宋으로부터 『선원청규禪苑淸規』가 전래했다는 사실을 통해 승가에서는 승려 입적 시 화장이 정해진 관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승려 이외에 총 35명의 화장 기록이 전하는데, 고려 묘지명墓誌銘에 26명, 『고려사』에 8명, 기타 문헌에 1명의 화장 기록이 보이고, 또 화장과 관련된 다수의 석곽石槨, 석관石棺이 발견되는 점은 고려시대에 화장이 일반에 확산되었음을 알려준다. 이후 1389년(공양왕 원년) 헌사憲司의 '화장 금지 상소'와 1390년(공양왕 2)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르도록 하는 조준趙浚의 상소' 등을 통해, 고려 말기부터 점차 화장 대신 유교식 상례인 매장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조선 초기까지 불가의 다비법은 민간에 널리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1420년(세종 2) 「사헌부 상소」에는 "불가의 다비법이 성행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화장하여 재를 만들어 물고기나 새에게 주며"라

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후 1470년(성종 원년) "무릇 승니僧尼, 도사, 여관女冠도 부모의 제사와 선조의 상복 등을 상인常人과 같이 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를 치고 환속시킨다."라는 실록의 기록을 통해 불교 다비법이 점차 모습을 감춰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중불교를 중심으로 다비의식은 꾸준히 명맥을 유지했다. 중국의 상례의식에 의한 첨삭을 거치는 가운데 다수의 다비의식 관련 문헌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초간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하는 다비의식 관련 문헌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청문請文』, 1535년(영각사), ②『다비문茶毘文』, 1542년(문수사), ③『제반문諸般文』, 1566년(보원사), ④『권공제반문勸供諸般文』, 1574년(석왕사), ⑤『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 1657년(징광사), ⑥『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 1660년(호국사), ⑦『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 1661년(호국사), ⑧『승가예의문僧家禮儀文』, 1670년(갑사), ⑨『시다림작법문屍多林作法文』, 17세기 추정, ⑩『제반문諸般文』, 1719년(해인사), ⑪『작법귀감作法龜鑑』, 1826년(운문암), ⑫『다비설茶毘說』, 19세기초, ⑬『다비작법茶毘作法』, 1719년(해인사), ⑭『대각교의식大覺教儀式』, 1927년(대각교중앙본부), ⑮『석문의범釋門儀範』, 1935년(만상회)

이렇듯 많은 문헌의 바탕 위에 현대불교에서는 다비의식이 상례의 기본이 되고 있다. 『다비작법』 및 『석문의범』이 다비의식의 주된 규범이 되고 있으며, 『석문가례초』와 『작법귀감』 등은 다비의식을 보충하는 문헌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한 탑비塔碑의 건립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다비는 화장, 또는 죽음에서 입탑까지의 상장례 전반을 뜻하며, 오랜 전통과 함께 체계화된 불교 특유의 상장법이다. 특히 현재까지 전하는 다비법은 『주자가례』에 의한 첨삭 속에서 형성된 불교 고유의 행법으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상장례에 나타난 왕생미타정토 행법(정각, 정토학연구6, 한국정토학회, 2003).

필자 정각(正覺)

다시래기

정의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출상 전야에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펼치는 가무극적 연희.

내용 서남해안의 도서지역에서는 장례식 전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상가에 모여서 노래와 춤, 재담으로 상주를 위로하며 노는 가무극적 놀이가 펼쳐진다. 이러한 놀이는 현재 진도 지역에서 '다시래기', 신안 일대에서 '밤달애'라는 명칭으로 전승되고 있다. 상두꾼들이 다음날 치를 장례식의 상엿소리를 전날 밤에 연습하는 다른 지역의 놀이인 '상여놀이' 혹은 '상여놀리기'에 비해, 다시래기는 연극적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진도다시래기는 1985년 2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되었다.

다시래기는 불교나 유교 이전의 장례풍속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시적 가무극의 형태라는 점을 보면, 연극이 장의葬儀로부터 기원했다는 발생론적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호남지역에 민속극의 전승이 약한 현실에서, 이는 매우 유의미한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래기는 축제의 형식으로 치러지는, 전통적인 장례풍속을 계승하고 있는 민속 연희다. 불교나 유교의 장례풍속이 일반화되기 이전의 오래된 전통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전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남사당패의 영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떠돌이 예인집단의 연희가 진도를 비롯한 서남해안 도서지역 사람들의 장례놀이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래기는 모든 상가에서 했던 것은 아니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잣집에서나 가능했다.

다시래기는 주로 마을 상두계의 놀이꾼들이 벌이는 연희였다. 그러나 배역을 채울 수 없거나, 거사 또는 사당처럼 어느 정도 기량을 갖춘 배역이 필요할 때는 이름 있는 다시래기꾼을 초청해서 마을 상두계원들과 함께 다시래기를 놀았다. 이처럼 다시래기는 장례놀이라는 공동체적 기반 위에서 전승되어 왔다. 진도다시래기는 20세기 초중반에 단절의 위기를 맞았지만, 문화재 지정과 더불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전승되고 있다. 다시래기가 외부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인데 1980년대 초반부터 각종 문화제를 비롯한 여러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81년 제12회 남도문화제에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진도다시래기는 ①가상제놀이, ②거사사당놀이, ③상여놀이, ④가래놀이, ⑤여흥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가상제놀이에서는 놀이패 중에서 거짓 상주라는 뜻의 가상주가 등장하여, 상가에 대한 소개는 물론 놀이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서 거사와 사당, 중 등이 차례로 나와서 자신의 특기를 자랑한다. 두 번째, 거사사당놀이에서는 봉사와 봉사의 처, 중의 삼각관계가 벌어지고 봉사의 처가 애를 낳는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세 번째, 상여놀이는 상두꾼들이 상여를 어깨에 메고 상엿소리를 부르며 노는 대목이다. 네 번째, 가래놀이는 무덤을 만들고 가래질을 하는 가매장 의식을 연출한 내용이다. 맨 마지막 여흥은 뒷놀이이다. 다시래기 공연은 매번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분위기나 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가상제놀이 및 거사사당놀이는 다시래기의 핵심 대목으로 꼭 공연하지만, 다른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하거나 아예 빼버리기도 한다. 현재는 진도다시래기보존회가 전승을 주도하면서 무대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래 상가에서 행하는 장례연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가에서는 다시래기를 실제로 행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다시래기의 특징은 상가 마당에서 재담을 펼치고 춤과 놀이를 한다는 것이다. 장례가 치러지는 상가에서 파격적인 내용을 연행演行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상주로 가장한 가상주가 나오는데, 머리에는 짚신을 쓰고 손에는 절구를 들었다. 짚신을 머리에 썼다는 것은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절구를 든 것은 가매장의 한 풍속인 '주당맥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주술적 의미이다. 이어지는 거사사당놀이에서는 맹인인 거사와 부인인 사당이 나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샛서방인 중이 등장하여 사당과 몰래 성적인 행위를 한다. 이 장면으로 임신한 사당의 뱃속 아이가 중의 아이임이 암시되고, 나중에 사당은 아이를 낳는다. 거사사당놀이에서 보이는 파격적인 성性 표현과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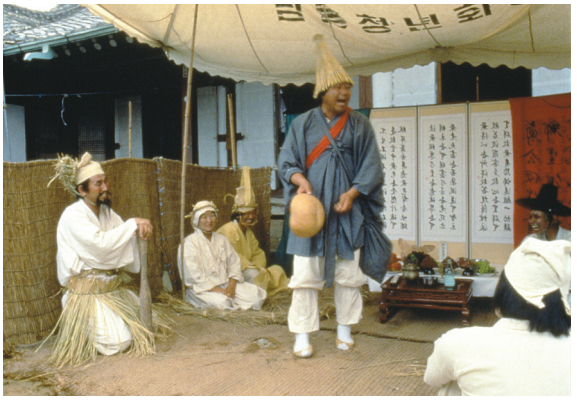

진도다시래기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출산은 그 의미가 각별하여 주목할 만하다. 초상집에서 벌어지는 가무와 성적인 재담, 그리고 아기의 출산은 상가의 분위기 및 죽음과 배치되는 연희적 설정이다. 삶과 죽음을 변증법적으로 뒤집어 상황극을 설정한 민속놀이의 하나라 하겠다.

진도에서는 아직도 장례식장에서 씻김굿 또는 다시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진도에는 다시래기를 비롯한 씻김굿과 상엿소리 같은, 상장의례와 유난히 관련된 민속이 강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 이유의 한가지로 문화재

지정을 들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진도는 지리적으로 섬지역이기 때문에 익사자가 많았고, 특히 역사적으로 큰 전란의 중심지였던 탓에 그만큼 죽음에 대한 집단기억이 강하였다. 결국, 죽음에 대한 의식意識과 의식儀式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상장의례와 관련된 민속이 강하게 전승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장례 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임재해, 비교민속학12, 비교민속학회, 1995), 진도다시래기(이경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진도의 상장의례와 죽음의 집단기억(나경수 외, 민속원, 2014), 축제식 상장례를 통해 본 진도 민속의 독특함(이경엽, 남도민속연구26, 남도민속학회, 2013).

필자 나경수(羅景洙)

단설
單設

정의 기일을 맞은 조상만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방식.

내용 신주를 제사상에 모시는 것을 '설위設位'라고 하는데, 기일을 맞이한 분만 모시고 제사 지내는 것을 '단설單設'이라 하고, 기일에 상관없이 내외분을 함께 모시는 것을 '합설合設'이라고 한다. 『가례家禮』에서는 "아버지의 기일이라면 아버지 한 분의 신위만 설치한다. 어머니의 기일에는 어머니 한 분의 신위만 설치한다. 할아버지 이상과 방친의 기일도 모두 그러하다."라고 했으며,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도 "한 분의 신위에 대해서만 제사 지내는 것이 올바른 예禮이다. 대개 기일은 초상初喪의 여분이다. 어버이가 돌아가신 날을 만나서는 어버이를 생각하며 그 신위에 제사 지내야 하니, 다른 신위를 모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만, 제사를 받아야 할 신위에게만 제사 지내고 배위의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그것은 배위에 대해서 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제사 지내는 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만 한 분의 신위에게만 제사 지내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이처럼 기일은 초상의 연속이므로 해당 조상만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단설 | 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하지만 이러한 규범에도 불구하고 인정人情을 바탕으로 내외를 함께 모시는 합설合設도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었다. 실제로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젊어서는 선대先代의 합설을 따랐다가 나이가 든 이후에는 단설을 했는데, 단설이 인정상 미안할 것 같아서 합설로 다시 지냈다."라고 했으며,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역시 "대개 한 신위만을 설치함이 올바른 예禮之正이고, 고위와 비위를 함께 제사 지내는 행위는 인정에 근본을 둔 예禮之本於情이다. 만약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을 섬기듯이 하고 자리를 펼 때에 궤几를 같이 놓는다는 뜻으로 미루어 보면, 예는 인정에 근본을 둔 것이니 이 또한 그만둘 수 없는 점이 있다."라고 하여 인정에 바탕을 두어 합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가례家禮』를 비롯한 예서에서는 기일이 초상初喪의 연속이므로 해당 조상만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단설을 규범으로 명시해 두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는 인정을 바탕으로 합설을 실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조선후기 기제 행례의 차이에 대한 일고찰(최순권, 한국민속학·일본민속학,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김미영(金美榮)

담제
禫祭

정의 대상 후 중월中月에 지내는 상례의 마지막 제사.

내용 '담禫'은 담담澹澹하니 평안하다는 뜻이다. 대상大祥 후 중월中月에 지낸다고 하였으니, 한 달을 건너뛰어 날을 점쳐서 정한다. 사마광司馬光은 "『의례儀禮』「사우례士虞禮」의 중월에 담제한다.'는 구절의 정현鄭玄 주에서 '중은 사이와 같다. 담은 제사 이름이다. 초상부터 이때까지 모두 27개월이다.'라고 하였다. 노나라 사람 중에 아침에 대상을 치르고 저녁에 노래하는 자가 있어 자로子路가 웃자, 공자는 '한 달이 지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대상을 치르고 난 5일 동안 거문고를 타면서 소리 내지 않고, 10일이 지나서야 생황으로 노래하였다."라고 하였다. 27개월이라는 것은 윤달을 계산에 넣지 않고서 초상부터 이때까지의 달수를 가리킨다.

날은 점을 쳐서 정하는데, 그 방식은 『가례家禮』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택일은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하며, 한 달 전 하순 초에 다음 달 삼순三旬의 각 하루를 택하여 점을 친다. 점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탁자를 사당 문밖에 진설하고 향로, 향합, 배교环珓 쟁반을 그 위에 서향하여 놓는다. 참가자는 주인과 그의 자손들이다. 주인은 담복을 입고 서향한다. 뭇 주인들도 차례대로 조금 물러나서 있는데, 북쪽이 윗자리이다. 자손들은 그 뒤에 여러 줄로 있는데, 북쪽이 윗자리이다. 집사는 북향하는데, 동쪽이 윗자리이다.

점치는 주체는 주인이며, 도구는 배교이다. 주인은 향을 피워 배교를 쐬고 상순의 날짜로 명하면서 "아무개가 장차 다음 달 아무 날에 선고모관부군先考某官府君에게 공경히 담사를 올리고자 하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 옥 산통을 쟁반에 던지는데, 하나가 엎어지고 하나가 젖혀지는 것이 길하다. 불길하면, 다시 중순의 날짜로 명한다. 또 불길하면, 하순의 날짜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길일이 결정되면, 주인은 곧 사당으로 들어가 본감本龕 앞에서 이 사실을 고한다. 고유는 주인

신주 봉현

역복

독축

합문

담제 | 경남 김해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의 재배 분향과 축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축祝은 축사를 들고 주인의 왼쪽에 서서 무릎 꿇고 아뢰는데, 축사의 내용은 "효자 아무개가 장차 다음 달 아무 날에 선고모관부군께 공경히 담사를 올리고자 점을 쳐서 이미 길일을 얻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한다. 주인은 재배하고 내려가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 재배한다. 축이 문을 닫고 물러간다. 만약 길일을 얻지 못했으면, '복기득길卜旣得吉' 한 구절을 쓰지 않는다.

담제 하루 전에는 목욕하고 자리를 설치하며, 기물을 진설하고 음식을 준비한다. 제사 당일 새벽에 일어나 채소와 과일·술·음식을 진설하는데, 제상의 배열을 보면 수저는 안쪽(상의 북쪽 첫째 줄) 가운데에 놓고 술잔은 그 서쪽에, 초접醋楪은 그 동쪽(두 번째 줄)에 놓는다. 과일은 바깥쪽(네 번째 줄)에, 채소는 과일의 안쪽(세 번째 줄)에 놓는다. 병에는 술을 채운다. 향안은 당 가운데에 놓고 향로에 불을 피우며, 띠풀 묶음과 모래 두엄을 향안 앞에 놓는다. 음식은 당 문밖의 동쪽에 진설한다. 신위는 영좌靈座의 옛 자리에 진설한다.

시간이 되면, 주인은 담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간다.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지내는 담제에 대해, 주자朱子는 남편이 주관하며 소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축은 신주독神主櫝을 받들어 서쪽 계단의 탁자 위에 놓고 신주를 꺼내어 신좌에 놓는다. 주인 이하는 모두 곡으로 슬픔을 다한다. 모두 북향하되, 복服이 무거운 사람은 앞에, 가벼운 사람은 뒤에 위치한다. 존장은 앉고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선다. 장부丈夫는 동쪽에 처하되 서쪽이 윗자리이며, 부인은 서쪽에 처하되 동쪽이 윗자리이다. 줄마다 각각 나이 순서대로 늘어선다. 시종은 뒤에 자리한다.

제사절차는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사신辭神의 순서이다. 모두 대상의 의절과 같다. 다만, 삼헌에는 곡하지 않는다. 축판은 고쳐서 '대상大祥'을 '담제禫祭'라 하고, '상사祥事'를 '담사禫事'라 한다. 사신에는 곡으로 슬픔을 다한다. 그러나 신주를 전송하여 사당에 이르러서는 곡하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담제가 끝나면, 상례는 끝이 난다. 이제는 상주 이하가 모두 탈상하여 정상 생활로 돌아가며, 선고先考의 제사는 완전한 길례로 통합되어 조상과 후손이 하나의 공동체생활을 한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士儀,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임민혁(任敏赫)

당내
堂內

정의 고조高祖가 같은 동성 8촌 이내의 친족 범위를 일컫는 말.

내용 당내堂內는 현재 동성 8촌 이내의 유복친有服親, 즉 상복을 입는 친족 범위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대 문헌기록에서 직접 '당내'를 친족과 관계된 용어로 일컬은 경우는 많지 않다. 『실록實錄』과 같은 관찬사료에서 이러한 용례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고, 문집에서는 '당내친속堂內親屬', '당내친족堂內親族', '당내지친堂內之親' 등이 이러한 예로 사용된 경우가 몇 군데 보인다. 이와는 달리 '당내'를 직접 지칭하지 않은 '동당지내同堂之內'라는 표현은 앞의 용례보다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당내'는 '동당同堂'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혈족관계를 뜻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고려 말 이후 우리나라 법제에 큰 영향을 끼친 『대명률大明律』이나 조선조에 성립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직접 특정 범위 내의 친족을 '당내'라고 명시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경국대전』 예전禮典의 오복五服 조에 사용된 '당형제堂兄弟', '당자매堂姊妹', '당형제처堂兄弟妻', '당백숙부堂伯叔父', '당고堂姑', '당질堂姪' 등의 용어는 모두 동당 내의 혈족을 지칭하는 경우이므로 명시적으로 '당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당'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내'는 전통시대의 법제 용어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부계를 중심으로 한 동종同宗, 종족宗族 등의 개념이 강화되면서 관습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조선 전기에 성립된 『경국대전』의 오복五服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동일한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고려조로부터 전래한 고유의 상복제는 제도적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외족外族이나 처족妻族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고유의 복상 제도가 조선 중기까지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성 8촌 이내 친족의 상례에 대해 복을 입는 제도는 이미 조선 전기부터 마련되었지만, 당내라는 부계 중심의 유복친에 대한 제한적인 친족 개념과 그에 대한 인식 강화는 조선 중기를 지나 17세기 이후 무렵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시기 동일한 고조高祖를 둔 당내의 친족이 여럿 모여 하나의 종중宗中이나 문중門中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과도 맥락을 함께한다.

조선에서 법전에 명시한 본종本宗의 오복제는 관계에 따라 크게 참최斬衰, 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로 구분하였다. 자신을 중심으로 촌寸이 멀어질수록 상복과 해당 기간이 간략한데, 고조부모의 상에는 자최 3월, 족형제族兄弟와 족자매族姊妹, 즉 8촌 형제와 자매의 상에는 시마를 적용하였다. 이렇듯 촌으로 헤아릴 수 있는 친족의 예시는 상하로 고조와 현손을 넘지 않았고, 3촌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최대 8촌을 넘지 않았다. 법전에 명시된 이 조문은 조선 전기에는 아직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17세기 이후에는 양반가를 비롯하여 조선사회 전반에서 제대로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당내는 한국사에서 친족의 개념이 모계나 처계를 배제하고 부계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시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따라서 당내라는 친족의 범위는 조선 중·후기에 형성된 부계 혈연 중심의 제한된 친족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된 용어로 볼 수 있다. 근대를 지나 현대까지 이 '동성 8촌 이내의 일가一家'라는 친족 범위는 법제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여말선초의 친족의 칭호와 범위(박병호, 법학44-4, 서울대학교, 2003), 친족제도의 변천(우병창, 금산법학1, 금산법문화연구회, 1998), 한국가족제도사 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전경목(全炅穆)

대갱
大羹

정의 제례 때 신위 앞에 올리는, 쇠고기로 끓인 맑은 국.

역사 『의례儀禮』「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에는 군君이 예禮를 다해서 소빙小聘인 대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식예食禮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앉은 손님 빈賓(대부) 앞에 정찬正饌을 일곱 번, 가찬加饌을 두 번으로 나누어 진설하는데, 진설은 공公 자신과 재부宰夫 그리고 사士가 담당하였다.

먼저 공은 초장인 혜장醯醬을 두豆에 담아 빈 앞 중앙에서 약간 동쪽(빈의 왼쪽)에 놓는다. 정찬 1이다. 이어서 정찬 2는 재부가, 정찬 3은 사, 정찬 4는 재부가 놓는다. 다음 정찬 5에 속하는 대갱大羹 읍湆을 공이 빈 앞 중앙에서 약간 서쪽(빈의 오른쪽)에 진설한다. 이를 마치고 공이 빈에게 정찬 먹기를 권하면 사가 가찬을 진설하게 된다. 특별히 공이 '혜장'과 '읍'만을 스스로 진설한 이유는, '혜장'이 가장 고귀한 밥반찬인 쇠고기·양고기·돼지고기로 만든 찬에 곁들이는 귀한 것이고, 대갱인 '읍'은 밥에 반드시 곁들이는 국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읍'이란 소미素味를 귀하게 여기는 당시의 찬품관에 따라 물에 쇠고기만 넣고 끓인 육즙을 말한다. 그래서 갱羹이지만 '대大'를 붙여 '대갱'이라 하였다. '읍湆'은 '국물'의 의미이고, 고음古音은 '급'이다. 우리말의 '국'은 대갱을 나타내는 '급'이 '국'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국' 속에는 대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내용 조선왕조는 종묘宗廟 대사大祀, 대보단大報壇 대사, 선농친향先農親享 중사, 문선왕文宣王의 대사와 중사, 풍운뇌우風雲雷雨 중사, 경모궁景慕宮 대사, 산천山川 절제節祭, 성황城隍 절제, 삼각산三角山 절제, 선잠先蠶 절제, 우사雨祀 절제, 한강 절제, 목멱산木覓山 절제, 고려시조제, 단군제, 기자제 등에 대갱을 올렸다. 이 대갱은 물에 쇠고기·양고기·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육즙이며, 이를 우대갱牛大羹·양대갱羊大羹·시대갱豕大羹이라 하였다.

조선왕조는 대제大祭 때 신神 일 위位에게 등籩에 담

메와 갱(추석 차례) | 충남 홍성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메와 갱(묘제) | 경기 남양주 동래 정씨 묘역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은 우대갱·양대갱·시대갱을 한 조가 되게 하여 올렸다. 이들 대갱은 형鉶에 담은 우화갱牛和羹·양화갱羊和羹·시화갱豕和羹과 엄격히 구분하였다. 『예기禮記』에 의하면, 우화갱은 쇠고기에다 미역을 넣고 간하여 끓인 국이고, 양화갱은 양고기에다 쓤바귀를 넣고 간하여 끓인 국이며, 시화갱은 돼지고기에 고비나물을 넣고 간하여 끓인 국이지만, 조선왕조는 미역·쓤바귀·고비나물 대신에 무·미나리·가지 등을 넣고 장醬·소금[塩]·초醋를 합하여 오미五味가 조성되게 하였다. 한편, 일반 민중들은 쇠고기로 끓인 육즙을 '대갱'이라 하였으며, 쌀밥인 메와 함께 차렸다.

특징 및 의의 밥과 함께 차리는 국을 '대갱'이라 한 까닭은 소미素味를 존중했기 때문으로, 맑은 소고기 즙으로 만든 것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대갱인 급이 국이 되었듯이 재료 구성에서 변화를 보여주었다.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1587~1671) 종가의 제례 때 올리는 갱羹의 재료는 쇠고기육수장국·미역·국간장·마늘·소금이다. 특히 육수장국의 주재료는 쇠고기 외에도 닭고기, 굴, 바지락을 사용하기도 한다. 쇠고기로 쓸 경우, 우선 양지머리에 물을 붓고 삶아 육수를 만들고 고기는 건져놓는다. 육수를 다시 불에 올려 끓이고, 여기에 미역 불린 것을 넣고 한소끔 끓인 후 마늘·소금·조선간장으로 간을 한다고 하였다. 이 국은 요즘 사람이 먹는 국과 가깝다. 이렇듯 건더기를 많이 넣고 끓인 국은 국건더기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국의 질을 달리하였다. 그래서 "건더기 없는 국이다", "건더기가 많아야 국물도 많이 난다", "국물만 멀건 국이다", "고기 없는 국물에는 파리라도 뜬 것이 낫다" 같은 속담이 생겼다.

참고문헌 名物紀略, 禮記, 儀禮, 太常志,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6), 조선왕조 궁중연회식의궤음식의 실제(김상보, 수학사, 1995), 종가의 제례와 음식(김상보, 김영사, 2005).

필자 김상보(金尙寶)

대공
大功

정의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서 사촌 형제자매를 위해 상제가 입는 복服.

내용 상복喪服은 사망한 지 4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에 대한 유복자들의 친소원근親疏遠近과 존비尊卑의 신분에 의거하여 참최斬衰, 재최齊衰(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오복五服을 착용한다. 대공大功의 복상 기간은 9달이다. 정복正服은 종부從父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입고, 중손衆孫 남녀를 위하여 입는다. 남자의 대공복大功服은 관冠·의衣·상裳·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리履 등으로 구성되며, 여자의 것은 소素족두리 또는 개두蓋頭·대수장군大袖長裙·전계箭笄(비녀)·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리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공복은 재최복齊衰服보다 조금 더 가늘고 소공복小功服보다는 좀 더 거친 숙포, 즉 초추숙포稍麤熟布(표백한 베)를 사용하여 상복을 만드는데, 대공복을 만드는 베를 대공포

大功布라고 한다. 관은 재최관과 동일한 형태이며 재료의 승수에 차이가 있다. 머리에 얹는 수질首絰의 둘레는 5촌 남짓, 허리에 두르는 요질腰絰의 둘레는 4촌 남짓, 교대絞帶의 둘레는 자최복의 요질보다 좁다. 질絰은 재최와 같이 시마枲麻(씨 없는 삼)로 만들고, 대帶는 베[布]로 만든다. 리履로 승구繩屨(짚신)를 신는다.

특징 및 의의 남자의 의衣는 재최의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가슴의 최衰, 양쪽 깃에 부착하는 벽령辟領, 등에 다는 부판負版이 없어 슬픔의 경중이 참최, 재최보다 상대적으로 덜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필자 조우현(趙又玄)

대렴
大殮

정의 소렴한 뒤 시신을 다시 옷과 이불로 묶고 관에 넣는 절차.

역사 대렴大殮은 운명한 사흘째 날 소렴한 시신을 다시 옷과 이불로 싸고 베로 묶어 관에 넣는 유교식 상례 절차의 하나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대렴 내용은 『상례비요喪禮備要』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상례비요』에 대렴지구大斂之具, 즉 대렴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 관련 네 항목과 의식을 행하는 데 필요한 항목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도 물품에 관한 항목이 개별 절차 뒤로 이동하고, 『상례비요』에서 추가된 항목이 다시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역시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근대화의 물결로 상례 절차는 큰 변화를 겪어 대렴은 습襲·소렴小殮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재 일반화되었다.

내용 『주자가례』에 의하면 대렴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렴한 다음날, 즉 운명한 사흘째 날 탁자를 시신이 있는 방 동쪽 벽 아래에 놓고 대렴할 옷과 이불을 펴놓는다. 옷은 사士의 경우 30벌까지이나 있는 대로 준비하며 이불은 솜이불을 쓴다. 시신을 묶는 베인 효絞는 가로로 다섯, 세로로 셋을 준비한다. 동쪽 계단의 동남쪽에 탁자를 놓고 전奠에 올릴 음식과 술잔·주전자를 그 위에 차리고 보로 덮는다. 관을 들고 들어가 방 중앙의 조금 서쪽에 놓는다. 이에 대렴한다. 자손·부녀와 함께 손을 씻고 머리를 가리고 효를 묶어, 함께 시신을 들어 관 속에 넣는다. 살아있을 때 빠진 머리카락과 치아, 잘라낸 손톱과 발톱을 주머니에 넣어 관 모서리에 넣는다. 옷을 말아 빈 곳을 가득 채워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이불을 거두고 발, 머리, 왼쪽, 오른쪽 순서로 싸서 관의 가운데가 평평하고 가득 차게 한다. 주인과 주부는 기대어 곡으로 슬픔을 다한다. 부인은 물러나서 장막 안으로 들어간다. 장인을 불러 관 덮개를 덮고 못을 박는다. 대렴상을 치우고 옷으로 관을 덮는다. 명정銘旌을 가져와 관 동쪽에 있는 받침대에 설치하고, 다시 영좌靈座를 옛 장소에 설치한다. 영상靈床을 관 동쪽에 설치한다. 대렴전을 올리고 주인 이하는 각각 상차喪次로 돌아간다. 대곡하는 사람을 그치게 한다.

대렴 | 국립민속박물관

『상례비요』에는 '설전구' 항목 다음에 "주인 및 친척들은 웃옷의 왼쪽 소매를 벗고 처음처럼 돗자리를 깔고 효와 이불과 옷을 펼쳐 놓는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사례편람』에서는 다시 삭제되었다. 또한, 『상례비요』에서는 '내대렴' 항목의 "발, 머리, 왼쪽, 오른쪽 순서로 싼다."라는 내용이 중간에서 앞부분으로 옮겨지고, 이어 "먼저 세로 끈을 묶고 다음에 가로 끈을 묶는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사례편람』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렴 절차는 『주자가례』

뿐만 아니라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을 많이 참조하여 행해졌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렴 절차는 일제강점기 「의례준칙」의 '습급렴襲及殮' 항목과 해방 이후 「가정의례준칙」의 '입관入棺' 항목에서 습·소렴과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규정한 이후 크게 간소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장례식장에서 '염습'이란 이름으로 목욕 후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절차를 한꺼번에 행한다. 소렴과 대렴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인데, 굳이 구별하자면 대렴은 수의를 입힌 시신을 입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염'이란 '거둔다'는 뜻으로, '대렴'은 운명한 사흘째 날에 소렴한 시신을 다시 옷과 이불로 묶어 관에 넣은 것이다. 사흘째 날에 염하는 것은 혹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효심과 상례에 쓰일 상복·물품을 준비하고 멀리 있는 친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때문이라고 한다. 비록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졌지만 대렴 이전까지는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의의 표현이다. 그러나 입관을 마쳐도 소생하지 않으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사자를 보내는 장송의식을 행한다. 이때부터는 시신이 아니라 차려놓은 영좌를 향해 모든 의례를 행한다. 따라서 대렴은 습·소렴과 함께 망자가 이승에서 저승의 영역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정종수 외, 국사편찬위원회, 2005), 의례준칙, 조선중기 예학사상사(고영진, 한길사,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고영진(高英津)

대렴금
大殮衾

정의 대렴大殮을 할 때 사용하는 이불.

역사 대렴은 망자가 사망한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시신을 대렴금大殮衾으로 싸고 대렴포로 묶는 과정으로, 이것이 끝나면 입관 절차에 들어간다. 조선시대에는 소렴을 한 다음 날, 즉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대렴을 하지만, 현대에는 습과 소렴, 대렴을 모두 같은 날 한 번에 한다. 이를 염殮한다고 하며, 입관 절차에 포함된다.

내용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상례비요喪禮備要』,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서는 대렴금으로 솜이불을 한두채 사용한다고 했다. 정문공正文公 김수근金洙根(1798~1854)의 장례 기록인 『신종록愼終錄』에서는 남팔량주藍八兩紬 소렴금을, 충문공忠文公 김병학金炳學(1821~1879)의 『신종록』에서는 겉은 자지공단紫芝貢緞, 안감은 백공단白貢緞, 깃은 남공단藍貢緞, 동정은 백공단을 썼다고 한다. 또한, 김정규金貞圭의 부인 한산이씨韓山李氏(1865~1915)의 『신종록』에서는 자적자선수紫的紫縮紬, 안감은 백공릉白貢綾으로 대렴금을 만들었다고 한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연안 김씨(16세기 중반 추정) 묘에서 수습된 대렴금은 모두 두 점이다. 모시 홑이불과 화문단 겹이불로 대렴을 했고, 대렴금을 다시 한 번 감싼 두께 5㎝의 솜이불이 있다. 이 솜이불의 겉감은 주紬로, 안감은 삼베로 만들었다. 대렴금은 전통 이불과 같은 형태로 4~5폭의 이불 길과 깃, 동정이 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의원군義原君 이혁李爀(1661~1722)과 그 부인 안동 권씨(1664~1722)의 대렴금은 솜이불로 화문단 세 폭을 이었고, 깃과 동정이 있다. 너비 200㎝, 길이 264㎝ 내외이다. 이연응李沇應(1818~1879)의 대렴금은 이불깃과 동정이 있는 다섯 폭의 겹이불이다. 너비 195.5㎝, 길이 315㎝이다. 기록과 유물을 통해 보면, 대렴금은 염습구로 별도 제작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사용하던 이불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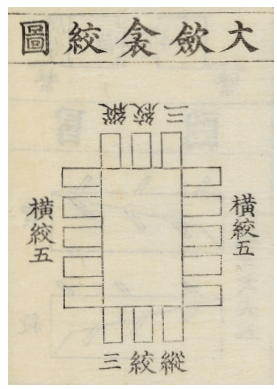

대렴금교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대렴금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강점기의 수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조선재봉전서』에서 백색의 세포로 만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수의의 일부로 대렴금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출토복식연구회가 제시한 대렴금은 전통 이불과 같은 형태로 명주나 무명을 사용했으며, 겉감과 안감의 색상이 다르다. 대렴금은 길이 189㎝, 너비 37㎝의 직물 4개를 이어 이불 길을 만들었고, 너비 35㎝의 이불깃, 너비 22㎝의 동정을 덧붙었다. 대렴금은 총 148㎝의 너비에 길이는 246㎝로 겹이불이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에는 대렴금의 사용이 일반적이었지만, 2014년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수의에는 대렴금이 포함되지 않고 천금이 대렴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장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염습구도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참고문헌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경기도박물관, 2005), 염습의에 관한 연구(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경기도박물관, 2001),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김진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한국의 수의문화(박성실·정종수·이은주 외, 신유, 2002).

필자 송미경(宋美京)

대례 大禮

정의 전통 혼례의 초례청에서 치르는 교배례와 합근례의 절차.

역사 대례는 조선조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입각한 친영親迎을 예제로 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혼인예식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변통고常變通攷』와 같은 한국의 예서들은 가례의 친영을 준용遵用했지만, 민간에서는 남귀여가혼의 전통을 절충한 대례절차가 이루어졌다. 조선 말기 빈곤층을 중심으로 작수성례酌水成禮나 복수결혼福手結婚이 등장하고, 근대기 예배당 결혼 또는 예식장 혼인이 나타나면서 대례전통은 크게 약화되었다. 최근 우리 것에 대한 가치 제고와 함께 젊은 층의 전통혼례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고궁이나 한옥에서 교배례와 합근례 중심의 대례로 혼례식을 올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내용 대례는 크고 중대한 예식이란 뜻으로 왕실에서 왕이 친히 치르는 의식을 말하나, 민간에서는 흔히 혼인을 위해 치르는 의례를 일컫는다. 혼인 예식을 대례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인륜지대사'라고 하여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혼사를 큰일 또는 길사吉事·경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좁은 의미로 대례는 초례醮禮라고 하여 신랑과 신부가 대면하여 치르는 예식인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巹禮의 절차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신부 집에서 치르는 전안례奠雁禮와 초례를 모두 대례로 일컫기도 한다. 때로는 신부 집에서 치르는 혼례 일체를 대례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서禮書의 친영례에서는 신랑이 본가의 사당에 고하고 신부 집으로 가서 전안례를 행한 후에 바로 신부를 맞이하여[親迎] 본가로 돌아와 교배례와 합근례를 올리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신랑 집에서 혼례를 할 경우, 대례는 교배례와 합근례만 의미한다. 그러나 더 널리 보급된 반친영의 혼례 관행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전안례·교배례·합근례를 치르고 첫날밤을 보낸 후에 신부를 본가로 데려간다. 이때 전안·교배·합근의 절차를 모두 신부 집에서 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전안례까지 합하여 대례로 일컫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 일반적으로 행해진 관행을 중심으로 보자면, 혼례식은 상객, 후행 등으로 이루어진 신랑 행렬이 신부 집이 있는 마을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신부 집에서는 미리 마루나 마당에다 대례청(초례청)을 마련해 둔다. 안마당에다 전안청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 마을에 도착한 신랑 행렬은 바로 신부 집으로 들지 않고 준비된 사처방에서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한다. 대례 시각이 되면 신랑은 성복을 하고 사처방을 떠나 신부 집으로 간다. 이때 신랑은 신부 집 대문에서 짚불을 넘거나 곡식가마를 딛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모두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한 행위이다. 신랑은 먼저 기럭아비[雁夫]가 들고 온 목안木雁을 받아들고 전안청으로 들어서서 그것을 놓고 재배한다. 신부 어머니가 목안을 받아 치마에 싸서 시루 속에 넣어두

대례 | 국립민속박물관 3전시실

거나 신부 방 아랫목에 놓아두었다가 신랑 후행이 돌아갈 때 딸려 보낸다.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썼는데 구하기 어려워 나무 기러기로 바뀐 것이다. 『주자가례』에 의하면, 기러기를 쓰는 까닭은 기러기가 음양을 따라 왕래하며 두 번 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곧 기러기가 금실이 좋고 정조와 신뢰를 지키는 성질이 있음을 취한 것이다. 신부 어머니가 이 기러기를 방으로 던져서 앉으면 첫 아들, 누우면 첫 딸을 낳는다는 속신도 있다.

기러기를 드리는 전안례가 끝나면 신랑·신부가 처음으로 대면하여 절하는 교배례가 이어진다. 신랑이 대례청으로 올라가서 대례상의 동쪽에 서면, 단장을 한 신부가 비로소 모습을 나타내어 대례상의 서쪽에 마주 선다. 먼저 신부가 수모의 도움을 받아 재배하면 신랑은 대반의 도움을 받아 답일배를 한다. 이것을 교배례라고 하는데 보통 두 번 반복한다. 그래서 신랑이 두 번, 신부가 네 번 절하는 것으로 교배례가 끝이 난다. 신부가 갑절로 절하는 것에 대해 남존여비男尊女卑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나, 음양이 홀수와 짝수인 이치를 따른 것이란 해석도 있다. 대례가 행해지는 동안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신랑 코가 크다, 신부가 예쁘다는 등의 놀리는 말로 좌중을 웃게 하여, 대례청을 경사스런 축제 분위기로 만들기도 한다.

교배례가 끝난 다음에는 합근례合巹禮를 올린다. 근巹은 하나의 박을 나누어 두 개의 바가지로 만든 것으로 신랑과 신부가 각각 하나씩 들고서 술을 따라 서로 나누기 때문에 합근이라고 한다. 먼저 수모가 청홍실을 손등에 드리우고 술을 따라 신랑의 대반에게 전하면 신랑이 입에 대었다가 신부의 수모에게 전하고, 신부는 그것을 받아 입에 대는 시늉을 하고 쏟는다. 다음에는 신부 쪽에서 먼저 시작하여 술잔을 주고받는데 이런 행위를 세 번 반복한다. 『예기禮記』「혼의昏義」에서는 잔을 합한다는 의미의 합근을 신랑·신부의 몸을 합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대례절차가 모두 끝이 나면 신부는 방으로 들어가고 신랑은 대청에서 큰상을 받는다. 이때 신랑은 큰상에 놓인 음식을 직접 먹지 않고 '입맷상'이라고 하는 작은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며, 큰상에 진설된 음식들은 그대로 신랑 집으로 보내진다. 저녁이 되면 수모가 꾸며놓은 신방에서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맞이하는 것으로 혼례 당일의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특징 및 의의 세계 대부분의 민족들은 양식은 달라도 자기 나름의 혼례식 문화를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한

국은 혼인에서 예禮를 중시했다. 우리나라에도 고대부터 남녀 분별의 가취예속嫁娶禮俗이 있었다고 전하나, 조선조 『주자가례』의 준행이 강요되면서 유교적 예제禮制로 재정비된 특징을 지닌다. 비록 『주자가례』의 친영이 널리 수용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영향으로 민간에서 행하는 혼례도 점차 복잡한 관행으로 재정비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관행상의 대례가 『주자가례』를 비롯한 예서 친영편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예식장 혼인이 나타날 때까지 대례가 대부분 신부 집에서 행해진 것은 오랜 남귀여가혼의 전통을 깨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그 밖에도 관행상의 대례에는 행위 내용이 달라지거나 해석이 달라진 부분, 전통적인 관념 또는 속신이 반영되거나 덧붙은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관행의 합근례 부분은 예서 친영편의 동뢰同牢와 합근절차에서 합근만 선택·확대된 것이다. 또 예서에서는 전안례의 기러기를 주인의 시종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행에서는 대부분 장모가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혹자는 이것을 한국 고대의 모권사회의 유습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대례는 성례成禮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의혼, 청혼, 택일, 납폐納幣 등과 같은 약혼의 단계가 전례前禮, 대례 이후 이루어지는 신행, 현구고례, 재행, 근친 등과 같은 나들이 단계가 후례後禮라면, 대례는 구체적으로 혼인이 실현되는 중심 단계의 의례이다. 신식혼례에서 성혼 선언을 하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예속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혼례의 식을 거행하지 않은 남녀의 결합을 야합野合이라 보고 그들을 혼인한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례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치르는 것은 혼인한 부부로서 사회적 공인을 얻기 위한 문화적 장치이다. 또한, 대례에 모인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를 짓궂게 놀려대는 것도 일종의 '욕보임'의 민속으로 혼례의 통과의례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常變通攷, 朱子家禮, 관혼상제에 관한 연구(장철수, 집문당, 1995), 조선민족혼인사연구(박경휘,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2),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필자 천혜숙(千惠淑)

대례상
大禮床

정의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 차리는 상.

역사 17세기까지 가장 보편적이었던 혼인 형태는 '처가살이혼[婿入婚]'이었다. 『북사北史』「고구려전高句麗傳」과 『고려도경高麗圖經』을 보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기 전부터 이미 묵고 있었던 신랑과 신부를 위해 신방을 준비하고, 신방을 준비한 3일째에 비로소 동뢰연同牢宴을 받았는데 이때 신랑 집은 신부 집에서 치르는 잔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부 집으로 돼지와 술을 보냈다[禮幣]. 고려시대에는 이 동뢰연을 '독좌獨坐'라 하였다. 돼지와 술로 구성된 신랑 집에서 보낸 예폐는 독좌 이후 신부 집에서 치르는 잔치를 통해 공음공식共飮共食하는 데 쓰는 신성한 주식酒食이 되었다.

고려 말기 봉건적 신분제도와 가부장제적 질서유지를 강화하고자 정몽주鄭夢周(1337~1392) 등은 주도적으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이 개혁은 '처가살이혼' 대신 유학을 근거로 '시집살이혼[嫁入婚]'을 치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349년(고려 충정왕 원년) 공민왕恭愍王은 노국공주魯國公主와 혼인할 때 북경에서 친영親迎하여 '시집살이혼'을 실천하였다.

고려 말기에 행한 개혁 조치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정권에서 속행되었다. 조선왕조는 개국과 더불어 정권을 더욱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도학적 윤리관을 확립하고 의례를 정비하면서 '시집살이혼'인 '친영혼'을 채택하였다. 1419년(세종 원년) 세종은 왕가의 자녀 혼인에 친영례親迎禮를 따른다고 교시하여 왕가부터 솔선수범하고자 하였지만, 궁중에서 친영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512년(중종 7) 10월에 중종은 "조선의 풍속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것을 정식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고례古禮(친영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지금부터 왕자와 왕녀의 혼인은 모두 고제古制에 따라 행한다."라고 교시를 내리고 1525년(중종 20)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나타난 「사자에게 명하여 왕비를 봉영奉迎하는 의식」 대신에 왕이 직접 신부를 맞이하는 올바른 친영례를 고

례에 준하여 고찰하도록 하여, 친영 장소로 정한 태평관太平館에 왕이 몸소 가서 문정왕후文定王后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문화된 「왕비를 맞아들일 때 친영하는 의식」은 1702년(숙종 28)에 비로소 제정되었고, 그 후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첨부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왕가의 혼례는 중종 이후 간택揀擇·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친영·동뢰연·조현례朝見禮, 見舅姑禮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518년(중종 13) 사림에서는 김치운金致雲이 최초로 친영례를 행했다. 그로부터 6년 후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조광조趙光祖(1482~1519)가 처단된 이후 친영례는 폐지되었다. 명종대(1545~1567년)에 들어서자 사서인士庶人 사이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동뢰연을 행한 다음, 다음 날 아침 신랑 집으로 와 시부모에게 조현례를 행하는 반친영례半親迎禮가 행해졌다. 반친영례는 16세기 후반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반친영례 역시 친영례와 마찬가지의 의례 절차를 밟았음은 물론이다.

조선왕조와 사림에서 전개된 친영례와 반친영례는 친영 이후 동뢰연을 반드시 치러야 혼인이 성립되었다. 대례상大禮床이란 바로 동례연에서 차리는 동뢰연상을 말한다. 그러나 유교적 예제에 기반을 둔 동뢰연상이라 하더라도 조선왕조의 동뢰연상은 고려왕조의 것을 속례俗禮로서 받아들여 전개되었고, 사림에서 행한 반친영에서의 동뢰연상은 조선왕조의 것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내용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에서 제시한 동뢰연상은 삶아 익힌 특돈特豚(새끼 돼지) 1마리를 중심으로 왼편 1/2은 신랑을 위해, 오른편 1/2은 신부를 위해 차리는 것이었다. 동同은 '한가지 동', 뢰牢는 '짐승 뢰'이므로 동뢰연이란 "돼지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게 하는 예"라는 뜻이다. 사士의 혼례이지만 성대하고 기쁜 행사이기 때문에 대부大夫의 예에 따라 신랑과 신부 앞에 각각 6두豆(급湆·장醬·저菹·해醢·서黍·직稷)와 3조俎(돈豚 1/2마리, 석腊, 어魚)를 함께 차린 동뢰연상은 음陰과 양陽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6두는 음이고 3조는 양이다. 이는 천시天時의 추이에 의하여 생성된 양성陽性(고기) 음식은 홀수로 담고, 음성陰性(곡류와 채소류) 음식은 짝수로 담아 음과 양을 합하게 하여 이 음식으로 신神을 접대하고 음복飮福을 통하여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성의를 다한 상차림이다.

대례상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이러한 「사혼례」의 동뢰연 상차림은 반친영혼에서 좀처럼 적용되지 못하였다. 1626년(인조 4) 반친영혼 때 신부 집에서 행한 동뢰연상 음식이 『성재집省齋集』에 기술되어 있다. 채菜(나물) 3기와 과果(유밀과와 과일) 6기를 함께 신랑과 신부 앞에 각각 차렸다. 과일과 나물이 중심인 이 상차림은 이재李縡(1680~1746)가 쓴 『사례편람四禮便覽』과 1900년(광무 4)에 간행된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으로 이어졌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사혼례」의 동뢰연 상차림에 당시의 풍속을 참작하여 동뢰연 상차림을 규범으로 제시하였다. 6두(갱湆, 장, 김치菹, 젓갈醢, 떡黍, 밥稷)와 3조(돼지特豚 1/2마리, 닭腊 1/2마리, 생선魚)를 모두 함께 신랑과 신부 앞에 차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다.

다음에는 1749년(영조 25)에 제정한 『어제국혼정례御製國婚定例』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에서 왕세자 가례 때에 행한 동뢰연상을 알 수 있다. 민중의 혼례이든 왕가의 혼례이든 동뢰연의 주목적은 신랑과 신부가 음식으로 한 몸이 되고 술로 영혼을 일체화하는 것이었다. 이때 술 석 잔을 술안주와 함께 올린다. 제1잔은 좨주祭酒이고, 제2잔은 먹은 음식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술이며, 제3잔은 둘로 쪼개어서 만든 표주박 잔으로 마시는 합근주合巹酒이다. 이 술 석 잔의 안주로 동원된 것이 「사혼례」에서는 특돈이었지만, 반친영혼을 적용했던 민중들은 과果와 채菜였고, 친영혼을 적용했던 조선

왕조는 삼미三味였다. 삼미란 초미初味, 이미二味, 삼미三味를 말한다. 술 제1잔의 술안주가 초미이고, 술 제2잔의 술안주가 이미이며, 술 제3잔의 술안주가 삼미이다. 삼미의 적용은 고려왕실의 혼례를 속례로서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런데 삼미만으로는 대례를 치르는 데에 부족하다고 여긴 탓인지, 미수사방반味數四方盤 1상과 중원반中圓盤 1상, 과반果盤 3상을 삼미에 곁들여 신랑과 신부 앞에 각각 차렸다. 다시 말해서, 왕실의 대례상이란 삼미, 미수사방반, 중원반, 과반의 세 상을 신랑과 신부 앞에 함께 차린 것을 말하며, 이들은 술 석 잔에 따른 안주상 차림이다.

규범과 관행이 다르게 전개된 민중의 대례상(동뢰연상)의 경우, 1800년대 말에는 혼인날 신부 집 문 앞에 송죽松竹을 세웠다. 그 이유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세간에서 경사스러움의 대표로 존중되었기 때문이다. 소나무 잎은 항상 푸르고 대나무는 사계절 내내 고사하지 않아 건강과 장수長壽, 지조와 굳은 절개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室 또는 대청이나 마당에 교배석交拜席을 마련한 다음 밤·대추 등의 과일, 주전자와 술잔 그리고 합근合巹(표주박을 두 개로 쪼개어 만든 술잔으로 하나는 신랑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부 것임)을 진설한 고족상高足床(발 높은 상)을 한가운데 놓고 이것을 대례상이라 하였다.

대례상의 위 양 끝에는 몸을 묶은 닭 두 마리를 청색 보자기와 홍색 보자기에 싸서 놓는데, 이는 처가살이혼에 시집살이혼이 결합한 반친영혼 상차림으로 이러한 상차림은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특징 및 의의 1969년에 출간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를 보면 전라남도 나주에서 행한 대례상 차림에서는 발 높은 고족상인 제례상을 대례상으로 쓰며, 상을 차리는 장소는 안마당이다. 동쪽(신랑 쪽)에는 살아있는 수탉, 서쪽(신부 쪽)에는 살아있는 암탉을 상에 올려놓고 밤 1기, 대추 1기, 정화수 1기, 청주를 담은 백자 술병 2기, 합근을 차린다. 상 중앙의 양 끝에 곡식을 되는 말[斗]에 면화씨를 가득 담아놓고 여기에다 사철나무, 대나무, 동백나무를 꺾어 꽂고는 종이꽃[床花]을 아름답게 만들어 단지에 꽂아 장식하고 있다. 암탉·수탉을 놓는 것은 동고동락의 뜻이고, 사철나무·동백나무·대나무를 놓는 것은 지조가 숭고함을 찬양하는 뜻이며, 상화를 놓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찬미하는 뜻이라고 한다. 이상의 대례상 차림은 1800년대 말에 보이던 대례상 차림을 계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대신에 사철나무·동백나무를 쓰는 점, 쌀 대신에 면화씨를 담은 두斗를 쓰는 점 등은 나주라는 지역의 특성에 의하여 약간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史,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 北史, 四禮便覽, 省齋集, 御製國婚定例, 與猶堂全書, 禮記, 儀禮, 增補文獻備考, 增補四禮便覽, 春官志, 조선왕조 궁중의궤 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조선왕조 혼례연향 음식문화(김상보, 신광출판사, 2003),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전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필자 김상보(金尙寶)

대반
對飯

정의 전통혼례에서 신랑·신부 및 그 후행後行으로 온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내용 전통혼례 과정에서 신랑·신부 및 그 후행들을 안내하고 시중을 드는 역할, 또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인접人接이라고도 한다. 신랑의 대반은 대개 신부 오빠나 동생 혹은 신랑과 나이가 비슷한 친척이 맡고, 신부의 대반은 시누이나 갓 시집온 새댁들이 맡는다. 후행의 대반은 별도로 연세가 높고 범절을 아는 어른이 맡기도 한다. 혼례 당일에 신부 집에서는 미리 대반을 보내서 마을로 들어오는 신랑 행렬을 맞이한다. 이때 대반은 신랑 일행을 바로 신부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마을 내에 정해 놓은 사처방私處房으로 안내하여 접대한다. 사처방을 따로 정하지 않고 바로 신부 집으로 오는 경우에도 대반이 안내 역할을 한다. 대반은 불을 놓은 짚단을 넘어서 들어오거나 노죽섬이라는 곡식 가마를 딛고 신부 집으로 들어오는 신랑을 도와주고, 읍揖하고 맞이한다. 구경꾼들이 대반에게 신랑을 업고 대례청으로 들어가라고 장난을 치기도 한다. 대반은 전안례奠雁禮와 교배례交拜禮 및 합근례合巹禮로

이어지는 대례大禮 전 과정에서 신랑을 안내할 뿐 아니라 술을 따르고 술잔을 건네는 등으로 신랑을 도와 예식이 무사히 진행되도록 한다. 반대로 신부의 우귀于歸 행렬이 시가로 들어갈 때는 신랑집의 대반이 나와 신부와 후행을 맞이하여 대접하는 역할을 한다.

특징 및 의의 처가로 초행을 가는 신랑이나 시가로 신행을 가는 신부는 낯선 곳에서 중요한 통과의례를 앞두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동년배인 대반이 그들을 도와주도록 조처하는 것이다. 곧 대반은 신랑·신부가 편안한 마음으로 혼인 의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문화적 장치이다. 대반을 통해 서로 상대 일행을 예로 대접하고 각별히 배려한 것을 보면, 전통사회의 혼인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 이전에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이라는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관혼상제에 관한 연구(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필자 천혜숙(千惠淑)

대상
大祥

정의 사망 후 두 번째 기일에 지내는 제사.

내용 대상은 크게 길한 날이라는 뜻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두 번째 기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초상부터 이날까지 윤달을 계산하지 않으면 모두 25개월이다. 이날 입는 옷은 담복禫服이다. 『가례家禮』에서는 담복을 준비한다고 하였으며, 사마광司馬光은 "장부丈夫는 수각참사복두垂脚黲紗幞頭, 참포삼黲袍衫, 포과布裹, 각대角帶를 한다. 대상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이에 나가서 뵙는다. 부인은 관冠과 소梳, 가계假髻를 하고, 아황鴉黃, 푸른 것, 검고 흰 것으로 옷과 신을 만든다. 금, 구슬, 붉은 것, 수놓은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곧 담복은 참포인 것이다. 구준邱濬은 지금 세속에는 수각복두가 없다고 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보면, 참은 엷은 청흑색이라고 하였다.

담복은 검은색을 날실, 흰색을 씨실로 하여 고운 베[纖]를 써서 만든 옷이다. 명나라 제도에는 상복祥服을 진설한다고 하고, 『서전』에서는 호縞를 입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재性齋 허전許傳 등은 상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리고 호관은 당시의 제도에 없어서 백포립白布笠을 통용하였다.

제사 전날에는 매우 중요한 의절을 행하였다. 그것은 천하의 통법인 사대봉사四代奉祀의 대상을 바꾸는 절차이다. 조상의 대수代數에 따라 신주를 고쳐 쓰고 체천遞遷하며, 새 신주를 들이는 일이다. 이를 하기 위해 먼저 사당에 그 사실을 고유告由한다.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초하루의 의식처럼 한다. 만약 친함이 다한 조상이 없으면 축판祝板에서 이를 운운한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뢰고 나서 신주를 고쳐 쓴다. 그러고는 신주를 차례로 교체하여 서쪽으로 옮겨 가고, 동쪽의 감실龕室 하나를 비워 새 신주를 기다린다.

만약 '친함이 다한[親盡]' 조상이 별자別子일 경우에는 아뢰는 일을 마치고서 묘소로 옮기되 매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자支子일 경우에 족인族人 중에서 친함이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해당 족인 사당의 최고 어른의 방으로 옮겨서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 만약 친함이 모두 이미 다하였으면, 친진된 신주를 양 계단의 사이에 매장한다.

기일이 되면, 제사는 소상小祥의 의절대로 지낸다. 새벽에 일어나 채소·과일·술·음식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면 축祝이 신주를 내온다. 주인은 문밖에 상장喪杖을 기대놓고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친족과 함께 각각 그 옷을 입고서 들어간다. 모두 영좌靈座 앞에서 곡으로 슬픔을 다하고 그친다. 나와서 막차幕次로 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들어가 곡한다. 축이 곡을 그치게 한다. 주인은 분향하고 재배한 뒤 강신降神한다. 축이 음식을 바친다. 주인이 초헌初獻하고 나면, 축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으로 가서 동향하여 무릎 꿇고 읽는다. "세월이 머물지 않아 벌써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삼가 두렵고 꺼려져 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슬피 사모하는 마음에 편안하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결생, 유모, 자성, 예제로 이 상사祥事를 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축이 일어난다. 주인은 곡하며 재배한다. 자리로 돌아가서 곡을 그친다. 희생은 돼지고기를 사용하면

1. 곡

2. 역복

3. 초헌 침주

4. 독축

5. 고이성

6. 영좌 철거

7. 감실 설치

8. 감실에 신주 봉안

대상 | 경남 김해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강렵剛鬣'이라 하고, 희생을 사용하지 않으면 '청작서수淸酌庶羞'라고 한다.

아헌亞獻은 주부가 한다. 의절은 초헌과 동일하게 하되, 축문을 읽지 않고 사배한다. 종헌終獻은 친척이나 빈객 한 사람 혹은 남자나 여자가 한다. 의절은 아헌과 똑같이 한다. 유식侑食한다. 밥을 먹는 동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문을 열고 자리로 간다. 집사는 차를 따른다. 축은 주인의 오른쪽에 서서 서향하고 '이성利成'을 아뢴다. 주인 이하는 곡을 하며 재배하여 사신辭神한다.

마치면, 축이 신주를 받들고서 사당으로 들어간다. 주인 이하는 곡하면서 따라가 문 앞에 이르러서 그친다. 동쪽의 빈 감실에 신주독神主櫝을 봉안한다. 영좌를 거둔다. 상장喪杖은 이 이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러뜨려서 구석진 곳에 버린다. 친진된 신주는 받들어서 묘소로 옮겨 그 옆에 묻는다.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침실로 돌아간다.

특징 및 의의 부묘祔廟는 『가례』에서 졸곡卒哭 다음날에 하도록 하였으나, 친진된 조상의 신주를 조천祧遷하고 새 신주를 사당에 들이는 절차는 대상 때에 행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묘의 의미와 슬픔이 점점 줄어들어 길례로 나아가는 과정의 관계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士儀, 說文解字,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도적
都積

정의 제례에서 술 3작의 안주로 신에게 올리는 수조어육류獸鳥魚肉類.

역사 『예기禮記』「향음주례鄕飮酒禮」에서는 "예禮는 3을 중시한다."라고 하였고, 「옥조玉藻」에서는 주삼작酒三爵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군자가 술을 마실 때에는, 제1작을 받으면 표정이 엄숙하고, 제2작에서는 화기애애하며, 예의상 제3작에서는 그만두고 정중하게 물러간다.
> 君子之飮酒也, 受一爵而色灑如也, 二爵而言言斯, 禮已三爵而油油以退.

그런데 『예기』「예기禮器」에서는 술 3작을 마실 때 찬饌 중에서 가장 귀貴한 소·돼지·양을 조리하여 만든 것을 술안주로 올리는 것이 예라 하였다.

내용 술 3작에 적합한 가장 고귀한 술안주가 육류라고 한 『예기』를 근거로 마련된 상차림 법은 고려왕조의 기신제忌晨祭 문화를 속례俗禮로 받아들여 관행으로 정착시킨 조선왕조의 기신제나 시제時祭에서도 적용되었다. 고려왕실에서부터 이어온 유밀과油蜜果·과일·병餠을 주요 제물祭物로 하면서 『예기』에서 지적한 술안주 육류를 첨부한 것이다.

이재李縡(1680~1746)가 쓴 『사례편람四禮便覽』「사시제四時祭」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모신 신위神位의 바로 앞줄인 제1행에는 신위의 오른편에서부터 왼편으로 반飯·잔반盞盤·시저匙箸·초장醋醬·갱羹을 놓고, 제2행에는 역시 오른편에서부터 왼편으로 면麵·육肉·적炙·어魚·병餠을 진설하도록 하였다. 제2행은 바로 술안주와 밥반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음식이 차려지는 곳이며, 적이 바로 술안주가 되는 육류로서 제물의 가장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1800년대 초의 것으로 보이는 탄옹炭翁 권시權諰(1604~1672) 집안의 가례서家禮書 『묘사의절墓祀儀節』에서는 적은 "우羽·모毛·린鱗 삼적三炙 첨합添合"이라 하였다. '우'는 날개 달린 꿩이나 닭으로 만든 적, '모'는 털이 있는 짐승으로 만든 적, '린'은 비늘이 있는 생선으로 만든 적을 담아 올린다는 것으로, 이들 적은 하늘·땅·물에서 나오는 가장 맛있는 수조어육류로 만든 찬품饌品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현재 경상북도 안동의 종가宗家에서 행하는 기신제 때에는 '적炙'을 '도적都積'이라 하였다. '도都'는 '모두[合]', 적積은 '쌓다'의 의미이니, '쌓아 합한 것'

경북 안동 서애 류성룡 종가

대구 동구 둔산동

도적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이 도적이다. 가로 39㎝, 세로 28㎝, 높이 15㎝의 목기로 만든 적틀인 적첩炙楪에 쌓아 담는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 종가에서 행한 불천위不遷位 제사 때의 도적은 나무로 만든 사각 적틀에 10단까지 쌓는다. 1단에서 7단까지는 북어·간고등어·방어를, 8단에는 쇠고기 저민 것을, 9단에는 삶아 데쳐낸 문어를, 10단에는 생닭을 쌓아 올리는데, 이들 중 조리한 것은 끓는 물에 삶아 데쳐낸 문어뿐이다. 『예기』에서 기술한 적 담는 그릇으로 '나무로 만든 사각의 조俎'를 적용한 것이 '적틀'인데, 어쨌든 『묘사의절』과 마찬가지로 '우·모·린 3적 첩합'인 점에서는 일관성을 가진다

이렇듯 우(계적)·모(육적)·린(어적)을 하나의 적틀에 날것으로 담는 것은 불천위제사 같이 격이 있는 큰제사가 일반 제사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담겨 있으며,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생겨난 조선 후기 이후의 산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제사는 익혀서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예기』의 "상등의 신에게 올리는 것은 불을 가하지 않은 것을, 일반 신에게 올리는 것은 익힌 것을 올린다."는 고례를 따른 결과이다.

참고문헌 墓祀儀節, 四禮便覽, 禮記, 생활문화 속의 향토음식문화(김상보, 신광출판사, 2007),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6), 종가의 제례와 음식(김상보, 월인, 2005).

필자 김상보(金尙寶)

독축
讀祝

정의 제례 등에서 신에게 축원祝願을 드리는 글인 축문을 읽는 절차.

내용 독축讀祝은 제례나 상례 등 신神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儀禮에서, 축관祝官이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인 축문을 읽어 제례의 의미를 알리는 의례 절차를 말한다. 독축은 축관을 별도로 세워서 읽는데, 그 이유는 제례를 주관하는 주인이 감격과 슬픈 심정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의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례자參禮者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의를 알려주려는 목적도 있다.

일반적인 제례에서는 초헌례에 주인이 술을 올리고 향탁 남쪽에서 신주神主를 향해 부복俯伏하면, 축관이 축판에 있는 축문을 가지고 주인 왼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을 읽을 때는 너무 크거나 작게 읽어서는 안 되며, 제례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읽는다. 또한, 전통적인 한문 축문을 읽을 때는 고저장단高低長短의 음률音律을 맞추어서 읽는다.

『가례家禮』에서 축문을 읽는 경우는 대부분 상례와

경북 안동 겸암 류운룡 종가

경북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독축 | 국립민속박물관

제례를 지낼 때이다. 다만 사당례祠堂禮에서는 '유사즉고有事卽告', 즉 벼슬을 받거나 좌천 또는 추증追贈되었을 경우에 선조에게 이를 알리는 축문을 읽는다. 그리고 관례에서는 관례를 치르기 3일 전에 사당에 관례의 거행을 고하면서 축문을 읽으며, 혼례에서는 납채納采 때와 친영親迎 때에 신랑 측과 신부 측이 각각 혼례의 행사를 사당에 아뢰며 축문을 읽는다.

상례 기간에 지내는 상중제례喪中祭禮에서는 우제虞祭와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의 절차에서 축문을 읽는다. 우제 때에는 축관이 주인의 오른쪽에서 서쪽을 향해 꿇어앉아서 독축하고, 졸곡 이후의 상중제례 및 기타 제례에서는 축관이 주인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서 독축하는데, 우제 때의 축문을 읽는 방향은 다른 제사 때의 방향과 다르다. 그 이유는 상례에서 졸곡 이전의 의례는 흉례凶禮에 속하지만, 졸곡 이후의 의례는 길례吉禮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제는 흉례의 기준에 따라 음의 방향인 서쪽을 향하여 축문을 읽고, 길례에 해당하는 다른 제사는 양의 방향인 동쪽을 향하여 축문을 읽는 것이다.

제례에서는 보통 술을 석 잔 올리는데, 초헌례에서 첫 번째 잔을 올린 직후에 축문을 읽는다. 이를 '삼헌독축三獻讀祝'이라고 한다. 다만 명절에 지내는 차례茶禮는 본래 정식 제례가 아니었고, 『주자가례』「사당」 장에서 "세속 명절에는 제철 음식을 올린다[俗節則獻以時食]"고 한 절차에서 유래한 것으로, 술을 한 잔만 올리고 축문을 읽지는 않는다. 이를 '단헌무축單獻無祝'이라고 한다. 또 상중에는 다른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는데, 졸곡 때까지는 모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졸곡 이후에는 기제사忌祭祀를 단헌무축으로 간략하게 지내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독축은 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에서 그 의례를 행하는 의미를 밝히고 신에게 어떤 사실을 고하거나 축원을 드리는 글을 읽는 행위로, 매우 엄숙하게 행해지는 의례 절차이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輯覽, 四禮便覽,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 ac. kr).

필자 도민재(都民宰)

돌

정의 아이가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생일.

역사 아이의 첫 생일인 돌을 기념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풍속이다.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교훈서인 『안씨가훈顔氏家訓』과 송대宋代의 맹원로孟元老가 쓴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 돌과 돌잡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그 모습이 조선의 기록에 나타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아이의 돌을 기념하여 잔치를 열고 새 옷을 입힌 뒤에 돌잡이를 했다는 사실은 조선 초기 왕실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태종실록太宗實錄』 12년의 11월 을유일(4일)의 기사에는 "임금의 어린 아들 종의 초도初度이므로 성수초星宿醮를 베풀어 수壽를 빌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정조실록正祖實錄』 7년 9월 을미일(7일)의 기사에는 문효세자의 돌에 신하들을 불러 하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자에게 '채색 옷[衣彩]'을

초도관희 | 평생도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돌 | 1939 | 국립민속박물관

입혔다는 기록과 돌잡이에 쓰인 '활과 화살[弧矢]'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왕실에서 이루어진 돌 의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자나 원자元子의 돌을 전후하여 백성의 세금을 감해 주고 죄인을 풀어주거나 과거를 치렀던 것으로 보아 이 때를 특별한 날로 기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의 일기와 문집에서는 왕실보다 늦은 16~17세기에야 돌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 중기 사대부가의 돌잔치 모습은 이문건李文楗이 손자를 양육하며 쓴 『양아록養兒錄』(1552)과 임진왜란 때 피란처에서 쓴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瑣尾錄』(1598)에 나타나 있다. 두 기록 모두 손자의 돌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고 돌잡이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돌은 조선 초기부터 왕실에서 왕자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로 치르던 공식적인 행사였으며, 16세기 중반 이전에 사대부와 백성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의례였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돌에는 아이에게 돌 빔을 지어 입히고 잔칫상을 차려 돌잡이를 하는 것으로 생후 1년이 되었음을 기념한다. 돌 빔은 이전까지 입던 흰색 위주의 옷에서 벗어나 원색 옷감으로 화려하게 만들고, 쓰개에서부터 신발, 장신구에 이르는 일습을 모두 갖추어 입힌다. 돌날 아침에는 삼신상을 마련하여 아이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가족이 모여 미역국과 쌀밥을 나누어 먹는다. 또한, 가까운 친척과 지인을 초대하여 잔치를 여는데, 이때 돌상 위에 활과 화살, 책과 붓, 쌀과 돈, 실타래, 가위와 자 등 성별에 따라 다양한 물건을 늘어놓고 아이가 무엇을 잡는가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는 돌잡이를 한다. 아이를 위한 돌상에는 돌잡이 물품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린다. 그릇 가득 담은 긴 국수 가락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흰쌀로만 쪄낸 백설기는 아이의 순진무구함과 티 없이 맑은 신성함을 상징한다. 돌상에는 반드시 수수로 둥근 경단을 빚어 팥고물을 묻힌 수수팥떡을 올리는데, 이는 붉은색 팥이 잡귀를 몰아내고 아이의 액을 물리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돌 이후로 아이가 열 살 혹은 열두 살이 될 때까지 매해 생일상에 수수팥떡을 올리는 것 역시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풍습이다. 이 밖에도 돌에는 각종 과일과 떡, 다과와 음식을 마련하여 잔치를 찾은 손님들과 나누어 먹는다. 돌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쌀 등의 현물을 비롯하여 돈이나 돌 반지 같은 선물을 전하며 성의를 표시하고 아이의 미래를 축원한다.

특징 및 의의 아이의 첫 생일인 돌을 기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과거에 아이의 안정된 생존을 기원하기 위해 돌을 기점으로 의례를 했다는 것이 한 가지 설이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등 육체적 성장이 활발해지고 생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때가 돌 무렵이기 때문이다. 통과의례의 관점에서, 돌잔치는 가까운 친인척과 이웃에게 아이를 공개하는 기회가 되므로 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절차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그 기원이 어떠하든 돌은 아이의 생존을 축하하고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의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후손이 귀한 가문에서는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된다 하여 돌잔치를 하지 않

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돌을 아이 성장의 한 단계로 보고 기록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돌빔과 돌상, 돌잡이 등 아이의 돌에 잔치를 베풀고 기념하는 의례의 내용과 의미는 지속되고 있지만, 그 형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겪었다. 근대 이후, 사진 기술이 전파되면서 돌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어 간직하거나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 의례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집안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간소하게 치르는 대신 외식업체나 이벤트 업체를 이용하여 돌잔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의례의 외형이 바뀌고 있다. 돌잡이를 위한 물건도 과거 남성과 여성의 성性 역할에 근거한 것에서 벗어나 의사를 의미하는 청진기, 운동선수를 상징하는 골프공과 야구 글러브, 연예인을 뜻하는 마이크, IT 전문가를 나타내는 휴대전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國朝寶鑑, 瑣尾錄, 養兒錄, 朝鮮王朝實錄, 芝峯類說, 조선상식문답(최남선, 동명사, 1948), 첫돌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의례적 의미(조희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필자 조희진(趙熙眞)

돌복

정의 출생 후 처음 맞는 생일을 축하하고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입히는 복식.

역사 첫돌의례의 역사와 정착 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문헌 자료를 찾기 어렵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1412년(태종 12), 1783년(정조 7), 1828년(순조 28) 기사에서 원자元子를 비롯한 몇몇 왕자의 첫돌의례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나, 왕실의 기록이므로 민간에서 행해졌던 상세한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양아록養兒錄』(1552), 『쇄미록瑣尾錄』(1598), 『지봉유설芝峰類說』(1614),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1946)에 돌잡이 풍습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도 첫돌의례가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첫돌에는 새 옷을 해 입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첫돌이라는 의례적 구성에서 복식의 변화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돌복은 각 집안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색깔 있는 옷을 입히고, 남아와 여아가 구별되게 하였으며, 머리쓰개부터 신까지 전부 갖추었다.

첫돌은 아이가 일어서고 걷는 등 움직임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돌복은 아이가 활동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함과 활동성을 배려한 실용적인 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통 남아는 보라색 또는 회색 풍차바지에 분홍 저고리나 색동저고리, 남색 조끼, 색동마고자에 오방장두루마기五方將와 전복戰服 혹은 사규삼四揆衫을 입었고, 허리에는 돌띠를 둘렀다. 머리에는 복건幅巾이나 호건虎巾을 썼으며, 타래버선과 태사혜太史鞋를 신었다.

여아는 분홍색 풍차바지를 속바지로 입고, 노란색이나 분홍색 속치마를 입은 다음, 그 위에 홍색 치마와 색동저고리를 입었다. 그리고 겉에는 당의唐衣 또는 색동두루마기를 입는다. 머리에는 금박 물린 다홍 댕기를 드리고 굴레나 조바위를 쓰며 타래버선과 다홍색 운혜雲鞋를 신는다. 길상吉祥무늬가 들어간 아기 노리개를 달기도 하였다.

한말韓末 덕혜옹주德惠翁主(1912~1989)의 돌 사진을 보면, 옹주는 화관을 쓰고 당의에 스란치마를 입고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당의에는 수壽·복福 금박을 둘렀으며, 소매 끝에는 거들지를 달았다. 그리고 치마 밑단에는 수복문 등이 찍힌 넓은 스란이 장식되어 있다.

돌복의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고름은 한쪽(겉고름 쪽)을 길게 만들어, 뒤쪽으로 한 번 돌려서 묶을 수 있게 한다. 움직임이 많은 아이가 활동할 때 앞자락이 풀어져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긴 고름에는 아이의 수명이 길어졌으면 하는 만든 이의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다. 고름 외에도 돌띠를 따로 매기도 하는데, 남아는 남색, 여아는 자주색을 사용하나 일반적으로는 홍색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돌띠에 오곡(쌀·수수·좁쌀·콩·팥)을 넣은 작은 주머니를 여러 개 달아주어, 부귀영화를 염원하기도 하였다. 앞에는 수놓은

돌복 | 1973 | 조희진

오방장두루마기 | 국립민속박물관

주머니를 달아 주고, 한쪽에는 만수무강萬壽無疆·수복강녕壽福康寧 같은 길상무늬를 수놓아 늘여 주었다.

색등거리는 색동 소매가 달린 어린아이의 마고자로, 앞섶에는 단추를 달아 여미고 돌띠를 한 바퀴 돌려 맨다. 돌띠는 홍색으로 넓게 만들어 십장생무늬 등을 수놓기도 하고, 아랫단 쪽에는 홍색 주머니를 세 개 혹은 열두 개 단다. 주머니 안에는 80세가 넘은 다복한 노인의 머리카락을 넣어 장수를 기원하였다. 또는, 콩·팥·쌀·황두 등의 곡물을 붉은색 종이에 싸서 넣어 자손의 번성과 무병장수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였다.

또한, 십장생무늬를 수놓은 타래버선의 발뒤축에도 끈을 달아서 아이의 발이 벗겨지지 않게 해주었으며, 아이가 걸을 때에도 밀려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 남아는 남색, 여아는 홍색의 대님을 달아서 매었다.

하의는 남아와 여아 공통으로 풍차바지를 입는다.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데에 편리하도록 뒤가 열리게 만든 바지로, 끈으로 허리를 묶지 않고 조끼허리를 달아서 아이의 어깨에 고정하므로 흘러내리거나 쉽게 벗겨지지 않는 기능적인 특성이 있다.

지역사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돌복으로, 남아는 옥색 저고리에 풍차바지·조끼·마고자·주머니·돌띠를 착용하였다. 여아는 색동저고리, 가래 바지, 담방 치마, 주머니 그리고 돌띠를 입었다.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돌복으로, 남아는 연두색 색동저고리와 보라색 풍차바지, 조끼, 마고자, 섶·무가 홍색인 연두색 길의 색동두루마기 등의 일습을 갖추었다. 저고리 위에는 아들이나 딸을 가리지 않고 대개는 홍색 자수를 하여 치장한 돌띠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복건에 쾌자快子를 입히기도 했다. 여아는 노란색 길의 색동저고리, 다홍치마를 입고, 반드시 돌띠를 착용했다고 한다. 대부분은 돌복으로 일습을 갖추어 입히기보다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지어 입혔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돌복에는 주로 수·복 같은 길상무늬와 기하무늬[幾何紋樣]인 아자문亞字紋, 만자문卍字紋 등이 많이 쓰였다. 길상무늬와 기하무늬는 장수와 길상의 상징이므로, 장수와 부귀길상을 누리기를 바라는 기복사상祈福思想에서 돌복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무늬는 화려하게 수를 놓거나 금박으로 표현하였다.

출생의례의 복식에 사용된 색상은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한 오방색五方色인 청색靑色·적색赤色·황색黃色·백색白色·흑색黑色이다. 돌복의 복식으로 많이 사용된 색동 역시 오방색이 포함된 색상을 사용하였으나, 흑색 대신 짙은 감색이나 자주색을 사용하였다. 아이의 옷에 색동을 사용하는 것은, 음양오행에 따른 다섯 가지 색, 즉 오행을 두루 갖추어 나쁜 기운을 막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이라고 한다.

첫돌에 입는 복식에 사용된 다양한 색상은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관념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아이의 수명과 복에 대한 기원을 담는 매개물로 사용되어, 의례 복식으로서 돌복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더욱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돌에 입는 복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색동저고리의 소매를 들 수 있다. 색동저고리의 소매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색동은 옷을 짓고 남은 여러 가지 색의 옷감 조각을 잘 모아 두었다가 이어 붙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이다. 오방장두루마기를 만들 때에도 부분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였는데, 작은 부분은 자투리 직물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남아돌복의 착장양식과 특성에 관한 연구(이수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첫돌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의례적 의미(조희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출생의례복식에 관한 연구(추은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7(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필자 최은수(崔銀水)

돌잡이

정의 아이의 첫 생일인 돌에 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무엇을 집는지 보아 장래를 짐작해보는 풍속.

내용 돌이 되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상을 차려 돌잡이를 한다. 돌잡이는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부터 있었던 풍속으로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부터 사대부와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산하였다. 중국의 『안씨가훈顔氏家訓』에는 "강남 풍속에 아이가 태어나 한 돌이 되면 새 옷을 짓고 목욕을 시키고 장식을 단다. 남자는 활과 화살과 종이와 붓을, 여자는 칼과 자와 바늘과 실을 쓴다. 또한, 음식물과 진귀한 옷, 장난감을 아이 앞에 차려 놓고 아이의 선택에 따라 장래를 시험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지봉유설芝峯類說』의 저자 이수광李睟光은 이를 인용하여 돌잡이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설명했다. 조선 중기 사대부가의 돌잡이 모습은 이문건李文楗의 『양아록養兒錄』과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瑣尾錄』에 남아 있다. 이문건은 "임자년(1552년) 정월 5일 손자 숙길이 태어난 지 일 년이 되었다. 잡다한 물건을 진열하여 무엇을 잡는지 보는 것은 옛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오희문은 "효립孝立의 생일이어서 장난감을 놓고 먼저 집는 물건을 보았다."라고 썼다. 사대부가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원자元子나 세자의 돌을 기념하여 돌잡이를 했다. 『국조보감國朝寶鑑』의 1791년(정조 15) 6월 신유일(18일)의 기사에는 훗날 순조純祖가 된 원자의 돌을 기념하여 집복헌集福軒에 여러 가지 물건을 차려 놓고 무엇을 집는지 확인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을 쓴 최남선崔南善은 돌잡이를 하는 까닭에 대해, 아이가 태어나 1년쯤 되면 앉고 서서 움직이며 슬기와 염량이 발달하니 이를 기회로 삼아 갖가지 물건을 놓고 생각 돌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뒤, 돌잡이가 중국의 '시아試兒' 또는 '시주試周'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자아이의 돌잡이 상에는 종이와 붓, 책과 먹, 활과 화살 등 학문이나 무예와 관련된 물품을 올려놓고, 여자아이의 상에는 칼과 가위, 실패와 옷감, 자와 바늘 등을 올린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상 위에는 공통으로 실 꾸러미와 국수, 곡식과 돈을 올려놓고 아이가 무엇을 집는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한다. 예컨대, 긴 실과 국수는 무병장수를 의미한다. 또한, 쌀과 곡식 혹은 돈은 부자가 될 것임을 예견한다. 남자아이가 활이나 화살을 집어 들면 용맹한 무인武人이, 책이나 붓·먹 등을 잡으면 학문에 능한 문인文人이 될 것이라고 보며, 여자아이가 칼 또는 자, 실패와 가위 등의 침선針線 도구를 집으면 재주가 뛰어나고 바느질과 길쌈에 능한 현모양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돌잡이 상 | 국립민속박물관

남아

여아

돌복 및 돌잡이 상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돌잡이에 사용하는 물건은 아이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돌잡이 상 위에 올려놓는 각각의 물건에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관한 기대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國朝寶鑑, 朝鮮王朝實錄, 芝峯類說, 조선상식문답(최남선, 동명사, 1948), 첫돌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의례적 의미(조희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0).

필자 조희진(趙熙眞)

떡

정의 곡식 가루를 시루에 안쳐 찌거나 물에 삶아 만들고, 혹은 기름에 지져서 만든 음식의 총칭.

역사 역사적으로 떡의 출현은 찜기인 시루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 시루는 청동기시대에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하여 철기시대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크게 보급되었다. 이는 청동기시대 이후 발전된 떡이 철기시대 초기에 이미 널리 보급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물을 가루로 만들거나 혹은 곡물 자체를 시루에 담아 찌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친다. 중국에서는 가루로 만든 밀을 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을 병餠(밀가루 떡 '병')이라 하였고, 밀가루 이외의 곡물(쌀, 조, 기장, 콩 등)로 만든 떡을 이餌(떡 '이')라 하였다.

이것은 더 세분되어 곡물 자체를 쪄서 절구에 담아 친 것을 자餈(인절미 '자')라 하고,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 시루에 담아 찐 것을 고糕(시루떡 '고', 가루떡 '고')라 하였는데, 고를 또 세분하여 시루에서 작고 둥글게 쪄낸 것을 원飥(떡 '원')이라 하고, 원 속에 소를 넣고 만든 것을 단團이라 하였다. 한대漢代의 『방언方言』에 이미 '이'에는 '고'와 '자'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쌀·조·기장 등으로 시루떡과 인절미를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고'와 '자' 두 종류로 나눈 까닭은 차지지 않은 곡물로 만든 떡과 차진 곡물로 만든 떡을 분류하기 위해서였다. 멥쌀이나 메조와 같이 차지지 않은 곡물은 가루로 만들어서 쪄서 익히면 더욱 쉽게 떡을 만들 수 있다.

멥쌀이나 메조 등을 가루로 만드는 기술은 밀로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기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밀은 배젖 부분이 부서지기 쉽다. 약간의 도정을 거쳐도 배젖 부분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이때 체를 사용하여 밀기울(밀에서 가루를 빼고 남은 찌꺼기)과 밀가루를 분리한다. 제분 과정에 사용하는 도구로는 맷돌, 연자매, 명주로 만든 깁체가 있다. 우선 맷돌이나 연자매로 밀을 간 다음 깁체로 쳐 내리면 고운 밀가루를 얻게 된다. 맷돌, 연자매와 불가분의 관계인 깁체는 중국의 진대秦代와 한대에 발전하였다. 곡류 제분의 첫 번째 단계는 밀을 원료로 밀가루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중국에서는 병餠이라 부른 것이다.

한반도에서 밀의 생산량은 매우 적거나 거의 없었다.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밀가루는 너무 귀해서 '진말眞末'이라 불렸다. 중국 송宋나라의 사신 서긍徐兢이 1123년(고려 인종 원년)에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밀은 중국 화북華北에서 수입하여야만 하는 귀

한 곡식이었다. 중국 화북은 밀이 흔하여, 밀가루로 만든 떡을 병餠이라 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병餠자만을 채택하여 쌀로 제분해서 만든 떡을 '병'이라 부르게 되었다.

고대에는 찰기가 있는 곡물을 찰기가 없는 곡물보다 귀하게 여겼다. 『예기禮記』나 『의례儀禮』는 차진 곡물로 만든 음식이 상등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찰벼, 찰기장, 차조 등은 시루에 담아 찔 경우 점착력과 응고력이 강한 점성의 전분이 된다. 이것을 절구 속에 담아 치면 부드러운 질감의 떡을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이른바 '자餈', 즉 인절미[引粘米]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멥쌀을 써서 '자'를 만들면 더욱 차진 상등품의 떡이 된다. 인절미가 찹쌀 자체를 시루에 담아 쪄내어 친 떡이라면, 흰떡[白餠] 즉 절편은 가루로 만든 멥쌀을 시루에 담아 쪄내어 쳐서 만든 '자'이다.

병餠→고糕: 시루떡
자餈: 인절미
흰떡(가래떡, 절편)

중국에서는 삼국三國(220~280)시대부터 축력畜力을 이용하는 맷돌인 연자매가 등장하였다. 『일본서기日本書紀』는 610년(고구려 영양왕 21)에 고구려에서 승려 담징曇徵이 와서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법륭사法隆寺의 벽화도 그리는 한편, 연애碾磑(연자매와 맷돌)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고구려에서는 일찍이 연자매로 제분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24년(신라 유리왕 원년) 남해왕이 사망한 뒤, 태자 유리가 탈해에게 왕위를 양보하려 하였으나, 떡[餠]을 깨물어 나타나는 잇자국으로 치아의 숫자를 헤아려 유리가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다. 이 떡은 인절미가 아니라 흰떡일 가능성이 있다. 쌀 난알을 물에 담가 연해지면 맷돌 또는 연자매로 갈거나 절구에 담아 찧어서 습식 제분을 하고 이 가루를 시루에 켜켜로 담아 쪄내면 시루떡이 된다. 이를 절구에 담아 치면 흰떡이 된다.

내용 고려시대에 불교가 융성하자 떡은 소선素膳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왕실은 고려왕실의 제례 문화를 속례俗禮로서 받아들였다. 1474년(성종 5)에 완성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제능침기신대제진설도諸陵寢忌辰大祭陳設圖」에 나오는 유병油餠, 절병切餠, 보시병甫是餠, 당고병唐糕餠, 두단자豆團子, 경단敬團, 유사병油砂餠, 상화霜花, 자박병自朴餠을 통하여 고려왕실 떡 문화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유병은 찹쌀가루 반죽을 절병 크기로 빚어 참기름에 지진 떡이다. 절병은 멥쌀가루를 쪄서 원형으로 빚어 만든 절편이다. 보시병은 멥쌀가루로 절편과 같이 만들되 반달 형태로 빚어 만든 떡이다. 당고병은 밀가루 반죽으로 절병과 같은 형태로 만든 떡이다. 두단자는 찹쌀가루를 쪄서 익혀 백두말白豆末과 잣가루로 고물을 입혀 만든 단자이다. 경단은 찹쌀가루를 단자 크기로 빚어 삶아 콩가루와 잣가루로 고물을 입힌 것이다. 유사병은 찹쌀가루로 경단 같이 만들되 참기름에 볶아 익힌 밀가루를 고물로 입힌 떡이다. 상화는 밀가루 반죽에 술을 넣고 발효시킨 다음, 소로 꿀에 버무린 콩가루를 넣고 빚어서 시루에서 쪄내고 잣가루를 고물로 입힌 것이다. 자박병은 찹쌀가루 반죽을 단자 크기로 빚되 꿀과 섞은 콩

추석 차례 떡(경북 경주 월성 손동만 종가)

차례 떡(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떡 | 국립민속박물관

가루 소를 넣고 참기름에 지진 떡이다.

조선시대에 떡은 더욱 체계화되었다. 『진찬의궤進饌儀軌』와 『진연의궤進宴儀軌』를 보면, 찹쌀로 만든 떡과 멥쌀로 만든 떡을 분류하였는데, 전자를 '점증병'(찹쌀을 시루에 담아 쪄서 만든 떡), 후자를 '경증병'(멥쌀가루를 시루에 담아 쪄서 만든 떡)이라 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점증병粘甑餠: 초두炒豆점증병, 석이石耳점증병, 녹두菉豆점증병, 밀蜜점증병, 임자荏子점증병, 신감초辛甘草점증병, 백두白豆점증병, 합병盒餠, 후병厚餠, 석이밀설기石耳蜜雪只, 약반藥飯, 석이단자石耳團子, 청애靑艾단자, 신감초단자, 잡과병雜果餠, 인절미[引粘米].
- 경증병粳甑餠: 백두경증병, 녹두경증병, 신감초경증병, 석이경증병, 증병蒸餠, 석이밀설기, 신감초말설기辛甘草末雪只, 잡과밀설기, 밀설기蜜雪只, 백설기白雪只, 산병散餠, 절병切餠.

이상의 떡은 '고'(시루떡)와 '자'(인절미, 절편)이다. 이밖에 전병煎餠류가 더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찹쌀가루 반죽을 단자 크기로 빚어 참기름에 지져낸 떡인 유병이나 자박병을 전병류煎餠類로 분류하여, 화전花煎·산삼병山蔘餠·조악병助岳餠이라 했다.

조선시대의 떡류는 양반사회와 서민에게 영향을 미쳤다. 반가班家에서 나온 고조리서古調理書에는 왕실의 영향을 받아 향토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다양한 떡류가 등장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문대작屠門大嚼』(1611년): 애고艾糕(쑥버무리), 유엽병楡葉餠(느티잎떡), 두견화전杜鵑花煎(진달래 화전), 이화전梨花煎(배꽃전), 장미전, 두텁떡, 국화전, 시율나병柹栗糯餠(곶감과 밤이 든 찰떡), 증병蒸餠(증편), 월병月餠, 삼병蔘餠, 설병舌餠, 자병煮餠.
- 『음식지미방飮食知味方』(1670년): 증편蒸片, 밤설기, 잡과편雜果片, 석이편, 인절미, 두견화전, 장미화전, 출단화전.
- 『산림경제山林經濟』(1700년 경): 시고柿糕(곶감단자), 율고栗糕(밤시루떡), 방검병防儉餠(잡과병), 석이병, 경고瓊糕(두텁떡).

동곳떡 | 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충재 권벌 종가에서 불천위제사 때 진설.

- 『규합총서閨閤叢書』(1809년): 백설고, 권전병捲煎餠, 유자단자, 원소병元宵餠, 승검단자, 석탄병惜呑餠, 도행병桃杏餠, 햇실과떡, 혼돈병渾沌餠, 잡과편, 증편, 석이병, 두텁떡, 송기떡, 무떡, 백설기, 대추조악, 꽃전, 송편, 인절미.
- 『시의전서是議全書』(1800년대 말): 팥편, 녹두팔편, 팥찰편, 꿀찰편, 깨찰편, 꿀편, 승검초편, 백편, 잡과편, 두텁떡, 무떡, 적복령편, 상실편, 막우설기, 호박떡, 증편, 석이단자, 승검초단자, 건시단자, 밤단자, 송편, 쑥송편, 대추인절미, 깨인절미, 쑥인절미, 쑥절편, 송기절편, 개피떡, 어름소편, 꼽장떡, 골무편, 약식, 흰주악, 대추주악, 밤주악, 생산승, 화전.

특징 및 의의 떡류는 돌잔치, 혼례, 환갑연, 제례 같은 행사가 있을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찬품饌品이었으므로, 왕실이나 반가, 서민들의 잔칫상에 반드시 올랐다. 상에 올릴 때에는 떡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하여 꿀을 곁들여 냈다. 이 곁들이는 꿀을 민가에서는 '편청片淸', 왕실에서는 '추청追淸'이라 했다. 편片은 편떡[片餠]의 편을, 청淸은 맑은 꿀을 나타내는 청밀淸蜜의 청을 지칭하는 것으로 '편떡에 곁들이는 청밀'을 줄여서 '편청'이라 한 것이다. 추追는 쫓을 '추', 청은 청밀의 청이니 추청이란 떡에 따라다니는(곁들이는) 꿀이란 뜻이다.

"고사떡을 먹으면 재수가 있다", "꿈에 떡 맛보듯", "굿도 볼 겸 떡도 먹을 겸 간다", "귀신 떡 먹듯 한다", "귀신은 떡으로 사귀고 사람은 정으로 사귄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돌떡을 해주지 않으면 자주 넘어진다", "들어오는 떡을 찍어 먹어도 조청은 고아 두어야 한다" 등의 속담이 생길 정도로 지금까지도 떡은 귀한 찬품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國朝五禮儀序例, 閨閤叢書, 屠門大嚼, 方言, 山林經濟, 三國史記, 是議全書, 飮食知味方, 日本書紀, 進宴儀軌, 進饌儀軌, 조선시대의 음식문화(김상보, 가람기획, 2005), 조선왕조 궁중의궤 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김상보, 광문각, 1997).

필자 김상보(金尙寶)

막편지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혼례에서 신랑 측이 신부 측으로 택일(혼인 일자)을 정식으로 통보하는 서식.

내용 한반도에서는 신랑감의 사주를 신부 측으로 보내지만, 제주에서는 정반대로 진행되어 신붓감의 사주가 신랑 측으로 전해진다. 신랑 측에서는 받아 온 사주를 가지고 택일 보는 사람에게 의뢰해서 궁합을 본다. 궁합은 사주[年月日時]를 오행五行에 맞추어 보아 혼인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것으로 보통은 '궁합 본다', '사주 본다' 또는 '사주를 고남한다'고 한다

택일기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궁합이나 날 보는 사람을 택일이라고 하며, 정시(지관地官)에게서도 궁합과 택일을 보기도 한다. 궁합이 맞고 좋으면 혼인 날짜를 정하는데 이를 '날 고른다', '날 찾는다', '택일' 또는 '연길양택'이라고 한다. 택일은 혼인 일자는 물론이고, 출행과 도착 시간 등 절차상 지켜야 할 시간까지 정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한다. 택일이 되면 신랑 측에서 신부 집으로 사주가 맞아 혼인이 성사되어 언제 혼인할 것인지를 알리는 '막편지'를 가져간다. 이 '막편지'를 서귀포 서호리에서는 '연길', 애월읍에서는 '큰 편지' 또는 '큰 글월', 구좌읍 송당에서는 '문혼장', 성산읍 오조리에서는 '택일기'라고 한다. 그 서식은 다음과 같다.

時維仲冬季節/ 尊體百福 許以閨秀羅相考卽/ 乾坤相合 成婚可也云故 慈以涓吉 某年某月某日/ 行禮之儀 謹呈/ 尊照下覽
年 月 日/ 金海后人 某 謹拜

〈안덕면 덕수리, 1934〉

막편지 전달은 보통 중매인과 신랑 부친 또는 신랑이 같이 가져가기도 하고, 신랑 집 근친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택일 날짜만을 통보할 때는 신랑 부친 혼자 또는 중매인과 동행한다. 막편지 전달이 일종의 약혼식으로 간주될 때에는 양가 모두에서 참석 범위가 넓어진다. 신랑 부친만 사돈집으로 가게 되면, 선물 준비 없이 그냥 간다. 약혼의례에 해당하는 성격을 띤다면 돼지다리 하나, 술 한 되, 쌀 한 말 또는 신부에게 줄 옷감 한 벌 등을 마련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루떡을 준비해 가기도 한다. 양가의 근친이 참석하여 신랑 측에서 마련해 간 음식물로 신부 집에서 향연을 베푼다.

막편지가 전달되면 이때부터 양가는 정식 사돈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식하여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사돈으로 호칭한다. 양가 친척이나 동네 이웃들도 두 집안이 사돈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특징 및 의의 한반도에서는 신랑 사주가 신부 측으로 전해지지만, 제주에서는 정반대로 진행되어 신부 사주를 신랑 측에서 받아가서 택일한다. 구두로 하는 비공식적 청혼은 신랑 측에서 먼저 하지만, 허혼을 하여 사주를 전하는 정식청혼은 신부 측에서 하고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가정의 혼인연구(김혜숙,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제주도 가족과 권당(김혜숙,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제주도의 친족조직(최재석, 일지사, 1979).

필자 김혜숙(金惠淑)

만장
輓章

정의 고인의 공덕을 칭송하거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든 것.

역사 영구를 앞에서 끌고 인도한다고 해서 '만장輓章'이다. 만장은 돌아간 이를 생각해 지은 시나 글로 '만사輓詞'라 했다. 만사는 시처럼 음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시輓詩', 때로는 노래 형식으로 불러서 '만가輓歌'라고도 칭한다. 만장은 춘추·전국시대 만가에서 비롯되었다. 즉 친척이나 친구가 죽으면 상여의 뒤를 따라가며 애도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옆에 따르던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이 만사의 시초가 되었다 한다. 그 후 만장은 당대唐代에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명현들의 문집에서 가끔 발견되며, 조선시대에는 시詩 속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만사가 시의 형식을 띠었기 때문이다.

내용 초상이 나면 만장을 써서 보내는 것을 가장 큰 부의賻儀로 여겼고, 받는 쪽도 고인의 덕망과 학식에 대해 쓴 만사를 받으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장사 때 만장의 수효로 고인의 학식과 인덕을 논하기도 하였다.

왕이나 왕비의 국장에 사용되는 만장의 숫자는 48개로 두꺼운 종이에 쓴다. 위에는 연잎을 그리고 아래에는 수파련水波蓮을 그린다. 위아래에는 강목을 대어서 구겨지지 않도록 하고, 오죽烏竹을 사용한다. 자루는 대나무를 쓴다. 강목 끝과 자루에는 축을 설치하고 흰 칠을 한다. 장대머리에는 가죽끈[纓子]을 드리우고, 아래 축에는 끈을 맨다. 국장에 사용하는 만장의 숫자는 모두 96축으로 발인發靷 때 대여 앞쪽 양옆에서 들고 간다.

만장의 길이와 너비는 규격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길이는 여덟 자(약 240㎝), 너비 한 폭(약 60㎝)이며, 빛깔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흰 종이나 비단에 쓴다. 만장의 위와 아래에는 작은 축대를 쓰고, 대나무로 깃대를 만든다.

만사의 규격은 일정하지 않다. 한시漢詩의 경우 오언절구와 오언율시, 칠언절구와 칠언율시로 쓰거나 고사체로 장문을 짓기도 한다. 아래 인용한 글은 선조 때 정승을 지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억울한 반역의 누명을 쓰고 죽은 친구를 위해 유가족 몰래 관 속에 넣은 만시이다.

입을 두고도 감히 말을 못하고, 有口不敢言
눈물이 있어도 감히 곡을 못하네. 有淚不敢哭
베개를 만지되 남이 볼까 무섭고, 撫枕畏人窺
소리를 삼키며 몰래 눈물만 삼키네. 呑聲潛飮泣
그 누가 날 선 칼날을 가지고서 誰將快剪刀
굽이굽이 맺힌 간장 잘라내 줄고. 痛割吾心曲

특징 및 의의 만장의 '만輓'자는 수레를 앞에서 끌거나 잡아당긴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상여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나 말로 끌고 갔으므로 '만輓(끌다)'자를 써서 만장이라 하였다. 즉, 시신을 실은 상여[靈柩]가 장지로 떠날 때 만장을 앞세워 이를 끌고 인도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만장에는 망인이 살았을 때 공덕을 기려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장례를 마치면 거두어 상청喪廳에 보관하며, 삼년상을 마치면 태워버리는데, 미리 원문을 채록하여 문집을 발간할 때 수록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 조선초기상장의례연구(정종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필자 정종수(鄭鍾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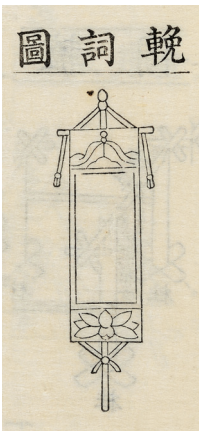

만사도 | 사례편람 국립민속박물관

만장행렬 | 충남 태안 | 1961 | 국립민속박물관

망주석
望柱石

정의 능묘 앞에 세우던 석주石柱 형태의 석물.

역사 망주석은 고대 중국인들이 해의 그림자를 관측하던 규표圭表와 건축 시공의 위치를 표시하던 나무인 표목表木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한다. '항표恒表' 또는 '방목謗木'이라고도 한다. 당대唐代에 궁전·성벽·교량·능묘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석조 건축물로 자리 잡았다. 전체 조형의 기본 구조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宇宙觀에 따라 아래는 네모나고 위는 둥근 형태이다. 중국인들이 망주석을 능묘의 맨 앞에 세우는 까닭은 장수長壽를 염원하고 군주의 덕정德政을 희망하는 전통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망주석은 통일신라시대의 왕릉에 처음 나타나며 고려시대 왕릉에도 세워졌다. 조선시대에 왕릉뿐만 아니라 사대부 묘에도 망주석을 설치하면서 거의 모든 묘에 세우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조선 초기에는 '전죽석錢竹石'이라 불렀으나, 세종대에 망주석으로 용어를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 일반인들은 '촛대석'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망주석은 이름처럼 멀리서도 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묘역의 좌우에 세우는 석주형의 표지석이다. 망주석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지키며 무덤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 풍수의 지기地氣를 흩어지지 않게 하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설 등이다.

사대부 묘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세울 수 있었고 특별한 규제도 없었다. 그래서 묘표墓表·상석床石과 함께 사대부 묘에 반드시 설치하는 석물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망주석의 수량이 매우 드물었으나 15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그러나 1698년(숙종 24) 편찬된 『수교집록受教輯錄』에 의하면, 서인庶人 묘의 망주석 높이는 2척을 넘길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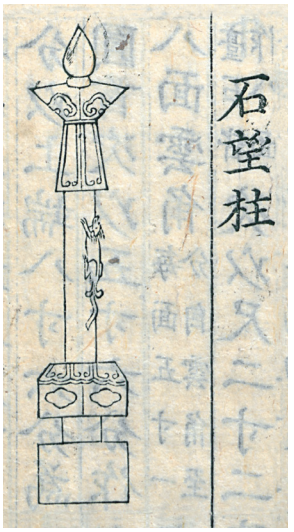

석망주 | 국조상례보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취몽헌 오태주 묘의 망주석
경기 안산 | 2007 | 이민식

망주석은 사각이나 팔각형의 대석臺石 위에 팔각형의 주신柱身을 꽂고 상부에 염우廉隅와 운각雲角을 조각한 후 원수圓首를 올리는 기본 구조로 세워졌으며, 시기별로 규모와 장식 문양이 다양하게 변화·발전하였다. 운문雲紋과 당초문唐草紋 등으로 운각과 염우를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주신도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16세기 후반까지 주신 한쪽 면의 볼록한 부분에 원공圓孔이 뚫린 망주석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원공은 둥근 철제 고리를 달던 부분이다. 성묘하며 햇빛을 가리는 차일을 칠 때 망주석을 지주로 삼고 끈을 둘러 철제 고리에 매듭을 지었던 것이다. 후대에는 이런 기능이 점차로 퇴색하여 끈을 묶었던 모습만 문양으로 새기거나 둥근 고리만 양각으로 표현하였다.

16세기 후반부터는 주신에 다람쥐, 청솔모, 호랑이 등의 동물 문양을 장식하였다. 특히 호랑이는 『춘관통고春官通考』(1788)를 비롯한 각종 의궤에서 작은 호랑이라는 의미의 '세호細虎'라고 표기하였다. 세호는 사실적으로 조각하기도 했지만, 더욱 장식화하면서 호랑이 모습을 벗어난 서수瑞獸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좌우 망주석 중에서 한쪽에 위로 올라가는 세호를 조각하면, 다른 한쪽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조각하여 율동감을 주었다. 17세기 후반에는 일체의 문양을 배제하고 기본적인 구조의 외형만 갖춘 망주석이 등장하면서 주류를 이루었다. 망주석의 장식성보

다는 기능성을 더 선호하던 시기의 문화 양상을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1604~1651)과 충정공忠貞公 오두인吳斗寅(1624~1689) 묘의 망주석처럼 주신 팔면에 문양 대신 사제문賜祭文을 새겨 왕이 베푼 성은聖恩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한 특이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드물어 주목된다.

특징 및 의의 망주석은 묘역에 설치하던 기본적인 석물의 하나로 묘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참고문헌 경기 묘제 석조 미술-상·하(경기도박물관, 2007·2008), 여주의 능묘와 석물(여주군향토사료관, 2005), 용인의 분묘 문화(용인문화원, 2001), 중국 당대 황제릉 연구(유향양·추교순, 서경문화사, 2012), 한국문화와 역사의식(유봉학, 신구문화사, 2005).

필자 이민식(李敏植)

맞선

정의 혼인을 전제로 남녀가 직접 만나서 가정환경·가치관·용모·태도 등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

역사 맞선은 신식혼례에서 나온 절차로 전통혼례의 의혼과 같은 절차이다. '의혼議婚'이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신랑 집과 신부 집이 서로 혼사婚事를 의논하는 절차이다. 남녀가 혼인할 연령이 되면 중매인을 통해 혼담이 오가게 되는데, 『주례周禮』에 의하면 이때 혼인을 결정하는 것은 대개 신랑·신부의 의견보다는 양가 집안 부모들의 의견이었다. 주자학의 도입 이후 유교적 예의식에 의해 조선시대는 부계사회로 변모하여 가부장적 가족질서체계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택 또한 부모와 중매인을 중심으로 한 중매혼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중매인은 나이가 지긋한, 양가의 집안을 잘 알거나 한쪽 집안을 잘 아는 사람으로 보통 중신애비, 중신애미라 불렸으며, 오늘날은 여성 전문직업의 하나로 결혼상담사 혹은 커플매니저로 불리고 있다. 1950년 광복 이후 직접 수용되기 시작한 서구의 문물은 한국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도 변하면서 자유연애 등이 생기게 되어, 맞선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맞선은 전통적으로 혼인을 전제로 만나는 자리이다. 맞선의 주선은 중매혼일 경우 일반적으로 집안 어른이나 지인이 맡았고, 2000년대를 지나서는 새롭게 등장한 직업인 결혼정보회사의 커플매니저가 하기도 한다. 1980년대까지 맞선자리는 집안 어른들이 직접 주선하고 선 보는 자리에 부모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1990년대부터 선 자리는 당사자들만 만나는 것으로 점점 바뀌었다. 이들은 보통 호텔의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맞선을 보는데, 몇몇 호텔의 커피숍은 혼인성사가 잘 되는 맞선 장소로 유명해져서 주말이 되면 맞선 남녀들로 붐비기도 한다.

맞선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기회이므로 당사자들은 묻고 싶은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선 자리에 나가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직업, 경제력, 가치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맞선 후 적어도 일주일 내에 교제의 가부를 결정하며, 그 후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혼인이 성사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한다. 맞선을 통해 세 번 이상 만났다면 반드시 혼인해야 한다는 의식도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은 세 번 미팅 이후에는 양가 상견례 일정을 잡기도 하여 혼인이 상업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특징 및 의의 맞선은 신식혼례에서 혼인의 첫 번째 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미팅이나 소개팅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맞선은 양가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으로 선을 보는 것이므로 양가의 신분과 가정환경, 사회적 능력과 집안의 기대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혼인의 원만한 성립을 추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실천예절개론(김득중, 중화서원, 1997), 한국의 혼인문화(김인옥, 구상, 2011).

필자 이향숙(李香淑)

매장
埋葬

정의 주검 또는 유골을 땅에 묻는 것.

역사 우리나라에서 주검을 땅에 묻는 것은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나타났다. 충청북도 청주 두루봉 흥수굴 유적에서 어린아이를 매장한 흔적이 발굴된 예가 있다. 신석기시대에는 강원도 고성 문암리처럼 구덩이를 얕게 파고 주검을 안치한 후 흙 또는 잔돌로 덮거나, 경상남도 통영 연대도나 부산 범방처럼 조개더미를 덮었다. 부산광역시 동삼동과 진주 상촌리에서는 옹관甕棺을 사용하였고, 춘천 교동에서는 주거지였던 동굴을 이용하여 무덤을 만들었다. 또한, 울진 후포리에서는 40인 이상의 유골만을 모은 세골장洗骨葬이 확인되었다. 여수 안도에서는 토광 하나에 두 사람을 묻어 합장하였다. 신석기시대 여러 무덤에는 토기나 석기, 장신구 등의 부장품을 함께 묻었다.

청동기시대에는 한반도 전역에 커다란 덮개돌을 이용하여 만든 고인돌이 등장하였다. 고인돌은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의 위치에 따라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된다. 북방식은 주로 북한지역에, 남방식은 주로 남한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그렇지만 토광과 옹관에 주검을 안치하는 것도 계속되었고, 깬돌을 쌓아 무덤의 벽을 만든 석곽石槨, 단독 또는 고인돌의 하부구조로 사용되는 석관石棺도 출현하였다. 주검과 함께 토기와 석기, 청동기 등의 유물이 부장되었다.

초기 철기시대에는 고인돌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지만, 석곽묘는 여전히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표적인 묘제는 구덩이를 판 후, 널빤지 또는 각재를 조립하거나 통나무 속을 파내 만든 목관에 주검을 안치하는 방식이었다. 이외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항아리를 이어 붙인 옹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목곽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매장주체부 주위에 도랑을 두른 주구周溝를 만들기도 하였다. 돌을 쌓은 후 석곽을 만들어 주검을 안치하는 적석분구묘積石墳丘墓 또는 적석총積石塚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벽화를 석실 안에 그린 봉토분封土墳과 적석총에 주검을 안치하였고, 백제는 기단식 적석총과 토광·목관·석곽·석실·옹관 등을 이용하여 주검을 안치하였다. 신라는 목곽 위에 돌로 덮은 거대한 무덤인 적석목곽분과 석실봉토분에 주검을 안치하였고, 가야는 목곽과 석곽, 석실봉토분 등에 주검을 안치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석실분과 뼈항아리에 유골을 담아 묻는 화장이 유행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대개 토광과 목관, 석곽, 석실을 이용하여 주검을 안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광과 목관, 석실 등을 이용하였는데, 특히 예종 이후에는 중국에서 도입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예법에 따라 석회를 이용하여 만든 회곽灰槨 안에 목관을 안치하는 것이 지배적인 양상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토광에 주검을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점차 화장 후 봉안 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내용 매장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검을 묻는 가장 보편적인 사체 처리방법으로 토장土葬이라고도 한다. 매장은 주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자, 죽은 이에 대한 추모 내지 존숭의식이 깃든 의례이기도 하다. 주검을 처리하는 방법은 시대와 지역, 신앙에 따라 달랐다.

주검의 처리방법은 주검을 흙이나 잔돌 속에 묻는 토장, 나무 등에 올려놓아 육탈肉脫을 시켜 뼈만을 남기는 풍장風葬, 물속에 넣는 수장, 불에 태우는 화장 등으로 나뉜다. 주검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방식의 횟수에 따라 일차장一次葬, 이차장二次葬 또는 그 이상의 복차장複次葬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차장은 주검을 바로 땅에 묻는 것이다. 이차장 또는 복차장은 풍장 후에 유골만을 모아 다시 땅에 묻는 것, 주검을 화장한 뒤 남은 재를 모아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에 뿌리는 수장, 산이나 들판에 뿌리는 산골散骨, 유골을 수습하여 옹관이나 뼈항아리 등에 넣은 후 땅에 묻는 것 등이 모두 해당한다. 토장과 수장은 보통 일차장으로 끝나나, 풍장과 화장은 대개 유골을 수습하여 다시 장례를 치르는 이차장 또는 복차장의 형태를 띤다.

토장은 대부분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주검을 안치하는 방식으로, 어느 시대든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주검을 넣을 구덩이 내부로 석곽·목곽·석실·전실前室 등을 만들고, 관으로 목관·석관·옹관·와관

瓦棺 등을 사용하지만, 구덩이에 주검만을 묻기도 한다. 주검과 함께 평소 사용하던 물건이나 착용하던 것들 및 장례의식에 사용한 물건들을 함께 묻기도 한다.

주검을 묻는 자세에 따라 묻는 방식을 구분하기도 한다. 주검의 몸을 구부려서 묻는 것을 굴신장屈身葬, 펴서 묻는 것을 신전장伸展葬 또는 직지장直肢葬, 앉혀서 묻는 것을 좌장座葬, 세워서 묻는 것을 입장立葬, 엎어서 묻는 것을 부신장俯身葬이라고 한다. 또한 주검의 얼굴 방향에 따라서 위를 바라보게 하는 앙와장仰臥葬, 옆을 보게 하는 측와장側臥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주검의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곧게 펴서 묻는 앙와신전장仰臥伸展葬이다.

무덤의 구덩이에 안치하는 주검의 숫자에 따라, 하나를 넣으면 단장單葬, 두 개 이상을 넣으면 합장合葬 또는 복장複葬이라고 한다. 또한, 두 개의 관을 차례로 넣는 중장重葬, 가족이나 친족의 주검을 차례로 넣는 집장集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장을 제외하고는 보통 추가장追加葬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묻었다가 다른 곳으로 주검을 옮겨 묻는 것을 재장再葬, 주검 또는 유골의 일부만 묻는 것을 부분장部分葬, 무덤만 만들어 놓고 주검을 넣지 않는 것을 허장虛葬, 무덤의 주인이 아닌데도 노예나 처첩 등을 함께 묻는 것을 순장殉葬, 주검을 죽은 자가 살던 곳에 만드는 것을 가장家葬 또는 옥내장屋內葬이라고 한다.

무덤의 조성은 주검을 안치하는 곳의 위치에 따라, 지표면 아래에 구덩이를 파서 묻는 지하식과 지표면 위에 돌이나 흙 등을 쌓은 다음 그 위에 묘실이나 묘곽 등을 만들어 주검을 안치하는 지상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주검을 묻은 뒤에 주검 위에 흙이나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어 무덤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봉분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매장지는 평지와 산기슭 또는 산꼭대기같이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가 없었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정하였다. 다만 농경의 발달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를 피해 매장을 하는 풍습이 유행했으므로, 주로 산이나 구릉 등에 무덤을 만들었다. 그 때문에 주검이 묻힌 곳을 '산소山所', 무덤을 만드는 일을 '산역山役'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는 산업화에 따른 농업의 퇴조로, 후손들이 무덤을 관리하기 쉬운 곳에 주검을 매장하는 풍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물거나 접근이 어려운 산보다는 마을에서 가깝고 관리하기 편리한 밭에 산소를 만드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무덤을 가족 또는 마을, 지역 단위로 일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공동묘지라고 한다. 청동기시대의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군-群과 경주의 신라고분군 등이 오래된 예이다. 오늘날에도 문중묘지를 비롯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나 공공기관, 사설기관 및 단체 등에서 공동묘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주검을 땅에 묻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정한 의례를 수반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매장은 주검의 처리방식이자, 인간의 사유와 조상숭배 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왔다.

참고문헌 개정신판 한국 고고학 강의(한국고고학회, 사회평론아카데미, 2010), 동아시아의 고분문화(중앙문화재연구원, 서경문화사, 2011),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5), 장례의 역사(박태호, 서해문집, 2007).

필자 김영관(金榮官)

메

정의 유교식 제사에서 신위 앞에 올리는 밥.

역사 『예기禮記』「내칙內則」에는 식사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가정의 식사에서) 주식은 기장, 메기장, 쌀, 차조 …… 로 만든다. 국은 쇠고기로 만든 국, 양고기로 만든 국, 돼지고기로 만든 국 …… 이 있다. …… 쇠고기에는 쌀밥을 먹고, 양고기에는 기장밥을 먹으며, 돼지고기에는 메기장밥을, 개고기에는 차조밥을, 기러기고기에는 보리(밀)밥을, 생선에는 줄열매밥을 먹는다
> 飯: 黍, 稷, 稻, 粱 …… . 膳: 膷, 臐, 膮 …… .
> …… 牛宜稌, 羊宜黍, 豕宜稷, 犬宜粱, 雁宜麥, 魚宜菰.

『예기』가 기록되던 시절에는 기장밥, 메기장밥, 쌀밥, 차조밥을 주식으로 먹었는데, 이들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반찬도 양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개고기 등으로 각기 달라졌다. 유교제사 상차림은 고례古禮를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조선왕조도 『예기』의 원칙을 모범으로 삼아 제상 차림을 규범화하였다.

내용 조선왕조는 길제吉祭(담제禫祭를 지낸 다음에 지내는 제사)와 부제祔祭(삼년상을 마친 뒤에 신주를 다른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에서 신위 앞에 대략 두 종류로 나누어 밥을 올렸다. 하나는 기장밥[黍]과 메기장밥[稷]을 궤簋에 담아 올리고 쌀밥[稻]과 차조밥[粱]을 보簠에 담아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기飯器에 쌀밥을 담아 올리는 것이다.

종묘宗廟 대제大祭 등에서 서, 직, 도, 량과 양고기, 쇠고기, 돼지고기로 만든 갱羹과 수육[熟肉]을 함께 올리고, 제릉침제諸陵寢祭 등에서는 쌀밥과 함께 쇠고기로 만든 갱과 찬을 주로 올렸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예기』「내칙」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장밥, 메기장밥, 쌀밥, 차조밥을 올린 조선왕조의 제사상 차림법은 일반 민중의 제사에서도 적용되었다. 일반 민중 역시 사당제에서는 서, 직, 도, 량을 올렸고, 묘제에서는 쌀밥을 올렸다. 밥[飯]의 종류가 기장밥이든 쌀밥이든 총체적으로 이들을 '메'라고 칭하였다.

메 | 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충재 권벌 종가에서는 햇콩과 햇밤을 메 위에 올림.

특징 및 의의 민가에서는 대체로 메하면 쌀밥으로 간주하였다. "제사 덕분에 이밥 먹는다", "이밥이면 다 제삿밥인 줄 아나" 등과 같은 속담에서도 제사 때 올리는 메가 주로 쌀밥이었던 사실을 잘 알게 해준다.

참고문헌 禮記, 太常志,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6).

필자 김상보(金尙寶)

멱목
幎目

정의 염습殮襲 때에 시신의 얼굴을 싸는 덮개.

내용 멱목은 시신의 눈과 얼굴 피부 전체를 감싸는 얼굴 덮개이다. 형태는 정방형正方形(사방의 길이와 너비가 한 자 두 치)이며, 4개의 가늘고 긴 끈으로 구성된다. 솜을 얇게 펴서 충전한 겹袷(겉감과 안감으로 구성)으로 제작되며, 네 모서리에는 얼굴을 감싼 멱목을 묶는 끈이 한 개씩 네 개가 달린다. 소재는 비단을 주로 사용한다. 색상은 유색有色이며 겉감과 안감, 끈의 색상이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다.

문헌에는 멱목의 소재와 색상, 치수, 착용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권7에는 "멱목은 한 개이다. 겉감은 청색의 라羅(무늬가 있고 성글고 얇은 비단)를 쓰고, 안감은 분홍색의 초綃(생사로 제직된 성글고 얇은 비단)를 사용한다. 치수는 사방 한 자 두 치이다. 사각의 각 모서리에는 보라색의 초로 만든 끈을 달며, 착용 시 머리 뒤에서 묶게 된다幎目一, 用青羅, 裏縑綃, 方尺二寸, 四角安紫綃帶, 於後結之."라고 했다. 『가례家禮』 권4 「상례喪禮 진습의陳襲衣」에서는 "멱목은 백帛(모든 비단을 일컫는 총칭)을 사용하며, 길이는 사방이 한 자 두 치이고 얼굴을 덮는 것이다幎目帛, 方尺二寸, 所以覆面者也."라고 했다. 『상례비요喪禮備要』 「습구襲具」에서는 "멱목은 한 개이다. 검은색 백帛(모든 견직물을 일컫는 총칭) 혹은 주紬(조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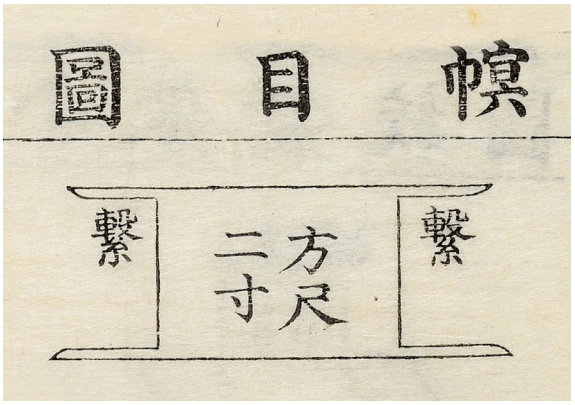

멱목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멱목 | 18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하게 제직된 비단)로 만든다. 사방이 한 자 두 치이다. 안감은 분홍색이고 안은 솜으로 채운다. 네 모서리에는 얼굴 덮개를 묶는 끈을 단다幎目一, 用緇帛或紬, 方尺二寸, 以纊爲裏, 充之以絮, 四角有繫, 所以覆面者."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매장 환경의 우수성으로 조선시대 무덤에서는 시신뿐만 아니라 수의나 염습제구 같은 복식도 아주 좋은 보존 상태로 출토되었다. 남오성南五星(1643~1712), 변수邊脩(1447~1524), 이진숭, 수원 이의동 안동 김씨 묘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 중 남오성 묘에서 출토된 멱목의 원단 및 형태적 특징을 보면 겉감은 만초연화문단蔓草蓮花紋緞, 안감은 공단貢緞(광택이 많고 무늬가 없는 두꺼운 비단)으로 악수와 동일한 직물이며, 솜이 들어간 겹으로 제작했다. 치수는 사방이 길이 23㎝, 너비 24㎝이며, 네 모서리에는 길이 49~50㎝, 너비 1㎝의 가늘고 긴 끈이 한 개씩 달렸다. 이들 끈은 안감의 네 모서리 근방에서 박음질로 단단히 고정되었다.

특징 및 의의 염습은 시신에 수의壽衣를 갈아입히는 절차인데, 착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습襲의 마무리로서 복건幅巾을 씌우고, 다음으로 충이充耳(양귀 구멍을 막은 것으로, 새 솜으로 만들며 대추씨 크기임)로 귀를 막으며 멱목으로 얼굴을 덮는다. 그다음 악수幄手를 싸고 신은 신코에 끈을 달아 발 위에다 매며, 그 끈으로 양발이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묶는다. 멱목은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습용구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儀, 喪禮備要, 국역 가례향의, 남오성 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04), 수원 이의동 안동김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수원박물관, 2011), 원주변씨 출토유물 기증전(국립민속박물관, 2000), 이진숭 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10), 중국의 역대직물(심연옥, 한림원, 1998).

필자 조현숙(趙玄淑)

면기
麵器

정의 삶은 국수를 담는 제기.

역사 국수를 가리키는 '면麵'이라는 글자는 통일신라시대까지 보이지 않는다. '면'자는 고려시대에 처음 언급되는데,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는 "식미食味에는 십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면식麵食을 으뜸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예법지」와 「형법지」에는 "제례에 면을 쓰고 사원에서 면을 만들어 판다."라고 하여, 제사에 면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진설도에 면이 쓰여 있으며, 국수를 삶아 건더기만 건져서 밥그릇(주발 형태)에 담았다는 내용이 있다.

내용 주발 형태의 반기에 국수를 삶아 건져 담고 뚜껑을 덮는다. 보통 유기鍮器 주발은 지름11㎝, 높이 8㎝의 뚜껑이 갖추어져 있다. 지름 12㎝, 높이 10㎝ 크기의 굽다리가 달린 스테인리스 주발도 면기로 이용한다.

'면서병동麵西餠東'이라고 하여 국수[麵食]는 서쪽(왼쪽)에 진설하고, 떡[米食]은 동쪽(오른쪽)에 차린다. 면식은 소면을 삶아 건더기만 건져서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달걀노른자 부친 것, 또는 대추를 썰어 고명으로 쓰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 서후면 금계마을의 학봉 김성

일金誠一 종가의 불천위不遷位 제사음식 중 면기에 담는 면은 밀가루와 갈아 놓은 생콩가루를 2:1의 비율로 섞어 반죽한 후, 밀대로 밀어 발이 고운 칼국수를 만든다. 펄펄 끓는 물에 국수를 삶아 건진 다음, 면기에 담고 볶은 흑임자 한 큰술을 고명으로 위에 뿌려 얹는다. 한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반남 박씨 서계 박세당朴世堂 종가에서는 면을 삶아 사리를 지어 두었다가, 탕국물에 잠깐 넣었다 건져 유기 주발에 담고 쇠고기 볶은 것, 달걀 황백지단채를 고명으로 올린 후 국물을 붓지 않고 뚜껑을 덮는다. 면은 신위 수와 상관없이 한 상에 한 그릇만 올린다. 그리고 하동 정씨 일두 정여창鄭汝昌 종가에서는 면을 삶아 건져 타래를 짓고, 면기에 담아 달걀황백지단채와 실고추를 3㎝ 정도로 잘라 얹는다.

특징 및 의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9품 이하는 면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떡을 쓰지 않을 때는 면도 안 쓴다. 즉, 면과 떡은 함께 올린다. 면을 삶아 면기에 담는 것은 추모의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종가의 제례와 음식1-의성김씨 학봉 김성일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3), 종가의 제례와 음식2-반남박씨 서계 박세당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3), 종가의 제례와 음식9-하동정씨 일두 정여창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월인, 2006), 통과의례음식(이춘자 외, 대원사, 1997), 한국음식대관5(윤숙경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필자 윤덕인(尹德仁)

명기
明器

정의 죽은 사람의 내세를 위해 사람·동물·그릇·시설 등을 모형으로 만들어 무덤에 넣어주는 부장품副葬品(껴묻거리)으로서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계층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의례용품.

역사 명기明器는 순장殉葬을 대체하여 고안된 부장품이다. 순장은 전 세계에 나타나는 장례풍속으로, 죽음 이후에도 현세의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것으로 해석된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상류층들은 죽은 후에도 봉양 받기를 바랐다. 중국에서 순장은 은殷·주周·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데, 부장품으로 명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대漢代부터이다. 공자孔子는 순장이 사람답지 못하다고 여겼으며,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 순장을 대신하자고 했다. 또한,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의 그릇을 넣는다는 것은 순장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죽은 사람을 신명神明으로 대하는 것이 명기라고 하였다.

순장풍속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있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고구려 동천왕東川王이 사망할 당시 그의 신하들 가운데 스스로 묻히려는 자가 많아 순장을 금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6세기 초 신라는 순장금지령을 내려 200여 년간 계속된 풍속이 사라졌다. 이후 사람을 형상화한 부장품이 순장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로 내려오면 부장품으로 명기를 사용하는 것이 성리학에 기초한 가례의 한 부분이자 국가적 제도로서 탄력을 받았다.

조선 세종世宗 때부터 명기가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에는 명기의 종류와 수량, 명기에 담는 오곡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쓰여 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나무를 깎아 평상시 하인과 시녀가 각각 받들던 물건을 형상하되 작게 만들고, 송나라의 법에 따라 5품과 6품은 30가지, 7품과 8품은 20가지, 벼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15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苞 3개, 소筲 5개, 앵甖 3개를 만들도록 했다. 조선 성종成宗 때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흉례凶禮」의 명기明器 조에는 대부大夫와 사서인士庶人이 상을 당했을 때 4품 이상은 30가지, 5품 이하는 20가지, 서인은 15가지 이하를 사용하되, 종다래끼 하나, 대나무 그릇 다섯, 항아리 셋을 넣어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종다래끼는 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견전遣奠(상여를 떠나보내는 제사)에 쓰는 포脯를 담기 위한 것이고, 대나무 그릇 다섯은 오곡을 담기 위한 것이며, 항아리 셋은 옹기로 만든 것으로, 술·소금·젓을 담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명기에 대한 내용은 조선 중기 상례지침서인 『상례비요喪禮備要』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당시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례비요』에는 품계에 따라 쓰이는 명기 가짓수가 『주자가례』와 동일하다. 이는 후대로 갈수록 명

기를 사용하는 품계가 낮아지고 품계가 더 낮은 사람들조차도 같은 숫자의 명기를 쓴다는 뜻으로, 점차 명기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다 1744년(영조 20)에는 국장國葬이나 예장禮葬에서 나무로 만든 인형을 사용하는 것이 순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폐하도록 했다. 조선 후기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명기조明器條'가 없는 것을 보면, 당시 사대부들이 더는 명기를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 왕실에서는 성리학에 근거한 유교식 상장례로서 명기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16세기에는 사대부층까지 명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전란을 겪으며 명기 제작이 어려워지자 점차 명기를 사용하는 장례풍속이 소멸하기 시작했다. 이는 조선 전기에는 어느 정도 인정되던 '내세'의 개념이 조선 후기에는 더이상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유교식 장례풍습의 정착과 확산의 과정이 작용하였다.

내용 명기는 목인木人, 식기, 악기, 집기, 무기 등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을 형상화하되 그 크기를 인형처럼 작게 만든 것이다. 조선 초기부터 사용된 명기는 『세종실록』「오례의」에 수록된 그림과 왕실의 명기제작 기록을 통해 재질, 형태, 종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제작된 명기의 형태는 자기磁氣 또는 와기瓦器이며, 종류로는 호壺, 주병酒甁, 잔盞, 향로香爐, 관반盥盤, 관이盥匜, 혼병溷甁, 수기漱器, 갱접羹楪, 타우唾盂, 영嬰, 주존酒尊, 시접匙楪, 소채포해접蔬菜脯醢楪, 반발飯鉢, 와부瓦釜, 와정瓦鼎, 인물상人物像, 마상馬像, 기마인물상騎馬人物像 등이 있다. 초기의 명기는 분청사기로 만들어졌다. 이후 백자 명기가 사용되었으나, 이는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사대부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 백자 제작이 확산되기 시작되면서 사대부층에서도 백자를 명기로 쓰기 시작했으나, 전란을 겪으면서 17세기 후반 점차 소멸되었다.

대표적인 명기로는 국보 제91호인 신라시대 금령총에서 출토된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가 있다. 기마인물형 명기는 기마에도 속하지 않고 인물에도 속하지 않는, 흔하지 않은 명기 가운데 하나이다. 이 명기는 한 쌍의 토기로, 하나는 말 장식이 화려하며 고깔 형태의 띠

그릇 모양의 명기 | 16~17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나무 인형 모양의 명기 | 16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와 장식이 있는 삼각모를 쓰고 갑옷을 늘어뜨리고 있는 주인상이며, 다른 하나는 웃옷을 벗고 상투머리를 했으며 등에 짐을 메고 있는 하인상으로 마치 저승길로 가는 주인을 인도하는 듯하다. 이 명기는 죽음의례와 관련된 관념·복식·무기·공예·말갖춤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북구 생룡동의 광산 노씨 노옥손盧玉孫의 분묘에서 철화마형鐵畫馬形과 인형 명기를 포함한 32점의 명기가 출토되었다. 이 분묘에서 출토된 명기는 사대부층에서 명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의 사례로 보인다. 판결사를 지낸 김흠조金欽祖(1461~1528)의 부부묘에서 출토된 입호立壺 명기 역시 조선 초기 사대부가의 명기 사용 사례로 상장례 풍속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시대 초기 청화백자의 수가 적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호암미술관 소장 '백자청화 초화칠보문 명기'가 명기로 쓰이기 위해 소형으로 만들어진 것은 도자사陶磁史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징 및 의의 명기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사대부 등 일부 지배계층에 한정된 부장품으로서 유교의 상장례 풍속을 살펴보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명기는 삼국시대 순장풍습의 대체물로 고안되어 조선 초기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국가적으로 법제화되었다. 명기의 사용은 필시 내세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므로, 명기가 사용되다가 중단된 것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의식이 전환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조선 전기 장례 풍속에 적용된 유교와 조선 후기 장례 풍속에 적용된 유교가 조상의 영혼과 내세에 관해 상당히 다른 관점을 보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또한, 시기별 도자 기술에 따른 명기의 형태나 양식의 변화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명기는 역사·민속·미술사적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정담부부묘 출토 도자의 양식적 특징과 성격(이종민, 안동대학교박물관총서47, 안동대학교박물관, 2010), 조선시대 명기의 연구(이지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배영동(裵永東)

명당
明堂

정의 풍수지리風水地理에서 상징하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길지吉地를 일컫는 말.

개관 명당明堂은 무덤이나 집터 또는 마을의 입지를 정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공간을 가리킨다. 명당 자리에 무덤을 쓰거나 집을 지으면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여기는 공간이다. 때로는 관상학에서 사람의 이마를 가리키고, 임금이 조회朝會를 받던 정전正殿을 가리키기도 한다.

풍수지리에서는 명당 관념을 더욱 구체화·상징화하였다. 방위상으로 명당은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주작朱雀과 현무玄武라는 사신사四神砂에 둘러싸인 혈穴 앞의 땅을 가리킨다. 명당은 매우 추상적인 공간이지만 이를 이론적으로 구명하여 택지擇地하는 것이 풍수지리설이다. 땅을 해석하는 원리로 간룡법看龍法·장풍법藏風法·득수법得水法·정혈법定穴法·좌향론坐向論·형국론形局論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명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방법이 정혈법인데, 풍수에서 요체가 되는 장소인 혈穴은 묫자리의 경우 시신屍身이 직접 땅에 접하여 그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집터의 경우 거주자가 실제로 삶 대부분을 사는 곳이다. 명당은 이 혈 앞의 넓고 평탄한 땅을 일컫는다. 따라서 명당은 풍수지리설의 요체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이다.

풍수지리설은 '풍수風水'라는 용어로 대표된다. 풍수는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비롯된 용어인데, 땅 가운데 있는 생기生氣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수기水氣를 만나면 멈추기 때문에 '바람을 막고 물은 얻는다'는 뜻으로 쓰인 말이다. 따라서 풍수는 장풍득수와 관련된 이론으로서의 풍수설風水說을 가리킨다. 명당은 이러한 기본 관념에서 바람을 막고 물을 갈무리할 수 있는 '땅 중의 땅'으로서 특정된 장소를 뜻한다.

내용 실제 풍수이론에 의해 상점相占되는 명당은 하나의 이상적 공간이다. 정치精緻한 이론과 엄밀한 적용에 대해 일가견을 이룬 전문 풍수들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다. 난해한 이론을 적용해야 하고 답산踏山을 통해 찾아내야 하는 공간이다. 이를테면 자연에 인위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며, 엘리아데(M. Eliade)의 표현으로 '천상天上의 원형을 지상에 재현하는 성화聖化 작업'이기도 하다.

풍수설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는 풍수에서 제기되는 관념과는 다르다. 이른바 이야기식 담론으로 전개되는 대표적인 것이 풍수 설화이다. 풍수 설화의 명당 관념은 풍수설 고유의 관념과는 차이가 크다. 본디의 풍수 관념과는 다른 면으로 굴절되어 있거나 풍수설의 한 단면을 수용한다. 물론 '굴절'이나 '한 단면의 수용'이란 용어는 부정적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의 풍수 관념을 바탕으로 수용하되 이해 가능한 만큼 이해하고, 나름의 해석에 따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풍수 설화가 풍수설을 수용하여 삶을 재해석하고 그에 따른 질서 의식을 드러내는 구실을 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명당은 흔히 혈穴로 대변되고 이 혈에 대한 의지가 명당잡기의 본령이다. 혈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같은 사신사四神砂로 표상되는 복합한 체계 위의 신성한 공간이다. 또 혈로 통칭하는 명당은 중심이론中心理論에 근접하는 장소로서 '세계의 중심'이나 '대지의 배꼽'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소聖所 관념은 풍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확인된다. 이를테면,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페루의 쿠스코(Cuzco)와 그리스 중서부에 있는 아폴론 신전 옴파로스(Oomphalos)

지리현주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풍수지리설을 설명한 책

는 '대지의 배꼽'이라는 뜻이며, 중앙아시아 타림분지 남부의 서역남도西域南道에 있는 최대의 오아시스 허톈和田(Khotan)은 '대지의 자궁'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성소 관념은 각자의 정주 공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종교학적으로 신성현현神聖顯現(hierophany)과 신력현시神力顯示(cratophany)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명당을 쓰고 복을 받는다는 발복發福 관념이 바로 이것이다.

전문가인 풍수와는 달리 일반인의 명당 관념은 풍수 설화를 통해 잘 드러난다. 풍수 설화에서의 명당은 관념화된 공간이다. 풍수설에서 등장하는 명당 관념을 빌어오지만, 구체화하지 못하고 흥미 위주의 장소로 개념화하고 있다. 비논리적이나마 이해 가능한 범주 내에서 명당 관념을 수용하다 보니 명당이 지닌 본래의 변별적 자질을 '낯설거나 특이한 곳'으로 변형하거나, '탈속적脫俗的인 특정 공간 관념'으로 전이하여 버렸다. 이를테면, '마루 밑, 집 뜰, 길거리, 바위 밑, 밭머리, 뱀 묻었던 자리, 문둥이가 거처하던 움막 터, 강가 모래밭' 등이 명당이고,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로 특정 행위나 상황을 연결하고 있다.

이 점 역시 명당은 중심으로서의 혈인 동시에 성스러움의 현현체顯現體이며, 일상적 공간과는 구별되는 변별적 공간이라는 이분법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다. 그러면서 명당을 탈속적脫俗的인 공간으로 형상화했고, 결국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발복發福하고자 하는 관념을 드러내었다.

특징 및 의의 특정한 땅에 무덤을 쓰거나 집과 마을, 도성을 지으면 땅이 신비한 능력에 힘입어 복을 받는다는 이론에서 발생한 관념이 명당이다. 자연의 공간 중에 특정한 땅인 명당을 찾아가는 것이 풍수 또는 풍수지리설이다. 죽은 자와 관련된 터를 음택陰宅이라 하고, 산 자와 관련된 터를 양택陽宅이라 하며, 마을이나 고을 및 도성과 관련된 터 잡기를 양기陽基라 구분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 음택과 양택, 양기의 대상은 일반적인 자연 공간이 아니라 풍수이론에 부합하는 땅 중의 땅인 명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이 지닌 길흉화복을 가리고 명당을 통해 길吉함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반영한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풍수의 비과학성을 지적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참고문헌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최창조, 서해문집, 1992), 풍수지리학 개요(황일순, 세창서관, 1928), 한국의 풍수사상(최창조, 민음사, 1984), 한국의 풍수설화(신월균, 밀알, 1994), 한국의 풍수설화연구(장장식, 민속원, 1995).

필자 장장식(張長植)

명당도
明堂圖

정의 풍수지리風水地理에서 상징하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명당에 자리 잡은 묫자리를 그린 그림.

내용 명당도明堂圖는 풍수지리상의 이상적 공간인 명당의 위치를 그린 그림이며, 묫자리인 산소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에서 산도山圖, 묘산도墓山圖라고 한다. 산도는 묫자리를 산소山所라 부르는 것처럼 '산'이 '묘墓'를

명당도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가리키는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이 외에 전통 의학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사람의 혈맥을 그린 의학 도설이나 임금이 정무를 보는 정전正殿의 그림을 뜻하기도 한다.

풍수지리상의 명당도는 묫자리가 위치한 곳을 표시하면서 조산祖山과 주산主山의 세로축을 중심으로 좌우의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상하의 현무玄武와 주작朱雀의 지리적 상호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와 더불어 명당의 주위를 흐르는 내외 명당수明堂水까지, 때로는 오행五行에 비정한 산의 모양까지 묘사한다. 명당도는 이와 같은 위치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덤의 위치를 잃어버렸을 경우 묘소의 위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문중에서 제작한 문집이나 족보에 실려 대대로 가전家傳되어 묘의 위치를 영구적으로 지시하는 구실을 한다.

궁중에서도 능원 관련 명당도를 그려 능묘의 위치를 확정하는데, 묫자리에 대한 해설이라 할 산론山論을 병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자료로 『숙빈 최씨 소령원도』(보물 제153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를 들 수 있다. 이 명당도는 영조의 모친인 숙빈 최씨(1670~1718)의 능원인 '소령원' 일원을 그린 것인데, 『숙빈 최씨 소령원도』 중 「묘소도형여산론墓所圖形與山論」은 계회도契會圖의 형식을 빌려 상단에 제목을 쓰고, 가운데에 산도를 그리고, 하단에는 산론을 적었다. 능묘 자리로 길지를 택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산의 생김새를 중심으로 주위의 산과의 관계를 그린 산도가 있다. 이들은 주로 명당의 길흉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이거나 학습용 자료로 쓰였으며, 필사본으로 전한다.

특징 및 의의 명당도에서는 산봉우리를 따로 떨어뜨려 그리지 않고 끊어짐 없이 물 흐르듯 산줄기를 연결하여 그리는 방식을 쓴다. 풍수에서 산은 절대적인 요건으로 산과 연결되지 않은 지형은 사砂, 득得 따위의 자연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명당이나 혈을 맺지 못한다. 명당이라 해석된 장소를 연결된 산줄기로 표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산 관념에서 비롯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연인식 체계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산지 표현에서는 연맥緣脈을 강조하면서 산줄기의 험난함과 평탄함에 따라 산줄기의 굵기를 달리하여 그렸으며, 특정 산들을 강조하여 산세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산계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하계河系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 또한, 물줄기는 내명당수內明堂水, 외명당수外明堂水와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표현하였다. 명당도의 표현 방식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청구도靑邱圖〉 등의 지도 묘사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양자의 상호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숙빈최씨자료집4-산도 · 비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8), 한국의 풍수사상(최창조, 민음사, 1984), 한국지리총람(지창룡, 명문당, 1982).

필자 장장식(張長植)

명재선생의례문답
明齋先生疑禮問答

정의 조선 후기 학자 명재明齋 윤증尹拯(1629~1714)이 예에 관해 나눈 문답을 그의 문인들이 모아서 편찬한 책.

내용 『명재선생의례문답(明齋先生疑禮問答)』은 윤증이 평소 그의 문도들을 비롯하여 동시대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남긴 예에 대한 문답을 문하의 제자들이 모아 엮어낸 책이다. 전체 8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은 통례通禮, 권2는 통례·관례·혼례, 권3에서 권6까지는 상례, 권7은 제례, 마지막 권8은 국휼중사례國恤中私禮·왕가례王家禮·예서의의禮書疑義에 관한 문답 580여 항목을 수록하였다. 전체 구성에서 상례에 대한 비중이 높다. 항목별로 질문이 먼저 기재되고, 행을 바꾸어 해당 질문에

명재선생의례문답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대한 윤증의 답이 기재되었으며, 윤증의 견해 외에도 해당 항목에 부합하는 공자·증자의 견해와 이황李滉·이이李珥·정구鄭逑·성혼成渾 등의 견해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민간 사서인士庶人의 예를 주로 다루었지만, 왕가의 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다. 기본적인 맥락은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근간으로 하였고, 『가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고례古禮와 전해 내려오는 속례俗禮를 반영하였다. 내용 가운데 남계 박세채朴世采(1631~1695)와의 문답은 많이 보이지만, 당대 예학의 한 거봉이었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제 관계로 시작했으나 후에는 각자 대립하는 길을 걸었던 송시열과 윤증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사상사적으로 윤증의 예설은 동시대 인물인 박세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윤증의 『명재선생의례문답』과 박세채의 『남계선생예설南溪先生禮說』은 조선 후기 소론少論의 예설을 대표하는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명정
銘旌

정의 장사 때 죽은 사람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비단이나 종이에 품계, 관직, 본관 성씨 등을 기재한 기旗.

내용 목욕과 습례를 마치면 영좌靈座를 설치하여 교의交椅에 혼백魂帛을 안치하고 영좌 동편에 기旗를 세우거나 병풍에 걸어 놓는데, 그 기가 명정銘旌이다. '명정明旌' 또는 '명기銘旗'라고도 한다. 명정을 세우는 이유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리려는 생각과 죽은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때문이다. 즉, 망자의 이름을 써서 다른 사람이 알아보게 하려는 목적이다. 명정은 상여 앞에서 길을 인도한다. 하관을 마친 뒤에는 명정을 관 위에 씌워서 묻는다.

명정에 쓰는 글은 천자에서 선비까지 신분의 구별 없이 같게 쓴다. 명정에 쓰는 작위는, 왕이 임명한 관직을 큰 것부터 차례로 '모관모공지구某官某公之柩'라 쓴다. 생존 시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문에 따라 다르지만 처사處士·학생學生 등의 용어를 쓴다. 학생이란 죽어서나마 못 배운 한을 풀라는 뜻이다. 여자는 남편의 직위에 따라 '모봉모관모씨지구某封某貫某氏之柩'라 쓴다. 부인은 남편의 직위에 따라 책봉된 직위를 쓴다. 남편이 직위가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쓴다. 유인은 정·종9품 문무관의 처에게 주었던 외명부의 위호로서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 아내의 신주나 지방, 명정에 붙여주는 칭호이다. 관이라 않고 구[柩]이라 한 것은 오래 보관하고자 하는 뜻이다.

명정의 크기는 신분에 따라 다른데, 왕과 왕비는 폭 끝까지로 길이는 9척이다. 5품 이상은 8척, 6품 이하는 7척으로 영조척營造尺(목수가 쓰는 자)을 쓴다. 국왕의 명정은 공조에서 붉은 비단으로 만드는데, 금가루를 아교에 개어 전서篆書로 '대행왕재궁大行王梓宮'이라 쓴다. 왕비는 '대행대비재궁大行大妃梓宮'이라 쓴다. 만일 존호가 있으면 대행 위에 존호를 쓴다. 명정은 2품 사서관이 쓴다. 시호와 묘호가 정해지면 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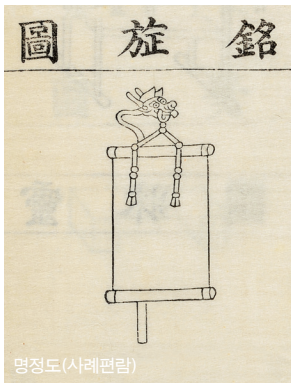

명정도(사례편람)

명정

명정 쓰기

명정 덮기

명정 | 국립민속박물관

을 다시 쓰는데, 이를 '개명정'이라 한다. 사대부도 나라에서 시호를 받으면 명정을 다시 쓴다. 개명정이 만들어지면 초상 때 쓴 이전의 명정은 전 남쪽의 정결한 곳에서 태운다.

명정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붉은 비단 혹은 종이를 사용하였다.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옛날에 관작이 없는 자, 즉 사서인士庶人은 명정을 세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에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붉은 비단을 다 통용하여 6품 이하도 7척을 쓴다.'라는 예를 따르니, 가난한 집에서 장만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일정한 제도가 없어 아래로 서인까지 본래의 것보다 갑절을 크게 하여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명정을 비단이 아닌 백지에 쓰는 백지명정白紙銘旌의 사용을 권하기도 했다.

명정은 아래와 위에 축軸을 만들고 가장자리에 수술을 달아 명정대에 매단다. 명정대는 일정한 규격이나 제도가 없지만, 나무로 새긴 용이나 봉의 머리를 꽂아 화려하게 장식하고 채색으로 단장하며 용의 머리에는 구슬을 물리기도 한다.

국왕의 명정은 깃발 상하에 축이 있다. 축의 끝에는 오매목烏梅木을 쓴다. 상하 축의 좌우에는 작은 쇠고리를 달고 오죽으로 깃대[杠木]를 만들며 용머리를 조각하여 황금으로 칠하고 강목 머리에 꽂는다. 용의 입에는 쇠고리를 물리고 유소 두 개를 늘어뜨린다. 깃대는 대나무에 흰 칠을 하여 만든 다음 깃발을 매단다. 보통의 서민인 경우에는 대나무를 그대로 쓴다.

특징 및 의의 국상의 출상 때에는 임금의 시신을 실은 대여 앞의, 말을 탄 군사들이 명정을 들고 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명정 상단에 끈을 양쪽에 매달아 한 사람씩 잡고 간다. 일반 백성의 장례 행렬에서는 행상 맨 앞에 방상方相이 서고, 이어 명정이 따른다. 하관할 때에는 명정을 관 위에 덮는데 상단이 머리 쪽으로 가게 한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 世宗實錄五禮儀, 조선초기상장의례연구(정종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필자 정종수(鄭鍾秀)

모란병

정의 모란꽃을 주제로 한 병풍 그림.

역사 동아시아에서 모란은 '꽃 중의 왕[花王]'으로 일컬어지며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송나라 주돈이周敦頤(1017~1073)가 「애련설愛蓮說」에서 "모란은 부귀"라고 정의한 이후 그 길상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선덕여왕지기삼사善德女王知幾三事」의 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7세기 전반에 이미 중국의 모란도가 유입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란도가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모란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화훼화花卉畫의 하나로 애호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병풍 그림으로 널리 그려졌다.

내용 조선시대에 모란병은 궁궐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화축畫軸이나 화첩畫帖에 그려진 모란도가 감상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병풍에 그려진 모란도는 장식적이고 의례적인 성격이 강했다. 즉 모란병은 주로 의례공간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그 격식에 어울리는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한국적인 도상의 창안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다. 조선시대 도감의궤都監儀軌에 의하면 모란병은 왕실의 국상國喪에서부터 관례冠禮, 가례嘉禮, 어진御眞 모사와 봉안, 궁궐 전각의 영건營建 등에 이르기까지 궁궐에서 그 쓰임의 폭이 가장 넓었던 병풍 그림이다. 특히 왕실 가례에서 모란병은 개복청改服廳이나 동뢰연청同牢宴廳에 주로 설치되었다. 민간에서도 모란병은 혼례나 회갑연, 회혼연 등 각종 연향에 꼭 필요한 병풍이었다. 민간의 혼례에서는 대례청大禮廳에 설치되는 주된 장식 그림이었으므로 대례병大禮屛으로도 불렸다. 조선 후기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경도잡지京都雜志』 「서화書畫」의 기록에서 사족士族들은 혼례 때 제용감濟用監의 모란 대병大屛을 빌려 쓰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모란병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하나는 탐스러운 꽃이 만발한 모란이 화면에 첩 구분 없이 연속해서 그려지는 형식이며, 다른 하

모란괴석도병풍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나는 모란이 첩마다 독립적으로 배치되는 형식이다. 후자의 모란병은 세로로 긴 화면에 둔덕이나 괴석怪石을 중심으로 모란이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는 형상인데, 이는 실제 모란의 생태와는 다른 모습으로서 매우 형식화된 경향을 보여준다. 민간에서는 주로 후자가 사용되었으며 현전하는 대부분의 모란병도 이에 속한다.

특징 및 의의 첩마다 비슷하거나 동일한 도상이 반복되는 모란병의 형식성은 조선시대 모란병만이 지니는 회화적 특징이기도 하다. 모란병은 병풍을 펼쳐놓았을 때 화려하면서도 준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모란이 함의하는 부귀의 길상성과 함께 다른 어느 주제의 병풍보다 혼례 같은 경사스러운 의례 공간에서 적합한 병풍으로 애호되었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이상희, 넥서스북스, 1998).

필자 박정혜(朴廷蕙)

모사기
茅沙器

정의 제사 지낼 때에 모래를 담고 그 위에 띠 묶음을 세워두는 데에 쓰던 그릇.

내용 강신降神할 때에 띠 묶음 위에 술을 따르는 것은 신의 강림을 바라는 의미이다. 모속茅束은 띠를 실로 묶은 것을 말한다. 즉, 띠 묶음이다. 원래는 띠라고 표현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로 솔잎을 실로 묶어서 대신한다.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첫 절차인 강신례降神禮를 할 때, 모사에 술을 세 번 나누어 붓는다.

강신降神할 때에, 모사기의 모래에 세워진 띠 묶음 위에 술을 따라 신의 강림을 바란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 보유 동예 제의에 모사茅沙에 대해 회통주會通註에서는 "모사는 일익이고 붉은 실로 묶어 모래 속에 세웠다在茅一益, 束以紅絲, 立沙中."라고 하였다.

모사기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모사기는 모래를 담고 그 위에 모속을 세워 두는 것으로, 강신례 때 그 위에 술을 세 번 나누어 부어 신의 강림을 바라는 중요한 제사용 도구이다.

참고문헌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고전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필자 권삼문(權三文)

목기러기

정의 혼례 때 전안례奠雁禮를 하기 위하여 나무로 목각한 기러기.

내용 나무기러기를 혼인 때 사용하는 풍습은 고대 중국 한족의 혼인 풍속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전안례가 행해지기 시작했는지, 그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전안례가 행해졌던 기록이 남아 있다.

『의례儀禮』에서는 "사士의 혼례에 기러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으며, 『예기禮記』「혼의婚儀」에는 "부친이 대례를 행하라고 명하면 신랑이 기러기를 안고 신부 집으로 들어가 한 번 읍揖하고 기러기를 드리고 재배再拜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기러기는 신랑과 신부 측을 연결하는 예의 용품이었다. 그런데 이 풍속이 중국에서는 일찍 소멸되었으나 신기하게도 한국에서는 조선 말기까지 이 예가 행해졌으며, 혼례의 중심적인 행사로서 중시되었다.

전안례가 행해지던 초기에는 실제로 산 기러기를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점차 내려오면서 산 기러기 대신 까만 옻칠을 입힌 나무기러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조차 구하기가 어려우면 산 닭 또는 떡으로 만든 기러기를 대신 사용하였다. 기러기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親迎], 기럭아비가 홍색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갔는데, 기러기 머리가 왼쪽을 향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 전안의 예가 혼례에서 중요시되고, 또 그 명맥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기러기라는 동물은 한 번 짝을 지으면 평생 그 짝 이외의 다른 짝을 돌아보지 않아 정절을 상징했고, 둘째로는 기러기가 따뜻한 바람을 좇아 무리 지어 다녀 믿음과 애정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즉, 기러기는 정절·신의·우애·사랑이 깊은 길조로 여겨졌다. 결국, 기러기는 바로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상징이었다. 이를 통해 도덕적 품성을 중시하는 한민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지역사례 경기도 지방에서는 전안을 "백년기러기를 올린다."라고 하여 종종 이를 위해 기러기를 잡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혼례 용구를 임대하는 가게에서 산 기러기를 빌려와 붉은 천에 싸고 목에 붉은 실을 묶어서 기럭아비가 가지고 갔다.

특징 및 의의 예학에 정통한 당唐 고종 연간의 학자 가공언賈公彦은 『의례소儀禮疏』에서 기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혼례에는 기러기를 사용하는데, 기러기가 겨울에는 남쪽으로 날고 봄에는 북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니, 요즘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인은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혼례 때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목기러기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그 밖에 한국전례원은 기러기의 세 가지 특징을 안삼덕雁三德, 즉 안정雁情, 안서雁序, 안적雁跡으로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안정'이란 기러기의 정을 뜻한다. 기러기는 암수 짝을 지어 살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죽으면 다시는 새 짝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기러기는 백년해로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안서'는 자연의 질서를 어기지 않는 기러기의 특성을 뜻한다. 항시 늦가을에 왔다가 겨울을 지내고 이른 봄, 북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로서, 자연을 어기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안적'은 기러기가 흔적을 남긴다는 뜻으로, 기러기는 반드시 앉은 자리에 발톱으로 땅을 파놓고 날아가며, 단단한 바위 위에 앉으면 깃털을 바위틈에 남겨두고 날아간다. 이것은 사람들도 이름을 남기라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을 뜻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儀禮疏, 의례(정현 · 가공언, 오강원 역, 청계, 2000), 한국민속조사종합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의례의 연구(송재용, 제이엔씨, 2007), 中國風俗辭典(上海辭書出版社, 1990), 한국전례원(kjrw.campushomepage.com)

필자 최인학(崔仁鶴)

목욕
沐浴

정의 고인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 정화하는 절차.

개관 목욕은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절차이다. 목욕은 시신 처리의 첫 번째 단계로 습襲의 절차에 포함된다. 목욕을 하는 시기는 당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사망 다음날이 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에 의례의 간소화와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목욕이 염습에 통합되어 한꺼번에 목욕에서 염습까지 끝마치는 것이 관습화하였다. 요즘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리고 24시간이 경과해야 목욕을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장례식장이 발달하고, 장례지도사라는 전문직이 생겨서 염습실이라는 곳에서 목욕을 한다.

내용 목욕이란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인 수의로 갈아입힌 다음 반함飯含하는 일로 이루어진 습襲이라는 절차의 첫 번째 순서이다. 목욕을 시키는 방법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휘장과 상牀을 설치한다. 시신은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홑이불로 덮는다. 이어 외진 곳에 구덩이를 판다. 시신을 닦은 오염된 솜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목욕에 사용하는 물은 향탕, 쑥탕 혹은 쌀뜨물이다.

주인 이하는 모두 휘장 밖으로 나가 북쪽을 향하여 서서 기다린다. 집사가 먼저 머리를 감기고 빗질을 한 뒤, 수건으로 닦아서 말린 후 상투를 튼다. 여자는 댕기로 머리카락을 묶고 비녀로 쪽머리를 한다. 몸을 닦을 때는 홑이불을 덮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먼저 얼굴과 손을 씻기고, 왼쪽에서 오른쪽, 상체에서 하체의 순서로 닦는데 상체와 하체에 사용하는 물과 수건을 달리한다. 닦기를 마치면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손발톱을 깎고 빠진 머리카락, 수염 등을 모아 각각 다른 조발낭爪髮囊에 넣는데, 5개를 준비한다. 운명할 때 입었던 옷과 복復을 할 때 사용했던 옷은 모두 치우고 목욕에 사용했던 수건과 빗 등은 모두 구덩이에 버려 묻는다.

현대의 목욕 역시 근간은 전통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 장례식장의 전문적인 염습실에서 전문직인 장례지도사가 위생적으로 염습하며, 유족이 지켜보도록 하는 점이 다르다. 특히, 목욕용품 묶음이 개발되어 좀 더 위생적으로 목욕하는 점이 다르다. 이때 사용한 솜 등은 병원 폐기물과 같이 처리한다.

특징 및 의의 목욕이라는 절차는 시신을 깨끗이 정화하

여 감염 등의 위험을 없애고, 저승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고인을 보내기 위한 정화의례이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喪禮備要, 상례 누구를 위한 의례인가(김시덕, 민속학연구7, 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묘제
墓祭

정의 조상의 체백體魄을 매장한 묘소墓所에서 지내는 제사.

역사 『주자대전朱子大全』이나 『사향의祀享儀』, 『가례家禮』 등에서는 "묘제는 원래 규정이 없었으나 관습을 따른 것"이라고 하고, 『개원례開元禮』에서는 "삼대三代 이전에는 없었으나 진秦나라 때 무덤 옆에 재실齋室을 지었고, 이를 한漢이 이어받아 풍속이 되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묘제는 한대 이후에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자대전』에서는 세속의 묘소에 배소拜掃하는 예禮가 오래되어 없앨 수 없다고 하여 정식 제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례』에서는 묘제를 제사의 하나로 공식 인정하였는데, 고려 말 『가례』와 함께 묘제 역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정구鄭逑(1543~1620)가 "우리나라는 가묘家廟를 세우기 전에 묘소에서 사시제를 지냈으나 가묘를 세운 후에는 가묘와 묘소의 예법이 다르다."라고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묘제는 옛날의 법이 아니다. 주자가 세속을 따라 한 번 제사를 지냈는데, 남헌南軒은 예가 아니라고 하여 여러 번 문의를 한 다음에야 따랐다. 이로 보아 묘제墓祭와 가묘家廟제사는 체계가 다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세속의 제사가 정식 예제로 정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묘제를 지내는 시기 역시 다양하다. 『개원례』, 『사향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한식날 묘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특히, 『동국세시기』에는 설날·한식·단오·추석의 네 명절에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절사節祀'라 하여, 절사가 곧 묘제였음을 알 수 있다. 『주례周禮』, 『봉선잡의奉先雜儀』에서는 10월 1일에 묘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처럼 묘제는 시대 및 지역에 따라 지내는 시기가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집의四禮集儀』에서는 "3월 상순에 날을 가려 1년에 한 번 제사한다. 이는 사시제보다 간결하게 지내니, 초목이 처음 나와 비와 이슬에 감동하기 때문이다. 처음 묘제를 지낸 날을 정하여 해마다 같은 날에 묘제를 지낸다. 기일과 절일節日에는 사당에서 먼저 지낸 뒤 무덤에서 지낸다고 하였다."라고 했다. 이를 보면, 묘제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와 동시에 성묘 형식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0월에 날을 잡아 묘제를 지내는 것이 일반화된 사례도 많다.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10월에 도포 입고 나서면 보름을 지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10월 묘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묘제는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로 지역에 따라 시제時祭(영남지역), 시사時祀(영남지역), 시향時享(기호지역), 묘사墓祀, 회전會奠(영남, 기호지역)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회전은 '회전제사會奠祭祀' 또는 '회전지제사會奠地祭祀'라고도 하는데, 문중門中 성원이 시조 혹은 파시조派始祖, 입향조入鄕祖의 묘소에 모여서 지내는 제사라는 뜻이다. 시제라는 용어는 『가례』에서 규정한 가장 중요한 제사인 사시제四時祭가 우리나라에서 명절 차례와 절사 혹은 묘제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용어로 보인다. 기호 지역에서 사용되는 세일사歲一祀 혹은 세일제歲一祭란 1년에 한 번 지낸다는 뜻이다.

묘제는 한 집안이 모시는 조상의 산소山所에서 지내는 제사임에도 지역과 집안에 따라 묘제의 대상을 달리하기도 한다. 『사례집의』에서는 묘제 외에 「선조묘제의先祖墓祭儀」를 두어 고조 이상의 조상제사는 10월 1일에 따로 지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묘제의 시기는 다르지만, 봉사대상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묘제의 대상은 한 집안을 이룩한 최고 시조로부터 바로 윗대 조상까지가 일반적이다. 가장 큰 대종大宗일 경우에는 시조始祖까지, 파派로 갈라진 지파支派의 소종小宗일 경우 파시조派始祖까지가 묘제의 대상이 된다. 『사례편

1. 진설

2. 참신

3. 독축

4. 분축

5. 초헌 제배

6. 강신

7. 초헌 헌작

8. 음복

묘제 | 대전 서구 탄방동 도산서원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람』에서 사대봉사의 대수를 넘긴 친진親盡한 조상의 묘사에 대한 축문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묘제의 대상이 5대 이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묘제를 지내는 순서는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와 거의 동일하다. 단지 묘지기가 대행할 때에는 축문을 읽지 않고 헌작獻爵도 단헌單獻을 한다. 묘제 역시 하루 전에 준비하여 날이 밝으면 묘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지내는데, 이동 시간, 청소 시간 등을 고려하면 여건상 낮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묘제를 지내는 장소는 산소이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묘소에 접근하지 못하면 재실이나 멀리서 묘를 향하여 지내는 망제望祭를 지내기도 한다. 묘제를 지내는 절차는 집안 제사와 동일하나 장소의 특성 때문에 간소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묘제 준비: 하루 전에 재계하고, 제기를 갖추고 제물을 준비하는 구찬具饌을 한다. 모두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동일하다.
②산소 청소: 날이 밝으면 산소에 가서 재배하고, 묘역을 세 바퀴 돌며 살피고 나쁜 초목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고 재배하고 돌아온다.
③진찬: 묘소 앞에 자리를 깔고 집에서 지내는 제사처럼 제물을 진설한다.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처럼 진설陳設 절차가 없으므로 제물을 한꺼번에 차린다. 상석床石이 있으면 상석에 차린다.
④강신, 참신: 『가례』에서는 참신을 먼저 한다고 하였으나 『가례집람家禮輯覽』, 『격몽요결擊蒙要訣』 등에서는 강신을 먼저 하도록 규정하여 집안마다 차이가 있다.
⑤초헌, 아헌, 종헌: 묘제 역시 삼헌을 하는데, 초헌에서 독축을 한다. 주인이 초헌하고 자제와 친빈이 아헌과 종헌을 담당한다.
⑥사신, 철상: 참사자가 재배하고 물러나면 제물을 거둔다.
⑦후토제는 강신, 참신, 삼헌, 사신, 철상의 순서로 진행한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상주의 우복愚伏 종가에서는 첨작을 한다. 안동의 겸암謙菴 종가, 안동 전주 유씨가, 경기도 파주 파평 윤씨가에서는 규정에 없지만 합문을 한다. 파주 고령 신씨가에서는 진다를 하고, 파주 파평 윤씨가에서는 수조례와 고이성을 한다. 경기도 남양주와 연천의 청풍 김씨가, 인천광역시 강화도 전주 최씨가에서는 합동 묘사를 지낸다. 퇴계 종가에서는 재실에서 합동묘사를 지낸다. 충청남도 논산 광산 김씨가에서는 단오와 한식에 4대친 및 불천위의 산소에서 절사를 지낸다. 이 집안에서는 정정공丁靖公 김국광金國光(1415~1480)을 3년에 한 차례씩 10월에 별사로 모신다.

특징 및 의의 묘제는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같으나 장소가 묘소이므로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신주를 모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출주出主와 납주納主의 과정이 생략된다. 둘째는 모든 음식을 동시에 진설한 후 제사를 진행한다. 야외에서 행하는 예는 간소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주부가 산소에 따라가지 않으므로 자제와 친척이 아헌관이 된다. 넷째는 유식侑食의 절차가 없어 합문闔門과 계문啓門의 절차가 생략된다. 다섯째는 제사를 마친 후에 산소가 있는 산의 산신山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후토제后土祭가 있다.

묘제는 속례가 정례화된 것으로 조상신의 제사인지 고인의 체백에게 지내는 제사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참신과 강신, 축문의 내용을 보면 조상신의 제사를 묘소에서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명절, 기제사 등에 묘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 사시제가 축소되어 명절에 통합된 것이다. 묘제를 통해 조상의 영혼과 체백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관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 開元禮, 東國歲時記, 四禮集儀, 四禮便覽, 士儀, 祀享儀, 常變通考, 朱子大全,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 김미영 · 김시덕 · 권삼문, 민속원, 2012),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민속원, 1995),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김시덕(金時德)

묘지
墓地

정의 땅 속에 시체나 유골을 묻은 다음 그 위에 봉분을 쌓거나 묘석을 놓고 비碑를 세운 터.

역사 선사시대에는 취락 인근에 집단으로 무덤을 쓴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다. 역사시대로 접어들어 고대부터 근세의 분묘 집단이 발견된 곳이 더러 있다. 지방에는 수백 년 이상 된 문중·종중묘지들과 함께 촌락 단위로 자연 발생한 공동묘지들이 전해진다. 그럼에도 왕릉의 제식 외에 제도화하여 체계를 갖춘 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9년(정조 23)에 "금위영·어영청에서 성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이 그곳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가 있지만 후속된 내용을 찾을 길이 없다. 다만 19세기 말 도성 밖에는 수많은 묘가 군집한 곳들이 다수였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였을 가능성은 있다.

제도로서의 공동묘지는 1912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비록 일본인들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규칙은 처음으로 근대적인 묘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규칙은 고려 말에 시작되어 18세기경에 정착한 '가족묘지' 또는 '문중묘지'라는 당시 관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묘지는 부府·군郡·면面과 같은 지방공공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동묘지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무 산에나 매장할 수 없고, 정해진 공동묘지에만 장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자 시행 이후 몰래 무덤을 쓰는 암장暗葬 등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림儒林을 비롯한 많은 문중에서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났다. 결국, 일제 식민당국은 1918년에 「취체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기 소유지에 조상이나 배우자의 묘가 있는 경우, 그 범위 안이나 바로 옆에 가족묘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면적은 한 집안에 1만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었다. 사실상 공동묘지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였다. 한편, 규칙은 1913년 9월 1일부터 경성부에서 먼저 시행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 한성부 지역에 19곳을 비롯하여 전국에 많은 공동묘지가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규칙이 제정되고 단기간 내에 많은 수의 공동묘지가 설치되었던 것은 이전부터 공동묘지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서민층이었다고 한다. 이때 제도화된 공동묘지는 1961년 말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로 전환되었다.

공원묘지(묘지공원)의 출현은 1929년 서울 홍제동에 문을 연, 일본인 전용 공동묘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은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묘지였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경성을 안내하는 책자에서는 이곳이 "질서적이고, 풍치적이고, 평정平靜하고, 위생적이고, 영지塋地가 모두 도로에 맞는 등 조건을 갖추며, …… 인간이 최후로 영원히 쉴 수 있는 완전한 묘소"라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공원화된 묘지였다. 이후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도시계획공원'에 관한 내용(1940)이 삽입되면서 '묘지공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1961년 법률에 사설묘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단법인에서 설치하는 묘지들이 '○○묘원' 또는 '○○공원묘지' 같은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름만 공원묘지일 뿐 실제 모습은 종전의 공동묘지보다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명실상부하게 공원화된 묘지는 1970년대에 등장하여 점차 확산되었는데, 정부의 묘지공원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관련 법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한 공설공원묘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까지 공동묘지의 분묘 형태는 대체로 전통적인 원형 봉분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공원묘지의 분묘 형태는 4각형의 평분으로 바뀌어 갔다. 묘의 석물石物도 1970년대까지 공동묘지에서는 비를 세우지 않거나 검소한 세로비석을 세우고 둘레돌[護石]을 두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1980년대 이후 공원묘지에는 옆으로 세우는 비[臥碑]에 사각형 묘 테가 조립된 것을 흔히 사용하며, 개인의 묘지에도 다소 화려한 석물을 꾸미기 시작했다.

국립묘지는 현 국립서울현충원이 1953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서울 동작구 동작동을 선정하여 국군묘지 부지로 확정하고, 1954년 3월 1일 정지공사를 착공한 이래, 연차적으로 묘역 등을 확장해 나갔다. 1976년 서

서울시립 용미리 제1 공원묘지 | 경기 파주 | 2014 | 박태호

울 국립묘지의 포화 상태에 대비하여 두 번째 국립묘지를 대전에 건립하기로 결정, 1979년에 착공하여 1985년에 준공하였다. 1996년 국립묘지 관리조직의 명칭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었다. 국립4·19민주묘지는 1963년도에 4·19묘지(공원)로 건립되었다. 1993년부터 3년간의 성역화사업을 거쳐 1995년 4·19국립묘지로 승격하였으며, 1997년 국립4·19묘지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국립3·15민주묘지는 1967년 마산 구암동 애기봉 현 위치에 묘역이 조성되었다가 1994년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성역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2002년에 국립3·15묘지로 승격되었으며, 2006년에 국립3·15민주묘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1993년 대통령 특별담화로 묘역 조성계획이 발표된 후 1994년 묘역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997년에 준공되었다. 2002년에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가 200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국립영천호국원은 참전유공자들의 안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국가보훈처에서 수립한 「향군 참전군인묘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1997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준공되었다. 2001년 개원 당시 명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영천호국원' 영천호국용사묘지 임시관리사무소였다. 2006년에 국립묘지로 승격하였고, 2007년부터 국가보훈처 직제로 편입되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영천호국원과 같은 계획에 따라 1998년 착공되어 2001년 준공되었으며, 이후 똑같은 경로를 걸어왔다. 국립이천호국원도 국가보훈처의 같은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2008년 준공됨으로써 수도권 일원의 안장대상자들을 안치하는 추모공원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국립산청호국원과 국립괴산호국원은 건립 중이다.

내용 무덤·묘는 봉분封墳만을 일컫는 말이며, 묘지는 봉분과 비석 등 부속 시설이 설치된 토지 영역을 말한다. 묘지는 법률상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포함한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으로서, 국가가 직접 설치한 것(국립묘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공설묘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장 신고하였거나 묘지로서 허가받은 토지(사설묘지)를 일컫는다. 공원묘지(또는 묘지공원)는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함으로써 묘지로서의 매장 및 추모 기능과 함께 이용자의 휴식에도 적합하도록 계획된 묘지를 말하며,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게끔 공원 또는 정원庭園 형태로 설계된다.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을 말한다. 각 묘지의 성격을 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설묘지: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종중·문중묘지는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법인묘지(보통 '공원묘지'라고 불리는 것)는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설묘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주로 설치한 지역의 주민이 사용하며, 다른 지역 주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요금을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
-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를 말하며, 국

립현충원의 안장 대상은 ①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②순국선열과 애국지사, ③현역군인, 소집 중의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 포함)으로서 사망한 사람, ④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⑤장군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⑥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과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 ⑦전상 군경 또는 공상 군경 사망자, ⑧순직 소방공무원, ⑨기타 공헌자, ⑩국가사회 공헌자 등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심의·결정한 사람이 안장된다. 국립민주묘지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공로자 등이 안장된다. 국립호국원에는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안장된다. 그리고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는 안장(합장)될 수 있지만, 국적상실자, 수형자, 탄핵 또는 파면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

특징 및 의의 사설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구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치하려면 도로·철로·하천구역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다,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 및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리고 묘지의 공원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묘지(공원묘지)는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고,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 군 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장례의 역사(박태호, 서해문집, 20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 후 납골(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10).

필자 박태호(朴台浩)

묘표
墓表

정의 묘 앞에 누구나 세울 수 있는 묘비의 한 종류.

역사 묘에 묻힌 사람의 신분을 밝히는 표지標識로는 봉분 앞에 세우는 묘비墓碑와 묘광墓壙에 넣는 묘지墓誌가 있다. 묘표는 묘비의 한 종류다.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공자孔子가 은殷나라 비간比干과 오吳나라 계찰季札의 묘비 글씨를 직접 써서 그들의 덕행德行을 기리고 후인後人으로 하여금 본받도록 한 사실에서 연유했다고 한다. 이에 후대의 유학자들은 공자의 뜻을 좇아 예禮와 효孝를 실천하고자 현인賢人과 조상의 묘를 정성껏 다듬고 묘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았던 만큼, 현세現世보다는 내세來世를 더 중요시하여 시신만 매장하거나 화장 후 묘지墓誌만 함께 매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법葬法이었다. 고려 말에 이르러 주자성리학朱子性理學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묘비를 건립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수량은 미미하였다.

공자로부터 시작된 유학은 여러 도학자道學者를 거쳐 송宋나라의 주자朱子에 의해 성리학으로 발전하였다. 성리학을 국시國是로 삼은 조선의 지배층에게 공자와 주자의 학행은 모든 것의 규범이 되었다. 그래서 묘치장과 묘비 건립을 예와 효의 실천 방법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개국 초에는 주자성리학을 이해하던 일부 선진적인 지식계층만 묘 치장과 묘비 건립을 행했을 뿐이다.

15세기 후반 성종대成宗代에 사림士林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주자성리학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16세기 후반 선조대宣祖代에 이르러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율곡栗谷 이이李珥에 의해 주자성리학이 조선성리학朝鮮性理學으로 심화 발전되면서 고유이념으로 토착화하자, 이제 조선성리학은 사회의 모든 면에 깊숙이 파고들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자 묘 치장과 묘비 건립도 이제 모든 계층에 걸쳐 일반화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내용 조선시대는 전 시기에 걸쳐 다양한 비석들이 세워졌다. 세운 위치와 비신碑身에 새겨진 글의 성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왕실의 각종 능陵에 세우던 능비陵碑로, 능표陵表와 능신도비陵神道碑가

있다. 둘째는 묘에 세우던 묘비로, 묘표墓表·묘갈墓碣·묘신도비墓神道碑가 있다. 그리고 셋째는 사찰에 세우던 사비寺碑로, 고승들의 탑비塔碑와 사찰의 연혁을 담은 사적비事蹟碑 등이 있다. 마지막은 기타비其他碑로, 선정비善政碑와 유허비遺墟碑 등이 있다.

조선시대 분묘 앞에 피장자被葬者의 신분만 간단히 기록해서 손쉽게 세울 수 있었던 가장 단순한 형태의 비석이 바로 묘표다. 세월이 지나도 자손들이 성묘 때마다 잊지 않고 알아볼 수 있도록, 앞면에는 큰 글씨로 누구 묘인지 신원을 쓰고 뒷면에는 건립 연대를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 묘표의 형식이다. 생전의 행적이 뚜렷하면 일정한 격식을 갖춰 피장자의 생애를 약술略述하기도 하였다. 이를 '묘표음기墓表陰記'라 한다. 묘갈이나 신도비보다 규모가 더 작고 건립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 건립하였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봉분 앞에 작은 돌비석을 세우는데, 높이는 4자이고 받침대 높이는 1자 정도로 한다고 했다. 그리고 17세기 유학자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1607~1684)가 후손에게 남긴 『정훈庭訓』에서는 관직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세운다고 하였으며, 또 가난한 사람이라도 표석과 상석床石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표석을 세울 수 없으면 상석을 조금 두껍게 하여 피장자의 신원을 큰 글씨로 새기라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명종실록明宗實錄』에 의하면 1551년(명종 6)과 1556년(명종 11) 두 차례에 걸쳐 왕명으로 서인庶人과 하천下賤은 표석을 세우지 못하도록 강력히 엄금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중서인中庶人은 양란兩亂을 통해 무너진 신분 질서 속에서 크게 성장하여 1663년(현종 4) 5월에 이르러서는 직첩職牒을 사들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의 상승을 꾀하고 사후에 묘소를 쓰면서 큰 비석을 세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묘표 건립 증가는 조선 말기까지의 일반적인 추세였으며, 규모와 양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였다.

특징 및 의의 묘표는 조상의 공덕功德을 밝히고 현양하고자 유교의 상례喪禮 절차에 따라 누구나 세울 수 있었던 묘비의 한 종류다. 묘표에 새겨진 음기는 조선시대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등의 연구에 귀중한 사료를 담고 있다.

매죽헌 이완의 묘표 | 경기 여주 | 2009 | 이민식

풍고 김조순의 묘표 | 경기 이천 | 2006 | 이민식

참고문헌 경기 묘제 석조 미술-상·하(경기도박물관, 2007·2008), 여주의 능묘와 석물(여주군향토사료관, 2005), 용인의 분묘 문화(용인문화원, 2001), 조선시대 陵墓碑에 관한 연구(이민식,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조선시대 신도비·묘비 연구(김우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필자 이민식(李敏植)

무복친
無服親

정의 참최, 자최, 소공, 대공, 시마의 다섯 가지 상복에 해당하지 않는 본종本宗, 모당母黨, 처당妻黨의 권속.

내용 『예기禮記』「문왕세자文王世子」에는 "친족 사이에 서로 도와야 할 상례에서, 조문해야 하는데 조문하지 않고 단문袒免해야 하는데 단문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처벌한다."라는 글이 있다. 이에 대해 정현鄭玄은 "'조문[弔]'은 6세 이후를 가리키고, '문免'은 5세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진호陳澔는 "4대가 되면 시마복을 하며 상복의 끝이다. 5대가 되면 친親이 다 끝나므로 단문袒免만 한다. 6대 이후에 대해서는 조문[弔]만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조의 부친을 함께 받드는 사람은 5세로서 단문을 하고, 고조의 조부를 함께 받드는 사람들은 6세로서 단문도 하지 않고 조문만 하는 동성同姓의 권속이 된다.

가마를 하는 문하생 | 경남 김해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개원례開元禮』에서 당구堂舅(어머니의 종형제)와 당이堂姨(어머니의 종부자매)에 대해 단문袒免을 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당의 경우에도 단문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의례儀禮』에서는 무복으로 규정되던 당구와 당이에 대해서도 인정상 단문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기』「분상奔喪」에서는 정현의 주를 통해 "『일분상례逸奔喪禮』에 '복이 없지만 단문을 하고 곡위哭位를 설치하는 경우는 형수와 아재비뿐이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는 단문이 본종의 동오세친同五世親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숙 간의 경우처럼 본래 복을 하지 않던 대상에 대해서도 점점 확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례』 '소렴' 조의 "다른 방에서 단, 괄발, 문, 좌를 한다."에 대한 본주에 "남자로서 참최복을 하는 사람은 단을 하고 괄발을 하며, 자최복 이하 5세조를 함께 하는 사람은 모두 별실에서 단과 문을 한다. 부인은 별실에서 좌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최 이하 단문까지를 복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문맥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김장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에서는 "『가례』 '소렴'에 5세조가 같은 자는 모두 단문을 하는데, 계빈啓殯으로부터 매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복장으로 임하는가?"라는 질문에, "복이 없는 친척에 대해서는 복식을 말하지 않았으니, 다만 조복을 입을 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단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무복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동일한 맥락에서 모당, 처당의 경우에도 복을 하는 권속을 제외한 나머지 권속을 무복친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무복친은 오복친五服親의 반대말로서 동종同宗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5세 이후의 권속을 가리키지만, 5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문을 하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무복친이 단문친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단문친은 무복친 가운데 유복친에 가장 가까운 권속이어서 단문이라는 특수한 복식을 하도록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家禮, 開元禮, 禮記, 疑禮問解, 한국의 상례(양승이, 한길사,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장동우(張東宇)

무인석
武人石

정의 능묘 앞에 세우던 무관 모습의 석인.

역사 문인석은 관대冠帶를 갖추고 홀笏을 들지만, 무인석은 갑주甲冑를 걸치고 검劍을 땅에 짚은 모습이 특징이다. 중국에서는 옹중翁仲 또는 직각장군直閣將軍이라고 부른다. 옹중은 인명人名으로 본래의 성은 완阮이고 춘추전국시대 진秦의 명장이다. 진시황은 그의 동상을 만들어 무공武功을 기념하였다. 이때부터 능묘에 석상石像으로 세워졌고 당대唐代에도 그 풍습이 이어졌다고 전한다. 직각장군은 황제의 호위를 담당한 무관직이다.

『신당서新唐書』「의위지儀衛志」에 의하면 아침 조회 때 문관文官은 동문東門에서 들어오고 무관武官은 서문西門에서 들어와 서로 마주 본다고 하였다. 당대 황릉 석인의 동문서무東文西武·문좌무우文左武右·좌문신우무장左文臣右武將의 배열 위치는 여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시대 왕릉에서 관복을 입고 흉갑胸甲을 착용한 무인석, 즉 관검석인상과 서역인 외모에 검을 쥐고 있는 호인상胡人像이 처음 등장한다. 고려시대 왕릉에서도 무인석을 세웠으나 묘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 조선시대 왕릉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인석이 문인석과 짝을 이뤄 세워졌다. 묘에 세운 무인석은 문인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량이 매우 적으나, 시기마다 양식과 규모가 다양하다.

내용 15세기 전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는 권문세가들의 묘에 비교적 활발하게 무인석을 조성한 시기였다. 당시의 무인석은 갑주와 융복戎服으로 무인 복식을 갖춘 후, 검과 철퇴를 짚거나 공수拱手 자세를 취하는 등의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이후 사림士林이 중앙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수량이 서서히 감소하더니 거의 소멸하다시피 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일부 묘에 드물게 등장할 뿐이다.

영조대英祖代에 영의정을 지낸 조현명趙顯命(1690~1752) 묘의 무인석은 만든 조각가의 이름이 최천약崔天若(?~1755)으로 밝혀진 특이한 사례여서 주목된다. 최천약은 왕실의 능묘석물·건축·옥공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한 예술가였다. 그는 공민왕릉 무인석을 모델로 조현명 묘의 무인석을 훌륭하게 제작했다. 영조도 소문을 듣고 "문무석文武石은 요즘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조현명의 묘에만 세웠다고 한다. 조현명이 항상 장수將帥로 자처하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기풍氣風을 따라 무석武石으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최천약이 조현명의 남긴 뜻을 알아서 한 것인가?"라며 칭찬하였다. 영조의 발언을 통해 당시 문무석의 제작 현황과 무석의 제작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무인석이 문인석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게 조성된 뚜렷한 법률 규정이나 근거는 없다. 다만, 몇 가지 다양한 설로 추정할 뿐이다. 첫째, 문관 출신은 문인석을, 무관 출신은 무인석을 설치한다는 설이다. 그러나 대표적 문관인 영의정 황희黃喜(1363~1452) 묘에 무인석이 서 있고, 대표적 무관인 충무공 이순신李舜臣(1545~1598) 묘에는 문인석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문무관의 출신 성분을 떠나 대부분 문인석만 세운 것이 지금까지의 분묘 석물조사 결과이다. 둘째, 무인은 곧 군사력을 의미하므로 사병私兵을 둘 수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설치를 제한하였다는 주장이다. 셋째, 공신功臣들의 묘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는 설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역대 공신들의 묘를 살펴본 결과 무인석은 극소수만 설치되었을 뿐 거의 모두 문인석을 설치하였다. 넷째, 조선은 문치주의文治主義를 표방한 나라였으므로 무인석보다는 문인석을 선호하였고, 특히 16세기 중반 이후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노골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풍수지리상 지기地氣가 매우 두드러진 곳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문인석 대신 무인석을 세웠다는 설이다. 여섯째, 앞서 조현명 묘의 무인석 설명에서 소개한 것처럼 망자의 생존 시 기풍이나 유언을 통한 제작이다.

특징 및 의의 무인석은 조선시대 무인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석조 예술품이자 부족한 무인 복식 연구의 좋은 참고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경기 묘제 석조 미술-상·하(경기도박물관, 2007·2008), 조선 18세기 조각가 崔天若 연구(김민규, 문화재4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조선왕릉 석인상 연구(전나나,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선전기 왕릉 무석인 연구(조영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여주의 능묘와 석물(여주군향토사료관, 2005).

필자 이민식(李敏植)

무석인 | 국조상례보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귀록 조현명 묘의 무인석
충남 보령 | 2014 | 이민식

문명
問名

정의 주육례周六禮의 두 번째 혼례 절차로 신랑 집에서 사자使者를 보내 신부 이름을 묻는 의식.

역사 문명問名의 의식은 중국 주周나라의 주공周公에 의해 저술된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송대宋代에 이르러 『가례家禮』의 혼례가 의혼議昏·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의 네 가지 절차로

축약되면서, 『의례』의 문명은 『가례』에서 간략히 의미만 언급되었다.

내용 『의례』에 기록된 문명은 납채의 예가 이루어진 뒤 신랑 집에서 보낸 빈賓(손님)이 예물인 기러기를 들고 신부 집의 문밖에 서서 신부 이름을 청하여 묻는 것이다.

"사자가 말하기를 '제가 이미 명을 받들어 돌아가 점을 치고자 하나이다. 이에 부족함을 무릅쓰고 여쭙기를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라고 한다. 신부 집의 주혼자가 답하기를 '제 딸이 채택되었으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다. 이에 신부 집의 주혼자가 허락하면 빈이 문 안으로 들어가 기러기를 드리고, 주혼자는 기러기를 받은 후 동쪽 계단의 위쪽으로 돌아와 서쪽을 바라보고 선 채 신부의 이름을 빈에게 알린다. 그러고 나서 빈자儐者에게 예를 갖추어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청한다. 빈은 한 번 사양한 후 응한다. 신부 집의 주혼자는 단술[醴], 포脯, 젓갈[醢] 등으로 빈을 대접한다. 신부 집의 주혼자가 대문 밖까지 나가 빈을 배웅하고 재배한다."

주자朱子 역시 『가례』에서 문명의 의미가 신부 이름을 물어 장차 그 길흉을 점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가례작의嘉禮酌儀』에서 문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날 그대로 문명의 예를 행하는데 경첩庚帖으로 대신한다. 옛날에는 길흉을 점치기 위해 문명을 하였다. 그때 사자가 묻는 말은 '○○○가 명을 받잡고 길흉을 점치고자 감히 따님이 어느 성씨 부인의 소생인지 여쭙습니다.'라고 한다. 이에 신부 집의 주혼자가 답하기를 '어른께서 예의 절차를 갖추어 택하시니 ○○○는 감히 사양하지 못합니다.'라고 한다. 『가례』에는 문명의 절차가 없다. 살펴보건대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신부 집에서 예禮를 행하므로 신부 집에서 날을 잡았다. 이제 친영을 한다면 마땅히 신랑 집에서 날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부의 경첩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으로 문명의 예로 삼으면 진실로 고례의 뜻에 맞는다 할 것이다. 다만 고례에서는 납채의 예를 행할 때 연달아 문명을 하였으므로, 지금 따로 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자가 미천한 아랫사람이므로 주혼자에게 직접 말을 전할 수 없으니, 이제 따로 단자單子를 만든다. 그 글은 '이제 명을 받자왔으니 신부 나이를 여쭙습니다.'라고 쓴다. 그리고 사자가 서신을 주면 신부 집에서도 단자로 답한다. 그 글은 '예의 절차를 갖추어 명이 있으시니 저는 감히 사양하지 못합니다.'라고 쓰고, 끝에 신부의 생년월일을 적어 사자에게 주면 고례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빈을 대접하는 예를 행한다. 고례에는 빈을 대접할 때 단술 한 사발, 포 하나, 젓갈 한 그릇뿐이었고, 『가례』에서는 술과 음식으로 대접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문명을 통해 신부 이름을 묻거나 신부 어머니의 성씨를 묻는 것은 신부의 외가 쪽 가계나 전통을 알기 위함이다. 또한, 다산 견해에 따르면, 납채의 과정에서 신부 집으로 신랑 사주를 보내고, 그에 상응하는 의식으로 문명의 과정에서 신부 사주를 신랑 집에 보내는 것은 그를 통해 두 사람의 길흉화복을 살피기 위함이며, 나아가 혼인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전 절차의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家禮, 嘉禮酌儀, 儀禮,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허인욱, 돌베개, 2012).

필자 최배영(崔培英)

문상
聞喪

정의 상주가 출타 중에, 또는 부임지에서 존속의 부고訃告를 들었을 때 하는 일.

역사 문상은 출타 중에, 또는 부임한 곳에서 존속의 부고를 들었을 때 하는 행위이다. 이미 『예기禮記』의 서른네 번째 항목이 「분상奔喪」이고, 이후 다른 예서에서 문상聞喪을 다룬 것을 보면, 문상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출타 중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으면 곡으로 부고를 전달한 사자使者에게 답한다. 지극히 슬퍼

하며 돌아가신 연유를 묻고 나서 다시 곡한다. 이어 바로 옷을 갈아입는데, 초종의初終儀의 '역복불식易服不食' 때와 같다. 남자는 관과 웃옷, 부인은 머리 장식과 화려한 옷을 벗는다.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으며 음식을 먹지 않고 가슴을 치며 곡한다. 베를 찢어 사각건四脚巾(복두와 같은 것)을 만들고, 흰 베적삼을 입고, 새끼줄로 띠를 만들어 두르고 마구麻屨(삼신)를 신는다.

준비가 되면 상가喪家로 출발하는데, 이를 '분상奔喪'이라고 한다. 하루 100리를 가지만 밤에는 가지 않는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도적 등의 해害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몸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번잡한 것도 피한다. 길을 가다가 슬프면 곡한다. 만약 상가에 자손이 없으면 도중에 조석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전奠을 올린다. 집이 있는 시도市都의 경계나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면 또 곡한다. 집에 도착하면 영구 앞에서 재배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나아가 곡한다. 4일이 지나서 성복成服한다.

만약 초상 소식을 듣고도 분상하지 못하면 고인의 자리를 만드는데, 교의交椅를 놓아 시신과 영구를 대신한다. 곡하는 일은 예법에 따르지만 전奠을 차리지는 않는다. 만약 상가에 자손이 없으면 출타지에서 전을 차린다. 분상하지 않았을 때에도 분상 때처럼 4일 후에 성복한다. 재최齊衰 이하 복을 입는 사람은 초상 소식을 들으면 자리를 마련하고 곡한다. 재최복을 입는 사람은 고향이 보이면 곡한다.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사람은 문이 보이면 곡하고, 소공복小功服을 입는 사람은 문에 이르러 곡한다.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사람은 문에 들어가서 곡한다.

그런데 이미 장사葬事를 지낸 뒤에 상가에 도착했다면, 묘소에 가서 곡한 후에 성복한다. 만약 부고를 듣고 곧바로 상가를 향해 분상하였다면 반드시 상가에 와서 성복하고, 분상하지 못하였다면 출타지에서 성복한다.

특징 및 의의 유교이념에서는 임종臨終을 지키지 못한 것을 큰 불효不孝로 여긴다. 그래서 출타하거나 임지에 나갔는데 부모의 초상을 당했을 경우, 초상의 부고를 받고 상주가 해야 할 행동을 규정한 것이 문상聞喪이다. 특히 종법宗法을 중요시하여 사당을 짓고 신주를 모시면서 세거지世居地를 형성한 경우, 외지로 부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당과 신주를 쉽게 옮길 수 없으므로 당사자만 부임할 때가 많은데, 이에 대비하여 문상이라는 절차가 등장하였던 것이다. 유교식 상례에서 문상은 조弔 다음에 위치하지만, 순서나 절차와는 상관이 없고, 병렬적 순서의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禮記,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문인석
文人石

정의 능묘 앞에 세우던 문관 모습의 석인.

역사 능묘에 석인상石人像을 세우는 전통은 중국 고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하나 유물로 확인되는 것은 한대漢代 이후부터다. 그리고 당대唐代에 이르러 석인상은 능묘제도의 일부로 체계화되면서 문인석과 무인석으로 구분되었고, 송대宋代를 거쳐 명청대明淸代까지 계승·발전되었다.

우리나라는 당의 영향을 받은 통일신라시대 왕릉에서 석인상이 처음 등장하지만, 무인석만 설치되었을 뿐이다. 반면, 고려시대 왕릉에서는 문인석과 무인석을 뚜렷이 구별하여 세웠다. 고려 말의 묘에서도 문인석은 드물게 확인된다.

조선시대 석물을 대표하는 것은 문인석이다. 각종 문헌자료에 석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부분 문인석을 의미한다. 문인석은 시기마다 양식과 규모가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면서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왕릉이나 묘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석물 중 하나가 문인석이다.

내용 조선 초에는 석인 조성과 관련해 뚜렷한 제도가 없었다. 1474년(성종 5)에 처음으로 신분별 설치 규모를 정하였다. 그리고 서인庶人이나 하천下賤의 석인 조성은 1551년(명종 6)과 1556년(명종 11) 두 차

문석인 | 국조상례보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석 김만기 묘의 문인석
경기 군포 | 2005 | 이민식

례에 걸쳐 금지하였다. 1698년(숙종 24) 편찬된 『수교집록受教輯錄』에 의하면 서인은 2척의 석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었으나 여전히 하천은 금지하였다.

유몽인柳夢寅(1559~1623)이 지은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묘 앞에 석인을 만들어 세우는 것은 모두 공양하여 바치는 음식에 도깨비나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여 석인이 벽사辟邪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유태李惟泰의 『정훈庭訓』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표석表石과 상석床石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석인은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성묘할 때 표석이 있어야 제대로 묘를 찾을 수 있고 상석이 있어야 제사 음식도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석인은 장식 석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대 말경 석인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에 석양石羊이 나타나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관련 법규나 자료가 전하지 않아 정확한 연유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규상李奎象(1727~1799)이 지은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에 의하면 명문대가 출신이자 효종의 사위인 금평도위錦平都尉 박필성朴弼成(1652~1747)이 사연이 있어 아버지 산소에 석인을 없애고 석양을 설치하였는데, 다른 문중도 점차 이를 따라 하면서 석인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문인석은 착용한 복식 형태에 따라 크게 복두공복형幞頭公服型과 금관조복형金冠朝服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두공복은 문무 관료가 공사公事에 참여할 때 입던 옷과 머리에 쓰던 검은색 관모冠帽이고, 금관조복은 국가의 중요 의례 때 입던 화려한 장식의 예복禮服과 머리에 쓰던 황금색 관모다. 조선 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는 능묘에 모두 복두공복형 문인석만을 세웠으나, 중종대中宗代 말에 이르러 금관조복형 문인석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당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림士林이 훈구勳舊 세력의 집권으로 백여 년 동안 침체하던 유학풍儒學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명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관복官服 개정 논의를 거쳐 명의 금관조복을 받아들인 영향이다. 결국, 16세기 말 금관조복형이 복두공복형보다 급격히 증가하더니 17세기 중반에는 금관조복형만 조성되어 처음 등장한 지 백여 년 만에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유교국가였던 조선은 의례를 중요시하였던 만큼 금관조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던 것도 유행의 배경이었다.

이후 금관조복형은 시기마다 양식과 규모가 다양하게 변화·발전하면서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숙종·영조·정조대에는 사실적인 조각에 신체 비례가 균형을 이룬 우수한 문인석이 제작되어 조선시대 문인석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문인석 제작은 급격히 감소하여 조선 말까지 일부 묘에서만 간혹 등장할 뿐이었다. 한편, 문인석을 대신하여 시자형侍者型 석인과 동자석童子石이 특정 시기에 잠시 등장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문인석은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어떤 특징을 보이며 발전해 가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석물 조각품으로, 불교문화의 석불石佛과 비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7~18세기 문인석에 나타난 조복 연구(한주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조선시대 금관보족형 문인석 연구(최윤정,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선왕릉 석인상 연구(전나나,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선후기 능묘 석인상 연구(김은선,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이민식(李敏植)

문중
門中

정의 특정 조상의 부계·남계 자손들로 구성된 친족 집단의 조직체.

역사 문중은 조상을 숭모하고 자손들 상호 간의 친화와 단결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부계 혈연의식과 조상숭배의식을 정신적 바탕으로 하여 조직되고 활동한다. 그러므로 부계 혈연의식이 미약하거나 조상숭배의식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문중 조직이 출현하기 어렵다. 고려시대에 문중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려시대에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 동성(동본)혼, 근친혼이 널리 행해졌고, 자녀 균분상속과 외손봉사가 매우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부계 혈연의식이나 조상숭배의식이 강하게 형성되기 어려웠고, 항구적으로 제사를 봉행하고 묘소를 관리할 문중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문중이 조직되고 그 움직임이 활성화된 것은 종법사상宗法思想이 보급되고 부계 혈연의식과 조상숭배의식이 강화된 17세기 이후의 일로 보인다. 종법사상은 고려 말에 성리학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도입 초기에는 소수의 유학자 사이에서만 수용되었을 뿐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조선이 개국되고 성리학을 국가경영의 기본 원리로 삼으면서 종법사상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계승의식과 조상숭배의식이 강화되었고, 윤회봉사輪回奉祀가 소멸됨으로써 장남봉사가 보편화되었다. 또한, 서류부가의 기간이 단축되어 혼인 후 처가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아들들이 돌아와 본가 주변에 분가 정착함으로써, 한 성씨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종족마을(집성촌)이 곳곳에 생기게 된다. 문중조직은 바로 이러한 부계 혈연의식의 강화와 부계 친족제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출현하여, 조선 중기 이후 종족마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내용 장남봉사長男奉祀와 사대봉사四代奉祀의 원칙이 정착된 조선 중기 이후에는 4대(고조부모)까지의 조상에 대해서는 봉사손(종손)의 가산으로 기제사를 모시게 된다.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이 5대를 넘으면 기제사를 중단하고 묘제로 옮기게 된다. 이를 '제천祭遷'이라 한다. 기제사를 지제止祭하고 묘제로 제천하게 되면 봉사손의 가산에서 더는 제사 경비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5대 이상의 조상 제사와 묘소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토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위토와 묘소를 관리하고 묘제를 봉행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 조직을 흔히 '문계門契' 또는 '종계宗契'라 부른다. 세대가 거듭되어 묘제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수가 늘어나고 위토가 증가하게 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한다. 이렇게 문계가 성장 및 발전하여 체계화된 조직이 문중이다. 이런 점에서 문계는 문중의 시원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문중은 최고 조상의 가계를 계승한 종손宗孫이 결합의 중심이 된다. 종손은 최고 조상의 가계계승자로서 제사를 주재하고, 종가와 가묘를 지키며, 조상의 유품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 종족 성원으로부터 특별히 우대되고 존숭尊崇된다. 그러나 종손은 운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문중 조직의 지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는 인물이 문장門長이다. 문장은 나이와 항렬이 높고 학덕이 있는 종족 성원 중에서 추대되었고, 추대된 문장은 종신토록 그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문장은 종손을 보좌하여 문중의 의사를 결집하고 종법 질서를 확립하는 중심인물로, 종손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하기도 하였다. 종손과 문장 이외에 문중의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 명의 유사有司가 종손과 문장의 지휘를 받아 각기 소관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문중의 일상적인 업무는 종손과 문장, 유사가 협의하여 처리하지만, 주요 사업의 결정과 결산보고 및 유사의 선출 등 중요한 사항은 문중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 문중 총회를 '문회門會' 또는 '종회宗會'라 한다. 문중에 따라서 문중조직 자체를 문회, 또는 종회라 부르기도 한다.

문중은 특정한 조상의 자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합 범위의 넓고 좁음에 따라 동심원적 중첩 구조를 가진다. 고조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집단堂內集團의 소규모 문중에서부터 입촌조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단위의 문중, 일정 지역 내의 여러 마을을 포괄하는 정착시조 중

심의 문중, 파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중, 시조 이하 모든 자손을 망라하는 동성동본의 대문중(대종중)으로 확대된다. 이들 중에서 마을 단위의 문중이나 마을 단위의 여러 문중이 결합한 정착시조 중심의 문중이 강한 결합력을 보여주며, 특히 중심 조상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일 경우, 문중조직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

문중의 기능은 조상숭배, 문중 성원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 사회적 위세의 과시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제사(묘제)의 봉행과 묘소의 관리 및 조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숭모사업 같은 조상숭배가 어느 문중에서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기능이다. 이런 점에서 문중은 부계 혈연의식을 바탕으로 특정 조상의 자손들이 항구적으로 묘제를 거행하고 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계보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보와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원들이 상호 친목을 위해 조직한 지역조직인 화수회花樹會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문중이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문중 성원들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 즉 종족의식을 가지고 강하게 결합하여야 하며, 집단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종족의식은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는 동조의식同祖意識과 가계계승의식, 조상숭배의식을 내용으로 하여, 배타적 족결합의식으로 표출된다. 문중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은 조상의 위세, 자손의 수와 밀도, 문중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중재산 등이다.

특징 및 의의 문중은 조선 중기 이후 부계 혈연의식이 매우 강화된 한국사회의 기층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이다. 혈통의 계승을 넘어서서 조상의 사회적 지위와 조상이 남긴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한국인의 사회관계와 행위규범의 형성에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제공하였으며,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전승하는 주체로서 오랜 세월 이바지해 왔다.

양변적兩邊的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서구의 여러 사회에 비해 한·중·일 동양 3국은 부계 친족제도를 공유하고 있지만, 부계 혈연집단의 조직화의 양상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제자諸子균분상속의 전통을 가진 중국의 '종족宗族'은 종손의 존재가 주목받지 않으며, 유동적인 족장族長을 중심으로 결합하여 조직의 결합력이 약하고 조상숭배의식도 강하지 않다. 일자一子단독상속의 전통을 가진 일본의 '동족同族'은 단독으로 가계를 상속한 본가本家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며, 혈연을 강조하지 않고 비혈연자의 가계계승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서, 혈연집단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인지적계보관계認知的系譜關係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서 조선 중기 이후 장남봉사와 장남우대상속을 바탕으로 형성·발전된 한국의 문중은 비혈연자의 참여를 엄격히 통제하여 혈연의 순수성을 특히 강조하며,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결합의 중심도 종손과 문중으로 이원화되어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었다. 가장 전형적인 부계 혈연집단의 계보조직이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농촌인구가 감소하여 문중의 조직기반이었던 종족마을이 해체 위기를 맞고, 출산율이 감소하여 한자녀 가족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문중조직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동족집단의 구성원리(이창기, 농촌사회 창간호, 한국농촌사회학회, 1991),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이창기(李昌基)

반곡
反哭

정의 장사를 지낸 뒤 혼백 혹은 신주를 영거靈車에 모시고 집으로 천천히 돌아오면서 하는 곡.

내용 시신을 무덤에 묻고 나면 신주를 써서 무덤 앞에 제물과 함께 진설한 후 제를 지낸 뒤에 집으로 혼을 모시고 돌아온다 하여, 반곡을 '반혼'이라고도 한다. 자제한 사람은 머물러서 광중의 흙을 메우고 봉분을 만들 때까지 살펴보게 한다.

반혼은 장례 행렬이 갔던 길로 돌아오며 천천히 무시로 곡을 한다. 하관하고 돌아올 때는 빨리 걷지 않는다. 장지로 갈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라가

반곡 | 경남 합천 | 1988 | 국립민속박물관

면서 울며 사모하듯이 하고, 돌아올 적에는 어버이가 영거에 계신 듯이 슬픔을 다한다. 집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면 다시 곡을 시작하여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다. 집에 도착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궤연几筵(지청 또는 상청이라고도 함)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상주 이하 모두 극진히 곡을 한다. 일반 조객들도 조문을 한다. 이로써 장송의례가 끝나게 된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생시와 같이 상을 차려 궤연에 올리고 조석으로 곡한다. 매월 초하루[朔]와 보름[望]에는 상식상에 주酒·과果·포脯를 더 차려서 받들어 올린다. 반곡을 하고 나면 기년朞年과 9개월의 상복을 입는 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잔치는 할 수 없다.

특징 및 의의 반곡이 끝나면 1년 상과 9개월을 복을 입는 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소공복小功服 이하의 상복을 입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다만,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의 먼저 돌아가신 기년상의 경우 상주는 상기를 마칠 때까지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朱子家禮.

필자 정종수(鄭鍾秀)

반기
飯器

정의 제물의 가장 기본인 밥, 즉 메를 담는 그릇.

내용 '메'는 인도에서 유래된 말로,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하면서 불전에 올리는 밥을 '메'라고 했다. 이후 유교식 제사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멧밥', '젯메', '멧진지'라고도 한다. 『예기禮記』에서는 "밥과 국은 제후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없다."라고 하여, 메가 주된 음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사에 차리는 밥을 '메'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의 차별화를 위해서이다. 젯메, 즉 제삿밥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잡곡밥을 올리지 않고 쌀밥을 올렸다. 반기는 '꼭지바리'라고 불리는 그릇과 같은 모양으로 낮은 굽과 뚜껑이 있다. 대개 남자의 메를 담는 유기鍮器 주발은 대략 지름 11㎝, 높이 6.5㎝ 정도이고, 부인의 메는 지름 10.5㎝, 높이 5.5㎝의 주발보다 조금 작은 유기 바리에 담는다. 모두 뚜껑이 있다. 또는 지름 12㎝, 높이 9.8㎝, 아래 지름 15㎝의 뚜껑이 있는 유기 반기, 그리고 지름 11㎝, 높이 8㎝의 뚜껑 있는 유기 반기 등을 쓰기도 하였다. 목기木器 반기도 이용되었다.

반기와 갱기 | 충현박물관
전주 이씨 오리 이원익 종가에서 제사 때 사용.

특징 및 의의 제사를 지낼 때 반기에 메를 수북하게 담고 뚜껑을 덮는다. 뚜껑을 덮는 것은 밥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일상의 밥상에서 밥(메)과 국(갱)은 제사상에서도 주된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조상신을 산 사람과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하는 일상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서원이나 향교에서 거행되는 향사에서는 밥 대신 생쌀을 비롯하여 생기장·생조 등을 차리는가 하면, 국은 올리지 않는다. 이들 제물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비일상적 속성을 나타내고, 제사상의 밥과 국은 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조리되어 차려진다는 점에서 일상적 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종가의 제례와 음식10-안동김씨 보백당 김계행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월인, 2006), 통과의례음식(이춘자 외, 대원사, 1997), 한국음식대관5-식생활 기명기구(윤덕인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한국의 식생활 풍속(강인희, 삼영사, 1984).

필자 윤덕인(尹德仁)

반친영
半親迎

정의 한국의 전통적 혼속인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혼인절차에 친영혼의 혼인절차 일부를 첨가하여 마련한 조선 중기의 혼인방식.

역사 친영혼에서는 성혼 당일 신랑 집에서 신혼부부가 교배례交拜禮에서 합근례合巹禮로 이어지는 상견례(당일상견례)를 한 후 동침하였다. 또한, 상견례 다음날 시부모를 뵙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행하고 신랑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 남귀여가혼에서는 성혼 첫날 신부 집에서 동침부터 한 후 3일째 되는 날에야 상견례(삼일상견례)를 하였다. 또한, 신혼생활을 신부 집에서 시작하여 시부모를 뵙는 것은 별도의 날을 잡아야 했다. 성리학을 신봉한 사대부 가운데 좀 더 고례古禮를 충실히 지키고자 하는 일부 인사들은 일찍부터 전통 혼인제의 신부 집 거주방식이 양이 음을 따르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른 친영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또한, 동침부터 먼저 한 후 3일째에야 상견례를 치르는 혼인절차도 예의에 벗어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거주제의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을 바꾸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비롯해 습속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친영의 시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부 집에서의 신혼생활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주는 남녀균분상속제나 음서제蔭敍制와 같은 제도가 유지된 것도 남귀여가혼을 존속시킨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성리학에 대한 존숭이 절정으로 치닫던 16세기에 이르면 친영례의 시행을 강요하는 대신 남귀여가혼의 절차 중 외설스럽다고 지적받는 삼일상견례만이라도 당일상견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상견례를 성혼 당일 동침 이전에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선도하였던 것은 서경덕徐敬德과 조식曺植이었다. 명종 초에는 당일상견례에 의한 혼례가 조정朝廷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재야에서도 이황李滉·조식·정구鄭逑 등의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그 시행이 독려되고 있었다. 실제로 당일상견례는 중종대에 서경덕 아들의 혼인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명종·선조대를 거치며 조식·이황 등의 자녀들이 혼인할 때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반친영은 이렇게 남귀여가혼의 혼인절차 일부를 수정한 당일상견례가 어느 정도 사족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하자, 이에 고무된 일부 인사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혼 다음날 시부모를 뵈러 가는 명일현구고례까지 채택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다.

내용 명종대에 마련되었다고 알려진 반친영은 혼례장소는 속례인 남귀여가혼과 마찬가지로 신부 집으로 하되, 혼인절차는 친영혼의 절차를 원용하여 당일상견례와 명일현구고례를 채택하였던 혼인방식이다. 혼례를 신부 집에서 치른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자신

의 집으로 맞아와 혼례를 치른다는 친영제 본래의 정신에 배치되지만, 이를 '반半친영'이라 명명하였던 것은 남귀여가혼의 혼인절차를 변경하여 친영제의 혼인절차 일부를 받아들였음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즉 친영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혼인 당일 전안례奠雁禮와 함께 당일상견례를 시행할 뿐 아니라, 다음날 바로 신부를 맞아 신랑 집으로 돌아와 시부모를 뵙는다는 점에서 '친영'의 요소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반친영은 혼례 및 신혼생활의 장소를 신부 집으로 하는 전통적 남귀여가혼을 바탕으로 일부 혼인절차를 친영제의 혼인절차로 바꾼 점을 강조한 혼인방식이라 하겠다.

초창기 연구에서는 당일상견례를 선도한 서화담과 조식을 반친영의 창시자로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삼일상견'·'삼일대반三日對飯'을 시부모를 뵙는 '현구고례'로 오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일상견'과 '삼일대반'을 일부 지방의 풍속인 '삼일친영'(혼인 3일째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혼인방식)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반친영'이라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삼일상견'이란 혼례 3일째에 신혼부부가 함께 음식을 먹는 '삼일대반'을 일컫는 것으로, 전통적 남귀여가혼의 한 절차일 뿐이다. 또한, '반친영'도 혼인 다음날 시부모를 뵈러 가기는 하였지만, 남귀여가혼과 마찬가지로 혼례 후 거주지를 처가로 했다는 의미에서 후대의 '삼일친영'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반친영에 대한 이러한 오해·착오가 오랫동안 불식되지 못하고 널리 수용되었던 것은 성리학의 확산과 함께 혼인방식도 전통적인 남귀여가혼에서 친영혼으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예단이 강하게 작용했던 탓으로 보인다.

혼례 후 상당기간 처가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당시에 반친영의 두 번째 요건인 명일현구고례의 시행은 그다지 쉽지 않았다. 현구고례를 마치고 귀가해야 할 터인데, 신랑 집과 신부 집의 거리가 당일 왕복할 만큼 가까운 거리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친영을 행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반친영을 행한 경우에 이를 '반친영'이라 기록하지 않고 그냥 '친영'으로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 이후에도 신부 집에서 혼인생활을 하는 거주제가 완강히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친영제의 시행은 거의 희소하여 친영례의 요소를 많이 수용한 '반친영'을 '친영'으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친영을 행하였다는 기록은 간혹 나타나는 반면, '반친영'의 시행을 명시한 구체적 사례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대의 문집에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에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친영이 간혹 행해지고 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반친영을 지칭한 것일 수 있다. 특히 서울에 사는 집안끼리의 혼인인 경우에는 거리로 인한 물리적 장애는 없었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반친영을 시행하는 것이 쉬웠으리라 보인다. 당일 상견례의 시행이 서울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기록도 현재 벼슬하고 있는 사족들이 집중된 서울에서 반친영의 시행에 가장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1810년 집안의 혼례서로 저술한 『가례작의嘉禮酌儀』에서, 신부 집에서 행례하는 서울 귀가貴家의 혼인방식을 일컬어 "어찌 친영이 아니겠는가?"라며 반문하였던 것도 혼례 후 바로 시부모를 뵐 수 있었던 서울 사대부들의 반친영 혼인을 지칭한 것이었다.

특징 및 의의 반친영은 한국의 전통적 혼인방식인 남귀여가혼의 절차에 중국 전통의 혼인절차인 친영의 절차 일부를 접목한 것으로서, 16세기 이후 서울이라는 특정지역의 일부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혼인방식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혼인방식을 외래의 친영제로 바꾸는 대신 남귀여가혼 위에 친영혼의 요소를 일부 가미함으로써 전통혼례와의 타협을 모색한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친영이 보편화되지 못하자 인조대 무렵 친영과 전통혼례와의 타협이라는 기조 위에 가관친영假館親迎이라는 또 다른 타협책을 출현케 하는 징검다리 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참고문헌 조선의 혼속변천과 그 사회적 성격(김일미, 이화사학연구4, 이화사학연구소, 1969), 조선전기 혼인의례와 혼인에 대한 규제(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장병인, 조선시대사학보45, 조선시대사학회, 2008),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장병인, 역사와현실58, 한국역사연구회, 2005), 조선 혼인의 주요 형태인 솔서혼속고(손진태, 조선 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필자 장병인(張炳仁)

반함
飯含

정의 죽은 사람의 입에 쌀이나 구슬, 또는 엽전을 물리는 상례喪禮의 한 절차.

내용 고례古禮에는 찹쌀과 금옥전패金玉錢貝를 망인亡人의 입에 채웠으나, 지금은 쌀을 물에 불렸다가 물기를 뺀 다음 버드나무로 만든 숟가락으로 세 술을 망자의 입에 넣는다.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힌 뒤에 상주가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물에 불린 쌀을 망인의 입 안에 세 번 떠 넣는다. 먼저 입 안에 차례대로 오른쪽과 왼쪽, 가운데에 넣는다. 대개 첫술을 넣을 때에는 "백 석이오."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천 석이오", "만 석이오"라고 한다. 그다음에 동전이나 주옥珠玉을 입에 물리기도 한다. 동전을 입 안에 넣을 때에도 "백 냥이오", "천 냥이오", "만 냥이오"라고 말한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멥쌀 또는 찹쌀을 물에 불려 반함에 사용한다. 강원 지역에서는 동전을 세 조각으로 쪼개서 입속에 넣어 준다. 전북 순창 지역에서는 엽전 세 개를 먼저 넣고 쌀을 넣는다. 쌀을 넣을 때는 동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숟가락처럼 깎은 다음 사용한다. 강원 강릉 지역에서는 시신의 입에 불린 쌀 외에 어떤 것도 넣지 않는다. 물에 불린 쌀을 망인의 입에 세 번 넣으면서 하는 말도 지역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백 석, 천 석, 만 석", "천 석, 이천 석, 삼천 석", "천 석, 만 석, 억만 석" 또는 "백 술, 천 술, 만 술" 등이다.

특징 및 의의 장례를 치를 때 반함하는 쌀과 돈, 주옥은 죽은 사람이 저승 가는 동안이나, 저승에 간 뒤 먹고 쓸 양식과 용돈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비는 후손의 바람도 담겨 있다고 한다. 반함을 할 때 버드나무 숟가락을 쓰는 이유는 민간에서 생산력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동물이나 식물을 신성시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잘 살고, 이른 봄에 싹이 돋으며, 번식력이 강하므로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드나무로 숟가락을 만들어 반함을 하는 데에는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 가서 재생하여 잘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1(경기도박물관, 1998), 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창솔, 2004),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종합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 한국인의 삶과 문화(최운식, 보고사, 2006),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최운식(崔雲植)

발상
發喪

정의 망자의 죽음을 받아들여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곡을 하며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일.

역사 발상은 사전적으로는 '상을 숨기다[匿喪]'의 반대의미로, 사람이 죽으면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조선의 용례는 대부분 군주의 상에 대한 것으로, 군주가 사망한 뒤 이를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뜻이다. 그 때문에 발상을 부고訃告와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예서禮書에서는 발상을 특정한 의절로 사용한 용례가 없다. 다만, 1969년 발표된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제17조에 "(발상)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맨발이나 머리 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곡은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는 '부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례家禮』의 초종의식 중 초혼을 한 뒤에도 망자가 소생하지 않으면, 상주·주부·호상·사서·사화 등 상례를 진행할 때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어서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을 새롭게 발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내용 『가례』에서는 "아내·자식·며느리 등은 관과 정장을 벗고 머리를 풀며, 남자는 상의의 앞섶을 허리띠에 꽂고 맨발을 하며, 복에 해당되는 나머지 사람은 모두 화려한 장식을 제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 갈아입는 옷의 경우 『가례』에서는 부주附註로 "심의深衣를 입고, 성복成服 때까지 바꾸어 입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례비요喪禮備要』도 『가례』의 규정을 따

라 심의를 착용하게 했으며, 심의가 없으면 직령의直領衣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용하였다. 『사의士儀』에서는 심의가 없다면 흰 베로 된 도포道袍로 대신해도 좋다고 하였다. 여자의 경우 『상례비요』는 흰색의 장옷을, 『상의절요喪儀節要』는 옅은 색의 치마저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마음 때문에 자식들은 3일 동안, 기년과 9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사람은 세 끼를, 5개월과 3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사람은 두 끼를 먹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징 및 의의 예서에 따르면, 부고를 하는 것 이외에 상이 났음을 알리는 특정한 절차는 없다. 현행 상례의 발상을 전통 상례와 관련하여 보면, 발상은 초혼을 하고도 소생하지 않는 망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상례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의절이다. 전통적으로 군주상에는 별도로 부고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발상은 내외에 군주의 상을 알리는 부고의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가례私家禮에서는 부고의 절차가 초종의 마지막 단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상은 망자의 사망을 받아들여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곡을 하여 이웃에게 초상이 났음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 士儀, 喪禮備要, 전통 상례(임재해, 대원사, 200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대상장예속(이여삼, 심양출판사, 2003).

필자 장동우(張東宇)

발인
發靷

정의 살던 집을 떠나 묘소로 가는 영구靈柩를 인도하는 의절.

내용 발인은 영구靈柩가 살던 집에서 출발하여 묘소로 인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인도 행렬에는 사자死者의 후손들을 비롯하여 내세의 시봉侍奉과 평안 및 벽사辟邪 그리고 넋을 기리는 각종의 상징물이 앞뒤를 따랐다. 이 상징물은 사전에 제작되어 발인의 행렬에 참여하였다. 행렬 순서는 방상시方相氏 등이 앞에서 인도하고, 기물을 진설한 순서대로 간다. 기물의 진설은 명기明器, 명정銘旌, 영거靈車, 공포功布 등의 순서이다

방상시는 광부狂夫로서, 관복을 도사道士 같이 입고 창을 잡고 방패를 두른다. 죽은 사람이 4품 이상이면 눈이 네 개 있는 방상시로 하고, 그 이하면 눈이 두 개 있는 기두魌頭로 한다고 하여, 4품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었다. 방상시의 역할은 역려疫癘의 귀신이 놀라 달아나게 하고 광중壙中의 악귀를 쫓는 것으로, 두려워하게 할 만한 모습을 본떴다. 본래 광부는 방상시의 사士를 말하는데, 검은 윗옷과 붉은 치마를 입고 실중室中의 역疫을 물리치는 일을 주관한다.

명기는 수레와 말, 하인과 시녀가 각각 봉양하던 물건을 가지고 있는 모습 등을 나무로 깎아 무덤에 시신과 함께 묻는 물건이다. 하장下帳·포苞·소筲·앵甖 등 평시의 생활을 형상한 것으로, 작은 크기로 만든다. 『예기禮記』「단궁檀弓」에서, "대그릇은 쓰이지 못하고, 질그릇은 광택이 없으며, 나무그릇은 다듬어지지 못한다. 거

행상 | 경남 창녕 | 1993 | 국립민속박물관

발인지도 | 가례집람 | 국립민속박물관

문고와 비파는 벌여놓았어도 타지 못하고, 생황을 갖추어놓았어도 불 수 없으며, 종과 경쇠는 있어도 순거(簨簴)는 없다. 그것을 명기라고 하니, 신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대부사서인상大夫士庶人喪」에서는 4품 이상은 30, 5품 이하는 20, 서인은 15가지로 규정하였다.

영거는 혼백과 향을 모신 일종의 가마이다. 공포는 관 위의 먼지나 흙을 털어내는 것으로서, 흰 세포細布로 만들며 길이는 석 자이고 자루의 길이는 대여섯 자이다. 공포 다음에는 대여大轝가 따르며, 그 옆에는 삽선翣扇이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큰 상여의 제도가 좋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세속의 제도에 따라 작은 상여를 써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삽선은 나무로 만든 치장治葬 제구諸具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그 종류로는 보삽黼翣, 불삽黻翣, 화삽畫翣이 있다. 보삽은 반흑반백半黑半白의 색깔로 자루가 없는 도끼 모양을 그렸다. 불삽은 반흑반청의 색깔로 아亞자 모양을 그렸는데, 죽은 사람의 넋이 귀인의 보호 아래 무사히 명부冥府에 인도되기를 염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상여의 뒤를 따라간다. 화삽은 구름무늬를 그렸는데, 죽은 사람의 혼을 하늘로 인도해 줄 것을 염원하는 의미이다. 운삽雲翣이라고도 하며, 상여 앞에서 인도한다.

그 뒤로는 주인 이하의 남녀가 곡하며 걸어서 따라간다. 그 순서는 조조朝祖할 때와 같다.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부인은 왼쪽으로 간다. 복이 무거운 사람은 앞에 서고 복이 가벼운 사람은 뒤에 서며, 복의 경중으로 각각의 차례를 정한다. 시자侍者는 끝에 선다. 복을 입지 않는 친척의 경우, 모두 주인과 주부의 뒤에 서는데, 남자는 남자의 오른쪽에, 여자는 여자의 왼쪽에 선다. 문을 나가면, 흰 장막으로 양옆을 가린다. 존장은 그다음이고,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이 그 다음이며, 빈객이 또 그다음이다. 모두 수레와 말을 탄다.

친척과 빈객은 먼저 묘소에 가서 기다리거나 마을을 나가서 곡하고 절하여 작별하고 돌아간다. 친척과 빈객은 성 밖 길가에 장막을 치고 영구를 멈추면 전奠을 올린다. 전은 집에 있을 때의 의절과 같다. 주인 이하는 도중에 슬픔이 지나치면 곡한다. 만약 묘소가 멀면 30리마다 영구 앞에 영좌를 차려놓고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전을 올린다. 식사 때는 상식을 올린다. 밤이 되면 주인과 형제가 모두 영구 옆에서 자고, 친척도 함께 지킨다.

특징 및 의의 발인은 영구가 살던 집을 떠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묘소에 이르기까지 영구를 어떠한 행렬을 갖춰 인도하느냐가 발인에서 매우 중요하다. 각 상징물의 구성과 의미 및 반차班次 등을 자세히 규명하여 상장례의 본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방상시
方相氏

정의 나례儺禮와 장례 행렬에서 악귀를 쫓아내는 대표적인 축귀逐鬼 대신大神.

역사 방상시方相氏는 원래 중국의 신神으로, 곰의 가죽을 두르고 황금사목黃金四目의 가면을 착용하며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든 형상이다. 방상시는 직무에 대한 명칭으로, 그 뜻은 "제멋대로인 얼굴을 한 사람"이며 용맹하고 사나운 광부狂夫 네 명이 담당한다. 방상시의 지위는 매우 낮아 하급 군사에 속하며, 문이나 마차를 지키는 업무를 맡는다. 비록 무당으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 직능은 귀신을 쫓는 무당의 모습과 같다. 중국에서 언제부터 나례를 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춘추시대 이전부터 나례를 행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나儺 의식이 은대殷代와 주대周代에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음산陰山의 바위그림에 귀면鬼面, 신면神面, 무속가면巫俗假面 등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 의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의식'의 갑골문은 구寇인데, 이것은 사람과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쳐 귀신을 쫓는 제사의식을 의미한다. '나 의식'에 사용되는 가면은 갑골문자에서 '기𠂤'로 표기하는데, 귀신을 쫓는 자가 쓰는 가면을 상징한다. 후대에 나면儺面을 기두𠂤頭라고 부른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원래 방상시의 탈은 황금사목, 즉 황금색의 네 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순자荀子』「비상편非常篇」에는 "눈이 네 개인 것을 방상이라 하고, 눈이 두 개인 것을 기라고 한다[四目爲方相 兩目爲倛]."라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므로 기倛는 방상시의 일종이다.

최근 나희儺戱 연구자들은 민족학과 민속학의 자료에 근거해, 나례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했는데, "나儺는 황제씨족黃帝氏族의 곰토템 숭배에서 기원한다. 나는 원래 곰씨족의 토템무였는데, 후에 일반적인 타귀도신打鬼跳神으로 변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주례周禮』 권31 하관사마夏官司馬 제4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나례 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 "방상시는 곰의 가죽을 덮어쓴 채, 황금의 네 눈을 갖고 있다. 검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창과 방패를 든 채, 백예百隸를 거느리고 철에 따라 나儺를 행함으로써 집안을 뒤져 역귀疫鬼를 몰아냈다. 대상을 치를 때에는 상여 앞에서 가는데, 묘지에 도착하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 창으로 네 모퉁이를 찔러 방량方良을 쫓아버렸다."

이처럼 주대에 행한 '나 의식'에서 대표적인 신이었던 방상시는 장례행렬의 앞에서 귀신을 쫓고 길을 열기도 했으며, 무덤을 팔 때 창으로 무덤 안의 네 모퉁이를 쳐서 방량方良을 몰아냈다.

한대漢代 이후 '나 의식'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예절과 의식의 요소가 증가했다. 그래서 몇몇 문헌에서는 이를 '나의儺儀' 또는 '나례'라고 칭하였다. 『후한서後漢書』「예의지禮儀志」에 의하면, 후한의 나례는 방상시, 십이지신十二支神, 진자侲子들이 역귀를 쫓아내는 순수한 구역驅疫 의식이었다. 이처럼 나례는 순수한 구역 의식으로서 한대 이후 흥성기에 들어섰고, 궁중 안에서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하나의 완전한 의례로서 송대까지 계속되었다.

당대唐代 중엽 이후에는 종규鍾馗라는 새로운 축귀대신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네 눈을 황금으로 장식하고 창과 방패를 손에 든 방상시가 구나驅儺 의식의 주역이었지만, 당대 중엽 이후에는 종규가 구나 의식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나례의 전래를 알려주는 최초의 기록에 의하면, 나례는 1040년(고려 정종 6)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그러나 나례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그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종 6년의 기록은 중국의 궁중 나례가 고려의 궁중에 수입된 것을 말한다. 나례의 전래와 함께 방상시도 유입되었다.

내용 한국의 초기 나례는 『고려사高麗史』 권64 「지志」와 권18 「예禮」 6의 군례軍禮 조의 계동대나의季冬大儺儀를 통

방상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방상시(중요민속자료 제16호) | 국립중앙박물관

방상시 | 경북 청도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2월에 대나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붉은 고습을 입은 진자 24명, 붉은 모자와 소창옷을 입고 채찍을 잡은 집사자 12명, 공인工人 22명, 고각군 20명이 궁중에서 악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거행했다. 공인 중 한 사람은 방상시로 황금색 눈이 네 개인 가면을 쓰고, 곰의 가죽을 걸치며, 검은 윗옷과 붉은 치마를 입은 채 오른손에는 창을 왼손에는 방패를 잡는다. 다른 한 사람은 창사唱師로, 가면을 쓰고 가죽옷을 입고 몽둥이를 든다. 이 계동대나의는 『신당서新唐書』 권16 「예악지禮樂志」의 대나大儺와 등장인물 및 구나의 내용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권2의 기록을 통해 조선 전기에 민간에서 행하던 나례에서도 방상시가 나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섣달그믐에 어린아이 수십 명을 모아 진자侲子(악귀를 쫓는 데에 동원되는 아이들)로 삼아, 이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붉은 두건을 씌워 궁중으로 들여보낸다. 그러면 관상감觀象監이 북과 피리를 갖추고, 새벽이 되면 방상시가 악귀를 쫓아낸다. 민간에서도 이 일을 모방했다. 비록 진자는 없었지만, 녹색 댓잎, 자색의 형지荊枝, 익모초 줄기, 도동지桃東枝를 모두 묶어 빗자루를 만든 다음, 대문을 마구 두드리고, 북과 방울을 울리면서 문밖으로 몰아내는 흉내를 내는데, 이를 방매귀放枚鬼라 한다."

이처럼 섣달그믐날의 나례에서는 궁중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방상시가 악귀를 쫓아냈다.

한편, 한국에서 방상시탈은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1950년대까지도 장례행렬의 선두에서 행진하며 악귀를 쫓는 역할을 맡았다. 민간에서는 방상시를 흔히 방상제라고 불렀다. 그래서 〈기산풍속도箕山風俗圖〉에도 '상여 앞에 방상제'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 것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하면, 4품 이상은 눈이 4개인 방상시를 사용했고, 5품 이하는 눈이 두 개인 기두를 사용했다四品以上四目爲方相 五品以下兩目爲魌頭. 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이다. 국상國喪의 경우, 장례행렬의 선두에는 방상시 수레 4량이 좌우로 배치된다. 방상시는 궁궐에서 왕릉까지 가는 행렬의 맨 앞에 서서 악귀나 잡귀를 쫓기도 하고, 왕릉에 도착해서는 관을 땅에 묻기 전에 먼저 흙을 파놓은 광에 들어가 창으로 네 귀퉁이를 쳐서 시신이 들어갈 자리의 악귀를 쫓아버렸다. 〈영조발인반차도英祖發靷班次圖〉와 『상례보편喪禮補編』에 나오는 방상시탈은 얼굴을 덮을 정도의 크기로서 붉은색을 칠해 사용했다. 방상시 수레를 끄는 사람에 대해, 『상례보편』은 수레마다 예비 인원의 수를 합하여 13명, 『국조오례의』는 15명이라고 밝혔는데, 백의白衣를 입고 백건白巾을 쓴다고 기록했다.

현재 중요민속자료 제16호로 지정된 방상시탈은 1970년에 창덕궁 창고에서 장례 용구와 함께 발견되었다. 이 탈은 소나무 판자에 얼굴 형상을 새기고, 그 위에 이마·눈썹·코·귀를 따로 만들어 덧붙였다. 네 눈과 입은 음각했으나 구멍을 뚫지는 않았다. 눈썹에는 녹색과 홍색을 칠한 흔적이 보인다. 가로 76.5㎝, 세로 72㎝, 귀길이 38.5㎝, 코길이 31.5㎝이다. 이렇게 크기가 큰 방상시탈은 얼굴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다. 강원도 통천군수 최씨崔氏의 장례식 때 찍

은 사진에는 장례행렬의 앞에 방상시탈을 쓴 사람 둘이 보이는데, 조선총독부에서 1931년 간행한 『생활상태 조사—강릉군』에 수록되어 있다.

이규태는 「귀신 쫓는 방상시」라는 글에서 장례행렬을 이야기하며 "주로 형장에서 참수를 하는 망나니가 방상시로 선택받았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장례에만 해당되는 사례일 것이다. 궁궐의 나례에서는 공인, 즉 악공들이 방상시를 맡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징 및 의의 방상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나례에서 역귀를 쫓는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방상시는 장례행렬의 선두에서 악귀를 쫓는 역할을 했다. 4품 이상은 눈이 4개인 방상시를 사용했고, 5품 이하는 눈이 두 개인 기두를 사용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방상시의 눈이 두 개인 경우가 많았고, 방상시를 흔히 방상제라고 불렀다.

참고문헌 가면극과 나례(전경욱, 한국의 가면극, 열화당, 2007), 귀신 쫓는 방상시(이규태, 한국인의 생활문화1, 신원문화사, 2000), 나례와 잡희(김학주, 아세아연구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한국의 가면극(이두현, 일지사, 1979).

필자 전경욱(田耕旭)

배냇머리자르기

정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 있는 머리카락인 '배냇머리'를 처음으로 자르는 행위.

내용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틀 동안은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 준다. 그리고 태어난 지 삼일 후에 비로소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킨다. 아이의 목욕은 산모나 시어머니가 맡아서 한다. 아이의 손과 발에 물을 먼저 적시고, 머리에서 가슴 순서로 물을 적셔 씻긴다. 이렇게 상체부터 아래로 씻겨야 아이의 몸에 살이 골고루 오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목욕을 시킬 때는 아이의 탯줄에 물이 닿아, 탯줄이 잘 아물고 곪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첫 목욕을 시킨 후에는 배냇저고리를 입힌다.

지역과 가정에 따라 배냇머리를 '배 속 머리', '배아냇머리(배 안에 머리)'라고도 한다. 배냇머리를 자르면 아이의 머리카락이 검고 머리숱이 많아진다고 여겼는데, 이를 '배냇머리숱'이라고도 했다. 대개 아이가 태어난 지 이레 정도 지나면 산모가 '배냇머리'를 가위로 잘라준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날 때 자라 있는 머리카락의 상태에 따라 백일을 맞았을 때 잘라준다. 또는, 이레부터 돌이 되기까지 자연히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두기도 한다. 자른 머리카락은 발에 밟히면 좋지 않다고 여겨 한곳에 모았다가 손 없는 방향에서 태우거나 아궁이 불에 넣어 태운다. 더러 손 없는 방향에 묻기도 한다. 여자아이일 경우, 자른 배냇머리를 헝겊이나 종이에 싸서 나무 밑에 걸어 두었는데, 아이의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고 하여 이렇게 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지앙(또는 지양)을 모시는 초이레에서 세이레 기간에 배냇머리자르기를 금하는 사례가 많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배냇머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첫돌이 되는 해의 초파일에 아이의 머리를 잘랐다. 초파일에 잘라야 머리가 깨끗하고 탈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한편, 아이의 손발톱이 자라서 깎아 줄 때는 가위나 칼을 사용하지 않고 산모가 젖을 먹이면서 치아[齒]로 물어뜯어 준다. 아이의 손발톱은 매우 약해서 잘못 자르면 아이가 손을 다치거나 손톱 모양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톱이 단단해질 때까지 되도록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되, 배냇저고리의 소매를 길게 만들어 아이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 아니면 장갑처럼 아이의 손에 장갑처럼 싸개를 씌운다. 잘라 낸 손발톱은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 불에 들어가면 좋지 않다고 여겨서 요강에 버리거나, 아궁이에 불태우기도 한다. 닭이 쪼아 먹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여겨 특별히 주의한다.

특징 및 의의 갓 태어난 아이가 삼일, 초이레, 두이레, 세이레, 백일, 돌을 맞이할 때마다 아이의 신체와 적응 상태에 따라 적합한 목욕과 손발톱 처리, 배냇머리자르기를 행했다. 이들 의례는 아이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위생 관념에서 비롯된 산후의례이자,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과 시기마다 이루어지는 육아의례의 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태아 때부터 자

란 머리카락을 자르고, 새로이 검은 머리카락이 아이에게 풍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행하는 배냇머리자르기는 그 자체로 통과의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출산의례의 변화양상과 의미(황경순, 국립문화재연구소, 일생의례의 역사민속학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1),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황경순(黃慶順)

배냇저고리

정의 생후生後 사흘째 되는 아침에 인간이 처음으로 목욕하고 입는 옷.

개관 배냇저고리는 첫 의례복儀禮服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7일에 한 번씩, 세 번(세이레, 21일) 갈아입는데 형편에 따라 계속 입기도 했다. 배냇저고리를 가리키는 명칭은 전국적으로 40여 가지나 되며, 시기나 기간·상황 등이 함축되어 있다. 가장 많은 것이 '배냇저고리'와 '배내옷'이다. 제주도는 한반도 내륙과 달리 "봇뒤창옷"이라 한다. 배냇저고리의 옷감은 "부스럼 나지 말고, 가렵지 말며, 참으라"는 뜻으로 삼베[麻布]를 사용한다. 특히 남아男兒 것은 '손(온)소매'로 길이가 길고 통이 넓었다. 반면에, 여아女兒 것은 길이가 짧고 통도 절반인 '반소매'였는데, '여자는 반쪽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반소매는 유물도 드물다.

출생은 우리나라에서 충忠과 효孝를 중시하는 사회 관습의 한 범례로서 지켜온 사례四禮, 즉 관혼상제冠婚喪祭에서는 빠져있지만, 가문 번창과 종족 번식이라는 기대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례'라는 관문을 몇 번 거친다. 우리나라에서는 3일 만에 첫 일[儀禮]을 치르는데, 이때 첫 옷을 입혔다. 이 옷은 '의례복儀禮服'이라는 명목名目 아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 옷에는 무병장수, 부귀공명, 종족보존과 함께 남존여비男尊女卑, 특히 장손長孫과 장남長男을 우대하는 사상이 두드러지게 담겨 있으며, 유사연상類似聯想 주술행위呪術行爲도 드러난다. 또한, 생활철학과 실용, 과학, 합리성도 담겨 있다. 배냇저고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왜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도 배냇저고리의 사용은 어디서나 흔했던 일들이므로 그 흔적을 살필 수 있다.

내용 꼴[形態 · 模樣]은 우리나라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저고리의 기본 틀은 길(몸통)·소매·깃·동정·섶·옷고름이며, 계절과 쓰임에 따라 겹·홑·솜·누비로 만들었다. 그러나 배냇저고리는 길과 소매, 옷고름뿐이다. 이를 의인화擬人化하여 "눈, 코 없는 옷"이라 했다. 저고리는 인간의 얼굴이요, 위[上體, 上衣]를 상징한다. 따라서 깃과 섶은 저고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눈과 코인데, 생략되었음을 비유한 말이다. 홑 또는 겹으로 만들었고, 색이나 재료도 일반 저고리보다 단순하며, 바느질도 다른 옷에 비해 엉성한데, 이는 영아嬰兒의 사망률과 매우 밀접하다.

색의 색감은 주로 흰색을 사용했다. "아이 때부터 '무색(물색染色)'은 안 썼다. 염색한 고운 것으로 만들면 '옷 욕심이 세고, 귀신이 해害코지'하기 때문"이다. 옷감은 주로 면류[棉類]를 사용했다. 예전에는 집에서 짠 무명을 썼으나, 차츰 시중에서 파는 '느린(성긴) 무명류'나 광목, 인조, 융絨, 전氈, 소창지('오열베 오일미녕'이라고 함) 등을 썼다. 완고한 집에서는 "웃옷은 '웃 사람' 즉, 양반을 상징한다"라고 하여 집안에서 무병장수하고 부귀공명을 이룬, 집안의 남자 어른이 입던 웃옷[上衣, 表衣]을 더 중히 여겨 이것으로 옷을 해 입혔다. 조상의 운運과 복福, 혈연적 유대감, '헌것'은 겸양謙讓과 '삭복朔福의 미덕'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수의壽衣를 만들고 남은 것도 쓰였다.

배냇저고리는 출산出産이 가까워질 때나 해산 후에 만든다. 주로 출산 후에 만들었는데, 이는 미리 준비하면 귀신(삼신할머니)의 심술(해코지)로 출산이 더디거나 불상사가 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보통 두 벌이나 세 벌을 만들었다. "첫아이 것은 친정에서 만들어온다."라고 하였으나, 주로 시어머니나 조모 또는 친정어머니나 본인이 만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첫아들을 낳았고, 부부해로夫婦偕老하고 무병장수하며, 행동거지가 바르며 복덕福德 있는 어른이 만들어 주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다.

봇뒤창옷(촌소매 남아용) | 1900년대 중반 | 제주도 | 고부자

의례로서의 성격을 가진 첫 번째 옷인 배냇저고리의 역할이 끝나면, 백일百日과 돌 옷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백일 이전 삼칠일이 지나면 이웃이나 친척들은 '아기 보러간다'고 하며, 무명[綿]실을 한 타래 가지고 갔다. 첫아이 포대기와 기저귀는 "친정에서 만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었다.

백일에는 장수와 벽사辟邪를 상징하는 백설기와 수수팥떡, 옷을 마련했다. 옷은 '흰 것'으로 하며 어른 것처럼 깃, 섶, 옷고름을 갖춘 저고리를 입힌다. 옷고름은 허리를 한 바퀴 돌려 매는 '돌띠'로 하며 솜을 넣어 누빈 누비저고리로 만들었다. 솜씨나 여유에 따라 '박이겹'이나 색동옷도 만들고 턱받이를 만들기도 했다.

돌 때는 의관정제衣冠整齊의 기본을 형편에 따라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갖추었다. 남과 여, 즉 남녀유별로 구분하였고, 고운 물을 들인[染色] '무색옷'으로 했다. 남아는 바지에 저고리, 여아는 치마에 저고리가 기본이었다. 형편에 따라 모자와 신을 갖추기도 하였으며, 버선은 대체로 준비하였다.

이런 옷을 직접 장만했던 세대는 주로 192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여성들이며, 195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시장에서 파는 양복을 사 입히기 시작하였다.

특징 및 의의 배냇저고리는 옷감 색, 크기, 부분 이외에도 만들기, 처리하기 등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옷고름인데 반드시 무명실로 달았다. 그 실의 긴 길이를 오래 살기[長壽]와 연관 지어 '명줄命-'이라 했다. 이는 '무병장수'를 인간 최상의 염원이며 큰 목표로 삼았던 흔적이다. 실은 홀수로 일곱이나 아홉 가닥을 사용하고, 겉고름은 허리를 한 바퀴 돌려 멜 수 있게 길게 만들었다[돌띠]. 소매는 길게 만들었는데, 손이 나와서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주도에서는 '파리를 쫓는' 용도도 추가된다. 특히 경상도에서는 "손은 도둑질에 쓰는 등 죄가 많은 물건이라 소매가 짧으면 자라서 퇴박 받기 때문"이라 했다. 이는 조선시대에 관복官服을 손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길게 만든 것과 상통한다. 특별히 제주도에서는 소매길이에 "촌(찬·온)소매와 반半소매"가 있는데, 이는 남존여비사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배냇저고리에는 많은 금기와 속신이 있지만 실용과 과학, 합리적인 면도 많다. 앞은 배를 덮어 보온하도록 길게 만들고, 깃을 달지 않은 것은, 아기는 열이 많은데다 목이 굵고 밭아서 살이 쉽게 짓무르기 때문이다. 시접이나 솔기는 연약한 살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밖으로 처리하였다. 옷고름 길이를 목숨길이 장수長壽와 연결시킨 것, 제주의 봇뒤창옷에서 대·소변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뒤의 아래 쪽을 터 두는 것 등은 유사연상과 실용의 양면이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다. 배내옷은 원래 "운수 좋은 옷"으로 인식되었다. 첫 배내옷의 효험은 아들 중에서도 특히 장남이 입었던 것이 더 좋고, 그보다 장손 것이 더욱 좋다. 그래서 빨지 않고 두었다가 시험, 재판, 전쟁에 나갈 때 겉옷의 등판 속에 꿰매었다. 또한, 소중하게 입었고, 낡았어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함부로 버리거나 걸레 같은 허드레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깨끗한 행주로 쓰거나 태웠다. 배내옷을 함부로 버리거나 허드레 용도로 사용하면 아이가 쓸모없고 천한 사람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빨 때 두드리거나 비틀어 짜면 아기가 잘 놀란다거나, 말릴 때 나쁜 악귀가 접하면 아기가 아프다는 속신이 있어 밤에 널지 않았다. 아울러 옷을 입을 사람이 없어도 남에게는 빌려주거나 넘겨주지 않았다. 액막이 같은 나쁜 일에 쓰이거나, 자신의 복과 운이 옮겨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경상도의 의생활(고부자, 경상도칠백년사3-분류사2, 경상북도·경상도칠백년사편찬위원회, 1999), 민속조사에 나타난 초생아 옷의 사상 및 상징(고부자, 전통의생활연구4, 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2009), 우리나라 유아의례와 복식의 민속연구(고부자, 비교민속학34, 비교민속학회, 2007), 의생활민속(고부자, 금강지-하, 충청남도·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3),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필자 고부자(高富子)

백수백복도
百壽百福圖

정의 장수長壽와 복福을 기원하기 위해 '수壽', '복福' 글자를 반복하여 화면을 구성한 문자도文字圖.

역사 백수백복도百壽百福圖의 유래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1610년(광해군 2)에 남평 현감 조유한趙維韓(1588~1613)이 중국인에게 받은 백수도百壽圖를 광해군에게 바친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백수도는 '수'자를 크게 쓰고, 음획陰劃으로 된 글자 가운데 '수'자가 수백 자 쓰여 있었으며, 서체는 과두蝌蚪·전篆·주籀·충蟲·학鶴·구인蚯蚓 등 여러 체였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로 보아 초기의 백수도는 큰 글씨 안에 다양한 체의 글씨를 채워 넣는 모양이었고, 후에 복자福字가 더해지면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를 번갈아 쓰는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백百'자와 '수'자를 반복하여 화면을 채우는 구성인데, 명칭으로는 백 개의 '수'자와 백 개의 '복'자로 구성되었다는 의미이지만, 실제 글자 수는 반드시 '백' 개는 아니다. 백수백복도에서 '백百'은 숫자로서의 100보다는 '많다, 꽉 차다, 가득해서 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장수하고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가 있다. 글자의 도안은 한 글자를 열 가지 이상의 도안으로 그리거나, 백 글자를 모두 다른 도안으로 그리기도 한다. 백수백복도는 그림뿐 아니라 자수병풍으로도 많이 꾸며졌다. 백수백복도의 기본 서체는 주로 전서篆書로, 다양하게 변화된 잡체전雜體篆을 사용한다. 여기에 여러 서체를 섞어 쓰는 잡체서雜體書의 전통이 백수도의 전통과 섞이면서 독특한 구성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백수백복도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글씨를 회화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서체로 정성 들여 꾸며 수복의 상서祥瑞로운 의미를 강화하였다. 장수를 복으로 여기는 풍습과 연관이 깊으며, 장수를 기념하는 잔치에 장식용 병풍으로 사용하거나, 장수를 바라는 의미로 주고받는 선물로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민화의 수·복 상징 표현연구(정효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민화 효제문자도의 기원에 대하여(진준현, 민화연구, 2013), 수복-장수를 바라는 마음(국립민속박물관, 2007), 조선조 백수백복도에 관한 연구(김명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조선후기 백수백복도의 연원과 전개양상(정병모, 민화연구, 2013), 조선후기 효제문자도(이영주, 미술사논단, 2007).

필자 김윤정(金潤貞)

백일
百日

정의 아기가 출생한 날로부터 백 일째 되는 날 또는 그 날을 기념하는 잔치.

역사 백일속도 삼칠일속과 마찬가지로 단군신화에 그 모티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오랜 역사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되나, 그 밖에는 백일 습속에 관한 기록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내용 백일百日은 실제 태어난 날의 수라는 의미를 넘어서 많은 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백일 전에 사망하는 영아가 많았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1925~1930년까지 1세 미만 영아사망률

백일사진 | 1937 | 국립민속박물관

백일옷(남아용) | 이길표

백일옷(여아용) | 이길표

이 무려 73%에 달하였다. 따라서 산후 백일이 되는 날이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는 뜻에서 특별히 그 날을 축하하는 의례를 행한다. 백일잔치라고 하여 아기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백일상을 차려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이다. 우선 백일이 된 날 아침에는 흰밥과 미역국을 올린 삼신상을 차리고 치성을 드린 다음, 산모가 그 국밥을 먹는다. 백일 잔칫상에는 흰밥과 미역국 외에도 백설기, 수수팥떡, 인절미, 송편 등의 여러 가지 떡을 올린다. 백설기의 '백白'은 숫자 '백百'과 음이 상통하므로 백 살까지 장수하라는 뜻이 있고, 수수팥떡의 붉은색으로 부정을 막는 주술적 의미가 있으며, 인절미는 속이 단단하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송편은 속이 차라고 속을 넣은 것과, 마음이 넓으라고 속이 빈 송편을 같이 만든다. 백일떡은 백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아기가 장수한다고 하여, 이웃과 친지를 비롯하여 길 가는 행인들에게도 나누어 준다. 백일떡을 받거나 백일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쌀, 실타래, 돈 등으로 답례로 선물한다. 실타래에도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또 이날에는 아기의 배냇머리를 깎아준다. 고모가 깎으면 좋다거나, 다 깎지 않고 조금 남겨두면 명이 길어진다는 속신이 있었다. 아기의 백일옷은 배냇저고리와 달리 섶과 옷고름이 있었는데, 이때도 수명이 길어지라고 고름을 길게 해서 허리를 돌려 매도록 한다. 또 백 조각의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히기도 하는데, 천을 조각조각 이어 만든 것처럼 아이의 수명이 길게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유사주술적 심리에서 생겨난 습속이다. 이렇게 백일의 의례는 대부분 아기의 건강과 무탈을 축복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행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근대 이후까지도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현실에서 백일잔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시와 농촌 간에, 남녀 성별 간에, 그리고 자녀의 순위별로 백일잔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귀하게 얻은 아들이며 장남인 경우에는 백일잔치를 크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침상을 평소와 다르게 차려서 집안 식구들끼리 축하를 주고받는 정도로 약식으로 백일을 기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60년대만 해도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딸의 백일상을 차리는 집은 드물었다. 백일을 챙기더라도 손님 초대 없이 집안 행사로 하는 경향이 강했다. 게다가 의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백일의 의미가 과거만큼 절실하지 않게 된 탓인지, 돌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백일은 그냥 기념사진을 찍고 떡을 돌리는 정도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백일 선물도 1980년대 이후로는 백일선물도 반지, 팔찌, 현금, 옷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가치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중국의 '백록일百祿日', 만주지역의 '백수일百睟日', 일본의 '모모카百日, ももか'라고 불리는 습속이 있었던 것을 보면, 백일기념 행사는 동북아 일대에서 공

유해 온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삼칠일 의례가 주로 아기와 산모의 보호를 위한 치성 위주의 행사인 반면, 백일 의례는 아기를 본위로 한 축하 행사이다. 또한, 백일의례는 하객들이 모여 태어난 아기를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성격을 지닌 행사이다. 백일떡이나 백일옷 등에 특별히 수명장수를 비는 기원과 주술이 많이 담긴 것은 백일 이내의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적 현실의 반영이다. 백일잔치는 백일치성, 백일재 등에서 보듯이 100이라는 숫자가 한국 민속에서 큰 수 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곧 백일잔치는 계절이 바뀌기도 하는 백일이라는 긴 시간을 무탈하게 넘기고 바야흐로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시발점에 선 아기를 축하하는 의미가 강한 의례이다.

참고문헌 출산의례의 변용과 근대적 변환(주영하, 한국문화연구7, 경희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1),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83), 한국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한양명,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필자 천혜숙(千惠淑)

벌초
伐草

정의 조상의 묘에 자란 풀이나 나무를 베어내고 묘를 깨끗하게 하는 일.

내용 벌초는 한식寒食이나 추석 성묘 이전에 조상의 묘에 자란 풀이나 나무를 베어 깨끗이 하는 일이다. 대개 백중百中(음력 7월 15일) 이후부터 추석 전에 모두 이루어진다. 설과 한식에는 성묘는 하지만, 벌초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에는 벨 풀이 없고 한식에는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식에는 겨우내 묘에 생긴 구덩이나 부족한 떼(잔디)를 다시 입혀주는 개사초改莎草를 하기도 한다. 개사초를 할 때는 '손이 없는 날'(무방수날)을 택일하는데, 한식은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한다. 개사초를 하기 전에는 몇 가지 제물을 마련하여 산신, 토지신, 묘의 주인(조상)에게 먼저 고한 다음 진행하고, 개사초가 끝나면 묘의 주인에게 고하여 평안을 알린다. 개사초 전에 산신과 묘의 주인에게 고한 다음, 개사초가 끝나고 산신과 묘의 주인에게 다시 고하기도 한다. 장례를 치른 이듬해 봄에 떼를 입히기도 한다.

백중 이후에는 풀의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추석 전에 벌초해 두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깔끔하게 손질된 묘가 유지된다. 추석에 성묘를 가기 위해 추석 전에는 반드시 벌초해둔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도 흉하며, 자손이 없는 묘로 여기기도 하였다. 또한 자손이 있음에도 벌초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효로 간주되었다.

한국인은 죽은 조상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예우하였기에, 조상의 묘를 살피고 돌보는 일은 효행이자 후손들의 책무였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추석 성묘 전 벌초를 중요하게 여겨, 추석 전 한 달은 성묘하는 차로 도로가 붐비는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혹여 벌초할 시간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벌초하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예초기의 보급과 함께 벌초대행업이 성행하기 시작하여, 더욱 편리하게 벌초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대행업의 성행도 벌초를 하는 풍속이 계속 전승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사례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추석 전에 벌초를 해두지 않으면 큰 불효로 여겼다. 벌초하러 갈 때에는 집안의 여러 친척이 모여 날짜를 정했다. 벌초의 순서는 웃어른의 묘부터 먼저 시작했으며, 벌초하기 전에는 조상의 묘를 둘러본 다음 술과 음식을 간단히 차려놓고 재배를 했다. 이 지역의 벌초 풍속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전승 양상이다.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는 입추 전후, 7월 초승, 7월 보름에 벌초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음력 8월 중 공휴일에 맞춰 벌초한다. 공휴일에 벌초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벌초를 '소분掃墳'이라고도 한다. 음력 8월부터 추석 전날까지 벌초를 모두 마치도록 한다. 8월 초하룻날은 묘제나 시제를 하는 윗대 조상의 묘소에 친척들이 모여 공동으로 벌초하는데, 이를 '모듬벌초'라 한다. 제주도에서는 모듬벌초로 윗대 조상의 묘역을 벌초한 이후에 추석 전날까지 벌초를 모두 끝내는

벌초 | 제주도 | 국립민속박물관

것이 전통이다. 모듬벌초 때는 한 집에 한 명씩 참여하는데, 남자가 없는 집에서는 여자가 대신 나오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학생들도 모듬벌초에 참여하도록 '벌초방학'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유교사회에서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다. 조상제사를 비롯하여 조상의 육신이 있는 묘를 살피고 보존하는 일은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효행으로 인식되었고, 이런 효행을 하는 것이 후손들의 책무라고 인식되었다. 특히 묘와 주변에 자란 풀을 베고 다듬으며 떼(잔디)를 잘 입히는 일이 중요했다. 벌초 풍속은 1990년대 초 대행업체의 등장과 함께 많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참고문헌 동국세시기(정승모, 풀빛, 200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매일경제(1993년 9월 28일 자료).

필자 배영동(裵永東)

별전
別錢

정의 통용되는 화폐 이외에 특별한 사안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주화.

내용 별전別錢은 '별돈' 또는 '이전耳錢'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는 주전서鑄錢署에서 화폐의 원료인 동銅의 순도와 무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삼아 만들었던 시주화試鑄貨이다. 이것이 인기를 끌자 왕실이나 사대부 계급에서 청하여 여러 가지 문양을 넣어 주조하게 되었다. 별전에 새겨진 문양의 내용은 수복壽福과 부귀富貴가 주를 이루지만, 그 내용이 다양한 문양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동물 문양, 식물 문양, 문자 문양, 사람 문양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동물 문양은 대부분 길상吉祥과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는 동물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주로 사슴·박쥐·물고기·새·거북·학 등이 등장하며, 용龍과 봉鳳을 새겨 넣기도 하였다. 특히 물고기와 박쥐 등은 매우 보편적인 길상 문양이다.

식물 문양은 주로 다산을 상징하는 포도 문양과 복숭아 문양이 많이 등장하며,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불로초의 모습도 새겨 넣은 것이 발견된다. 매화문과 죽문竹紋은 선비의 기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식물로 여겨져 별전에 나타난다.

문자 문양은 한자의 조형미를 부각시켜 새겨 넣은 것이다. 보편적으로는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수壽'자나 아들을 많이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다남자多男子',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바라는 의미의 '강녕康寧',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귀富貴' 등의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유교의 윤리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효제충신孝悌忠信이나 예의염치禮義廉恥 등의 글자를 넣은 별전도 있다.

인물 문양은 상대적으로 희소한 문양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전을 주조한 중국의 경우 도교적 기반으로 인해 도교의 신격神格들이 별전에 등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 흔하지 않다.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를 거론한다

다남별전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다산과 득남을 상징하는 문양

면 쌍상투를 튼 동자童子의 모습이 새겨진 문양과 남녀의 교합 장면이 묘사된 별전이 있다. 동자의 경우 대부분 도교에서 신선의 시중을 드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동자 문양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의 노골적인 성애를 표현한 문양은 다산과 풍요에 대한 염원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팔보문八寶文(진주, 능형菱形, 경磬, 물소 뿔, 금전, 서물瑞物, 파초 잎, 거울 등의 여덟 보물을 형상화한 문양)이나 방승문方承文 같은 길상 문양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문양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양면에 여러 문양들이 조합되어 주조된다.

특징 및 의의 별전은 그 자체로 일종의 기념품이었다. 그렇지만 여러 개의 별전을 엮어 장식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열쇠고리 등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별전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장식품으로 일종의 애완愛玩을 위한 호부護符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별전(국립민속박물관, 2004), 별전에 담긴 정취(원주호, 민학회보 16, 민학회, 1987), 조선조 시대의 별전에 관한 연구(소애경,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화폐소고(백종흠, 영남문화동우회, 1992).

필자 김창호(金昌鎬)

보공
補空

정의 시신이 관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옷 등을 채워 넣는 것.

개관 보공補空은 망인이 입던 옷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삼베옷이나 명주옷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망인의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흐르는 땀을 닦을 수 있도록, 후손들이 관 안에 땀수건이라는 명목의 사각형 모양의 천을 넣기도 하였다. 또 백지 묶음인 저승돈을 넣기도 하는데, 이를 '백지다라니' 또는 '돈다라니'라고 한다. 옷이 귀한 시절에는 밭볏짚[山稻-]이나 불에 타고 남은 재 등을 넣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는 보공에 사용하는 물품이 다양해져서 손자들이 입던 러닝셔츠 등을 넣기도 한다. 그러나 화학섬유는 빨리 썩지 않고, 후손의 옷을 보공으로 넣으면 후손에게 새치가 생긴다는 속신이 있어 보공으로 넣는 것을 금한다. 또, 무명은 시신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되도록 사용하기를 꺼린다.

내용 입관 전에 시신을 넣을 관을 짤 때, 관의 바닥에는 붉은색으로 북두칠성을 그리거나 북두칠성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창호지를 깐다. 이를 '칠성판七星板'이라 한다. 입관을 할 때에는 그 위에 요를 깔아 일곱 묶음으로 묶인 시신을 바르게 눕히고 베개를 받친다. 이 요를 '지금地衾'이라 한다. 시신의 머리를 받치는 베개는 삼베로 만들며, 그 안은 마른 흙이나 재, 모래, 숯가루, 머리털 등으로 채운다. 망인의 손톱과 발톱은 깎은 위치에 그대로 둔다. 즉, 오른손 손톱은 시신의 오른쪽 허리, 오른발 발톱은 오른발 옆에 둔다. 마찬가지로 왼손 손톱은 왼쪽 허리, 왼발 발톱은 왼발 옆에 놓는다. 상제들이 시신을 묶은 끈을 풀면, 관을 들고 이동할 때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신 주위를 망인의 옷 등으로 채운다. 이것이 보공이다. 관이 새지 않도록 송진이나 초, 진흙을 물에 이겨 만든 진흙 범벅 등으로 관 안쪽의 틈새를 메운다. 시신 주변이 잘 채워지면 아삽亞翣을 왼쪽, 운삽雲翣을 오른쪽에 놓고, 잡귀가 시신에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동심결同心結(두 고를 내고 맞죄어 매는 매듭)을 함께 놓는다. 그 위에 천금天衾, 즉 이불을 덮고 관 뚜껑을 나무못으로 못질하여 입관을 마친다.

특징 및 의의 보공은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채워 넣는 것이지만, 제주도 무속신화인 〈차사본풀이〉의 내용에

보공 | 전남 완도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근거하여,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필요한 것을 관 속에 넣기도 한다. 저승돈이라 하여 다라니를 넣는 것처럼, 불교와 유교가 습합習合된 흔적도 보인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제주도의 일생의례(현승환, 국립민속박물관, 2007), 제주유맥600년사(제주유맥600년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인의 일생의례-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필자 현승환(玄丞桓)

복 復

정의 막 사망하였을 때 지붕의 중앙으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망자가 입던 옷을 흔들면서 혼을 부르는 의례.

내용 『예기禮記』「증자문曾子問」의 "공관公館에서 죽은 경우 복復을 하고 사관私館에서 죽은 경우 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정현鄭玄은 "복은 막 사망하였을 때 혼을 부르는 의식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복의 절차에 관해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복을 하는 사람은 동쪽 추녀[榮] 앞에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의 중앙으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면서 혼령魂靈을 부르는데, 소리를 길게 내어 '아무개는 돌아오라'라고 세 번을 외친 다음 옷을 당堂 앞으로 던진다. 옷을 받는 사람이 뜰에서 옷을 받을 때는 상자[篋]를 사용하여 받고, 옷을 받은 뒤 조계阼階로 올라가 옷을 시신 위에 덮어 놓는다." 이에 대해 정현은 "'북쪽을 향해서 부르는 것[北面招]'은 어두운 곳에서 구한다는 뜻이다. '고皐'는 소리를 길게 내는 것이다. '아무개[某]'는 죽은 사람의 이름이다. '복'은 돌아오라는 뜻이다. '강의降衣'는 옷을 아래로 던진다는 뜻이다. 「상대기喪大記」에 '무릇 복을 할 때 남자는 이름을 부르고 부인은 자字를 부른다.'고 하였다. '받는다[受]'는 것은 뜰에서 받는다는 것이다. 복을 할 때는 한 사람이 하므로, 옷을 받는 사람 또한 한 사람이다. '의시衣尸'는 시신 위에 덮는 것으로 마치 혼이 돌아온 것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가례家禮』 또한 고례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례』에 따르면 '초종'의 하위 절차로 '병환이 심해지면 정침正寢으로 거처를 옮기고, 숨이 끊어지면 곡을 한 뒤 복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은 시종한 사람이 왼손으로는 망자가 입었던 상복上服(최고 등급의 복장)의 옷깃을, 오른손으로는 옷 허리를 잡고 앞처마에서 지붕의 중류中霤로 올라간다. 그런 다음 북쪽을 향해 옷을 들고 "아무개는 돌아오라!"라고 세 번 부른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옷을 말아 내려와 시신 위에 덮는 순서로 진행된다.

복을 할 때 부르는 호칭과 관련하여 『예기』「상복소기」에 "초혼을 하고 명정銘旌(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등을 적은 깃발)을 쓸 때 천자로부터 사에 이르기까지 그 용어가 한결같았다. 남자는 이름을 부르고, 부인은 성과 백伯·중仲을 썼으며, 성을 모를 때는 씨를 썼다."라고 한 것에 대해 정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은 은殷나라의 예를 말한 것이다. 은나라는 질박하여 이름을 중시하지 않아, 초혼할 때 신하가 군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주周나라의 예는 천자가 붕崩했을 때 초혼을 하면서 '고천자복皐天子復(아아! 천자는 돌아오소서)'이라고 하였고, 제후가 훙薨했을 때 초혼을 하면서 '고모보복皐某甫復(아무개보 돌아오소서~)'이라고 하였다. 그 나머지와 명정을 쓰는 것은 은나라와 주나라가 동일하였다." 이는 천자와 제후를 제외한 나머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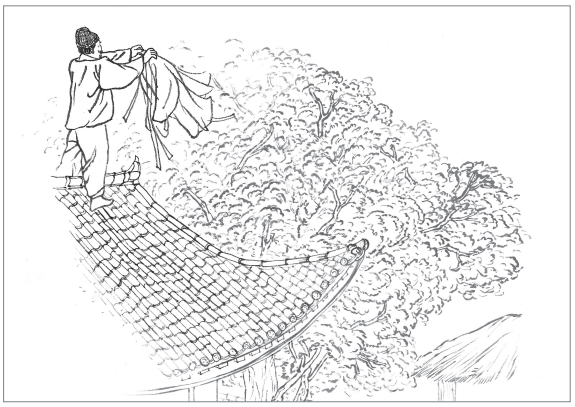

복 | 국립민속박물관

복을 끝내고 걸어 둔 복의 | 경남 김해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분의 사람의 경우는 모두 남자는 이름을, 여자는 성과 항렬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례』의 경우는 살아있을 때 평소 부르던 호칭(예를 들면 '몇째行第')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사마광의 『서의書儀』를 따른 것이다.

이처럼 복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소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의례로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복은 소생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혼백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복은 고인의 혼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여 조상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특징 및 의의 전북 지역에서는 망자가 평소에 입던 윗옷을 지붕 위로 던져서 올려 두었다가 입관할 때 다시 내린다고 한다. 충남 지역에서는 망자의 속적삼을 들고 마당 한복판으로 나가 적삼을 흔들며 초혼한 뒤 적삼을 지붕에 올려 두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복은 오늘날 거의 행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고 상례를 진행하는 장소가 대부분 병원의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가옥 구조도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의 시점에 대한 판단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내려지는 현실에서 망자가 소생하기를 기원하는 의례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유교의 상장례에 담긴 죽음의 의미(최영갑, 양명학19, 한국양명학회, 2007),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장동우(張東宇)

복수결혼
福手結婚

정의 개항 이후 기독교도들 사이에서 생겨나 유행하던 혼례식으로, 전통혼례에서 신식결혼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혼인 예식의 한 형태. 가난한 집안의 작수성례酌水成禮와 같이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수가 신부의 쪽과 신랑의 상투를 틀어주는 간단한 형식.

개관 한국 전통혼례는 우리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 두 가문의 남녀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 중요한 통과의례이다. 이들은 서로 폐백을 주고받고, 공경을 다하여 대례大禮의 전안례奠雁禮를 치르면서 평생을 배필로 살아가기 위해 백년해로를 약속한다. 이를 통해 가정을 이루어 부부유별의 도리로 조상을 받들고 자식을 낳아 길러 가문을 번창하게 하고 영속하게 하는 데에 혼례의 의미가 있었다. 또한, 동양적인 정신에 근거한 주육례周六禮와 주자사례朱子四禮 등에 따른 혼담, 납채納采, 납길納吉, 납폐納幣, 혼인 예식, 우귀례于歸禮, 근친覲親과 재행

再行 등의 절차가 있어 우아하고 품위 있게 혼인의례를 거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혼례를 격식 있게 거행하려면 경비가 매우 많이 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교가 본래 사치보다는 검약을 추구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혼례를 격식 있게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보통의 경우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서로 절을 올리고 혼인을 약속하는 작수성례酌水成禮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개신교(기독교)가 전래된 개화기 초기, 작수성례에 간단한 절차를 덧붙인 복수결혼福手結婚이 나타났다. 이는 전통혼례와는 다른 신식결혼으로 간주되어 관서關西지방에서부터 호서湖西지방에 이르기까지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다. 이 혼인방식은 경제적 여유가 없던 서민층에서 사용하였는데, 개화기에 와서는 중류층 이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실천이자 개화된 방식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야외에서 행하던 복수결혼은 교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배당에서 거행하게 되고, 여기에 개신교의 예배형식이 더해져, 신식결혼식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목사의 주재로 의식을 행함으로써 예식을 주도하는 주례자가 등장하게 된다. 초창기 신식결혼으로 간주되었던 교회에서의 결혼은 신랑·신부를 앞세워 놓고 목사가 『성경』(주로 마태오복음 19장 1~6절, 에베소서 5장 22~33절)을 읽고 기도와 더불어 축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결혼식은 1888년 3월 정동교회에서 아펜젤러의 주례 아래 신자 한○○과 과부 박씨 사이에 개신교식으로 치러진 결혼식이었다. 이어 1890년 박○○과 강○○의 결혼, 1892년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황 모 씨와 배재학당 남학생의 결혼식이 개신교의 예배형식으로 거행되었다고 한다. 한○○과 과부 박씨의 결혼이 어떠한 형식으로 거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박○○과 강○○의 결혼은, 형식은 신식을 따랐지만 혼례복만은 사람들의 항의가 두려워 전통 예복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2년 뒤 황 모 씨와 배재학당 남학생의 결혼식은 개신교의 예배형식뿐만 아니라 복식服飾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부는 흰색 치마저고리에 면사포를 착용했고 신랑은 프록코트를 입고 예모禮帽를 썼으며, 남녀 간 예물교환까지 있어 본격적인 신식결혼식이 시작되게 된다. 예배당결혼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 신식결혼식은 개신교가 발전하여 마을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점차 그 횟수가 늘어갔다. 신식혼례가 행해졌던 이유는 종교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조선을 망하게 한 양반과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컸기 때문이다.

1920년대 이후에는 신식결혼식인 서양식 혼례가 더 큰 인기를 얻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양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예배당보다는 백화점이나 예식장에서 혼례를 올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에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는 간략화 된 「의례준칙」으로, 전통혼례에 제약을 가했기 때문에 예식장에서의 신식결혼이 더욱 유행하였다. 신식결혼의 근본이 된 복수결혼이나 예배당 결혼은 개신교식이었지만 예식장결혼은 그 형식만 빌려왔을 뿐 종교적인 정신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내용 복수결혼은 신식결혼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행해졌던 빈자결혼貧者結婚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 혼인방식은 정안수를 떠놓고 가까운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부의 댕기머리를 쪽 지어 얹어 주고, 신랑의 머리에 상투를 틀어 주는 것으로 의식이 끝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전통혼례를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복수는 바로 쪽을 지어주고 상투를 틀어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그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전통혼례에서 신랑·신부가 합환주合歡酒를 마시면서 일심동체, 한마음 한몸이 되는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이 술잔에는 청실, 홍실을 맺어놓는다. 그리고 이때 이 실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어서 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맺어야 한다. 또한, 전통혼례 절차의 납폐納幣, 즉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함은 자식 복이 많아 특히 아들을 낳은 사람이 지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복수를 맡는 것도 결혼생활의 축복을 빌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징 및 의의 혼인의례는 하나님이 최초로 제정한 거룩한 질서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동의로 성립되는 개인적 결합이라는 개신교의 근본 입장 안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를 강하게 반영한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대 문화의 흐름에 따라 혼인의 풍습도 크게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의 절차는 물론 그 방식도 크게 간소화되었다.

복수결혼은 우리 사회에서 혼인의례가 변모하는 첫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개신교에서 결혼은 두 가족이 시작하는 하나의 계약이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는 물론, 양 가족 간의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그 본질이 유지된 채, 우리 문화가 가미되어 나타난 결혼의 구체적인 사례가 복수결혼이다. 복수결혼은 개신교가 전래된 개항기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던 혼인풍속이었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시작된 혼인문화 변화의 바람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 유입된 이후 토착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복수결혼이 서민의 간단한 결혼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문화가 유입될 때에는 통상적으로 기존의 문화와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복수결혼은 우리 전통의 가난한 사람들의 혼인 형태인 작수성례가 개신교적으로 보완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전통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낸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개화백경(1968년 5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기독교사전(한영제 편, 기독교문사, 1991),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혼례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김선령,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필자 김영수(金榮洙)

복인
服人

정의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참최斬衰, 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상복을 입는 사람.

역사 『예기禮記』「상복소기喪服小記」에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것[親親]은, 삼대를 친하게 여겨 오대에까지 이르고 오대를 통해 구대까지 미친다. 윗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아랫대로 갈수록 줄어들며, 방계로 갈수록 줄어들어 친함이 끝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현鄭玄은 "자신으로부터 위로 부친을 친하게 여기고, 아래로 아들을 친하게 여겨 '삼대'가 된다. 부친을 통해 조부를 친하게 여기고, 아들을 통해 손자를 친하게 여겨 '오대'가 된다. 또 조부를 통해 증조·고조를 친하게 여기고, 손자를 통해 증손·현손을 친하게 여겨 '구대'가 된다. '쇄'는 친함이 더욱 멀어질수록 상복을 입는 것도 가벼워짐을 말한다."라고 해석했다. 원대元代의 진호陳澔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아버지가 같은 사람끼리는 기년복을 입고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끼리는 대공복을 입으며, 증조부가 같은 사람끼리는 소공복을 입고 고조부가 같은 사람끼리는 시마복을 입는다. 이것이 '옆으로 줄어드는 것[旁殺]'이다. 고조를 넘어서는 관계에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므로 '끝난다'고 한다."

『예기』「대전大傳」에서는 "친족 관계가 끊어지면 상복을 입지 않는다.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친족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는다."라고 했다. 정현은 "'족형제族昆弟(고조가 같은 형제들)'의 아들은 서로 복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진호는 "삼종형제는 고조가 같으므로 시마복을 입는다. 사종四從에 이르면 친족 관계가 끊어져서 더 입어줄 수 있는 복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복인은 상복을 입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상을 치를 때 참최·자최(재최)·대공·소공·시마의 다섯 가지 옷차림[五服]을 입는 사람을 가리킨다.

내용 '상을 치르는 기간[喪期]'과 '상을 치를 때의 옷차림[喪裝]'은, 죽은 이와 살아남은 이의 '사랑하고 아끼는 정감[親]'과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尊]'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의례儀禮』「상복喪服」에 따르면, 상을 치르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 등이다. 이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사계절의 변화와 순환으로 표상한 것이다. 상을 치를 때의 옷차림[喪裝]은 상의上衣, 하의下衣, 요질要絰, 수질首絰, 지팡이, 관, 신발 등을 기본적인 구성으로 하고, 각 구성요소의 재질 또는 재료에 차이를 둠으로써 참최의 옷차림[斬衰服], 자최의 옷차림[齊衰服], 대공의 옷차림[大功服], 소공의 옷차림[小功服], 시마의 옷차림[緦麻服]의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예컨대 가장 무거운 상복인 참최의 옷차림은 "단을 깁지 않은 상의와 하의, 검은 암삼으

로 만든 요질과 수질, 대나무로 만든 조악한 지팡이, 삼을 꼬아 만든 대, 삼으로 갓끈을 만든 관, 그리고 엄짚신을 한다."라고 규정되는데, 검은 암삼으로 만든 질, 삼을 꼬아 만든 수질과 요질, 엄짚신 등에는 모두 거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는 인공적인 수식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거칠고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재질로 된 옷차림부터 조금씩 세련되면서 인공을 가미한 옷차림, 즉 평상복에 가까운 옷차림까지를 다섯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전통적인 복인의 범위와 그가 사망하였을 때 하는 상기·상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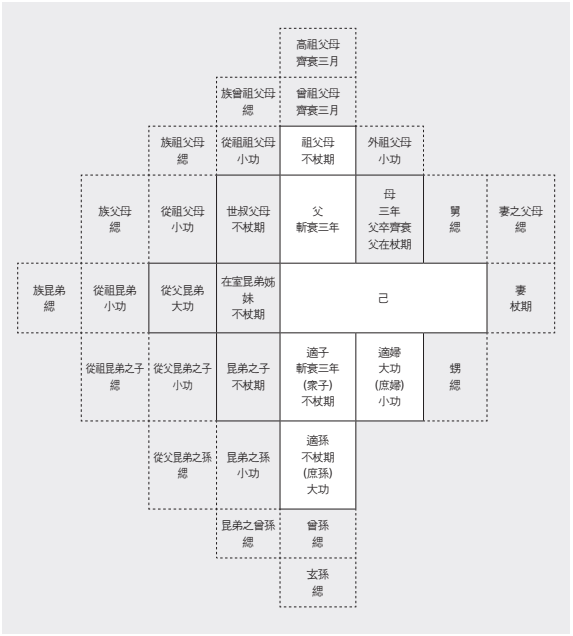

표의 왼쪽, 즉 본종에 대해 복服을 하는 범위는 '나[己]'를 중심으로 같은 항렬[平輩]로는 곤제자매, 종부곤제, 종조곤제, 족곤제에 이르고, 윗방향[尊屬]으로는 부, 세숙부, 종조부, 족부, 조부, 종조조부, 족조부, 증조부, 족증조부, 고조부에 이른다. 나를 중심으로 아래 방향[卑屬]으로는 자, 곤제지자, 종부곤제지자, 종조곤제지자, 손, 곤제지손, 종부곤제지손, 증손, 곤제지증손, 현손에 대해 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과 나의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곤제·자매와 나는 아버지를 동일한 근원으로 한다. 세숙부모와 종부곤제는 할아버지를 동일한 근원으로 한다. 종조조부모와 종조부모와 종조곤제는 증조부모를 동일한 근원으로, 종조조부모, 족증조부모, 족조부모, 족부모, 족곤제는 고조부모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친족이다. 나와 그들의 관계를 매개시켜 주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모에 대한 복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조부모에 대한 복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상복」에는 없다. 나를 중심으로 아래 방향[卑屬]으로 현손에 대한 복이 없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는 그들에 대한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조부모와 증손의 사례에서 이미 그 상장과 상기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이처럼 복을 하는 대상은 복을 하는 주체로부터 위아래로 4대까지이다. 이를 구족九族이라 한다.

평배平輩의 경우 곤제자매, 종부곤제, 종조곤제, 족곤제에 대한 복은 부장기, 대공, 소공, 시마로 규칙적으로 감쇄하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규칙은 고조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족증조부모, 족조부모, 족부모가 족곤제와 동일한 시마로 규정되고 있는 것과, 증조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종조조부모, 종조부모가 종조곤제와 동일한 소공으로 규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아버지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년을 하고, 할아버지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자손들에 대해서는 대공을 하고, 증조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자손들에 대해서는 소공을 하고, 고조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자손들에 대해서는 시마를 한다."라는 일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 경우 내가 상대방을 위해 하는 복은 바로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하는 복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주의가 관철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직계존속·비속과 할아버지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친족(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의 경우 왜곡되는 양상을 보인다. 만일 이러한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된다고 전제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장기, 조부모에 대해서는 대공, 증조부모에 대해서는 소공, 고조부모에 대해서는 시마가 되어야 하고, 자식은 부장기, 손자는 대공, 증손은 소공, 현손은 시마여야 한다. 따라서 존속의 경우, 고조부모에 대한 자최삼월복은 시마가 본래 삼월복이므로 상기는 동일하되 상장은 세 단계나 높인 것이 된다. 증조부모의 경우는 상기를 한 단계 낮추는 대신 상장은 두 단계 높인 셈이 된다. 조부모와 부모의 경우는 상기와 상장 모두를 한 단계씩 높인 것이다. 직계비속의 경우 적자와 적손에 대한

참최삼년과 부장기를 예외로 하면, 중자衆子에 대한 부장기복과 서손庶孫에 대한 대공복은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증손은 소공에서 시마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즉, 직계존속에 대한 복은 명확하게 한 단계 이상 높아지고, 비속에 대한 복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존속과 비속 상호 간의 복에도 특징적인 사실이 나타난다. 고조부모를 위해 하는 복은 자최삼월인데 반하여, 그의 맞짝인 현손에 대해서는 시마삼월복이다. 상장에서 세 단계나 차이가 난다. 증조부모에 대한 복은 자최삼월인데, 그의 맞짝인 증손에 대한 복은 시마삼월복이다. 이도 상장에서 세 단계나 차이가 있다. 조부모에 대한 복은 부장기인데, 그의 맞짝인 서손에 대한 복은 대공구월복이다. 상장과 상기 모두 한 등급의 차이가 있다. 아버지를 위해 입는 복은 참최삼년인데, 중자에 대한 복은 부장기이다. 이도 상장과 상기에서 각각 한 등급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직계존속에 대한 복과 비속에 대한 복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방계의 경우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해주는 복으로 동일하게 '되갚아준다[報]'는 상호주의 원칙이 견지되고 있는 것과 구별되는 직계만의 특징이다.

방계이면서 일반 원칙에 따라 복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큰아버지·작은아버지와 곤제의 자식이 그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에 대한 복은 모두 대공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복은 모두 한 등급씩 높다. 그리고 특징적인 사실은 이 둘 사이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직계의 경우와는 달리 존속에 대한 비속의 복과 비속에 대한 존속의 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복이 강화된 것은 직계의 경우와는 다른 요인 때문이어야 한다. 이는 「상복」이 성립될 당시의 가족 구성과 관계가 있다. 즉, 당시는 조부모와 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그리고 나, 즉 조·부·기의 삼대 동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생산에 종사하고, 생산된 재산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였다. 이들을 방계 친족 중에서도 '대공 이상의 친족'이라 부르고 '공재상조共財相助'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혈연을 매개로 한 유대가 '동거同居'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방계이면서도 복을 높여 하는 것이다.

표의 왼쪽은 어머니의 권속[母黨]과 아내의 권속[妻黨]에 대한 복을 표시한다. 이 밖에도 삼부三父(동거계부同居繼父, 부동거계부不同居繼父, 원부동거계부元不同居繼父)와 팔모八母(적모嫡母, 계모繼母, 양모養母, 자모慈母, 가모嫁母, 출모黜母, 서모庶母, 유모乳母)에 대해서도 복을 한다.

특징 및 의의 망자에 대해 복을 하는 사람 가운데 동종同宗의 경우는 바로 전통 사회에서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즉 동고조同高祖 8촌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망자에 대하여 친소에 따라 다섯 가지 다른 상복을 한다는 것은 친족 간에 유대감의 차이에 따라 상복을 구분하여 입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때문에 상복은 상례에서 입는 의례복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친족의 멀고 가까움을 구분하는 용어로 대신 사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禮記, 儀禮, 한국의 상례(양승이, 한길사,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장동우(張東宇)

복차장
複次葬

정의 사람이 죽은 후 주검을 임시로 처리하였다가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매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최종 처리하는 장례법.

역사 주검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일정한 단계를 거친 다음 주검을 최종 처리하는 장례법은 선사시대부터 있었다. 신석기시대 경상북도 울진 후포리 세골장洗骨葬 유적은 주검의 시신을 썩혀 육탈肉脫한 뒤 유골만을 수습하여 재매장한 것이다.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에도 무덤을 축조하는 시간 동안 주검을 가매장하거나 집안 또는 산야에 임시로 안치하는 빈장殯葬이 행해졌을 것이 분명하므로 복차장複次葬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삼국시대 고구려나 백제, 신라, 가야의 대형 고분들은 주검을 최종적으로 매장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을 조성하는 시간 동안 빈장이

행해졌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된 묘지명에 왕은 27개월, 왕비는 28개월 동안 빈전殯殿에 모셨다가 최종 매장했다는 기록이 있어, 2차장을 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의 동옥저조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주검을 가매장해 두었다가 살이 다 썩으면 뼈만 추려서 다시 덧널 속에 넣는다."라고 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주검을 처리한다고 기록하였다. 『수서隋書』「동이열전東夷列傳」 고구려조에 "고구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주검을 집 안의 빈소에 두었다가 3년이 지난 뒤 길일을 택해서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여, 빈장과 본장이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복차장 풍속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신라 문무왕文武王의 경우에도 먼저 시신을 화장한 다음 유골을 동해 속의 수중 암초인 대왕암에 수장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화장하여 유골을 수습한 다음 9개월에서 15개월 이후에 매장하는 이차장이 행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도입으로 빈장이 보편화되어, 주검을 일정한 장소에 임시로 안치한 뒤에 본장을 하는 풍습이 유행하였다. 또한, 초분草墳이나 가매장 후에 본장을 치르는 풍습이 널리 행해졌다. 그리고 부부나 가족의 합장, 무덤의 이장 또는 천장이 행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전에 묻혀 있던 주검이 추가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관리상의 편의 때문에 묘지를 원래 위치에서 이장 또는 파묘破墓한 다음, 화장한 유골을 납골묘에 안치하거나 숲에 뿌리는 수목장樹木葬의 방식으로 주검을 재처리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주검 재처리 역시 복차장의 한 범주로 볼 수 있다.

내용 복차장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검을 특정한 곳에 옮겨 두었다가 육탈이 되기를 기다린 후 뼈만 수습하여 최종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육탈을 시키는 방법은, 집 또는 집 근처의 산야에 빈소 또는 빈전을 마련한 후 시신을 가매장하거나 초분을 하여 자연스럽게 비바람에 의해 육신이 썩도록 하는 것이다. 육탈이 되도록 기다리는 기간을 '빈기'라고 하며, 적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 또한, 죽은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검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미루어 빈장을 한 후, 주검이 변화하여 더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매장한다. 옥저에서처럼 주검이 육탈될 때까지 가매장해 두었다가, 뼈만 수습해 모은 가족의 유골을 덧널에 묻는 세골장은 고대사회의 복차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복차장은 일차장에 비해서 주검을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힘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일정한 경제적 능력과 특별한 조상숭배 의식이 없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결국, 복차장은 경제적 여력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배층이나 특별한 조상숭배 풍습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주로 행해졌다.

복차장은 단일 주검에 대해서 행해지지만, 부부의 합장이나 가족의 유골을 함께 모시는 다인장 또는 집단적인 이장이나 천장의 경우에도 행해진다. 오늘날 유행하는 가족묘지나 봉분형 납골묘 등의 조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징 및 의의 복차장은 주검을 빈장이나 가매장, 이장 등으로 1차 처리한 뒤 본장을 하는 것으로 주검의 처리가 2회 이상 이루어지는 이중의 장제葬制이다. 복차장을 행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다. 피와 살은 인간세계의 것이므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육탈이 되어야만 저승세계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즉, 육탈이 되어 뼈만 깨끗하게 남은 상태로 매장되어야만 영혼이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고분문화(중앙문화재연구원, 서경문화사, 2011),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5), 옛무덤의 사회사(장철수, 웅진출판, 1995), 장례문화의 이해(이수봉, 경인문화사, 2008), 한국의 초분(국립민속박물관, 삼광문화사, 2003).

필자 김영관(金榮官)

봉사대수
奉祀代數

정의 조상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대수를 일컫는 말.

역사 유교식 제사에서는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 따라 사대봉사四代奉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례古禮에 따르면 조상제사의 봉사대수奉祀代數는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예기禮記』「왕제王制」에 따르면 천자天子는 3소昭와 3목穆에 태조를 합해 7묘를 모시고, 제후諸侯는 2소와 2목에 태조가 있어 5묘가 되며, 대부大夫는 1소와 1목에 태조를 더하여 3묘가 된다. 사士는 1묘이고, 서인庶人은 묘가 없이 침寢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의 온조왕, 신라의 남해차차웅 시대에 이미 시조묘始祖廟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신분에 따른 차등봉사差等奉祀 제도가 유입된 것 같다. 그러나 고려 말 『가례』의 사대봉사가 유입되면서 봉사대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고려 말 조준趙浚(1346~1405)의 "대부 이상은 3대, 6품 이상은 2대, 7품 이하와 서인은 모두 부모만 제사하도록 해 달라."는 상소에 따라 1390년(공양왕 2)에 공포한 「대부사서인제례大夫士庶人祭禮」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어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1397)도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후 1428년(세종 10) 모두 사대봉사를 주장하는 입장과 현행 차등봉사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문인 4품 이상의 신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대봉사에 찬성한 사람은 4~5인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차등봉사를 지지하였다. 이에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에서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봉사, 7품 이하는 2대봉사, 서인은 부모만 봉사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 규정이 고려시대와 다른 점은 대부와 6품 이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3대를 제사하도록 봉사대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7품 이하는 2대를 허용하고, 서인은 부모만 제사하도록 규정하여 선비의 위상을 높인 것이다.

중종대中宗代에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림士林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면서 다시 사대봉사가 거론되었으나 국론으로 통일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언적李彦迪(1491~1553)도 『경국대전』을 무시할 수 없다 하여 『봉선잡의奉先雜儀』를 저술하면서 3대봉사를 준수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은 주자의 『가례』가 조상제사는 신분 차등 없이 사대봉사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이李珥(1536~1584)의 『제의초祭儀秒』라든가 「의성김씨문중완의문義城金氏門中完議文」 등에도 3대봉사를 해 16세기까지 3대봉사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를 지나면서 고례에 대한 본격적 연구와 성리학의 실천이 맞물리면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몸소 사대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1752년(영조 28) 영조가 현빈賢嬪의 대공복大功服을 기년복朞年服으로 고쳐 정리하라고 명하면서, "이 제도를 복구하고자 하는 것은 경자년(1660, 현종 원년)에 3년으로 복구하면서 예를 제정한 것을 깊이 유념해서이다. 아! 향곡鄕曲의 서인庶人도 4대代를 봉사奉祀하는 법인데 하물며 대통을 이어 주창主鬯하는 주자胄子야 말해 무엇하겠는가!"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초기 차등봉사가 18세기 중반이 되면 사대봉사로 완전히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사대봉사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1934년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儀禮準則」, 1969년 「가정의례준칙」과 개정판, 1998년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이르러 2대봉사를 원칙으로 규정하였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화·도시화로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2대봉사, 3대봉사, 합동기제사 등 봉사대수가 다양하게 바뀌었다.

내용 사대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봉사대수는 유교식 상례에서 유래한다. 이는 오복제도五服制度에서 천자로부터 서인까지 구분 없이 고조를 정점으로 한 8촌까지의 자손들이 상복을 입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상복을 입는 것은 고인을 직계 조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고조까지가 하나의 종宗을 이루는 직계 조상이기에 사대봉사의 원칙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가례』「사당祠堂」에서는 네 개의 감실을 만들어 사대봉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봉사대수 규정의 직접적 근원이 된 것은 종법宗法이다. 종법이란 당내堂內나 문중 같은 친족조직 및 제사의 계승과 종족宗族의 결합의 근거가 되는 친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말한다. 종법은 '종자법宗子法' 혹은 '별자종법別子宗法'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중국의 봉건제도를 위해 만든 것이다. 『예기』의 설명에 따르면 제후의 적장자 장남은 아버지[父祖]를 계승하여 제후가 되지

만, 둘째 이하 아들은 경대부卿大夫 작위를 받아 별도로 가문을 세우는데, 이를 '별자別子'라 한다. 제후가 되는 적장자는 종조宗祧를 계승하므로 백 년이 지나도 체천遞遷하지 않는 백세불천百世不遷의 대종大宗이 되고, 별자는 4대를 넘어서면 체천하는 오세이천五世而遷의 소종小宗이 된다.

종은 대종과 소종으로 나뉘지만 이를 좀 더 세분하면 다섯 종류가 된다. 고조를 정점으로 하는 고조종高祖宗은 고조·증조·조·고의 4대 여덟 명을, 증조를 정점으로 하는 증조종曾祖宗은 증조·조·고의 3대 여섯 명을, 조祖를 정점으로 하는 조종祖宗은 조와 고의 2대 네 명을, 고考를 정점으로 하는 녜종禰宗은 부모 두 사람을 봉사하게 된다. 여기에 대종을 포함하여 오종五宗이라고 한다.

종법제도는 『가례』가 들어온 고려 말 이후 유교식 제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일반화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종법을 적용하려 하였다. 종법은 기제사忌祭祀의 제사집단을 규정함과 동시에 봉사대수를 규정한다. 유교식 제사에서 기제사는 최대 4대조까지 봉사할 수 있고, 5대조 이상은 체천遞遷하거나 묘사로만 봉사한다. 대종은 불천위不遷位로서 시조의 기제사를 지낼 수 있으나 소종은 시조의 기제사를 지낼 수 없다. 이러한 종법은 친족 명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삼종형제 이상과 고조 이상의 명칭이 없는 것은 봉사대수를 한정하는 중요한 근거이자 기제사의 제사집단을 규정하는 근거이다.

우리나라 역시 종법제도를 따르지만, 씨족氏族에 따라 대종의 범위가 다르다. 전통 있는 씨족은 대종 내 수백만 명의 종원宗員이 포함되므로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조직하기 어렵다.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 이들을 조직하고 조상의 묘제를 드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은 '파派'라는 종을 만들어낸다. 시조의 자손 중 유명한 사람이 탄생하면 별도의 파를 만들어 파시조派始祖로 세울 경우 다른 형제는 다른 파의 시조가 된다. 이 파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중이라는 사회조직을 구성하여 하나의 대종처럼 기능한다. 씨족이 크면 파 역시 수없이 많아 파의 집합이 대규모의 대종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파는 파시조를 정점으로 별개의 집단처럼 운영되기에 또 하나의 대종으로 볼 수도 있다.

씨족의 대표 문중이든 파시조의 문중이든 시조의 적장자인 종손宗孫이 있다. 종손은 그 집안의 적장자로 계승되므로 중국 종자법의 종자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종손은 파종손이라 하더라도 파시조를 불천위로 봉사할 수 있는 제사계승권을 가지기에 종자의 성격이 짙다. 한국식 종법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봉사대수는 원래의 종법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지역사례 인천광역시 강화도 내가면 지역에서는 대수의 계산법이 달라서 사대봉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3대봉사를 하고 있고,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서는 3대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제사의 봉사대수는 『가례』의 규정에 따라 사대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차등봉사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와 제도의 격차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조선 초기 차등 봉사는 조선 후기 유교 제사의 일반화 때문에 사대봉사로 일반화되었고, 현대사회의 일상생활 변화, 다종교 사회의 영향으로 다시 기호에 따른 봉사대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교문화를 전승하는 종가에서조차 이제는 봉사대수를 축소하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常變通攷, 禮記, 朝鮮王朝實錄,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한국국학진흥원, 민속원, 2012),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김시덕(金時德)

봉사혼
奉仕婚

정의 신랑이 일정한 기간 신부 집에서 육체적·정신적 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혼인 형태.

내용 혼인의 성립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신부 집과 신랑 집 사이에 선물이나 재화, 서비스가 상호 교환되는데, 이 중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일정한 형태의 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을 말한다.

봉사혼에서 봉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신

랑은 일정한 기간 신부 집에서 노동을 포함한 봉사를 제공한 뒤에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즉, 일정한 양의 봉사는 혼인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둘째, 신부 집에서 신랑의 육체적·정신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신부 집에서는 육체적·정신적 시험을 통해 신랑의 사람 됨됨이를 검증한 뒤에 신부를 내어 주는 것이다. 전자는 봉사의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봉사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것인데, 실제로는 두 측면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이 봉사혼의 기간은 짧게는 1년 이내일 수도 있고, 10년이나 15년 동안 지속하기도 하였다. 이 동안 미래의 신랑은 신부를 만날 수도, 때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한국에서 이 봉사혼에 대한 민속지적 보고는 손진태孫晉泰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수행하였다. 아키바 다카시는 조선의 하위 계층에 데릴사위제가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데릴사위제를 봉사혼과 연계시키고 있다. 손진태는 1800년대 말까지 평안도 일원의 농민 계층에 봉사혼이 존재하였다고 보고한다. 그는 데릴사위를 봉사혼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신랑은 보통 5~6년, 길면 십여 년간을 처가에서 노동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신랑은 신부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후에야 독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손진태는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와 연계시키고 있다. 하지만 서옥제에 관한 기록에 신랑이 신부 집에서 봉사한다는 점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 서옥제나 혼인제도를 봉사혼으로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징 및 의의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 집에 일정 기간 머물렀던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은 한국의 전통 혼인을 대표함과 동시에 봉사혼과 일정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봉사혼은 한국의 혼인을 설명할 때 서류부가혼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봉사혼에 대한 연구는 부계부거제와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때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인류혼인사(Edward Westermack, 정동호·신영호역, 세창출판사, 2013),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필자 강정원(姜正遠)

봉선잡의
奉先雜儀

정의 조선 중기의 문신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1491~1553)이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제반 예식에 관하여 편찬한 책.

내용 『봉선잡의奉先雜儀』는 이언적이 1550년(명종 5)에 봉선奉先, 즉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제반 예식에 관하여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비롯하여 선유先儒들의 여러 설을 바탕으로 편찬한 책이다. 체재는 전체 2권 1책으로서, 상권에는 사당에 선대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것에서 사시제四時祭를 비롯한 각종 제사의 절차까지 항목별로 정리해 놓았고, 하권에는 제례에 대한 『예기禮記』의 구절 및 선대 여러 학자의 주요 견해를 선별하여 수록해 놓았다.

이언적이 직접 쓴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책은 주자의 『가례』를 근본으로 삼고, 사마광司馬光·정이程頤 등의 선인들이 밝혀 놓은 제례와 당시의 풍속을 적절히 참고하여, 일가一家에서 지킬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만든 것이다. 주자의 『가례』를 중심에 두고 여타 부족한 부분은 고례古禮와 시속時俗을 따른다는 방식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대체적인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이와 더불어 이언적은 제사의 의의가 본本과 문文을 겸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제사에서 본인의 마음가짐과 문인의 형식·절차가 함께 갖추어져야 함을 언급한 것이다.

『봉선잡의』는 조선시대 예학의 흐름 가운데 주가의 『가례』가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조선에 들어와 강조된 주자의 『가례』가 조선 고유의 시속과 적절히 조합되는 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저작이다. 이 책 이후에 등장하는 조선 유학자의 각종 예서禮書 또한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이어갔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봉안
奉安

정의 화장한 유골을 여러 형태의 시설물 안에 안치하는 것.

역사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무덤이나 사리탑에 유골을 장골 또는 안장하였다는 기록은 남아있다. 하지만 '납골'이라는 용어는 발견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의 부도浮屠 외에는 화장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2년에 제정되어 1961년까지 적용되었던 「묘지墓地·화장장火葬場, 매장埋葬 및 화장취체규칙火葬取締規則」에도 납골(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납골당이라는 용어가 담긴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933년 경성부(현 서울시)의 화장장 관련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납골당納骨堂 사용료使用料'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일반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1961년 12월 5일 우리 손으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장(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납골당'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여기서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유골을 수장收藏하기 위하여 납골당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고 정의하였다. 1981년 3월 16일에 앞의 법률을 개정하면서 '납골묘(지)' 제도를 도입했고, 이어 시행령에서 "유골을 땅에 납골한 분묘는 평분으로 하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조물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수장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때부터 '납골묘(지)'라는 말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0년 1월 12일자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로소 '납골' 및 '납골시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률을 2007년 5월 25일자로 전부 개정하면서 '납골'은 '봉안'으로, '납골시설'은 '봉안시설'로 변경하고,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에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을 열거하고 '봉안담'을 추가하였다.

봉안시설의 변천을 보면,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 납골당은 화장장 한쪽 구석방에 설치한 허름한 선반 위에 창호지로 포장한 유골함을 안치해 둔 것이 대다수였다. 이후 등장한 목제봉안단도 대중목욕탕의 신발장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수준이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사용하던 알루미늄 봉안단이 소개되었고, 이어 미국에서 널리 사용 중이던 PC콘크리트 봉안단이 소개되었다. 1995년 부산영락공원에 알루미늄 봉안단을 설치한 납골당이 건축되었고, 같은 해 12월 6일 서울시립화장장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대리석을 혼합한 봉안단을 갖춘 현대식 납골당이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이어 1998년 서울시립 묘지 안에 PC콘크리트 봉안단으로 구성된 옥외 봉안담(처음에는 '옥외벽식납골시설'이라고 불렀다.) 역시 국내 최초로 건립되었다. 이어 1999년에는 '용미리 추모의 집'이라는 현대식 납골당이 문을 열었다. 이때부터 우리 국민의 화장률 급증으로 봉안시설 수요도 함께 증대했으며, 이후 건립된 공·사설 봉안시설은 빠른 속도로 현대화 및 서구화되었다.

내용 봉안시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먼저 봉안실은 유형별 봉안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하여 놓은 방으로 ○○홀, ○○실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봉안단奉安壇은 봉안실에 유골용기를 각각 안치할 수 있도록 구획하여 제작된 구조물의 총칭이며, 개인단·부부단·가족단·문중단·종중단·단체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봉안당 안에 다수의 봉안실이 있고, 봉안실에는 여러 개의 봉안단이 놓여 있으며, 봉안단에는 수십 개 이상의 봉안칸이 있고, 각 봉안칸에 용기를 안치하고 명패를 부착하여 둔다. 여러 개의 봉안담으로 구성된 옥외 봉안시설은 먼저 각 구역(또는 묘역)으로 구획하고, 하나의 구역에도 다수의 봉안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봉안단의 구성은 봉안당과 같다.

①봉안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설과 가족·문중·종중·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한 사설로 구분한다. 그리고 공통적인 시설기준은 1)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2)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4)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같은 시

설기준을 다시 정리해보면 봉안(납골)·추모(제례)·편의(휴게)·관리(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참배방식은 참배자가 각 봉안단 바로 앞에 서서 직접 접촉하면서 헌화·참배할 수 있는 직접참배방식과 봉안실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제단 등 지정된 공간에서만 참배하는 간접참배방식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봉안당이 직접참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제례실을 별도로 두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간접참배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봉안단奉安壇은 유골용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안치하는 시설인데, 목재·금속·PC콘크리트로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봉안당은 유골용기가 보이지 않는 밀폐형密閉形, 유리를 통해 보이는 투시형透視形, 용기가 노출되어 있는 개방형開放形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봉안당(시설)에 봉안단을 배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선형 배치는 복도의 양쪽 혹은 한쪽에 봉안실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봉안실 양측에 봉안단을 배치하는 형태이다. 방사형 배치는 중앙계단 또는 상징물을 중심으로 방사형放射形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인천 가족공원 금마총과 같이 원형圓形으로 건축된 국내외 일부 봉안당에서 채택하고 있다. 동심원형 배치는 중앙의 조형물을 중심으로 봉안단을 동심원 형태로 겹겹이 배치하는 것이다. 일실형 배치는 봉안당 전체 또는 한 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봉안단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족이나 단체 등의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방법이다.

②봉안담은 종래 서울시 등에서 옥외벽식 납골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시설 유형으로, 옥외형 봉안담은 벽 또는 담형·옹벽형·축대형·조형물형·독립공간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벽형은 봉안당이 아닌 장례건축물 외벽에 봉안단을 부착한 형태를 말한다. 담형은 장례시설을 외부와 차단하는 담장에다 봉안단을 부착한 것을 말한다. 옹벽형擁壁形은 경사지에 콘크리트 옹벽을 타설한 다음 그곳에 봉안단을 부착한 것을 말한다. 옹벽을 타설하지 않고 콘크리트 봉안단 자체가 옹벽기능을 하도록 튼튼하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축대형築臺形 또는 화단형은 묘지 안의 화단이나 녹지대의 경계석은 물론, 석축이나 옹벽을 치기 곤란한 얕은 비탈면에 봉안단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형물형造形物形은 조형물에 봉안단을 부착하거나, 여러 형태의 봉안단을 결합하여 조형물화하여 설치하는 봉안담을 말한다. 독립공간형은 앞에서 본 여러 형태의 봉안담을 하나의 공간 속에 조합하여 구성하여 독특한 경관을 꾸미는 형태이다. 독립공간형의 대표적인 예는 서울시립 용미리제1묘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천주교 인천교구 묘지의 '부활의 동산'과 전남 무안군 '유달공원묘지', 담양군 공설묘지인 '갑향공원', 국립이천호국원 등을 들 수 있다.

봉안담이 지닌 장점은 우선 축대·옹벽·화단의 경계 부분 등 사실상 버려지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자연 친화형의 봉안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봉안담이 지닌 또 다른 강점은 봉안단에 그림·조형물 등을 구성하여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옥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봉안단을 철재, 석재, 콘크리트 등과 같이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③봉안탑은 글자 그대로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이며, 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바닥면적은 3m^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 개발된 봉안탑들은 거의 가족형이며, 대부분 탑 아래 석실에 유골함을 안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불교신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영탑靈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보급되었다. 안치 능력에 따라 10여 위 내외의 가족형부터 수십 위를 안치할 수 있는 것도 개발되어 있다.

④봉안묘의 크기는 개인 10m^2, 가족 30m^2, 종중 또는 문중 100m^2, 종교단체 500m^2 이내로 제한된다. 봉안묘의 구조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개폐 가능한 석실에 유골항아리를 안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석실의 위치에 따라 지중형地中形, 지면석실형, 지상석실형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이 중 지하에 석실을 두는 봉안묘는 배수시설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광중에 공간을 남겨두지 않아야 고인 물이나 해충, 작은 동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특징 및 의의 '봉안'이라는 말은 종전 '납골'이 혐오감을 준다고 하여 순화시킨 용어이다. 그런데 원래 봉안奉安이란 말은 주로 "신주神主나 화상畫像을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으로 주로 실내에 안치하는 것을 높여 이르는 말이었다. 근래 개정된 한글사전을 보면 "시신이 화장되어 그 유골이 그릇이나 봉안당에 모셔지다."라는 뜻풀이가 더해져 있다. 이 두 의미를 아울러 살펴보면 봉안탑·봉안당 및 봉안담 등의 단어를 사용해도 그다지 무리는 없다. 하지만 분묘와 거의 같은 '봉안묘'와 그 모두를 아우르는 '봉안시설'로까지 확대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 이처럼 용어를 순화할 때 원래의 뜻과 일반적인 국민의식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봉안'이 납골을 대신하는 용어라는 것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참고문헌 금속제 납골 봉안용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안명선,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서울장묘시설 100년사(박태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3), 장례의 역사(박태호, 서해문집, 20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 후 납골, 봉안·자연장 등의 발전방안 연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10), 봉안당 서비스-용어(KS S 2027-1, 2005).

필자 박태호(朴台浩)

봉제사접빈객
奉祭祀接賓客

정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고,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유교적 실천 덕목.

역사 유가儒家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대접하는 '봉제사접빈객'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겼다. 이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살던 197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집에서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종가나 반가의 전통을 잇는 집에서는 요즘에도 여전히 봉제사접빈객이 으뜸되는 실천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사는 조상을 사후 봉양하는 의미의 의례로서, 조상의 존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음식을 접대한다는 의식이 지금까지도 비교적 잘 이어지고 있다. 종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기준으로 기제사忌祭祀·불천위不遷位·시제時祭·묘제墓祭·차례茶禮 등 1년에 열두 번 이상의 제사를 지냈으며, 이때마다 많은 사람이 참사자로 참여하여 이를 접대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종가에서는 봉제사가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을 대비하여 봉사조奉祀條를 마련하였다. 봉사조는 조상의 사후 봉양을 위한 재산, 계승 관계 등을 기록해 둔 법적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토지·노비를 승계하게 되어 있다. 제사를 승계받은 사람은 사후 봉양을 위한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만 있고 처분은 할 수 없었다. 즉, 조상의 사후 봉양을 위한 재산은 문중의 소유였다. 그러나 간혹 재산을 종손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예도 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봉사자가 사당을 독점 상속하고 제전祭田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 전기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봉사조奉祀條에서 "적장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중자衆子가, 중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첩자妾子가 봉사하고, 적장자에게 오직 첩자만 있어서 아우의 아들을 후사로 삼고 싶어 하면 이를 들어준다."라고 한 것처럼 직계주의를 원칙으로 장자를 재산상속에서 우대하면서 제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자가례』에 입각하면 재산상속에서 봉사조의 비율은 1/5이다. 이러한 장자 중심의 재산상속과 봉사는 16세기 중엽에 시작되어 18세기 초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일제강점기 이후 봉사조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관습으로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에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며 '봉제사접빈객'의 책무를 계승하고 있다.

한편, 서민 가정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와 경제 변동으로 접빈객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었으나, 봉제사에 대한 의식은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 가난하게 살던 시기에는 봉제사접빈객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더 중요했지만, 다수 사람이 잘살게 되면서 이 덕목은 차츰 잊혀가고 있다.

내용 봉제사접빈객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고 집안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종가에서는 이를 잘 실천하고 있는데,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종가를 방문하는 친족을 비롯한 손님들을 소홀히 대접하는 경우가 없다. 이는 종가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잦은 제사와 많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에 종가에서는 봉사조를 마련하여 제사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1577년 김진金璡(1500~1580)은 유서에 협소한 땅

을 자녀들에게 분할상속하지 않고 봉사조를 설정하여 조상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였으나, 1581년 의성義城 김씨金氏 문중에서는 제사를 책임지는 종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봉사전奉祀田을 마련하였다. 1566년 이이李珥(1536~1584) 남매의 화회문기和會文記에는 형제 중 1인을 유사로 삼아 종자宗子와 의논하여 제사를 지내되 유고가 생기면 친자는 조제미助祭米 열 되, 친손자녀는 다섯 되, 친증손자와 외손자녀는 쌀 두 되를 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1594년 류성룡柳成龍(1542~1607)의 모친 김씨의 허여문기許與文記에는 묘직노墓直奴가 없는 시부모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제전과 재사齋舍를 마련하여 제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부모의 봉사를 위해 묘직노가 위의 전답을 경작하고 자손이 병작竝作하여 그 생산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정 부모의 제사를 위해서 친정 부모의 봉사조를 친정 조카에 증여하여 그 생산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며, 대가 끊어진 이후에도 묘전으로 삼기 위해 토지를 팔거나 나누는 것을 금하기도 했다.

종가나 반가에서는 예를 갖추어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종부宗婦의 역할이 컸는데, 종부는 이를 평생의 과업으로 여긴다. 종가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종부는 종일 밥을 짓는 것이 일이다.",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 정작 본인은 배가 고픈 줄도 몰랐다.", "식량이 부족하면 이웃집에 빌려 와서라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종부들의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가에는 간혹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이 생기기도 하고, 그 손님의 숫자가 많기도 하였다. 경상북도 경주 최부잣집에서는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이 100여 명이 넘더라도 결코 박절하게 대하는 법이 없고, 방이 모자라면 노비의 집에라도 보내어 묵어갈 수 있도록 했다.

종가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평소 '가양주家釀酒'와 '음식'을 마련해 두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대대로 내려와 오늘날까지 종가의 음식문화를 계승하는 전통으로 자리한다. 청송의 심부잣집(송소고택)에서는 찾아오는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집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내외 담에 몇 개의 구멍을 뚫어두었다. 중요한 것은 집안 부녀자는 손님을 볼 수 있지만, 내외 담 밖의 손님은 집안 부녀자를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접빈객을 잘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중요했다. 접빈객에는 손님을 잘 예우함으로써 다시 자신도 손님이 되어서 예우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렸으며, 부잣집에서는 모르는 손님에게도 적선積善이라는 차원에서 박대하지 않았다.

한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서민 가정에서는 봉제사접빈객을 위해서 제사용 쌀을 봉지에 담고 누구의 제사 때 쓸 것인지를 적어서 별도로 보관하기도 하였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서 장기 보존이 가능한 식품을 준비해두려고 노력했다.

특징 및 의의 조상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유교적 실천 덕목이다. 그리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지키며, 조상의 유업이나 위상을 잃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한 생활의 지표로 삼았다. 접빈객은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그 실천에서 차이를 보인다.

참고문헌 16세기 봉사재산의 실태(정긍식, 고문서연구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예천 금당실·맛질 마을(배영동, 예문서원, 2004),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화(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수실, 한국국학진흥원, 2008), 한국의 명문 종가(이순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배영동(裵永東)

봉치시루

정의 혼례일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채단과 예장을 보낼 때나 신부 집에서 이를 받을 때 쓰는 혼구婚具.

내용 봉치시루는 전통혼례 시 '납폐納幣'의 절차 때 쓰이는 시루로 '봉치'와 '시루'의 합성어다. 봉치는 함에 넣는 채단과 예장을 일컫고, 시루는 떡이나 술밥 등을 찌는 기구를 일컫는다. 그런데 함을 올려놓을 때 쓰이는 봉치시루는 떡이 담긴 상태의 시루 위에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떡과 시루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고본춘향전〉에 "찰시루 쪄 놓고 밤낮 보름을 빌어도 이가 아니 드는 놈"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찰시루'도 찹쌀로 찐 떡을 시루째 일컫는 말로, 위와 같이

봉치시루 | 1999 | 이길표

쓰인 예이다. '콩나무시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봉치시루 등 '떡시루'라고 하면 '시루'만을 일컫기도 하지만, 시루에 떡을 찐 채로의 상태 그대로를 일컫는 말로 많이 쓰인다. 따라서 봉치시루를 '봉치떡[봉채떡]'이라고도 하고 함을 보내거나 받을 때 소용되는 떡이라고 하여 '함시루떡', '함떡', '함받이떡'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혼인의 육례 중 '납채納采'가 '납폐'의 뜻으로도 통용되기 때문에 '납채시루'라고도 한다.

시루는 떡이나 술밥 등을 찔 때 쓰는 찜기의 일종이다. 바닥에 예닐곱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채운 솥에 얹어놓고 불을 때면 뜨거운 김이 구멍으로 올라와 익게 되어 있다. 이때 바닥에는 내용물이 구멍으로 새지 않도록 가는 새끼나 칡덩굴을 요철 모양으로 떠서 만든 시룻밑을 깐다. 그리고 김이 솥에서 시루로 올라올 때 새지 않도록 쌀무거리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시룻번을 바른다. 크기에 따라 큰 시루, 중 시루, 작은 시루가 있고, 재료에 따라 도제시루, 질그릇시루, 동제시루 등이 있는데, 질그릇시루는 중부지방에서 많이 쓰였고 도제시루는 남부지방에서 많이 쓰였다. 강원·경상·전남·제주에서는 '시리'라고도 부른다.

봉치떡을 찔 때는 두 켜를 놓는데, 아래 켜에는 팥고물을 넣지만 윗 켜에는 팥을 놓지 않고 흰 가루를 그대로 둔다. 흰 가루 중앙에는 대추 아홉 개를 신부 바리 뚜껑 안에 들도록 모아놓고, 가운데에 밤 한 톨을 두고 시루를 찐다. 그리고 함을 받을 때 여는 절차가 끝나면 신부의 주발 뚜껑으로 대추와 밤 놓은 것을 똑 떠내어 신부 혼자 먹는다. 나머지는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데 이 봉치떡은 대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함을 보내기 전에도 똑같이 봉치떡을 정성껏 찐 다음 시루째 마루 위에 있는 소반에 놓고 그 위에 함을 올려놓았다가 신부 집으로 보낸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함이 혼인을 축복하는 귀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날에 함을 파는 풍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봉치시루의 전통은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전통적인 시루 외에 스테인리스 시루, 실리콘 시루 등 시루가 다양화되었으며 시루째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현대식 찜기에 쪄서 플라스틱 그릇이나 예쁜 한지바구니 등 각종 용기에 담아 보낸다. 그리고 시루 모양도 재질에 따라 사각으로 된 것도 있으며, 떡의 양과 대추 밤의 개수 또한 다양화 되었다. 그러나 두 켜, 네 켜 등 짝수로 떡을 안치는 전통성과 붉은 팥의 시루떡, 그리고 대추와 밤의 상징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두 켜는 음양의 결합으로 한 쌍의 부부를 의미하며 팥은 벽사辟邪, 대추는 아들을, 밤은 딸을 각각 상징하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떡은 일생의례나 세시의례 등 우리나라 민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식으로, 떡을 나누어 먹는 행위는 상호 간의 화합을 뜻한다. 봉치시루 역시 양가의 화합은 물론 축복의 의미가 담겨있는 음식으로서, 위의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오늘날의 혼례문화에서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참고문헌 국학도감(이훈종, 일조각, 1970), 기러기 아범의 두루마기-한국의 통과의례와 상징(강재철,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87).

필자 강재철(姜在哲)

부고
訃告

정의 상장례 때 주변에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

내용 초상 당일에 친척과 동료, 친우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는 일이 부고訃告이다. 『의례儀禮』「기석례旣夕禮」

의 주注에서 "부赴는 달려가서 고하는 것이다. 금문今文에는 '부訃'로 되어 있다."라고 했다. 소疏에는 "'부赴'라고 표현한 이유는 빨리 달려가서 알린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예기禮記』「잡기雜記」에서 '부訃'라고 표현한 이유는 말로 서로 통지하는 뜻을 취한 것으로, 역시 같은 의미이다."라 하였다. 따라서 부고는 사람을 보내 빨리 달려가서 구두로 초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기』「단궁檀弓」의 소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살았을 적에 다른 사람과 은정恩情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집에서 사람을 시켜 부고를 전해야 한다. 『의례』「사상례士喪禮」에서 '효자가 스스로 부고를 전할 자를 명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서는 "대부 이상의 경우는 부형이 대신하여 부고를 전할 사람을 명한다. 사의 경우는 스스로 부고를 전할 사람을 명해도 된다."고 했다.

부고의 대상에는 군주도 포함되었다. 『의례』「사상례」에서는 "이어 사람을 보내 군주에게 알린다."라고 하고, 그 주에서 "신하는 군주의 팔과 다리이며 눈과 귀이다. 죽었을 경우 마땅히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백호통의白虎通義』에서도 신하가 죽었을 때 군주에게 부고를 보냈다고 하였다. 군주도 신하의 죽음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 부고를 듣고 싶어 하고, 그래야 부의賻儀의 예를 치를 수 있다고 하였다.

고례에는 부고하는 말이 신분에 따라 달랐다. 『예기』「잡기」를 보면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체로 군주에게 신하의 죽음을 고할 적에는 '군공君公의 신하 아무개가 죽었습니다.'라고 한다. 대부가 죽어서 같은 나라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고할 적에는 '아무개에게 불록不祿이 생겼습니다.'라고 한다. 사士에게 고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아무개에게 불록이 생겼습니다.'라고 한다. 사가 죽어서 같은 나라의 대부와 사에게 고할 적에는 '아무개가 죽었습니다.'라고 한다."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란 같은 나라의 대부를 이르며, 사는 지위가 낮으므로 고하는 말을 대부보다 낮추어서 하는 것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서는 호상護喪과 사서司書 등을 세우고 난 뒤에, 이들이 글을 써서 보낸다고 하였다. 만약 이들을 세우지 않았으면, 주인이 스스로 친척에게 부고하고 동료나 친우에게는 부고하지 않는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예기』에는 군주가 훙薨하면 축이 여러 사당의 신주를 취하여 조묘祖廟에 보관한다고 하고, 그 부분의 주석에서 이런 행위가 흉한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부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사당에 아뢴다는 문장은 없으므로, 세속에서 행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면 아뢰는데, 죽음에 대해 어찌 아뢰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 예는 가례에 보이지 않지만, 사생死生에 막대한 이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부고 앞에다 넣어야 할 듯하다.

『학봉집鶴峯集』에서는 부고의 의미와 그에 따른 부의 및 선후에 행해야 할 도리를 아울러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초상初喪의 경우 동기간과 삼촌 간에는 부고를 들은 즉시 분상奔喪하고, 각자 종이·면포·마포 등 성빈成殯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내놓으며, 일할 시종 두 명에게 각자 먹을 양식을 싸 가지고 가서 성빈을 마칠 때까지 심부름하게 한다고 하였다. 사촌 간에는 부고를 들은 선후에 따라서 하되, 가까울 경우에는 즉시 가서 조제弔祭하고, 멀 경우에는 직접 가서 회장會葬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는데, 상기喪期 안에 하며, 사촌 간만이 아니라 친척이나 붕우 간에도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하였다.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수록된 부고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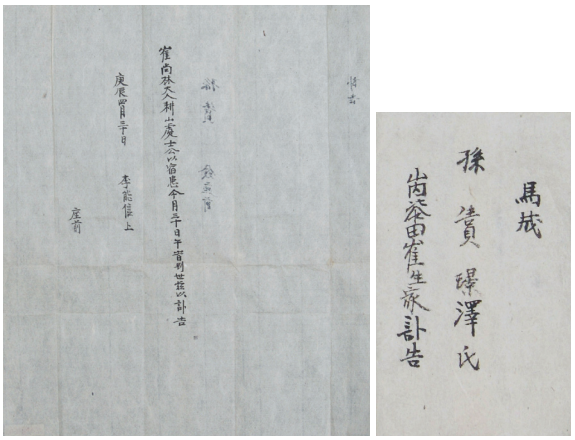

부고 | 1940 | 국립민속박물관

문에 꽂아 둔 부고장 | 인천 강화 | 1998 | 국립민속박물관

"某親某人 以某月某日得疾 不幸於某月某日棄世 傳人(전인이 아니면, 人爲書로 고친다) 訃 / 告 / 月日孤子某泣血"

한편,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에서는 "年號 月 日 護喪姓名上 / 某位座前"이라 했으며, 피봉식은 "訃告 / 某位座前"이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일일이 직접 손으로 쓴 부고장은 인편으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전통방식은 인쇄술과 우편의 발달로, 크게 변화했다. 부고장과 봉투를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우편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고 방식이 간편화되고 부고를 내는 대상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맞았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요즈음에는 유무선 통신, 이메일, 신문사 부고란 등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최근까지만 해도 부고를 받으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부고장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고 변소에 걸어놓는 관행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전통적인 관습 또한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신문사 부고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비용을 들여 광고란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로 2면이나 4면·10면 하단에 한 단 혹은 일정 크기의 박스 기사를 내는 형태이다. 부고의 양식은 예서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 예를 들어보면, "某大人 본관 姓公名(직함) 老患으로 某年 月日(陰 月日) 時分 別世玆以訃告"라고 쓰고, 유족의 이름과 빈소·장지를 표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신문의 고정 부고란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 고정부고란은 담당하는 전문기자가 있을 정도로 신문에서 중시되고 있다. 면의 위치는 인물들의 동정을 다루는 곳이며, 해당란의 명칭은 대부분 '부고'이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부음', 한겨레신문은 '궂긴 소식'이라 하여 달리하고 있다.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각 신문사에서는 한겨레신문사만 제외하고 모두 '부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하던 명칭이었다. 그래서 2003년 1월에 제정된 「장례식장 서비스 표준규격」에서는 이 일제식 용어를 청산하고 새로운 표준용어로 '부고'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사에서는 "장례용어 국가표준 제정으로 '부음'을 '부고'로 바꿉니다."라고 공지한 후, 이를 따르고 있다.

신문사에서 부고란을 두는 이유는 인간의 삶을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 신문의 역할인데, 인간의 삶 중 가장 중시되는 통과의례인 죽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인을 애도하는 고래古來의 문화전통을 계승하는 측면이 강하다. 한편으로는 상호부조 관행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죽음을 애도·위로하고, 상장례의 많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상장례의 한 절차에 포함시킨 부고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家禮輯覽, 白虎通義, 四禮便覽, 禮記, 儀禮, 鶴峯集,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임민혁(任敏赫)

부의
賻儀

정의 상례에 도움이 되도록 조객이 상가에 보내는 물품이나 금전.

내용 『예기禮記』「잡기雜記」에 "조문하는 것은 상주를 뒤에서 따르기 위함이 아니다. 40세까지는 상여 끈을

부의단자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상가에 보내는 부조의 내용을 적은 문서.

부의록 | 1935 | 국립민속박물관

붙잡는다. 같은 향촌 사람으로 50세가 된 이는 상주가 반곡反哭하는 행렬을 뒤에서 따른다. 40세까지는 무덤을 흙으로 덮는 것을 마친 다음에 물러나온다."라고 하였다. 이는 조문이 단순히 상주를 위로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주의 일을 직접 돕는 것임을 의미한다. 조문할 때에는 주인이 절해도 답배하지 않는 것도, 조문하는 일이 상사喪事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지 빈주의 예를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례와 『가례家禮』에서 조문과 함께 부의賻儀를 함께 언급한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예기』「문왕세자文王世子」에서는 "친족 간에 서로 도움에 있어, 의당 조문해야 하는데 조문하지 않고, 단문袒免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처벌한다. 부의로 보내는 봉賵, 부賻, 증贈, 함含도 모두 올바른 예가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원대의 진호陳澔는 "봉은 수레나 말을 주는 것이요, 부는 재화를 주는 것이요, 함은 구슬이나 옥을 주는 것이요, 수襚는 의복을 주는 것으로, 이 네 가지를 총칭하여 증贈(부의를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송대 이전 부의는 수레나 말, 재화, 구슬이나 옥, 의복 등 상례에 필요한 물품을 증여하는 것이 중심이었고,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에도 "재물을 보낼 경우에 부의賻儀라고 하고, 의복을 보낼 경우에 수의襚儀라고 하며, 향이나 술을 보낼 경우에 전의奠儀라고 한다."라고 하여, 재물과 의복 그리고 상례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가례』에서는 돈과 비단을 보내게 했다.

특징 및 의의 조문과 부의를 공경스럽게 행하는 것은 친족과 화목하고 우애있게 지내려는 것, 즉 어려운 일을 당한 친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나누려는 것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쌀이나 수건, 달걀 한 꾸러미, 죽, 집에 있는 삼베 한 필 등 여러 가지 물건으로 부조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 돈으로 내는 경우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 부조를 하지 않고 상을 치르는 동안 일손을 돕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다.

참고문헌 家禮, 書儀, 禮記, 한국의 상례(양승이, 한길사,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장동우(張東宇)

부제
祔祭

정의 졸곡 다음 날 이미 사당에 모신 조상 신주 곁에 고인의 새 신주를 모실 때 지내는 제사.

내용 부제의 '부祔'는 조상의 사당에 새 신주를 모시는 것이다. 또한, 부제는 "사당에 모신 조상에게 마땅히 다른 사당으로 옮길 것을 고하고, 새로 죽은 자에게는 이 사당에 들인다." 고하는 뜻이다. 졸곡 다음 부제를 지내고 새로운 신주를 다시 정침正寢 혹은 궤연几筵으로 되돌려 보낸 뒤, 삼년상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사당에 봉안한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대부사서인사의」에서는 부제의 순서가 졸곡, 소상, 대상을 지낸 뒤 사당에 부묘하고, 부묘한 뒤 담제를 지낸다고 했다. 이는 소상, 대상, 담제를 지낸 뒤 부묘하는 왕실 국상의례와 비슷하다. 그러나 조선의 사대부들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라서 졸곡 다음에 부제를 지냈다. 졸곡을 지내고 부하는 것은 『주자가례』를 따른 것이고, 소상을 지내고 부하는 것은 은나라의 예이고, 대상을 지내고 부를 하는 것은 『국조오례의』를 따른 것이다.

졸곡제를 마치면 기물을 진설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목욕을 한다. 날이 밝기 시작하면 주인 이하 영좌 앞에서 곡한다. 축관이 사당에 가서 신주를 받들고 나와서 왼쪽에 모신다. 축관이 신주를 열고 옆에 모시게 될 할아버지의 신주를 받들어서 자리에 두고, 집사는 할머니의 신주를 받들어서 자리 오른쪽에 둔다. 어머니의 상이면 다만 할머니의 한 위만 받들고 나온다.

특징 및 의의 부제는 참신·초헌·독축·아헌·종헌·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사신辭神 모두 졸곡과 같으나, 다만 곡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 제사를 마치면 축관이 신주를 각각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禮記集說, 儀禮, 朱子家禮.

필자 정종수(鄭鍾秀)

부조
扶助

정의 혼례婚禮에 돈이나 재물을 보내어 경하를 표하는 것.

역사 혼례에 부조扶助했다는 것은 고문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2년(선조 25)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은 "협일協一이 왜적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갔는데, 어떻게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몹시 염려된다. 내성奈城의 누이가 사위를 본다고 하는데, 부조할 만한 물품이 없으니 어쩌겠느냐. 골육들을 잘 보존하기 바란다."라고 기록하였다. 누이의 딸이 혼례를 하는데 부조할 물품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록을 보면 적어도 16세기에 혼례 때 현물부조現物扶助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초반에 활동한 학자 장현광張顯光의 문집인 『여헌집旅軒集』에도 처사處士 이공李公이 혼인에 적극 부조했다는 기록이 있다.

내용 고문서에는 흉사凶事에 부조했다는 기록이 많이 확인되는데 이 기록에서 부조는 대부분 현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으로 보아 혼례 때도 현물부조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현광의 문집인 『여헌집』의 「족계族契를 중수重修하는 서」에는 "계원 중에 남혼여가男婚女嫁가 있으면 법식에 따라 혼인에 필요한 물건을 돕도록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현물 중에서도 의례에 필요한 것으로 부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중기에 광주부 경안면 2리에서 작성된 「동약同約」에도 "혼례는 비록 축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禮에 '아내 얻은 자를 축하한다'고 하였으니, 대개 물건으로 손님을 치르는 비용을 도와주면 그뿐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동약」에서 "경조사慶弔事에 부조하는 예禮는 마땅히 정분이 어떠한가에 따라 적절히 하되, 또한 자기의 집안 형편을 헤아려서 할 일이다. 만약 저쪽이 가난하고 믿을 만한 데가 없는데, 자신의 재력이 이를 도울만하다면 응당 힘을 써서 도울 일이다. 만일 자신이 가난하다면 비록 재물로 예를 차리지는 않더라도 응당 성의를 다할 일이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부조는 단지 상대방에게 물품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예로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제주도에서는 혼례 때 곡식으로 부조했고, 같은 시기 경상북도의 한 농촌에서도 쌀, 감주, 술 같은 현물로 부조했다. 의례에 필요한 현물부조 관행은 20세기 후반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 중반 한 신문에 〈농촌 경조사慶弔事 풍속 달라졌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렸다. "김씨의 사촌 동생 결혼식이 치러진 낮 12시 청양 읍내 ○○예식장 앞엔 신랑 마을에서 하객을 실어온 전세버스 3대가 나란히 서서, 식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도시 예식장처럼 상들리에가 휘황찬란한 식장 입구엔 예외 없이 축의금 접수대가 마련됐다. 쌀부대나 손수 빚은 떡·술이 아닌 새하얀 봉투가 접수대 위에 수북이 쌓

인다. '지난 가을 이후 20여 군데의 경조사에 5천 원짜리 봉투 20여 개를 부조했다.'는 이 마을 박 모 씨(54)는 '5천 원짜리 봉투 내놓기가 이젠 조금 쑥스럽다.'라고 했다. 우리 농촌의 미풍양속인 부조 방식이 이처럼 현금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들어서부터. 이 마을 김 모 노인(71)은 '전에야 어디 돈을 내놓았습니까? 이웃집 처녀가 시집을 가거나 총각이 장가들면 쌀을 푸고 술을 담가 내 일처럼 거들었다.'라고 말하고 '그때가 좋지 않았냐.'라며 달라진 부조 패턴을 안타까워했다."

이 기사를 보면, 사촌 동생 결혼식에 참석한 김씨가 달라진 예식 풍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부조하는 물품이 현금으로 바뀐 것인데, 1990년대에는 '축의금祝儀金'이라는 이름의 현금부조가 거의 일반화된다. '부조'라는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본래 의미도 많이 퇴색되어 갔다. 전통사회에서처럼 예禮를 갖추고 정성을 담아 부조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려워졌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이라는 온라인 입금 방식으로 축의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조를 대행해주는 인터넷사이트와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으로 축의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특징 및 의의 예禮로서 인식되고 혼례에 필요한 현물로 이루어졌던 부조가 점차 '축의금'이라는 현금부조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順菴集, 旅軒集, 鶴峯全集, 농촌 경조사 풍속 달라졌다(경향신문, 1986년 12월 20일),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김혜숙,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박동철,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이상현(李相賢)

부조록
扶助錄

정의 혼례婚禮때 누가, 어떠한 것을, 얼마나 부조扶助했는지 기록해 놓은 문서.

내용 서명書名이 대부분 '부조록扶助錄'으로 되어 있다. 특별히 초례醮禮, 우귀于歸, 신행新行 같은 혼례 절차를 앞에 붙여 '초례시부조록醮禮時扶助錄', '우귀시부조록于歸時扶助錄', '신행시부조록新行時扶助錄'이라고 적기도 한다. 부조록에는 부조를 한 축객祝客의 이름, 주소, 부조 물품 및 수량, 금액 등이 적혀 있다. 의례에 필요한 물품으로 부조가 이루어졌던 20세기 중반까지는 부조록에 쌀, 감주, 떡 같은 현물現物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었다. 이후 현물 부조가 점차 사라지고 '축의금祝儀金'이라는 현금 부조가 일반화되면서 부조록에는 축의금의 액수가 기록된다. 부조록은 상부상조相扶相助 정신에 따라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잘 보관해 둔다.

특징 및 의의 부조록에는 시대별 부조 물품의 종류 또는 부조 금액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 부조 물품의 지역적 특색, 친족과 비친족 간의 교류 현황 등 '부조'를 둘러싼 사회적 동향과 문화적 특징을 실증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조선중기의 혼수·위요·인천관계(박미해, 사회와 역사65, 한국사회학회, 2004),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박동철,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혼례물목류 고문헌 자료를 활용한 민간 전통혼례 문화 연구(김정녀, 한민족문화연구38, 한민족문화학회, 2011).

필자 이상현(李相賢)

부케

정의 혼례식에서 신부가 손에 드는 꽃다발.

내용 부케는 프랑스어로 다발, 묶음 등을 뜻하는 단어 'bouquet'에서 유래했으며 신부화, 웨딩플라워, 웨딩부케, 브라이들부케라고도 하며 주로 장식용이나 증정용으로 꽃이나 잎을 다발로 묶은 꽃다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혼례식에 드는 꽃다발은 웨딩부케(wedding bouquet) 혹은 브라이들부케(bridal bouquet) 등으로 부르는 것이 맞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현대 혼례식에서 신부가 손에 드는 작은 꽃다발만을 부케라고 부른다.

서양에서는 일찍이 로마 시대에 아네모네와 카네이션 등으로 코르사주(corsage)를 만들어 장식용으로 옷에 달거나 신부들이 꽃으로 둥글게 화환을 만들어 집을 장식하고 웨딩 소품으로 사용하는 풍습이 있

었다. 풍요·다산·번영 등을 나타내는 벼 이삭 등의 곡물을 그릇에 담아 결혼식에 입장하기도 하였으나, 16세기 이후 꽃의 치료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확산되면서 벼 이삭 대신 들판에 피는 꽃으로 신부를 장식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드레스 끝자락 등에 꽃을 장식하던 것이 점차 정교해지면서 부케로 발전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양식 결혼식이 도입된 1950년대 이후에 꽃으로 부케를 만들어 신부를 장식하기 시작한 것을 당시 결혼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50~1960년대까지만 해도 흰색 꽃인 국화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나 점차 소재와 색깔이 다양해져서 1970년대부터는 카네이션, 장미 등의 이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현재는 꽃의 종류나 색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현대 혼례식에서는 주로 단체 사진을 찍은 뒤에 신부가 친한 친지나 주위에 결혼을 앞둔 미혼 여성을 지정하여 부케를 뒤로 던지면 받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 신부가 뒤로 던져주는 부케를 받으면 다음에 바로 결혼하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속신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런 속신이 널리 퍼지면서 손에 드는 용도의 부케와 던지는 용도의 부케를 따로 제작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현대 혼례식에서는 꽃으로 부케를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토니에르(boutonnière)를 만들어 신랑의 양복에 꽂거나 입장 통로와 웨딩카를 꽃으로 꾸미기도 한다. '나쁜 것, 혹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신부를 보호한다'는 꽃의 주술적 의미가 혼례식에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참고문헌 혼례-2012 아시아문화 기획전시 도록(국립민속박물관, 2012), 우리나라 신부화의 연대별 변천에 관한 연구(이원영·조근호·박천호, 화훼연구 9-1,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2001), 웨딩부케의 변천(정종금, 한국꽃예술학회지2, 한국꽃예술학회, 2000).

필자 은현정(殷賢貞)

분상
奔喪

정의 출타 중인 상주가 존속의 부고訃告를 듣고 역복易服한 후 집으로 달려가는 일.

역사 분상奔喪은 상주가 출타 중에 갑자기 존속의 부고를 듣고 하는 일인 문상聞喪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기禮記』의 서른네 번째 항목이 「분상奔喪」이고, 이후 다른 예서禮書에서 분상을 다룬 것을 보면, 분상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문상聞喪하면 곡으로 답하고 돌아가신 연유를 묻고 옷을 갈아입고 출발 준비를 한다. 남자는 관과 웃옷, 부인은 머리 장식과 화려한 옷을 벗는다.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으며 음식을 먹지 않고 가슴을 치며 곡한다. 베를 찢어 사각건四脚巾(복두와 같은 것)을 만들고, 흰 베적삼을 입고, 새끼줄로 띠를 두르고 마구麻屨(삼신)를 신는다. 이를 마치면 상가로 향하는데, 이를 '분상'이라고 한다. 분상은 흉행兇行이기에 하루 100리를 갈 정도로 뛰어간다. 하루 50리를 가는 길행吉行의 갑절에 해당하는 속도이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도적 등의 해를 피하고, 밤에는 가지 않아 나쁜 일을 당하지 않으며, 번잡한 길도 피한다. 그래서 부모상을 당하면 별을 보고 출발하고 별을 보고 숙박한다고 한다. 길을 가다가 슬프면 곡한다.

만약 상가에 자손이 없으면 도중에 조석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전奠을 올린다. 집이 있는 시도市都의 경계나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면 또 곡한다. 집에 도착하면 문 왼쪽으로 들어가 서쪽 계단으로 오른다. 빈소 동쪽에 서향하여 앉아 곡하고 풀었던 머리를 묶고 윗옷의 왼쪽 소매를 벗는 단袒을 한다. 빈소를 나와 동쪽으로 자리에 나아가고 가슴을 치며 곡한다. 조문객을 받는다. 4일이 지나서 성복成服한다.

만약 부고를 받고도 분상하지 못하면 교의交椅를 놓아 시신과 영구를 대신하여 고인의 자리를 마련한다. 곡은 하지만 전奠을 차리지는 않는다. 만약 상가에 자손이 없으면 출타지에 전을 차린다. 분상하지 않았더라도 4일 후에 성복한다. 재최齋衰 이하 복을 입을 사람이 부고를 받으면 자리를 마련하고 곡하고, 분상하면서 고향이 보이면 곡한다.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사람은 문이 보이면 곡하고, 소공복小功服을 입는 사람은 문에 이르러 곡한다.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사람은 문에 들어가서 곡한다.

분상하여 상가에 도착했는데, 이미 장사葬事를 지냈으면 묘소에 가서 곡한 후에 성복한다. 만약 부고를 듣

고 곧바로 상가를 향해 분상하였다면, 반드시 집에 와서 성복한다. 그렇지 않으면 4일째에 성복한다.

특징 및 의의 분상은 부고를 듣고 하루라도 빨리 상가에 도착하기 위해 달려가는 일이다. 따라서 문상의 절차는 대부분이 분상으로 채워진다. 유교이념에서는 임종臨終을 지키지 못한 자식을 큰 불효자로 여긴다. 그러나 출타 중일 때는 임종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으므로 문상聞喪의 절차를 두었다. 특히 종법宗法을 중요시하여 사당을 짓고 신주를 모시면서 세거지世居地를 형성한 경우, 외지로 부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당과 신주를 쉽게 옮길 수 없으므로 당사자만 부임할 때가 많은데, 이에 대비하여 문상이라는 절차가 등장하였던 것이다. 1546년(명종 1)에 분상하지 않고 남몰래 이장하였다는 이유로 치죄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분상을 효의 척도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禮記,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ㅂ 분재기

분재기
分財記

정의 전통시대에 재산을 분배하면서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역을 적고 소유주·증인·문서 작성자 등의 서명을 명시하여 법적·사회적 실효성을 나타낸 문서.

내용 '분재기分財記'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전통시대에 존재했던 문서 가운데 '분재기'라고 기재된 문서는 드물다. 해당 문서의 특성에 따라 '분급명문分給明文', '도허여都許與', '허여성문許與成文', '분깃기[分衿記]', '화회성문和會成文', '허급문許給文', '별급성문別給成文' 등 다양한 표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분재기'는 전통시대에 작성된 재산 분배와 관련된 제반 문서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분재기는 약 600여 점 내외로 추정되고, 작성 시기는 고려 말인 1354년(공민왕 3)에 해남윤씨 윤광전尹光典이 아들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부터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문서의 서식은 일반적으로 문서작성 일자를 첫머리에 적은 다음 이어서 분재 사유, 구체적인 분재물의 내역 명시, 당부의 말, 재주·증인·작성자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장) 등이 기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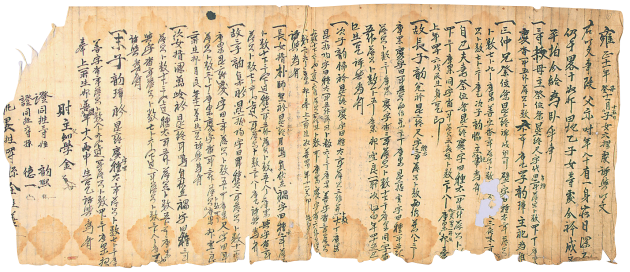

분재기 | 1733 | 국립민속박물관
제위답, 장자, 차자, 장녀의 사위 고삼자, 차녀의 사위 말자 등에게 나누어 준다는 분배 내용을 기록.

분재라는 행위의 중심에는 재산과 이를 행하는 주체인 '재주財主', 곧 재산의 소유권자가 있다. 전통시대에도 재산의 상속 또는 분배를 하는 주체는 그 소유권자인 재주였다. 따라서 분재 행위는 재주가 살아있을 때 분재를 하였는지 사후에 법적 승계권자가 분재를 행하였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재주 생존 당시에도 재산 전체를 분재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재산의 일부분만 나눠주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재산을 한꺼번에 분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허여', '분급', '분깃'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고, 특정인에게 재산의 일부만 분재하는 경우에는 '별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분재는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별급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조카의 과거시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분재한 경우나 고모가 친정 조카를 위해 분재하는 경우 등 부모·자식 관계를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분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의 상이 모두 지난 후에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합의하여 분재를 하였다. 이것을 '화회和會'라고 지칭하였다.

분재기에 기재된 분재물들은 가옥, 토지, 노비가 일반적이었고, 가재도구나 물품들이 포함된 경우도 간혹 있었다. 가옥은 그 형태나 칸수 등을, 토지는 소재지와 면적을, 노비는 이름과 나이를 명확히 적어 두었다. 이는 분

재기 자체가 하나의 증빙문서로서 효력을 띠어서, 기술의 구체성을 담아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주 사후에 분재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분재기는 매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었다. 그래서 때때로 소송에서 분재기의 진위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분재기 가운데는 전통시대 관청의 공증문서인 입안立案 문서가 분재기와 함께 풀로 연이어진 사례가 많은 편인데, 이는 곧 후일에 있을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분재 당시에 참여한 재주, 증인, 작성자 등의 사실 진술과 분재기를 관청에 제출하여 해당 사실에 대한 공증문서인 입안을 미리 발급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분재기는 전통시대 재산의 규모와 상속의 실상 등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분재기가 작성될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특히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전승되었는지에 대한 시기별 변화상을 확인할 수도 있다. 분재기에 표기된 '부변父邊', '모변母邊', '처변妻邊' 등의 표기는 재산의 소종래所從來를 명확히 밝혀 놓은 것으로서 재산이 아버지 계통, 어머니 계통, 처가 계통 등 어디로부터 얼마만큼 유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 고려 말과 조선 전기에 아들·딸에게 균등하게 시행되었던 균분상속으로부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차츰 가계를 승계하는 아들 위주, 제사를 받드는 장자우대상속 등으로 분재 양태가 변화한 모습 또한 분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참고문헌 大典會通, 조선시대의 상속제에 관한 연구(최재석, 역사학보53·54, 역사학회, 1972),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왕조시대의 재산상속(이광규, 한국학보3, 일지사, 1976),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필자 전경목(全炅穆)

분정기
分定記

정의 전통시대 제향을 비롯한 의례절차에 수반된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기록해 놓은 문서.

執事
初獻 亞獻 終獻 大祝 執禮
孫晉俊
孫錫一
孫奉翼
孫舉翼
孫暕翼
孫元洛翼
孫正鎬翼
孫鵬翼
孫暻翼
孫鎬翼
孫慶翼
孫翼
孫翼
孫

분정기 작성 | 경북 예천 진주 정씨 종가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람의 성명을 기재해 놓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의례를 자주 거행하는 종가나 서원 가운데는 나무로 제작한 분정판에 역할에 따른 직명을 미리 적어놓고 때마다 새로 지정되는 사람의 성명만 써넣는 형태도 있었다.

집사의 분정은 제사의 성격과 가문에 따라 절차나 직명의 차이가 다소 있었다. 문중 제사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집사 분정은 헌관(초헌관·아헌관·종헌관), 축, 홀, 찬자, 알자, 진설, 봉향, 봉로, 봉준, 봉작, 전작 등이다. 집사의 직명별로 명단을 작성하면 문서의 말미에 '원原' 또는 '제際'라는 글자를 적었는데, 이것은 더는 기재할 내용이 없다는 의미이다. 통상 '인원물제人原物際'라고 하여 인명의 끝에는 '원'을 적고 물명의 끝에는 '제'를 적는다는 원론적인 말이 있지만, 실제 분정기에서는 인명의 끝에 '제'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작성된 분정기는 건물의 형태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대청이나 사랑채 같은 남성이 주로 모여 활동하는 공간의 천장 가까운 벽면에 붙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의례절차에 따른 역할 분장이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어 협동으로 일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달성된다. 나아가 분정기에 성명이 적힌 사람은 그 집단의 의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여타 사람도 집단 내에서 서로의 존재와 위계를 간접적으로 인식한다.

특징 및 의의 분정기의 작성은 단순히 여러 복잡한 일에 대한 분담을 넘어서 해당 의례를 위해 모인 집단의 질서를 보여준다. 어떤 모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윤번으로 일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단 내의 지위, 연령,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역할의 분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정한 역할 가운데서도 주요한 역할은 아무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해당 집단 내에서 정해진 질서에 부합한 권위자만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질서는 종법 기반의 위계, 관작에 대한 우대,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등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였다. 후속 세대에게도 젊은 시절부터 오랜 기간 이러한 질서에 대한 존중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분정기는 문서로서의 사실 기록뿐만 아니라 의례를 중심으로 한 집단의 질서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의 역할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문서집성1~104(한국학중앙연구원, 1982~2013), 불천위제사의 집사분정에 나타나는 종법체계와 연령의식(김영순, 민속연구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향사의 역사와 구조(권삼문, 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필자 전경목(全炅穆)

분축
焚祝

정의 상喪·제례祭禮 때 자손의 기원을 신령에게 전달하고자 사용한 축문祝文을 불에 태우는 절차.

내용 축문은 상·제례 때 인간이 신령에게 알리거나 복을 기원하는 글이다. 상례에서는 우제虞祭 때부터 축문을 읽지만, 『가례家禮』에서는 분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자程子는 "옛날에는 축문을 불살라 묻는 예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다만, 주자朱子는 당시에 행해지던 분황축문焚黃祝文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양복楊復도 선생(주자)의 문집에 분황축문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였다. 구준邱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도 분축을 언급하였으며, 『가례집설家禮集說』에서는 "분축문은 왕여王璵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였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축이 축문을 들어서 불사르고 축판만 남긴다고 하였으며, 동암東巖 유장원柳長源은 "『가례』에는 우제에 축문을 불사른다는 예문이 없

지만 '일이 있으면 고한다.'라는 대목의 주에 '무릇 축문은 제사를 마치면 들어 올려 불사른다.'라고 했으니, 제사에는 모두 이 조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분축은 다른 말로 '소지燒紙'라고도 한다. 제사를 받든 사람들은 축문을 읽고 소지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기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축문을 읽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소지는 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축문을 읽는 것이 소지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축문을 읽었다는 전제하에 소지를 행하지만, 축문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소지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자로 기록된 축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를 읽는 절차의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지를 행했다는 것이다.

소지는 축문을 변형하기 위한 것이다. 축문의 변형은 유형의 축문을 무형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무형의 형태란 곧 축문의 연기화煙氣化이다. 종이가 재질인 축문이라는 물체가 연소작용을 통해 무형의 형태인 연기로 신령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원리이다. 봉사자奉祀者의 기원을 담은 이 연기는 신령들이 거처하는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 그 뜻을 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축할 때 나는 연기와 그을음이 하늘 높이 올라가야 좋다고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높이 솟아오르게 하고자 하는 시늉을 한다. 소지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는 인간의 희망과 기원을 신령에게 전달하여 감응토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현대의 상·제례에서 한문으로 쓰인 축문은 그 의미를 한글세대에게 제대로 인지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제사의 형식과 의미가 바뀌는 지금, 축문을 읽고 이를 불에 태우는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축문의 한글화를 고려해 봄직하다. 축문의 한글화는 제례의 전통적인 가치와 자세를 살려 나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동체신앙의 축문 고찰(표인주, 남도민속연구3, 남도민속학회, 1995), 동제축문의 형식고(최승순, 한국민속학9, 한국민속학회, 1976),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분향
焚香

정의 제사에서 하늘로부터 혼을 부르기 위해 불을 붙인 향을 향로에 넣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우는 일.

역사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분향 후에 재배했다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분향 후 재배한다고 되어 있다. 『상례비요』에는 사당에서 참례할 때 분향하고서 분향재배한다고 하여 기제사에도 분향재배한다. 이를 준행하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종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종가 등 기호지역에서는 분향 후에도 분향재배를 한다.

내용 주인이 신위전에 나아가 하늘에서 혼魂(양기)을 모시기 위해 향을 사른다. 즉, 향을 향로에 태워 그 연기를 통해 하늘로부터 혼을 인도하는 것이다. 강신하는 의식에 혼을 부르는 분향焚香과 백을 모시는 뇌주酹酒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분향 후 재배하였다.

이외에도 불교에서 하는 조석분향朝夕焚香(아침저녁으로 신불 앞에 향을 피움), 문묘에서 하는 삭망분향朔望焚香(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날이 밝기 전에 문묘에 올리는 분향 의식)이 있다.

특징 및 의의 하늘에서 혼을 부르는 것으로 제사에서 중요한 의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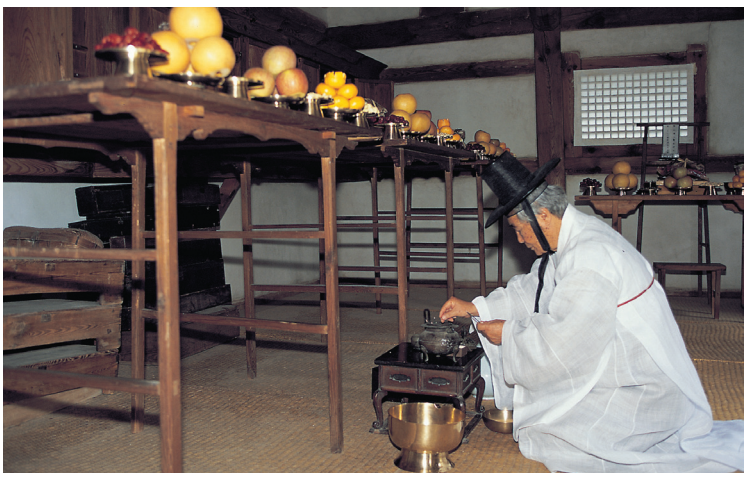

분향(중구 차례) | 경북 안동 서애 류성룡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불교화혼식
佛敎花婚式

정의 불교신자들이 사찰 등에서 불교식으로 행하는 혼례.

역사 현재 전승되는 불교식 혼례는 근대 초기에 처음 만들어져 수정·보완된 것이다. 불교 의례의 생활화에 관심이 많던 불교사학자 이능화李能和가 1917년 『의정불식화혼법擬定佛式花婚法』이라는 불교 혼례를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불교계에 보급되었다. 이듬해 이 화혼법에 따라 경성의 각황사覺皇寺에서 치른 최초의 불교 혼례에는 1천 명의 관람객이 몰렸고, 1927년에 '화혼식'이라는 찬불가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당시의 월간지 『불교』에서는 불교계 소식을 전하는 난에 전국에서 치르는 불교 혼례를 계속 소개하는 등 1920~1930년대에 불교 혼례가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1927년에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인 승려 백용성白龍城이 『대각교의식大覺教儀式』을 펴내면서 불교 혼례의 유래와 함께 수정한 내용을 실었고, 1935년에는 불교 의례를 근대적으로 집대성한 승려 안진호安震湖가 『석문의범釋門儀範』에 다시 수정·보완한 혼례내용을 제시하였다. 1917년—1927년—1935년에 이르기까지 10년 남짓의 간격을 두고 근대불교 선각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첨삭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다가 서구식 혼례가 확산되고 전문예식장이 등장하면서 불교 혼례는 점차 시선을 끌지 못하게 되었고, 산업화·서구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1960년대 이후부터는 전통혼례 또한 서구식 혼례에 자리를 내주면서 혼례풍속이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마을마다 예식장이 들어서지 않았던 1980년대까지 전통혼례는 물론 불교식 혼례를 치르는 이들이 드물지 않았다. 불교 혼례가 남아있던 1970년대 무렵 속리산 법주사 아랫마을의 양상을 보면, 불교 혼례의 세부지침을 따르기보다는 불전에서 승려의 주례로 의식을 치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불교 혼례에서는 부처님에게 꽃을 바치게 되어 있지만, 의식용 꽃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였기에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례복도 1960~1970년대까지는 일반한복을 입다가 이후부터 신랑은 양복, 신부는 드레스를 입는 진풍경을 연출하였다.

1990년대 무렵 예식장에서 기계처럼 부부를 찍어내는 혼인문화에 싫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다시 전통혼례를 찾는 등 혼례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불교 혼례와 함께 사찰 경내를 혼례장소로 개방하는 추세도 늘고 있다. 또, 사찰에서는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무료 합동전통혼례를 불교식으로 치러주는가 하면, 불교적 가르침으로 가정을 원만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혼인준비를 위한 강좌도 개최하고 있다.

내용 이능화는 『의정불식화혼법』을 만들 때 석가모니 본생담인 선혜선인善慧仙人의 설화를 비롯해 『대방광불화엄경』에서 위덕태자와 묘덕동녀가 혼인하여 부처님에게 예배드린 설화, 태국의 불교 혼례 등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불식화혼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주례법사가 신랑·신부를 인도하여 부처를 향해 꿇어앉게 하며, 신랑·신부의 양옆에는 각기 들러리에 해당하는 배도陪導가 따른다. ②신랑·신부는 오분향五分香을 각각 사른다. ③주례법사가 삼귀의三歸依를 부르고, 신랑·신부도 따라 부른 뒤 부처님에게 삼배한다. ④주례법사가 혼인을 고하며 부처님에게 증명을 청하는 설송說頌을 범음梵音으로 외운다. ⑤신랑이 다섯 송이의 꽃을 부처님에게 바치고, 신부가 두 송이의 꽃을 신랑의 손을 거쳐 부처님에게 바치면 주례법사가 모두 불단의 꽃병에 꽂고 나서 신랑·신부는 부처님에게 삼배한다. ⑥주례는 신부·신랑에게 각기 혼인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묻고, 신부와 신랑은 이에 답함으로써 혼인서약을 한다. ⑦신랑이 신부에게 화관花冠을 씌워주고 홍상紅裳을 입혀준 다음 신랑·신부가 부처님에게 삼배한다. ⑧대중이 다함께 여래십대발원문如來十大發願文·사홍서원四弘誓願·찬불게讚佛偈를 읊는다.

내용 가운데 특히 오늘날의 혼인서약에 해당하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덕목을 보

면, 봉건사회의 의식에 깊이 젖어있는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게 한다. 신부에게는 남편과 부모·스승·친족에 대한 의무, 가난한 이에 대한 자비, 삼세공불三世供佛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인간의 덕목을 요구하였지만, 신랑에게는 다른 여자를 탐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기 때문이다.

1927년에 백용성이 발표한 불교 혼례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님에게 혼인을 고하고 증명을 청하는 절차 대신에 계戒를 받도록 함으로써 혼례를 계기로 불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다룬 점이다. 둘째, 의례 속에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혼인서약이 봉건사회의 가부장적 남녀차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면 남녀 구별 없이 부부간의 도리와 맹세를 지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신부의 꽃은 신랑의 손을 거쳐 부처님에게 바치도록 하던 것을 신부가 직접 바치도록 함으로써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35년에 안진호가 『석문의범』에 수정 제시한 화혼의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식 혼례가 확산되면서 불교 혼례에도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화동·화녀의 등장, 신랑·신부에 대한 소개, 예물교환에 해당하는 신물교환, 주례사에 해당하는 유고諭告, 내빈축사, 축전낭독 등이 등장함으로써 의례의 절차와 요소가 현대화되고 다양해졌다. 둘째, 전반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실용적 지침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점이다. 예물 교환에서 반지보다 염주를 권장하고, 혼례복은 불교 예복이 나올 때까지 일반 한복으로 하되 신랑은 양복도 무방하도록 열어놓았으며, 헌화에 쓰는 꽃은 조화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또 불전에는 간략하게 반배례半拜禮하도록 하고, 주례사에 해당하는 유고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셋째, 음악과 이벤트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화동·화녀가 꽃을 흩뿌리며 식장에 들어오고, 내빈착석과 신랑·신부 입장 및 불전에 배례할 때마다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울리게 하며, 개식할 때 종을 다섯 번 치거나 폭죽을 울리도록 함으로써 축제 분위기와 장엄함을 돋보이도록 하였다.

현재 불교 혼례는 이러한 안진호의 『석문의범』을 참조하는 가운데 사찰마다 다양하게 치르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통일법요집』에 소개된 혼인의식을 보면 신물 교환과 내빈축사·축사낭독을 없애고 혼인서약을 남녀 구분 없이 간결한 문장으로 대체한 점을 제외하고 『석문의범』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특징 및 의의 불교 혼례의 가장 큰 특징은 신랑과 신부가 부처님에게 꽃을 바치는 헌화의식으로 부부의 전생 인연과 구도의 다짐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석가모니의 전생을 담은 〈연등불수기〉 설화 내용 가운데 선혜선인이 연등불燃燈佛에게 바칠 연꽃을 애타게 구하던 중 구리선녀俱夷仙女와 내생의 혼인언약을 맺고 연꽃공양을 할 수 있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선혜선인은 자신의 다섯 송이와 구리선녀의 두 송이 꽃을 연등불에게 바치고 아득한 내세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授記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혼례를 화혼식花婚式이라 부르며, 부처님에게 고하는 고불문告佛文에서도 "두 사람은 부처님의 옛 고사를 본받아 위없는 도를 성취하기를 다짐하였고, 일곱 송이 꽃을 바쳐 영원한 인연을 약속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처럼 신랑·신부가 부처님에게 꽃을 바치고 삼귀의·반야심경·사홍서원 등을 염송하는 가운데 혼례를 치르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혼례를 올리는 부부는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지게 된 것임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석가모니의 행적을 본받는 가운데 부처를 지향하는 중생의 뜻을 다짐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등불수기〉 설화의 선혜선인처럼 전생의 인연을 현세에서 꽃피우며 지극한 불심으로 부처를 이룰 것을 이끄는 의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석문의범(안진호, 보련각, 1968), 조선불교통사-근대(이능화, 이병두 역, 혜안, 2003), 조선여속고(이능화, 김상억 역, 동문선, 1990), 통일법요집(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004), 한국불교 의례자료총서 4(박세민, 삼성암, 1993), 한국불교의 일생의례(구미래, 민족사, 2012).

필자 구미래(具美來)

불천위
不遷位

정의 덕망德望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인물을 영원히 사당祠堂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神位.

내용 부조묘不祧廟는 중국의 한대漢代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고려 중엽 이후 사당을 짓게 되면서부터이다. 불천위不遷位가 된 신주는 처음에 묘역墓域 밑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종가 근처에 사당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부조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불천위의 천거는 문묘 종사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조선의 오현五賢, 즉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1454~1504),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1450~1504),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1482~1519),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1491~1553),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에 대한 추천은 전국 사림과 성균관 생원, 조정 관리들의 상소로 시작되었다. 이들의 문묘 배향은 중종中宗, 선조宣祖, 광해군光海君 때 세 차례나 요청되었지만 조선의 유현이 중국 유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천 년 동안 끊어진 유학의 학통을 조선에서 계승하고 후학에게 길을 열어 놓은 점에서 중국의 학자나 조선의 학자의 공로가 동일하고, 송나라에 6현이 있듯이 조선에도 5현이 있으니 조선이 이제 자주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조선의 5현도 불천위로 받들어졌다.

1547년(명종 2)에 이르러 시조(시봉지군始封之君)를 불천위로 모시고 4대를 봉사하는 5감실의 원묘제가 수용되었다. 또한, 조선 중기부터 정계나 학계에 활약하던 인물들은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후대에 중시조가 되어 사당의 불천위로 배향을 받는다. 이 불천위가 전국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수의 종가에 해당한다.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발전시켜 조선의 독자적 유학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인 시조를 제사의 대상으로서 숭배하는 것이다. 즉, 주로 불천위 인물을 통해서 조선 성리학의 발전과 한국적 생활문화를 실천하는 학통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이후 일반화되는데 실천유학은 주로 예서의 저술을 통한 불천위 조상과 혈연적 자손의 맥락을 잇는 전승문화 작업이 되었다.

불천위가 사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사화나 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인물의 됨됨이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불천위가 세도정치에 의해 확산된 점도 있다. 해당 인물이 사망한 지 2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불천위가 된 점을 볼 때,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 설명이다.

불천위는 학덕·충절의 공적이 있고, 성인의 삶을 실천한 군자상을 대개 사망 직후 또는 체천遞遷 과정에서 조정에서 시호諡號를 내리고 후손들이 영구히 제사를 모시도록 한 것이다. 불천위가 결정되면 때로 임금이 직접 제관을 보내 장례를 치르게 하거나, 예조에서 제관을 보내 제사를 지낼 전답과 제구 및 제물 혹은 영정을 교지로 하사하였다. 또한, 선조와 후손에게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 이에 후손들은 불천위 선조를 위한 별묘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렇듯 불천위는 국가에서 조정의 논의나 임금의 명으로 예조의 심의를 거쳐 국(국천, 국가)불천위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는 성균관과 향교 문묘에 종사된 불천위 인물들을 보면 서원에 먼저 배향되고 나중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17세기 이후 점차 지역 유림에서 학행과 덕망을 지닌 향촌의 인물도 불천위로 승인해 줄 것을 상소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지역 유림들이 자체적으로 불천위를 정하는 향(향천, 향촌, 유림)불천위란 말이 나타났다.

조선의 폐망으로 조정에서 논의 중이거나 유림에서 천거 중이던 후차 인물들은 불천위로서의 영예를 입을 수 없었다. 한편, 조선 말기에서 한말로 이어져 오면서 사림이나 문중에서 사사로이 불천위로 추대하는 폐단(사불천위, 문중불천위)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나타났다. 일부 문중에서는 전통사회에도 불천위로 가는 길을 공론으로 모으고 있었다. 향불천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연구가 거의 없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불천위의 인물을 구별해 보면 국가의 승인, 서원의 경우 사액, 유림의 지지도 등 봉안 인물의 유명세가 서원과 사우의 격을 말해주는 것과 상응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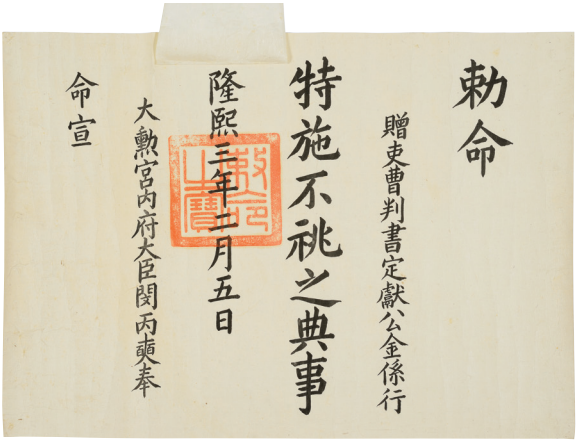
勅命
贈吏曹判書定獻公金係行
特施不祧之典事
隆熙三年十一月五日
大勲宮内府大臣閔丙奭奉
命宣

불천위 칙명 | 안동 김씨 보백당 김계행 종가 | 한국국학진흥원
1909년 증 이조판서 김계행을 불천위로 한다는 문서.

지역사례 전국에서 불천위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경우를 볼 때 국불천위 못지않게 향불천위도 다수이다. 향불천위는 지역 인물을 문중과 서원이나 향교 유림의 공론을 거쳐 국가에 상소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불천위 배향 인물의 사례를 집계해 보면, 배향의 주요 사유는 충절, 공적, 의병활동, 국가 명신, 실천유학, 민생부귀 실천, 효행, 덕행, 유명 유학자 배출과 후진양성 등이다. 불천위자는 이런 행적을 반복해서 수행하여, 문중은 물론 유림과 전국에 사표가 된 인물이다. 즉, 이들의 업적은 학행과 덕망, 충절로 요약된다. 이들은 대부분 생존했을 때에 실직實職으로 정이품 이상의 관직을 받은 경우보다 사망 후에 추증追贈에 의한 증직으로 불천위 인물이 된 경우이다.

한편, 불천위가 된 인물의 시대를 살펴보면 특정 인물과 세대를 이어 공생한 당대, 학통을 이은 사제관계, 한 씨족의 4대조 인물, 서원활동이 잦은 소지역의 지연적 연결권, 안동을 거점지로 향촌사회에 친인척관계, 선조의 가업계승 인물들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유학의 융성기, 외침의 변란기, 당쟁과 사화 등 왕조의 혼란기, 경제적 궁핍기 등 난세에 불천위 배출이 많이 생성되었다.

안동 지역은 불천위 인물로 인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명문 씨족집단이 세거하고 있는 편이다. 불천위 묘우廟宇가 있는 집이면 떳떳하게 종가의 지칭을 받는 '불천위 종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어서 불천위가 가장 많이 배출된 곳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불천위 인물을 원위元位로 하는 '10대성종十代成宗'이란 종가의 원리를 입증해 주어 조선의 종법체계를 자리 잡게 한 점도 있다. 이 불천위들은 거의 모두가 한 곳 이상의 서원에 배향되어 있어 서원이 집성해 있는 곳임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불천위로 인한 후학계승으로 조선 유학의 집성지이며, 유학의 고장이 되었다.

결국 전국 14개 성씨와 안동의 50여 불천위 종가가 있는 곳은 불천위로 배향을 받은 인물이며 불천위 종가에서는 그 인물의 기일에 제사를 행하고 있고 지역권에 이 인물이 배향된 서원이 반드시 한 개 이상 있다. 불천위 종가의 종손과 종부는 불천위의 가업을 영예로 알고 계승해 나가며, 후손들은 현조의 덕업을 자긍심으로 여겨 불천위제사뿐만 아니라 서원의 향사, 묘우의 묘제 등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불천위 종가에서는 아직도 집안의 길흉 대소사를 일일이 사당에 고유하며, 방문 손님의 그 지체에 따라 알묘하는 일이며, 심의를 입고 조석, 초하루, 보름에 알묘, 계절의 첫 수확을 천신하는 가장의 태도는 살아 있는 부조에게 대소사를 보고하고, 조석으로 인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되고 있는 증좌라 하겠다.

또 아들이 태어났거나 며느리를 얻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사당에 인사드린다. 주인이 먼 길로 출타하거나 돌아왔을 때, 혼인, 출산 등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도 고유한다.

특징 및 의의 불천위의 현조는 조선사회에서 유학의 실천적 삶과 덕망을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한 영웅적 인물로 등장한다. 불천위 종가에서 파생한 사대봉사의 당내 조직은 불천위 종가의 사대봉사를 둘러싼 모든 연결망에 포용되어 있다. 불천위 종가는 상징적 사대봉사의 큰집으로 남아 있고, 불천위의 후손은 범당내친을 포용하여 모든 후손이 '동고조 팔촌'이라는 상징적 혈연관계를 형성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불천위는 종가의 확립과 더불어, 혈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생물학적 친족관계에 지연적 관계까지 모두 포용한 통합적 씨족집단으로서의 한민족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였는지도 모른다. 불천위로부터 부여받는 불천위제사와 같은 의례행위로 인하여, 불천위 후손은 전통사회에서 다양한 지연적·혈연적·학문적·정치적·경제적 생활의 상호교류를 통하

여 문화집단의 발원지 역할을 해 왔다.

한 예로, 불천위 종가의 종손과 종부가 사망하면 그 후손들은 누구나 재최 3월복으로 두건을 쓰는 자격을 입는 종복제宗服制를 따른다. 이 원리는 당내의 동고조 팔촌과 사대봉사의 계열에 근거한 것이다. 즉, 대수가 10대가 지나고 촌수가 30촌이 되어도 항상 팔촌으로 인정하는 불천위 종가의 상징적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각 종가의 불천위는 사당에 신주의 형태로 남아 있다. 다른 4대위는 일제강점기나 6.25전쟁 등 피란으로 조매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천위만 거의 피신한 것으로 보여 그 맥이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常變通攷, 朱文公家禮, 안동의 제사(안동민속박물관, 2001), 한국의 명문종가(이순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향촌의 유교의례와 문화(권삼문·김영순, 민속원, 2003).

필자 김영순(金永順)

불천위제사
不遷位祭祀

정의 4대를 넘긴 신주神主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모시면서 지내는 제사.

역사 『예기禮記』「대전大傳」에 따르면 "백세百世가 지나도록 옮기지 않는 종宗이 있고, 5세를 넘기면 옮기는 종이 있다. 백세가 지나도 옮기지 않는 종은 별자別子의 후손(적장자)이니, 별자를 잇는 자의 시조를 종으로 하는 자는 백세토록 옮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조를 잇는 자를 종으로 하는 자는 5세가 되면 옮기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른바 별자종법別子宗法이다. 별자란 중국 주周나라 시대 제후의 차남 이하 아들을 말한다. 즉, 제후의 장남은 제후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고 차남 이하의 아들들은 별자가 되어 독립적인 종을 세웠는데, 이때 별자는 '백세불천百世不遷'의 자격을 부여받아 자손대대로 대종大宗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한편, 별자의 차남 이하 아들들은 소종小宗의 시조가 되는데, 이때 오세즉천五世則遷의 원칙에 의해 5세를 넘기면 조상제사祖上祭祀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대봉사四代奉祀 원칙이다.

이처럼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는 백세불천百世不遷의 자격을 부여받은 신위를 대상으로 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공신功臣을 대상으로 자격이 부여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제향 대수代數가 지나더라도 불천위로 삼아 따로 일실一室을 세워 계속 봉사奉祀한다."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예기』「대전大傳」에 "별자가 아니더라도 최초로 봉작封爵된 자도 시조가 된다."라고 했으며, 『백호통白虎通』에서도 "제후의 별자가 아니더라도 공功이나 덕德에 의해 대부가 된 사람은 백세불천의 제사를 받는 대종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대종의 지파支派인 소파小派에서도 새로이 봉작된 현조顯祖가 있으면, 따로 시조로 삼아 새로운 종宗을 수립하여 종가를 창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불천위제사는 종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의례문화라고 할 수 있다.

내용 『가례家禮』에 따르면 사당[家廟]에는 4대조까지의 신주만 모시고, 친진親盡을 다한 5대조의 신주는 조매祧埋를 하거나 최장방最長房에게 체천遞遷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주祭主의 5대조가 되는 인물이 생전에 큰 공훈이 있거나 학덕學德이 높으면 친진을 했다하더라도 사당에 영구히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불천위제사'라고 한다. 이때 매년 기일에 제사를 받는 신주를 '불천위不遷位', '불천지위不遷之位', '부조위不祧位'라고 하며, 불천위제사는 '불천위대제不遷位大祭', '불천위기사不遷位忌祀'라고 한다.

불천위 조상은 봉안 공간에서도 각별한 대우를 받는데, 우선 4대 조상과 달리 독립된 별묘에 안치된다. 만약 별묘를 세울 형편이 되지 않으면 가묘에 함께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에도 불천위 조상을 우대한다. 즉, '이서위상以西爲上'의 관념에 입각하여 가장 우위로 인식되는 서쪽에 감실龕室을 추가로 마련하여 불천위를 봉안하는 것이다. 심지어 감실이 네 개일 경우에도 가장 서쪽에 불천위 조상을 모시고, 이어 고조·증조·조부를 모신 다음 아버지의 신주는 조부가 자리한 감실(동쪽 끝) 앞에 서향으로 별도의 탁자를 마련하여 안치하는 경우도 있다. 행례行禮를 통해서도 불천위 조상에 대

한 우대 경향을 볼 수 있는데, 4대 조상의 기제사와 달리 불천위 제례는 '대제大祭'로 불리면서 각별히 인식되며 참제자의 범위도 무척 넓다. 직계손은 물론이고, 방계손과 외손 그리고 불천위 인물과의 학연學緣 등에 의해 인연을 맺어온 다른 가문의 후손들까지도 참여한다.

불천위제사는 엄밀히 말해 기제사의 일종이다. 그러나 타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일반 기제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성대하게 거행된다. 우선 제관祭官 선정이 중요했다. 불천위제사는 참여자가 많은 만큼 집사분정執事分定의 절차를 거쳐서 제관을 선정한다. 초헌관과 아헌관은 집안의 주인(종손)과 주부(종부)가 수행하지만, 종헌관과 축관, 집사자 등은 천거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제사 당일 저녁에 종가로 모인다. 이들은 도유사의 책임하에 작성되는 시도록時到錄에 이름을 올리는데, 여기에 적힌 명단을 중심으로 집사를 선정한다. 집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초헌관·아헌관·종헌관·축관·찬자贊者 다섯 사람을 '5집사'라고 부른다.

불천위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의 웅장함에 있다. 일반 기제사에 비해 다양한 제물이 차려지며 고임 제물 역시 높게 쌓는 편이다. 그중에서도 차별화되는 것은 탕湯과 생육生肉이다. 탕의 경우 일반 기제사에서는 3탕이나 단탕單湯이 보편적이지만, 불천위제사에서는 5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류는 육탕肉湯·어탕魚湯·소탕素湯·계탕鷄湯·조개탕[蛤子湯] 등이 있다. 이처럼 일반 기제사와 달리 불천위제사에서 5탕을 올리는 것은 불천위 조상에 대한 위대성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사실 탕은 『가례』와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비롯한 예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제물이다. 다만, 『국조오례의』「속제俗祭」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제의초祭儀抄」에는 탕이 그려져 있다.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에 "『가례』에서 어육魚肉을 말했는데 이것이 탕인지 고깃덩어리[胾]인지 짐작할 길이 없다. 어육을 탕으로 만들어 올렸는지 생生으로 올렸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추측하건대 어육은 반드시 탕으로 할 필요가 없다. 삶은 후에 건져서 제기에 담아 올려도 무방하다. 또한, 옛날에는 고깃국을 탕으로 부른 적도 없었다. 『예기』「교특생郊特牲」에서 행하는 삼헌설三獻爓이란 고기를 탕에 넣어 데친 후에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꺼내서 헌작 때마다 올리는 절차이다. 또 『가례의절家禮儀節』「혼례昏禮」에 '탕湯'과 '반飯'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지만, '국[羹]'을 탕이라고 하여 반飯과 짝 지우는 것은 후세에 생겨난 풍습이다. 고례에서는 태갱太羹(고깃국)·형갱鉶羹(고기와 나물을 넣은 국)을 서직黍稷과 짝지었을 뿐, 어육과 갱을 명시하는 내용은 없다. 『가례』 역시 갱을 반飯에 짝지었기 때문에 어육은 갱이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불천위제사에 사용되는 생육은 도적의 형태로 차려진다. 도적이란 계적·육적·어적을 하나의 적틀[炙臺]에 쌓는 제물이다. 도적의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적을 모아놓는다는 의미에서 '도적都炙', '도적都積', '합적合炙'이라고도 하며, 「표준가정의례」 등에는 동물을 도살한다는 뜻에서 '도적屠炙'으로 되어 있다. 『의례儀禮』에는 생육, 곧 희생이 주된 제물로 등장하는데 "교郊에서는 희생犧牲의 피를 올리고, 대향大饗에서는 날고기[腥]를 올리고, 3헌獻의 제사에는 데친 고기[爓]를 올리고, 1헌의 제사에서는 익힌 고기[熟]를 올리는데, 이것은 지극히 공경하는 제사에는 맛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기氣와 냄새를 귀하게 여기는 뜻이 들어 있다."라고 설명한다. 교郊는 천신에 대한 제사, 대향은 종묘대제, 사직대제, 향교와 서원 향사 등을 일컫고, 3헌이란 초헌·아헌·종헌을 갖춘 제사, 1헌은 단헌單獻으로 거행하는 제사를 뜻한다.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종묘·향교·서원의 제사에서는 날고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예기』에 명시된 대향이란 국가적 차원의 제사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사대부층의 불천위제사에 수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가례』의 진설도에 '적炙'이라는 제물이 있다. 『가례』에 따르면 초헌에서는 간肝, 아헌과 종헌에서는 구운 고기[炙肉]를 올린다고 되어 있다. 세 명의 헌관이 술을 드릴 때마다 각각의 적을 올리는 절차를 '진적進炙'이라고 하며, 이들 제물을 '3적' 혹은 '편적片炙'이라고 한다. 이처럼 예서에 근거하면 3적의 형태가 고례古禮에 근접해있으며, 도적은 이를 하나의 제기에 담은 제물이라 할 수 있다. 도적을 적틀[炙臺]에 쌓을 때에는 '우모린羽毛鱗'이라고 해서 하단을 기점으로 어류·육류·조류의 순서로 차리는데, 이것은 바다·육지·하늘로 구성된 우주의 질서를 뜻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도

1. 출주고사

2. 집사분정

3. 개독

4. 강신

5. 참신

6. 진찬

7. 제사상

8. 분향

불천위제사 | 경북 안동 농암 이현보 종가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9. 초헌

10. 독축

11. 아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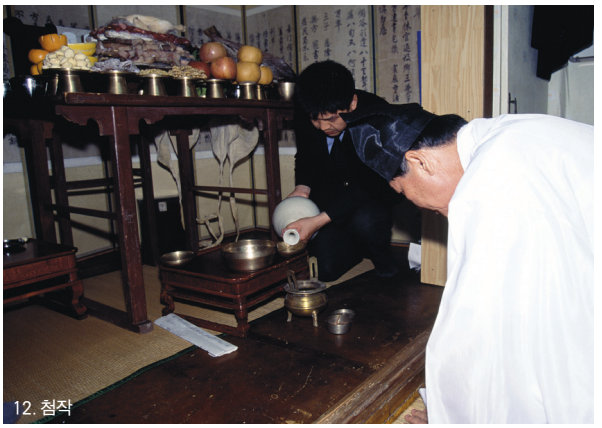
12. 첨작

13. 삽시정저

14. 헌다

15. 분축

16. 음복

적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기호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기호 지역에서는 쇠고기[肉煎]·생선[魚煎]·두부[蔬煎] 등에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지지는 전煎을 차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도적만큼은 아니지만 고임 방식으로 높게 쌓아 올린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도적을 진설하는 영남지역에서는 전고임 제물을 대부분 차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천위제사에서 도적의 역할은 웅장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높이가 대략 40~70㎝에 이른다. 이때 균형을 잡기 위해 가장 하단에 북어 등을 깔아둔다. 그런 다음 '꼬치[串]'에 꿴 어류와 육류를 차례로 쌓는다. 꼬치는 사리나뭇가지에 육류나 생선을 토막 내어 꿰는 음식으로 나뭇가지가 버팀목 구실을 한다. 아마도 고임의 형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식으로 짐작된다.

불천위제사는 훌륭한 조상의 덕을 기리고 혈족의 정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문중 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불천위제사를 통해 그 지역 유림이 소통함과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 유림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도 한다. 또한, 불천위제사는 다른 문중에게 자기 문중의 위세를 과시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현조顯祖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천위제사는 타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에 엄격한 격식과 웅장한 제물을 통해 조상의 위대함을 공식화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增解, 經國大典, 白虎通, 四禮便覽, 禮記,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제사와 제례문화(한국국학진흥원, 2002),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김미영 외, 민속원, 2012).

필자 김미영(金美榮)

빈
殯

정의 시신을 입관하여 장사지내기까지 일정 기간 임시로 안치하는 일.

역사 빈殯 혹은 빈장殯葬은 『예기禮記』에서 이미 "천자는 7일이 지나 빈을 하고 7개월이 지나 장사를 치르고, 제후는 5일이 지나 빈하고 5개월이 지나 장사하며, 대부·사·서인은 3일이 지나 빈을 하고 3개월이 지나 장사를 지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빈을 하였다가 3년이 지나면 길일을 가려 장사지낸다."라는 『북사北史』의 기록으로도 빈장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 등에 수록된, 발기發岐의 상례에서 4개월간의 빈장,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과 무열왕武烈王의 3년에 가까운 기간의 가매장假埋葬, 박혁거세왕朴赫居世王의 7일간의 가매장, 수로왕首露王의 빈궁 등의 기록은 빈장이 고대사회에 일반적이었음을 알게 한다.

『가례家禮』에서 "옛날에는 빈을 하였으나 남방의 진흙에 개미가 많아 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이에 성빈成殯의 절차는 물론 계빈啓殯의 절차 역시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사의四儀』 등의 예서에는 성빈은 물론 계빈의 절차가 있고, 유월장踰月葬 등 장기葬期가 길면 대부분 외빈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계빈이라는 절차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따라서 빈장의 역사는 유교식 상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빈장을 복차장複次葬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양자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복차장은 가매장하여 육탈肉脫하면 뼈만 수습하여 다시 본장을 한다는 점이다. 육탈 기간을 단축한 것이 화장火葬으로, 이 역시 육탈 후 뼈만 수습하여 장골藏骨 혹은 본장을 한다는 점에서 복차장이다. 그러나 빈장은 일정 기간 가매장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육탈 후 뼈만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입관한 그대로 본장을 한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따라서 유골을 수습하지 않는 장법葬法을 빈장이라 하고 습골拾骨하는 장법을 복차장으로 구별할 수 있다.

빈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체제 유지가 목적이다. 이는 영웅숭배 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왕의 죽음은 국가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뜨리므로 후계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조치가 '죽은 왕의 의례'로부터 시작한다. 왕은 단순한 고인이 아니라 왕위 계승이나 체제 유지에 이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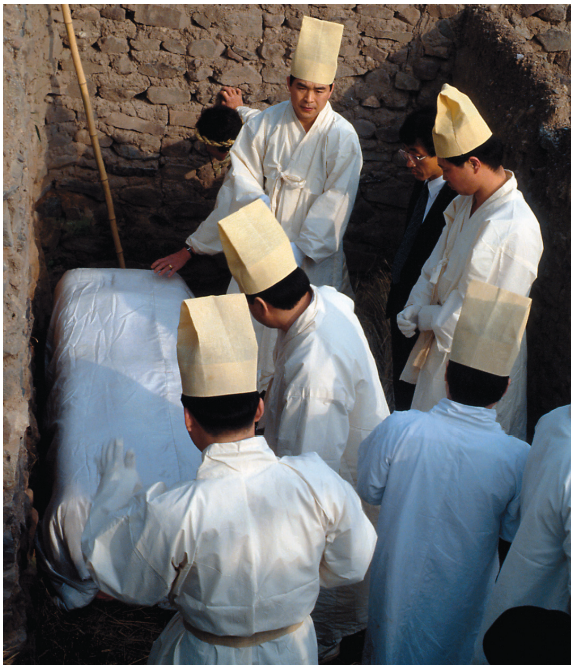

빈을 하는 모습 | 경남 창녕 | 1993 | 국립민속박물관

빈 | 경북 청도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문에 왕의 시신을 중요시하여 일정 기간 안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태국에서 왕이 사망하면 왕궁의 특별한 공간에 100일 또는 그 이상 동안 모시고 공양하는 것 역시 왕위 계승은 물론 체제의 유지를 위한 장치였다. 발리 섬에서의 일정한 기간의 안치와 엄청난 비용의 화장탑火葬塔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 매장하는 지역에서 관棺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은 시신의 보존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가례』에서 "관 안팎에 회칠하고 안에는 역청을 녹여 부어 두께가 반 치 이상 되게 한다. 불에 익힌 조와 쌀가루를 바닥에 깔아 두께 4치쯤 되게 한다."라고 한 내용이나 중국에서 "왕이 즉위하면 관을 만들어 칠하니 벽돌처럼 견고하여 벽椑이라 하였다."라는 기사로 관을 튼튼하고 견고하며 밀폐성이 높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빈을 중요시하여 빈을 하는 동안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둘째, 실용적인 이유이다. 고구려의 고분은 왕이나 부유층의 무덤으로 화려하고 큰 것이 특징이다. 큰 비용과 노동력, 시간을 들여 화려하고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능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시간을 확보하려고 빈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례』에 "옛날에는 대렴大殮하고 빈을 한다. 대렴을 마치면 벽돌을 쌓고 진흙을 바른다. 지금은 칠이 마르지 않거나 남방의 흙에 개미가 많아 흙을 바르지 않고 편리함을 따른다."라고 한 내용을 통해 빈을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서계 위에 임衽(관 뚜껑을 고정하는 나비장)이 보일 만큼 파고 벽돌을 쌓고 흙을 바르고 나무로 관을 덮고 휘장을 쳤다고 한다. 요즘에는 주로 헛간의 바닥을 파고 벽돌을 쌓고 가매장을 하거나 건물 밖에 임시 가매장을 하며, 헛간이나 창고에 임시로 안치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벽돌을 쌓고 이엉을 덮는 등 가매장이 아니라 이불로 둘러싸고 병풍으로 가리는 사례도 있어 일정하지 않다.

지역사례 빈이 일반화하면서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등장한다. 예서에서는 '빈'이라고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모래로 가매장하였을 때는 '사롱沙壟', 건물의 바깥에 빈을 하면 '외빈外賓', 구덩이를 파고 흙을 발라 가매장하면 '토롱土壟', '토감土坎'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지역적 특성이나 집안, 학파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빈장은 일종의 유예 상태의 죽음 처리라고 볼 수 있다. 체제의 유지를 위한 화려한 장례식이나 거대하고 화려한 능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빈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빈을 하는 동안에 죽은 왕의 권력으로 체제 유지와 계승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유교식 상례에 도입되어 제도화하였고, 이것이 조선에 유입되어 한국에서도 유교식 상례에서 빈장이 일반화하였다. 참고로 일본 황실에서도 빈궁殯宮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아시

아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빈장은 복차장의 변형이 아니라 유교식 장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士儀, 三國志, 常變通考,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민속원,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빈상여놀이

정의 상장례 절차의 한 과정으로 장례를 행하기 전날 상가에서 빈 상여를 둘러매고 실제로 상여가 나가는 흉내를 내면서 노는 놀이.

역사 절차와 격식을 강조하는 장례 모습은 조선 중기 이후에 향촌사회에 널리 퍼진 것일 뿐 본래부터의 고유한 풍속은 아니다. 유교가 유입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전통이 남아 있었다. 축제식 상장례 민속은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계속된 양식이다. 『수서隋書』「동이전」 고려조高麗條(고구려)에, "처음과 끝에는 슬퍼하며 울지만, 장례를 하면 곧 북을 치고 춤추며 음악을 연주하며 죽은 이를 보낸다初終哭泣葬卽鼓舞作樂以, 送之."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상가에서 술과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고 노래판을 성대하게 벌이고 놀았는데, 이를 '오시娛屍'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어버이를 장사하는 날에 신을 즐겁게 한다는 명목으로 무당을 불러와서 술을 마시고 풍악을 베풀어 하루를 다하고 밤새도록 하지 않는 짓이 없다."라고 적고 있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상층에서 유교식 예법에 근거해 민간의 장례 풍속을 '폐풍弊風'이라고 하고, 민중은 상층의 유교식 장례를 '박장薄葬'이라고 하면서 공방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배계층이 주도하는 유교식 예법이 널리 퍼지고 전래의 축제식 장례 방식은 축소되었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고 있다. 호상好喪일 때에 이른바 '빈상여놀이'라 하여 출상 전날 밤에 상주의 계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상여소리나 춤을 추면서 동리를 돌아다니는 놀이도 그중 한 가지이다.

내용 빈상여놀이를 황해도에서는 '생여도듬'이라 하고, 강원도·경기도·충청도에서는 '손모듬' 또는 '걸걸이'라고 한다. 경상도에서는 '대도움', '대구리', '개도둔', 전라도에서는 '대뜨리' 또는 '대어린다', '상여 흐른다'라고 하고, 섬 지방에서는 밤달애·대울림 등으로 부른다. 상가에서는 망자의 빈소를 마련하고 성복제가 끝나면 아침과 저녁으로 밥상을 차려 올리고, 곡하며 문상객을 받는다. 이때 호상인 경우에는 상여가 나가기 전날 저녁에 '대돋움'이라 하여 상두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상엿소리를 부르며 빈상여놀이를 한다. 빈상여놀이는 상가의 마당이나 골목길에서 상두꾼들이 모두 모여서 행한다. 놀이방법은 상두꾼들이 빈 상여를 매고 상여 앞소리꾼이 앞소리를 부르면 상두꾼들이 후렴을 받으며 운구를 한다. 안동 지역의 대돋움 소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앞소리꾼이 상두꾼들에게 하는 말)
자 여보시게들!/ 우리 모두 목을 축였으니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자 어서 모입시다./ 줄 다 골랐지요?/ (상두꾼)예!/ 해 보시데이!
(상두꾼이 상여를 메고 서서 길을 떠나기 전에 메기는 소리)
에헤~/ 나도 생각하니 원통하고 애통하고 슬프고도 슬프구나/ 이내 인생 일장춘몽인데 그다지도 에~ 헤헤 왜 죽었는고/ 아~ 헤~ 오~ 에헤헤~ 헤~/ 간다간다 나는 간다 대궐 같은 요 내 집을 원앙같이 비워놓고/ 염라대왕 호출당해 북망산천 나는 간데이/ 아~ 헤~ 오~ 에헤헤~ 헤~.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메기는 앞소리)
아~ 에~ 오~ 헤 헤이 넘차 호오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헤 헤이 넘차 호오오/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헤 헤이 넘차 호오오/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헤 헤이 넘차 호오오/ 곤륜산에 정기 받아/ 헤 헤이 넘차 호오오/ 백두산이 어떻길래/ 헤 헤이 넘차 호오오/ 경상도라 태백산에/ 헤 헤이 넘차 호오오/ 안동이라 영남산에/ 헤 헤이 넘차 호오오/ 북으로는 학가산이요/ 헤 헤이 넘차 호오오/ 남으로는 낙동강이라/ 헤 헤이 넘차 호오오/ 낙동강 칠백 리는/ 헤 헤이 넘차 호오오/ 좌우산천 둘러보니/ 헤 헤이 넘차 호오오/ 산도 곱고 물도 맑고/ 헤

헤이 넘차 호오오/ 동남으로 바라보니/ 헤 헤이 넘차 호오오/ 문전옥답 좋을시고/ 헤 헤이 넘차 호오오/ 당대발복이 완연하데이/ 헤 헤이 넘차 호오오/ 서남으로 바라보니/ 헤 헤이 넘차 호오오/ 건너봉이 병풍 같고/ 헤 헤이 넘차 호오오/ 어화둥둥 좋을시고/ 헤 헤이 넘차 호오오/ 서남으로 바라보니/ 헤 헤이 넘차 호오오/ 우뚝하게 솟을봉이/ 헤 헤이 넘차 호오오/ 효자 충신 완연하데이/ 헤 헤이 넘차 호오오.

상두꾼들이 상가의 마당에서 빈 상여를 매고 놀면 상가에서는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이러한 빈상여놀이는 상여를 처음 구입한 후 부품이나 조립이 안전한지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하기도 했다.

지역사례 빈상여놀이는 지역에 따라 명칭과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황해도에서는 북과 장구를 치면서 상여를 메고 아들·딸의 집 등을 돌고,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는 아들·딸·친척·친구의 집 등을 도는데, 골목길에 횃불을 켜고 골목길을 밟게 한다. 그런데 상여가 공동우물을 지날 때는 우물을 덮고 지나가는 것이 상례였다. 이렇게 해서 마을을 돌아다닐 때 상여 뒤를 따라가던 유족들은 자기 집에 다가가면 미리 가서 상여를 맞이하고 제물을 차려놓고 곡하며 상여꾼에게 술을 대접한다. 경상도에서는 집밖에 넓은 터나 집안 마당에서 북을 치고 상엿소리를 하는가 하면, 전라도에서는 상여꾼이 출상 연습을 겸해서 한다. 이와 같은 놀이에서 상엿소리는 대체로 죽은 이의 인품이나 성격, 공덕 등을 나타내거나 망자의 유언을 전달하기도 한다.

진도에서 전승되는 '진도다시래기'는 부모의 상을 당한 상주와 유족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위로하기 위하여 출상 전날 밤늦도록 벌이는 일종의 빈상여놀이다. 이를 보통 '상여 어울린다' 또는 '대어린다'라고 한다. 놀이가 끝나면 유족들은 이들에게 술과 함께 팥죽이나 닭죽을 대접하며 다음날 상여를 잘 메어 달라고 부탁한다. 서울특별시 암사동 바위절 마을의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있다. 이곳에서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장수長壽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출상出喪 전날 상가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빈 상여를 조립하여 메고는 선소리꾼과 상여꾼이 만가輓歌를 주고받으며 발을 맞추어보고 인근의 마을 사람들 집을 돌면서 걸립을 하는 호상놀이를 하였다. 요령잽이(선소리꾼) 1명이 앞장서서 상여를 이끌고 네 줄로 선 36명의 상여꾼이 상여를 메는 형태이며, 상여를 메기 전에 부르는 요령잡기소리와 집을 떠나면서 부르는 향도가 등은 이 지역 특유의 선소리이다. 경상북도 구미에서는 출상 전날 저녁에 상두계원들이 모여 상여를 받치는 원채를 만들어 출상 준비를 한다. 모든 준비가 갖춰지면 실제 상여는 얹지 않고, 원채만 들고 상여가 나가는 것과 같이 앞소리를 메기며 상여를 멘다. 이를 '대구리'라고 하는데, 상두꾼들이 상주에게 돈을 우려내기도 하는 일종의 빈상여놀이이다. 경기도 수원에서도 출상出喪 전날 저녁에 빈 상여나 혹은 복인을 태우고 상여꾼들이 발을 맞추어 보고 마당을 몇 바퀴 돌아보는 빈상여놀이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같은 동네의 복인들 집을 돌아다니며 술대접을 받기도 한다. 대전광역시에

대떨이(빈상여놀이) | 충남 논산 | 1992 | 국립민속박물관

서는 '대떨이'라고 하여 발인 전날 밤에 문상객과 상주들이 한마음으로 상여 모실 준비를 하는데, 대떨이는 빈 상여를 메고 발을 맞추어 보는 것이다. 공주시에서는 '상여 울르기' 혹은 '상여 흐르기'라는 이름으로 호상인 가정에서 빈상여놀이를 한다. 경북 안동시에서도 호상인 경우, 전날 저녁에 '대돋움'이라 하여 상두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상엿소리에 맞추어 빈상여놀이를 즐긴다.

특징 및 의의 빈상여놀이는 출상 시에 상여를 무사히 운구할 수 있도록 전날 밤 상여 앞소리꾼과 상두꾼들이 미리 모여 빈 상여를 메고 발을 맞추어 보는 놀이판이다. 동시에 상가에서 흥을 돋움으로써 상주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경건한 의례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난을 치는 것은 상주가 지나치게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상두꾼들이 상여를 멜 때 호흡이 맞도록 미리 연습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실제 상여를 메고 운구하는 것처럼 놀이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죽음의 의미를 삶의 의미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는데, 이때 망인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즐겁게 놀아야만 망인이 살아 있는 자손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준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광주군지(광주군, 1990), 무형문화재지정보고서-진도다시래기(이두현 · 정병호, 문화재관리국, 1984), 수원시사(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김지욱(金志昱)

빈장
殯葬

정의 사람이 죽은 후 주검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장례葬禮의 준비나 애도를 위한 기한을 정하여 주검을 임시로 관에 넣어 두는 것.

역사 빈장殯葬은 주검을 매장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한 뒤에 본장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경북 울진 후포리 세골장洗骨葬 유적에서 그 흔적이 확인된 것을 보면, 빈장은 신석기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동기시대에는 고인돌에 주검을 안치하기 위해서 고인돌의 축조 전前 단계에 임시로 주검을 안치하는 빈장이 행해졌을 개연성이 높다.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빈소殯所를 마련하였고 3년이 지난 뒤에 길일을 선택해 땅에 묻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고구려에서 빈장을 행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된 묘지석에도 3년간의 빈장 기록이 있다. 게다가 공주 정지산에는 무령왕의 빈전이 있었다는 것이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여러 문헌과 금석문에 빈장을 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확인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빈장의 습속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의 빈장은 중국에서 들어온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내용 주검을 임시로 두는 곳을 '빈소殯所'라고 하는데, 빈소는 흔히 집의 사랑이나 행랑 또는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였다. 또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야山野에 빈소를 차리기도 하였는데, 이때 주검은 관에 넣어 임시로 매장하거나 별도의 건물에 두었다. 집 안에 마련한 빈소는 '가빈家殯', 집 밖에 마련한 빈소는 '외빈外殯'이라 하였다.

빈장을 하는 까닭은 우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의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죽은 자의 육신이 변질되어야 비로소 죽음을 확신하였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다른 이유로는 무덤을 축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무덤을 만들려면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임시로 주검을 안치한 후 본장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빈장은 초분草墳처럼 주검을 육탈시키고 뼈만 깨끗하게 수습해 매장하는 풍습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빈장의 기간은 짧으면 며칠에서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에 죽은 사람의 근친近親들은 주검 옆에서 애도하며 본장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장례절차가 간편하게 바뀌는 추세라서 빈장이 거의 사라졌다.

특징 및 의의 빈장은 주검을 매장하기 전에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관을 안치해 두는 것으로, 본장을 치르기 전에 행하는 일차장이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常變通考, 喪禮備要. 동아시아의 고분문화(중앙문화재연구원, 서경문화사, 2011), 영원한 만남 한국 상장례(국립민속박물관, 미진사, 1990), 옛무덤의 사회사(장철수, 웅진출판, 1995), 한국의 초분(국립민속박물관, 삼광문화사, 2003).

필자 김영관(金榮官)

사갑제
死甲祭

정의 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부모의 환갑 때 지내는 제사.

내용 사갑제死甲祭는 회갑을 맞이하기 전에 돌아가신 부모에게 사후에 돌아온 회갑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이를 '갑사甲祀' 혹은 '망갑제亡甲祭'라고도 한다. 환갑은 예순한 살에 맞는 생일로서 인생에서 크게 경하해야 할 것으로 여겨 큰 잔치를 베푼다. 환갑을 축하하는 잔치는 환갑 당사자의 직계 자손들에 의하여 베풀어지며 최대의 효심을 발휘하여 성대한 잔치를 연다. 그 때문에 환갑 전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자손들은 이를 애통해 하여 부모님이 이미 고인이 되셨을지라도 환갑이 되는 해를 기억하여 사갑제를 지냈다.

제사의 절차는 기제忌祭의 절차와 같으나 장남이 초헌初獻을 하고 축문을 읽은 다음 아헌亞獻부터는 차남·삼남의 순으로 해서 근친近親들이 모두 잔을 올린다. 이어 가까운 친척 순으로 잔을 올리는 것만 다르다. 부모가 모두 환갑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을 때는 양위兩位를 함께 모시고, 한 분만 돌아가셨을 때는 단위單位로 모신다. 이때는 돌아가신 분의 사갑제를 당일 이른 아침에 먼저 지낸 후 생존하신 분의 회갑연을 베풀면 된다. 경기도 구리 지역에서는 집안과 가문에 따라 사갑제 때 돌아가신 분의 묘를 찾아 제사를 올리거나 절에서 재齋를 올리기도 한다.

망친亡親 사갑제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효자 아무개는 감히 밝게 어버이 영전에 고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환갑을 맞으시니,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경사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셨다 한들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결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추어 잔을 올리니 흠향하소서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顯妣某封某氏, 歲時遷易, 遼及還甲, 生時有慶, 歿寧敢忘,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式此奠獻, 尙饗."

지역사례 대전광역시에서는 회갑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지나가기가 섭섭하다 하여 자손들이 당일에 상을 차리고 맏아들부터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갑死甲'이라고 한다. 집에서 제사를 올린 후에는 묘소에 가서 다시 제를 올린다. 이때 망자를 위하여 한복 한 벌을 마련해 가서 묘소 부근에서 태우기도 한다. 경기도 구리에서는 사망한 조상의 환갑을 기념하는 사갑 때에는 망자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찾는다. 불자들의 경우 절에 가서 망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올린다. 묘소에서 새로 지은 옷 한 벌을 가져가 소각한다. 남양주에서는 이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국수잔치를 했다. 경기도 하남에서는 회갑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환갑과 99세 백수白壽 생일을 챙긴다. 회갑 날에는 고인의 제사를 지내 드리고 주변의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한다. 새 옷 한 벌과 신발을 제사상 밑에 놓았다가 묘소에 가서 소각하기도 한다.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고성·창원·산청·의령에서도 회갑을 지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망자의 회갑이 돌아오면,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들을 청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날은 산소에 찾아가서 절도 하고 망자를 위해 새 옷을 맞추어 태워 준다. 창원에서는 혹 점쟁이에게 물으면 '찌인다'고 하여 환갑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잔치를 생략하고 옷만 산소에서 태운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갑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갑이 되기 10년 전, 즉 51세 이후에 죽은 사람인 경우에만 회갑 제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평소 제사를 지내듯이 상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다. 또 성묘를 가면 고무신 한 켤레, 상하 의복 등을 태운다. 통영, 함양, 합천에서도 60세가

안 되어서 돌아가신 경우, 망자의 환갑이 되면 집안 형제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제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환갑잔치를 베푼다. 또 묘소에 가서 성묘하고, 회갑 옷을 태운다. 경상북도 경주에서는 죽은 사람의 회갑연을 열면 자손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금했던 사례도 있었다. 영주에서는 회갑 전에 사망한 경우, 망자의 회갑 날에 제례 형식의 갑사를 지낸다. 갑사는 집에서 아침에 상을 차려 지내며, 축도 읽는다. 갑사를 치르고 성묘도 하는데, 묘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생략하기도 한다. 집에서는 망자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사람들을 초대하지는 않고, 장만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돌리기만 한다. 돌아가신 분의 회갑 상에 술을 올리고 옷을 바치는데, 이를 '사갑死甲'이라고 한다. 사갑제死甲祭를 마친 자녀들은 돌아가신 분에게 바쳤던 옷을 묘소에 가서 태운다.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무덤에 회갑연의 상을 차려 제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잔치를 연다.

특징 및 의의 사갑제는 자손들이 회갑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지내는 제사로 일종의 환갑잔치를 여는 날이다.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 부모님이 회갑까지 사시는 것은 자식들에게 큰 기쁨이었는데, 회갑잔치를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사후에라도 회갑을 챙기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제사에 모인 자손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회고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보이는 행위로 효를 실천하는 한 사례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김지욱(金志昱)

사당
祠堂

정의 신주나 위패를 봉안해두는 건축물.

역사 『예기禮記』「왕제王制」에서는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는데 삼소三昭, 삼목三穆과 태조의 묘를 합쳐서 칠七이 되고, 제후는 오묘를 세우는데 이소二昭, 이목二穆과 태조의 묘를 더해 오五가 되고, 대부는 삼묘를 세우는데 일소一昭, 일목一穆과 태조의 묘를 합쳐서 삼三이 된다. 사士는 일묘一廟를 세우고, 서인庶人들은 침소寢所에서 제사 지낸다."라고 했다. 이처럼 고대에는 사당祠堂이라는 용어 대신에 묘廟를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종묘宗廟와 문묘文廟, 가묘家廟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후 『가례家禮』에서 '사당'이라고 칭함으로써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사당의 설치는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 조정에서 사당 건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이유는 사당과 신주가 유교식 상례 및 제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401년(태종 1)부터 사당을 세울 형편이 되지 않으면 궤櫃를 마련해서라도 신주를 모시도록 했을 정도로 사당 설치와 신주 봉안을 장려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사당 건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사당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선조대 이후부터이다. 당시 임진왜란의 후유증으로 사회질서가 크게 흔들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유교의 종법제도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유교식 의례체계를 대변하는 상징물로서 사당 건립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다.

내용 『가례』에서는 "정이천程伊川 선생이 제사 지낼 때는 영影자를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으므로 영당影堂을 사당祠堂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후 『주자가례』가 보급·정착함에 따라 '사당'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가례』의 첫 장인 「통례通禮」는 '사당祠堂'과 '심의제도深衣制度' 그리고 '거가잡의居家雜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관혼상제례와 달리 평상시 집에서 매일 행해지는 일상적인 예禮에 해당한다. 주희朱熹는 사당을 가장 첫머리에 놓은 까닭을 "이 장은 본래 「제례」에 있어야 한다. 지금 보본반시報本反始하는 마음과 존조경종尊祖敬宗하는 뜻을 집안의 명분을 지키는 데 두는 것은 개업전세開業前世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 집안이 유지되는 근본은 개업전세(가문을 영구히 이어나가는 일)에 있는데 이를 지속

사당 | 경북 고령 점필재 김종직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시킬 방법은 사당에 있다는 뜻이다. 즉, 조상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고 조상제사는 물론 관·혼·상례가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인 사당을 가장 첫머리에 배치함으로써 사당이 가례 행위의 중심이자 출발점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가례』에 따르면 "군자가 장차 집을 지을 때는 가장 먼저 사당을 정침의 동쪽에 세운다."라고 했다. 이를 『예기집설禮記集說』에서는 "오른쪽[西]은 음으로 지도地道가 존숭하는 곳이다. 왼쪽[東]은 양이므로 인도人道가 향하는 곳이다. 인도가 향하는 곳에 종묘를 세우는 것은 또한 그 어버이를 죽지 않았다고 여기는 뜻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침의 동북쪽·서북쪽·북쪽의 높은 장소에 사당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형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산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배산임수형의 가옥배치구조를 취하는 반면, 중국에는 넓은 평원이 많으므로 산을 등질 수 있는 배산임수의 가옥배치가 흔하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평지에 가옥을 세우다 보니 정침과 사당의 고도高度가 아니라 방향[坐向]을 중시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침의 뒤쪽 언덕이 아니라 좌우의 평지에 사당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마을 입지가 배산임수형에 속하며, 특히 반가班家의 경우 주산의 능선이 끝나는 지점을 길지吉地로 간주하여 가옥을 세움으로써 자연히 산을 등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지대의 높이와 위상의 높이를 동일시하는 관념이 생겨났으며, 더욱 높은 곳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정침의 뒤편 언덕에 사당을 세우는 관행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당은 세 칸 규모로 세워진다. 사당의 향배向背는 앞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뒤를 북쪽으로 배치한다. 만약 집터가 좁으면 한 칸으로 세우더라도 무방하다. 사당의 내부 바닥에는 나무판자로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자리를 펴둔다. 또 중간 도리 밑에 문을 만들어 '중문中門'이라 하고, 칸마다 네 문짝을 달아 '분합문分閤門'이라 한다. 분합문 밖에는 섬돌을 두 개 놓아 동쪽을 '조계祚階', 서쪽을 '서계西階'라고 한다. 조계는 주인만이 오르내릴 수 있으며 그 외 사람들은 서계를 이용한다. 사당 주변으로는 담을 쌓아 앞쪽에 외문外門을 낸다. 외문은 사당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사당의 중문과 마주 보게 된다. 외문의 동쪽과 서쪽은 담과 이어지도록 한다.

사당 내부에는 신주를 봉안해둔 감실을 마련하는데, 『가례』에 "사당 안의 북쪽 가까이에 감실당[龕堂] 하나를 길게 만들고, 이를 널빤지로 막아서 네 개의 감실당을 만든다. 감실당마다 안에 탁자 하나를 놓고 가장 서쪽으로부터 고조, 증조, 조부, 아버지의 신주 순으로 한다. 신주는 모두 독櫝 속에 보관하여 탁자 위에 놓고 남향한다. 각각의 감실당 바깥에 작은 발을 드리우고, 발 바깥에는 향탁을 당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그 위에 향로와 향합을 놓는다."라고 했다. 사당에서 서쪽을 우위로 삼는 것은 사후세계에 적용되는 방위 관념 때문이다. 즉, 해와 달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양계陽界에서는 동쪽이 우위가 되고 해와 달이 서쪽으로 가라앉으므로 음계陰界가 되어 서쪽을 중시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양陽에 속하므로 왼쪽[東]을 숭상하고 귀신은 음陰이므로 오른쪽[西]을 숭상한다는 논리이다. 한편, 고

사당지도 | 가례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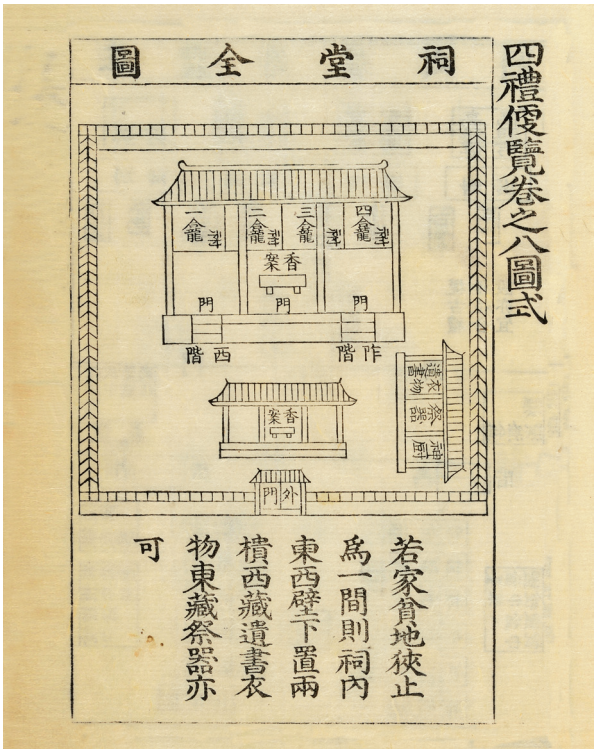

사당전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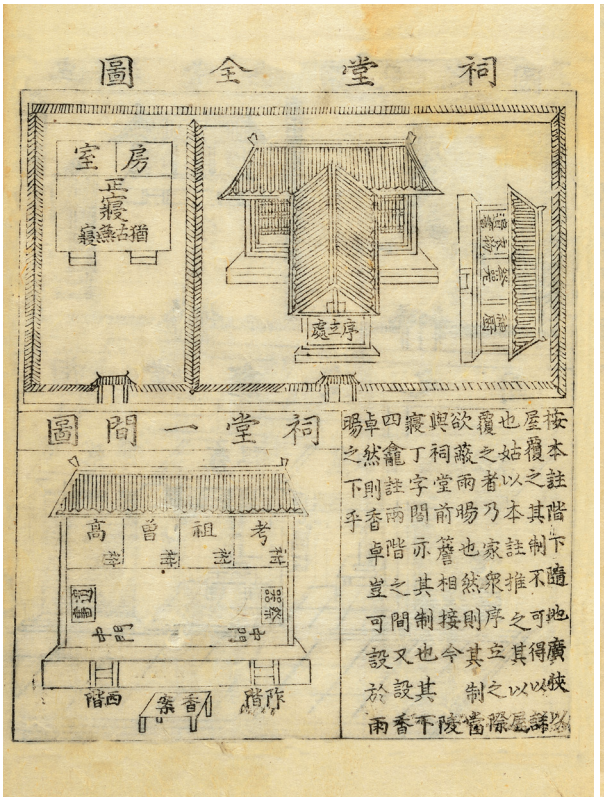

사당전도 | 가례집람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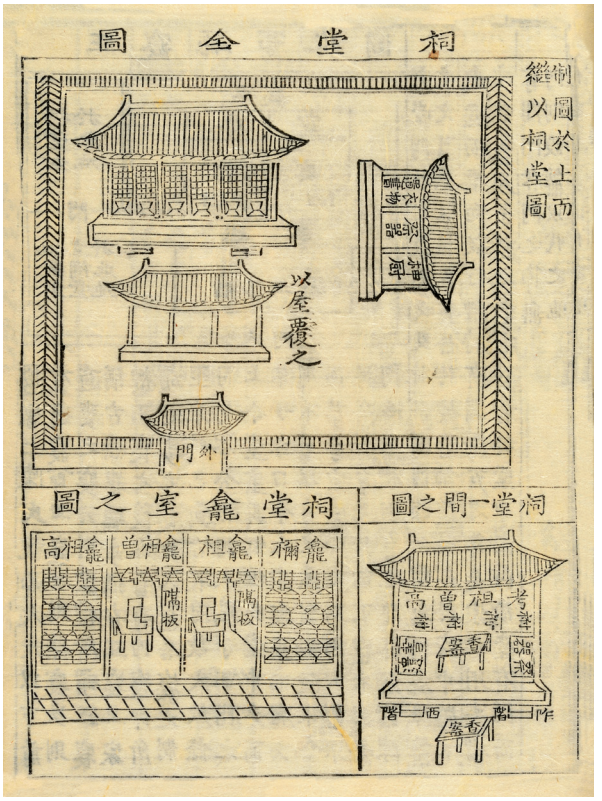

사당전도 | 가례증해 | 국립민속박물관

대 중국의 사당은 일세일묘一世一廟의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때 중앙에 위치한 시조를 중심으로 신주들은 동쪽의 소昭와 서쪽의 목穆으로 갈라진다. 그런 다음 부소자목父昭子穆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의 열에는 조부모와 고조부모, 목의 열에는 부모와 증조부모의 신주가 각각 놓이는 것이다. 그러다가 후한後漢 이래 동당이실同堂異室, 곧 같은 사당 내에서 일세一世가 일실을 차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승하는 사당 내부의 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당 내부의 북쪽 벽면에 교의를 각각 세우고 그 위에 신주를 모신 독을 놓는 형태, 둘째는 북쪽 벽면에 선반을 설치하여 그 위에 신주를 봉안한 독을 놓는 형태, 셋째는 조상마다 각각의 벽감壁龕을 만들어 그 안에 신주를 모신 독을 놓는 형태 등이다. 또 불천위不遷位 신주를 모시고 있는 경우 별묘別廟를 세울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가장 서쪽에 감실을 추가하여 사대조상들과 함께 봉안하는 형태도 흔히 나타난다. 사당에 모신 조상의 신주는 사대봉사 원칙에 의해 주제자主祭者로부터 4대를 넘기면 사당을 벗어나 조매祧埋를 한다. 그런 다음 서쪽으로 한 칸씩 나머지 조상들의 자리를 옮기고 동쪽 끝의 감실에 새로운 신주(망자의 신주)를 봉안한다.

사당에는 조상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자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를 차리는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사당과 관련된 의례에는 신알례晨謁禮·출입례出入禮·참례參禮·천신례薦新禮·고유례告由禮 등이 있다. 신알례는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 사당을 참배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례는 바깥출입할 때 사당에 아뢰는 의례이다. 집 밖 가까운 곳에 나갈 때와 돌아왔을 때의 첨례瞻禮, 집 밖에서 하룻밤 묵기 위해 길을 나설 때와 돌아왔을 때의 경숙례經宿禮, 10일 이상 숙박을 하기 위해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의 경순례經旬禮, 한 달 이상 집을 비우기 위해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의 경월례經月禮 등이 있다. 참례는 정조正朝·동지·초하루·보름에 각각 지내는 제사이며, 천신례는 청명·한식·중양 등에 절식節食을 올리는 제사이다. 고유례는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당에 고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가례』에 "홍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도둑이 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사당을 구한다. 신주와 유서遺書, 제기를 옮긴 후에 집안 재물을 옮긴다."고 했다. 이처럼 사당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조상을 존중하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특징 및 의의 사당은 신주나 위패를 봉안해두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가묘家廟를 일컫는다. 또 조상의 신주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경건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家禮, 禮記, 禮記集說,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미영(金美榮)

사당제
祠堂祭

정의 사당에서 행하는 의식, 큰 의미로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집안에서 행하는 제사 전체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당에서 거행되는 의례.

내용 사당제는 신알晨謁, 출입出入, 참례參禮, 천신薦新, 고사告辭의 다섯 종류이다. 신알은 주인이 새벽마다 심의를 입고 사당 대문 안에서 분향하고 재배하는 예이다. 출입례는 주인이나 주부가 가까운 곳에 출입할 때에 사당 안에 들어가 간단히 묵례를 올리는 예이다. 그러나 자고 올 때나 멀리 떠날 때, 또는 가서 한 달이 넘을 때에는 재배하고 분향하며 고사하고 재배한다. 그리고 중문 밖에서도 재배한다.

참례는 정조正朝와 동지 및 초하루와 보름날에 한다. 사당을 깨끗이 하고, 아침에 모든 감실 앞에 과일을 담은 쟁반과 잔을 놓고 준비를 한다. 주인과 주부가 신주를 모셔 내고, 주인이 강신하고 참신한 다음 헌작하고 사신하여 끝낸다. 그리고 주인과 주부가 다시 신주를 감실에 모신다.

천신례는 청명·한식·단오·중양重陽에 올린다. 이때는 약밥·쑥떡·수단水團이나 과일 등 별식을 올리고, 참례 때와 같은 절차로 행한다. 『정재선생문집靜齋

참례(추석 차례) | 경북 경주 월성 손동만 종가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출주고사 | 경북 예천 예천 권씨 종가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先生文集』에서는 사당제 찬품에 대해, 사당제식일 때는 고위와 비위의 병餠과 면麵을 1기器로 같이 올리고, 사당차례식일 때는 원일元日에 병餠·갱羹 및 만두饅頭, 정월 대보름에 약밥[藥飯], 유두일流頭日에 수단, 동지일冬至日에 팥죽[豆粥]을 고위와 비위에 각각 1기씩 올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참례와 동일하게 행하는데, 이때 고사告辭를 읽는 절차가 포함된다. 고사는 벼슬길에 나아갈 때, 조상에게 추증追贈이 내렸을 때, 적자嫡子가 태어났을 때, 관례와 혼례 때, 길제에 신주의 분면粉面을 고칠 때, 선고나 선비의 생일, 늙어서 가사를 아들에게 넘길 때, 사당을 수리할 때, 이사를 할 때 등에 한다.

민정중閔鼎重(1628~1692)의 『노봉선생문집老峯先生文集』에서는 장례 전에 가묘제家廟祭를 정지하고, 졸곡 후에 삭망朔望의 참례 및 절사節祀의 천신을 모두 다시 설행한다고 하였다. 『상변통고常變通攷』에서는 "『의례문해』에 '삼년상에서 중요한 것은 궤연几筵에 있으니, 삭망과 속절 등의 의식에서는 모두 궤연을 먼저하고 가묘를 뒤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으나, 송시열宋時烈(1607~1689)은 '삭망의 참례에 사당을 먼저하고 빈소를 뒤로 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고, 박세채朴世采(1631~1695)도 '『가례家禮』에서 동지에 시조제를 지낸 후에 사당제를 행한다고 한 설명이 지금 비록 상례와 제례의 구별이 있지만, 마땅히 사당의 참례를 먼저 행해야 한다.'라고 하여, 상喪의 경중에 따라 선후가 바뀐다."라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사당제는 집안에 조상이 있는 듯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의식이라 정식 제사와 구별되지만, 후대에 점차 사당이 사라지면서 사당에서의 의식이 줄어듦에 따라 차례처럼 간략하게 축소되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사당이 없음에도 설과 추석의 차례가 기제사와 더불어 중요한 제사로 인식됨에 따라 차례가 사당제를 대표하는 제사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儀, 南溪先生朴文純公文外集, 老峯先生文集, 常變通攷, 佔畢齋文集, 靜齋先生文集.

필자 최순권(崔順權)

사대봉사
四代奉祀

정의 유교식 제사에서 부모·조부·증조부·고조부까지 4대에 이르는 조상들의 제사를 받드는 일.

내용 사대봉사四代奉祀는 유교식 제사에서 부모로부터 고조부까지 4대에 이르는 조상들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말한다. 고려 말기 우리나라에 처음 유교식 제사가 도입되었을 때는 사대봉사가 아닌 차등봉사제였다. 봉사奉祀에 차등을 준 것은 중국의 종법제도宗法制度에 기반을 둔 것이다. 종법은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하여 대종은 제사를 무한히 지속하고, 소종은 4대조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주나라는 봉건제와 함께 『예기禮記』「왕제王制」에서 시조를 제외하고 천자天子는 6대조까지, 제후諸侯는 4대조인 고조까지, 대

부大夫는 조고祖考까지, 선비와 서인은 고비考妣만을 봉사하게 했다.

주나라의 붕괴와 함께 종법제도는 사라졌지만, 차등봉사와 적정자嫡長子 중심의 원리는 송나라의 종법인 사대봉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북송대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에는 삼대봉사三代奉祀의 기록만 있는데, 정이程伊는 신분과 관계없이 복服을 입는 것이 고조이기 때문에 사대봉사를 주장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신분과 관계없이 사대봉사를 하도록 했다.

『주자가례』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이전인 고려 말기 1390년(공양왕 2)에는 차등봉사를 규정한 법령에서, 대부 이상은 3대, 6품 이상은 2대, 7품 이하 서인은 부모만을 모시도록 했다. 이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이어져 『경제육전經濟六典』「예전禮典」 가묘봉사조家廟奉祀條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러나 차등봉사제에 대한 논란은 고려 말기부터 시작되어 1427년(세종 9) 다시 한 번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박연朴堧(1378~1458)이 『주자가례』에 따라 사대부는 4대조까지 봉사할 것을 상소한 것에서 시작하여, 신분과 관계없이 복을 입는 4대조까지 봉사를 하자는 주장과 제복의 차등은 물론 국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관품에 따라 봉사 대수代數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4품 이상의 문신 가운데 사대봉사를 찬성한 사람은 4~5인에 불과하여 성립되지 못했다.

이후 1485년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6품 이상의 관원은 3대, 7품 이하 관원은 2대, 서인은 부모만을 봉사하도록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주자가례』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에서 의례의 정비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삼대봉사를 준수하는 『경국대전』을 반포함으로써 국법으로 제정된 삼대봉사를 실천해온 것이다. 그러다가 중종대中宗代에 『주자가례』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대봉사가 거론되었으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중심으로 하되, 『주자가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림의 사대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림은 사화士禍 이후 중앙 정계에서 나와 『주자가례』를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서禮書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1547년 이현보李賢輔(1476~1555)의 『제례祭禮』, 1577년 이이李珥(1536~1584)의 『제의초(祭儀鈔)』 등에는 증조曾祖를 기준으로 한 삼대봉사三代奉祀를 규정하고 있어 16세기 초반까지도 삼대봉사를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550년 이언적李彦迪(1491~1553)의 『봉선잡의奉先雜儀』에서는 국법을 어길 수 없어 삼대봉사를 원칙으로 제례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일반인들이 삼대봉사를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 사실상 차등봉사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고조高祖에 대한 묘제를 권장하면서 우회적으로 사대봉사를 인정했다. 권호문權好文(1532~1587)은 유서에서 적자든 서자든 모두가 삼대봉사를 하도록 허용했다.

사당에 모셔져 있는 사대조 주독(양창독)
경북 경주 월성 손동만 종가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이황李滉(1501~1570) 역시 사대봉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나, 모든 사람에게 사대봉사를 요구하지 않아 국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영향을 받은 이황의 문인들은 사대봉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실천하기 시작했다. 김성일金誠一(1538~1593)은 효孝의 논리에 따라 고조의 제사를 허용하였고, 오히려 국법을 핑계로 후손들이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렇게 영남 사림들은 『주자가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대봉사를 수용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18세기 이후 『주자가례』가 서민층까지 확대·보급됨에 따라 사대봉사가 정착되었다. 1973년 「가정의례준칙」에는 기제사는 2대에 한하여 봉사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삼대봉사, 이대봉사二代奉祀등 봉사의 대수를 줄

이거나 조상의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는 합사合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전통적 관행으로 여전히 사대봉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사대봉사는 전통적으로 부모부터 고조까지 이르는 4대 조상들의 신주를 사당에 모셔두고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사당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지방紙榜으로 대신하여 사대봉사를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신분제에 따라 차등을 두어 봉사 대수를 달리했지만, 『주자가례』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서민층까지 사대봉사를 하게 되었다. 조상에 대한 봉사를 4대조까지 규정한 것은 생전에 만나서 '얼굴을 아는 조상', 즉 면식조상面識祖上의 최대 범위가 고조까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조의 후손들은 유복친有服親이라 하여 초상이 나면 상복을 함께 입는 친족의 범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사대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최대 범위의 면식조상에 대한 효행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제사와 제례문화(박원재·유권종·배영동 외, 한국국학진흥원, 2002),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한국국학진흥원, 2012), 조선시대 사대봉사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고찰(정긍식, 외국법제정보11, 한국법제연구원, 1996),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배영동(裵永東)

사돈
査頓

정의 혼인한 두 남녀의 부모가 상호 간에 부르는 호칭.

개관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을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인식한다. 즉, 혼인을 통한 양가의 결합은 양가를 대표하는 사돈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을 일컬어 '사돈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혼인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돈관계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분을 중요시하는 전통사회에서는 특정 가족이나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할 때 조상의 이력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도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높은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자기 가문의 지체를 드높이려는 의욕이 강하다. 명망이 있는 가문과 통혼하여 자기 가문도 사회적으로 그와 대등한 가문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혼인연대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두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장치로서, 또는 정치적·경제적인 공동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협동관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가의 혼주가 되는 사돈들은 상호 긴밀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두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서로 극진히 예우하며 모든 행동이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한다. 그래서 사돈 관계는 매우 긴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관계가 된다. 정중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사돈 모시듯 한다."고 표현하거나, 거북한 자리를 "사돈네 안방 같다."고 하는 것은 긴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사돈 관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혼인하게 되면 그날부터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등 사돈으로서의 예를 깍듯하게 갖춘다. 특히 의리명분과 예학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널리 보급되고 신분을 과시하는 문중조직이 발달한 조선 후기에 사돈 관계는 더욱 조심스럽고 정중한 관계로 인식되었다.

사돈 관계가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한 관계이지만, 여자가 혼인 후 남자 집에서 시집살이하는 부처제夫處制 아래에서는 며느리의 친정부모인 '며느리네 사돈'을 대하는 태도와 딸의 시댁부모인 '딸네 사돈'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딸네 사돈은 꽃방석에 앉히고, 며느리네 사돈은 가시방석에 앉힌다."는 속담은 딸의 시집살이를 주재하는 '딸네 사돈'을 더욱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민간의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 사돈이라는 용어는 혼인한 두 남녀의 부모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서 남자 사돈 사이에서는 서로 '사돈' 또는 '사돈어른'으로 호칭하고, 여자 사돈 사이에서는 '사돈'·'사부인'·'사돈마님' 등으로 부른다. 남녀 사

돈 사이는 매우 조심스러운 관계여서 서로 대면할 기회가 극히 적지만, 간접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안사돈', '바깥사돈'으로 부르고, 특히 바깥사돈이 안사돈을 지칭할 때는 '사부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사돈의 집안을 일컬을 때는 '사돈댁'이라 하고, 사돈의 자녀를 지칭할 때는 '사돈댁 처녀', '사돈댁 막내도령'같이 '사돈댁'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하거나 '아들의 처제', '큰딸의 시동생'같이 혼인한 자녀를 관계 지어서 표현한다. 양가 부모 이외의 친족원들 사이, 예를 들면 혼인 당사자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사돈'을 칭하는 것은 표준어법에 맞지 않는다. 이들은 만날 기회가 거의 없거나 접촉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생활용어로서 이들 상호 간의 호칭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 양가의 교류가 증가하고 이들이 대면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서로 '사형査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돈의 부모나 부모의 사돈을 부를 때는 '사장어른'이라 한다.

사돈으로 맺어진 양가가 다시 통혼하여 사돈 관계가 중첩될 때, 이러한 관계를 '겹사돈'이라 한다. 형제가 자매를 각각의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겹사돈 혼인의 가장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유명한 유학자였던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1619~1672)과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1627~1704) 형제(양가로는 사촌이 되지만)가 인근 마을 무안 박씨 집안의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여 두 집안이 대대로 돈독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은 겹사돈 혼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겹사돈 혼인의 극적인 사례는 쌍둥이 형제가 쌍둥이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는 혼인에서 볼 수 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같은 사주팔자를 타고난 형제가 한날한시에 태어난 자매와 한날한시에 혼인함으로써 운명을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 이루어지는 혼인양식이지만, 그 사례는 매우 드물다. 겹사돈 혼인의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는 '누이바꿈혼'을 들 수 있다. 아들을 장가보내고 그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경우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을 교환함으로써 겹사돈 혼인이 되지만 신랑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누이를 교환하는 '누이바꿈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누이바꿈혼은 주로 빈곤한 계층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혼비婚費를 절약하기 위해서 행하는 혼인양식이지만 우정이 두터운 두 집안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겹사돈 혼인은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시 자녀를 혼인시켜 사돈 관계가 중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혼인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의식되기 때문에 가까운 혈족 사이에 혼인이 중첩되는 경우에도 겹사돈 혼인이란 용어를 확대해서 적용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겹사돈을 '부찌사돈'이라 하고, 겹사돈 혼인을 '부찌사돈혼인'이라 부른다.

겹사돈과 혼동하기 쉬운 '곁사돈'이란 용어가 있다. 곁사돈은 사돈의 형제나 형제의 사돈을 일컫는 말이다. 사돈 관계가 매우 조심스러운 관계이지만,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돈의 형제들과도 접할 기회는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사돈의 형제나 형제의 사돈을 지칭하는 용어가 '곁사돈'인 것이다. 곁사돈은 사돈 당사자들 사이보다도 더욱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대해야 할 사이이다.

특징 및 의의 사돈 관계는 한국의 친족제도와 친족 관계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을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혼인으로 연결된 두 가문은 각기 '혈연적 배타성'과 '신분적 우월감'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족결합'을 이루고 있어서 사돈 관계는 두 가문 간의 대립적·경쟁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고, 그 결과가 조심스럽고도 정중한 관계로 표출된다. 상대 가문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혼인을 통해서 사돈 가문과 함께 사회적인 신분을 평가받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가문은 여러 방면에서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며느리네 사돈'을 대하는 태도와 '딸네 사돈'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친족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며느리네 사돈'보다 '딸네 사돈'을 더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부계의 가부장가족 제도와 부처제夫處制에 기반을 둔 시집살이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사돈(이문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제주도의 친족조직(최재석, 일지사, 1976),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택, 창솔, 2004).

필자 이창기(李昌基)

사돈지
査頓紙

정의 안사돈끼리 써서 주고받은 순 한글 편지.

내용 새신랑이 신부 집에서 대례大禮를 올리고 본가本家로 갈 때 신부 어머니는 사위상으로 차린 음식을 사돈집으로 보낸다. 이때 신부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잘 가르쳐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을 적은 사돈지査頓紙를 함께 보낸다. 이후 신부가 앞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시댁으로 신행新行을 갈 때도 사위에 대한 고마움과 칭찬, 덕담 등을 적어 인편人便을 통해 안사돈에게 보낸다.

신부는 신행을 와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행한 뒤 시어머님이 차려주신 큰상을 받는다. 신랑 어머니는 이 음식 중 일부를 헐어서 상객上客 편에 사돈지와 함께 신부 집으로 보낸다. 신랑 어머니는 안사돈에게 귀한 딸을 자기 아들과 짝을 이루게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아울러 반듯하게 잘 자란 새 며느리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자식들로 인해 맺어진 좋은 인연을 감사히 생각하며 앞으로 잘 지내자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첫 사돈지의 왕복이 시작된 이후 사돈집에 혼인婚姻이나 득남得男, 수연壽宴 같은 경사가 있을 때 축하 인사를 적은 편지를 보낸다. 물론 상사喪事가 있을 때에는 위로 편지를 보낸다.

특징 및 의의 신부 어머니가 처음 안사돈에게 보내는 사돈지에는 고이 자란 딸이 혹여 시부모님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까, 시집살이는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슬픈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참고문헌 내간사돈지연구(권경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내간연구(성병희, 안동대학교논문집4, 안동대학교, 1971), 언간의 연구(김일근,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필자 이상현(李相賢)

사례집요
四禮輯要

정의 조선 후기 학자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1818~1886)이 역대 중국과 조선의 예서들을 참고하여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四禮로 나누어 정리한 책.

내용 『사례집요四禮輯要』는 이진상이 중국 고대에서 조선까지의 각종 예서들을 참고하여 관례·혼례·상례·제례에 관한 의식과 예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책의 편찬은 1875년에 이루어져 이진상이 직접 서문까지 적었으나, 그의 사후인 1906년에 아들 이승희李承熙와 제자 곽종석郭鍾錫(1846~1919)이 발간하였다. 체재는 전체 16권 9책으로 권1과 권2에서는 묘제, 종법, 분황 등의 통례通禮, 권3에는 관례, 권4에는 혼례, 권5에서 권14까지는 상례, 권15와 권16에는 제례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각종 도식과 책의 편찬에 참고한 중국과 조선의 참고서적을 밝혀 두었다. 도식 부분에는 〈고묘제지반지도古廟制地盤之圖〉·〈대종소종도大宗小宗圖〉·〈관례지도冠禮之圖〉 등 107개의 도식이 수록되어 있어 활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사례집요』는 조선유학의 말기에 편찬된 예서로서, 영남유학의 맥을 이으면서도 성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자들의 예설이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서문과 범례를 통해 이 책 또한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근간으로 하되, 『가례』에 자세하지 않거나 고례古禮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례를 우선한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자의 설에 대해서도 초년의 설과 만년의 설이 다를 경우에는 만년의 설을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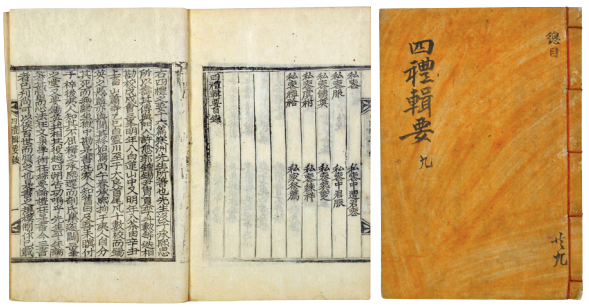

사례집요 | 국립민속박물관

이진상의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영남학파 내에서도 성주를 중심으로 하여 제자인 이승희, 곽종석, 허유許愈, 김진호金鎭祜(1847~1924), 장석영張錫英(1851~1929) 등에게 전승되었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사례편람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사례편람
四禮便覽

정의 조선시대 문신 도암陶菴 이재李縡(1680~1746)가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관혼상제의 사례四禮를 적용하는 데에 편의를 주기 위해 편찬한 책.

내용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재가 관례·혼례·상례·제례에 관한 이론의 정리와 실제 적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람식으로 만든 저술이다. 실제 간행은 이재의 사후에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증손 이광정李光正이 수원유수로 재직하던 1844년(헌종 10)에 이루어졌다. 체재는 전체 8권 4책으로서 권1에는 관례와 계례笄禮, 권2에는 혼례, 권3에서 권7에는 상례, 권8에는 제례가 수록되었다. 현실에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마다 필요한 서식書式이 제시되었고, 복식·제구·진찬도 등의 도식圖式도 갖춰졌다.

이재는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1651~1708)으로 이어진 기호학맥을 계승하였다. 『사례편람』을 저술하면서 그는 주자의 『가례』를 따르고자 했지만, 『가례』가 실제 적용하기에 내용상 소략한 면이 많고, 당시 조선에서도 학맥에 따라 이미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례』를 비롯한 여러 학자의 제설을 참고하되, 현실적으로 적용에 편의를 줄 수 있는 하나의 통합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상례 부분은 김장생의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위주로 정리·보완하였다.

『사례편람』이 간행된 이후 기호 지역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이 책을 많이 참고하였고, 이후 발간된 예서들은 『사례편람』의 편찬 방식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또 1900년에는 황필수黃泌秀·지송욱池松旭 등이 『사례편람』을 보정한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이 발간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사마씨서의
司馬氏書儀

정의 중국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1018~1086)이 『의례儀禮』와 『예기禮記』 등의 고례古禮를 토대로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관한 의례와 서식 등을 정리해 놓은 책.

내용 『사마씨서의司馬氏書儀』는 중국 북송대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사마광이 1081년(북송 원풍元豐 4)에 완성한 예서이다. 이 책을 완성할 당시 사마광은 관직에서 물러나 낙양에 머무르며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의 저작을 집필하고 있었다. 원래 서명은 『서의書儀』로 북송대北宋代 이후 남송南宋·원元·명明·청대淸代를 거쳐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사마씨서의』라는 서명의 책은 1936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청대의 학진토원본學津討源本을 저본으로 발간되었다. 청대본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체재는 총 10권으로, 권1에는 표주表奏·공문公文·사서私書·가서家書, 권2에는 관의冠儀, 권3과 권4에는 혼의婚儀, 권5에서 권10에는 상의喪儀가 수록되었다. 『사고전서제요四庫全書提要』를 보면 원래 '서의'라는 서명은

사마광의 『서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가私家의 의주儀注를 통칭하는 보통명사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각종 서의류書儀類의 서적 중에는 사마광이 저술한 『서의』만이 현존하고 있다.

『서의』는 고대로부터 격식을 갖춘 서찰의 규식[書]과 각종 의례의 의주[儀]를 겸하는 의미도 있다. 수록된 내용에서도 구체적인 문서 서식이 제시되어 있고, 관혼상제의 의주들이 수록되어 있다. 『서의』는 후대에 주자朱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자는 『서의』를 참고하여 자신이 살던 당대의 현실에 맞추어 『가례家禮』를 편찬하였다. 조선에서는 『사마공서의司馬公書義』, 『온공서의溫公書儀』 등으로 이 책을 지칭한 경우가 간혹 보이지만, 이 책을 직접 참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마광 『서의』는 주자의 『가례』와 큰 맥락에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사시제
四時祭

정의 사계절의 중월仲月에 4대 조고비祖考妣와 부위祔位를 모두 모시고 지내는 제사.

내용 사시제四時祭는 사계절에 지내는 제사로서 '시제時祭'라고도 한다. 한 철에 한 번씩 지내는 제사인데, 이것은 천도天道가 석 달마다 한 차례씩 변하여 한 철이 되는 법을 취한 것이라 한다. 시제가 사용하는 달은 중월仲月이다. 날짜는 특정하지 않고 열흘 전에 점을 쳐서 기일을 정하였다. 길일은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이며 날을 점치는 장소는 사당 앞이었다. 점치는 날은 맹월 하순초이며, 도구는 배교环珓이다. 이날에 중월의 삼순 중 각 하루를 택하여 점을 쳤다.

재계齋戒는 3일 동안 한다. 이틀은 산재散齋이며 마지막 하루는 치재致齋이다. 하루 전에는 신위 자리를 마련하고 그릇을 진설한다. 고조고비의 신위는 당의 서북쪽 벽 아래에 남향하도록 진설하는데, 고가 서쪽이고 비가 동쪽이다. 부위祔位는 모두 동쪽 벽에서 서향하는데 북쪽이 윗자리이다.

향안은 당 가운데에 진설하고 향로와 향합은 그 위에 놓는다. 띠풀 묶음과 모래두엄은 향안의 앞과 매 신위 앞의 땅 위에 놓는다. 술시렁은 동쪽 계단 위에 진설하고 별도로 탁자를 그 동쪽에 놓고서 주전자 하나, 뇌주잔 하나, 쟁반 하나, 수조반 하나, 숟가락 하나, 수건 하나, 다합茶合, 다선茶筅, 찻잔, 찻잔받침, 소금그릇, 간장병을 그 위에 놓는다. 화로, 탕병, 향시香匙, 화저火箸는 서쪽 계단 위에 놓는다. 별도로 탁자를 그 서쪽에 놓고서 축판을 그 위에 진설한다. 대야와 수건은 각각 두 개씩 동쪽 계단 아래의 동쪽과 서쪽에 진설한다. 그 서쪽의 것에는 대가臺架가 있다. 또한, 음식을 진설할 큰 상을 그 동쪽에 놓는다.

주인은 뭇 장부를 거느리고 심의를 입고서 희생을 살핀다. 주부는 뭇 부녀를 거느리고 배자를 입고서 제기와 솥을 깨끗이 씻고 제사음식을 갖춘다. 신위마다 과일 여섯 가지와 채소·포·해 각 세 가지, 육어肉魚·만두·떡 각 한 쟁반, 국과 밥 각 한 주발, 간 각 한 꿰미, 고기 각 두 꿰미를 정결하게 차린다.

주인 이하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심의를 입고 집사와 함께 제사 지낼 곳으로 가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진찬進饌한다. 과일 접시는 신위마다 탁자의 남쪽 끝에 진설하고, 채소와 포·육장은 서로 사이를 두고 차례로 놓는다. 술잔과 쟁반·간장그릇은 북쪽 끝에 진설하되 술잔은 서쪽에, 접시는 동쪽에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가운데 놓는다. 현주玄酒 및 술은 각 한 병씩 시렁 위에 진설한다. 현주는 그날 정화수로 채워서 술의 서쪽에 놓는다. 화로에 탄을 피우고 병에 물을 채운다. 주부는 배자를 입고 불을 때서 제사음식을 데운다. 충분히 익혀 합에 담아서 나가 동쪽 계단 아래의 큰 상 위에 놓는다.

동이 틀 무렵에 주인 이하는 각각 성복成服하고 관세盥洗하고서 사당 앞으로 나아간다. 뭇 장부는 차례로 서는데 날짜를 아뢰는 의식과 같게 한다. 주부는 서쪽 계단 아래에 북향하여 선다. 주인에게 어머니가 있으면 특별히 주부의 앞에 자리하고 여러 백숙모와 고모가 이어서 선다. 형수와 제수·자매는 주부의 왼쪽에 자리한다. 그 주모와 주부보다 어른인 사람은 모두 조금 나아

가 선다. 자손·부녀·내집사는 주부의 뒤에 여러 줄로 자리하는데 모두 북향하되 동쪽이 윗자리이다.

자리가 정해지면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홀을 꽂고서 분향하고 난 다음, 홀을 빼 들고 다음과 같이 아뢴다. "효손 아무개는 지금 중춘의 달에 황고조고모관부군과 황고조비모봉모씨, 황증조고모관부군과 황증조비모봉모씨, 황조고모관부군과 황조비모봉모씨, 황고모관부군과 황비모봉모씨에게 일이 있어 모친모관부군과 모친모봉모씨를 부식하고자 감히 신주를 청해 정침에 내놓고 공손히 술을 올립니다." 아뢰는 말에 중하·중추·중동은 각각 그 시절을 따른다. 아뢰기를 마치면 홀을 꽂고 독을 거두어 정위와 부위를 각각 한 상자에 넣고 각각 집사한 사람이 받들어 정침에 이르러서 서쪽 계단의 탁자 위에 놓는다. 주인과 주부는 제고비諸考妣의 신주를 받들어 자리에 내놓고 모두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①참신參神: 주인 이하는 차례로 제자리에 서서 재배한다. 강신한다. 주인이 올라가 홀을 꽂고서 분향한 다음, 왼손에 쟁반을 들고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서 띠풀 위에 술을 붓는다. 진찬한다. 주인은 홀을 빼 들고 모든 정위正位를 차례대로 진설하고 모든 자제와 부녀에게 각각 부위를 진설하도록 한다. 다 끝나면, 주인 이하는 모두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②초헌初獻: 주인은 올라가 고조고비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 술잔을 들어 먼저 좨주하고서 술잔을 올린다. 주인이 홀을 빼 들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서면, 집사가 화로에 간을 구워 접시에 담는다. 형제 중 맏이한 사람이 그것을 받들어 고조고비의 앞에 있는 시저의 남쪽에 올린다. 축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서서 무릎 꿇고 다음과 같이 읽는다. "유년세월삭일자維年歲月朔日子에 효현손 모관 아무개가 감히 황고조고모관부군과 황고조비모봉모씨에게 아룁니다. 기서氣序가 흐르고 바뀌어 때는 중춘입니다. 세시에 추감함에 길이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결생, 유모, 자성, 예제로 공경히 세사를 올리고 모친모관부군과 모친모봉모씨를 부식하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읽기를 마치고 일어나면 주인은 재배하고 물러나 모든 신위에 나아가서 술잔을 올리고, 축 읽기를 앞서와 같이한다. 신위마다 축 읽기가 끝나면 형제와 뭇 남자 중 아헌이나 종헌이 되지 못한 사람이 차례로 나뉘어 본위에 부식한 신위에 나아가 술을 따라 올리기를 의례대로 하는데 축은 읽지 않는다. 축문의 경우 증조 앞에서는 효증손이라 칭하고 고 앞에서는 효자라 칭한다. '불승영모不勝永慕'는 '호천망극昊天罔極'이라 고친다. 합사의 경우 백숙조부는 고조, 백숙부는 증조에 합사하며 형제는 조, 자손은 고에 합사한다. 만약 본위本位가 없으면 아무 친족을 부식祔食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③아헌亞獻: 주부가 한다. 모든 부녀는 구운 고기를 받들어 올린다. 나누어 헌작하는 일은 초헌의 의례와 같게 하는데, 다만 축문을 읽지 않는다. 종헌은 형제 중 장자 혹은 친척이나 빈객이 한다. 뭇 자제는 구운 고기를 받들어 올린다. 나누어 헌작하는 일은 아헌의 의례와 같이한다.

④유식侑食: 주인은 올라가 홀을 꽂고 주전자를 들어 모든 신위에 술을 가득 따르고 향안의 동남쪽에 선다. 주부가 올라가 숟가락을 밥 가운데에 꽂되, 손잡이를 서쪽으로 하고 젓가락을 바르게 하며 향안의 서남쪽에 선다. 모두 북향하여 재배하고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 이하가 모두 나오면 축이 문을 닫는데 문이 없는 곳이면 발을 드리우는 것도 괜찮다. 일식구반一食九飯하는 정도의 시간이 지나 축이 '어흠'하고 세 번 소리를 내고 문을 열면 주인 이하는 모두 들어간다. 주인과 주부가 차를 받들어 고비의 앞에 나누어 바친다. 부위는 여러 자제와 부녀가 바친다. 음복하고 나서 축이 '이성利成'을 아뢰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재배한다. 주인은 절하지 않고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 이하는 모두 재배하여 사신辭神한다. 주인과 주부는 모두 올라가 각각 신주를 받들어 독에 들여놓고 받들어 사당으로 돌아간다. 복주福酒와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러한 『가례』 상의 사시제는 조선에서는 보통 묘제로 행해졌다. 광복 이후 1973년에 반포한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이를 '연시제'라 칭하고 매년 1월 1일 아침에 지내되 그 대상과 장소, 참사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고 하였다. 기제의 참사자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자손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1999년의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제례가 기제 및 명절차례(차례)로 바뀌고 시제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현재 각 문중에서는 시제를 보통 1년에 한 차례씩 날짜를 정하여 거행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사시제는 사대조와 부위를 모두 모시고 지내는 제사이므로 합식合食의 의미가 크다. 제사가 길례이기는 하지만, 사시제의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가례』「제례」의 제일 앞에 놓였다. 이는 한 가문의 족속이 친함과 화합을 밝히는 경사인데, 이를 묘제로 대체한 것은 그 당시 사회의 배경을 통해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가정의례준칙, 시제 전승의 지속과 변화(방인아, 역사민속학37, 역사민속학회, 2011),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사신
辭神

정의 제사를 지낸 뒤 신령과 작별하는 의식.

내용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위 앞에 함께 두 번 절한다. 사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좌우 집사가 신위 앞으로 가서 먼저 시저를 내리고 메 뚜껑을 덮고 주인과 모든 제관은 재배하고 주부는 사배四拜한다. 축관은 향안 앞으로 가서 지방을 떼어서 축과 함께 놓고 꿇어앉아 축문과 지방을 불사르고 물러난다.

사신 재배(경북 봉화 충재 권벌 종가)

분축(경북 고령 점필재 김종직 종가)

사신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제사는 살아있는 손님을 초청하여 모시고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보내드리는 것과 같다. 사신은 작별의 의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로 참신하여 맞이했던 것처럼 재배로 보내는 의식도 마무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광주향교지(광주향교, 2003), 한국의 예와 윤리(이희재, 한국학술정보, 2012).

필자 이희재(李曦載)

사십구재
四十九齋

정의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다음 생을 받기까지 중유中有의 존재로 머무는 49일 동안에 치르는 천도재.

역사 불교의 내세관에 따르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죽어서 바로 다음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중유·중음中陰의 존재로 머문다고 한다. 이 기간을 49일로 보는 것은 2세기 중엽의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에서 중음칠칠일설中陰七七日說을 처음 거론하면서부터이다. 이후에 저술된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는 중유의 기간에 적절한 출생의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 차례 생生과 사死를 거듭하며 7일을 지나게 되는데, 그 최대기간이 7·7일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 중유 때 경전과 계율을 염송念誦하면 망자에게 그 복이 미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음을 기록한 경전들도 등장하였다.

인도불교에서 중유의 존재와 그 기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정립된 이후, 중국불교에 수용된 인도의 중유사상은 중국 고유의 조상숭배 사상과 결합하여 칠칠

재七七齋로 정착되었다. 4세기경 칠칠재의 공덕에 대해 언급한 경전들이 번역되면서 중음법회가 널리 행해졌다. 그리고 6세기 이후 칠월 보름의 행사로 정착된 우란분재盂蘭盆齋는 칠칠재七七齋를 비롯한 천도재薦度齋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7세기에 명부신앙冥府信仰의 핵심 경전인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이 편찬되면서, 사후 49일 이내에 가족이 재齋 공양 등으로 복을 지어 망자를 구원해줄 것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게 된다. 당대唐代 말기에는 시왕사상[十王思想]이 성행하였는데, 사람이 죽으면 명부를 다스리는 열 명의 왕[十王]으로부터 차례대로 판결을 받는다고 보아, 일곱 번의 칠칠재에 백일재百日齋·소상재小祥齋·대상재大祥齋까지 더하여 열 번의 재를 지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6~7세기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칠칠재는 우리나라에도 이른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기록은 드문 편이나 7~8세기 무렵부터 지장신앙이 성행하였고, 8세기경 월명대사月明大師가 일찍 죽은 누이를 위해 재를 올리며 지은 향가 〈제망매가祭亡妹歌〉가 전하듯이 망자를 위한 천도재가 신라시대에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기록으로 창원 봉림사지 진경대사탑비眞鏡大師塔碑에는 923년(경명왕 7) 왕이 진경대사의 삼칠재三七齋에 사신을 파견해 부의와 물품을 보낸 내용 등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승려와 왕실은 물론 지배층에서 칠칠재를 널리 행하였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칠칠재가 확대되어 유교의 상례 시기를 수용한 10회의 천도재를 지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칠칠재는 종교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되었다. 조선 초기에 왕실과 지배층에서 행한 칠칠재는 수륙재水陸齋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치러졌다. 1420년(세종 2)에 "나라에 통하는 상제喪制는 수륙재만을 행하고 나머지 예절은 모두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토록 하라."라는 왕명으로 칠칠재가 수륙재로 대체 된 것이다. 수륙재는 특정 망자를 위한 재가 아니라, 천도되지 못한 유주무주有主無主의 고혼을 위해 개설하는 합동천도재로 '가장 공덕이 높은 법회'로 인식되었다. 수륙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모든 생활의례를 유교적 질서로 재편하고자 했으나 깊이 뿌리내린 불교 천도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다. 유교국가임을 내세운 조선이었지만, 칠칠재와 수륙재를 모두 없애지 못하고 수륙재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종대에 폐지될 때까지 수륙재는 국가의 공식적인 상제로 거행되면서, 가뭄과 역질 등을 물리치기 위한 공동체의례로도 점차 그 역할을 확대하였다.

수륙재와 결합한 칠칠재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승된다. 그 가운데 일반 백성의 칠칠재는 유족이 참여하여 사찰에서 치르는 현재의 사십구재와 유사한 모습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지배층의 배척을 받은 불교가 기층문화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가면서 절실한 대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 결과, 사후세계를 다루는 명부신앙은 조선시대에 와서 더욱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용 사십구재를 치르는 방식은 상주권공재·영산재·시왕각배재 등으로 구분된다.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는 기본형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로 법당 안에서 염불 위주로 치른다. 규모가 큰 사십구재는 영산재靈山齋(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방식으로 지내는데, 의식승려들을 청하여 범패·나비춤·바라춤 등 영산작법과 함께 진행한다.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는 상주권공재에 시왕을 모시는 의식이 추가된 재로 근래에는 잘 지내지 않는다.

사십구재는 장례를 치른 날 사찰 법당에 망자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반혼재返魂齋를 치름으로써 입재入齋를 하게 된다. 이후 임종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초재를 지내고 매 7일 째 되는 날마다 2재·3재·4재·5재·6재·7재를 지내면서 도합 일곱 번에 걸쳐 재를 치른다. 초재에서 6재까지는 간략하게 지내고, 마지막 7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7재 자체를 사십구재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이날은 유족뿐 아니라 친지들을 모시고, 이전의 모든 의식을 종합하고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로 의례를 치른다. 49일째 되는 날 치르는 사십구재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령對靈: 법당에서 망혼을 맞이하는 단계이다. 영단靈壇에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먼 길을 온 망혼을 좌정시킨 다음, 간단한 요기로 대접하며 절을 올린다. 영산재를 치를 때는 사찰 입구에서부터 망혼을 모셔오는 시련侍輦을 치른 다음 대령을 행한다.

②관욕灌浴: 망혼이 생전에 몸[身]과 입[口], 마음[意]으로

지은 업을 씻는 단계이다. 본래는 법당 바깥의 별도 공간에서 관욕을 한 뒤 법당에 들어오게 되나, 요즈음에는 영단 옆에 병풍을 쳐서 관욕단을 만들고 망자를 상징하는 지의紙衣를 태워 업을 씻는다. 이때 '씻음'이라는 상징성을 드러내고자 비누·칫솔·치약·수건 같은 세면도구를 진열해 놓고, 갈아입을 새 한복 한 벌도 갖추어 놓는다. 업을 씻어 청정한 상태가 된 이후에 망자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③상단권공上壇勸供: 사십구재의 핵심이 되는 단계로, 상단인 불단佛壇에 재물齋物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망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평소 사시巳時(9시~11시)에 불보살에게 올리는 법식을 기본으로, 극락과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불과 지장보살 등에게 불공을 올리는 내용을 담는다. 상단의례가 끝나면 공양물을 중단인 신중단神衆壇으로 일부 옮겨놓고 신중에게도 간단히 불공을 올린다.

④관음시식觀音施食: 망혼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유족·친지들이 절을 올리는 단계이다. 상단의 공양물을 하단인 영단으로 옮겨놓고 유족이 의례주체가 되어 제사를 지낸다. 승려들은 뒤에 앉아 이를 지켜보며 망혼에게 법문을 들려주는 염불을 한다. 참석자들은 저승에서 쓸 노잣돈을 영단에 놓고 차례대로 절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⑤봉송奉送: 망혼을 다시 돌려보내는 단계이다. 의례에 참석한 모든 이가 불보살에게 절을 올리고 법당을 돈 다음, 바깥의 소대燒臺에서 망자의 옷과 사십구재에 사용된 물품을 태워 의례를 마친다. 이후 의례에 사용된 재물을 같이 먹고, 남은 음식은 참석자에게 골고루 주어 의례의 공덕을 나눈다.

특징 및 의의 사십구재는 세상을 떠난 망자가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에서 머무는 동안 치르는 의례이다. 따라서 유족도 일상과 분리된 상중喪中에 머물다가 49일째 되는 날 7재를 치름으로써 망혼은 내세로, 유족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불교식 탈상의례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전통 상례가 위축되고 죽음과 관련된 의례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십구재는 망자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한 종교의례인 동시에, 죽음에서 비롯된 남은 자들의 문제를 충족시켜주는 탈종교적 전통의례로 수용되고

사십구재

시련

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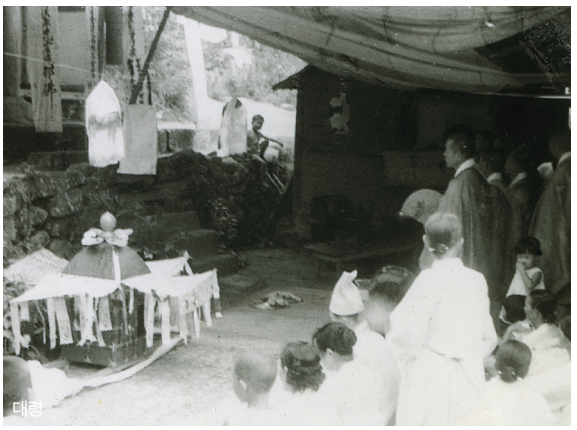
대령

사십구재 | 충남 태안 | 1961 | 국립민속박물관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사십구재는 본래의 종교적 기능인 '천도' 이외에도, 유교의 상례에서 담당해왔던 '탈상'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무속의 넋굿에서 주로 담당해왔던 '해원解寃'이라는 심리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따라서 상을 당한 유족들은 사십구재를 종교의례 이전에 탈상의례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십구재가 억울하게 죽은 망혼을 위로하고 산 자들의 슬픔을 해소하는 데 더욱 적합한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阿毘達磨俱舍論, 阿毘達磨大毘婆沙論, 瑜伽師地論, 地藏菩薩本願經, 불교의식각론2~6(심상현, 한국불교출판부, 2000~2001), 석문의범(안진호, 만상회, 1935),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김정희, 일지사, 1996),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구미래, 민속원, 2009).

필자 구미래(具美來)

사의
士儀

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허전許傳(1797~1886)이 『의례儀禮』와 『가례家禮』를 기반으로 고금의 서적을 참고하여 선비가 알아야 할 예제를 집대성한 책.

내용 『사의士儀』는 허전이 『의례』와 『가례』를 바탕으로 고금의 경사자집을 두루 참고하여 선비들이 알아야 할 예법을 모아 엮은 예서이다. 1870년(고종 7) 함안군 입곡立谷에 소재한 여음정사廬陰精舍에서 전체 25권 10책 규모로 간행되었다. 권1에서 권4까지는 친친편親親篇, 권5는 성인편成人篇, 권6과 권7은 정시편正始篇, 권8에서 권17까지는 이척편易戚篇, 권18에서 권20까지는 여재편如在篇, 권21은 방상편方喪篇이 수록되었고, 연이어 수록된 별집別集의 권1과 권2는 법복편法服篇, 권3과 권4는 논례편論禮篇이 수록되었다. 마지막에 별권別卷으로 편성된 부분에는 고증을 위해 참고한 중국과 조선에서 발간된 고금의 서적, 동유성씨東儒姓氏, 도식圖式 등이 제시되었다.

이 책은 이미 조선 예학의 근간이 된 『의례』와 『가례』를 바탕으로 방대한 중국 고금의 제반 서적과 조선의 서적을 참고하여 내용의 구체성을 갖추었다. 책의 별권에 적시한 바와 같이 주요 참고서적으로는 『논어論語』, 『맹자孟子』를 비롯한 『십삼경十三經』, 『관자管子』, 『순자荀子』, 『장자莊子』, 『사기史記』, 『한서漢書』, 『북사北史』, 『남사南史』, 『창려집昌黎集』, 『동파집東坡集』 등 중국 서적 200여종,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문헌비고文獻備考』, 『점필재집佔畢齋集』, 『퇴계집退溪集』, 『율곡집栗谷集』, 『반계수록磻溪隨錄』, 『성호사설星湖僿說』 등 조선 서적도 100여 종이 제시되어 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조선에서도 예제禮制에 대한 여러 설이 혼재한 가운데, 중국과 조선의 각종 경전과 역사서, 학자들의 예설을 당시 실정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할 필요성에 의해 편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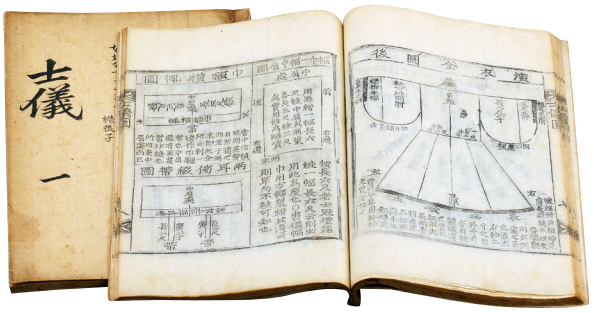

사의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필자 전경목(全炅穆)

사자상
使者床

정의 초상난 집에서 저승사자를 대접하기 위하여 제물을 차려 놓는 상.

내용 예서禮書에는 사자상의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양반으로 행세하던 집안에서는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인庶人의 상례喪禮에서는 널리 행하여 왔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갈 저승사자가 세 명이라는 생각에서 밥 세 그릇과 동전 세 닢, 짚신 세 켤레 등을 멍석이나 채반 또는 상위에 올려놓는다. 이때 상주들은 재배再拜하고 곡哭을 한다. 사자상은 초혼招魂한 뒤에 차리기도 하고, 먼저 차려놓고 그 앞에서 초혼을 하기도 한다. 1980년대까지는

각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대개 사자상을 차렸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자상을 차리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지역사례 서울에서는 밥 세 그릇, 짚신 세 켤레, 동전 세 닢을 채반에 담아서 대문 밖 바로 옆에 놓는다. 사자상 앞에서 초혼을 하기도 하며, 키에 담은 망인亡人의 신을 엎어놓은 절구통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경기 김포에서는 고복皐復을 한 후에 밥 세 그릇, 짚신 세 켤레, 약간의 동전, 술 석 잔을 채반에 받쳐 뜰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 놓는다. 경기 가평에서는 고복하기 전에 사자상을 대문 밖에 내놓았다가 고복 후에 치운다. 경기 구리에서는 사잣밥을 상여에 싣고 가다가 개천에 버린다. 강원 강릉에서는 상 또는 키에 밥 세 접시, 소금 세 종지, 짚신 세 켤레를 놓는다. 상에 차릴 경우에는 마당이나 담 주변 손 없는 곳에 놓고, 키에 차릴 때에는 지붕 위에 올리는데, 초혼할 때 사용한 망인의 윗도리와 함께 놓는다. 사자상은 입관 후 치우는데, 밥은 버리고 신발을 태운다. 강원 속초에서는 소반에 밥을 담은 접시 세 개, 나물 세 접시, 동전, 짚신 세 켤레를 놓고, 그 옆에 물을 담은 물동이 하나를 놓는다. 전북에서는 사자상을 대청마루의 혼백이 있는 곳에 차렸다가 상여 나가기 전날 저녁에 치워 버리는데, 밥은 그냥 대문 밖에 부어 버리고 짚신은 불태워 버린다. 광주지역에서는 사자상에 놓을 짚신의 뒤축을 잘라 놓는데, 망자를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을 늦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남 목포에서는 시신을 보지 않은 사람이 대문 밖이나 집에서 가까운 삼거리에 사자상을 차린다. 부산

사자장 | 서울 노원구 | 1989 | 국립민속박물관

시에서는 식구 중 한 명이 대문을 향해 마당에 뱃머리밥을 차리는데, 대개 밥·나물·과일·간장·소금·짚신·동전을 상에 올려놓는다. 밥은 세 그릇을 놓기도 하고, 양푼 같은 큰 그릇에 담고 숟가락을 여러 개 꽂기도 한다. 사잣밥을 울산시나 경남 해안지방에서는 '뱃머리밥', '기머리밥'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인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삶, 영혼이 육신을 벗어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아 저승으로 간다. 살아 있는 사람은 떠나는 영혼을 붙잡기 위해 초혼招魂을 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저승사자에게 저승까지 잘 모시고 가 달라고 부탁한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생긴 상례 절차가 사자상이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1(경기도박물관, 1998), 서울민속대관4(서울특별시, 1993),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종합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 한국인의 삶과 문화(최운식, 보고사, 2006),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최운식(崔雲植)

사주단자
四柱單子

정의 혼인할 남자의 사주인 생년[年]·생월[月]·생일[日]·생시[時]를 적어 청혼할 여자의 집에 보내는 단자.

내용 혼인할 남자의 집에서는 먼저 약혼 또는 정혼의 의미에서 신랑의 단자를 청혼할 여자의 집으로 보내는데, 이때 단자를 겹으로 만든 홍보紅褓에 싸서 근봉謹封한다. 『광례람廣禮覽』에 나타난 사주단자 제작법은 다음과 같다. '대간지大簡紙' 한 폭을 써서 겉봉을 만들고 여기에 '사주四柱'라고 두 글자를 쓰며, 간면簡面을 오행五行이 되도록 5칸으로 접어 가장 가운데 있는 칸에 '○년 ○월 ○일 ○시'라고 쓴다. 이 사주를 쓴 단자를 봉투에 넣은 다음에 위 뚜껑을 접고 풀로 붙여서 봉하지는 않는다. 싸릿가지를 단자봉투 길이보다 아래위로 1㎝ 정도 길게 잘라서 다듬은 다음, 위의 1㎝ 정도 남기고 가운데를 가

서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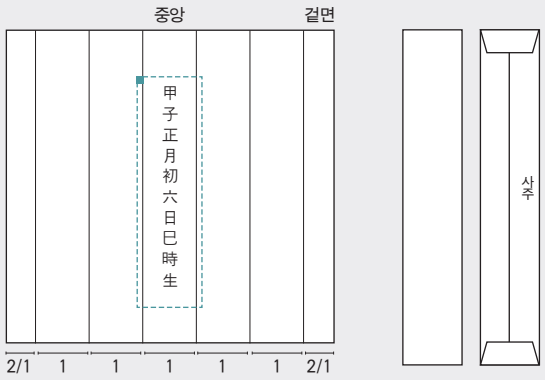

서식 2.

갑자정월초육일사시생(甲子正月初六日巳時生)

서식 3. 뒷면에 사성이라고 쓸 경우

사성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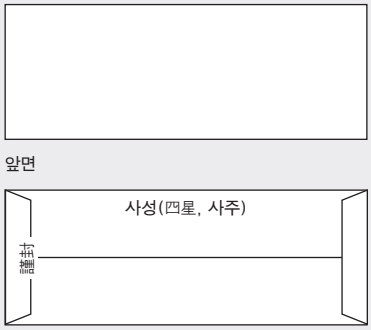

서식 4. 앞면에 사성이라고 쓸 경우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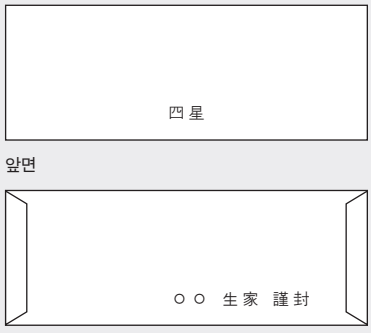

른다. 이 갈라놓은 싸릿가지 사이에 봉투를 끼우고 붉은 명주 타래 실로 싸릿가지 끝에 겉이 매듭지지 않도록 묶은 다음 그 나머지를 위로 끌어올려 상단에 매듭지지 않도록 묶는다. 싸릿가지 사이에 봉투를 끼우는 이유는 사주 봉투가 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근래에는 사주함에 넣기 때문에 싸리가지에 끼우지 않는다. 이 사주단자는 네 귀퉁이에 녹색 금전지가 달리고 안팎이 모두 붉은 비단 겹보袱褓, 또는 다홍색의 겉과 남색의 안으로 된 비단 겹보로 만든 사주보四柱褓에 싼 후에 '근봉謹封'이라고 쓴 간지로 띠를 두른다. 의례서에는 대간지를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는데, 첫 번째 칸은 두 번째 칸의 절반[半]이 되도록 접는다고 되어 있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서는 '사주'를 '주단'이라고 하고, 홍겹보가 제시되었다. 2000년에 실시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의 사례조사 결과, 사주보로는 붉은색 겹보, 분홍색 겹보, 청홍 겹보, 홍색과 녹색의 겹보가 사용되며, 모두 겹보자기로 끈은 없었고, 네 귀퉁이에 녹색 금전지를 달고 있다. 사주를 쌀 때에는 반드시 보자기의 붉은색이 겉이 되도록 싸고, 그 위에 근봉을 둘렀다. '삼가 봉한다'의 의미를 가진 '근봉'이란, 두꺼운 간지를 잘라서 양끝을 붙이고 그곳에 '근봉'이라고 길이 방향으로 쓴 둥근 고리(띠[帶])를 말한다. 역시 끈으로 묶지는 않는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지금 풍속은 생년월일시까지 쓰는데 이는 의미가 없으니, 이제 생년월일만을 기록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지역사례 전라남도에서는 사주를 보낼 때 간략한 예물과 치마저고리 한 감을 함께 보내는 것이 상례이다. 사주는 적색과 남색으로 된 겹보에 싸고, 예물은 별도의 상자나 보자기에 싼 다음 사주와 함께 남색 보자기에 싸서 중매인이나 매파를 시켜 청혼할 여자 집에 전달한다. 경상남도에서는 양가에서 합의하여 청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의 사주와 저고리 한 감, 그리고 납채서를 중매인을 통해 청혼할 여자의 집에 전달한다. 황해도에서는 청혼을 하게 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사성四星을 봉투에 넣어 간단한 예물과 함께 자제를 시켜서 보낸다. 사성은 길이 1척尺 정도의 간지를 다섯 칸으로 접어서 혼인할 남자의 출생한 생년월일시를 육십갑자六十甲子에 따른 간지干支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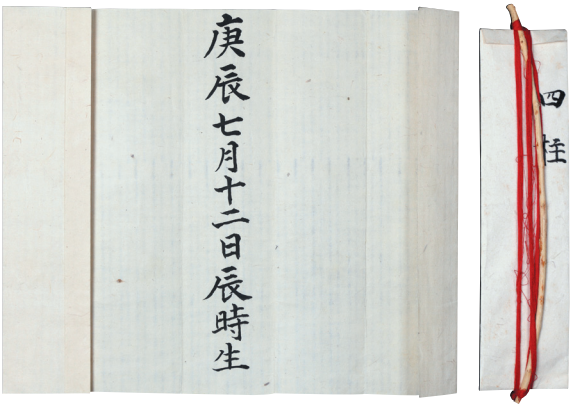

사주단자 | 1999 | 이길표

함과 사주단자 | 1999 | 이길표

특징 및 의의 첫째, 반드시 흰색 간지로 봉투와 사주 쓸 종이를 준비한다. 둘째, 다섯 칸으로 접은 중앙에 먹으로 생년월일시를 쓴다. 셋째, 사주보는 겹모로서 붉은색이 겉으로 오도록 싼다. 넷째, 끈은 매지 않는다. 다섯째, 근봉한다.

참고문헌 嘉禮酌儀, 廣禮覽, 增補四禮便覽, 우리나라 혼례에 나타난 색 배합의 연구(이길표,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13, 성신여자대학교, 1980), 한국의 혼속연구(김종흥, 대성문화사,1981).

필자 이길표(李吉杓)

사처방
私處房

정의 대례를 올리기 위해서 온 신랑 일행이 머물 수 있게 신부집에서 마련한 방.

내용 전통혼례는 주로 신랑이 신부집으로 와서 행하였다. 이때 신부집에서는 상객과 손님을 포함한 신랑의 행렬이 도착하여 머물 수 있도록 별도의 방을 마련하는데, 그 방을 '사처방私處房'이라고 한다. 사처방의 위치는 보통 마을로 들어와서 신부집을 지나지 않는 곳에 있다. 신랑 일행이 신부집이 있는 마을에 도착하면, 인접人接 또는 대반對盤이라 불리는 신부측이 그들을 맞이하여 미리 마련해 둔 사처방으로 안내한다. 이때 신랑 일행은 신부집에서 내온 입맷상을 받아 요기하고 행로의 피곤도 푼다. 그리고 예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다가 대례 시간이 되면 다시 가마를 타고 신부집으로 향한다. 신부집이 넓을 때에는 집 안의 대례청과 좀 떨어진 곳에 사처방을 마련하기도 한다. 사처방을 마련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대반이 대문 밖에서 신랑일행을 읍揖하여 맞이하고 바로 전안청奠雁廳으로 인도한다.

지역사례 경기도·강원도 지역에서는 사처방·사초방·새처방,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는 반녀집, 전라북도 장수 지역 및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서는 정방,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주점·경방청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칭이 있다. 사초방·새처방은 사처방의 와전이며, 주점은 동리 주점에다 사처방을 마련한 데서 비롯한 이름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서산과 전라남도 여수 지역처럼 사처방에서 큰상을 받기도 하지만, 경기도 화성에서는 대례 전까지는 신부집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요기한다. 또 경기도 고양 지역에서는 신부집 동리 사람들이 대례를 치르기 위해 사처방을 나서는 신랑에게 재, 콩, 팥, 심지어는 쇠똥을 던지기도 해서, 신랑집에서는 그것을 막을 담요를 미리 준비해 갔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전통혼례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와서 행하였으므로, 신부집에서는 신랑 일행을 잘 맞이하고 대접하는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사처방은 이러한 배려의 일환으로 마련한 예속이다. 친영親迎이 정착한 후에도 혼례는 신부집에서 올렸으므로 사처방을 마련하는 풍속은 근대 이후에도 지속하였다가, 예배당이나 예식장 같은 곳으로 혼례 장소가 바뀌면서 사라졌다.

참고문헌 관혼상제에 관한 연구(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필자 천혜숙(千惠淑)

삭망전
朔望奠

정의 상중喪中에 죽은 이에게 다달이 초하루와 보름에 술과 과일, 포 등을 올리는 의식.

내용 삭망전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사당에 참례를 하듯이,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초하루와 보름에 술과 과일, 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초하루에 올리는 것을 삭전朔奠, 보름에 올리는 것을 망전望奠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삭망전朔望奠이라 한다. 『가례家禮』에 따르면, 성복 후 초하루가 되면, 조전朝奠에 육肉·어魚·면식麵食·미식米食·갱羹·반飯을 각 1기씩 진설하는데,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여기에 소채蔬菜, 청장淸醬, 숙수熟水 등을 더 진설한다.

삭전은 은전殷奠이라고 하여 망전과 구별하여 넉넉하게 차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삭전과 망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은전으로 차렸다. 이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삭망전이 은전이라 하여 삼헌三獻을 하였다. 하지만 삭망전은 전의 하나로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례』의 조전朝奠과 같이 집사가 소蔬, 과果, 포脯, 해醢를 진설하고 축이 분향하고 술을 따르면, 주인 이하 재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였다.

삭망전이 상중에 행하는 간단한 의식이기는 하지만, 사당에 모신 4대 조상의 경우도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참례를 하듯이, 초우제 이후에는 조석전을 파하지만, 삭망전은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행하였다.

특징 및 의의 삭망전은 산 사람을 섬기듯이 생시와 같이 메를 좌측, 갱을 우측에 진설하며, 생전에 항상 모시는 뜻을 보이고자 하여 참신과 강신의 절차가 없다. 그리고 신에게 의뢰하고자 하여 삭망전 후에는 술과 과일을 남겨둔다. 또한, 삭망전에는 메와 갱을 진설하기 때문에 아침상식을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常變通攷.

필자 최순권(崔順權)

산골
散骨

정의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나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것.

역사 화장의 흔적이 신석기시대부터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산골 또한 이른 시기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골에 대한 기록은 불교사상과 함께 화장이 본격적으로 정착되던 7세기에 등장한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文武王(?~681)은 죽어서 동해룡東海龍이 되어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겠다는 유지를 남김에 따라 문무왕의 유골은 화장 후 동해 대왕암에 뿌려졌다. 이후 8명의 신라왕이 화장되었고, 그 가운데 효성왕·선덕왕·진성여왕·경명왕은 산골을 행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한다. 당시는 화장을 하면 유골을 용기에 담아 매장하는 화장묘火葬墓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와 함께 산골 또한 성행했던 것이다. 왕실뿐 아니라 8세기 전반에는 관리였던 김지성金志誠이 부모의 유해를 동해에 산골한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불교사상에 영향을 받은 왕실과 지배층은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림으로써 보다 나은 내세를 기대하는 관념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9세기에는 선불교禪佛敎가 일어나 각 선문禪門의 고승이 입적하면 사리나 유골을 승탑僧塔에 봉안하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그리고 풍수지리를 중시한 고려시대에는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이중장二重葬이 만연하여 산골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후 화장을 배척한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에는 화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데, 유골을 봉안하는 시설이 없던 때라 화장을 하는 이들 대부분은 산골을 하였다. 1970년대 전후로 현대식 봉안시설이 들어섰지만, 1990년대까지는 화장률이 높지 않았고 봉안시설에 대한 관심도 없어 화장은 대개 산골로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화장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고인의 유해를 모실 추모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봉안당奉安堂이 활성화되었다. 2000년대에는 대형 석물로 조형된 봉안시설이 환경훼손과 허례허식의 문제를 불러일

으켜, 친환경적 대안으로 산골을 비롯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용 산골은 골분骨粉을 그대로 뿌리는 방법과 환丸을 만들어 뿌리는 방법이 있다. 환은 반죽한 곡식가루를 골분과 섞어 작은 콩처럼 만든다. 연못이나 강의 물고기, 산속의 새나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는 생전에 뭇 생명을 섭취하며 삶을 유지했던 고인의 몸을 자연의 생명에게 보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불교에서는 산골을 할 때 자연의 근원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에서 염불기도를 하며 골분을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위로 뿌리기도 한다. 현재 관련 법규상으로 봉안당이나 승화원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두도록 하였을 뿐, 지정된 장소에서만 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산골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산골은 고인의 유해를 모시지 않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불교에서 행하는 화장의 원형적 모습에 해당한다. 불교에서는 화장을 통해 인간의 몸을 본래의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이상적 죽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장례문화가 묘지에서 화장으로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근래에는 봉안당에서 산골·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불교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지만, 통일신라시대의 모습과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례문화의 변화양상에 주목하게 된다.

참고문헌 茶毘文, 三國史記, 三國遺事, 석문의범(안진호, 만상회, 1935), 장례의 역사(박태호, 서해문집, 2006), 한국불교의 일생의례(구미래, 민족사, 2012).

필자 구미래(具美來)

산신제
山神祭

정의 산에서 장례나 제사를 행하는 일을 산신에게 고하여 보우保佑를 기원하는 제사.

내용 산신제山神祭는 묘소에서 행하는 일을 산신에게 고하고 보우를 기원하는 제사로, 주자朱子가 "어버이를 편안하게 하려고 신을 섬긴다."라고 한 뜻을 담고 있다. 묘소의 왼편에 자리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다. 제찬祭饌은 묘사墓祀와 같게 한다. 이에 대해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은 제찬을 줄이지 않는다는 주자의 말을 따르려고 해도, 형편이 미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그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쌀밥, 국수, 어류魚類, 육류肉類 각 한 그릇으로 지내는 것을 너무 소략하다고 평가했다.

『가례家禮』에 따르면, 산신제는 상장례喪葬禮와 제례祭禮 때 행했다. 상장례에서는 치장治葬에서 영역塋域을 열 때와 폄장窆葬 직후에 지내고, 제례에서는 묘제를 지내기 전후에 지내도록 규정하였다. 영역을 열기 직전에 행하는 산신제는 토지신에게 새 영역을 연다는 사실을 고하고 그 보우를 기원하는 제사이다. 고하는 사람으로는 먼 친척이나 손님 한 사람을 택해서 맡겼다. 길복吉服을 입어야 하므로, 먼 친척 중에서 복服이 없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다. 진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축祝이 집사를 이끌고 광혈壙穴의 중간에 세운 푯말의 왼쪽에 남향하여 신위를 설치한다. 잔, 주전자, 술, 과일, 포, 해를 그 앞에 차린다. 또 세숫대야와 수건을 두 개씩 동남쪽에 놓는다. 받침대가 있는 오른쪽의 세숫대야는 아뢰는 사람이 손을 씻고, 받침대가 없는 왼쪽의 세숫대야는 집사가 손을 씻는다.

진설을 마치면, 고유제告由祭를 시작한다. 먼저 아뢰는 사람이 길복을 입고 들어가서 신위 앞에 서서 북향한다. 집사는 그 뒤에 서되 동쪽이 윗자리이다. 모두 재배한다. 아뢰는 사람과 집사는 모두 손을 씻는다. 집사 한 사람은 주전자를 들고 서향하여 무릎 꿇고, 한 사람은 술잔을 들고 동향하여 무릎 꿇는다. 아뢰는 사람은 술을 따르고 나서 주전자를 돌려주고 잔을 들어 신위 앞에 강신降神한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선다. 축이 축판祝板을 들고 아뢰는 사람의 왼쪽에 서서 동향하여 무릎 꿇고 다음의 내용을 읽는다. "모년 아무 해 아무 달 초하루에 아들 모관 아무개가 감히 후토신后土神에게 아룁니다. 지금 모관 아무개를 위해 무덤을 영건하오니, 신께서는 보우하셔서 훗날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삼가 맑은 술과 포, 해를 공경히 신

이장 전 산신제 지내기 | 국립민속박물관

산신제(묘제) | 경기 파주 파평 윤씨 묘역 | 국립민속박물관

께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축은 이것을 마치면 자리로 돌아간다. 아뢰는 사람이 재배하면, 축과 집사도 모두 재배한다. 차려진 음식을 철상한다. 주인은 돌아가서 영좌靈座의 앞에서 곡하고 재배한다.

이후에는 발인發靷하여 하관下棺한 다음에 흙을 채워 점차 다지고 나서 역시 묘소의 왼쪽에서 다시 후토신에게 제사 지낸다. 이때의 의절은 앞과 같다. 축판도 같은데, 다만 "지금 모관봉시某官封諡를 위하여 이 유택에 하관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신께서는" 이후는 같다.

『사례편람四禮便覽』 등 여러 가례서에 수록된 '개장改葬' 조에서도 역시 산신제를 기술하였다. 개장 때에는 구묘舊墓와 새 영역塋域을 여는데, 그 직전에 후토제를 지낸다. 이는 치장의 본조와 같다. 그리고 구묘에서 관을 옮겨 새 무덤에 폄장하고 난 후에도 후토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제례에서 행하는 산신제는 묘제에 보인다. 『가례』나 『사례편람』 등에서 산신제는 묘제 전후에 지내도록 하였다. 묘제 전에는 성소省掃한 다음에 한다. 주인은 심의를 입고 집사를 데리고 묘소에 가서 재배한 뒤 묘역 안팎을 두루 세 번 돌며 살피는데, 잡풀과 가시는 칼이나 낫으로 베고 쑥대 등은 호미로 파서 없앤다. 이러한 소제가 끝나면 자리로 돌아와 재배하고, 무덤 왼편에 터를 닦고서 토지신에게 제사한다.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논리에 의하면, 산신제를 묘소의 왼쪽에서 지내는 이유는 묘제를 위해 설행設行되는 이것에 친한 이를 친하게 대하는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휴何休는 "질質을 숭상하는 집안에서는 종묘를 오른쪽에 두었으니, 친한 이를 친하게 대하는 도리를 숭상한 것이고, 문文을 숭상하는 집안에서는 사직을 오른쪽에 두었으니, 존귀한 이를 존귀하게 대하는 도리를 숭상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토신土神 제사를 우사右社라고 한 것을 보면 묘소의 오른쪽에서 지내야 할 듯하지만, 이것이 묘제를 위해 설행되는 것인 만큼, 친한 이를 친하게 대하는 도리에 중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묘소의 왼쪽에서 제사를 지낸다.

절차는 강신—참신參神—삼헌三獻—사신辭神—철상撤床의 순서이다. 자리를 마련해, 육肉·어魚·병餠·면麵 등의 음식을 각각 큰 그릇에 담아 진설한다. 묘소에서 지내는 시제時祭 때의 후토제와 같이 하며, 다만 촛불을 켜지 않는다. 축문식은 "연호 몇 년 세차간지歲次干支 몇 월 간지삭月干支朔 며칠 간지 모관 성명이 감히 토지신께 밝혀 아룁니다. 아무개는 공손히 모친모관부군의 묘소에 세사歲事를 드리고자 하는데, 때로 보우하고 도우심은 실로 신의 보살핌 덕분입니다. 감히 술과 음식을 경건히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

『동춘당집同春堂集』에서는 묘제의 산신제 축문에는 종족의 묘역에 장사 지낸 여러 위位를 모두 쓰지 않고, 단지 맨 윗대 한 위만을 쓴다고 하였다. 동춘당은 『의례

문해疑禮問解』에서 "묘제를 지내는 모든 위位에 다 산신제를 지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사세로 보아 이와 같이 할 수 없으니, 맨 윗대 한 위의 제사를 마친 뒤에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사세로 보아 부득이하다고 하였다. 『택당집澤堂集』에서는 산신제는 하나의 단壇에 합설合設하고, 찬품饌品은 정위正位와 동일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 제찬은 병餠과 면麪·포脯·혜醯가 각 한 그릇씩, 소채와 과일이 각 두 그릇씩, 탕湯 두 그릇, 적炙 다섯 꼬치이다.

조선의 유자儒者들은 『가례』와는 달리, 속절의 상묘上墓를 인정하였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은 "오늘날 풍속이 정조正朝·한식·단오·추석에 다 같이 묘소에 나아가 절하고 전소奠掃를 하니, 이제 풍속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으며, 율곡栗谷 이이李珥도 "묘제는 사계절에 다 지낼 경우 가묘家廟와 차등이 없으면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 마땅히 한식과 추석 두 절후에는 제찬祭饌을 잘 마련하여 가지고 가서 축문을 읽고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등의 의식을 일체 『가례』 묘제의 의식대로 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시四時의 묘제가 풍속이 되어 우리나라의 선현들이 많이 인정하였다.

속절의 산신제를 『성호문집』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산신제는 선조에 대한 제사와는 다르다. 자리를 만들 때에도 따로 부들과 짚을 사용한다. 음식은 생선, 고기, 미식, 면식의 네 쟁반을 자리 남쪽 끝에 진설하고, 잔반盞盤과 시저匙箸는 북쪽에 진설한다. 주자가 "묘소 앞에서 지내는 제사와 똑같이 지내 차등을 두지 마라."라고 하였으니, 『가례』의 법식을 따르는 것이다. 만약 면식이 만두饅頭 종류가 아니라면 숟가락을 쓰지 않는다. 강신에는 뇌주酹酒는 있어도 분향焚香하는 절차가 없다. 후토는 향이 위로 퍼지는 일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참신하고 나서 삼헌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술을 올릴 때에는 삘기 묶음 위에 모두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고인古人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축사祝辭는 『가례』대로 한다. 구준邱濬은 "후토라는 호칭을 사서인士庶人의 집안에서 쓰는 것은 참람한 듯하니, 토지지신土地之神으로 고친다."라고 하였으므로, 고치는 것도 무방하다.

특징 및 의의 상·제례 때의 산신제가 『가례』에 준거하여 행해졌으나, 당시의 관습인 속절의 묘제로 인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것은 혼령이 깃들었다고 보는 가상의 신주보다 육신이 실제 묻힌 묘소에 당시 사람들이 더욱 친근감을 느낀 결과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육신이 실제 묻힌 묘소의 평안을 기원하고자 산신제도 묘제처럼 거행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同春堂集, 四禮便覽, 星湖全集, 澤堂集,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산실
産室

정의 해산을 위한 공간으로 산방産房, 해산방解産房, 산실청産室廳이라고도 함.

역사 산실産室에 관련된 기록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보인다. 왕실에서는 산실을 산실청, 중전산실청中殿産室廳이라 호칭하였다. 왕비·세자빈 등이 출산을 앞두면 산실을 설치하고, 출산 관련 인력을 꾸린다. 인력은 정일품正一品 관직인 도제조都提調를 비롯한 내관內官, 권초관捲草官, 의관醫官, 의녀醫女, 하인 등이며, 이들은 왕비나 세자빈이 순산하고 산실이 파하면, 차등을 두어 사마賜馬·가자加資·사물賜物 등으로 포상을 받았다. 1636년(인조 14) 원손元孫이 탄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보인다. "산실청도제조産室廳都提調 영상領相 윤방尹昉에게는 안구마를, 전 제조 최명길崔鳴吉에게는 반숙마 1필을, 권초관捲草官 서경주徐景霌에게는 숙마 1필을, 내관 김성원金聲遠 등 2인에게는 아마 각 1필을 내려주고, 제조 김상헌金尙憲, 부제조 심액沈詻, 의관 최득룡崔得龍, 차지 내관 김인金寅, 승언색 김언겸金彦謙에게는 각각 한 자급씩을 가자하고, 주시관奏時官 송성립宋誠立 등 2인에게는 모두 본 아문의 첨정僉正에 제수하고, 의녀 및 하인 등에게는 미포米布를 주되 해조로 하여금 넉넉하게 마련하여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한편, 권초관捲草官이라는 관직이 보이는데, 이는 비빈妃嬪의 산실産室에서 권초례捲草禮를 행하던 임시 벼슬로 아들이 많고 다복한 조신朝臣 중에서 뽑는다.

산실청은 날을 택일하여 동궁東宮에 설치하고, 출산 이후 7일이 지나면 산실청을 파罷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산모가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산실에 남아 있기도 하였다. 왕비와 세자빈의 출산은 국가적 경사이기에 산실청에 머무르는 기간에는 형벌이나 무과 시험 등을 금지하였다. 1603년(선조 36)에는 중전의 산실청이 7일을 지나지 않아서, 의금부에서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출납하지 않았으며, 1614년(광해 6)에는 세자빈의 산실이 설치되어 대궐 안과 남쪽 담장 밖에서 곤장을 치는 일을 일절 하지 못하게 하였다. 1818년(순조 18)에는 산실청의 설치로 문무과文武科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날짜를 다시 잡아 거행하였다.

내용 산실은 임신부가 평소 기거하는 방 또는 안방을 선정한다. 그런데 충청도 지역에서는 새집을 짓고 3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산실에서 아기를 낳지 않고, 부엌 아궁이 앞에서 아이를 출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가 난산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여긴다. 아궁이 앞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명兒名으로 '부엌새'라고 했다.

산실에는 출산 시의 하혈下血과 각종 분비물을 처리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걷어내고 짚이나 보릿짚(제주도)을 깐다. 짚의 사용은 1933년 송석하宋錫夏의 글 「출산과 짚의 관계」에도 보이며, 현재 70~80세 정도의 할머니들도 짚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포대와 비닐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짚 대신에 깔기도 했다. 산실은 한여름에도 불을 때서 찬기를 가시게 하고, 출산에 대비해 뜨거운 물과 태를 가르기 위한 가위, 낫 등도 미리 준비한다.

전라남도 지역에는 "아이는 짚 자락 끝에서 복을 타고난다."라는 속설이 전해진다. 이것은 볏짚이 단순히 산욕産褥의 깔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길러주는 영적 존재로도 인식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이다. 산실 구석에 볏단을 세워놓거나 삼신상 위에 짚을 올려놓고 순산을 기원하는 습속을 통해서도 볏짚의 신성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한 집에서 한 해에 2명 이상의 임신부가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산실을 달리해야 한다. "용마루 아래에서 한 해에 2명의 아이를 낳지 않아야 한다."라는 속신俗信이 전해지듯이, 비슷한 시기에 두 아이가 한꺼번에 태어나면 그중 하나가 치인다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보통 임신부 가운데 1명이 친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부득이하게 한 지붕 밑에서 임신부 2명이 출산을 했다면, 전남지역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각별히 주의한다. 예를 들어 한 아이를 바로 눕혀 놓았으면, 다른 아이는 가로로 눕혀서 놓는다.

산실에는 삼신상[産神床]을 차리기도 한다. 삼신상은 출산 후에 차리기도 하고 출산 전에 차리기도 하는데, 출산 전에는 청수를 올려놓고 '삼신받기' 치성을 올린다면, 출산 후에는 마른미역, 물, 생쌀, 실을 올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비는 치성 행위가 이루어진다. 삼신상은 방 가운데 손 없는 위치에 놓으며, 7일간 차려 놓는다.

한편, 동제洞祭 기간에 예상되는 출산의 '피 부정不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산부가 피신하여 출산하는 장소를 가리켜 '해막解幕', '해산막解産幕', '피막避幕', '산막産幕'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산실은 아이가 태어나는 장소이자 신성한 공간이다. 외부로부터 산모와 아이를 격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이다. 오늘날에는 병원 분만실과 산후조리방 등에서 출산하여 산실의 장소가 바뀌었지만, 산모와 아이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문안을 제한하는 습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한국 짚 문화(국립민속박물관, 1991), 出産と藁の關係(송석하, 旅と傳說6 · 7, 三元社, 1933).

필자 정연학(鄭然鶴)

산전의례
産前儀禮

정의 출산出産 전에 이루어지는 기자祈子, 태몽胎夢, 태교胎教, 태점胎占, 금기禁忌, 유산流産과 난산難産 방지, 안산법安産法 등의 의례적·비의례적 행위 전반.

역사 『태교신기胎教新記』, 『계녀서戒女書』, 『내훈內訓』 등 조선시대의 태교 혹은 여성 교육서와 『동의보감東醫寶

鑑』 등의 의학서,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묵재일기默齋日記』 등의 문헌 자료를 통해 왕실과 민간의 산전의례를 살필 수 있다.

1563년(명종 18) 12월 2일에 산천에 가서 초제醮祭를 지내어 아들 낳기를 빌었다는 『명종실록明宗實錄』의 기록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후 소격서昭格署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도교적인 종교 의례가 왕실의 아들 낳기 풍속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517년(중종 12) 10월 1일의 『중종실록中宗實錄』 기사는, 왕비가 잉태하면 태교 과정에 들어가는데, 왕실의 안녕을 위해 왕과 신하 사이에서도 태교가 중요하게 논해졌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 후기 사주당 이씨師朱堂 李氏(1739~1821) 부인이 펴낸 『태교신기』에는 부부가 교합을 할 때부터 태교가 시작된다고 보고 마음가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1759~1824)가 쓴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도 태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18세기에 민간에서까지 태교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왕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임과 동시에,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서는 실제 모든 계층에서 산전의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졌는지 전모를 살피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산전의례가 다른 의례에 비해 비공식적·자율적 영역으로 남겨지게 된 이유는 의례의 상당 부분을 여성이 주재하고, 아울러 산전의례 자체에 비의적祕儀的 성격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내용 출산 전에 이루어는 지는 의례는 임신을 바라는 각종 속신俗信과 금기 등의 기자 행위에서 시작된다. 임신을 하면 각종 태몽 및 태점에 의한 해석을 통해 음식과 행위에 대한 금기와 태교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자 행위를 제외한 행위 대부분은 주술적인 금기나 속신이었다.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 치성을 드린다. 주로 아들을 원하는 여성이나 그 시어머니가 절이나 깊은 산, 큰 바위나 샘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삼신을 받아 오기도 한다. 치성을 드리기 좋은 날을 정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껏 제물을 준비한다. 치성을 드릴 때에는 무속인이 동행하기도 한다. 만약 치성을 드리고 아이를 얻게 되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치성을 드린 곳을 찾아 정성을 들이기도 한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러 방법을 통해 임신을 기대한다. 아들을 잘 낳는 여성에게 부탁하여 경도經度(월경月經)가 묻은 속옷을 빌려 입거나 아들이 많은 집의 남자아이 옷을 빌려다가 자기 딸에게 입히기도 한다. 또는, 쇠로 조그만 도끼를 만들어 아들 가지기를 원하는 부인의 주머니에 넣거나 허리에 차고 다니게 하기도 한다. 더러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을 삼신이 집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 삼신을 타서 집안으로 모셔온다.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삼신을 타기 위해 시어머니 또는 무속인과 함께 깊은 산 속에 있는 샘으로 간다. 만약 시어머니가 가임可姙 여성이면 함께 가지 않는다. 애써 받아온 삼신이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점지해 줄 수도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동서 간에도 함께 가지 않는다. 삼신 받을 날이 정해지면 궂은일을 보지 않는다. 특히 문상問喪을 가지 않으며 부고訃告를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 삼신을 받는 당일에는 사립문에 금줄을 치기도 한다.

임신 전후로 본인이나 가족이 태몽을 꾸기도 한다. 일가一家가 아닌 사람이 태몽으로 짐작되는 꿈을 꾸면 이를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팔기도 한다. 태몽의 내용으로 태아의 성별을 예측하는데, 대체로 태몽에서 보이는 색이 전체적으로 푸르거나 검으면 아들, 붉으면 딸이라 여긴다. 꿈에 뱀이 나타나면 태몽이라 여기는데, 그 크기나 굵기를 통해 성별을 구별한다. 가령 크고 굵은 구렁이가 보이면 아들, 자잘한 뱀이 많이 보이면 딸이라 여긴다. 또한 꿈에서 호랑이와 같은 큰 짐승을 보면 아들로 여긴다. 물고기는 대체로 딸이라 여기지만 푸른 물고기가 나타나면 아들, 조개를 보면 딸이라 점친다.

임신부의 행동이나 배 모양을 보고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도 한다. 걸어가는 임신부를 뒤에서 불러 무의식중에 돌아볼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아들, 오른쪽으로 돌리면 딸로 여긴다. 임신부의 배 모양이 둥글면 아들이고 앞으로 볼록 나온 모양이면 딸이라 점친다. 또한, 산달이 되었을 때 배 가운데를 눌러 보아 물렁하게 눌러지면 아들, 단단하여 눌러지지 않으면 딸이라 여긴다.

먼저 태어난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고 태아의 성별을 점치기도 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물건을 자기의

인왕산 선바위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선바위와 신목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목에 걸면 남동생을 볼 것이고, 머리에 이면 여동생을 본다고 여긴다. 아이가 어른에게 안길 때 앞으로 와서 마주 보고 안기면 여동생을, 뒤돌아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앉으면 남동생을 본다고 점친다. 아이 머리 가마의 형태와 앞니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도 동생의 성별을 짐작한다. 아이의 가마가 왼쪽으로 휘돌아 감으면 남동생을, 오른쪽으로 휘돌아 감으면 여동생을 본다고 여겼다. 또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나란히 나오기 시작하면 동성同性의 동생을 보고, 하나가 먼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성異性의 동생을 본다고 여겼다.

임신부는 자신이 행동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태중금기胎中禁忌를 지켰다. 태중금기는 대체로 음식을 가리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남의 물건을 말없이 가지고 오거나 담을 함부로 넘지 않으며, 상갓집을 비롯한 궂은일에 참여하거나 보지 않는다. 음식 금기는 더욱 다양하고 엄격했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손가락이 오리의 갈퀴처럼 붙어서 나온다고 여겨 금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던 짐승의 고기나 병들어 죽은 고기도 먹지 않는다. 썰어 놓은 음식을 먹을 때에는 끝 부분을 먹지 않고 가운데 가지런히 잘린 것을 먹어야 치아가 바르게 자란다고 여겼다.

임신한 후 태아가 안정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포도나무 줄기를 달여서 먹기도 한다. 난산일 경우 아이가 안전하게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산모에게 더운물을 먹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두거나, 날달걀을 먹이기도 한다. 시어머니가 삼신에게 정화수를 올려 순산을 빌기도 하며, 아이를 쉽게 낳은 사람을 데려와서 산모의 배 위를 몇 차례 넘게 하는 사례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산전의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한 기자행위에서부터 임신의 징후를 보여주는 태몽과 태아의 성별을 미리 점쳐 보는 태아의 성별 예지법, 임신 중의 금기, 유산 방지법 등 임신을 전후해서 출산 직전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례이다.

산전의례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바라는 금기와 속신을 비롯한 비공식적 의례 행위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과 가정에 따라 다소 차이를 지닌다. 그러나 산전의례를 관통하는 의례 행위의 기저에는 '아들 얻기를 바라는 치성'과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낳는다는 유감주술類感呪術의 사고'가 깔려 있다. 또한, 삼신에 대한 믿음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의례 행위는 산후의례뿐만 아니라 산전의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험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태중금기는 태어날 아이가 장차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임신부가 부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태교이다. 항상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며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태중금기에는 임신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조심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러한 점을 통해, 출산 이전의 의례로서 산전의례가 가진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 조선시대 궁중의 출산풍속과 궁중의학(신명호, 고문서연구 21, 한국고문서학회, 2002), 조선왕실의 출산 풍속-아들기원에서 돌잔치까지(주영하, 조선왕실의 출산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출산의례의 변화 양상과 의미(황경순, 국립문화재연구소, 일생의례의 역사민속학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1),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한양명,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황경순(黃慶順)

산파

정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순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출산 후 탯줄을 자르는 등 해산의 전 과정을 돕는 사람.

개관 산모가 출산하는 날이 다가오면 미리 산파역을 맡을 사람을 결정한다. 전통적으로 산파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주로 맡는데, 가족 중에서 산파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친척이나 마을에서 다산 경험자를 모신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산파역을 맡을 사람이 없을 경우는 단골이나 무당이 산파를 맡기도 한다. 일단 산파로 결정되면 매사를 깨끗이 가려서 행동해야 하는데, 자기의 딸이 출산하더라도 가지 않으며 한 달에 아이를 두 번 받지 않는다. 모두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다. 이런 전통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서구 의학기술의 유입과 발달로, 산파라 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로 변화되었다.

내용 산파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 각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강진에서는 산파를 '삼할머니'라 부른다. 보통 산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마을이나 주변에서 아이를 잘 받는 사람을 불러오기도 한다. 미처 산파를 부르기 전에 아이가 나오려 하면, 산모는 스스로 산파가 되어 아이를 낳고 태胎와 태반胎盤을 처리한다. 신안에서도 산파는 시어머니가 주로 맡는데 때에 따라 이웃 부녀자의 도움을 받는다. 출산할 때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출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파를 선정한다. 또한, 산모가 건강한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이 많고 아들이 많은 사람을 산파로 정하는 경우도 많다. 산달이 되면 산모는 집안의 상황에 따라 가족 중에서 해산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 이웃에 해산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산파를 외부에서 부를 경우 미리 이 사실을 산파에게 알려주는데, 특히 산파가 그달에 다른 아이를 받은 일이 있는지 확인해, 한 달에 산파가 두 번 아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산파가 한 달에 아이를 여러 번 받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해산 날짜가 되면 산파는 산실産室에 짚을 깔고 물을 끓여 해산 준비를 하고 산모가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산모의 해산이 끝나면 산파는 아이의 출생 시간을 확인해 산모에게 알려 주는데, 시계가 없었을 당시에는 해나 달, 별이 뜬 정도를 보아서 시각을 짐작해 알려 주었다고 한다. 이웃에서 산파를 해 주는 경우 보통 버선 한 켤레나 마른미역, 건어물, 쌀 등 집안 형편에 맞추어 답례를 반드시 하는데, 그래야 아이에게 복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공주에서는 산모의 해산을 돕는 것을 '해막간'이라고 한다. 친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친정어머니가 해막간을 해 주고, 시가媤家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대신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누이나 올케 혹은 남편이 하기도 한다. 산모가 산기産氣가 들어 산실로 들어가면, 산파는 산모를 손 없는 방향으로 눕히고 산도産道가 열리는지 살피며 모든 과정을 돕는다. 또한, 산모가 해산한 이후에도 산바라지를 해 준다. 충청북도 충주에서는 산파가 일 년에 한 아이만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만일 산파가 두 명의 아이를 받으면 삼신이 다투어 아이에게 해害를 끼친다고 한다. 특히 전문적으로 아이만 받는 산파의 경우에는 같은 달에 짝수로는 아이를 받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나고 후산後産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도 산파는 산가産家에 머물면서 산모의 몸조리를 돕는다. 산모는 나중에 산파에게 감사의 뜻으로 옷이나 신발 등을 선물로 보낸다.

경상남도 김해에서도 산파는 시어머니가 주로 맡는데 아이를 받은 경험이 없으면 큰 숙모, 동서, 이웃 사람이 받아주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에 자식을 많이 낳고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를 따로 불러 아이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가족이 아닌 이웃 사람이 아이를 받아준 경우에는 특별히 사례하지 않지만 아이의 백일이나 돌 때 불러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한다. 거창에서는 산모에게 산기가 들면 시어머니나 동서들이 함께 산바라지를 해준다. 그러나 옆에 누가 있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혼자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산바라지를 하

는 사람은 출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산모가 쉽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난산難産일 경우, 삼신께 빌기도 한다. 진주에서도 산모를 도와주는 일은 집안의 여자 어른인 시어머니나 동서가 맡았는데, 산모가 난산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한 특별히 산파를 두는 일은 드물었다고 한다. 간혹 산파의 역할을 마을에서 아이를 쉽게 낳았던 사람이나 점치는 사람이 맡기도 했다. 점치는 이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시기가 되면 산실에 제왕판 삼신상을 차려놓고 비손하면서 아이를 받는다. 이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쉽게 낳게 되면 보답으로 쌀이나 돈을 준다. 울릉도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닌 산파가 해산을 도와주는 경우에 그 대가로 옥수수, 감자 세 말을 주기도 한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여느 지역과 비슷하게 임신부의 산바라지는 임신부의 가족 중 여자 구성원이 한다. 시댁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나 시누이·시고모·시동서 등이 산바라지를 하는데 친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친정어머니나 올케가 산바라지를 한다. 더러 아이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기도 한다. 횡성에서는 산파를 '산관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도 출산은 주로 산모와 가족끼리 치르는데, 만약 난산일 때에는 마을에서 출산 경험이 풍부한 여자 어른을 청해 부탁한다. 이런 사람을 '아기할망', '삼승할망', '아기네 우레멩기는 할망', '아기 네와주는 할망' 등으로 부르는데, 모두 아기를 낳게 해주는 할머니라는 뜻이다. 아기할망은 이른바 아기의 출산과 양육에 신력神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아기할망이 배를 쓸어주면 통증이 완화된다고도 하며, 간혹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속의례를 행하기도 한다. 이후 출산을 도와준 아기할망에게는 밥과 생선, 국 등의 음식으로 사례한다. 제주 동남부지역에서는 산파를 마을에서 '유식한 할망', '아기할머니', '애기할망'이라 부르는데, 해산이 다가오면 가족들은 큰솥에 물을 가득 넣고 끓이면서 산파를 모시러 간다. 산모가 쉽게 아기를 분만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애기할망'의 지시에 따라 가족들은 집의 모든 문과 궤의 문, 솥뚜껑 심지어 물 항아리 뚜껑까지 열어놓는다고 한다. 때에 따라서 아기가 아버지를 봐야만 분만을 쉽게 한다는 속설이 있어서 남편이 종종 산모 옆을 지키기도 한다. 제주 동북부지역에서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마을에 '삼승할망', '삼신할머니'라 불리는 무녀가 해산을 도왔다고 한다. 하지만 대개의 집에서는 산파를 따로 두지 않고 혼자 낳거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혹은 시할머니나 형제자매가 아기를 받아주었다고 한다.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남편이 해산을 돕기도 하였다. 북촌마을의 한 남성 제보자는 온 가족이 제사를 지내러 친척 집에 간 사이에 부인이 셋째 딸을 출산하게 되어, 본인이 직접 물을 끓이고 '갈중이'로 아기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듯 예전에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산파 역할을 했다. 이후 현대적 의료법이 도입된 뒤인 1914년에 제정된 「산파규칙」에는 전통적으로 산모를 구완하던 사람의 이름을 '산파'라 부르게 했는데, 1952년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되고, 1987년 다시 법이 개정되어 조산사助産師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의료 발달과 보편화로 집에서 아이를 낳기보다는 조산원이나 산부인과 병원을 대개 찾아간다. 그리고 남자 의사의 도움으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이제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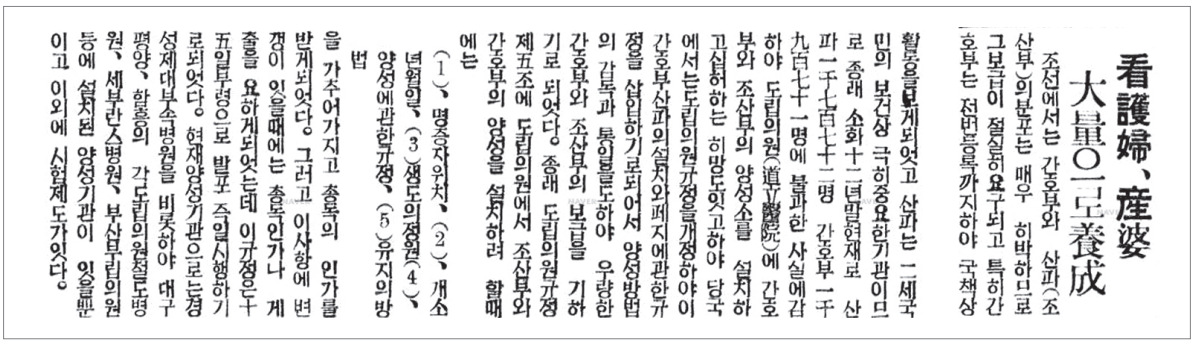

看護婦、産婆 大量으로養成

조선에서는 간호부와 산파(조산부)의분포는 매우 히박하므로 그보급이 절실히요구되고 특히간호부는 전반을통하야 국책상 활동을보게되엇고 산파는 二세국민의 보건상 극히중요한기관이므로 종래 소화十二년말현재로 산파一千七百七十二명 간호부 一千九百七十一명에 불과한 사실에감하야 도립의원(道立醫院)에 간호부와 조산부의 양성소를 설치하고십허하는 히망도잇고하야 당국에서는도립의원규정을개정하야이 간호부산파의설치와폐지에관한규정을 삽입하기로되어서 양성방법의 갑돌과 통일을도하야 우량한 간호부와 조산부의 보급을 기하기로 되엇다。종래 도립의원규정 제五조에 도립의원에서 조산부와 간호부의 양성을 실시하려 할때에는

(1)、명칭자위치、(2)、개소년월일、(3)、생도의정원(4)、양성에관한규정、(5)유지의방법

을 가추어가지고 총독의 인가를 받게되엇다。그러고 이사항에 변경이 잇을때에는 총독인가나 계출을 요하게되엇는데 이규정은 十五일부령으로 발포 즉일시행하기로되엇다。현재양성기관으로는경성제대부속병원을 비롯하야 대구평양、함흥의 각도립의원과도립의원、세부란스병원、부산부립의원 등에 설치된 양성기관이 잇을뿐이고 이외에 시험제도가잇다。

간호부, 산파 대량으로 양성 | 1939. 2. 15. | 동아일보

특징 및 의의 산파는 전통적으로 출산의 경험이 많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주로 맡는다. 비록 오늘날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가족 단위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산파가 산모의 출산을 위해 지키는 금기 사항은 아이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경건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민속학 새로 읽기(최인학, 민속원, 2001),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필자 서해숙(徐海淑)

산후의례
産後儀禮

정의 해산 후 삼칠일까지 치르는 의례.

역사 삼칠일의 모티프는 단군신화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서 그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순조실록』(권29)에서도 원손이 태어난 3일째 되는 날 종묘에 고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례를 베풀고 예를 갖추어 임금에게 고했다第七日行陳賀從禮曹啓."라고 하여, 삼일과 칠일에 왕실의 산후의례가 행해진 것이 확인된다.

내용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대문에 금줄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삼가고 부정한 기운을 막는다. 다음에는 출산 전 삼신상에 올렸던 쌀과 미역으로 첫국밥을 지어 각각 세 그릇씩을 삼신상에 올리고 아기의 명복과 산모의 건강회복을 삼신에게 기원한다. 이때 삼신상에 올렸던 첫국밥은 산모가 먹는다. 초삼일이 되면 산모는 쑥물로 몸을 씻고 아기도 따뜻한 물이나 복숭아나무 뿌리를 삶은 물로 몸을 씻긴다. 복숭아나무를 쓰는 것은 이 나무가 다산을 상징하고 잡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목욕은 신체를 정화하는 의례적 의미를 지닌다.

아기가 출생한 날로부터 초칠일, 이칠일, 삼칠일에도 각각 의례를 행한다. 먼저 생후 7일째 되는 날을 초이레, 첫이레라고 하는데, 이날 새벽에는 삼신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시어머니나 산바라지를 한 할머니가 아기의 명복과 산모의 건강을 비는 치성을 드린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아기를 만나는 날이기도 하다. 곧 가족과 공식적인 대면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이날 아기는 포대기를 풀고 배내옷으로 갈아입는다. 배냇저고리는 깃이 없고, 무명실로 꼬아 가슴을 한 바퀴 돌려 맬 수 있도록 옷고름을 길게 만든 옷으로 실처럼 아기의 수명이 길어지라는 뜻이 있다. 7일째 입힌다고 하여 '이레안 저고리'라고도 한다. 이때 동여맸던 아기의 팔 하나를 풀어놓는다. 생후 14일째 되는 두이렛날 아침에도 삼신상을 차려 놓았다가 산모가 먹는다. 이날 아기에게 비로소 깃 있는 옷을 입히고 나머지 팔 하나를 풀어 두 손을 자유롭게 한다. 생후 21일째 되는 세이레에도 역시 삼신상을 차려 놓았다가 산모가 먹는다. 삼칠일 날에는 산실이 개방되면서 그동안의 금기가 모두 해제된다. 그래서 금줄과 삼신상을 거두고 산모는 일상으로 복귀한다. 삼칠일 전까지는 가족을 제외한 사람의 출입을 삼가고 의례도 집안 행사로만 행해졌으나 삼칠일에는 일가친척과 가까운 이웃을 청하여 흰밥과 미역국, 수수경단 등을 대접한다. 아기에게 처음으로 아래·위로 떨어진 옷을 입히는 날이다. 이날 손님들은 실과 돈을 가지고 와서 아기를 대면하며, 특히 사돈가에서는 '산걷이'의 의미로 떡, 포대기, 핫저고리 등을 만들어 온다.

삼칠일의 습속은 계층에 따라, 또는 출산한 아기의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금줄을 치는 기간, 산후 조리 기간, 세이레의 행사 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초이레에서 세이레에 걸쳐서 산후조리를 하였으나, 농번기·농한기 또는 출산한 아기의 성별에 따라 산모의 조리 기간이 달랐다. 출산 후 바로 또는 3일 후부터 집안일을 시작한 경우도 있다. 삼칠일을 헤아리는 방법에도 21일로 계산하는 '늘치기'와 7일마다 겹치게 해서 19일로 계산하는 '곱치기'가 있는데, 딸을 낳으면 곱치기로, 아들을 낳으면 늘치기로 하기도 했다. 늘치기로 하면 산후조리에서 이틀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며느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병원 출산이 늘어나고 주거문화가 크게 변화하면서 산후의례의 공간적 기반이 거의 사라졌다. 아파트의 현관문에는 금줄을 칠 곳이 없고, 아파트

안방에는 더 이상 삼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서서히 붐을 일으켜 온 산후조리원의 존재는 특히 집 단위로 행해져 오던 산후의례의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 출산의례에 관한 연구는 전승의 주체나 전승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이념형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이념형과 실제형의 구분을 통해서 출산 속의 다양한 층위를 읽은 연구(한양명), 출산의례의 지속과 변용을 현재문화로서 또는 도시민속학의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주영하)가 이루어졌다.

특징 및 의의 산후의례는 산모와 아이를 부정과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산모와 아이를 가족과 친족 그리고 사회라는 공동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적 의미를 지닌다. 해산 당일의 의례가 분리의례라면 세이레까지의 행사는 통합의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세이렛날 친척과 이웃에게 아기를 보이는 행위는 아기가 처음으로 바깥세상과 교류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산후의례도 다른 출산의례들처럼 산모보다는 가족 중 부모세대가 주관하는 것이어서 그들이 지닌 인식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의례의 존재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는 편이다. 그것이 산후의례가 다양해진 이유이다. 특히 산후의례 습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차별 문화는 아들 선호의 경향이 상당히 최근까지도 지속되었음을 말해 준다.

참고문헌 사람의 한 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출산의례의 변용과 근대적 전환(주영하, 한국문화연구7, 경희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1),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한양명,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필자 천혜숙(千惠淑)

산후조리
産後調理

정의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본인은 물론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으며, 근신하는 생활을 통해 조리調理하는 것.

역사 아이를 낳으면 산모의 몸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하며 조리해야 한다. 산모의 조리에 관한 역사 문헌은 매우 희박하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경외의 여종[婢子]이 아이를 배어 출산하면 산후 1백일 안에는 사역使役을 시키지 말라는 법과 더불어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그 남편에게 만 30일 뒤에 일을 부리도록 한 기록이 있다. 사역하던 여종이 100일의 휴가를 얻은 것을 통해 산모가 조리하는 기간의 최대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남편에게 준 30일은 최소 조리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이외의 산모 조리에 관한 기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백과사전인 『규합총서閨閤叢書』도 출산 후 아이의 건강관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산모의 몸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다.

내용 출산할 때에 임신부의 몸은 출산이 쉽게 이완되기 마련이다. 이를 두고 "산모의 뼈마디가 모두 분리된다."라고 표현한다. 출산 후 산모는 원상태로 몸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몸조리 기간은 집안의 형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3일, 일주일, 삼칠일(21일), 칠칠일(49일) 등으로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집안에 산모 이외 여성의 노동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시어머니나 올케, 시누이 등이 있다면 몸조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루도 비울 수 없는 것이 집안일이므로 산후에 곧바로 집안일을 하기도 한다. 남존여비男尊女卑라는 사회 관념은 아들을 낳은 산모와 딸을 낳은 산모의 조리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딸을 낳았다면 괜스레 죄인 같은 느낌 때문에 편히 누워 있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실제로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널칠일을 세고, 딸을 낳으면 꼽칠일을 센다."라는 말이 있다. '널칠일'은 7일을 한칠일로 삼고, '꼽칠일'은 일주일에서 하루를 뺀 6일을 한칠일로 한다. 딸을 낳았으니 아들을 낳은 것과 달리, 몸조리 기간을 적게 갖는 것을 빗댄 말이다. 몸조리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최소 3일 정도는 몸조리를 해야 한다. 농번기가 아니라면 삼칠일(21일)까지는 쉬지만 바쁜 농번기에는 7일 정도 쉰다. 일손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일주일 정도 조리했다면 호강으로 여겼다. 실제 산모의 몸이 회복되는 데는 최소 삼칠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삼칠일 정도가 되

어야 아이를 낳으면서 벌어졌던 자궁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에서도 유산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한 달 정도를 조심하라고 한다. 자궁 속의 상처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21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사 노동 때문인지는 몰라도 산모는 서둘러 일상생활로 복귀해야만 했다. 그래서 "사흘(혹은 칠일)이 지나면 정지(부엌) 흙을 밟아야 출산 시 벌어진 뼈가 빨리 여물어진다." 혹은 "배가 아프지 않다." 같은 속신을 통해 산모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이끌려 나갔다.

각 가정에서 산모가 몸조리하는 기간은 아이를 위해 금줄을 드리워 두는 기간과 일치한다. 아이나 산모 모두 건강을 위해 외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산모는 산실産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 사흘째에 산모는 처음으로 목욕하는데, 찬물을 사용하면 뼛속에 바람이 든다고 하여 수건에 물을 적셔 닦아내기만 한다.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목욕한다. 산모의 몸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하는 공간이 따뜻해야 한다는 점이다. 겨울철에는 문을 닫고, 병풍을 드리우며, 불을 땐다. 여름철에도 불을 때서 온기를 유지한다. "여름철에는 하늘이 몸조리를 시켜준다."라는 말처럼 몸조리의 최우선 과제는 보온保溫이다. 찬바람을 쐬면 몸이 붓고, 찬물에 손이나 발을 넣으면 나이 들어서 손발이 시리다는 경험의 소산이다. 여름에도 버선을 신고 긴 옷을 입으며, 땀이 나도 부채질하지 않는다. 몸이 차면 회복이 더디므로 보온에 신경을 쓴다.

몸조리 기간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단순한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산모의 특식인 미역국과 밥을 기본으로 하는 식사이다. 몸조리하는 동안에는 특별식을 먹는다. 평소에는 3끼를 먹지만 산모는 매 끼니 사이에 간식을 추가하여 5~6끼를 먹는다. 경북 상주지역에는 "산모가 애를 낳게 되면 석 자 가시가 안 걸린다(3자가 되는 가시가 몸속을 통과해도 걸림이 없다)."라는 옛말이 있다. 속이 텅 비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음식이나 함부로 먹지 못한다. 산모에게 특식은 미역국과 쌀밥이다. 미역 한 오라기로 국을 끓이면 산모가 7일 정도 먹을 수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미역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다. 미역국을 대신해서 뭇국, 된장국, 호박국, 호박죽, 시래깃국, 콩나물국, 누룽지를 먹는데, 제주도에서는 옥돔과 붉바리를 넣어 끓인 해어국海魚-을 먹는다. 가난한 집에서는 매일 먹이지 못하고 삼신을 모시는 날마다 미역국을 끓여서 산모에게 먹였다. 미역국은 조선간장만을 넣고 끓이며 마늘 등의 향신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경북에서는 부잣집에서 명태나 대구포를 넣고 미역국을 끓였으나 소고기, 닭고기 등을 넣는 것은 꺼렸다. 고기는 살생이 수반되어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미역국은 산모의 피를 맑게 하고 모유의 양을 증가시키므로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

쌀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쌀 대신 보리나 조 같은 곡식으로 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강원도), 메밀로 수제비를 쑤어 먹기도 한다(제주도). 산모는 특별한 음식은 가려야 했는데, 강원도 지역에서는 몸에 바람을 일으키는 메밀이나 밀가루, 묵, 국수, 돼지고기, 닭고기, 개고기 등을 삼갔다. 메밀수제비는 메밀가루를 뜨거운 물에 탄 것으로, 제주도민들은 '궂은 피를 삭제하고 피를 맑게 한다.'는 이유로 먹지만, 육지에서는 금기 식품이었다. 제주도는 조나 메밀 중심의 밭작물 재배 지역이므로 쌀을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모의 몸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금한다. 감자, 두부, 호박 등은 부드럽지만 뜨거울 때 먹으면 이가 시리다. 이 밖에 엿이나 찰떡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산모의 이가 솟아 있으므로 안정되기 전에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이가 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매운 것을 먹으면 젖이 매워져서 아이의 항문이 빨갛게 된다고 하여 삼가고 딱딱한 것은 이가 상한다고 하여 산모의 뼈가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는다. 뼈가 아물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다. 이 밖에도 유사주술類似呪術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가린다. 달걀을 먹으면 아이의 목에 달걀 같은 혹이 삐져나온다고 하여 먹지 않는다(고성군). 두부나 백설기를 먹으면 그 가루가 산모의 젖 구멍을 막는다고 하여 역시 금한다.

산후조리 기간에는 몸의 회복을 위해 약쑥 삶은 물을 담은 요강을 깔고 앉아 좌욕坐浴을 하거나 삶은 기왓장을 깔고 앉기도 한다. 산도産道가 찢어진 경우에는 상

처가 빨리 아물도록, 후산後産이 되자마자 바로 후산된 태胎로 산도를 문지른다. 몸이 부은 사람은 호박을 고아서 먹는데, 호박에 꿀을 넣어 삶은 물을 먹는다. 산모의 몸은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실생활에서도 주의할 것이 있다. 우선 힘을 잘 못 주면 자궁이 몸 밖으로 빠지므로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바느질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하여 보름 정도는 삼간다. 산모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갓난아이를 위해서도 몸을 조심한다. 특히 부정을 타면 산모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이가 울거나 아프므로 근신한다.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도 몸조리하는 기간에는 부정한 행위(싸움이나 살생)를 하거나 부정한 장소喪家(짐승 잡는 곳 등)에 가는 것을 삼간다.

특징 및 의의 아이의 출산으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린 산모는 몸의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 근신해야 한다. 실제 의학적인 차원에서도 3주 정도의 회복기를 갖도록 한다.

참고문헌 전남지방의 산후속(윤여송,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8, 호남대학교, 1987), 전북지방의 산육속에 나타난 금기(윤여송, 어문논총10,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9), 조선여속고(이능화, 동문선, 1990), 한국의 산속(배도식, 한국민속의 현장, 집문당, 1993), 한국인의 일생(이광규, 형설출판사, 1984), 한일 산육속의 비교(임동권, 한국민속학12, 한국민속학회, 1980).

필자 김효경(金孝慶)

삼가례
三加禮

정의 관례冠禮를 행할 때에 세 번째 관을 씌우는 예禮.

내용 성리학 도입과 함께 널리 보급된 관례의 시행 단계에서 행하는 삼가례三加禮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관례」에 따른 삼가례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빈賓이 읍揖하면 관자冠者는 자리에 나아가 꿇어앉고, 빈이 내려가면 주인도 내려가고, 빈이 손을 씻으면 주인이 읍하고 올라가 함께 제 자리로 돌아가는 의식은 재가례再加禮 때와 동일하게 하는데, 집사자執事者가 복두幞頭(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모로, 사모紗帽와 똑같이 두 단으로 되어 있으며, 뒤쪽의 좌우에 각脚이 달려 있다)를 쟁반에 올리면, 빈이 층계를 다 내려와 이를 받는다(들고 관자 앞으로 나간다). 축사祝辭하면 찬자贊者는 재가례 때 씌운 모자를 벗겨 치운다(집사자는 모자를 받고 빗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간다). 이에 빈이 무릎을 꿇고 복두를 씌우면, 찬자가 끈을 묶어준다.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관자도 일어난다) 읍하면 관자는 방으로 간다. 재가례 때 입었던 조삼皁衫(검은 빛깔의 흑단령黑團領이라 부름)을 벗은 다음 난삼襴衫(녹색 혹은 검은색 예복, 유생·생원·진사 등이 입던 예복)을 입고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방을 나와 선다. 삼가례를 행할 때 축사식祝辭式(축하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삼가례 | 국립민속박물관

> 좋은 해 좋은 달에 형제들이 모두 있는 데서 너에게 관을 세 번 모두 씌워 너의 덕을 이루게 하였다. 길이 오래 살아 하늘의 복을 받아라.

특징 및 의의 관례의 절차는 준비, 시행, 종결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삼가례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절차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비롯한 정통적인 예서에는 시가례·재가례·삼가례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성호星湖 이익李瀷도 주창한 것처럼,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시가례, 즉 초가례初加禮로 끝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처럼 실제 관행에서는 대폭 간소화하여 진행해 왔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조건보다는 단지 육체적인 성장에 따른 성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與猶堂全書, 朱子家禮, 관혼상제(이민수, 을유문화사, 1975), 조선시대 관혼상제-1(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조선의 관혼상제(사회과학원, 중심, 2002),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필자 박홍갑(朴洪甲)

삼가르기

정의 출산 직후 산모와 아이를 연결해주던 탯줄을 자르는 행위.

내용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나오면 곧바로 탯줄을 잘라주는데, 이를 두고 "삼 가른다"라고 한다. 태를 가르는 것은 아이가 독립된 생명체로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뤄졌다.

탯줄을 자르는 사람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경험이 많은 산파가 산모의 출산을 도와 탯줄을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 시댁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친정어머니가 탯줄을 자르기도 했다. 또한 남편이 산모를 도와 탯줄을 자르기도 했으며, 혼자 출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산모가 스스로 탯줄을 자르기도 했다.

탯줄을 자를 때는 먼저 아이와 산모를 연결하는 탯줄의 적정한 부위, 즉 아이의 배꼽 부분에서 약 한 뼘 정도의 길이를 손으로 잡은 뒤, 탯줄에 남아 있는 피(제대혈)를 아이 쪽으로 세 번에 걸쳐 밀어냈다. 이어서 탯줄에 실을 묶은 다음 자를 준비를 하는데, 이때 실을 단단히 묶지 않으면 아이 뱃속의 피가 흘러나와 위험할 수 있다고 여겼다.

탯줄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는 가위, 낫, 수숫대, 대나무, 깨진 사기그릇, 낫, 조개껍질 등으로 다양했다. 태아의 성별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남아이면 출세하라는 뜻에서 목낫을 사용하고 여아이면 재주가 좋아지라는 뜻에서 가위를 사용했다. 또한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태아의 명을 길게 한다는 뜻에서 남편이 자신의 이로 탯줄을 자르기도 했다.

한편 태를 자를 때는 잘라낸 탯줄이 산모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했다. 후산後産, 즉 태반이 완전히 배출되기 전에 탯줄이 따라 들어가면 태반을 배출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산모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태를 자를 때 태나 태에 묶은 실을 산모의 발가락에 걸치거나 묶어두는 경우도 있었다.

잘라낸 태는 여러 방법으로 처리했다. 태단지에 넣어 땅에 묻거나 돌에 묶은 뒤 물속에 던져 넣기도 했으며, 불에 태운 뒤 남은 재를 물에 띄우거나 잘 보관해뒀다가 아이가 아플 경우 약으로 쓰기도 했다. 탯줄을 자른 뒤 아이의 배꼽에 붙어있던 탯줄의 끄트머리(배총)는 일주일 정도면 저절로 떨어졌다.

지역사례 태를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는 아들이면 '몽낫(목낫)'을 딸이면 가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황해도에서는 조개껍질을 사용해서 태를 자르기도 했다. 한편 수숫대의 경우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징 및 의의 삼 가르기는 아이를 산모로부터 분리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는데, 산모와 아이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아이의 장래까지를 고려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기도 했다. 이처럼 삼 가르기에 각별히 유의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비위생적인 출산환경과 높은 신생아 사망률도 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원인의 일생의례(김의숙·이학주, 민속원, 2005), 사람의 한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산속(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한양명, 비교민속학회 16, 비교민속학회, 1999).

필자 한양명(韓陽明)

삼내흠
三乃歆

정의 신이 제사음식의 기를 흠향하는 것을 문을 열기

전에 세 번 헛기침하는 것으로 표현한 의식.

내용 '흠歆'은 '흠향하다'는 의미로서, 신神이 제사음식의 기氣를 마신다는 뜻이다. 신이 제사음식의 기를 마셔 흠향하는 것을, 축이 세 번 헛기침하는 방식으로 대신한 것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축성삼희흠내계문祝聲三噫歆乃啓門'이라 하여, 문을 열기 전에 세 번 기침한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치르는 제사 외에 유교식으로 치르는 마을 제의에서도 삼내흠을 한다. 경상북도 영양 두들마을 마을 제의에서는 분향—강신—참신—소지—부복 순으로 제의를 치르는데, 1~2분 동안 부복하여 일어설 때에는 "삼내흠三乃歆을 한다."라고 하여 소지를 올린 후 부복하였다 일어날 때 세 번 헛기침을 했다.

특징 및 의의 신이 음식을 다 드신 후 제사음식의 기를 흠향하는 것을 헛기침을 세 번하여 표현하면서, 아울러 들어가기 전에 신에게 미리 상황을 알리는 효과도 있는 의식이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삼년상
三年喪

정의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이 애도의 의미로 상복을 입고 3년간 거상居喪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실제 기간은 만 2년 정도임.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고려 초기부터 삼년상三年喪을 지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단축하기도 하였다. 실례로, 경종은 삼년상의 달수를 날수로 고쳐 13일에 소상小祥을, 27일에 대상大祥을 치르도록 왕명을 내렸다. 그렇지만 삼년상을 치르는 관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려 말기에는 정몽주鄭夢周가 부모상에 3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더욱 유행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에 일반화되었다.

내용 삼년상 기간에 자식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일체의 행동을 삼가며 상복을 입고 지냈다. 부모상을 당하면 관직을 그만두었고, 장례 이후에는 묘소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탈상 때까지 생활하였다. 이 기간에는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없으며, 아내와 잠자리도 할 수 없었다.

삼년상은 『의례儀禮』나 『가례家禮』 등에 실려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예제가 되었다. 게다가 조선에서는 국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하여 법으로까지 규정하였다. 『가례』는 '관혼상제'를 소개하는데, 상례喪禮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 사람이 사망하면 처음 행하는 초종初終에서, 27개월째에 행하는 담제禫祭까지 소개하였는데, 바로 담제의 앞인 25개월째에 이행하는 대상까지가 삼년상의 기간이 된다.

또한, 『경국대전』「예전禮典」의 오복조五服條에서는, 망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상복을 구분하되, 부모를 위해서는 3년 동안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인의

효자 거묘살고 |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경우에는 1백 일 동안 복을 입도록 했는데, 삼년상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준다고 했다. 이것은 『중용中庸』에서 "일년상은 대부大夫까지 시행하고, 삼년상은 천자에게 시행되지만, 부모의 상은 귀천이 없이 하나이다."라는 말에 근거한 조치였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4일째에 상복을 입는다. 부친의 사망에는 참최삼년斬衰三年, 모친의 사망에는 재최삼년齊衰三年의 복을 입는다. 상喪을 당하고 3개월 만에 장례를, 만 1년이 되는 13개월째에 소상을, 2년이 되는 25개월째에 대상을 지낸 뒤 상복을 벗는다. 그리고 27개월째가 되면 담제를 지낸다. 소상의 날짜는 사망 후 돌이 되는 날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월 1일에 돌아가셨으면 소상일은 그 이듬해 1월 1일이다. 만약 이 기간에 윤달이 끼면 이를 무시한다. 소상을 지낸 뒤에 상주는 조석곡朝夕哭을 그치고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상복 중에서 남자는 수질首絰을, 여자는 요질腰絰을 푼다. 이어서 25개월째, 즉 만 24개월이 지나면 대상을 지낸다. 이때는 수질과 요질을 태우며 상장喪杖을 버리고 탈상脫喪한다. 27개월째에는 담제를 지낸다. 담제를 지낸 뒤에야 비로소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1개월 안에 택일하여 길제吉祭를 지낸다. 길제는 상주 부부가 부모를 이어서, 종손 혹은 종부의 역할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제사이다.

특징 및 의의 삼년상은 인간이 태어나서 3년이 되어야만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삼년상에는 적어도 3년이 될 때까지는,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듯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여야 한다는 효사상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家禮, 經國大典, 상례와 시묘살이(김문택, 조선시대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년),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문택(金文澤)

삼색나물

정의 제례 때 신위 앞에 올리는 나물.

역사 1609년(광해군 원년)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의 영접 기록인 『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에는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나물의 재료로 산삼山蔘·수근水芹(미나리)·녹두장음菉豆長音(숙주나물)·구韭(부추)·백채白菜(배추)·시근채是根菜(시금치)·길경苦莖, 桔梗(도라지)·청채菁菜(무순)·와거萵苣(상치)·신감채辛甘菜(신검초)·생개채生芥菜(물쑥)·궐채蕨菜(고사리)·표고蔈古(표고버섯)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들을 청채 재료와 백채 재료, 생채生菜 재료와 숙채熟菜 재료로 분류하면, 산삼·녹두장음·백채·길경은 백채 재료이고, 수근·구·시근채·청채·와거·신감채·생개채는 청채 재료이며, 산삼·수근·구·길경·청채·와거·생개채는 생채 재료이고, 녹두장음·백채·시근채·길경·신감채·궐채·표고는 숙채 재료이다. 길경, 즉 도라지는 생채 재료이면서 숙채 재료이기도 했다.

조선왕조는 생것으로 먹는 나물을 '생채生菜', 익혀서 먹는 나물을 '숙채熟菜'라 했다. 생채의 경우 대개 채에 겨자장[芥子醬]과 초醋를 합하여 버무려 먹도록 했고, 숙채는 채를 익힐 때 간장艮醬·진유眞油(참기름)·생강生薑·후추[胡椒]·소금[鹽]으로 양념하였다.

채가 일상식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는 명나라 사신에게 아침밥[朝飯]·점심밥[中飯]·저녁밥[夕飯]으로 올린 아래의 접대 상차림에서 드러난다.

제1행, 시저匙箸(숟가락과 젓가락)·갱羹(국)·반飯(밥)
제2행, 오색적합성일기五色炙合盛一器(합하여 1그릇에 담은 다섯 가지 적 1기)
제3행, 추봉지어육오기追奉持魚肉五器(받들어 올리는 어육을 담은 5기)
제4행, 각색해各色醢(각색 젓갈), 각색장저各色醬菹(각색 장아찌), 개말芥末(겨자장), 간장艮醬, 각색자반各色 佐飯
제5행, 채수절菜隨節(제철 채소), 초醋, 각색생채수절各色生菜隨節(각색 제철 생채), 각색숙채各色熟菜

청채

백채

나물 | 경북 안동 서애 류성룡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숟가락과 젓가락은 은 접시에 담고, 국과 추봉지 어육은 자기 사발, 밥은 은 바리에 담았다. 적, 해, 장과, 자반, 채 수절, 생채 수절, 숙채 수절은 중·소 자기 접시에, 개자장, 간장, 초는 자기 종지에 담아 차렸다. 특히 채는 숙채와 생채로 나누고, 생채에는 초를 곁들여 제철에 나오는 것으로 접시에 담아냈다.

내용 조선왕조는 고려왕조의 기신제忌晨祭와 시제 때의 제사상차림을 속례俗禮로 받아들였다. 오명일五名日(정조·한식·단오·추석·동지)에 제능침諸陵寢에서 올린 속절향俗節享 진설을 보면, 제1행에 반·갱·시저·적炙, 제2행에 면麵·백증白蒸·잡탕雜湯·절병切餠·상화병床花餠·자박병自朴餠, 제3행에 개장芥醬·도라지채·고사리채·표고채, 제4행에 황율·실백자·약과·진자·대추를 진설하고 있다. 여기서 제3행의 도라지는 생채이고, 고사리와 표고는 숙채이다.

조선왕조에서 생채와 숙채를 올리던 것을 민중도 따라했다. 18세기 초 이재李縡(1680~1746)가 쓴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채菜를 제3행에 진설함을 밝히고 있고, 『사례편람』의 진설 방법은 그 후 『증보사례편람』·『사례집의四禮集儀』·『광례람廣禮覽』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1538~1593) 종가에서는 묘제墓祭에서 숙채와 산채를 올린다. 숙채의 재료는 미나리이다. 미나리를 잎이 붙은 채로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데쳐내어 5㎝ 길이로 썬 후 조선간장과 참기름으로 양념한 것이다. 산채의 재료는 고사리·토란대·도라지이다. 고사리는 물에 불려서 끓는 물에 삶아내어 5㎝ 길이로 썰고, 이것을 냄비에 담아 식용유로 볶은 다음 조선간장과 참기름으로 양념하는데, 토란대 역시 물에 불려서 끓는 물에 데쳐내어 5㎝ 길이로 썰고 고사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통도라지는 길이대로 가늘게 찢어 소금물에 넣고 주물러 쓴맛을 빼고는 고사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숙채는 한 그릇에 따로 담고, 고사리·토란대·도라지는 한 그릇에 모아 담는다. 도라지는 숙채이면서 백채이고, 미나리는 숙채이면서 청채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흰색(도라지), 청색(미나리), 갈색(고사리·토란대)으로 구성된 삼색 나물이다.

특징 및 의의 원래 삼색 과일, 삼색 나물이란 제사 때 쓰는 세 가지 종류의 과일과 나물을 뜻한다. 색色은 흔히 빛깔로 알려졌지만 의미가 확대되어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진 모든 것'을 일컫는다. 유교 제사에서 3이라는 숫자가 중요시된 까닭은 "예禮는 3을 중시한다."라는 『예기禮記』의 글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삼색은 세 가지 색깔을 뜻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백채·청채 등의 말이 생겨났다. 1969년에 나온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라남도 나주 지방에서는 제사 때 무·숙주·도라지·배추·시금치·미나리·고사리·솔·가지를 재료로 하여 세 가지 색깔 혹은 다섯 가지 색깔의 나물을 쓴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廣禮覽, 四禮集儀, 四禮便覽, 說文解字, 迎接都監儀軌, 增補四禮便覽, 太常志,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6), 조선왕조 궁중의궤 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종가의 제례와 음식1(김상보, 김영사, 200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필자 김상보(金尙寶)

삼신

정의 아기를 점지하여 어머니 태중胎中에서 길러내며, 순조롭게 아이를 낳게 하여 잘 자라도록 두루 보살피는 신령.

내용 삼신은 우리말 '삼'과 한자어 '신神'이 합성된 낱말이다. '삼'은 생명이나 생명을 낳는 일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생기다'의 옛말인 '삼기다'와 태胎를 가리키는 다른 말을 '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삼신은 생명신 혹은 생명을 낳는 신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기자祈子, 산전産前, 출산, 산후産後, 삼칠일, 백일, 돌잔치 등의 모든 출생의례 과정과 절차에서 삼신은 치성의 대상이 된다. 인간의 탄생과 성장은 어버이의 생물학적 결합과 양육으로만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삼을 '석 삼三'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견강부회일 가능성이 있다. 삼신상에 메와 미역국 그리고 종이 고깔 등을 3개씩 차리는 것도 이러한 오해 때문일 것이다.

삼신은 중요한 가신家神이기는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집과 수태를 기다리는 새댁, 또는 젊은 부녀자가 있는 집안에서 더욱 특별히 떠받든다. 임신, 출산, 육아라는 현실이 삼신 신앙을 강화하는 것이다.

삼신의 신체神體는 대체로 삼신바가지, 삼신단지, 삼신주머니 형태로 나타난다. 이 용기 안에 쌀을 담고, 바깥에 흰 실 한 타래를 둘러준다. 봉안된 쌀은 제물이 아니라 신체 자체로 여겨진다. 곧 삼신의 본질은 곡령穀靈이다. 그러나 삼신만 곡령인 것은 아니다. 곡령은 터주나 성주 등으로도 될 수 있다. 곡식을 단지에 담아 터주로 여기면 터주 단지가 되고, 곡식을 항아리나 종이에 담아서 성주로 여기면 성주독이나 꽃성주 등이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쌀이나 벼를 넣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 쌀을 넣는 것이 원칙인 듯하다. 흰 실은 장수를 상징하는 폐백이다.

바가지, 단지, 주머니 등은 단지 쌀을 담기 위한 용기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천으로 만든 삼신 주머니는 일부 지역에서 남성의 고환을 상징하도록 변형하기도 한다. 충청남도 청양과 아산 등지에서는 삼신 주머니를 간단히 봉제하여 반으로 나누고, 여기에 각각 쌀을 넣는다. 또 여기에 호두 한 개씩을 매달기도 한다. 가을걷이하면, 삼신 신체의 묵은 쌀은 햅쌀로 갈아준다. 털어낸 쌀은 산모를 비롯한 집안 식구들만 먹어야 한다.

삼신을 신체 없이 모시는 지역이나 집안도 많은 편이다. 이른바 '건궁 삼신'이다. 일정한 형태를 지닌 신체는 없지만, 대개 안방 윗목을 '삼신께'라 하여 삼신이 계신 장소로 관념한다. 삼신은 한 집에 한 분만 존재한다. 삼신은 부계父系 혈연의 후손만 책임지고 보살핀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달에 한 지붕 아래에서 출산할 경우는 문제가 없다. 하나의 핏줄을 이은 태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느리와 딸은 같은 달에 한 지붕 아래에서 분만할 수 없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며느리와 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서로 다른 핏줄이기 때문이다.

삼신은 평소에는 안택安宅할 때나 명절 차례를 지낼 때에 모신다. 안택 시에는 성주상 아래에 삼신상을 차린다. 집안에 임신을 원하는 새댁이나 부녀자가 있다면 『삼신경三神經』을 읽는 등 더욱 각별한 정성을 들인다. 또 명절 차례에 집안의 신령들을 위한다면, 삼신께에도

삼신당세기 | 경북 안동 | 2006 | 김명자

삼신단지 | 경북 안동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제물을 갖다 놓는다. 이때 삼신 시루는 흰무리떡으로 한다. 이렇게 삼신을 위하다가 임신부가 산통産痛을 시작하거나 난산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삼신에게 간절히 기도한다. 출산 후에는 초이레, 두이레, 세이레마다, 때로는 백일과 돌에도 정성을 들인다. 아이가 잔병치레를 해도 정성을 들인다.

삼신상은 상床에 차려도 되지만, 짚을 깔고 그 위에 진설하기도 한다. 간혹 삼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전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여성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의 한 단면이 투영된 민간의 사고일 뿐이다. 그보다는 볏짚이 지닌 생산과 성장의 상징을 삼신의 본성과 연결하려는 관념에서 비롯된 민속 관행일 것이다. 불임 여성이 다른 산가産家의 삼신짚을 훔치려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삼신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짚을 '삼신짚'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삼신과 짚의 상징적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집안에 임신부가 있다면 깨끗한 짚을 잘 추려서 삼신짚을 마련하고, 이를 안방 시렁 위나 방문 위에 매달아 놓는다. 삼신상을 차릴 때는 삼신짚을 반드시 한 일一자로 펴서 깔고, 그 위에 제물을 놓는다. 이때 짚의 이삭이 달렸던 방향에 유의하여, 벼 이삭이 달렸던 부분을 방 뒤쪽이나 동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삼신짚을 옮길 때에도 이삭 맺는 부분은 손으로 잡지 않도록 조심한다. 삼신짚은 아이가 백일이 되면 대개 불에 태우지만, 때로는 오래 간직하면 좋다고 하여 돌까지 보관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삼신상을 차려 놓고도, 산실 바깥에 삼신수부상을 삼신상과 비슷하게 차려 놓는다. '삼신수부'란 삼신을 보조하는 하위 신령이다. 또 삼신상을 펼쳐 놓은 아기 아버지의 웃옷이나 아기의 배냇저고리 위에 차리기도 한다.

삼신상에는 메, 미역국, 청수 그리고 간장이나 실타래도 올려서 삼신께에 차려 놓는다. 술은 올리지 않는다. 미역국은 출산 및 산모와 관계된 중요 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린다. 미역국은 미역과 간장만으로 끓인다. 이때의 미역은 산각, 해산미역, 해복미역 등으로 불린다. 미역은 산달에 구입해야 한다. 미리 사다 놓았다가 달을 넘기면 해산도 늦어진다는 이유에서이다. 미역은 아무리 길어도 접거나 꺾지 않고 그대로 사 와서, 아이들 손이 타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한다. 아이들이 미역을 떼어먹으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미역 먹은 아이를 물어뜯는다고 한다. 해산미역을 산모에게 깨끗한 상태로 온전히 잘 먹이기 위한 이야기일 것이다.

삼신상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삼신상에 올린 제물, 특히 삼신메는 산모가 꼭 먹는다. 만일 남게 되더라도 집안 식구만 먹어야 한다. 삼신메는 대문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또한, 삼신메는 비린 것과 같이 먹지 않는다. 특별히 삼신메를 수태 가능한 젊은 여자가 먹게 하지 않는다. 산가의 삼신이 그 여자에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달에는 미역, 간장, 쌀 등을 집 바깥으로 내가지 않는다. 특히 다른 임부가 있는 집안에 주면 삼신이 매우 서운해한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양친 부모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 삼신이 관여하고 보살피며 돕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되는 일이 없다. 출생의례의 모든 과정에 삼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출생의례에서 삼신은 잠시라도 배제될 수 없다. 특히 위기나 난관에 봉착하면 더욱 삼신에게 간절히 빌고 의지한다.

참고문헌 가정신앙과 제물(이필영, 역사민속학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무속의 세계(최길성, 정음문고, 1984), 삼신받기 연구(정래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삼신신앙에 나타난 생명 이해에 관한 연구(박일영, 한국민속학보10, 한국민속학회, 1999),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이필영(李弼泳)

삼신받기

정의 '자연계의 생명력'을 '집안의 생명력'으로 끌어들여 부계父系 자손을 보려는 적극적인 기자祈子 행위로서 삼신을 자연계自然界로부터 다시 집안으로 모셔 오는 행위.

내용 아기를 점지하고 보살피는 생명령을 '삼신'이라고 한다. 한 가정에 삼신은 한 분만 있어서 하나의 성

씨姓氏만을 보살핀다. 부계 혈연을 이을 며느리는 삼신이 보살피는 대상이지만, 다른 성씨의 혈연을 이을 딸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만큼 삼신과 부계 혈연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런데 이러한 삼신이 집안을 뜨면 임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아기를 점지해 줄 삼신이 부재중이기 때문이다.

삼신이 집을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식구들이 모르는 상황에서라도 삼신을 섭섭하게 하면, 삼신은 삐쳐서 슬며시 몰래 집을 나가버린다. 집안이 시끄럽거나 부정不淨이 들어도 그렇다. 이때는 삼신이 피난避難 목적으로 집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가출 특성은 가신家神의 하나인 성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삼신이 나가도 식구들은 삼신의 부재를 눈치 채지 못하고, 며느리의 불임만 걱정하고 탓하게 된다. 집안 식구들은 그 원인을 대체로 알지 못하거나 막연하게 짐작만 할 뿐이다. 마침내 식구들은 답답한 나머지 무당이나 스님에게 불임의 원인을 묻는다. 그러면 삼신의 가출 여부 판정은 그들이 해 준다.

만일 삼신이 집을 떠났다는 판정을 받으면, 무당(또는 스님)의 지시 또는 권유로 집안 식구들은 삼신을 모셔 올 채비를 서두른다. 그러나 삼신이 가출한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삼신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른다. 삼신이 간 곳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다. 삼신은 인간계에서 자연계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다시 간 것이다. 즉, 집 나간 삼신을 어딘가에서 찾아서 그대로 다시 모셔올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집 나간 삼신을 찾는 대신, 자연에 가득 차 있는 생명력이나 그 생명력의 일부를 삼신으로 신격화·개념화하여, 자기 집안의 삼신으로 좌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삼신받기의 본질이다.

삼신받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산의 산신과 물의 용왕에게서 삼신을 받는 것이다. 산중의 샘이나 계곡 물가는 삼신받기를 위한 장소로 가장 선호된다. 산이 지닌 원초적 종교성과 더불어 물이 지닌 생명력이 분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수태를 원하는 여인은 산신과 용왕에게 삼신을 받아 달라고 요청한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직접 삼신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산신과 용왕을 매개로 하여 자연으로부터 생명력, 곧 삼신을 부여받고자 하는 것이다. 산신과 용왕이 여인에게 직접 아기를 점지해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산천에 자식을 구하는 치성기자致誠祈子와 산천 신령으로부터 삼신을 받는 것은 그 성격이 다르다.

둘째는 어떤 자연물이나 동식물 그리고 임산부가 지닌 생명력을 불임 여성과 그녀의 가정에 상징적으로 옮겨서 임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다. 이들 생명력은 간혹 삼신 그 자체 또는 다른 종류의 삼신으로도 여겨진다. 달 삼신, 은행나무 삼신, 모시 삼신, 개 삼신, 소 삼신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달 삼신은 달이 지닌 생명력의 화신化神이다. 차고 기우는 달의 일정한 주기성은 삶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영원한 생명과 재생再生의 상징이다. 특히 음력 정월 대보름의 달은 더욱 그러하다. 이를 생리 주기를 가진 여성이 받아들여서 생명을 잉태하고자 한다. 은행나무와 모시도 생명력을 대표하는 식물이다. 각각이 지닌 다산성과 생장력이 삼신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개의 다산성도 불임 여성에게는 부러운 것이다. 소는 임신 기간이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여, 소 삼신은 사람 삼신이라고도 간주된다. 개나 소가 새끼를 낳는 장소에 불임 여성의 치마를 깔아 놓고, 출산한 후에는 그 치마를 말려서 입는다. 이렇게 하면 개 삼신이나 소 삼신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삼신받기는 아니지만, 산가産家의 충만한 생산력을 불임 여성이 수용하려고 하는 일도 있다. 곧 "불임 여성이 출산한 집에 가서 첫국밥을 끓여주고 산모와 같이 먹으면, 삼신이 샘을 내서 그녀에게도 아기를 점지해 준다."라거나 "아이를 낳은 집에 가서 출산 시에 깐 짚이나 대문 옆에 치워 둔 금줄을 몰래 훔치면 더욱 효험이 있다."라는 등의 풍습이 있다. 또한, 어떤 불임 여성은 산모의 피가 묻은 속곳을 입고 진자리(아기가 태어난 자리)에 앉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출생의례에서 불임을 극복하고자 수태를 기원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삼신받기는 일반적인 치성기자와는 다르다. 신불神佛이 인간의 정성을 가상하게 여겨 아기를 점지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산천山川의 신령에게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력인 삼신을 자신의 집안으로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물이나 동식물의 생명력을 자연의 삼

신으로 여기고, 이를 인간의 삼신으로 전이시키려는 노력도 있다. 곧 자연의 생명력을 인간의 생명력에 이전하거나, 그것을 인간의 생명력으로 활용하려는 신앙적 노력이 삼신받기이다. 그리고 한집안의 생명력을 신격화한 것이 삼신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69~1994),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이필영(李弼泳)

삼신상

정의 아이를 점지해 주고, 아이의 양육과 산모의 건강을 관장하는 삼신에게 차리는 상.

내용 삼신은 기자祈子의 대상이며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다. 기자의 대상으로 자식이 귀한 집에서는 삼신을 받아 모신다. 삼신의 신체神體는 단지·바가지·주머니·버들고리 등으로, 그 안에 쌀이나 한지를 넣어 안방 윗목이나 아랫목에 시렁을 만들어 좌정시키며 설, 추석, 정월 대보름 같은 명절이나 개인이 기원하고자 할 때 신체 앞에 삼신상을 차려 비손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안방에 삼신상을 차려 치성을 드린다.

출산과 관련하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차리기도 하지만 대개 사흘째 되는 날 삼신상을 차려 아이가 무사하게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기원한다. 특별히 산모가 초산初産이거나 난산難産일 경우에도 출산일에 삼신상을 차려 산모의 순산을 빈다. 개인에 따라 출산 사흘 뒤부터 이레(7일)마다 일곱이레(49일)까지 삼신상을 차려 정성을 들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레 또는 세이레(삼칠일)에 그친다. 그리고 백일과 돌에도 삼신상을 차려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빈다. 그 외, 특별한 날과 관련 없이 아이가 아프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보챌 경우, 삼신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 집안에 따라서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도 생일마다 삼신상을 차리기도 한다.

삼신상 | 국립민속박물관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과거에는 산실産室 바닥에 짚을 깔았다. 출산 후 이 짚에서 피가 묻지 않은 깨끗한 짚을 추린 것을 '삼신짚'이라고 하며, 이 짚 위에 삼신상을 차렸다. 삼신짚은 산실 한쪽 구석에 세워 놓았다가 이레 또는 세이레가 지난 후, 손 없는 방향에 버리거나 태운다.

삼신상에 올리는 제물은 쌀(밥), 미역(국), 실타래, 정화수 등이다. 집안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삼신상에 올리는 곡식은 반드시 흰쌀로 준비한다. 그래서 쌀이 귀한 집에서는 보리밥을 하는 중간에 보리밥이 끓어오르면 그 한가운데에 쌀을 한 움큼 넣어 밥을 따로 지어 삼신상에 올렸다. 미역국을 올릴 때에도 '맨미역국'이라고 하여 미역을 기름에 볶지 않으며 따로 간도 하지 않는다. 미역을 기름에 볶지 않고 끓이는 것은 기름이 산모의 젖을 말라붙게 한다는 속신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삼신상에는 간단히 정화수만 떠놓고, 이레마다 밥과 미역국을 차린다.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백일과 돌에는 삼신상에 올리는 기본적인 제물 외에 수명과 복을 상징하는 백설기, 수수팥떡 등을 차리기도 한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찰밥),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올리기도 한다.

삼신을 세 분의 신으로 여겨 밥 세 그릇, 미역국 세 그릇, 정화수 세 그릇 등 제물을 숫자 '3'에 맞추어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출생과 관련한 신으로서 삼신의 역할을 부각하여 '삼신[産神]'으로 표기하기도 하며, 삼신의 '삼'을 태胎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이해하기도 하므로, 제물을 올리는 개수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가신을 위한 제물은 복을 받는다고 하여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산 전후 삼신상에 올린 밥과 미역국은 특별히 산모가 먹어야 아이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며 산모의 유량이 풍부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삼신상에 차려 두었던 쌀과 미역국으로 산모에게 첫국밥을 끓여준다. 이때 먹고 남긴 음식도 산모는 따로 두었다가 다음 끼니때 챙겨 먹는다. 삼신상에 올린 정화수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산모가 마시거나, 밥을 지을 때 사용해야 한다. 이 물을 함부로 버리면 아이의 복이 나간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삼신의 성격에 따른 금기 때문에 삼신상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삼신은 질투가 많은 신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래서 친정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친정집에서 삼신상을 차릴 수 없다. 그리고 삼신을 '삼신할아버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 신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성 조상신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혈족血族을 보살펴 준다고 여긴다. 그래서 삼신은 부계혈족父系血族을 중심으로 자손을 돌보기 때문에 만약 친정에서 삼신상을 차리면 친정과 시댁의 삼신이 서로 질투해서 '삼신도둠[삼신다툼]'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삼신도둠'은 아이가 아프거나 모유를 먹지 않는 식으로, 삼신이 아이에게 해코지해서 표시를 낸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아이 낳기를 바라거나 순산을 바라는 사람들이 삼신을 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삼신상을 차려 자손 점지를 기원했으며, 출산을 앞둔 산모가 산기産氣를 느껴 진통이 심해지면 삼신상을 차려 순산을 빌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삼신상을 차려 정성을 모았다. 삼신상에 올린 제물은 산모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가옥구조의 변동 및 핵가족화 같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다른 가신과 마찬가지로 삼신에 대한 신앙은 약화하였다. 그렇지만 생명과 연관된 삼신신앙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고 변화를 겪으며 지속하고 있다. 특별히 삼신을 믿지 않더라도, 아이를 돌본다는 의미가 관념화되어 있어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으로 아이의 기념일인 백일에 삼신상을 차려 백일을 기념하며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풍속은 현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민속신앙, 그 믿음과 섬김의 세계(임재해,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 지식산업사, 1994), 서미마을 삼신신앙의 위상과 강한 전승력(백민영,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국민속대관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인이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백민영(白旻永)

삼실과
三實果

정의 제사의 제물로 올리는 세 가지 과일.

역사 고대 제사에서는 포脯와 해醢가 가장 기본 제찬祭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포와 해 대신 과일[果]이 기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밥과 국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과일은 포, 술과 함께 올리고 있다.

과일에는 생과生果와 조과造果가 있는데, 이를 합하여 과일의 가짓수를 말한다. 『가례家禮』와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과果'로만 기록되어 있어, '조율이시棗栗梨柹', '홍동백서紅東白西' 등의 진설 방식은 후대에 생겼을 것이다. 제사상의 제5열에 기본이 되는 과일은 조율棗栗, 곧 대추와 밤뿐이었다.

내용 전통적으로 제사의 과일은 대추·밤·감(홍시 또는 곶감)·배와 수박, 사과 같은 계절 과일이다. 지산地産으로 그릇 수를 음수인 짝수로 올린다. 제사의 필수 과일로 대추·밤·감·배를 꼽으나, 생과는 그 계절에 구하기 쉬운 것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과나 박계朴桂 등의 조과는 밀가루나 쌀가루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계절에 구애를 받지 않고 1년 내내 올릴 수 있다.

제사상의 진설은 동서남북이나 좌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쪽을 기점으로 진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서율동棗西栗東'이어야 하지만, 신주를 밤나무로 만들고 귀신은 음陰이어서 서쪽이 음의 방향이므로, '조동율서棗東栗西'를 따른다고 한다. 홍동백서의 진설 원리는 오행설을 따른 것이다. 붉은색은 동쪽을 상징하므로 붉은 과일은 오른쪽인 동쪽에 놓고, 흰색은 왼쪽인 서쪽에 놓는다. 약과 등 조과는 이 과일들의 사이에 놓는다.

삼실과 | 충남 당진 충장공 남이흥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불천위不遷位 제사를 지내는 서른 두 곳 중 대추·밤(서쪽을 기점)의 순서로 진설하는 경우가 열여덟 곳, 밤·대추의 순서로 진설하는 경우는 열네 곳이다. 홍동백서와 조동율서의 진설을 기준으로 보면 밤·대추의 순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셈인데, 안동 지역의 경우 홍동백서는 노론老論의 진설 방식이라 한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는 서쪽부터 '조율시이'로 놓고 이어서 오른쪽에 약과, 유과 등의 조과를 놓는다.

경상남도 거창의 초계정씨 중 동계 정온鄭蘊의 종가에서는 1년에 열한 번의 기제사와 설, 추석 차례를 지내는데, 과일은 대추·밤·배·곶감의 순으로 올린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예서禮書에서 기름이 튀긴 것은 제사에 쓰지 않는다 하여 조과를 제사에 써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조과들을 생과와 함께 올렸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조과의 재료가 쌀가루나 밀가루이므로 미식米食이나 면식麵食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조과가 생과를 모방하여 만들어졌으므로 과果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참고문헌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전통제사상의 진설규범과 관행 비교연구(윤덕인, 비교민속학28, 비교민속학회, 2005), 제사와 제례문화(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수실, 한국국학진흥원, 2005), 종가의 의례와 음식1-의성김씨 학봉 김성일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3), 종가 이야기(이연자, 컬처라인, 2001),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윤덕인(尹德仁)

삼우제
三虞祭

정의 재우제再虞祭를 지낸 다음의 첫 강일剛日에 지내는 제사.

내용 삼우제三虞祭는 재우제를 지낸 다음의 첫 강일剛日의 질명質明(날이 밝을 무렵)에 집에서 지낸다. 강일은 십간十干에서 양陽에 해당하는 홀수 간지, 즉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이 들어간 날로, 굳센 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은 장사를 지내고 3일째 되는 날에 지낸다. 삼우제의 의식과 절차는 초우제·재우제와 같다. 그리고 축문에 '재우'를 '삼우'로, '상향尙饗'의 위에 '성사成事'라고 쓰는데, 이는 신으로 모시는 일을 완결하였다는 뜻이다. 삼우제를 마친 다음에는 성묘를 간다. 요즈음에는 삼우제를 지낸 후, 묘 앞에 구덩이를 파고 혼백을 묻기도 한다. 궤연几筵에 혼백을 모시면

삼우 성묘

삼우 성묘 강신

삼우 성묘 참신

삼우 성묘가 끝나고 흰 백을 묻음

삼우제 | 경북 청도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삼우제까지는 끼니때마다 상식上食을 올린다. 그러나 삼우제를 지낸 뒤에는 상식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만 올린다.

특징 및 의의 삼우제는 말 그대로 세 번째로 지내는 우제이다. 삼우제를 지냄으로써 우제는 끝이 나게 된다. 삼우제는 재우제를 지낸 다음의 첫 강일에 반드시 집에서 지내야 한다.

참고문헌 葛庵集, 四禮便覽, 개정증보판 한국 의례의 연구(송재용, 박문사, 2010).

필자 송재용(宋宰鏞)

삼일장
三日葬

정의 사람이 운명한 지 사흘 만에 장사지내도록 정한 장기葬期 규정.

역사 삼일장三日葬이 제도적으로 규정된 사례는 없다. 원삼국이나 삼국시대의 기록에도 삼일장은 찾을 수 없다. 또한 『고려사高麗史』에는 국상일 때 백관들이 사흘 간 현관소복玄冠素服하는 일이 많았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는 업무를 위한 것이지 삼일장의 의미로 읽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사』에서는 염제신廉悌臣(1304~1382)이 삼일장을 하였음을 기록하고, 985년(성종 4) 6월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정하면서 공·후 이하는 3일 만에 장사하도록 정한다. 그런데 1339년(충숙왕 8)이 되면 감찰사에서 "옛날에 부모의 장삿날을 길게 정하는 것은 예로서 장사를 지내기 위함인데, 지금은 사대부들이 삼일장을 하니 완전히 예에 어긋난다."라면서 위반하는 자는 벌할 것이라고 금령을 발표하여 고려시대에도 삼일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시대가 되면 1395년(태조 4) 헌사에서 "지금부터 현직 관리와 산관散官(일정한 사무가 없는 벼슬아치)을 막론하고 삼년상을 마치게 하고, 가묘의 제도를 밝히며, 삼일장과 화장을 금하되, 모두 석 달 또는 달을 넘겨 장사 지내는 제도를 행하도록" 상소하자 왕은 의논하여 아뢰게 한다. 1411년(태종 11) 조영무趙英茂(?~1414)가 "장모상을 당하자 연내에 길일이 없다는 이유로 삼일장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지만, 이는 교금敎禁(나라에서 교서를 내려 금함)이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다." 이어 1417년(태종 17) 장사제도를 의논하면서 "고려 때 삼일장이 일부 있었으나 옛 법에 어긋나므로 대부大夫는 3개월, 사士는 유월장踰月葬(달을 넘겨 장사지내는 일)을 제도로 삼을 것을 진정하니 임금이

좋은 법"이라고 허락한다. 이후 삼일장의 기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면, 제도상의 장사기간은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월장에 대한 원래 해석이 날짜로 반드시 한 달(29일 혹은 30일)을 넘겨야 하지만, 날 수는 차지 않았어도 달력상 월이 바뀌면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실제 유월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말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일제강점기가 되면 사정은 매우 달라진다.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1919년 이후 외형상 내선융화內鮮融化(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내세우면서 철저한 민족문화 말살정책을 펴는 가운데, 문화적 전통으로 전승되던 관혼상제를 허례허식이자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1934년에 의례 개조를 위해 제시한 것이 「의례준칙」이다. 이 준칙은 전통적인 의례의 큰 틀은 유지하였지만, 장일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상기喪期(이때의 상기는 업무를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함)는 14일, 복기服期(복을 입는 기간으로 전통적인 상기와 동일)는 1~2년을 허용하는데, 복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한다. 그 상당 부분이 형식화되었지만, 전통이 완전히 말살되지는 않는다.

1969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였는데, 장일은 5일 이내로 확정하고, 상기(이때의 상기는 전통적으로 복을 입는 기간을 말함)는 부모·조부모·배우자는 1년, 그 외는 장일로 규정하는 등 「의례준칙」보다 더 형식화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1973년 5월 규제조항을 강화한 「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면서 장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일 이내로 하고, 부모·조부모·배우자는 100일, 그 외는 장일까지로 더욱 단축시킨다. 이 규정이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개정되면서도 1973년의 3일장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내용 『예기禮記』에 따르면 "죽은 지 3일이 지나 염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흘째에도 살아나지 않으면 역시 다시 살아나지 않으므로 사흘이 지나 염하는 것을 예로 삼는다."고 하였다. 또한 『가례家禮』에는 "상구喪具를 마련하지 못하면 3일이 지나도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하여 그 기간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는 예서에서는 소생을 기다리는 효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삼일장은 불가능하고 최소한 4일은 넘겨야 장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예기』에서는 "천자는 7일이 지나 빈을 하고, 7개월이 지나 장사를 치르고, 제후는 5일이 지나 빈하고 5개월이 지나 장사하며, 대부사서인은 3일이 지나 빈을 하고 3개월이 지나 장사를 지낸다."고 신분에 따라 장기의 차이를 두고 있다.

「가정의례준칙」에서 규정한 삼일장의 본래 의미는 운명 후 3일 이내에 장사를 치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1년 혹은 100일의 상기를 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신을 매장 혹은 화장을 하여 모시면 장례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여겨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삼일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장례식장에서 장례에 필요한 용품 등을 한꺼번에 판매하거나 대여해 주어 준비기간을 단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실제 삼일장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특히 기독교 계열의 장례식에서는 일요일에 예배나 미사를 하므로 발인을 할 수 없어 하루를 연장하여 사일장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밤이나 새벽 시간에 운명하면 장례 준비를 위해 사일장 혹은 오일장으로 하는 사례도 많다. 우리나라의 홀수 선호 사상으로 인해 장례 기간 역시 홀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 삼일장·오일장·칠일장·구일장 등을 치르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장조차 오일장으로 규정하듯 7일 이상의 가족장은 쉽지 않다. 현대사회에서도 전통 유교식 상례를 행하는 집안에서는 칠일장, 구일장, 십육일장, 유월장을 하기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택일을 하여 장삿날을 잡았기에 반드시 홀수 날짜에 장사를 지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단지홀수를 선호하는 관념이 있어 홀수로 하면 좋다는 믿음이 있었을 뿐이다.

특징 및 의의 상기 혹은 장기葬期는 고인이 살았을 때에 누렸던 사회적 명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명인사일수록 장례기간이 길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짧아진다. 장례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문상객의 범위와 수가 넓고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인의 생시 역할을 계승하는 기간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크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안정시키는 기간 역시 길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고려시대에 삼일장이 드물게 있었으나, 유교식 상례가 문화적 전통으로 정착된 조선시대에는 삼일장이 없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의례 간소화 정책과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5일 이내의 장기를 강요하였고, 1973년부터 삼일장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현대적 개념의 삼일장은 1973년부터 국가의 강제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길례吉禮는 당일을 제외하지만 흉례凶禮는 당일을 포함하여 날짜를 계산한다. 따라서 삼일장의 기간은 매우 짧아 장례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가정의례준칙」에서 규정하였음에도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禮記,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이 현행상례에 미친 영향(김시덕, 역사민속학12, 역사민속학회, 2001), 건전가정의례준칙, 의례준칙, 장례의 역사(박태호, 서해문집, 2006),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삼칠일
三七日

정의 아이가 태어난 지 스무하루가 되는 동안, 또는 그 날.

역사 삼칠일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고조선古朝鮮』조의 단군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웅(桓雄)이 세상을 다스릴 당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며 환웅에게 기원했다. 이에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며, 이것을 먹고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환웅의 말을 따랐는데, 삼칠일 동안 금기를 지킨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처럼 단군신화에서 삼칠일은, 인간이 되기 위해 금기를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민간에서 비단 출산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에게 중대사가 있을 때 순조로운 목적 달성을 위해 삼칠일치성이나 불공을 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대개 초삼일이 되면, 산모와 아이는 '첫 목욕'을 한다. 이 목욕은 오염된 신체를 정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때부터 산모는 수유授乳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다.

초삼일 이후에는 매 칠일마다 실제적이고 주술종교적인 금기와 의례가 계속된다. 먼저 초이레에는 아이에게 새 저고리를 입히고 한쪽 손을 자유롭게 해준다. 이때 포대기를 새것으로 갈아주기도 한다. 이날 새벽에는 삼신상에 밥과 미역국, 물을 차려놓고 아이의 무병장수와 산모의 빠른 회복, 그리고 순조로운 수유를 기원한다. 삼신에게 올린 밥과 미역국은 산모가 먹는다. 이 날은 시아버지가 아기를 처음 대면하는 날이기도 하다.

두이레에는 아이에게 새옷을 갈아입히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해준다. 첫이레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미역국과 밥, 물을 차려 삼신에게 치성을 드린 다음 산모가 먹는다. 세이레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삼신을 위하고 밥과 국을 산모가 먹는다. 또한 출산 직후 걸어두었던 금줄을 걷고 일가친척이나 마을사람들을 불러서 대접한다. 경남 일부지역에서는 마을사람들이 실과 돈을 가지고 와서 아기의 무사탄생을 축하해주고 안동을 비롯한 경북지역에서는 외할머니가 미역·떡·포대기·저고리 등을 가져오기도 한다.

삼칠일 관행은 지역과 가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가정 형편이 많이 작용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좋은 가정에서는 무려 칠칠일七七日 동안 매 칠일마다 국과 밥을 차려놓고 삼신을 대접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초이레에만 상을 차리거나 이마저 생략하기도 했다. 산모에 대한 대접도 마찬가지여서 부유한 집에서는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건강과 수유에 좋은 갖가지 음식을 먹였지만 빈한한 집에서는 미역국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한 산모가 집 안팎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초이레도 지나기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만 했다.

특징 및 의의 일반적으로 볼 때 삼칠일은 임신과 출산으로 일상에서 분리된 산모와 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신생아를 가족과 친족, 그리고 공동체구성원에게 선보

이는 전이와 통합의 과정이자 절차이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여성은 자식을 바라는 여성의 입장, 임부姙婦의 입장, 그리고 산모의 입장 등 세 번에 걸쳐서 위상이 바뀐다. 여성은 기자행위를 시작하면서 일상에서 일정하게 분리되기 시작한다. 이윽고 임신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일상으로부터 분리되며 점차 분리의 강도를 높여가다가 산월産月에 이르면 그 강도를 한층 고양시킨다. 해산과 함께 여성은 일상으로부터 분리되며 초삼일에 '첫 목욕'이라는 정화의례를 행한 뒤, 초이레에 공식적으로 가족들과 대면함으로써 가족의 성원으로서 복귀한다. 그리고 삼칠일이 되어 금줄이 걷히면서 그녀에게 주어진 금기와 제약이 풀리고 일상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재통합된다.

아이는 두 번에 걸쳐서 위상의 변화를 경험한다. 임신을 통해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다가 출생과 함께 신생아가 된다. 이후 아이는, 가족과 친족, 그리고 공동체구성원들과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통합의 단초를 마련한다. 먼저 초이레에 조부 등을 대면함으로써 직계 가족과 일차적 통합이 이루어지며, 두이레와 세이레에 가까운 친척과 외조모를 비롯한 외가의 성원들을 대면함으로써 친인척 집단과의 통합을 시작한다. 또한 세이레에 가까운 이웃들을 만남으로써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첫 선을 보인다.

한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산월이 되어 임부와 함께 금기를 준수함으로써 일상과 분리를 시작하고 해산하면서 보다 강하게 분리되어 전이기를 경험하다가, 삼칠일에 금줄을 걷으면서 산모와 함께 일상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가족은 출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모에 비해서 '분리—전이—통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산가産家가 소속된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금줄을 치는 순간부터 산가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 '피 부정'이 발생한 산가는 부정한 곳으로 인식되며 그 행위의 주체인 산모는 부정한 존재로 인식된다. 동제 기간에 출산이 예정되면 임부의 거처를 공동체 밖의 피막避幕이나 해막解幕으로 옮기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면모는, 공동체 역시 출산과 함께 이전의 상태에서 분리되어, 언제 부정에 오염될지 모르는 전이의 상태에 돌입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금줄은, 산가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부정으로부터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의 상징이지만,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산가의 부정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리는 삼칠일이 지나고 금줄을 걷음으로써 끝이 난다. 산가의 부정이 해소됨으로써 산가는 다시 공동체에 통합되고, 공동체는 이전의 일상적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강원인의 일생의례(김의숙·이학주, 민속원, 2005), 사람의 한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산속(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한양명,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필자 한양명(韓陽明)

삽
翣

정의 장사 때 상여喪輿의 앞뒤에서 들고 가는 부채 모양의 도구.

내용 삽翣의 용도는 관의 좌우에 세워 해를 가리거나 먼지가 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장사에 삽을 쓰는 것은 사자의 영혼이 지하세계에서 천상세계로 비상하도록 기원하는 의미이다. 중국 한대 이전에는 꿩의 깃털로 삽을 만들었다. 그 이후에는 깃털 대신 네모난 나무판자로 부채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흰 베를 바르거나 화포畫布를 씌우는 것으로 바뀌었다.

삽은 흰 천에 수놓은 문양에 따라 운삽雲翣·화삽畫翣·보삽黼翣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운삽은 운기雲氣,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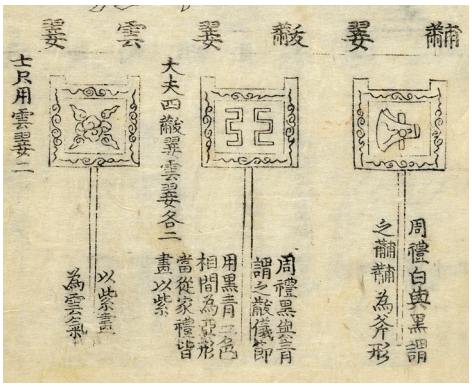

삽선도(보삽불삽운삽) | 가례집람 | 국립민속박물관

삽선(운삽, 불삽) | 경남 김해 | 2007 국립민속박물관

구름 모양 또는 운雲자를 그린 것으로 '화삽'이라고도 한다. 구름은 하늘을 뜻한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인 백은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불삽은 '검은색과 청색이 반반 섞인 빛으로 기己자 두 개를 맞대어 아亞자 모양을 띠고 있다. 보삽은 검은색과 흰색이 반반 섞인 빛으로, 자루가 없는 도끼 문양의 무늬를 수놓거나 그린 것이다.

삽의 숫자는 신분에 따라, 천자는 8개, 왕은 운삽·불삽·보삽 각 2개씩 모두 6개를 쓴다. 대부는 운삽 1쌍, 불삽 1쌍을, 사士는 운삽 1쌍만을 쓰도록 하였다. 삽은 국장행렬에서 임금의 시신을 실은 대여 좌우에 서서 가고, 능지에 도착하여서는 재궁을 가린다.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이후에는 내관과 외관 사이에 좌우로 꽂는데, 순서는 보삽·불삽·화삽 순이다.

국장 때 쓰는 삽은 나무를 활용하여 역사다리꼴로 만든다. 부채처럼 하되 모나게 하며 양쪽의 두 뿔이 약간 높게 한다. 거기에 흰 베를 발라 그림을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모두 자색으로 구름무늬를 그린다. 크기는 넓이가 2척, 높이는 2척 4촌이며, 자루 길이는 5척이고, 검은 대나무를 쓴다. 자루 끝에는 연엽을 달고, 연엽 위에 삽을 설치한다.

특징 및 의의 송사送死에 삽을 쓰는 것은 사자의 영혼이 지하세계에서 천상세계로 비상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 世宗實錄五禮儀, 朱子家禮, 조선초기상장의례연구(정종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필자 정종수(鄭鍾秀)

삽시정저
插匙正箸

정의 조상의 혼령이 음식을 먹기를 바라면서 숟가락을 밥에 꽂고 젓가락을 바로 놓는 절차.

역사 『주자가례朱子家禮』,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사시제四時祭」 유식侑食 조가 모두 똑같이 서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부가 올라가 밥에 숟가락을 꽂고[삽시반중插匙飯中], 서쪽이 자루가 되게 젓가락을 가지런히 하고[서병정근西柄正筯], 향안의 서남쪽에 선다. 『사례편람』에서는 '서병정근'의 주석에서 "시저그릇 위에 놓는다."라고 하였다.

내용 음식을 권하는 유식에는 '첨작'과 '삽시정저'가 있다. 삽시정저는 첨작이 끝나면 주부가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메 그릇의 중앙에 꽂는 절차이다. 젓가락을 가지런히 하여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시저그릇 위에 걸친다. 지방에 따라 젓가락을 고른 뒤 어적이나 육적 위에 가지런히 옮겨 놓기도 한다. 숟가락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삽시정저가 끝나면 제주는 두 번, 주부는 네 번 절한다.

경북 안동 농암 이현보 종가

경북 포항 경주 손씨 묘역

삽시정저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삽시정저는 종헌이 끝나고 음식 드시기를 권하면서 첨작한 다음 밥과 반찬을 드시도록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의식으로 조상을 생전과 마찬가지로 받들어 모시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增解,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지두환(池斗煥)

상객
上客

정의 신랑이 장가들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갈 때, 혹은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시집으로 갈 때, 신랑집과 신부집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어른들.

내용 예로부터 혼례식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댁으로 가서 치르게 되는데, 이때에는 신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집의 어른들도 동참한다. 혼인은 신랑·신부만이 치르는 것이 아니고 양가 어른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문 대 가문이 인연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양가를 대표하는 어른들도 참석하게 된다. 혼례식 때에는 신랑 쪽의 상객이 참석하게 되고, 우귀于歸 때에는 신부 쪽의 어른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때 동행하여 참석하는 양가의 어른들이 상객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 '상각'이라고도 한다.

상객은 보통 아버지나 백부, 혹은 숙부가 되지만, 조부가 살아계시면 조부가 상객으로 간다. 상객은 체통을 세우느라 부채를 들고 가는데, 신부집에 들어갈 때 내외를 하느라고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가는 도중에는 함구하는데, 입을 열면 복이 나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신부집에 이르면 신부집에서 상객을 모실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일행을 임시 대기처로 안내한다. 이곳을 '정방' 혹은 '사처'라고 하는데, 신부집 근처에 마련되어 있다. 신랑 일행이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바쁘게 움직여 이들이 요기할 음식과 술을 갖다 나른다. 이때 신부집에서는 상객을 맞이할 대반對盤을 파견하는데, 이 대반은 상객과 비슷한 연배의 남자 어른으로 친절하고 예절을 갖춘 사람이 맡는다.

혼례 시간이 되면 신랑과 상객들은 혼례청에 입장하여 엄숙하게 혼례를 지켜본다. 혼례가 끝나면 상객 대반이 와서 상객들을 상객방으로 모셔간다. 그리고 준비한 큰상을 들여와서 대접한다. 그리고 대반이 참석하여 음식과 술을 권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상객은 집이 멀지 않으면 당일에 돌아가지만, 집이 먼 경우에는 하룻밤을 묵어가는데, 이때에는 대접을 극진히 한다.

상객이 떠나기 전에 신랑과 신부는 상객을 찾아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신부댁 어른들도 나와 깍듯이 인사를 나누고 이별한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우귀'라고 하는데,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우귀'지만, 신부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시가에 가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신행간다'고 한다. 신부가 신행갈 때에는 시어른에게 드릴 음식과 폐백을 준비해 간다. 이 행렬에는 신부집의 어른들이 따르게 되는데, 이른바 신부집 상객들이다.

특징 및 의의 혼례 때에 따라가는 상객은 아버지나 삼촌 등 신랑댁의 어른이 참례하는 것이 상례이나 대가족제가 성행하던 조선시대에는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으레 할아버지도 참석했다. 상객은 가장 큰 손님이기 때문에 신부댁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대접했다. 신행 때에는 신부집의 상객들이 따라가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어른들이 동행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 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한국의 전통혼례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향토문화지(여증동, 경상남도, 1989).

필자 배도식(裵桃植)

상견례
相見禮

정의 예비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를 모시고 혼인승낙을 받고, 혼인절차를 의논하기 위해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

역사 사전적인 의미의 상견례相見禮는 공식적으로 만나보는 예, 또는 혼례식이 끝나고 시가 부모를 비롯한 웃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손아래 친척들과 만나 보는 구고례舅姑禮를 말한다. 또 역사적으로는 새로 임명된 사부師傅나 빈객賓客이 처음으로 동궁東宮을 뵙던 의례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혼례에서는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함께 처음 만나서 양가의 분위기와 인품을 살피며, 혼인승낙을 확인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혼인절차를 의논하는 자리를 일컫는다. 따라서 오늘날 혼인절차에서 상견례는 신랑·신부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로 인식된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화의 영향이 급격히 확산했고, 이른바 '만남의 정보화'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청춘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전문 업체가 등장하였고, 혼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수치화하여, 이상적인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업체들은 학력·재력·직업·초혼·재혼·황혼결혼까지 다양한 조건을 분류하여 혼인을 연결해 주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는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웨딩플래너 교육내용을 통해 혼인준비를 위한 '웨딩가이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상견례 택일을 소개하는 항목 또한 있다.

매파를 중심으로 하여 양가의 혼담이 먼저 오가던 중매혼中媒婚이 주류를 이루었던 개화기 이전 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연애혼戀愛婚이 일반화되어, 혼인당사자들의 혼인에 대한 의견합의를 가장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허락받고 혼례식을 올리고자 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상견례의 의미나 절차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과의 첫 공식적인 대면 자리로 특히 결혼정보회사 및 결혼컨설팅 업계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혼인의 절차이므로 신랑·신부와 상담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구의 혼례풍습과는 달리, 한국의 전통혼례에서는 부모들이 자녀혼사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자유연애혼을 하는 자녀의 혼사에서도 부모로부터 혼인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잘 마쳤다는 것은 아직도 양가 부모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시대변화와 맞물려 변용되고 있는 혼례절차에서도 부모 의견을 중시하는 한국혼례문화의 상징적인 의미가 상견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내용 상견례는 예비 신랑·신부의 양가 부모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이다. 상견례 만남 이전에 양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혼인승낙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상견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의 합의에 따른 최종 혼인승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의외로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승낙을 재고하거나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 신랑·신부는 상견례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양가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견례를 위해서는 상견례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 정하기, 상견례 시 대화 내용과 표현방법, 상견례 시 가족소개와 진행절차 등에 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비 신랑·신부는 처음 맞이하는 상견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기회 등이 없으므로, 양가가 처음 대면하는 자리를 부담스럽게 인식하기도 한다. 상견례는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한정식집, 또는 고급 일식집·중식당·양식당 등 조용한 분위기의 장소에 이루어진다. 상견례 장소와 시간은 양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적어도 1~2주 정도 전에 정하게 되며, 장소는 양가의 중간 정도의 위치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나, 양가 부모의 연배가 높은 쪽을 배려해서 장소를 선택하기도 한다. 상견례 시간이나 자리배치 등도 고려하여 예비 신랑이 양가 부모를 상석으로 모시고 예비 신부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며,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배치에 유의한다. 상견례를 약혼식과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때에는 양가의 친지들을 소개하는 절차가 되기도 한다. 양가의 분위기나 가정교육, 가풍家風 등을 알 수 있는 자리이므로 예비 신랑·신부들은 긴장하기도 한다. 상견례에서는 집안의 어른이신 아버지부터 소개하고 어머니와 동행한 형제 순으로 인사를 나눈다. 양가에 결례가 되는 언행은 삼가도록 주의한다. 상견례에서의 음식은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고 깔끔한 음식이면 가능하나, 양가 부모의 음식선호도 고려하여 준비한다.

특징 및 의의 중매혼이 이루어졌던 전통혼례의 절차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자유연애혼을 하는 남녀가 양가 부모로부터 혼인승낙을 받기 위해 상견례 자리를 가진다. 양가 부모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아들과 딸의 혼인승낙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며, 이후 혼례식의 절차를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상견례는 한국의 혼례문화에서 "양가 부모의 승낙을 받은 축복받은 혼례를 치러야 한다."라는 젊은 남녀나 부모들의 의식이 반영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서울 사람들의 혼인, 혼례, 결혼(박혜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혼인준비자들의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연구(주영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31-6, 한국가정관리학회, 2013).

필자 주영애(朱英愛)

상례
喪禮

정의 사람이 태어나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처리하고 가계의 계승을 정상화하는 의례.

역사 고분과 고인돌, 육탈하는 복차장複次葬 등 선사시대부터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형식의 상례가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기록으로도 나타난다.『위지동이전』 고구려조高句麗條의 "혼인하면 곧바로 죽어서 입을 옷을 만든다."라는 기록에서 수의襚衣, 널과 덧널의 존재에서 습襲과 염殮, 그리고 장사하는 날의 택일, 집안에 차리는 빈소殯所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이 다르긴 하지만 1년 혹은 3년의 상복제가 있었고, 신라에서는 504년(지증왕 5)에 상복법 제정, 귀족의 예장禮葬을 시행했다. 또한,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과 무열왕武烈王의 상례에는 빈장殯葬도 행했다.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기록을 통해 유교식 상례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에서는 불교식 화장 중심의 상례가 성행했었다.

고려시대에는 운명하면 집이나 원찰願刹에 빈소殯所를 마련하여 일정 기간 모셨다가 날을 잡아 화장하였다. 그래서 유골을 수습하여 길게는 6년간 권안權安하면서 자손과 승려가 극락왕생을 기원한 후 본장을 하는 불교식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985년(성종 4)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정하고 오례五禮의 틀 속에 흉례로서 상례를 위치시킨다. 그 결과 삼일장을 금하고 13개월에 소상小祥, 25개월에 대상大祥, 27개월에 담제禫祭를 지내는 유교식 상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3년이 너무 길다고 하여 달을 날로 바꾸어 계산하는 일역월제日易月制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으면서 상례 역시 유교식으로 일원화한다. 초기부터 숭유억불정책에 따라 7품 이하 관료에게 의무적으로『가례家禮』를 시험 보게 하고『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1394),『경제육전經濟六典』(1397),『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경국대전經國大典』(1485) 등의 법전을 편찬하여 모든 제도와 의례를 유교식으로 전환한다. 상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결과 16세기 초반부터 이미 조선식 예서禮書들이 등장하였고, 성리학자의 예학 연구와 실학자의 실천예학 연구 등 유학자의 솔선수범으로 유교식 상례는 점차 일반화하기에 이른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유교식 상례는 완전한 조선의 상례문화로 정착하여 조선 말기까지 이어진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화장이 도입되고「의례준칙」(1934)이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상복의 변화, 상기의 단축 등 전통의례를 강제하면서 상례의 문화적 전통이 위기에 봉착한다. 그럼에도 1900년에『사례편람四禮便覽』이 증보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출판되어 문화적 전통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1969년 대한민국 최초로「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과 함께「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고, 1999년 개정된「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현재까지 국가가 간소화를 명분으로 일생의례로서 개인의 의례를 '규제'하였지만, 문화적 전통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로 상기의 단축, 상복의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相助會社의 장례지도사가 상례를 대행하면서 의례의 전문직업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내용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를 처리하는 의례가 상례이다. 그래서 『국조오례의』에서는 길吉·가嘉·빈賓·군軍·흉凶의 오례五禮 중 하나인 흉례凶禮로 상례를 다루었다. 흉례에는 임금이 유언으로 나라의 뒷일을 부탁하는 국휼고명國恤顧命을 비롯하여 총 91개 항목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를 두어 민간의 상례도 제도로 정하였다.

죽음을 보는 종교적 견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시신을 처리하여 이승과 분리하는 것이 의례의 핵심이 된다. 다른 하나는 죽음을 조상숭배를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견해로, 고인을 조상으로 승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 의례를 치른다. 유교식 삼년상이 이러한 의례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신주神主를 모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교식 상례는 19개의 대절차로 구성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소절차가 포함되는데, 대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초종의初終儀: 죽음의 확인 및 상례를 준비하는 절차이다.
②습襲: 1일째 의례로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는 시신처리의 첫 단계이다.
③소렴小殮: 2일째 의례로 시신을 베로 싸서 묶는 절차이다.
④대렴大殮: 3일째 의례로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절차이다. 요즘은 목욕과 습, 소렴과 대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염습殮襲이라 한다.
⑤성복成服: 4일째 의례로, 상주가 상복喪服으로 갈아입고 정식으로 상주가 되는 절차이다.
⑥조弔: 조문을 받는 절차로, 성복 후부터 조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⑦문상聞喪: 상주가 출타 중 부고訃告를 받았을 때 행하는 의례로 상가로 뛰어가는 분상奔喪을 한다.
⑧치장治葬: 장사葬事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등 장사 지낼 준비를 하는 절차이다.
⑨천구遷柩: 발인 전날 영구를 옮길 것을 고하고, 다음날 발인 전에 고인을 영원히 보내는 견전遣奠을 지낸다.
⑩발인發靷: 견전을 지낸 후 상여가 장지로 떠나는 일이다. 중간에 노제를 지낸다.
⑪급묘及墓: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는 절차이다. 먼저 방상시方相氏가 광중壙中의 잡귀를 몰아낸다. 하관下棺하고 봉분을 만들며, 신주에 글씨를 쓰는 제주題主를 하고 제주전題主奠을 올린다.
⑫반곡反哭: 새로 만든 신주와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⑬우제虞祭: 시신을 보내고 영혼을 맞이하여 편안히 한다는 의미의 제사이다. 처음으로 맏상주가 주인이 되어 지내는 흉제凶祭로,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초우 후 유일柔日, 혹은 다음날에 재우再虞, 그다음 날 혹은 강일剛日에 삼우三虞를 지낸다. 삼우제 때 혼백을 산소에 묻고 성묘한다.
⑭졸곡卒哭: 삼우 후 강일에 지내는 제사로 무시곡無時哭을 그쳐 슬픔의 강도를 줄이는 의례이다.
⑮부제祔祭: 제주한 고인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었음을 고하는 의례이다.
⑯소상小祥: 1주기 제사로 추모와 상주의 슬픔을 경감하는 의례이다. 연복練服이 슬픔이 줄었음을 상징한다.
⑰대상大祥: 운명 후 2주기에 지내는 제사로 빈소를 철거하여 탈상한다. 소복이 슬픔의 감소를 상징한다.
⑱담제禫祭: 탈상 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한 시절을 더 기다린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로 27개월째에 지낸다. 담복禫服이 이를 상징한다.
⑲길제吉祭: 사당의 신주를 상주의 이름으로 바꾸고, 당일에 개제한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친진親盡한 신주를 체천遞遷하거나 매주埋主하는 상례의 마지막 절차이다. 『가례』에는 없으나 『의례儀禮』「사우례士虞禮」에 따라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사례편람』에서 보충하였다. 길제를 마치면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간다.

신주를 모시지 않으면 신주와 관련된 습과 염의 절차가 통합되고, 천구·부제·길제 등의 대절차가 생략되어 약 15~16개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작주作主, 제주, 제주전과 같은 소절차도 생략된다. 그리고 신주를 모실 때는 대렴을 해야 죽음을 인정하고 우제를 지내 조상신으로 인정하지만, 신주가 없을 때는 운명과 동시에 죽음을 인정하고 성복하면 곧바로 조상신으로 인정하는 차이가 있다.

천구

견전

상복을 입은 상주들

상례 | 충남 태안 | 1961 | 국립민속박물관

상례는 고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이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여 가계 계승을 정상화하는 의례적 장치이기도 하다. 초종의에서 급묘까지가 죽음을 처리하는 장사葬事라면, 우제에서 길제까지는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하고, 상주가 일상으로 돌아와 가계를 계승하는 상례喪禮였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삼년이라는 기간을 요구한다.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졸곡卒哭에서 무시곡無時哭을 그치고,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에서 역복으로 상주의 슬픔을 경감하며, 빈소殯所를 철거하여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한다. 또한, 담제를 지내면서 완충 기간을 두고, 길제를 지내면서 상주의 의무를 마친 주손胄孫으로 주인의 역할을 바꾸면서 삼년상을 마무리한다.

지역사례 유교식 상례의 근본은 차이가 없으나, 환경과 상황 및 지역에 따라 그 시행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가례家家禮'라고 하여 집안, 지역, 학자에 따라 의례가 다르지만 세부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영남지역에서는 주부主婦가 길제 때 원삼에 족두리를 쓰는데, 이것은 새로운 주손과 집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영남지역에서는 관을 유택幽宅이라고 하여 반드시 맏사위가 준비하는 것으로 여긴다. 경기도 가평 등의 지역에서는 조릿대라는 봉을 들고 '회다지'를 한다. 기호지역에서는 관을 제거하고 매장하는 퇴관退棺 혹은 탈관脫棺을 한다. 서남 해안에서는 초분草墳을 한다.

유교식 상례가 문화적 전통이 되는 과정에서 '사잣밥', '취토', '회다지' 등과 융화하면서 지역 특성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진도의 '진도다시래기', 전라도의 씻김굿, 중부지역과 경상도 및 강원도 영동지역의 오구굿(진오구굿) 등이 그것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상례의 특징은 유교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 조선의 고유문화와 융화하여 우리 고유의 유교식 상례로 변화하고, 이것이 상례의 문화적 전통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상례는 고인, 영혼, 조상신, 상주라는 네 개의 주체가 등장하여 상례를 구성한다는 주체론으로 구조분석을 할 수 있다. 첫째, '고인을 위한 의례'는 시신 처리를 위한 의례로, 상례의 초반부에 등장한다. 둘째, '영혼을 위한 의례'는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전 단계의 영혼과 관련된 의례이다. 셋째, '조상신을 위한 의례'는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의례로 매장 이후에 집중된다. 넷째, '상주와 그의 공동체를 위한 의례'는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난다. 이러한 네 개의 주체를 위한 의례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3년간의 대서사시를 엮어나간다.

지금까지 상례는 효의 실천이라는 철학적 의미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상례는 구성원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는 의례로 해석할 수 있다. 상례는 죽음의 충격을 완화하고 죽은 자에 대한 애통과 아쉬움의 여운餘韻을 표

현하는 장치이다. 여운은 슬픔이 줄어드는 '점차'와 차마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차마'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여운은 첫째, '3'과 관계 깊다. 초혼할 때 반드시 세 번 불러야 하고, 3일에 걸쳐 시신 처리를 하며, 3일이 지나야 죽음을 인정하고, 세 단계를 거쳐야 조상신으로 승화된다. 둘째, '반복과 추가'의 과정을 거친다. 소상을 지내면 다시 대상을 지내야 하고, 다시 미더워 담제와 길제를 지내 마무리한다. 이처럼 상례는 고인을 보내는 아쉬움,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아쉬움을 여운으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상례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이기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특히 요즘 장례식장의 장례에서는 그러한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종교의 상례 역시 기본 틀은 전통상례와 닮은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諺解, 四禮便覽, 士儀, 喪禮備要, 유교의 상제례에 담긴 생사의식(김기현, 유교사상연구15, 한국유교학회, 2001),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민속원,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CELEBRATIONS OF DEATH(Richard Huntington · Peter Metcalf, Cambridge Univ Press, 1979), THE RITES OF PASSAGE(Arnold Van Gennep, Monika B. Vizedom, Gavrille l. Caffee, Univ of Chicago Press, 1960).

필자 김시덕(金時德)

상례비요
喪禮備要

정의 조선 중기의 예학자 김장생金長生(1548~1631)이 친구 신의경申義慶(1557~1648)이 지은 초고草稿를 바탕으로 수정·첨삭·보완하여 완성한 상례喪禮에 관한 실천적 예서禮書.

상례비요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2권 1책의 목판본이며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상례비요喪禮備要』는 『가례家禮』를 위주로, 고금 제가諸家의 예설을 참고하여 초상初喪에서 장제葬祭까지의 모든 상례의식을 알기 쉽게 기술한 예서이다. 『상례비요』의 초본은 원래 김장생의 친구로 함께 다년간 『가례』를 강론하였던 신의경이 저술한 것을 김장생이 교정·첨삭·증보한 것이다. 1620년에 전라도 유생들이 1차로 간행하였고, 다시 김집金集(1574~1656)과 송시열宋時烈(1607~1689), 송준길宋浚吉(1606~1672), 이유태李惟泰(1607~1684) 등이 꼼꼼한 교정을 더하여 1648년(인조 26)에 2차로 간행하였다. 책머리에는 사당祠堂·신주神主·의금衣衾·최질衰絰·오복五服·상구喪具·발인發靷·성분成墳·입비立碑·수조受弔·진찬進饌 등의 도설圖說을 실었다. 권두에 1620년(광해군 12)에 쓴 김장생의 서문과 1648년에 쓴 김집의 서문이 있고, 책 끝에는 1621년에 쓴 신흠申欽의 발문이 있다.

신의경이 지은 이른바 '『상례비요』 초본'은 현재 동일한 이름의 책자로 남아있지는 않다. 그러나 김장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에 나오는 인용서목 중에는 『신씨비요申氏備要』가 있는데, 그것이 곧 신의경의 초본 『상례비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신설申渫의 『가례통재家禮通載』 초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사례 중에서도 상례喪禮는 대개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누구나 실수하기가 쉽고,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히 죽은 부모에게 불효하기 쉬워서 자녀는 전전긍긍하게 된다. 주자朱子는 일찍이 『가례』를 저술하였지만, 곧바로 그 존재가 잊혀졌다가 주자 사후에야 발견되었다. 또한, 만년에 집필한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서 주자는 「상례喪禮」와 「장례葬禮」에는 미처 손대지 못하였다. 그래서 상제례喪祭禮에 대한 연구는 특히 도통道統 계승을 자부하는 주자학자들에게 커다란 과제였다. 김장생은 이 점을 고려하여 제일 먼저 상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상례비요』를 지었는데, 정례情禮(인정과 성인이 정한 예법)에 합당하면서도 알기 쉽고 요령 있게 쓰여서, 후대에 『사례편람四禮便覽』 같은 가례 실천서의 모범이 되었다. 『상례비요』는 전후로 당색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대중적 예서였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상례언해
喪禮諺解

정의 조선 중기에 종실인 덕신정德信正 이난수李鸞壽가 김장생金長生(1548~1631)이 편찬한 『가례』 관련 예서에서 상례喪禮의 초종初終 의례를 모아서 한글로 풀이한 책.

내용 2권 1책의 필사본이며 홍윤표 소장본이다. 이 책은 서문과 범례 다음에 본문을 수록하였다. 서문과 범례는 한문으로 서술되고 언해가 없으나, 본문은 한문 원문 없이 언해문(한글)만 있다. 또, 언해문에는 한자를 사용하고 그 밑에 한자음을 달아 놓았다. 아울러 이 책은 도판을 갖추고 있다. 도판도 언해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각 항목의 제목도 언해하였다.

이 책은 원래 덕신정 이난수가 편찬한 것이다. 이난수는 세조의 왕자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의 증손으로, 이름은 난수鸞壽, 자는 문수文叟, 호는 서곡西谷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며, 문장과 학문을 좋아하였다. 교관 박주朴洲에게 글을 배웠는데, 특히 예를 좋아하여 『가례家禮』의 일부를 언해하였다(『順菴集』 卷13 橡軒隨筆, 韓國文集叢刊 230輯 참조). 후에 이난수의 아들 이홍오李弘吾가 같은 동네에 살던 사계沙溪 김장생에게 서문을 부탁하여 편찬하였다.

사계는 서문에서 "(문수가) 상례의 초종初終 예절을 뽑아 언해諺解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었으니, 설령 부인婦人이라 할지라도 이에 근거하여 행하면 아마 대사大事에 유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이 책을 인정하였다. 이 책에 대해서 송시열宋時烈도 1665년(현종 6)에 발문을 지었다. 여기에서 송시열은 "사계 노선생의 글을 보고서 이 책이 틀림없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다. …… 지난날에 용졸재用拙齋 신식申湜이 『가례』를 깊이 연구하여 언해 두 권을 지었는데, 그때에 노선생(김장생)과 글을 주고받으며 호증互證한 바, 비록 선생의 설說을 모두 따르지는 않았으나 따른 부분도 많으니, 다행히도 이것을 취하여 서로 참작한다면 거의 과오가 적을 것이다."라고 하였다(『宋子大全』 146권 「跋」 참조).

또한, 이 책은 이후 김장생의 증손인 김만증金萬增(1635~1720)이 교정하고 첨삭하여 1716년(숙종 42)에 다시 편찬하였다. 『상례언해』는 『가례』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이 예서는 김장생과 송시열의 서발문序跋文이 있고, 최종본은 김장생의 증손인 김만증(송시열 문인)이 교정하고 첨삭한 것이라는 점에서 호서학파 계열의 대표적인 가례 언해서라 할 수 있다. 『상례언해』는 이 외에도 여러 이본異本이 전하고 있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상문살
喪門煞

정의 살煞은 사람이나 물건을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을 말하는데, 상가喪家에서 맞는 살을 상문살이라고 함.

내용 상문살을 맞으면 갑자기 병이 나거나 심하면 급사急死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가에 다녀오면 대문 앞에서 고춧가루와 소금을 섞어서 뿌려 부정을 막는다. 상가의 물건도 가능한 한,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 부정을 가리는 사람은 상가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상가에 가야 할 때에는 예방책으로 주머니에 붉은 팥 또는 콩 너덧 알을 넣어서 간다. 팥이나 콩은 상가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 밖을 향해 흩뿌리거나 초상집에서 나오자마자 먼 곳을 향해 던져버린다. 초상집에 다녀와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 앞에 서서 짚을 태워 뛰어넘기도 한다.

상문 부정을 소상문小喪門과 대상문大喪門으로 나누기도 한다. 정초에 신수를 보아 운이 나쁜 달에는 상갓집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면, '소상문'에 해당된다. 장례 때 산에서 하관下棺하는 것을 목격하여 살을 맞기도 하는데, 이를 '대상문'이라 한다. 대상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관이 일러주는 대로 하관할 때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문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닿는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물건이 심하게 파손될 수 있다.

지역사례 상문살은 전국 분포를 보이는 현상이다. 충북 괴산 동부리의 한 제보자가 1991년 상문살을 맞아 무척 고생한 사례에 대한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염습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제보자는 여느 때처럼 상가에 가서 염습을 하고 일을 거들었다. 그리고 다음날은 장지까지 동행했는데, 망인의 옷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 그런데 제보자가 도착하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더니 천막이 쓰러져서, 그 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한동안 병상에 있었다. 그러나 치료가 원활하지 않아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니, 상문살을 맞은 것이라 하여 굿을 하여 치유했다고 한다.

상문살로 인해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다. 주부가 객귀물리기를 하듯이 의례를 하거나 심하면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하거나 절에 가서 살풀이를 해야 효험을 본다. 환자의 증상도 여러 가지인데 충북 괴산 청천면 금평리의 한 제보자는 상가에 다녀온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하게 앓았는데,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었다. 결국,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야 상문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굿을 하고 이틀 만에 효험을 보았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상문살은 상가, 그와 관련된 장지葬地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맞으며, 예방을 통해 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막상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의례를 행한다. 주부가 할 수도 있지만 상문살에 의한 병이 깊었을 때에는 무당굿을 하거나 절에 가서 풀이를 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주당물리는 소리(김명자,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판소리, 국립민속박물관, 2013),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김명자(金明子)

상변통고
常變通攷

정의 조선 후기 안동 출신의 유학자 동암東巖 유장원柳長源(1724~1796)이 『가례家禮』를 중심으로 상례常禮와 변례變禮를 모아 편찬한 예서.

상변통고 | 1830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30권 16책(「목록」 1책 포함) 분량이며, 목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 안동대학교도서관과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예서의 책머리에는 범례凡例, 인용서목引用書目, 선유성씨先儒姓氏, 가례서家禮序, 이천예서伊川禮序, 예총론禮總論, 목록目錄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권1~4는 통례通禮, 권5는 관례冠禮, 권6은 혼례婚禮, 권7~22는 상례喪禮, 권23~25는 제례祭禮, 권26은 향례鄕禮, 권27은 학교례學校禮, 권28은 국휼례國恤禮, 권29와 권30는 가례고의家禮考疑이다. 이상 30권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와 통례 중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예서와 마찬가지로 상례(16권)이다.

이 예서에 인용된 서적은 중국의 한漢·당唐·송대宋代의 책 130여 종과 조선시대의 예서禮書 50여 종이다. 또한, 중국학자 79인과 조선학자 26인 등 역대 저명 예학자들의 예설을 인용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본문을 따라서 항목을 정하고 그 아래에 관련 예설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가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현실적으로 논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조목을 설정하였다. 권26 이하에 들어 있는 향례鄕禮, 학교례學校禮, 국휼례國恤禮는 본래 『가례』에는 없는 다른 분야의 주제이다.

유장원은 공조참의를 지낸 유관현柳觀鉉(1692~1764)의 아들이다. 18세기 영남학파를 이끌었던 이상정李象靖(1711~1781)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유장원은 이상정의 제자 중에서 예학에 가장 정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예학자가 되었다. 『상변통고常變通攷』는 원래 유장원이 60세 때(1783년)에 22권으로 완성한 예서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가 생존하던 시기에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그가 죽은 뒤 여러 사람의 교정과 감교

를 거쳐, 1830년 30권 16책으로 출간하였다. 책의 권수가 늘어난 것은 열람의 편리를 위하여 유장원의 원본 권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상변통고』는 조선시대, 특히 영남학파에서 편찬한 예서 중에서 그 전거가 가장 풍부하고 체계가 잘 잡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예서에 수록된 변례는 대개 우리의 풍속인 속례에 관련된 문제여서, 당시 조선인의 예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긴요한 자료이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상복
喪服

정의 상중喪中에 있는 상주喪主와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

역사 우리나라의 상복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전통적 상장의례에 유교식 상장의례가 전해 내려와 혼합된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상복에도 영향을 주었다. 『수서隋書』 고구려高句麗 조에는 "부모와 지아비의 상에는 상복 3년, 형제의 상에는 3개월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 백제百濟 조에는 "부모와 남편의 상에는 상복 3년을 입으나, 나머지 친족은 장례를 마치면 바로 복을 벗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상복 착용 기간이 유사하였음을 볼 수 있다. 『북사北史』 「동이전東夷傳」 신라新羅 조에 따르면 신라는 지증왕智證王(재위 500~514) 대에 상복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는데, 임금이나 부모, 처자의 상에 모두 상복 1년을 착용하여 고구려나 백제의 3년 복제와는 달랐음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는 문무왕文武王(재위 661~681) 대에 이르러 죽은 사람과의 친소親疏에 따라 상복의 경중輕重을 가려 그 기간을 달리하였다. 신라는 불교 도입으로 인해 시체를 땅에 매장하는 토장에서 불교식 화장으로 매장 방법이 변화하였고, 이는 상복 착용에도 영향을 주었다.

고려 초에는 불교의 융성으로 인해 이전 시대와 유사한 상복제喪服制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성종成宗(재위 981~997)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였고, 상복과 상기喪期를 죽은 사람과 친족관계에 따라 정한 오복제도五服制度를 반포하여 상복제도를 성문화하였다. 또한, 이를 권장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죽은 사람과의 친족관계에 따라서 일정한 휴가를 주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후의 왕들도 지속해서 휴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1391년(공양왕 3)에는 『대명률大明律』의 제도를 본떠 복제服制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유교식 상장의 제정 반포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에만 한정되어 시행되었다. 일반적인 복제는 100일 상을 행하였고, 민간의 상장에는 전래적 요소가 강한 무불식巫佛式 상장이 여말선초에 이르기까지 널리 시행되었다. 민간에 상제례가 보급된 것은 고려 말 주희朱熹의 『가례家禮』가 전래한 이후이다.

조선시대 초기 정부에서는 『주자가례』를 통한 유교식 상장의례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반에서는 잘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성종成宗(재위 1469~1494) 대에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오복제도를 규정하였고, 중종中宗(재위 1506~1544) 대 이후 상제에 대한 예법이 사대부에게 철저히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중기의 상제는 예론화되어 정착되었으며, 상복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에게도 삼년상이 점차 일반적인 장례가 되었다. 상례 절차와 복식제도가 다양하게 분화되었는데, 지금도 가가례家家禮라고 불릴 정도로 지방별·집안별로 상장제례가 서로 다른 것은 조선 중기의 예론에 기인한다. 개항 이후 서구 기독교식 의례의 도입 및 확산과 더불어 가족과 촌락을 중심으로 거행되었던 전통적 상장례에서 나아가 연합장과 사회장의 출현이 이루어졌으며,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이 변화함에 따라 상례 복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상례 복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1934년 「의례준칙」, 1936년 「의례궤범」, 1969년 「가정의례준칙」과 같이 국가의 개입에 따른 상복의 간소화에 있다. 1973년에 들어 새로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의하면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 또는 검은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부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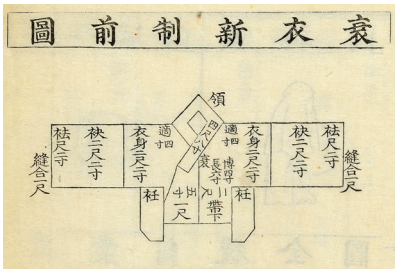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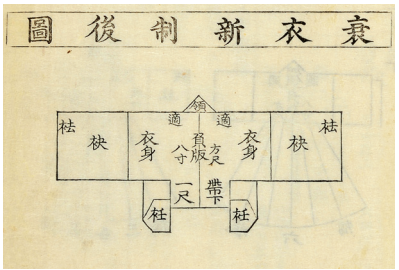

최의신제전후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최의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근래의 상복에 남은 전통적인 요소는 굴건, 행전, 완장 등 몇 가지뿐이며, 대부분 양복류로 대체되고 있다.

내용 상복은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殮이 끝난 다음 날, 즉 사망한 지 4일째 되는 날 주인·주부·유복자有服者가 성복成服하는 것을 말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유복자들의 친소원근親疏遠近과 존비尊卑의 신분에 따라 참최斬衰, 재최齊衰(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오복五服을 착용하였다. 오복 중에서 대공 이상은 친親, 소공과 시마는 소疏가 되는데, 친소에 따라서 상복을 입는 기간은 참최·재최 3년, 재최장기齊衰杖朞·재최부장기齊衰不杖朞 1년, 대공 9개월, 재최오월齊衰五月·소공 5개월, 재최삼월·시마 3개월 등으로 각기 다르다. 단, 재최 5월, 재최 3월은 상복의 착용 기간이 짧지만, 복服을 기준으로 볼 때는 대공 이상이므로 중복重服이다. 참최斬衰(제일 중한 복服으로, 부父·부夫·적장자嫡長子·시부媤父 등을 위함)는 가장 성글고 굵은 생포生布, 재최齊衰(모·조모 등을 위함)는 그다음으로 굵은 생포, 대공大功(종형제從兄弟·종자매從姊妹 등을 위함)은 발이 굵은 숙포熟布, 소공小功(종조부從祖父, 종고조從高祖의 형제·자매를 위함)은 좀 가는 숙포, 시마緦麻(종증조從曾祖·삼종형제三從兄弟 등을 위함)는 매우 가는 숙포로 만들었다. 질絰의 경우 참최는 저마苴麻(씨 있는 삼), 재최 이하 소공 이상은 시마枲麻(씨 없는 삼), 시마는 숙마熟麻(누인 삼)를 사용하였다. 대帶로 참최는 저마苴麻(씨 있는 삼), 재최 이하는 포布(베)를 사용한다. 남자 상복은 관冠·의衣·상裳·중의中衣·행전行纏·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상장喪杖·리履로 구성된다. 여자 상복은 소素족두리 또는 개두蓋頭·대수장군大袖長裙·전계箭笄(비녀)·수질·요질·교대·상장喪杖·리로 구성된다. 동자童子는 어른과 같은데, 관·수질·상장·리가 없다. 상인喪人의 출입복은 방립方笠·포선布扇·포직령布直領·교대絞帶이다.

특징 및 의의 상복喪服은 중국의 예서인 『의례儀禮』, 『예기禮記』의 복술服術에 근거하여 그 원리가 조직組織되었다. 또한, 『가례』에 기록된 상복에 대한 개념은 유교의 종법사회宗法社會 중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한 계세사상繼世思想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오복제도를 매체로 하여 대가족제도의 형성 및 그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다. 상복을 입을 수 있는 오복친五服親은 유복친有服親이라고도 하였고, 가족이란 혈연공동체를 공고하게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오복친을 통해 장자상속長子相續이라는 재산의 상속제도와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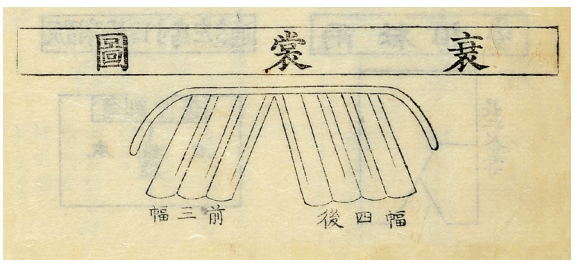

최상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최상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상복을 입은 상주 | 경남 합천 | 1988 | 국립민속박물관

사라는 조상숭배행위는 그 구체적 친족親族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다. 또한, 오복의 등급에 따라 가족 간의 친소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족사회 차원에서의 상복의 기능은 점차 발전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조상숭배祖上崇拜와 천도天道를 숭배한다는 기치 아래 봉건적·정치적 수단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었다. 결국, 차별등급적인 오복제도는 그대로 확대되어 국가의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위정爲政의 체제유지적 수단이 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상복은 생자生者의 심리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표현적 도구 역할을 한다. 임종臨終에서 길제吉祭에 이르는 상례喪禮의 전 과정에서, 사절변화四節變化의 우주조화宇宙調和에 따라 상복이 거상기간의 단계별로 애도지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상복은 혈족관계에서 친소원근에 따라서 애도지정을 감성공학적 디자인 요소와 원리에 적용하여 그 구조를 구현하였다. 즉, 오복제도에 맞춰 상복의 소재, 디자인, 바느질 방법, 시접 방향 등에 차이를 두었다. 또한, 신분제도가 철저한 조선시대에는 왕에서 서민까지 신분을 초월해 오복제도에 맞춰 상복을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經國大典, 國朝五禮序例, 北史, 四禮便覽, 三國史記, 喪禮備要, 常變通攷, 隋書, 禮記, 儀禮, 增補四禮便覽,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가정의례준칙, 의례궤범, 의례준칙,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필자 조우현(趙又玄)

상수
床需

정의 혼례 때 차린 큰상의 찬품.

내용 상수床需의 '상床'은 '평상', '수需'는 '음식'의 의미이다. 상수란 커다란 상에 차린 음식이니 곧 큰상[大床]에 차린 찬품饌品이다. 반친영혼半親迎婚이 정착된 시기는 조선 명종조 이후이다. 신부집은 대례를 치른 뒤 향응을 벌였고 신랑집은 우귀于歸 후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한 다음에 다시 향응을 벌였다. 이때에 양쪽 집안 모두 신랑과 신부 앞에 큰상을 차렸는데, 큰상의 찬품 목록

은 가세家勢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가능한 한 화려하고 풍성하며 사치스럽게 높은 고임음식으로 차렸다. 찬품단자饌品單子를 적어서 보내는 편지를 '상수송서장床需送書狀'이라 했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찬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만두류: 어만두, 만두 등
- 찜류: 생복찜, 전복찜, 해삼찜, 도미찜, 홍합찜, 갈비찜, 연저찜軟猪-, 닭찜 등
- 초류: 홍합초, 전복초, 우족초 등
- 회류: 생복회, 육회, 어회 등
- 전유화류: 생선전유화, 간전유화, 양전유화, 편육전유화, 부아전, 게전, 새우전, 해삼전, 홍합전, 연계전, 돼지고기편육전 등
- 구이와 적류: 우족적, 갈비적, 계적, 어적, 산적, 각색누름적 등
- 편육과 수육류: 양지머리편육, 돼지머리편육, 돼지고기편육, 쇠고기편육, 족편, 쇠고기수육, 닭고기수육, 돼지고기수육 등
- 포류: 전복포, 문어포, 대구포, 광어포, 문어포, 오징어포, 편포, 산포, 쇠고기포 등
- 떡류: 각색찰편, 각색멥쌀편, 두텁떡, 각색단자, 약밥, 화전, 경단, 인절미, 조악, 절편, 산병 등
- 조과류: 율란, 조란, 생란, 요화, 차수과, 산자, 약과, 만두과, 다식과, 연사과, 빙사과, 강정, 감사과, 송화다식, 흑임자다식, 녹말다식, 황률다식, 청태다식 등
- 당류: 각색엿, 각색당, 각색정과 등
- 실과류: 귤, 감자, 건시, 홍시, 참외, 수박, 복숭아, 잣, 대추, 밤, 황률, 포도, 배, 사과, 호두 등

큰상물림과 함께 보내는 상수송서장에는 가능한 한 다양하면서도 값비싼 음식을 적어서 양쪽 집안의 부를 과시하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지금 사람들은 성찬盛饌 두 자에만 매달려 사치와 낭비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처럼 정약용 시절에 이미 혼례 때의 큰상차림은 도를 넘고 있었다.

도를 넘어 풍성하게 차린 상수의 찬품단자는 병풍 형태로 접은 한지에 적었다. 그리고 큰상을 물린 뒤에 신부집에서는 신랑집으로, 신랑집에서는 신부집으로 싸서 보내는 이바지 음식과 함께 보냈다. 이를 상수송서장이라 했고, 큰상을 물린 뒤에 음식을 싸서 이바지 음식으로 보내는 것을 큰상물림, 퇴상, 상물림이라 했다.

특징 및 의의 1969년에 나온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라남도 나주지방에서는 대청에 차린 큰상에 고였던 음식을 전부 석작(대나무로 엮은 동구리)에 각각 나누어 담는데, 이것은 신랑을 데리고 왔던 어른인 상객이 돌아갈 때 지워서 보내는 것이다. 즉,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보내는 인사음식, 상수이다. 상황에 따라 석작을 3개에서 17개까지 보내는데, 이 이바지를 받은 신랑집에서는 석작에 담아온 음식을 일가친척에게 골고루 담아서 보내고 며느리 얻는 것을 '피로披露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전개되었던 상수 이바지음식은 현재 훨씬 간소화하고 있다. 이는 큰상 자체를 차리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與猶堂全書, 조선왕조 궁중의궤 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조선왕조 혼례연향 음식문화(김상보, 신광출판사, 200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필자 김상보(金尙寶)

상식
上食

정의 생자生者처럼 하루에 세 번 먹는 망자亡者의 끼니.

역사 저승사자의 유래가 담긴 제주도의 무속신화 〈차사본풀이差使本-〉에는 강림차사가 산과 들을 걸어 저승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있다. 이처럼 민속신앙에서는 망자의 영혼이 초상을 치르고 나면, 저승을 향하여 이동한다고 믿었다. 멀고 먼 저승길에 망자는 배고프지 않게 식사를 해야 했으므로, 가족들은 망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이처럼 망자에게 올리는 끼니를 상식上食이라고 한다. 상식은 대상大祥까지 2년 동안 이어진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절차가 간소하게 바뀌어, 처음에는 상식을 없앴고 그 다음에는 대상을 지내지 않았다. 최근에는 소상小祥도 야제夜祭로 치르면서 망자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없어졌다.

내용 임종臨終이 가까워지면 가족과의 이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숨이 끊어지고 염습이 끝나면, 상제喪制(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는 상복을 입고 성복제成服祭를 지낸다. 상복을 입음으로써 망자와의 이별 의례가 시작되는 것이다. 〈차사본풀이〉에 따르면, 저승으로 들어간 망자의 영혼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동안 초상·소상·대상의 삼년상을 치르는데, 이 기간까지는 망자를 사자가 아닌 생자로 취급한다. 그래서 망자가 평상시 쓰던 방에 병풍을 치고, 제상을 차려 망자를 상징하는 지방紙榜을 붙인다. 망인이 보기에 오른편에 국, 왼편에 밥을 놓고 간단한 찬을 준비하여 하루에 3번 식사를 올린다. 밥 위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반찬에 걸쳐 놓는다. 그런 다음 식사하는 시간만큼의 여유를 두었다가 수저를 내리고 숭늉을 올린다. 망인이 담배를 좋아하였다면, 불을 붙여 올린다. 마지막에는 과일을 몇 개 올리고 끝낸다. 이처럼 망자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듯, 흡사 산 사람이 식사하는 것처럼 망자에게 상식을 올렸던 것이다. 망인에게 인사하러 오는 자는 이 제상에 배례한다. 음식을 올리는 일은 꼭 남자만 하지 않는다. 주부는 가족이 아침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고 바깥일을 하러 나간다. 낮에는 일부러 집에 돌아와 끼니에 맞춰 음식을 올리고 내리는 일을 반복한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의 일을 반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은 주부들에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방 안에는 망인이 쓰던 이불을 정돈해 두고, 평소 입던 의복도 걸어둔다. 문밖에는 망인의 신발을 놓는데, 아침에는 밖을, 저녁에는 안쪽을 향하게 한다. 생자가 집 안팎을 출입하듯 망자도 집을 드나듦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망자를 위해 조석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는, 이승에서 준비해 둔 음식으로 저승길을 가는 영혼이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다.

상식 | 경남 김해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四禮便覽, 제주도의 일생의례(현승환, 국립민속박물관, 2007), 제주유맥600년사(제주유맥600년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인의 일생의례-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필자 현승환(玄丞桓)

상여
喪轝

정의 장례의 발인 절차에 따라 상여꾼들이 망자의 시신을 장지까지 운구하는 도구.

역사 고대국가에서 상여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관의 사용과 "북을 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죽은 자를 보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장례에서 상여가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는 사가私家에서 장례용 운구 용구로 건거巾車·상거喪車·유거柳車·영거靈車를 사용하였다. 조선시대는 국장용으로 유거·대여大輿·견여肩輿·외

재궁여外梓宮輿를 제작해서 대행왕大行王의 옥체를,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용으로 윤거輪車·지거紙車·상거·대여·소여小輿·상여를 사용해서 망자의 시신을 운구하였다. 일부 실학자들은 장례에 윤거와 지거·상거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여러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대여의 일부 구조를 축소한 소여가 상여로 자리 잡았다. 상여는 어깨에 메고서 망자를 운구하는 상구도 포함한다.

내용 상여의 구체적인 모습은, 주희朱熹(1130~1200)의 『가례家禮』「상여지도喪轝之圖」에 실린 대여와 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상여는 목조로 짜 맞춘 구조물에 직물로 두르고 장식물을 배치한, 망자를 위한 작은 공간으로, 망자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다. 운구 용구는 바퀴를 달아서 이끄는 방식[車]과 어깨에 메는 방식[擧]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방식으로는 유거·재곽거載槨車·윤거·지거·상거를, '여'의 방식으로는 대여·소여·방산方山 등을 들 수 있다.

'거'의 방식으로는 유거가 가장 대표적이다. 유거는 바퀴가 달린 수레 형태로, 앞에서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끌고 나아가는 상구이다. 유거는 하체와 본체로 크게 나뉜다. 하체는 유거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물로, 윤輪(바퀴)·곡轂(속바퀴)·축軸(가로대)·원轅(차대)·형衡·횡목橫木으로 구성된다. 본체는 거상車箱이라 하여 재궁梓宮을 싣는 부분으로, 횡목과 귀기龜機·단주短柱·소주小柱·정판精板·입주立柱·별갑鱉甲으로 구성된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대부·사·서인용 운구 상구로 바퀴 달린 대여를 제시하였다. 왕실의 영향인지, 몇몇 실학자들은 지거와 윤거, 상거를 운구용 상구로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유형원柳馨遠(1622~1673)은 『반계수록磻溪隧錄』, 이익李瀷(1681~1763)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대군과 사대부는 말이 끄는 윤거輪車, 소가 끄는 상거喪車를 사용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장지가 멀어 상여꾼을 구할 수 없었던 상가에서 소가 운구용 상구를 끈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사람이 메고 가기에 먼 거리에 장지가 있거나 수레가 다니기에 유리하면, 바퀴 달린 운구 용구를 편리하게 사용하였다.

'여'의 방식은 대여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소여와 방산 등의 용구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대여는 어깨에 메고서 망자의 시신을 운구하는 상구이다. '여'는 기본적으로 장강長杠과 횡강橫杠을 얽거나 짠 위에 본체로 난간과 지대목, 입주, 사주 등을 연결하고, 그 위에 상장을 배치하였다. 상가는 점차 운구 상구로 '거' 형태에서

산청 전주 최씨 고령댁 상여(중요민속자료 제230호) | 1856 | 국립민속박물관

'여' 형태의 상여를 널리 사용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관직의 고하에 따라 상여 장식물이 달랐지만, 조선시대는 국장용과 대부·사·서인용의 구분만 있었다. 국장도감國葬都監은 대행왕의 옥체를 운구할 견여, 대여 또는 유거, 외재궁여를 제작하였다. 국장 과정에서 대여와 유거는 궁궐 외문에서 영악전靈幄殿 입구까지, 견여는 빈전에서 궁궐 외문까지 및 영악전 입구에서 현궁까지 재궁을 운구하였다. 외재궁外梓宮은 하현궁下玄宮 시에 대행왕 옥체를 안치한 재궁을 담은 국장용 상구이다. 유거와 대여는 재궁을, 외재궁여는 외재궁을 운구한 상구였다. 외재궁여는 대여와 별도로 발인 이전에 외재궁을 싣고 능소陵所까지 운구하였으며,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조선 초기에서 선조宣祖의 국장 때까지는 재곽거載槨車를 수레 형태로 제작해서 외재궁을 능소까지 운구하였다. 선조의 국장에서는 외재궁재거를 제작해서 선조의 외재궁을 운구하였다.

도로가 좋지 않았으므로, 유거로 대행왕의 재궁을 운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였다. 평지에서 운구하는 편이 담배군擔陪軍들의 힘이 덜 들 뿐만 아니라 위험도 적었다. 언덕을 오르거나 고개에서 내려올 때 한쪽으로 쏠리기라도 하면 운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유거가 엎어지지 않도록 전인군과 후인군의 줄을 당겨서 균형을 맞추어 가며 장지까지 운구하였다. 운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장도감은 세종의 비妃인 소헌왕후昭憲王后(1395~1446)의 국휼國恤부터 유거를 폐지하고 어깨에 메는 대여를 사용하였다.

길이 넓은가 좁은가, 또는 오르막인가 내리막인가에 따라, 국장에서는 유거와 견여를 번갈아 사용해가며 재궁을 운구하였다. 바퀴 달린 유거와 어깨에 메는 대여는 운구 방식이 달라서, 본체를 지지하는 하체의 구조가 완전히 달랐다. 유거의 하체는 바퀴 및 바퀴와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면, 대여의 하체는 장강과 횡강이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하체는 대행왕의 재궁을 안치하는 소방상小方床을 포함한 본체를 배치하도록 견고하게 짜 만들었다.

상여에는 소방상이라는 별도의 구조물을 제작해서 재궁과 구柩를 안치하였다. 소방상은 대행왕 옥체를 안치한 재궁 또는 망자의 시신을 안치한 구를 배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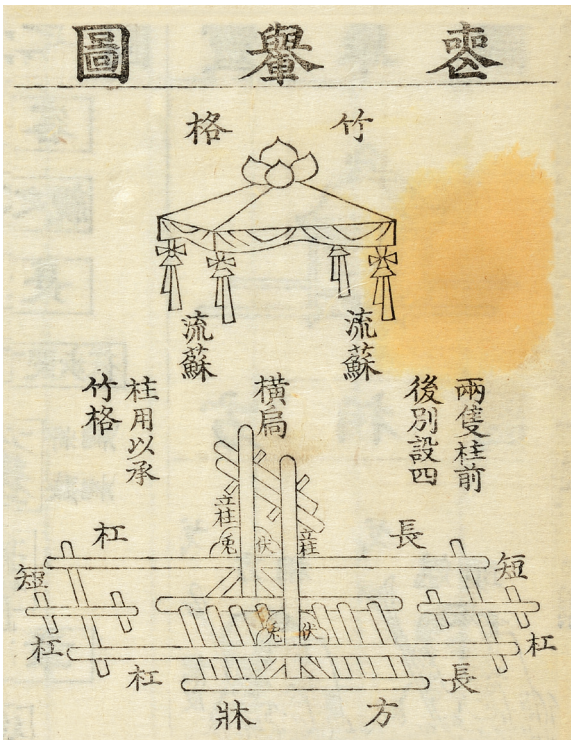

상여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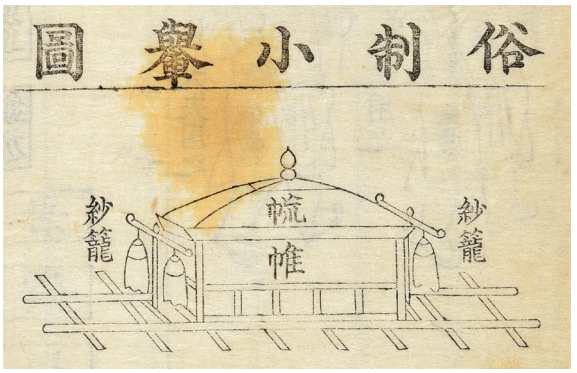

속제속여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공간으로, 상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공간이다. 소방상은 운구하는 동안 망자의 시신이 항상 수평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래서 소방상은 시신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뒤로 흔들린다. 평지에서는 소방상이 장강, 상여 본체와 평형을 유지하지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서는 수평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므로 소방상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소방상의 흔들림으로 상여꾼들에게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여를 운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전인군과 후인군을 두어 미리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상여를 운구했다.

장강과 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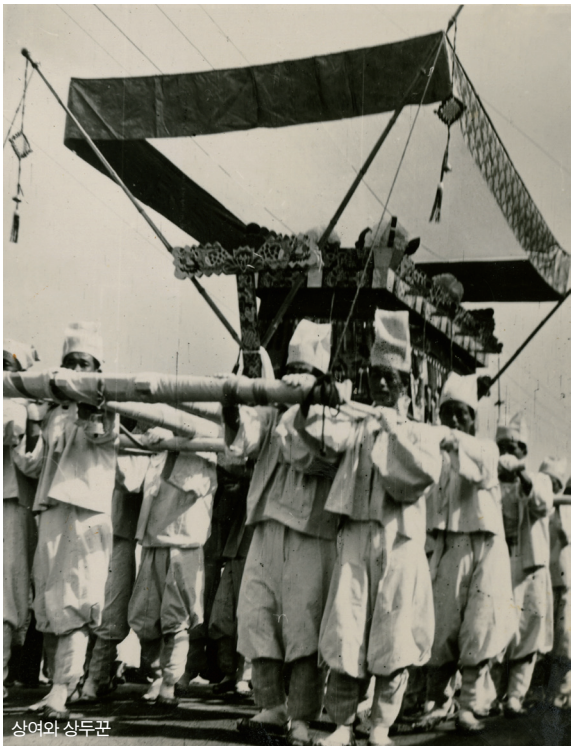
상여와 상두꾼

상여 | 충남 태안 | 1969 | 국립민속박물관

상가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방상을 없앤 소여小轝를 점차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민간의 상례·장례에서는 상여로 소여만을 사용하였다. 지금도 소여가 상여로 사용되며, 보통 소여를 상여라고 부르고 있다. 소여 각각의 하체는 동일한 형태인 반면, 상장上裝 부분은 별갑, 와가, 반원통 모양 등으로 처리하여 상이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구조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양은 조선시대 국장에서 사용한 대여와 견여의 상장 부분에서 취했던 형식이 민간의 상여 제작에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여의 구조와 장식물은 조선 후기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변하기 시작하였다. 상여의 구조는 다층화하고 건축물처럼 변해 갔다. 또한, 상여는 민화 같은 그림과 각종 장식물로,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여는 예서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구조와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조선시대 전통 상여의 맥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층을 달리해서 기존의 상여와 '조선화'된 상여가 함께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 산업화와 공업화로 상가는 점차 기존형식과 다른 상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농촌 지역의 청년층이 교육과 취업 같은 여러 이유로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자, 농촌에는 상여를 메고 운구할 사람이 없어졌다. 상여를 메고 운구할 인력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은 이 문제를 지상여(일명 꽃상여)의 사용으로 직접 해결했다. 이외에도 몇몇 상여제작업자가 철과 합성수지로 상여를 제작해서 마을에 판매하였지만, 이들 상여는 크게 유통되지 않았다. 상주와 마을 주민들은 지상여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다. 상주는 지상여가 남이 사용하지 않아 깨끗해서 좋고, 어른에게 마지막으로 효도해서 마음이 뿌듯하다고 생각한다. 상여꾼들은 지상여가 가벼워서 운구하기 편하고, 게다가 일회성이어서 운구 후 봉분하는 동안 불태워버리므로, 마을로 돌아올 때 육체적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상여는 망자 또는 상주의 종교와 사회적 위신을 반영하였다. 기독교식은 십자가와 성경 글귀를 넣고, 불교식은 만卍자를 넣어서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종교적인 색채를 표현하였다. 사회 저명인사의 상여는 고향의 기존 상여에 국화를 장식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상여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운구하는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은 계를 조직해서 가가호호 돈을 갹출하여 상여 구입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주로 마을의 목수를 중심으로 상여를 자체 제작하거나 기성품을 구입하였다. 이후 상여는 손상과 보수를 반복하면서 계속 사용되었다. 남은 들상여는 1956년에 수리비 등 제반 비용 111,490원을 들여서 보수되었다. 상가는 상여를 사용한 대가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였다. 상여를 관리하는 마을의 조직은 사용료를 모아두었다가 상여 수리와 부속품 구입,

상엿집 수리와 도색 등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마을에서는 산 아래 같은 외딴곳에 상엿집을 지어서 상여를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보관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곳집, 행상집 등으로 불렀다. 상엿집에는 상여뿐 아니라 산역도구와 햇빛을 가리는 천막도 보관하였다. 이전에는 목재와 흙을 사용해서 와가형 또는 초막형 상엿집을 지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시멘트 블록 등으로 상엿집을 짓고 있다. 또한, 마을마다 상여계 또는 마을 총회에서 상여관리인을 선정해서 상엿집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에 상여 사용이 점차 줄어들자, 주민들이 결의해서 자체적으로 상여를 태우고 상엿집을 허물기도 하였다. 한편, 도시 미관을 위해서 상엿집을 일제 정비하고자 비용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상여는 단순히 시신 운구의 기능만 하지 않고, 상주의 경제력과 사회적 위신, 유교적 효와 자신의 바람 등을 반영하였다. 일부 부유한 상가는 상례·장례를 호화롭게 치르면서 상여를 복층 또는 중층으로 제작하고 각종 장식물로 꾸며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각종 장식물은 망자와 상주 자신의 현실적인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상여는 '효孝'라는 유교적 가치관과 가례의 실천도구로서 기능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儀, 磻溪隧錄, 四禮便覽, 星湖僿說, 한국상여의 변용 과정 연구(박종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필자 박종민(朴鍾珉)

상여장식
喪轝裝飾

정의 상여를 치장하기 위한 각종 조형물 혹은 상여에 그려진 그림.

내용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상여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고려사高麗史』에 '이거輛車' 라는, 바퀴가 달린 형태로 추정되는 상여가 등장한다. 따라서 상여장식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상여 관련 기록을 통해서만 추정해볼 수 있다.

상여구조는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상부는 여개輿蓋, 중간부는 운각雲閣이라고도 불리는 여동輿胴(몸채), 하부는 멜채와 방틀이다. 상여의 가장 윗부분에는 부운浮雲과 같은 앙장仰帳이 있고, 양택陽宅인 집을 상징하는 중간부에는 툇마루, 난간 등이 있다.

이 세 부분에 맞추어 각 부분의 상여장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여의 가장 윗부분에서 상여를 덮는 천막인 앙장은 떠다니는 구름[浮雲]과 차양 등을 상징한다. 앙장은 백색이나 청색 또는 홍색의 천으로 주름을 잡고, 사면四面에 유소流蘇를 달거나 청사초롱을 달기도 한다. 이는 저승으로 가는 길에 빛을 비춰줌과

산청 전주 최씨 고령댁 상여 | 국립민속박물관

동시에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한 장식이다.

중간부인 상여의 몸채는 그림이나 문양을 그려 넣거나, 툇마루의 난간과 용마루에 동물상, 인물상과 같은 나무 장식과 꽃, 유소流蘇(기旗나 승교乘轎 따위에 달던 술)와 초롱 등으로 직접 꾸며 놓았다.

먼저 동물상을 살펴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용이다. 상여의 앞·뒷머리를 장식하는 용수판龍首板, 유소를 문 정丁자 모양의 용, 마주보는 청룡·황룡 등 다양한 형태로 상여를 꾸며준다. 용은 서수瑞獸로서, 죽은 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용이 인도와 보호를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특히 용수판의 경우, 황룡이 앞에 있으면 죽은 이가 남자이고 청룡이 앞에 있으면 죽은 이가 여자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봉황도 유소를 물고 있는 형상이거나, 상여 부속의 하나인 개구리(일종의 못과 같은 역할)의 머리 장식으로, 혹은 측면과 전면에 그림으로 그려져 장식되고 있다. 봉황 또한 용과 같은 서수로, 죽은 이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염원을 담아 장식하였다. 이외에 저승새라 하여 여러 마리의 새들을 배치한 예도 보이는데, 이 또한 망자가 저승길을 잘 인도받기를 바라며 장식하였다.

인물상은 상여장식 중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별히 '꼭두'라고 불린다. 꼭두는 인형人形을 칭하는 우리 옛말이다. 상여의 꼭두는 남자와 여자, 동자와 선인仙人, 광대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대개 여인상은 꽃이나 꽃을 담은 통을 받들고 있으며, 동자와 동녀의 경우도 불교조각의 동자·동녀처럼 시립侍立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들은 죽은 이를 저승으로 모시는 공양供養의 형태가 많다. 남자상의 경우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서 있거나 청노새, 청마 등을 타고 있는데, 이는 죽은 이를 의미한다. 특별히 호랑이를 타고 있는 남자상은 대개 신선이나 염라대왕 저승사자, 동방삭東方朔 등 선인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나쁜 것들과 재앙을 물리친다는 호랑이의 벽사적인 의미 때문이다. 그리고 피리나 소고를 연주하거나 재주를 부리는 광대형의 인물상도 있다. 이외에도 '희광이' 혹은 '망나니'라 하여 잡귀를 쫓는 역할을 하는 상을 상여 앞뒤에 만들어 세우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상들은 저승 가는 길을 화려한 행차로 장식하며 죽은 이를 호위하고 천도薦度하여 극락세계로 이끌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사방四方에 유소를 매달아 장식하고 간혹 그끝에 풍경을 달기도 하는데, 이는 상여꾼이 소리가 나지 않게 평행으로 잘 운구하라는 뜻과 산중의 맹수를 쫓기 위한 용도가 담긴 장식이다. 그리고 상여에 연꽃을 장식하여 불교의 연화화생蓮花化生을 소망하기도 하였다. 상여의 하단부분은 상여를 직접 멜 수 있는 '멜채'가 있어서 특별한 장식을 하지 않는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상여들은 대개 가마 형태를 띠고 있고 장식도 간략한 반면에,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 중인 '산청 전주최씨 고령댁 상여'는 4층 누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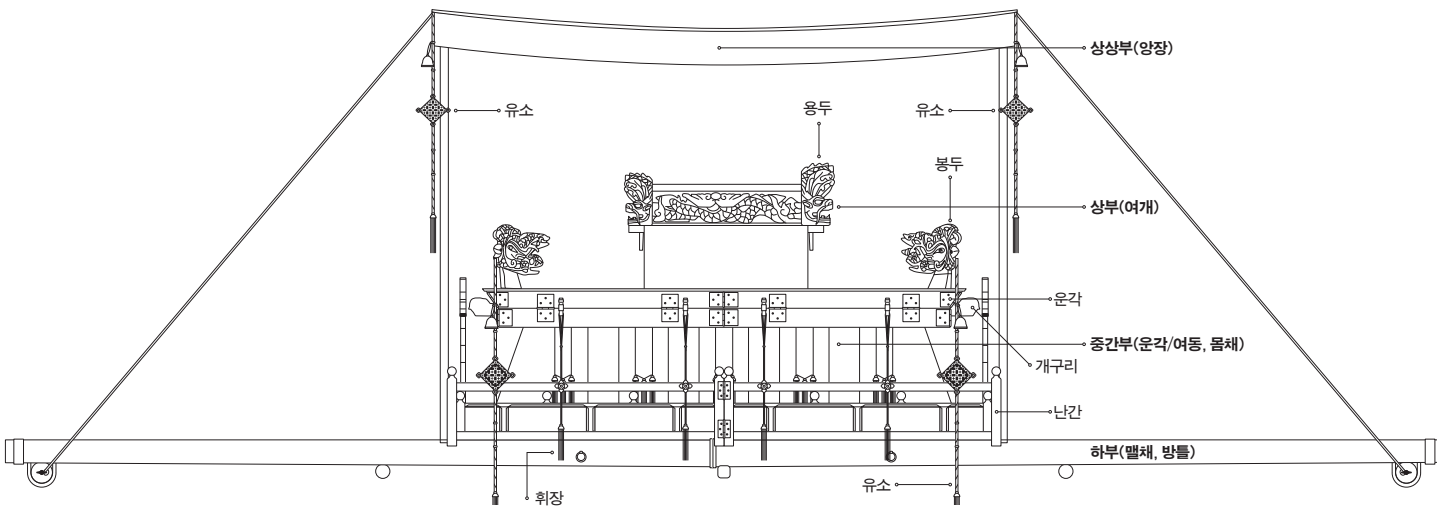

남은들 상여 측면도 | 2003 | 남은들 상여 실측조사보고서

용수판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형태로 그 모습과 장식이 여타의 상여와 매우 다르다. 이러한 높은 누각형태와 다양한 꼭두 장식은 불교, 도교, 민간신앙이 복합되어 있는 저승관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예라 하겠다.

특징 및 의의 상여는 죽은 이가 좋은 곳으로 인도받기를 바라는 후손들의 바람을 담아 제작하지만, 지방과 사회계층, 또 제작자의 취향에 따라 그 외관의 모양과 장식물이 다 다르다. 따라서 망자의 생전 신분과 형편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현대에는 종교별 특징을 반영하여 기독교의 十자 표시나 성경 글귀, 불교의 卍자 표시 등을 포함하여 꾸민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 상여의 모습과 장식도 간소화·현대화하였지만, 망자에 대한 후손들의 애도하는 마음과 좋은 곳으로 인도받기를 바라는 소망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상여고(정종수, 생활문물연구1, 국립민속박물관, 2000), 중요민속자료 제31호 남은들 상여 실측조사보고서(예산군, 2003), 중요민속자료 제120호 청풍부원군 김우명 상여 실측조사보고서(춘천시, 2001), 중요민속자료 제230호 산청 전주최씨 고령댁 상여 실측조사보고서(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상여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김무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의 나무꼭두(김옥랑·이두현, 열화당, 1998).

필자 변혜민(邊慧敏)

상용영반
常用靈飯

정의 사찰 등에서 승려의 집전으로 치르는 불교식 제사.

역사 우리나라에서 천지신명과 왕실에 대한 제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내왔으나 유교 기제사는 고려 말에 성리학과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들어오면서 왕실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이에 비해 기일에 지내는 불교식 제사는 고려 초기부터 성행하였다. 상용영반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불교 기제사를 기재忌齋·기일재忌日齋 등으로 불렀다. 광종은 봉은사奉恩寺를 설립하여 개국시조인 아버지 태조를 모시고, 불일사佛日寺를 세워 태조의 왕비인 어머니 유씨劉氏를 모셔 원당으로 삼았다. 이후의 왕들도 태조의 기일을 비롯하여 선대왕의 기일에 재를 지내는 전통을 이어나갔다. 고려 초기에도 유교 제사가 들어와 있었으나 봉사奉祀를 통한 종법 질서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망혼의 극락왕생과 음덕을 기원하는 불교의 기일의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 "고려시대에는 무릇 선친의 기일이 돌아오면 대부분 절에서 천복薦福하였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한 유계兪棨의 글이 실린 것도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승려 사회에서도 제자가 스승의 기일을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고려시대 승통僧統이었던 원증圓證은 임종 무렵에 문도를 불러놓고 "내가 죽은 뒤 재일齋日을 맞게 되면 깨끗한 가사를 입고 대승경전을 읽고 절하며 당래미륵존불을 염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삼보를 공양함으로써 자비하신 도움을 기원하라. 나에게 관한 일은 오직 향香과 등燈으로 고산孤山에 청풍과 명월이 지나가듯 끝내고, 시끄럽고 번잡한 것은 피하라. 간소하고 편한 것을 따르는 것이 효라고 할 것이다."라는 유서를 지어 보여주었다. 당시 불가에서도 스승의 기일을 크게 모시는 풍조가 있었기에 이를 경계한 글을 남긴 것이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불교 기제사는 기신재忌晨齋라 불렀는데, 민간 제사와 구분하기 위해 일日의 높임말인 신晨을 사용한 듯하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왕실 제사는 본격적으로 '기신'이라 칭하면서 불교식으로 치를 때는 기신재, 유교식일 때는 기신제라 부르게 된다. 기신재 폐지를 청하는 유학자들의 상소는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그 내용 가운데 "기신재는 …… 바야흐로 부처를 공양할 때는 선왕과 선후의 신주神主를 먼저 욕실에 보내어 목욕을 시킨 뒤 뜰에 꿇어앉아 절하게 하니 …… "라는 대목이 있다. 이

는 망혼의 업을 씻어주는 관욕灌浴을 묘사한 것으로, 불교 기제사가 망혼 천도의식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1420년(세종 2)에 불교식 상례·제례에 해당하는 추천재·기신재 등을 수륙재水陸齋로 합설케 하였으며, 중종대에서 선조대에 이르면 왕실의 불교 제사는 공식적으로 폐지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물론 왕실과 지배층의 사적 영역에서는 불교 제사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유교 이념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배층에서 불교 제사를 계속했던 것은 두 의례의 기능이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불교 제사를 지냈던 이들이 기일에 유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사찰 제사만 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날짜를 달리하거나, 사찰에 제주 이외의 누군가를 보내어 치르게 하였을 것이다. 이들에게 유교 제사는 마땅히 지내야 할 후손의 도리였고, 불교 제사는 종교적 목적으로 치르는 의례로 수용되었다. 18세기 이후 일반 백성에게까지 『주자가례』가 확산되면서 점차 기일은 유교 제사로 통일되고,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는 7월 백중의 우란분재盂蘭盆齋 등 합동 천도재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신앙심이 깊고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이들은 여전히 사찰에 위패나 영정을 모셔놓고 개인적인 재로써 기제사를 치렀음은 물론이다.

내용 사찰에서 치르는 제사를 상용영반이라 부르는 것은 망혼을 모시고 공양을 대접하는 의식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혼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불보살의 가르침을 들려주어 극락과 같은 보다 수승殊勝한 세계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기본 구도는 천도재와 같다. 1827년의 『작법귀감作法龜鑑』에는 상용영반과 별개로 종사영반宗師靈飯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모든 승려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단에서 품수한 법계가 종사·대종사·대선사인 승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상용영반은 천도재의 관음시식觀音施食과 유사하며, 『작법귀감』의 상용영반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거불擧佛로 불보살에게 귀의한 후, 망혼을 모시고 법어를 내린 다음, 여러 부처님께 오늘 재를 열게 된 이유를 고한다. 망혼에게 자리에 편히 앉도록 청하고 차를 올리며, 이후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발원과 회향의 가지소加持疏, 귀신에게 시식하는 시귀식진언施鬼食眞言, 공양을 올리는 주문인 공양주供養呪, 회향하는 주문인 회향주回向呪, 산회하는 게송인 파산게破散偈에 이르기까지 상용시식의常用施食儀와 같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석문의범釋門儀範』 이후 여러 의식집을 보면, 사십구재 등 천도의식편의 '관음시식'과 '상용영반시식'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망혼에게 하는 착어着語에 상징적인 차이가 있다. 상용영반시식의 마지막에는 "잠시 쉬어 진계에서 이 향단에 내려오소서暫辭眞界下香壇"라고 표현하여 제사의 대상이 진계眞界에 머무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십구재로 천도하기 이전의 존재는 삼악도에 머물고, 천도한 존재는 진계나 극락에 머물기 때문에 상용영반 등 불교 제사에는 천도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진계'라는 말은 조상을 모시는 데 따른 의례적儀禮的 표현으로 봐야 한다. 어느 곳에 머물든 불교의 가르침으로 더욱 수승한 단계로 인도하는 것이 망혼을 대상으로 한 불교 의례의 기본 맥락을 이루기 때문이다. 천도 이전의 존재는 명부의 지옥 중생이고, 천도 이후의 존재는 진계의 조상신으로 양분하는 것은 불교적 의미에 맞지 않을뿐더러 천도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만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삼보의 한 존재인 승려의 천도재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머무는 곳과 무관하게 불법으로 천도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모든 삼악도의 존재들과 유주무주 고혼을 함께 청한다는 의미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상용영반의 내용은 대략 다음의 절차로 진행된다. 고인의 왕생을 이끌어줄 불보살께 귀의하는 거불擧佛, 마련해놓은 단에 망혼이 자리해줄 것을 청하는 창혼唱魂, 망혼에게 법어를 전하는 착어着語, 천도 대상이 되는 뭇 존재를 청하는 진령게振鈴偈, 망혼을 다시 청하는 고혼청孤魂請, 향을 사르며 청하는 향연청香煙請, 차를 올리는 헌다게獻茶偈, 공양을 올리는 헌식소獻食疏, 참석한 모든 중생이 함께 하는 반야심경般若心經,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가지소加持疏, 아귀에게 법식을 권하는 시귀식진언施鬼食眞言, 널리 공양을 권하는 보공양진언普供養眞言, 널리 회향하는 보회향진언普回向眞言, 공양을 찬탄하는 공양찬供養讚, 여래십호의 명호를 부르는 여래십호如來十號, 아미타부처님을 찬탄하

는 장엄염불莊嚴念佛, 발원을 읊는 발원게發願偈, 왕생극락을 바라는 왕생게往生偈, 편안히 모시는 안과게安過偈, 망혼을 보내는 봉송게奉送偈 등이다.

특징 및 의의 사찰에서 지내는 제사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거나 아들·후손이 없는 경우가 주를 이루지만, 간편하게 제사를 모시기 위해 의뢰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사는 삶의 맥락이 달라진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례이지만, 봉사대상을 줄이고 합치거나 형제간에 제사를 나누어 모시는 방법 등으로, 점차 간소함과 편리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자가 아니더라도 제사를 모시기 위해 사찰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제사를 둘러싼 현대인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상용영반이 주목되고 있다.

참고문헌 東史綱目, 作法龜鑑, 불교상용의례집(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종출판사, 2013), 상용불교의식(법안·우천 편역, 정우서적, 2012), 석문의범(안진호, 보련각, 1968), 조선전기 수륙재의 설행과 의례(심효섭, 동국사학 40, 동국사학회, 2004), 한국불교의 일생의례(구미래, 민족사, 2012).

필자 구미래(具美來)

상장
喪杖

정의 상중에 쓰는 지팡이.

내용 상장喪杖은 상중에 쓰는 지팡이로,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참최저장소최삭장斬衰苴杖疏衰削杖'이라 하였다. 즉, 참최斬衰의 저장苴杖은 대나무이며, 재최齋衰의 삭장削杖은 오동나무[桐]이다. 상장의 높이는 심장과 같게 하며, 나무의 밑동을 아래로 가게 만든다.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오례五禮 흉례서례凶禮序例 상복喪服에 의하면, 참최에 아버지를 위하여 대나무 상장을 짚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아들의 하늘이다. 대나무가 둥근 것은 하늘의 모양을 상징한다. 대나무의 안팎에 마디가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안팎으로 슬퍼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나무는 사시사철 변하지 않으니,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추울 때나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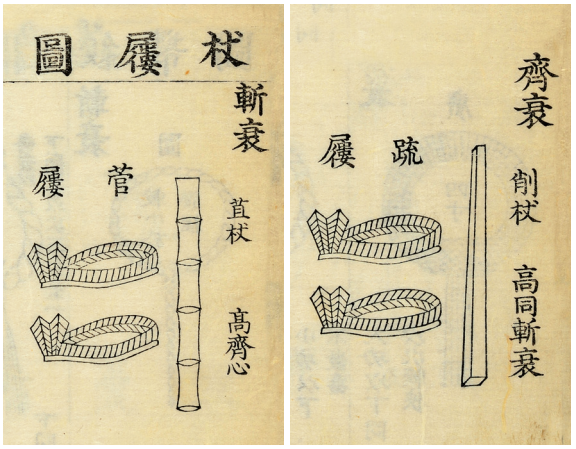

장리도(상장과 신발)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뜻할 때나 변하지 않고 애통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최에 어머니를 위하여 오동나무 상장을 짚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를 위하여 동桐을 사용하는 것은 '같다[同]'는 뜻을 말함이다. 즉, 속마음으로 슬퍼함이 아버지의 경우와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밖에 마디가 없는 것은 집안에서는 두 분을 모두 높일 수 없고, 밖에서는 지아비[夫]에게 굴종屈從함을 본뜬 것이다. 이를 깎아서 아래가 네모나게 한 것은 어머니[母]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지방'을 상징하는 것을 취한 것이다. 무릇 지팡이라 하는 것은 모두 밑둥치가 아래에 있으니, 그 나무의 성질을 따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은 것은 각각 그 목심木心에 가지런하게 하고, 그 크고 작은 것은 요질腰絰과 같게 한다."

즉, 아버지를 위하여 상장으로 대나무를 사용한 것은 대나무가 둥글어 하늘을 상징하고 아버지를 가리키기 때문이며, 어머니를 위하여 상장으로 오동나무 지팡이를 사용한 것은 네모난 형태가 땅을 상징하고 어머니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는 천원지방, 천지부모天地父母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참최의 저장은 대나무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상장으로 사용하여 그 슬픔이 가장 큼을 상징하며, 재최의 삭장은 오동나무를 깎아서 곱게 다듬어 사용하여 참최에 비해 재최의 슬픔이 덜함을 상징한다.

또한,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따르면, 오동나무 지팡이가 없으면 버드나무로 대신 만들어 쓴다고도 한다. 여기서 버드나무는 아버지와 닮음[類]을 의미한다. 『예기禮記』「상복소기喪服小記」에 "상장의 길이는 요질

腰絰과 똑같이 한다杖大如絰.”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주는 다음과 같다. “요질과 똑같이 한 이유는 상장이 가슴 아래쪽에 있어, 요질과 같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지팡이는 병든 몸을 부축하기 위한 것인데, 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팡이의 높고 낮음을 가슴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뿌리 부분을 아래로 하는 것은 그 본성에 순응한 것이다. 『가례家禮』에 실린 저장苴杖의 도를 보면 여섯 마디이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도 여섯 마디인데, 『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 상례에서는 꼭 여섯 마디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따르면, 왕실에서는 면상免喪한 뒤에 최질과 상장을 으슥한 곳에 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태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징 및 의의 『예기禮記』에 따르면, 상주가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효자가 부모를 잃으니 눈물을 흘리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근심과 괴로움으로 삼년상을 나니 몸은 병들고 메마르기 때문에 지팡이로 병든 몸을 부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감히 지팡이를 짚지 못하니 높은 어른이 있기 때문이요, 당상에서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니 높은 어른의 처소를 피하기 때문이다. 또, 상당에서 바쁜 걸음을 하지 않는 것은 허둥지둥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함이다. 이는 효자의 뜻이고 인정의 열매이며 예의의 본보기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인정일 따름이다.” 즉, 상주가 상장을 짚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효를 표현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슬픔으로 삼년상 동안 의려倚廬에 거처하면서 죽을 먹고 흙덩이를 베개 삼아 거적에서 자서 몸이 허약해지므로, 이를 지탱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상주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沙溪全書,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星湖僿說, 世宗實錄, 增補四禮便覽, 太宗實錄, 조선시대 관혼상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민속의 세계2-일상생활·의례생활(윤사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조우현(趙又玄)

상장례
喪葬禮

정의 상례喪禮와 장례葬禮를 함께 이르는 말.

역사 상장례喪葬禮란 용어가 쓰인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정확하게 ‘상장례’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것은 1428년(세종 10)이었다. 조선시대에 쓰인 상장례라는 용어는 상례뿐만 아니라 상례에 관한 ‘예의’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장례의 근간이 되는 ‘상장喪葬’이라는 용어는 이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용되었으며, ‘상례’를 일컫는 말로도 쓰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상장례라는 용어의 다른 한 쪽을 구성하는 ‘장례’라는 용어는 1418년(태종 18)부터 약 50회 정도 등장한다. 그리고 1636년 연안 김씨 김천석金天錫(1604~1673)이 쓴 『선조비연흥부원군부부인광산노씨장례일기先祖妣延興府院君府夫人光山盧氏葬禮日記』에 ‘장례’라는 용어가 보인다. 그러나 어느 예서禮書에서도 ‘장례’ 혹은 ‘상장례’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의례준칙」 및 대한민국 최초의 「가정의례준칙」(1969)에서도 ‘장례’가 아니라 ‘상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 개정한 「가정의례준칙」의 제3장에서는 ‘상례’라 하였으나, 그 개념을 정의한 제7조에서는 ‘장례제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근현대로는 처음으로 상례와 장례가 같이 등장한다. 이후 1985년과 1988년에 개정된 「가정의례준칙」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그러다가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면서 제4장 ‘상례’의 개념을 정의한 ‘제9조’에서 ‘상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상례에 대한 연구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장례와 상장례라는 용어가 상례라는 원래의 용어보다 습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용 상장례란 상례의 다른 이름이다. 굳이 설명하면, 죽음을 처리하는 장사葬事와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하고 상주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은 ‘상례’를 구체화한 용어이다. 여기서 ‘장례’라는 용어는 ‘장사’라는 말을 높인 것이다. 예서에서는 죽음을 처리하는 장사를

'의례'가 아니라 '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단순히 장사라는 말을 높여 장례로 표현했던 것이다. 또한, 부모 혹은 선조의 죽음 처리를 '일'로 다루기가 어려워 '예'로 표기했을 수도 있다.

장례는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상례의 전반부에 배치된다. 그 첫 번째 절차가 초종의初終儀이다. 고인의 운명殞命이 임박하면 초혼하고 시신을 목욕하는 등 시신 처리를 준비하는 절차이다. 2일째가 되면 소렴小殮을 하는데, 시신을 베로 싸서 묶는 절차이다. 3일째가 되면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대렴大殮을 한다. 이로써 시신을 처리할 준비를 마무리하고 외빈外殯을 한다. 장사 지내기 하루 전날 시신을 옮기는 천구遷柩를 하고, 발인 당일 견전遣奠을 지내면 발인發靷을 한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한 뒤 행하는 급묘及墓에서는 제일 먼저 방상시方相氏가 광중壙中의 잡귀를 몰아내고,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에서 정한 시간에 하관下棺한다. 이때 현훈玄纁을 드리고 삽선翣扇을 넣은 후 취토하면 흙을 채우고 회격灰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중의 회삼물灰三物을 다지는 '회다지'를 하며 회다지 노래를 부른다. 이때 받은 노잣돈은 마을 기금이나 상가에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사용한다. 이로써 시신을 처리하는 장사(장례)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이때부터 상례가 진행된다. 매장하는 동안 신주에 글씨를 쓰는 제주題主를 하고 제주전題主奠을 올리면, 혼백과 새로 조성한 신주를 영여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반곡反哭을 한다. 반곡하면 곧바로 영혼을 맞이하여 편안히 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 우제虞祭인 초우제를 지낸다. 매장 때까지 지내던 전奠이 아니라 상주가 주인이 되어 올리는 첫 번째 흉제凶祭인 제사祭祀로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이다. 초우 후 유일柔日 또는 초우 다음날에 재우再虞, 재우 다음날 혹은 강일剛日에 삼우三虞를 지내고, 성묘하면서 혼백을 묘소 곁에 묻는다. 신주를 모시지 않으면 탈상脫喪 때 혼백을 고인의 산소 옆에 묻는다. 우제 후부터 조석전朝夕奠도 폐한다.

삼우 후 강일이나 삼우 다음날 졸곡卒哭을 지내는데, 말 그대로 무시곡無時哭을 그쳐 슬픔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제사이다. 졸곡 다음날 고인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었음을 고하는 부제祔祭를 지낸다. 부제는 유일장을 하였으면 졸곡 다음날, 그렇지 않으면 3개월 후에 지낸다. 신주를 모시지 않으면 지낼 필요가 없다.

운명 후 1주기가 되면 소상小祥을 치르는데, 고인에 대한 추모와 상주의 슬픔을 경감하는 의례이다. 이때는 상복을 세탁한 연복練服으로 역복易服하여 슬픔이 줄었음을 상징한다. 다시 2주기가 되면 대상大祥을 지낸다. 이때는 빈소를 철거하고 상주가 소복으로 갈아입어 슬픔이 그만큼 감소하였음을 상징한다. 이를 '탈상脫喪'이라고 하며, 신주는 사당에 임시로 모신다. 27개월째가 되면 담제禫祭를 지낸다. 담제는 탈상 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한 시절을 더 기다린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담복禫服으로 역복하는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징이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술[醴酒]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다시 한 달을 기다려 길제吉祭를 지내는데, 신주를 모시는 상례의 마지막 절차이다. 『가례家禮』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한 절차이다. 하루 전날 신주의 분면을 고쳐 쓰는 개제改題, 당일에 행하는 길제, 친진親盡한 신주를 체천遞遷하거나 매주埋主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길제를 마치면 '복침復寢'이라고 하여 안방으로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주가 없을 때는 불필요한 절차이다. 이로써 고인은 조상신으로 승화하고, 상주는 일상으로 돌아와 가계를 계승하는 상례의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신주를 모시는 집안에서는 장례보다 상례를 더 중요시하는데, 이는 조상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주를 만들지 않는 경우 운명하면 즉시 죽음을 인정하고, 성복하면 바로 조상신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신주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대렴을 해야 죽음을 인정하고, 우제를 지내면서 조상신으로 인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지역사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우리나라 의례는 '가가례家家禮'라고 하여 집안, 학파,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관을 반드시 사위가 준비하는데, 이는 관을 유택幽宅으로 보기 때문이다. 태백산 서쪽 기슭 가평 등의 지역에서는 조릿대라는 봉을 들고 회다지를 하는 특징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미혼자는 상두꾼을 시키지 않는다. 기호지역에서는 특징적으로 매장할 때 관을 제거하고 시신만을 매장하는 퇴관退棺 혹은 탈관脫棺

을 한다. 서남 해안에서는 빈의 장소를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마련하는 초분草墳 혹은 초빈草殯이 있는데, 일정 기간 육탈肉脫이 되면 정식으로 매장한다.

특징 및 의의 상장례라는 용어는 예서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용어는 상장례이지만 전통적인 유교식 상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삼년상을 치르고 신주를 모시며 사대봉사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에도 상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규정의 용어가 아니라 관습적 용어였다. 상장례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였으므로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사용되었지만 예서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장례라는 용어가 일반화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을 치르고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신주를 모시는 집안이 사라지고 신주에 대한 개념이 약해진다. 그 결과,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상례보다 고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를 더 중요시하게 된다. 그래서 장례라는 용어와 함께 상장례라는 용어도 동시에 사용된다. 상장례는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이므로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적인 특성을 함께 가지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상장례의 기본 틀은 서로 융화되어 있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朝鮮王朝實錄,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김시덕, 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민속원,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현대 도시공간의 상장례 문화(김시덕,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

필자 김시덕(金時德)

상주 喪主

정의 상례喪禮를 주관하는 사람. 보통 망자의 맏아들, 또는 맏아들이 없는 경우 맏손자가 승중承重하여 궤전饋奠을 받드는 일을 맡음.

역사 '상주를 세운다[立喪主]'는 조항은 물론, 상주라는 용어도 고례古禮에는 보이지 않는다. 『서의書儀』를 따라, 『가례家禮』에서는 상주를 세우는 것이 초혼招魂을 마치고 주부主婦와 호상護喪 그리고 사서司書와 사화司貨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후 『가례의절家禮儀節』과 『명회전明會典』의 「품관상례」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반영된다.

내용 예서의 맥락에서 상주에 해당하는 용어는 '주인主人'이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서 "군주의 상[大事]인 경우, 상복喪服의 곱고 거친 정도를 가지고 서열을 삼으며, 군주 친족의 상일 때에도 그처럼 하고, 주인의 아래에 자리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 정현鄭玄은 "주인은 상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主人, 主喪者."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에서 "주인은 빈賓(손님)에게 배례한 다음, 실室로 들어와 시신을 눕혀 놓은 침상[尸床] 동쪽에 앉는다. 중주인衆主人은 주인의 뒤에 선다. 주인과 중주인 모두 서쪽의 시신을 향한다. 부녀자들은 시상尸床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신을 향해 앉는다."라고 한 것에 대해 정현은 "중주인은 주인의 여러 형제들이다衆主人, 庶昆弟也."라고 해설했다. 이에 따르면, 주인은 상을 주관하는 한 사람, 즉 상주이고 중주인은 상주의 형제들을 가리킨다.

『예기』 「증자문曾子問」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증자가 물었다. '상에 두 상주喪主가 있고 사당에 두 신주神主가 있는 것은 예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땅에는 두 왕이 없으며, 상嘗·체禘·교郊·사社 등의 제사에서 높이 받드는 대상이 둘인 경우는 없다. 그것이 예에 맞는지는 모르겠다.'" 이에 대해 원대의 진호陳澔는 "두 상주, 두 신주를 둔 경우가 당시에 있어 증자가 예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의심하여 물은 것이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땅에는 두 왕이 있을 수 없다. 상·체·교·사는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각각 높이는 대상이 있으므로 뒤섞어 함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상례에 두 상주를 두고, 사당에 두 신주를 두어서야 되겠는가? 예가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땅에는 두 왕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예기』 「상복사제喪服四制」에도 보이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以一治之'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다시 말해, 국가와 집안의 전일적 지배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상례와 제례를 주관하는 주체로 한 사람을 설정한 것이라는 말이다. 상주에 해당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오복친五服親의 범위에서 취하고, 오복친이 없다면 다시 이웃집에서 취한다.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마을의 어른이 주관한다."라고까지 하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례』에서는 초종初終의 절차에서 초혼을 마친 뒤에 '상주를 세운다'고 규정한 뒤, 본주本註에서 "무릇 주인은 장자長子를 말한다.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승중하여 궤전饋奠을 받든다."라고 하였다. 『가례』에도 중주인에 대한 언급이 있다. '천구遷柩'의식의 "널을 받들고 조상에게 하직인사를 한다奉柩朝於祖."라는 의절의 본주에 "천구하려고 역자役者가 들어오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주인과 중주인이 집장輯杖을 하고 서서 살펴본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례』의 경우도 고례와 마찬가지로 주인과 중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주인에 대해서는 '상주'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상주는 대체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세수도 하지 않고,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의미로 방립方笠이나 굴갓을 썼다. 또한, 부모상을 당했을 때 성복成服 전까지 상의의 한쪽 팔을 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왼팔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오른팔을 끼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 이런 차림은 죄인임을 뜻할 뿐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급박한 상황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상주가 충격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상주는 관과 수의壽衣, 상복喪服 등을 준비하는 한편, 묏자리를 잡고 산역山役 준비를 해야 한다.

「가정의례준칙」 제18조에서는 '장자'를 '주상主喪'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복인들을 '상제喪制'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상'이 '상을 주관한다'는 의미의 서술어+목적어 구조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서에 존재한다. 만일 '상을 주관하는 사람', 즉 '상주'의 의미로 사용하려면 '주상자主喪者'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일을 담당한다'는 뜻의 '집사執事'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의미가 되려면 '집사자執事者'로 표현해야 하는 것과 같다. 다만, 현재의 일상 용례에서 '집사'는 '집사자'의 의미로 전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면, '주상'을 '상주'의 의미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상제'는 예서의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용어로서, 맏상주 이외의 상주를 가리키는 기호 지역의 사투리라는 보고가 있다. 예서는 물론 『가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주인'과 '중주인', 또는 그에 대한 우리말 해석인 '맏상주', '둘째 상주', '셋째 상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참고문헌 家禮, 書儀, 禮記, 가정의례준칙, 전통 상례(임재해, 대원사, 2000), 한국의 상례(양승이, 한길사,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장동우(張東宇)

상청
喪廳

정의 상중喪中에 죽은 이의 혼백魂帛 또는 신주를 모셔두는 곳.

내용 상청을 '궤연几筵'이라 하기도 하는데, 궤연의 '연筵'은 그 밑에 까는 자리로서 죽은 사람의 혼백이나 신주를 모셔두는 곳을 의미한다. 『예기禮記』에 의하면 "궤几와 연筵은 모두 신령神靈이 깃들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라고 하였다. 궤연이 설치된 장소를 빈소殯所, 영연靈筵, 제청祭廳(또는 지청)이라고도 한다.

상청 | 경북 청도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시신을 묘소에 안장한 뒤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돌아와 상청에 봉안하며, 죽은 이가 평소에 쓰던 물건들을 궤연에 배설한다. 신주가 있는 경우에는 삼우제를 마치고, 혼백은 무덤 앞에 묻고 신주만 모셔둔다. 신주가 없을 때는 혼백만 모셔둔다. 삼년상을 마치면 신주는 사당에 모시고 상청을 없앤다.

상청에는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상식上食과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삭망朔望 등이 행해진다. 문상객들의 조문을 비롯해 설 명절에도 상청에 먼저 인사하고 어른들께 세배한다.

특징 및 의의 상청을 차리는 장소는 지방에 따라 다르나, 대개 대청마루나 조용한 방에 병풍을 치고 교의交椅 위에 혼백과 신주를 모신다. 대청마루에 설치할 경우에는 대청 한 부분을 광목으로 칸을 막아 상청으로 쓴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禮記, 朱子家禮.

필자 정종수(鄭鍾秀)

상포계
喪布契

정의 사람이 죽었을 때 상례喪禮·장례葬禮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에서 만들어진 조직.

역사 조선시대에 시행한 향약의 '환난상휼조患難相恤條'는 주로 혼상婚喪 시의 부조를 중시하였다. 조선 후기가 되자 군현이나 면 단위의 향약은 공동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족士族 중심 향촌지배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흐를수록 재지사족에 대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사족들은 군현 단위에서와 같은 향권적鄕權的 역학관계가 없는 동洞 단위에서 상민에 대한 사족 중심의 동계洞契를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동계에서도 혼상의 부조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양반과 상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아니라, 문중 내 또는 같은 마을 안의 양반 유생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례·장례의 기능만을 분화시킨 상포계처럼 상호 부조를 위한 계 조직을 만들었다. 한편, 조선 후기가 될수록 양반뿐만 아니라 민촌民村에 거주하는 상민과 천민들도 초상 시 부조를 위한 '상두계' 등을 조직하여 상사에 서로 도움을 주었다.

내용 일반적으로 상포계는 부모父母·본인[己]·아내[妻]의 사상四喪에 부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상포계라는 용어는 상을 당했을 때 많은 베[布]가 사용되기에 붙은 명칭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모를 극진히 모신다는 점에서 '위친계', 함께 벌초한다는 측면에서 '사초계', 관을 함께 장만한다는 점에서 '판자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통상 봄가을의 강신일講信日을 잡아 연 2회 정기회를 갖고, 사상 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계전契錢을 일정하게 걷기도 하였다. 문중이나 족내일 때는 공동 계답契畓의 소작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으로 유지하였다. 또는, 각 가입 호戶마다 울력으로 보통 장정 한 명씩을 보내기도 하였다. 구성원은 조문 및 애도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1615년 신응순이 아내의 상을 당한 후 기록한 「내상기內喪記」를 통해 상장 시 제반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빈객 이름 및 조장弔狀 송부자 명단, 부조물품 목록, 접수한 만장挽章·위장慰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장례에 필요한 경비 조달 이외에도 장지가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장례 때의 부역동원은 간단치 않은 문제였다. 상여를 소에 싣고 갈 때의 부여군扶輿軍 장정 10명, 혼백을 실은 영거를 들고 가는 인부 2명, 만장을 드는 노약자 20여 명, 나이 든 상주를 말에 태우고 따르는 상인구종喪人驅從 4명 등, 50여 명이 부역에 동원되고 있다. 보통 초상初喪 때뿐만 아니라 소상小祥·대상大祥 때에도 촛대비용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민간의 상민과 천민들이 주로 '상두계'라 부른 이 계는 마을과 상여의 규모에 따라 20~30가구 안팎으로 구성되었고, 상여의 운반 및 무덤 터다지기, 묘 쓰기 등 장례와 관계있는 일을 하였다. 상두계의 계원이라면 다른 계원들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해주므로 별도의 품을 살 필요가 없었다.

지역사례 상두계에 관한 지역사례를 살펴보면, 1699년경의 남포藍浦 「위친계: 계좌목」에서 4/10의 이자율로 계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1875년의 용성龍城(남원) 「귀후계」에서는 계답契畓을 이용하면서 동

답同沓을 족인族人에게는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약이 나타나 있다. 자료상의 한계 때문이겠지만, 관련 자료가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양반의 것인데 비해 이후 상포계를 구성하는 신분이 다양해진 점과 진주의 「오동민계五洞民契」(1907~1911) 등에서 보듯 일반 동민들 사이에서도 상포계가 조직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19세기에는 일반 백성들도 상포계 등을 만들어 상례·장례를 치른 것으로 생각된다.

특징 및 의의 군현이나 면·동 같은 행정적 단위의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적인 향약이나 동계와 달리, 동족이나 지역의 특정인들이 서로 협동하여 조상의 상례·장례를 치르기 위해 조직한 전통풍속이라는 데에 특징과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歸厚契案, 密陽郡府內面路下洞喪礬契, 爲親契, 店旀村沙草契, 執事所助哀契憲, 板子契, 생활문화와 옛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1), 조선시대사회사연구법(이해준·김인걸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3), 조선후기 지역사회 구조 연구(정승모, 민속원, 2010).

필자 박경하(朴京夏)

새벽문안

정의 신부가 현구고례見舅姑禮를 드리고 난 다음 날부터 아침 또는 저녁마다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의례.

내용 현구고례를 드린 신부는 시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 등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부모에게 문안을 여쭙는다. 집안에 따라 시부모가 잠들기 전 저녁에도 인사를 드린다. 이러한 의식을 '문안인사', '사관드리기'라 하기도 한다.

신랑과 함께 인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대개는 신부 혼자 인사를 드린다. 신부는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에게 예를 드림으로써 시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을 알리며, 이를 통해 시부모는 새 식구로 들어온 며느리의 행동이 바른가를 파악한다. 문안 인사를 드리는 기간은 집안마다 다르다. 시부모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행하며 짧게는 사흘, 길게는 한 달에서 3년 동안 아침마다 인사를 드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흘 이내에 그친다.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시어른에게 대접할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기도 한다. 목을 축일 수 있게 감주나 생수를 내가기도 하며, 친정에서 미리 마련해 온 엿, 약과, 홍시, 가래떡 등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서 가지고 간다. 이때 엿을 드리는 것은 새 며느리의 흠이나 흉을 보지 말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시댁 어른들이 크게 야단을 치지 말아 달라는 의미와 엿처럼 끈끈한 정을 사돈 간에 갖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새벽문안을 드리기 전이나 후에 신부는 시댁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을 조용히 치르기도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부엌에 들어가 신행 올 때 준비해 온 친정 우물물을 시댁 식구들이 사용하는 물동이나 시댁 우물에 붓는다. 친정 우물물로 첫 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 이때 신행 때 가져온 쌀(찹쌀)을 시댁 식구의 쌀과 섞어서 짓기도 한다. 물과 물이 만나 자연스럽게 섞이듯이 신부도 시댁 식구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화합을 이루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리고 물처럼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비켜가면서 다투는 일 없이 외부인에서 한 가족, 다시 한 마을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기를 바란다는 뜻도 담겨있다. 이 물을 시댁 마을의 공동 우물에 붓기도 하는데, 이 또한 다른 동네에서 시집온 신부가 시댁 동네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신부가 시집가서 집안일을 시작하는 시기는 집안마다 다르다. 시집을 온 바로 다음 날부터 하기도 하지만, 대개 새벽문안 기간이 끝난 뒤에 부엌일을 시작한다. 대부분 사흘 안에 새벽문안이 끝나는데, 이때 신부가 처음 부엌에 나가 일하는 것을 '입주入廚'라 하기도 한다. 신부는 먼저 부엌에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집안일을 시작한다. 이것은 새 삶을 시작한다는 뜻이며, 부엌의 주신인 조왕竈王께 먼저 아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부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시댁 솥뚜껑을 쓰다듬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출산 후 '젖유종'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

첫 아침상은 신행 때 친정에서 준비해 온 반찬이나 찬거리로 차린다. 신부는 시댁 부엌살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찬거리는 주로 참기름, 깨소금,

고추장 등 양념류이며, 반찬은 장조림, 멸치 볶음, 미역 볶음 등 미리 조리된 음식으로 준비해 온다. 아침상 차림을 통해 시댁 식구들은 신부의 음식과 살림 솜씨를 엿보았다.

그리고 새벽문안 기간이 끝나면 가까운 일가친척들이 신랑·신부를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한다. 그리고 '회가回家' 또는 '회가 돈다'라고 하여 신랑·신부가 어른들을 직접 찾아뵙고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왔음을 알리고 인사를 드린다. 지차之次인 경우는 큰집 사당이나 문중 묘에 인사를 하러 가기도 한다. 이때 신부는 시댁의 친족 관계 등 집안의 여러 가지 사정을 익히게 된다.

특징 및 의의 새벽문안은 신부가 시댁에 들어와서 치르는 입사식으로 볼 수 있다. 신부는 신행 온 다음 날부터 집안의 어른인 시부모에게 인사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첫 부엌 출입을 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물을 시댁 식구들이 사용하는 물에 넣거나, 집안의 불을 관장하는 조왕에게 아뢰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새 식구가 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새벽문안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집안 살림을 배우며, 가까운 친척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 신부는 새로운 가정에서 완전한 식구로 인정을 받는다.

참고문헌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9),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2001),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백민영(白旻永)

생신제
生辰祭

정의 기제사忌祭祀 대상인 조상의 생일에 지내는 제사.

역사 생신제生辰祭의 연원에 대해서 여중철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분재기에 나타나는 '생진절生辰節 차례'와 '초도제사'를 제시했다. 생신절 차례는 생신제와 명절 제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초도제사가 바로 생신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생신절 차례와 초도제사는 과거에 대상大喪까지 상복을 입을 동안에 망자의 생일 아침에 조반을 드렸던 것을 탈상 후까지 연장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후손의 도리이자 효성의 발로라고 보았다. 그는 생신제가 전혀 새로운 제사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 행해졌던 제사 방식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김경숙은 생신제를 고려시대 이래로 내려오는 한국인 고유의 제사 형태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는 죽은 부모의 생일에 제사를 지내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휘일제生諱日祭' 또는 '생기일제生忌日祭'라 하였고, 제사의 대상은 고비考妣로 한정되었다. 그는 이런 생신제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사 형태인데, 조선 후기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생신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사법의 하나로 언제부터인지는 불명확하나 고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사대부가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주자가례』의 참례, 천신례와 일정 부분 혼합되었다가,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는 조선 후기부터 사대부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 무렵에는 이미 민간에 보급되었기에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생신제는 매년 생일에 지내는 것과 환갑에만 지내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신제는 생일제사·생신제사·초두(초두례)·차사·생일차사·차례·생신차례 등으로 불리며, 돌아가신 조상의 생일 아침에 제물을 간단하게 차려 지내는 제사이다. 지역에 따라 사후 1년 또는 3년간 지내는 곳도 있고, 매년 지내는 곳도 있다. 차례나 차사는 명절 제사인 차례처럼 아침에 지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초두나 생신은 생일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초두는 삼척 지역에서 '초도'를 가리키는 말로, '초도'의 사전적 의미는 환갑의 예스러운 일컬음, 생일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환갑에 지내는 제사는 회갑제사, 만갑, 사갑死甲, 갑사甲祀 등으로 불린다. 돌아가신 조상의 환갑일 아침에 지내는 제사인데, 이날은 제사 후 옷 한 벌을 준비하여 묘소에 올렸다가 태우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다.

생일 아침에 지내는 생신제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많이 전승되고 있는데, 제사 기간이나 모시는 조상의 세대수 또는 제물 등에서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경기도와 전라도에서는 대개

돌아가신 후 3년간 지내고, 강원도에서는 시제에 모시기 전까지 지낸다. 충청북도 단양에서는 대개 돌아가신 이듬해 생일에 한 번 차려주는데, 매년 생일 때마다 차례를 지내는 집도 일부 있다고 한다. 생신제에 모시는 조상은 경기도의 경우 주로 부모와 조부모로 한정되지만, 강원도에서는 기제사에 모시는 조상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이 많다.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이 3대이면 3대 조상까지, 4대이면 4대 조상까지 생신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나 제사 시간은 아침이고, 제물은 기제사보다 더 간소하게 차린다는 점이 공통적인데, 전남 고흥의 경우 기제사와 동일한 제물에 미역국을 올리고, 충북 단양에서는 특히 평소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을 중심으로 차린다. 생신제 후에는 친척과 이웃을 청해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경기도 지역에서는 성묘를 가기도 한다.

돌아가신 조상의 환갑일에 지내는 제사는 일반적으로 '회갑제사'라고 하며, 아침에 제사를 지낸 다음 이웃사람을 청해 대접하고 옷 한 벌 준비하여 산소에 가서 소각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경기도 양주와 구리에서는 '사갑死甲'이라고 하며, 동네에 생존한 고인의 친구들을 청해 국수 잔치를 열고 망인의 옷을 한 벌 지어서 묘소를 찾아 소각한다. 경상북도 성주에서는 '만갑'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보통 사촌까지 참여하며 마을의 어른들을 모셔 술대접을 하고 묘소로 찾아가 옷 한 벌을 보여드린 후 태운다. 안동 지역에서는 '갑사甲祀'라고도 한다.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는 '만갑'이라 하여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 후 묘에 가서 예단을 태워 올려준다.

삼척 지역 생신제에서는 부부 중심으로,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다면 어느 한쪽의 생일이라고 해도 두 사람 다 모신다. 삼척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 일부에서 전승되고 있는 생신제는 제물을 기제사보다 더 간소하게 차리지만 "조상이 제사 때에는 안 와도 생일에는 꼭 찾아온다.", "가끔 잊어먹을 때도 있지만 그럴 경우 저녁에라도 상을 차려 지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생신제가 최근 들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제사를 지내기가 번거롭고 남들도 지내지 않는데 굳이 지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 웃어른이나 형제들이 지내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 조상을 숭배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제8의 신문왕조神文王條에 따르면 신문왕 2년에 국학이 설치되고, 6년에 당唐에서 『예기禮記』가 수입됨으로써 조상 모시기가 비로소 제도화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서인庶人도 『주자가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명종 이후로 서인에게까지 4대조 봉사나 3대조 봉사가 일반화되었다.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에서 도입한 『주자가례』에 의해 유교식 제례 문화가 전승되었음에도, 사대부가를 비롯한 서민까지도 우리나라 고유의 제사 형태인 생신제를 지내온 것은 한민족의 문화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상제사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표현양식이며 효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망한 조상의 생일에 지내는 생신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보본의례報本儀禮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삼척지역 생일제사의 유형과 전승실태(김태수, 강원민속학22, 강원도민속학회, 2008),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김경숙, 한국학보, 일지사, 1998), 제사분할상속에 관한 일고(여중철, 인류학연구 1, 영남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980),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김태수(金泰水)

서옥제
壻屋制

정의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기록된 고구려시대의 혼인 풍속.

내용 『삼국지』의 내용을 보면, 양가가 구두로 혼인을 정하면 여자의 집에서 본채 뒤에 작은 집인 서옥壻屋을 짓는다. 사위가 저물 무렵에 여자의 집 문밖에 이르러 자기 이름을 밝히고 엎드려 절하며 여자와 자기를 청한다. 이같이 두세 번 하면, 여자의 부모는 서옥에 가서 자도록 허락한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서옥제에 대해 장승두는 솔서제率壻制, 즉 데릴사위제로 보았으며, 손진태는 솔서제의 일종인 봉사혼

奉仕婚으로 보았다. 그리고 두 연구자 모두 모계 시대의 유풍으로 보았다. 그러나 데릴사위제와 봉사혼은 둘 다 모계가 아닌 부계사회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서옥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도 각자 자기 집에 머물면서 밤에만 신랑이 와서 동숙하는 형태로 보기도 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거주혼으로 보기도 한다. 또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뒤에 아이가 장성하면 신랑집으로 돌아간다는 데서, 고려 이후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의 원형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서옥제가 처가에 있다가 뒤에 시가로 가는 데 반해, 서류부가혼은 혼인 뒤 거주가 모처母處 혹은 부처父處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자의 역사적 연계성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서옥제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정설이 없다. 이렇게 논의가 분분한 이유는 『삼국지』의 기록 자체가 워낙 소략하고, 삼국시대 혼인의 실제 양상을 보여주는 사료가 극히 빈약하기 때문이다. 서옥제의 정확한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비교사적인 연구가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사 15-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국사편찬위원회, 1995),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을유문화사, 1948).

필자 권순형(權純馨)

석문가례초
釋門家禮抄

정의 1636년 나암진일懶庵眞一이 엮은 불가佛家의 상례喪禮 의식서.

내용 이 책은 1636년 편찬 내지 간행된 것으로, 1659년 문인 경일敬一이 발문을 쓰고 이듬해 문경聞慶의 배산호裵珊瑚가 간행한 판본이 현존한다. 이후 1664년 해인사에서 간행한 『운수단작법雲水壇作法』에 합철되어 있으며, 1670년 통도사에서 중간되었다. 또한, 1882년 정행井幸이 편집하여 해인사에서 간행한 『다비작법茶毘作法』에 합철되어 전한다. 이 책은 상하 2권 1책의 목판본으로, 권두에 편자 나암진일의 서문, 권말에 경일의 발문이 있다. 서문에서 편자는 원래 석가釋家의 예법을 규정한 『석씨가례釋氏家禮』가 있지만, 그 책이 전하지 않는 까닭에 석문釋門의 상덕上德이 귀적歸寂하여도 흉례를 행함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편자는 자각대사의 『선원청규禪苑淸規』와 응지대사의 『오삼집五杉集』, 『석씨요람釋氏要覽』 등을 읽고 그중 가례 관련 내용을 추려 이 책을 편찬하였으며, 동방의 예와 맞지 않는 것은 그 요지를 뽑아 부록하였음을 밝혔다.

승속오복도僧俗五服圖와 본종오복지도本宗五服之圖, 본종오복촌수도本宗五服寸數圖, 전물절차奠物節次, 감구효당도龕柩孝堂圖와 함께 상권에는 명정서규銘旌書規, 다비작법절차茶毘作法節次, 신체발인시행입규身體發引時行入規, 오방번서규五方幡書規, 무상계게無常戒偈, 다비법사창거감편茶毘法師唱擧龕篇, 노제路祭, 반혼返魂, 거화하화편擧火下火篇, 다비법사창봉송편茶毘法師唱奉送篇, 수골收骨, 쇄골법碎骨法, 거물계擧物誡, 송장시금단규送葬時禁斷規, 제전석명祭奠釋名 등이 실려 있으며, 하권에는 장杖, 곡哭, 행조行弔, 수조受弔, 분상奔喪, 장법葬法, 사유闍維, 사리舍利, 입탑立塔, 명銘, 칭고稱孤, 기일忌日, 소자疏子, 조서법弔書法, 위서법慰書法, 제문식양편祭文式樣編 등이 실려 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까지는 한반도에 전래된 『선원청규』 및 『오삼집』 같은 책을 따른 불교 상례가 행해졌다. 그러나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실린, "무릇 승니, 도사, 여관女冠도 부모의 제사와 선조의 상복 등을 모두 상인常人과 같이 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자는 장杖 100을 치고 환속하도록 한다."라는 금령 이후 불교 상례 의식은 점차 소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는 소멸된 불교 상례 의식의 복원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동방의 예에 맞지 않는 것을 가려내 한국불교의 실정에 맞는 의식을 정립케 한 중요 의식서로,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와 함께 현행 불교상례 실행의 규범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 및 동국대학교 등에 판본이 전한다.

필자 정각(正覺)

석문상의초
釋門喪儀抄

정의 1636년 벽암각성碧巖覺性이 엮은 불교 상례 의식서.

내용 이 책은 1636년 편찬된 것으로, 1657년 벽암각성의 제자인 백곡처능白谷處能이 칠불암에서 발문을 써 『다비문茶毘文』을 합철合綴한 징광사澄光寺 개판본이 현존한다. 이후 1705년에 징광사에서 개간改刊된 것이 전해지기도 한다. 상하 2권 1책의 목판본으로, 권두에 1636년 각성이 화엄사 장실丈室에서 쓴 서문과 1657년 징광사 개간開刊 당시 처능이 작성한 발문이 있다.

서문에서 편자는 상례喪禮가 매우 중요함에도 당시 불가佛家에는 상의喪儀에 대한 근본이 없고, 시행되는 것이 규범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선원청규禪苑淸規』, 『오삼집五杉集』, 『석씨요람釋氏要覽』 등에 의거하되, 중국의 법은 동방의 예禮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핵심만을 뽑아 이 책을 편찬한다고 하였다.

권상에는 승오복도僧五服圖, 감구효당도龕柩孝堂圖, 곡哭, 제전祭奠, 행조行弔, 수조受弔, 분상奔喪, 장법葬法, 사유闍維 등을 실어 승가의 오복제五服制 내지 장지에 이르는 행렬 절차와 기물의 배치, 제전祭奠 절차 등을 밝히고 있다. 권하에는 사리舍利, 입탑立塔, 명銘, 칭고稱孤, 소자疏子, 조서법弔書法, 봉송封送, 창의唱衣, 기일忌日, 제문식양祭文式樣 등을 실어 사리舍利의 입탑入塔 방법, 조문의 격식과 범위 및 창의唱衣의 격식과 의식 절차에 필요한 제문祭文의 양식 등 상례 의식을 정리하였다.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는 불가의 청규를 기본으로 하되, 당시 사회에 정착된 일부 유교의례를 수용해 편찬한 상례 의식서이다. 17세기 중반은 예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하던 시기로, 이때를 즈음해 『석문상의초』 외에도 각성의 제자인 나암진일懶庵眞一의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 허백명조虛白明照의 『승가예의문僧家禮儀文』 등 불교 의식서가 편찬되었다. 이러한 불교 의식서의 편찬은 불교 상례의 우수성을 밝히는 역할 뿐 아니라, 조선 초 이래 단절된 불교 상례를 복원하는 역할도 했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 및 동국대 등에 판본이 전한다.

필자 정각(正覺)

석물
石物

정의 능묘에 설치한 각종 석조물石造物.

역사 석물이란 능묘에 설치한 각종 석조물石造物을 의미한다. 그 종류는 문인석文人石·무인석武人石·동자석童子石·장명등長明燈·망주석望柱石·상석床石·혼유석魂遊石·향로석香爐石·고석鼓石·제주병석祭酒甁石·배설석排設石·호석護石·호석虎石·양석羊石·마석馬石·차일석遮日石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피장자의 신원과 행적을 새긴 신도비神道碑·묘갈墓碣·묘표墓表도 석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석물은 능묘를 시위侍衛하면서 피장자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아울러 사악한 기운의 침입을 막는 벽사辟邪의 기능도 겸한다.

중국에서는 석물을 '석각石刻'이라고 표현한다. 기록상으로는 고대古代부터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고학적 유물은 한대漢代 이후에 확인된다. 황릉의 석물 제도는 당대唐代에 체계를 갖추었으며 송대宋代와 명대明代 그리고 청대淸代를 거쳐 완성되어 우리나라의 능묘 석물보다 그 종류가 더 다양하고 양식도 매우 화려하다. 명청대의 황릉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에서 능비陵碑와 호석護石을 찾아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당대唐代의 황릉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나, 통일신라만의 방식으로 변용시켜 토착화하였다. 통일신라 왕릉을 대표하는 원성왕릉(괘릉)의 석물 중에서 서역인의 모습을 한 석인상이 배치되어 있어 당시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왕릉은 통일신라 왕릉제도의 전통 위에 송대宋代의 황릉제도를 가미하였고 태조 현릉顯陵을 조성하면서 고려만의 왕릉제도를 갖추었다. 고려 말에 조성된 공민왕릉은 고려 왕릉제도를 일시에 혁신한 왕릉이다.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쌍릉雙陵 구조를 마련하였고, 봉분부터 정자각까지 가파른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문인석·무인석·장명등·호석·양석·상석 등의 각종 석물도 완비하였다. 공민왕릉은 고려 문화예술의 집합체이며 조선 왕릉의 모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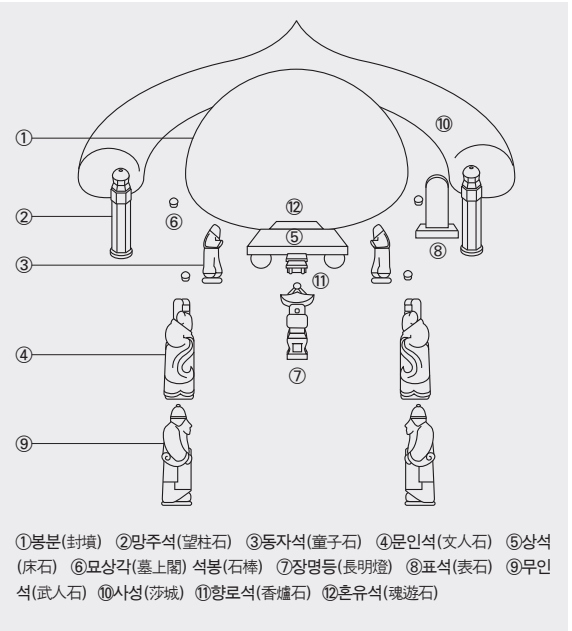

①봉분(封墳) ②망주석(望柱石) ③동자석(童子石) ④문인석(文人石) ⑤상석(床石) ⑥묘상각(墓上閣) 석봉(石棒) ⑦장명등(長明燈) ⑧표석(表石) ⑨무인석(武人石) ⑩사성(莎城) ⑪향로석(香爐石) ⑫혼유석(魂遊石)

석물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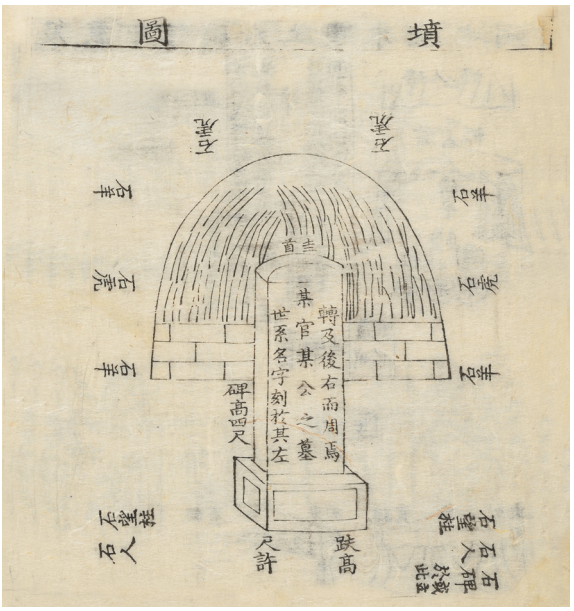

분도 | 가례집람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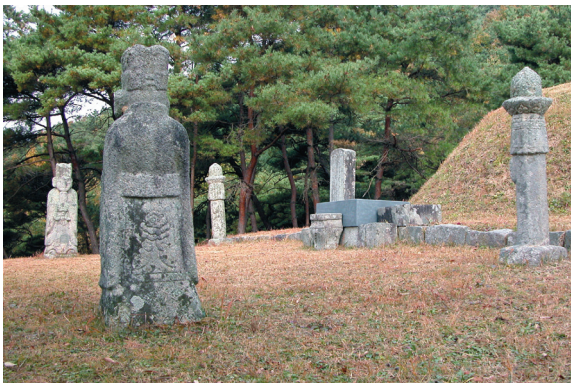

아계 이산해의 묘와 석물 | 충남 예산 | 2003 | 이민식

된 기념비적인 왕릉이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묘 석물은 아직 뚜렷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조선시대는 주자성리학朱子性理學을 국시國是로 천명한 유교주의 국가였다. 유교儒教는 인간의 사후 세계인 내세來世보다는 현실의 인간 세계를 더 중시하고, 현실의 삶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도리를 다함이 '인仁'이라 할 때, 그 기본적 발현 양상은 '부자자효父子慈孝'의 혈연관계에서 드러나는데, 이를 돈독히 하면 효성孝性을 근간으로 한 선조先祖의 보본추원報本追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보본추원의 구체적 실행 방법은 왕실의 경우 신위神位을 모셔 놓은 종묘와 왕릉 제향이고, 사대부는 사당祠堂과 묘의 제사祭祀로 나타난다. 유교적 생사관生死觀에서는 죽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정신과 육체를 모두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제통祭通」에서는 제사를 일러 "무릇 제사를 지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밖으로는 임금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안으로는 부모에 효도하도록 가르친다."고 하였고, 「교특생郊特牲」에서는 "만물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사람은 조상에 근본을 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후손은 모름지기 보본報本의 차원에서 열성列聖의 왕릉과 조상의 묘를 소중히 받들고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주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묘와 사당을 잘 가꾸어야 함은 물론, 왕릉과 조상의 묘를 정성껏 치장治葬하는 것이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효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왕실과 사대부士大夫는 유교 윤리관에 입각해서 열성과 조상에 대한 숭모崇慕의 마음으로 일정한 격식에 맞춰 능묘에 석물을 설치하고 능묘비를 건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열성과 조상의 덕德을 밝히고 현창하는 것이며, 올바른 예禮의 실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성인聖人으로 추앙하던 공자孔子나 주자朱子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석물은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석조미술石造美術을 대표하는 유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불교가 지배하던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각 사찰에 석불·석탑·석등·승탑 등의 훌륭한 석조조각품이 만들어졌다면,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 그 이념에 따라 왕릉이나 조상의 묘에 문인석·무인석·

장명등·망주석·호석·마석·양석·상석 등의 뛰어난 석물 조각품이 제작되었다. 특히 문인석과 무인석 등의 석인 조각은 조선시대 석조 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조선시대 왕릉 석물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년)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1758년) 등에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묘 석물은 관련 법률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왕명으로 사안이 생길 때마다 금지하거나 허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1424년(세종 6) 장명등 설치를 금지하였고 1474년(성종 5) 석상石床과 석인石人의 일정 규모를 정하여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1483년(성종 14) 도성都城 안에서 석인石人과 표석表石을 사사로이 만들어 길거리의 저자에 두고서 매매했다 하니, 석물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시장이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51년(명종 6)과 1556년(명종 11) 두 차례에 걸쳐 왕명으로 서인庶人과 하천下賤은 표석과 석인을 세우지 못하도록 엄금嚴禁하였다. 1698년(숙종 24) 편찬된 『수교집록受教輯錄』에 서인庶人 무덤의 석인·망주석·표석은 2척을 넘길 수 없다 하여 서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64년(영조 40)에 이르면 "서인庶人들이 분묘에 석물을 세우면서 신분의 법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하게만 치장하려고 힘써 심지어는 천금의 재물을 허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상소가 올라올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분묘의 석물 치장은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였다. 17세기 유학자儒學者인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1607~1684)가 자손들에게 생활규범이 되도록 유훈遺訓으로 남긴 『정훈庭訓』에는 묘제墓祭를 지내는 의절儀節 항목에 '석물'을 종류별로 소개한 내용이 있다. 먼저 신도비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상의 관직를 지낸 사람만 세우고, 갈석碣石(묘갈)은 당상관堂上官 이하면 세우는데, 모두 위치는 묘산墓山 아래라고 하였다. 그리고 표석表石(묘표)은 관직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묘 앞에 세울 수 있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라도 표석과 상석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표석조차 세울 수 없으면 상석을 조금 두껍게 하여 그 앞면에 피장자의 신분을 표석의 전면대자前面大字처럼 새기는 것이 제일 좋다고 대안도 제시하였다. 또 석인石人은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문벌門閥이 높은 사대부 집안에서는 도성都城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경기 지역에 묘산墓山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대대로 세거世居하면서 지극 정성으로 조상의 묘를 가꾸기 위해 엄청난 물력을 동원해 각종 석물을 장만하였다. 또한, 왕실에서도 경기 지역에 태조 건원릉을 비롯한 역대 왕릉에 당대 최고 수준의 석물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경기도의 각 시군에 지금도 조선시대에 조성된 수십 기의 왕릉과 수백 기의 묘가 남아 있는 것이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이러한 양질의 조선시대 능묘가 집중적으로 분포한 지역은 거의 없다. 따라서 경기도는 조선시대 능묘와 석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예학禮學에 대한 연구와 묘제墓祭의 정비에 따라 묘 석물은 크게 묘제석물墓祭石物과 의장석물儀仗石物로 구분된다. 묘제석물은 혼유석·상석·향로석·제주병석 등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와 직접 관련된 석물을 지칭한다. 의장석물은 신도비·묘갈·묘표·문인석·무인석·동자석·장명등·망주석·양석·호석 등으로 제사와 상관없이 위의威儀를 갖추기 위해 조성된 석물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는 묘제墓祭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조선은 설날·한식·단오·추석 등 세속적으로 지내오던 묘제를 폐지할 수 없었다. 이에 유학자들은 17세기에 이르러 『주자가례』를 맹종하지 않고 묘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묘제를 지낼 때 위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예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예학자들은 위패 대신 축문을 읽어 강신降神한 혼령이 오는 자리에 혼유석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봉분 앞에 상석만 두었던 묘제석물墓祭石物은 17세기 전반부터 묘표 앞에 혼유석을 두게 되면서 묘표—혼유석—상석—향로석이 중심축을 형성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조선의 묘제가 예론적으로 재정비되면서 분묘의 상설제도까지 함께 변화하여, 조선 고유의 분묘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불교가 지배하던 시기에 우수한 불교 석조 조각품이 만들어졌다면,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 유교 이념에 따라 능묘에 우수한 석물이 조성되었다. 석물은 한국미술사에서 빛나는 조선시대 석조 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기 묘제 석조 미술-상·하(경기도박물관, 2007~2008), 고려 왕릉(장경희, 예맥, 2013), 신라왕릉 연구(이근직, 학연문화사, 2013), 여주의 능묘와 석물(여주군향토사료관, 2005), 용인의 분묘 문화(용인문화원, 2001), 조선시대 경기지역 묘제석물 연구(정해득, 조선시대사학보51, 조선시대사학회, 2009), 중국 당대 황제릉 연구(유향양·추교순, 서경문화사, 2012), 한국문화와 역사의식(유봉학, 신구문화사, 2005).

필자 이민식(李敏植)

석수
石獸

정의 능묘 주위에 세워두는 돌로 만든 동물 모양의 상像.

역사 『금석례金石例』의 기록에 따르면, 능묘 주위에 석조물을 배치하는 가장 오래된 예는 중국 전한대前漢代의 장수 곽거병霍去病의 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석조물을 조성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수石獸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진묘수鎭墓獸로,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수호동물이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묘 주위에 석사자石獅子를 세우거나 둘레 호석으로 십이지상十二支像을 배치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에서 점차 벗어나, 고려 말 공민왕대에 문인석文人石·무인석武人石·석양石羊·석호石虎 등이 배치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조선시대에 이른다.

내용 조선시대 왕릉에는 상설제도象設制度라 하여 능묘를 수호하고 왕의 위엄을 상징하기 위해 세우는 석인石人, 석수, 석망주石望柱, 장명등長明燈 등의 배치를 정하고 있는데, '상설'이라 함은 앞에 나열한 석물들을 말한다. 대개 능에 호석을 두르고 그 주위에 각각 4마리의 석양, 석호를 서로 엇바꾸어 배치하여 밖을 향해 능을 수호하는 형상을 만든다. 그리고 능의 좌우에 무인석이 1~2쌍, 이보다 한 단 더 높은 곳에 문인석이 1~2쌍이 있으며, 이들 뒤엔 석마石馬가 서 있다.

많은 동물 중 호랑이나 양을 무덤 주위를 지키는 석수로 세운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중국의 옛 기록에 따르면, 묘를 파고 시체를 해치는 여우의 해를 막기 위해 석호石虎를 세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석양石羊의 경우, 공자의 석전대제에서 양머리를 사용하였을 정도로 양은 유교의 대표적인 희생 제물이었고, 이후에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시하는 영물이자 성수聖獸로 생각되었으므로, 석양이 무덤을 수호하는 역할로 능묘 주위를 지키게 된 것이다.

석수를 세우는 것에 대한 법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사안이 생길 때마다 금지하거나 허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석수는 본래 왕의 무덤에만 세울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왕 이외의 다른 무덤에 석수를 세울 경우, 이를 금지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세종실록』의 성비誠妃의 묘소에 석수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의논과 『성종실록』의 왕실 종친의 묘소에 석수를 세운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그 예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사대부의 묘에도 석수, 특히 석양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조대 학자인 이규상李圭象(1727~1799)의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에 의하면 영조 말년부터 사대부집 묘에 석인을 세우지 않게 된 것은 효종의 사위였던 금평도위錦平都尉 박필성朴弼成(1652~1747) 집안의 묘역에 세워진 석인이 제사 음식을 가로채 버린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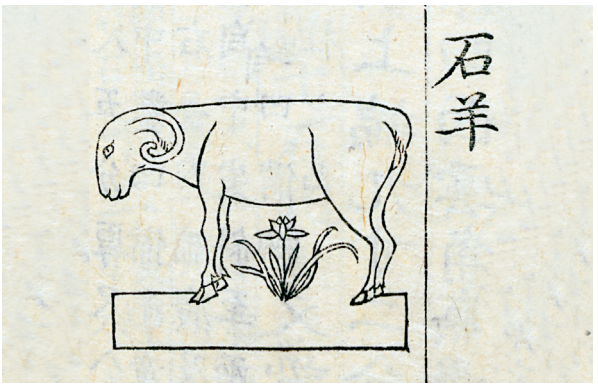

석양 | 국조상례보편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석양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한다. 그래서 석인을 넘어뜨리고 석양을 대신 세우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금평도위 집안이 당대의 명문가라 이를 본떠 다른 집안에서도 따라하게 되면서 유행을 하게 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석수는 무덤의 주인을 향한 후손들의 염원과 무덤 주인의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비교적 제작연대가 뚜렷하여 한 시대의 조각의 아름다움과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국역 가례증해4(한국고전의례연구회, 민속원, 2011), 문화로 읽는 십이지신 이야기 양(이어령 외, 열림원, 2012), 서울 경기 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김우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십이지의 문화사(허균, 돌베개, 2010), 조선시대 금관조복형 문인석 연구(최윤정,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선시대 왕릉 석수에 대한 연구(배윤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조선시대 왕릉의 석인 석수 조형성 연구(신광철,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변혜민(邊慧敏)

선종
善終

정의 한국 가톨릭에서 죽음을 뜻하는 용어.

역사 한국 가톨릭에서 선종善終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가톨릭 문헌이 아닌 『한서漢書』에 선종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글자 그대로 사고사나 사형 같은 변사를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일 뿐이다.

17세기 초엽 중국에 진출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른바 보유론補儒論이라고 하는 적응주의적 선교 노선을 취하였다. 보유론은 유학의 부족한 점을 천주교로 보완한다는 의미로, 그리스도교 신앙과 현지 문화의 조화를 시도하는 이론이었다. 이 이론의 창안자는 『천주실의天主實義』의 저자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였다. 그의 이론은 중국에 입국한 후배 예수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마테오 리치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 루벨리(Andre Lubelli, 1610~1683)는 『선생복종정로善生福終正路』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는 바른 길'이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선종'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된다. 1652년에 발간된 이 책은 그 뒤로 여러 번 간행되었고,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글로 번역되어 널리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디아스(Emmanuel Diaz, 1574~1659)가 항상 몸에 지닐 수 있는 일종의 매일기도서로 저술한 『수진일과袖珍日課』에도 운명하는 자를 돕는다는 뜻의 '조선종인助善終引'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용례로 보아 '선종'이라는 용어는 가톨릭의 전래 초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문헌은 『천주성교예규』이다. 1859년 다블뤼(Anthony Daveluy, 1818~1866)가 편집하여 목판본으로 인쇄한 『천주성교예규』에 '션죵을 돕는 공부'와 '임종을 돕는 의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선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종이라는 말은 최양업崔良業 신부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천주가사 〈선종가〉가 나올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었다. 1880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행된 『한불자전韓佛字典』에도 표제어로 수록되어 공식화된다. 이후 1906년 〈경향신문〉이나 1911년 간행되기 시작한 〈경향잡지〉에서도 가톨릭 신자나 신부, 주교들의 죽음을 모두 선종이라고 표현하였다.

내용 『한불자전』에 의하면 선종은 '착한 죽음', '거룩한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끝마친다는 뜻인 '선생복종善生福終'의 준말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착하고 바르게 살아, 삶을 마감할 때 거룩한 죽음을 예비하라는 천주교의 지향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착하게 산다'라는 뜻의 선생善生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덕修德을 강조한 것으로 유학에서 논하는 수신제가修身齊家의 가르침과 그 형식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용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징 및 의의 선종은 예수회 선교사들의 문화적응주의적 선교정책을 반영하는 말로, 중국에서 들어온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선종이 한국

가톨릭만의 용어를 넘어 일반에까지 널리 알려진 것은 가톨릭과 한국문화 사이에 일어난 문화적응의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선종(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2011), 착한 삶과 거룩한 마침(조광, 경향잡지-1507, 1993. 10),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필자 김영수(金榮洙)

설 차례

정의 설날 아침에 4대 조상까지 한정하여 세찬歲饌, 세주歲酒, 떡국 등을 진설하고 지내는 제사.

역사 명절 차례는 '속절俗節제사'라고 불리던 것으로 예서에도 전례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설은 이미 고대국가 때부터 있었다. 『당서唐書』「동이전東夷傳 신라」에 "신라인들은 정월 초하루에 사람들끼리 치하하고 일월신에게 절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곧 하늘에 제사 지냈음을 말한다. 이를 통해 나아가서는 조상에게도 예를 갖추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차를 올렸다는 기록은 없다.

『주자가례朱子家禮』 사당조祠堂條에서는 보름의 참례에 차茶를 올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차례茶禮가 유래했을 것 같다. 차례는 원래 '차를 올리는 예禮'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차 대신 술을 올린다.

설 차례는 원래 차를 올리는 예에서 유래하였으므로, 기제사보다 더 간소하게 지낸다. 축문을 읽지 않고 술도 한 잔만 올린다. 그리고 명절에 올리는 제사에는 해당 명절에 먹는 특별한 계절 음식을 올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가정에 따라서 밥과 국 대신 떡국을 올린다. 그래서 설 차례를 '떡국 차례'라고 하기도 한다.

내용 설 차례는 설날 아침에 각 가정에서 조상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낸다. 그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과 같다.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설 차례를 치르고, 묘소에 성묘를 가기도 한다.

설 차례를 지낼 때의 제구 설치나 제수 준비는 기제사 및 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차례는 기제사의 대상인 여러 조상에게 모두 지내야 하므로, 종류는 같아도 숫자가 많다. 고조부모를 비롯한 사대를 봉사하는 경우 신위를 모시는 교의交椅, 제수를 차리는 제상, 제수를 담는 각종 그릇이 각각 네 벌 있어야 한다. 그 밖의 병풍, 향안, 향합, 소탁, 자리 등은 한 벌만 있으면 된다. 차례는 봉제의 대상을 한꺼번에 모신다. 따라서 동시에 신위를 모시고 제수를 차려야 하므로 교의와 제상이 네 벌 필요하다. 그러나 교의와 제상을 따로 준비하기가 어려우면 윗대 조상부터 차례대로 여러 번 지내기도 한다.

설 차례에서 모시는 조상은 기제사에서 모시는 조상의 대수와 동일하다. 가령 사대봉사를 하는 가정에서는 4대조까지 차례에서 모시며, 후손들이 참석한다. 가정에 따라서는 모시는 조상 대수로 지방을 한꺼번에 잇달아 써서 붙이고, 제물은 한 벌만 마련하여 차례를 한 번 지내기도 한다. 이때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윗대 조상의 지방을 순서대로 한꺼번에 붙인다. 제물을 한 벌만 차리더라도 떡국과 수저는 따로 놓으며, 혹 메와 갱을 올리는 경우에도 새로 올린다.

설 차례 | 경기 파주 파평 윤씨 종가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예전에는 차례상을 차릴 때, 윗대 조상에게 지내고 나면 상에 올렸던 제물을 모두 내온 다음 다시 상을 차려서 다음 대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다. 그런데 요즘은 간편하게 제물은 한 벌만 차려 놓은 채 지방만 떼었다가 새로 붙여서 차례를 지내거나, 모시는 조상 대수에 따라 제물을 각각 마련하여 한꺼번에 차려놓고 한 번만 올리는 수도 있다.

메와 갱 대신 떡국을 올리고 그 밖에 삼색실과, 산자, 탕, 포 등을 차린다. 그 순서는 먼저 참신한 후 강신하며 이어 헌작하는데, 차례 때에는 단헌무축單獻無祝이다. 그런 다음 삽시揷匙한다. 유식의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이어 철시한 다음 사신재배하고 철상한다. 차례를 지낸 후 조상의 묘소에 성묘를 가는데, 이때 별다른 제물은 가져가지 않으며 묘소에 절만 올리고 온다. 가정에 따라서는 주·과·포를 간단히 가지고 가서 상석에 올려놓고 성묘한다.

특징 및 의의 설 차례는 기제사나 시제와 달리 약식제사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술잔을 한 번 올리고 축문도 없다. 새해 첫날에 지내는 제사라는 점에서 새로운 1년을 돌아가신 조상과 함께 맞는다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설날 세배가 살아계신 어른들에게 드리는 인사라면, 설 차례에는 새해를 맞아 돌아가신 조상에게 드리는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사례편람(우봉이씨 대종회, 1992),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한국인의 일생의례-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필자 김명자(金明子)

설위
設位

정의 신주神主를 내어 모시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일.

내용 신주를 내어 모시는 것은 제사하기 위해서이다. 설위는 제사를 드리기 전날에 감실의 신주독神主櫝에서 신주를 꺼내 모시기 위한 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를 봉안할 교의交椅를 갖다놓고, 그 위의 바닥에 욕석褥席을 깔아놓는다. 어떤 분을 내어 모실 것이냐의 문제는 향사의 종류와 관련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리의 배치도 달라질 수 있다.

청사에서 거행하는 사시제四時祭의 설위設位는 제사 하루 전에 행한다. 고조고비의 신위를 당의 서북쪽 벽 아래에 남향하도록 진설하는데, 고는 서쪽이고 비는 동쪽이다. 각각 의자와 탁자 하나를 사용하여 합설한다. 증고조비, 조고비, 고비를 차례로 동쪽에 진설하는데, 모두 고조의 신위와 같게 하되 세대마다 각각 자리를 만들어 한데 모이지 않게 한다. 부위祔位는 모두 동쪽 벽에서 서향하는데, 북쪽이 윗자리이며, 간혹 양 서序에서 마주한다.

이처럼 사시제의 설위는 사당에 모신 4대조와 그 세대 이하의 신주가 모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유해손劉垓孫은 『가례家禮』의 보주補注에서 그 진설 위치를 배정하였는데, 소목昭穆에 근거한 형태였다. 그리하여 그는 큰 제사의 경우 신주를 꺼내 당 혹은 정침에 놓도록 했다. 그의 규정에 따르면, 오직 고조고는 서쪽에 있고 고조비는 동쪽에서 남향하며, 그 나머지 증조고·조고·고는 모두 서방西旁에서 동향하고, 증조비·조비·비는 모두 동방에서 서향한다고 하였다. 신주를 부제할 때 고조의 형제이면 고조의 좌우에 부제하는데 역시 남향하고, 증조고·조고·고의 형제이면 증조고·조고·고의 상하에 부제하는데 모두 동향하며, 그 비는 고조비의 좌우에 부제하는데 역시 남향하고 증조비·조비·비의 상하에 부제하는데 모두 서향한다고 하였다. 항렬이 낮거나 어린 남녀의 부위는 모두 서쪽에 놓아 상하로 소목을 나누도록 하였다. 그에 반해, 주자朱子는 사대고비의 서상제西上制를 기준으로 하고 부위는 배위로서 동쪽 벽에서 서향하도록 하였다.

초조제初祖祭는 시조의 신위를 봉안할 자리를 제사 하루 전에 당 가운데의 북쪽 벽 아래에 마련한다. 불천위인 시조의 별묘別廟가 있는 집안에서는 이곳에서 지낸다. 선조제先祖祭에서는 조고의 신위를 당 가운데의 서쪽에 설치하고, 조비의 신위를 당 가운데의 동쪽에 설치한다. 선조는 초조 이하, 고조 이상의 조상이다. 따라서 조천된 신주들은 그 수가 많아서 다 진설하지 못

신주 | 경북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하고 조고祖考와 조비祖妣 각 한 분의 신위만 진설한다. 계추季秋에 제사 지내는 네제에서는 역시 하루 전에 고考와 비妣의 신위를 진설할 자리를 당 가운데에 마련한다. 합설하며,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신위 하나만 진설한다. 기일忌日에는 네제와 같은데 고考의 신위 자리만 마련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배위의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그것은 배위의 제사를 박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슬픔이 제사를 지내야 할 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고와 비를 아울러 제사 지낸다는 것은 선유의 말씀이 있더라도 좇을 수 없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설위는 사당에 봉안된 신주를 모실 때와 지방紙榜을 모실 때에 그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즈음은 지방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그 절차에 유의하여 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신주고(최순권, 생활문물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2001), 신주를 통해본 유교의 영혼관(김미영, 비교민속학32, 비교민속학회, 2006),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성년식
成年式

정의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젊은이에게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규범과 가치,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등을 가르치고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해 행하던 일종의 통과의례通過儀禮.

개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비마다 치르는 통과의례는 다양한데, 그중 성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치르는 성년식成年式은 동서고금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성년식의 통과의례에서 인간은 대개 육체적 가학을 통한 분리의례에 의해 특정 집단에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거듭난다. 분리의례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이다. 박혁거세朴赫居世 신화 속의 알영閼英이 북천北川에서 부리를 떨어뜨린 것 역시 일종의 할례의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족국가 마한馬韓에서 소년들이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것처럼, 성년식의 통과의례를 암시하는 단면도 발견된다. 특히 965년(고려 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의 예를 행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사가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행한 관례의식冠禮儀式을 처음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 왕실에서 관례의식을 도입했지만, 관례의식이 민간에서까지 통용된 것은 조선시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유교가 널리 보급되면서 성년식은 왕실에서 양반까지 반드시 행하던 통과의례가 되었다. 특히, 고려 말에 도입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조선조 양반가의 필수적인 의례로 정착되면서, 관례는 관혼상제의 첫 번째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는 15세에서 20세 사이의 남자아이에게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복건幅巾·초립草笠·사모紗帽·탕건宕巾 등을 씌워주는 의식이었는데, 이를 통해 관례를 치른 아이는 성인으로서의 예절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함을 깨닫게 했다. 여자아이도 15세 전후가 되면 쪽을 찌어 올리고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笄禮를 행하였는데, 계례는 혼례 속에 흡수되어 관례만큼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생긴 조혼 풍습으로 10세 전후에 관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관례의식을 치르지 않은 채 초립이나 복건을 씌우는 풍습까지 생겨나 '초립동草笠童(초립을 쓴 사내아이)'이란 말도 생겨났다. 이렇듯 우리 성년식인 관례는 지역과 가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행해지다가 갑

오개혁을 전후하여 그 의미가 퇴색하였다. 1895년의 단발령 이후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오늘날의 성년식 또한 매년 5월에 유교적 의례에 맞춰 행해지고는 있지만, 보편적인 의례가 아니란 점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내용 반 게넵(A. Van Gennep)은,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이 처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혹은 어떤 사회적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통과하거나 전이하는 고비에서 행해지는 의례 체계를 '통과의례'로 정의했다. 그는 통과의례에 분리—전이—통합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모든 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적 틀이 공통적인 관습구조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인간이 사회화·문화화의 과정에서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는 데 따른 시련이 통과의례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인이 되기 위한 '입사의례入社儀禮(initiation)'이다. 입사의례의 중심 개념을 '죽음과 재생'으로 파악한 엘리아데(M. Eliade) 역시 인간은 태어날 때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불완전한 태아 상태의 인간이 통과의례를 거쳐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완전하고 성숙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합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상적 죽음이 필요한데, 이때 자주 동원되던 것이 육체적 가학과 술이었다. 한편, 우리 전통사회의 관례에서 행해지던 '술 마시기' 의례는 아이의 모습이 없어졌음을 공인하면서 동시에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였다.

이런 성년식은 부족사회나 초기 국가사회에서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컸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비로소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식으로 치러지는 통과의례는 동서고금을 통해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고대국가에서 행해지던 대표적인 성년식인 '할례割禮'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통과의례에는 신체 일부를 절단·절제하거나 상처를 내는 절차가 따랐다. 입묵入墨, 반흔문신, 발치拔齒(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등), 또는 새끼손가락의 제1·2관절부터 앞부분을 절단(아프리카 남부)하거나, 귓불을 자르거나, 귓불 또는 코의 격벽에 구멍을 뚫는 천공 관습, 머리털을 일정한 형태로 자르는 것 등도 이런 의례에 해당했다. 이처럼 신체에 훼손을 받은 사람은 이에 따른 분리의례에 의해서 일반 세간에서 격리되며, 이후 특정 집단에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며 거듭나게 된다.

한편, 영국의 교육철학자 피터스(R. S. Peters)는 교육을 성년식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즉, 교육은 새로운 세대에서 기성 문화체제로 입문하게 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년식은 소년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 성숙을 축하하며, 가족의 일원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재탄생한 개인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성년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과 의식 절차는 지역이나 부족마다 달랐으나, 대개 10~18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각 부족의 종교적 의식을 빌려 실시되었다. 부족 단위의 큰 행사로 열리는 성년식은 주로 남자를 대상으로 며칠씩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나 오늘날 일부에서는 2차 성징의 신체적 변화를 성년의 구체적 기준으로 보기도 하지만, 종교적 기준으로는 보통 나이로 성인식 시기를 판단한다. 서구사회에서는 대개 16~22세에 도달하면 성년식을 행하며, 유년을 벗어나 법적으로 성년의 권리를 가지는 시기에 성년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식은 성년이 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구성원이 된다거나 어떤 작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과정에서 행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각 지역과 문화권마다 특색 있게 치러지던 성년식이 오늘날에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남은 경우가 많다.

지역사례 문화권역마다 각기 다른 성년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승불교에서는 20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에게 단기간 출가하여 승려 체험을 하게 하는 '신분의식'을 통해 성인의식을 치른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청년 스스로 성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바하이교에서는 15세가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여, 바하이 공동체에 남을 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힌두교에서는 '드비자(Dvija)'라고 부르는 종교적 재생 의식을 통해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음을 일깨워주는데, 소년들은 가면을 쓰고 종교 의례를 준비하고,

여자는 사리를 입고 의례를 행함으로써 성인임을 인정받는다. 유대교의 경우에는 소년이면 13세에 종교적으로 성숙함을 인정하여 '바르미츠바(bar mitzvah)'라는 의식을 치르고, 소녀일 때는 12세에 '바트미츠바(bat mitzvah)'라는 의식을 치른다. 아울러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샤리아 율법을 연마하여 알라의 말씀을 듣고 이슬람 전통을 배우도록 하였다가, 성인이 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면 샤리아에 따라 예배 참여와 율법적 의무의 이행을 강요한다. 한자문화권의 유교국가에서는 성년식이 통상 15~20세 전후로 이뤄졌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행해진 성년식은 관례와 계례이다. 이 두 의식은 중국에서 도입된 『주자가례』에 근거한 것으로, 각 신분에 따라 의복이나 절차가 달랐다.

특징 및 의의 인간은 집단적인 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치르는 통과의례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지닌다. 태어나기 전의 기자祈子 습속에서부터 출생의례와 결혼 및 장례의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고비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통과의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치르는 성년식은 개인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새 구성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성년식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성년식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하다.

또한, 통과의례는 분리·통합의 과정에서 과도기가 설정된다. 그 과도기에는 대체로 상징적 죽음이 전제되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육체적 가학과 술이었다. 따라서 우리 전통사회의 성년식인 관례에서도 술 마시기를 통한 분리·통합의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례의 분리·통합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육체적 가학을 통한 상징적 죽음을 동원하지 않았다. 우리 전통 관례는 엄숙하고 절제된 유교적 의례로만 치르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朱子家禮, 성과 속(M. Eliade, 이동하 역, 역민사, 1983), 통과의례(A. Van Gennep,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85),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77).

필자 박홍갑(朴洪甲)

성년의 날

정의 일정한 의례를 통해서 성인成人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

개관 성년의 날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느끼게 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그래서 이들이 부모의 슬하를 떠나 육체적·정신적 훈련을 받은 다음,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통과의례 의식을 행하는 날을 말한다. 전통시대의 성년식은 관례冠禮와 계례笄禮로 대표되는데, 관례의 풍습은 중국에서 전래하였다. 965년(고려 광종 16)에 왕자에게 원복元服의 예를 행했다는 『고려사高麗史』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관례를 행한 최초의 의식이나, 이런 의식이 민간에서까지 통용된 것은 조선 왕조가 성립한 이후라 할 수 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수용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한 생활의례가 정착됨으로써 관례와 계례라는 성인의식이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상투를 올리는 관례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 성인의례는 혼례에 흡수되어 명맥만 유지하였다. 오늘날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년의 날'이란 공식적인 기념일을 정하여 행사를 치른다.

내용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진 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의례를 통해서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다. 원래는 20세에 행해졌으나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연령이 19세로 낮춰지면서, 만 19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유럽의 경우 독일·프랑스 등은 성년 연령이 21세, 네덜란드는 23세이다. 성년이 되면 공법상으로 선거권 취득을 비롯한 기타 자격을 취득하고, 사법상으로도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되며,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적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성

년식 풍속이 점차 사라져 가자,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적인 성년식을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해 성년의 날을 4월 20일로 정했고, 이후 1975년에는 5월 6일로 변경하였다가, 1985년부터 현재까지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는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성년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주관 행사에서는 전통 관례 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삼가례三加禮·초례醮禮를 거쳐 성년 선언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진행한다. 이렇듯 오늘날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성년의식을 진행한다. 각 직장이나 기관에서도 단위별로 성년이 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과 함께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진다.

成年의 날, 4月19日
制定의 意味
女公部, 豪華잔치 計劃
떠벌이는 行事보다
個個人 自覺앞서야

성년의 날, 4월 19일 제정의 의미 | 1970. 3.13 | 동아일보

成年의날 뜻과 由來
自覺·責任일깨워
올해 74萬8千9百名
成年禮는 新羅때부터

성년의 날 뜻과 유래 | 1976. 5. 7 | 동아일보

특징 및 의의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된 성년식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최근에는 성균관에서 매년 전통 방식으로 성년의 날 의례를 행하고 있어, 그 참된 의미를 잘 되살려 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별도의 성년식을 행하지 않고 있어, 성년식 의미가 크게 반감된 것 또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朱子家禮, 성과 속(M. Eliade, 이동하 역, 역민사, 1983), 통과의례(A. Van Gennep,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85), 한국세시풍속사전-봄(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홍갑(朴洪甲)

성묘
省墓

정의 조상의 묘를 찾아가 손질하고 살피는 일.

역사 성묘는 추석 같은 명절이나 한식寒食 같은 절기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 손질하고 살피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조상의 육체가 묻혀 있는 묘를 관리하는 것은 조상의 영혼을 모셔와 섬기는 제사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원래 한식에 성묘하는 것은 당나라에서 전래되었다. 고려시대 국가에서는 한식에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하고, 민간에서는 묘소에 올라가 성묘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기제에 성묘하거나 사시제四時祭에 성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묘소 근처에 원찰願刹이나 원당願堂을 지어 묘소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3월 상순 묘제 때 "무덤 안팎을 다니면서 둘러 슬피 살피며 세 번 돈다. 풀과 가시가 있으면 칼이나 도끼, 호미를 사용하여 자르고 김매어 없앤다. 청소를 마치면 돌아와 재배한다. 또한, 무덤 왼쪽의 땅을 소제하고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 지낸다."라고 하였다. 겨울이 지나 풀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때에 조상의 묘를 살피도록 한 것이다. 성묘는 묘제의 한 부분으로 기능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주자가례』가 수용된 이후에는 사당에서 예를 갖추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사당이 없는 민간에서는 조상의 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아, 설·단오·한식·추석의 4대 명절에 묘제를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1821년에 간행된 조운종趙雲從(1783~1820)의 『면암집勉菴集』에는 한식에 국가에서 능원과 묘궁에 관리를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하인들도 술과 과일을 마련하여 산소를 찾아 성묘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추석에는 술과 과일을 산소에 올리는 것을 한식 때처럼 하도록 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한식과 추석에 조상의 묘를 살피는데, 이때 머슴이나 거지라도 모두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을 돌보았다고 할 정도이다. 주인은 머슴에게 새 옷과 신발, 허리띠를 해주기도 했다. 성묘한 이후에는 묘소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성묘에 제례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까지 설·단오·한식·추석의 4대 명절에 묘제를 지내는 풍속이 계속되었다. 음력 10월에도 묘제를 올렸는데, 10월의 묘제는 사대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 산소를 살피고 예를 올리는 것으로서 '시제時祭' 또는 '시향제時享祭'라고도 한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조상의 묘를 살피고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육전六典』에 의해 현임관이 성묘를 갈 때에는 반드시 모두 사직辭職한 이후에 가도록 했으나, 1407년(태종 7)에는 군사들에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 근친하게 하고, 부모가 이미 죽은 사람은 근친하는 예에 의하여 돌아가 분묘를 성소省掃하도록 하는 규정을 세우기도 했다.

지역 혹은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4대 명절 가운데 한식과 추석에 절사節祀를 지내거나 한식과 10월에 시제를 지내는데, 특히 추석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냈다.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경우에는 9월 중양절에 제를 지내기도 하고, 10월의 묘제를 큰 제사로 여기고 추석에는 성묘만 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도시생활로 바쁜 가정에서는 추석 차례 때 묘제와 성묘를 함께 치르는 풍속이 형성되기도 한다.

내용 성묘는 조상의 묘를 손질하고 살피는 일이지만, 사실상 조상의 묘를 손질하는 것과 배례拜禮가 합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로 한식·추석 때 성묘를 하는 것이 정착되었다. 한식인 음력 3월에는 개사초改莎草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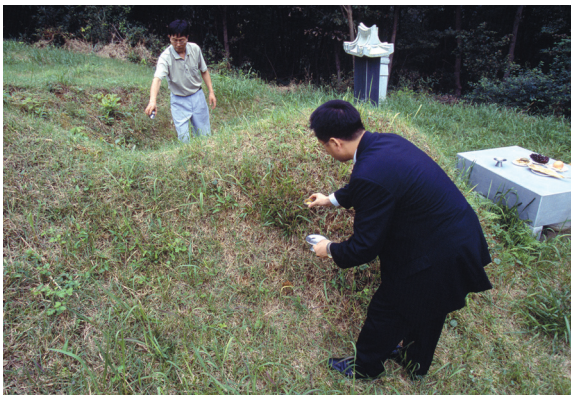

차례 성묘 | 충남 홍성 장곡면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하여 겨울부터 봄 사이에 생긴 구덩이를 비롯하여 조상의 묘에 생긴 손상을 손질하여 바로잡는다. 이때 부족한 떼(잔디)를 다시 입혀준다.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한식 이후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작은 나무 등을 베거나 깎아주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했다. 10월 묘제를 지내면서 추석에는 성묘만 하기도 했으나, 요즘 일반 가정에서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묘제를 지내는 것이 힘이 들자 추석 차례 때 성묘하면서 묘제를 함께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추석에 성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 년 동안의 경작으로 수확한 햇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바친다는 의미가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기호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설날과 추석에도 성묘하는 전통이 강했다. 그러나 영남 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설날과 추석에는 성묘하지 않고, 한식에만 성묘하였다. 그런데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추석에 성묘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고, 그 밖의 날에는 성묘의 전통이

약화하였다. 묘제를 조상의 묘에서 지내지 않고 재실齋室에서 지내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상북도 안동의 퇴계 종가에서는 재실에서 묘제를 지내거나 지방으로 합동묘제를 지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2014년에도 옛 전통에 따라서 한식 성묘를 하는 문중도 있다. 흥해 배씨興海裵氏 안동 입향조 백죽당栢竹堂 배상지裵尙志(1351~1413)와 그의 배위 묘소(상하 연속 배치)에서는 매년 한식에 성묘하는 전통이 이어진다. 이 문중에서는 가을에 올리는 시향제, 즉 묘제 때에는 제물을 성대하게 갖추어서 올리는데 반해 한식 성묘를 할 때는 독축讀祝 없이 단헌單獻으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낸다. 두 묘소의 상석에 각각 주과포酒果脯와 육적肉炙·어적魚炙으로 이루어진 간소한 제물을 갖추고 한 사람의 창홀唱笏에 따라 상하 연속된 묘소에 참사자들이 나누어 서서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다.

경북 안동 풍산읍 안교리에서는 한식이 사방팔방의 잡귀가 없는 날, 즉 '손이 없는 날(무방수날)'로 인식되어 무슨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때 산소에 난 잡풀을 뽑고, 떼를 새로 입히며 주변에 나무를 심는 등 조상의 묘를 두루 손질한다. 설에는 성묘를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햇세배'라 하여 반드시 성묘한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석에 성묘를 가지 않는 가정이 많다.

특징 및 의의 성묘는 한식과 추석 명절에 조상의 묘를 찾아 손질하고 살피는 일이다. 단순히 묘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제물과 함께 재배를 하기도 한다. 조상의 영혼만큼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오늘날까지 조상의 묘를 손질하고 살피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定宗實錄, 太宗實錄, 동국세시기(정승모 역, 풀빛, 200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조선대세시기1(국립민속박물관, 2003),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한국세시풍속1(김명자, 민속원, 2005),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배영동(裵永東)

성복
成服

정의 빈殯을 한 다음 날, 즉 사망한 지 4일째 되는 날에 복인服人들이 규정된 관冠·최복衰服·신발 등 상복을 착용하는 절차.

역사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의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즉 대렴大殮을 한 다음 날, 오복의 친속들은 모두 성복을 하고, 지팡이를 짚는 복을 하는 사람은 지팡이를 짚는다."라는 기록에 대해 정현鄭玄은 "빈殯을 마친 다음 날로, 죽은 다음 날부터 사흘째이다. 이때부터 죽을 먹기 시작한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또한, 『의례』「사상례」의 "아침과 저녁마다 곡하는 의식[朝夕哭]은 자일子日과 묘일卯日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기록에 대해 정현은 "시신을 빈궁殯宮에 안치한 뒤부터 아침과 저녁 그리고 슬픔이 북받칠 때마다 곡하고, 번갈아 가면서 끊이지 않고 곡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자일과 묘일'은 걸桀과 주紂가 망한 날이다. 흉사의 경우는 피하지 않고 길사의 경우는 그날을 피해서 거행한다."라고 해석했다.

내용 성복의 절차와 관련하여 『의례』「사상례」에서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즉 대렴을 한 다음 날, 오복의 친속들은 모두 상복으로 갈아입고, 지팡이를 짚는 복을 하는 사람은 지팡이를 짚는다. 주인은 미리 국군國君에게 찾아가 배례하고 대렴에 와준 것에 사례한 다음, 아울러 조문 왔던 여러 빈에게도 찾아가 사례한다. 다만, 수의를 보내온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사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가례家禮』에서는 대렴을 한 다음 날인 사망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오복을 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해야 할 복을 하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 뒤 조곡을 하고, 의식대로 서로 조문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가례의절家禮儀節』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날 일찍 일어나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오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지팡이를 들며, 요질腰絰을 한 경우에는 풀어 늘어뜨렸던 밑동을 꼰다. 각자 곡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남자는 널의 동쪽에 자리

하여 서향하고, 여자는 널의 서쪽에 자리하여 동향하며, 각각 상복의 경중을 기준으로 차례를 정한다. 그런 다음 거애擧哀(소리를 내어 슬픔을 표현)하고 서로 조문한다. 자손들은 할아버지 및 제부諸父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곡하는데, 모두 슬픔을 다한다. 다시 할머니와 제모諸母의 앞에 나아가 앞서 했던 것처럼 곡한다. 여자들은 할머니와 제모의 앞에서 곡하고 이어서 할아버지와 제부의 앞으로 나아가 곡하는데, 남자들의 의절과 똑같이 한다. 주부 이하는 백모와 숙모에게 나아가 곡하는데,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특징 및 의의 3일째에 대렴한 뒤에도 성복할 수 있는데, 반드시 4일째 되는 날에 성복하는 것에 대해 송대의 양복楊復은 "대렴을 마치기는 했지만, 자식은 부모가 죽었다고 차마 인정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4일째 성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예기禮記』「곡례曲禮」에서 "살아 있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사망한 다음 날부터 수를 세고, 죽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사망한 날부터 수를 센다."라고 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儀節, 儀禮, 전통 상례(임재해, 대원사, 200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장동우(張東宇)

성분제
成墳祭

정의 봉분을 완성하고 난 뒤에 안치된 시신을 위로하고 하직하는 제사.

내용 성분은 직접적으로는 무덤의 봉분을 완성한 것을 말하지만, 봉분뿐 아니라 사토莎土하고 묘비와 계체석階砌石·석상石床·석인石人·망주석望柱石을 세우는 것 일체를 포괄하기도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지내는 제사가 성분제이다. 이 전제奠祭는 음택에 모신 조상을 위로하고 자손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슬픔으로 하직 인사를 드리는 뜻을 담고 있다.

성분제 | 국립민속박물관

그런데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성분제에 관한 설명이 없고 이에 관한 언급이 『퇴계집』에 보인다. 어떤 사람이 "성분제는 예문에 없는데 세상에서는 모두 행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니, 퇴계는 "성분한 지 3일째에 제사 지내는데, 이는 신주에 신을 봉안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묘소에 봉안한 상태여서, 크게 거론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세속에서는 묘제를 높여 중시하니, 성분제는 언젠가부터 묘제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 세속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전奠을 올리는 이 의절이 예경에는 없으니, 반드시 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다. 『동춘당집同春堂集』에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성분전이 있고, 퇴계도 비록 예는 아니지만 세속을 따르라는 가르침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예에 전거가 없으니,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동춘당집』에서 언급한 『국조오례의』의 성분전은 곧 엄광전掩壙奠을 가리킨다. 엄광전은 시신을 광에 매장하고 나서 흙으로 덮어 봉분을 완성한 뒤에 올리는 전제이다. 이것이 『국조오례의』「대부사서인상大夫士庶人喪」에 규정되어 있다. 이 엄광전은 신주를 만들고 돌아가서 우제虞祭를 지낸 뒤에 행한다고 하였다. 엄광전의 절차를 살펴보면, "집사자가 영좌를 묘 앞에 설치하고, 향로와 향합 및 촛불을 영좌 앞에 설치한다. 주가酒架와 잔반盞盤을 영좌의 왼편에 놓고, 찬饌을 진설한다. 찬의 종류는 임광전臨壙奠과 같다. 마치면, 축祝이 손을 씻고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무릎 꿇는다. 세 번 향을 사르고 술을 따라서 안案 위에 올리는데, 연속해서 석 잔을 올린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

다. 자리에 있는 자들이 곡하고 재배한다."라고 하였다. 제찬은 임광전에서 견전의遣奠儀와 같다고 하였으니, 채소와 과실 세 그릇과 포脯이다.

특징 및 의의 성분제는 정통과 변용의 시각에 따라 학자간의 견해가 다양했지만, 세속에서는 이를 중시하였다. 이는 신주와 육신의 상징성이 주는 비중의 차이에서 인간의 감정의 깊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同春堂集, 退溪集,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임민혁(任敏赫)

세종실록 오례
世宗實錄 五禮

정의 조선 초기 국가전례國家典禮인 오례五禮를 최초로 집대성한 책.

내용 오례는 국가의 다섯 가지 예禮로 길례吉禮·흉례凶禮·빈례賓禮·군례軍禮·가례嘉禮를 말하며 중국 고대 『주례周禮』에서 비롯되었다. 길례는 나라의 제사에 관한 예, 흉례는 나라의 상사喪事에 관한 예, 빈례는 외교에 관한 예, 군례는 군사의식에 관한 예, 가례는 혼례 등 왕실행사에 관한 예를 말한다. 오례 체제를 처음 예서에 반영한 것은 당대唐代에 편찬한 『진서晉書』「예지禮志」이며, 이후 오례는 『정관례貞觀禮』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등을 거치면서 국가와 왕실의 예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오례가 왕실에 수용된 것은 고려시대이며, 오례는 인종대仁宗代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으로 정리되었다. 이 책은 나중에 오례 체제로 편찬한 『고려사高麗史』「예지」의 토대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오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운영하였다. 태종대太宗代 의례상정소를 설립하여 예제 연구가 본격화하고, 세종대世宗代 집현전을 설립하여 고제古制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오례는 더욱 체계를 잡아가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로 정리되었다.

『세종실록』「오례」는 태종이 허조許稠(1369~1439)에게 명령하여 편찬한 길례서례吉禮序例와 길례 및 세종이 정척鄭陟과 변효문卞孝文을 시켜서 편찬한 가례·빈례·군례·흉례를 합쳐서 1454년(단종 2) 만든 것으로, 당시 조선에서 행하던 전고典故와 당唐·송宋의 구례舊禮 및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였다. 모두 8권으로 『세종실록』에 지志의 형태로 수록되었다. 길·가·빈·군·흉례의 순서로 서술되었는데, 길·흉·군·빈·가례의 순서인 『고려사』「예지」와는 다르며 『통전通典』에 있는 『대당개원례』 및 『송사宋史』「예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같다. 각 예는 서례序例와 의식儀式으로 구성되는데, 서례는 의례 진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과 물품·장비 등을 설명한 것이고 의식은 의례의 진행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고려사』「예지」에는 서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각 의례의 본문 내용에 같이 서술되며, 『국조오례의』에는 서례가 오례의식을 모두 설명하고 난 뒤에 독자적으로 편성되었다. 『세종실록』「오례」의 성립은 조선의 국가전례가 일차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중앙권력의 확립과 예에 의한 본격적인 국가지배 체제가 확립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책은 국가·왕실의 예뿐만 아니라 향음주의鄕飮酒儀 같은 향촌의 예와 종친급문무관일품이하혼례宗親及文武官一品以下昏禮 같은 사대부·서인의 예도 수록했으나 비중은 미미하다. 성종대成宗代 『세종실록』「오례」를 바탕으로 편찬하면서도 사대부·서인의 상례와 제례까지 수록하여 비중이 늘어난 『국조오례의』와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필자 고영진(高英津)

소공
小功

정의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서 할아버지의 형제자매를 위해 상제가 입는 복服.

내용 망자가 사망한 지 4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과의 친소원근親疏遠近과 존비尊卑의 신분에 의거하여 유복친有服親들은 참최斬衰, 재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

麻의 오복五服을 착용한다. 소공小功의 복상 기간은 다섯 달이다. 정복正服은 종조부와 종조모, 즉 할아버지의 형제자매를 위한 것으로, 형제의 손자, 종형제자매를 위해 입는다. 재종형제자매와 외조부모 및 외숙과 생질의 경우도 같다. 남자의 소공복小功服은 관冠·의衣·상裳·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신 등으로, 여자의 소공복은 소素족두리 또는 개두蓋頭·대수장군大袖長裙·전계箭笄(비녀)·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신 등으로 구성된다. 소공복은 대공복大功服보다 조금 가늘고 시마보다는 조금 거친 숙포[초세숙포稍細熟布, 표백한 베]로 상복을 만드는데, 소공복을 만드는 베를 소공포小功布라고 한다. 관의 소재는 소공포보다 조금 가는 베이며, 굴건屈巾의 주름 3개를 접는 방향은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과 달리 왼쪽이다. 수질에 다는 끈[纓]은 없다. 머리에 얹는 수질首絰의 둘레는 4촌寸(치) 남짓, 허리에 두르는 요질腰絰의 둘레는 3촌 남짓, 교대絞帶의 둘레는 대공복의 요질보다 좁다. 질絰은 대공과 같이 시마枲麻(씨 없는 삼)로 만들고, 대帶는 베[布]로 만든다. 소공 이하는 길구吉屨(길복 때의 신)를 신는데, 신코 장식[絇]이 없으며 남녀가 동일한 것을 착용한다.

특징 및 의의 남자의 의衣는 재최의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대공복과 같은 가슴의 최衰, 양쪽 깃에 부착하는 벽령辟領, 등에 다는 부판負版이 없다. 그리고 소공 이하는 평상시의 신발을 신는데, 이는 대공보다 소공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복임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필자 조우현(趙又玄)

소렴
小殮

정의 습襲한 뒤 시신의 몸을 옷과 이불로 싸서 묶는 절차.

역사 소렴은 운명한 다음 날 습을 한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고 베로 묶어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유교식 상례절차이다. 조선 후기 상례를 행하는 데 기본이 되었던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소렴 관련 내용은 소렴지구小殮之具 같은 소렴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 항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자가례朱子家禮』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근대화의 물결로 상례절차는 큰 변화를 겪어 소렴은 습·대렴과 함께 행하는 것이 현재 일반화되었다.

내용 『주자가례』에서는 '소렴·단袒·괄발括髮·문免·좌髽·전奠·대곡代哭'이라는 제목 아래 소렴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먼저, 죽은 다음날 탁자를 시신이 있는 방의 동쪽 벽 아래 놓고 소렴할 옷과 이불을 펴놓는다. 옷은 많아도 열아홉 벌을 넘을 수 없으며, 이불은 겹이불을 쓴다. 시신을 묶는 베인 교絞는 가로로 셋, 세로로 하나를 준비하는데, 가는 베 또는 비단 한 폭의 양 끝을 잘라 셋으로 만든다. 동쪽 계단의 동남쪽에 탁자를 놓고 전奠을 마련한다. 남자의 풀었던 머리를 묶을 삼과 관을 벗고 머리를 묶는 베, 부인의 풀었던 머리를 묶을 삼을 갖춘다. 소렴상小殮牀을 차리고 자리와 요를 서쪽 계단의 서쪽에 깐다. 효, 이불과 옷을 펴서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시신의 남쪽에 놓는다. 습전襲奠을 옮겨 영좌靈座의 서남쪽에 놓는다. 소렴전小殮奠을 차리기 기다렸다가 곧 치운다. 드디어 소렴한다. 손을 씻고 시신을 드는데 남녀가 함께 부축하고 돕는다. 소렴상 위로 옮겨 먼저 베개를 치우고 비단 겹옷을 펴서 머리를 괸다. 양 끝을 말아서 두 어깨의 빈 곳을 채우고, 옷을 말아 두 다리에 끼워서 사방을 바로 한 뒤에 나머지 옷으로 시신을 덮는다. 옷섶은 왼쪽으로 여미되 매지 않는다. 이불로 싸는데 아직은 효로 묶지 않고 그 얼굴을 덮지도 않는다. 염을 마치고 별도로 이불을 덮는다. 주인과 주부가 시신에 기대어 곡하고 가슴을 두드린다. 별실에서 남자는 웃옷 왼쪽 소매를 벗고 풀었던 머리를 묶고 여자도 풀었던 머리를 묶는다. 돌아와 시신이 있는 상을 방 가운데로 옮기고 소렴전을 올린다. 주인 이하는 곡으로 슬픔을 다하고 대곡代哭을 해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상례비요』에서는 제목이 '소렴'으로 간단해지고 '괄발마문포좌마' 항목 다음에 "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마麻를 갖춘다."라는 내용이, '환천시상어당중' 항목 다음에 "주인이 손님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습을 하고 질을

소렴 | 국립민속박물관

맨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사례편람』에서는 다시 삭제되었다. 또한,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에서는 소렴할 때 마지막에 이불로 싸고 세로 끈으로 묶은 다음 가로 끈으로 묶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효를 묶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대렴 때 묶는 『주자가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이 편찬된 이후 소렴 때 교를 묶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렴 절차는 근대에 크게 간소화되었다. 일제강점기 「의례준칙」의 '습급렴襲及殮' 항목과 해방 이후 「가정의례준칙」의 '입관入棺' 항목에서는 소렴을 습·대렴과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장례식장에서 '염습'이란 이름으로 사망 24시간 후에 장례지도사가 시신을 목욕한 후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렴은 그 가운데 수의를 입힌 시신을 묶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염이란 '거둔다'는 뜻으로 시신을 거두어 묶는 것을 의미한다. 소렴은 운명한 다음 날에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서 묶는 것인데, 망자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때로 그 얼굴을 보고자 하는 효심 때문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습을 마친 뒤 시신의 뼈가 굳어 입관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지만, 조상의 뼈 하나라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보존하려는 성리학적 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정종수 외, 국사편찬위원회, 2005), 의례준칙, 조선중기 예학사상사(고영진, 한길사,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고영진(高英津)

소렴금
小殮衾

정의 소렴을 할 때 시신을 싸는 이불.

내용 소렴小殮은 습을 한 다음 날, 시신을 이불과 옷 등으로 감싸는 것을 말한다. 소렴교小殮絞 위에 소렴금을 펴 놓고, 산의散衣를 깔고 단령과 같은 큰 옷을 펴 놓은 다음, 그 위에 시신을 옮겨와서 옷으로 시신을 네모나게 싼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소렴금을 두 개 사용한다고 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주紬로 만든 이불로, 안에는 솜을 넣는다고 하였다. 소렴금의 길이는 사람의 키에 따라 다르며, 길이는 포백척으로 다섯 척 반까지 가능하다. 소렴금은 다섯 폭으로 이불깃은 없다고 하였지만, 조선 말기 상례 기록인 『신종록愼終錄』을 보면, 색상이 있는 비단으로 만들거나 깃과 동정을 단 이불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문공正文公 김수근金洙根(1798~1854)은 자지토주紫芝吐紬로 소렴금을 만들었다. 충문공忠文公 김병학金炳學(1821~1879)은 남공단藍貢緞에, 안감은 백공단白貢緞, 깃은 홍공단紅貢緞, 동정은 백공단白貢緞을 써서 소렴금을 만들었다. 김정규金貞圭의 부인 한산이씨韓山李氏(1865~1915)는 연두 자선수軟豆 紫綠繡에, 안감은 백공단白貢緞으로 소렴금을 만들었다.

1925년에 발간된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서는 대·소렴금을 백색 세포로 만든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예서인 『사례의절四禮儀節』에는 소렴금을 이용하여 시신을 싸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랫부분을 쌀 때 왼쪽 폭으로 먼저 싼 다음 오른쪽 폭으로 싼다고 했다. 소렴 때는 소렴교로 묶지 않고 비틀어서 끼워놓으며, 소렴금으로 아랫부분을 싸는 것은, 혹시라도 망자가 다시 살아날까 기다리는 효심 때문이라고 했다. 『상례비요』처럼 소렴금이 두 개가 수습되는 경우도 있다. 김흠조金欽祖(1462~1528)의 묘가 그러한데, 홑이불과 겹이불을 소렴에 사용한 경우였다. 출토 복식에서 수습되는 소렴금은 동정과 이불깃이 있는 소렴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 소장 심수륜沈秀崙(1534~1589) 묘 출토 소렴금과 연안 김씨(16세기 중반 추정) 묘 출토 소렴금은 고운 모시로 만든 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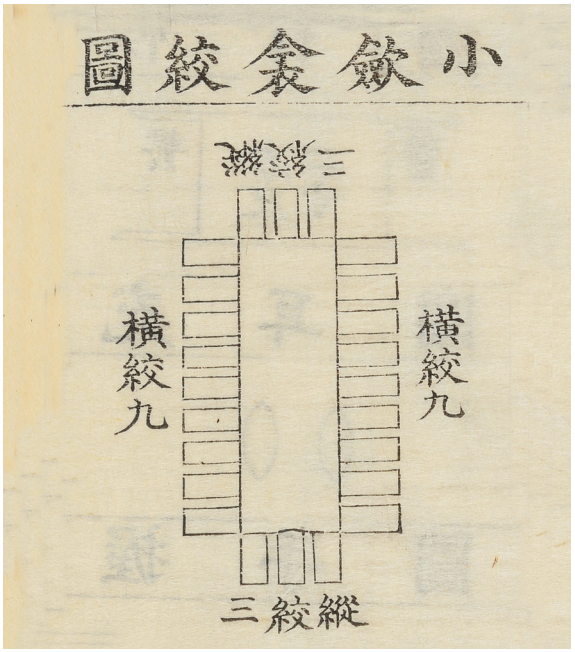

소렴금교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소렴금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불이다. 심수륜 묘의 홑이불 소렴금은 시신을 대각선으로 모셨다. 임진왜란 이후를 기점으로 17세기의 소렴금으로는 홑이불이 사라지고, 명주나 비단 종류로 만든 겹이불이나 솜이불이 등장한다. 17세기에 비해 18세기 이후의 소렴금은 이불 속의 솜 두께가 얇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의원군義原君 이혁李赫(1661~1722)의 소렴금은 겉감은 초綃, 안감은 거친 주紬를 사용한 매우 얇은 솜이불이다. 그러나 의원군 일가의 수의 가운데 솜을 비롯한 면과 모시 그리고 삼베는 거의 훼손된 상태로 수습되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추측하면, 평상시 쓰던 이불을 소렴금과 대렴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2001년 출토복식연구회에서 제시한 남녀 수의 부속품과, 2014년 현재 장례전문업체 등에서 판매 또는 제시하고 있는 남녀 수의 부속품에도 소렴금은 빠져 있다. 이는 1973년 반포된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상례가 매우 간소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풍습에 따라 대부분 상례절차에서 소렴이 생략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심수륜 묘 출토복식(경기도박물관, 2004), 염습의에 관한 연구(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김진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판결사 김흠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영주시, 1998), 한국의 수의문화(박성실·정종수·이은주 외, 신유, 2002).

필자 송미경(宋美京)

소목
昭穆

정의 신주를 배열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왼쪽[東]의 소昭와 오른쪽[西]의 목穆을 일컫는 용어.

역사 소목제도昭穆制度는 중국 상고시대부터 유래한 것인데, 주나라의 주공周公이 예禮와 악樂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제1세의 시조를 중앙에 모시고, 이를 중심으로 동쪽의 소묘昭廟에는 아버지 항렬인 2세·4세·6세의 신주를 배치하며, 서쪽의 목묘穆廟에는 아들 항렬인 3세·5세·7세의 신주를 모신다. 그리고 천자天子의 경우에는 소묘에 2세·4세·6세를, 목묘에 3세·5세·7세를 각각 봉안하여 삼소삼목三昭三穆의 칠묘七廟를 세운다. 제후는 소묘에 2세와 4세, 목묘에 3세와 5세를 봉안하여 이소이목二昭二穆의 오묘五廟를 세우며, 대부大夫는 일소일목一昭一穆의 삼묘三廟를 세우도록 규정하였다.

제후의 5묘(五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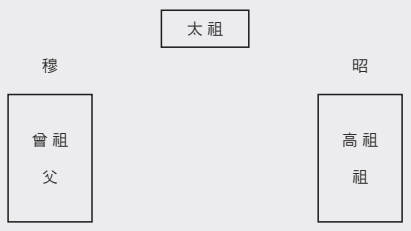

내용 소목昭穆은 신주를 배열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신주 배열의 일반적 방식은 '이서위상以西爲上'이라 하여, 가장 서쪽에서부터(불천위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의 신주를 일렬로 배치하는 것이지만, 중국 고대사회에서는 소목계서昭穆繼序에 입각하여 봉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소昭는 '밝다'의 의미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 위치를 가리키고, 목穆은 '어둡다'의 의미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는다. 소목계서의 원칙에 의해 사당에 모신 신주의 경우 제1세인 시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상들의 신위는 주제자主祭者가 바뀜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지만, 이때에도 소목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소목계서에 따르면, 〈그림〉처럼 좌소우목의 원칙에 따라 중앙(북쪽)에 놓인 태조(시조, 불천위 조상)의 신위를 중심으로 좌측(동쪽)의 소묘昭廟에 두 분의 신위를 모시고 우측(서쪽)의 목묘穆廟에 다시 두 분의 신위를 봉안한다. 그런 다음 부소자목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버지 항렬이 소묘에 오도록 하고 아들 항렬이 목묘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대교체에 의해 자리를 이동할 때에도 소목의 질서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실시한다.

한편, 『가례家禮』에 따르면 "제후의 묘제廟制에 태조는 북쪽에 거처하여 남향하고 소묘昭廟 둘은 동쪽과 남쪽에 있으며, 목묘穆廟 둘은 서쪽과 남쪽에 있어 모두 남북으로 중첩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조상의 신주가 소목의 질서에 합당하게 배열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가례』에서 4대조의 신주만 봉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당에서는 소목계서에 따른 신주배열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목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의 제31대 신문왕 때 이미 5묘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5대가 넘으면 신주를 거두어 태조실에 두었다가 5년이 지난 뒤 은제殷祭를 지내고 매주埋主했는데, 뒷날 제도가 퇴색하면서 역대 왕의 신주를 종묘에 그대로 봉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 사대부 가정에서는 『가례』의 지침에 따라 4대의 신주만을 모셨으며 그 윗대 조상의 신주는 매안하는 풍습을 따랐다. 또 『가례』에 "옛날에는 사당에 소와 목의 차례가 있어서 소는 항상 소가 되고 목은 항상 목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 죽은 사람을 조부의 사당에 부제祔祭할 때 조부에게 마땅히 다른 사당으로 옮겨야 함을 아뢰고 새로 죽은 사람에게는 이 사당에 들어갈 차례임을 아뢴다. 지금 공사公私의 사당이 모두 동당이실同堂異室에 서쪽을 우위로 삼는 제도를 만들어 좌소우목左昭右穆의 질서가 사라졌다. 한번 체천遞遷하면 여러 실이 모두 옮겨지고, 새로 죽은 사람은 그 아버지의 옛 실에 들어간다. 이것은 예禮의 큰 절목이 옛날과 같지 않은 것인데, 예를 행하는 자가 오히려 조부에 부제라 하면서 고집하니 의의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사당에 부제하고자 한다면, 또한 예를 아껴 양羊을 살려 두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당의 형태가 동당이실에 서쪽을 우위로 삼게 됨으로써 신주의 배열방식에서 소목계서의 원칙은 사라졌지만, 관념상으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제祔祭이다. 부제는 사당에 새로운 신주를 모시기 위해 사당에 봉안된 조상신에게 고하는 의례인데, 이때 그 대상은 새로운 신주의 아버지가 아니라 조부가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주가 사당에 들어가면 소목계서의 원칙에 의해 격대隔代의 관계인 조부와 같은 묘[穆廟]에 놓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양자관행이다. 소목은 항렬行列, 곧 세대에 의해 부자父子 · 원근遠近 · 장유長幼 · 친소親疏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종법질서를 수립하면서 세대의 중복 및 격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혈통시스템이다. 특히 소목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제사계승은 봉제자를 선정하는 중대한 작업이다. 고조—증조—조—부로 이어지는 혈통체계에서 반드시 아들(적장자)이 조상제사를 계승해야만 소목의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 혈통을 이어나가는데, 이때에도 소목의 질서를 적용하여 부계친족의 아들 항렬 중에서 양자를 물색한다. 즉, 양자의 대상에서 존속尊屬은 물론 형제의 항렬 및 손자의 항렬에 있는 사람은 양자로 삼을 수 없고, 아들 항렬에 있는 사람만을 양자로 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특정 인물을 양자로 지목했는데, 손자 항렬에 해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처럼 격세대의 양자는 소목계서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백골양자白骨養子라

는 습속이 생겨났다. 즉, 이미 죽은 아들 항렬의 사람을 가양자假養子로 삼아 그 가양자의 아들, 즉 손자 항렬의 사람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가양자는 사망한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백골양자라고 불렀다.

특징 및 의의 소목昭穆은 신주를 배열하는 방식의 일종이다. 중앙(북쪽)의 시조를 기점으로 삼아 왼쪽[東]의 소묘昭廟, 오른쪽[西]의 목묘穆廟를 중심으로 소목계서昭穆繼序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주를 모시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당의 형태가 동당이실에 서쪽을 우위로 삼아 신주를 일렬로 모시게 됨으로써 소목계서의 원칙은 더는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문헌 家禮, 三國史記, 周禮,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김미영, 민속원, 2008),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김미영(金美榮)

소병
素屛

정의 그림이나 글씨가 없이 종이나 천으로 마감한 병풍.

역사 주자의 『가례家禮』에 따르면, 병풍은 침병枕屛의 제도와 같게 하여 자리의 3면을 둘러쌀 수 있어야 한다. 제사에는 그림이나 글씨가 없는 소병素屛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려한 그림이나 글씨가 아닌 병풍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내용 소병은 병풍의 일종으로 그림이나 글씨가 없이 종이나 천으로 마감한 병풍이다. 흰 종이만으로 발라진

소병 | 국립민속박물관

하얀 소병素屛은 상중喪中의 제사 때에도 사용하였다.

병풍은 바람을 막거나 공간을 가리기 위하여, 또는 장식용으로 방안에 치는 물건이다. 실용적인 면뿐 아니라 벽면을 장식하는 장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며, 주술적인 염원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풍은 바람막이로서의 실용성을 떠나서 주로 벽면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병풍은 공간을 나눌 때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일생의례나 잔치 등이 거행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편이다. 제례의 집기를 설치할 때 가장 먼저 병풍을 친다. 제례에 사용되는 병풍은 무늬가 전혀 없는 민병풍이나 문자병풍을 이용한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한쪽에 글자, 다른 한쪽은 그림인 양면병兩面屛을 마련하여 경조사의 성격에 따라 각각 활용한다.

또한, 병풍은 제상과 교의交椅 뒤에 자리를 잡아 제장祭場을 차단하여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인식되었다. 실제로 의성김씨 청계공靑溪公 종택에서와 같이 유묵이 담긴 병풍을 사용하는 예도 있다. 제사용 소병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에서는 그림 병풍을 기피하나, 글씨가 쓰인 병풍은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헌작獻爵을 마친 후, 신이 음식을 드시는 시간인 유식侑食 때에는 병풍으로 제상을 둘러쳐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한다.

특징 및 의의 그림이나 글씨가 없는 민병풍인 소병은 제장을 일상 공간과 분리하여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며 유식례 때 제상을 둘러치는 도구로 사용된다.

참고문헌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필자 권삼문(權三文)

소상
小祥

정의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첫 기일에 지내는 상례의 한 절차.

내용 초상初喪 때부터 계산하여 13개월 만에 지내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13개월이 되면 날을 받아서 지냈다고 하는데 보통은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지낸다. 기년상朞年喪인 경우, 즉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1년 만에 탈상해야 하므로 11개월 만에 날을 받아 소상을 지내고, 13개월째 대상을 지내며, 15개월에 담제禫祭를 지내 상을 마친다. 기년상이란 부재모상父在母喪과 처상妻喪을 이른다.

소상을 지내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상 하루 전날 상주를 비롯해 복인들은 모두 목욕하고 제기를 늘여놓고 제물을 마련한다. 이어 남자와 여자는 모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연복練服을 준비해놓고, 남자는 수질首絰(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테로 짚과 삼, 혹은 칡으로 엮어 만듦)을 벗고 부판附版(최복 등 뒤에 늘어뜨리는 베 조각)과 벽령辟領을 떼고, 여자는 요질腰絰(상복 허리에 두르는 삼으로 만든 띠)을 벗고 긴 치마를 끌리지 않도록 한다. 기년복을 입는 사람들은 모두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데, 그달이 다 지나도록 황금, 진주, 비단, 붉은색, 자주색은 착용하지 않는다.

제사는 소상 당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채소·과일·술·안주를 진설해 지낸다. 날이 밝으면 축관이 신주의 뚜껑과 덮개를 열어 놓으면 상주 등이 들어가 곡한다. 모두 슬프게 곡하고 그친 뒤 남자와 여자가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연복으로 바꾸어 입고 다시 들어가서 곡한다. 축관은 곡을 그치게 하고, 강신·초헌·아헌·종헌·유식·합문闔門·계문啓門·사신辭神 등의 절차로 제를 지낸다. 소상을 지내고 나면 아침과 저녁에 하던 곡을 그치고,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특징 및 의의 사계절이 지나 만 일 년이 되면 천도天道가 한번 변하여 슬프고 측은한 마음이 더욱 줄어든다. 그래서 '상喪'자 대신 '길吉'의 의미가 담긴 '상祥'자를 써서 의례명도 '소상小祥'이라 한 것이다. 상주와 주부는 상복을 벗고 연복練服으로 갈아입고 지낸다고 하여, 소상을 '연제練祭'라고도 한다. 연복은 소상 때 입는 누런 베로 새로 만들거나 입던 상복을 빨아서 다듬는 옷을 말한다.

독축

합문

고이성

소상 | 경남 김해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家禮增解, 四禮便覽, 朱子家禮.

필자 정종수(鄭鍾秀)

소천예배
召天禮拜

정의 한국 기독교(개신교)의 장례예배. 크게는 임종에서 하관까지의 기독교(개신교) 장례 전체를 포괄하며, 작게는 임종예배나 발인예배를 지칭하는 말.

역사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서』나 『구약성서』에서 장례예식에 대한 규범이나 절차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구절을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장례식은 사망한 날 혹은 그다음 날에 거행했다. 숨을 거두면 곧 눈을 감게 했고, 시신을 씻기고 향유를 바른 다음, 세마포로 감싸 들것에 눕혀 무덤으로 운구했다. 가족, 친지들이 장례식을 거행하였으며, 보통 시신은 돌로 만든 무덤에 안장하였다. 장례 후에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기독교 고유의 장례예식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으므로 유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장례예식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따라 여러 이민족 문화와 관습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중세가 되자 기독교 고유의 장례절차가 형성되어, 『성무집전서』를 통해 정리되었다. 이를 통해 이교도의 관습이 많이 제거되었으며, 죽음의 속죄와 참회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파스카적(Pascha—) 요소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장례예식의 형식과 인식이 바뀌는 계기였다. 루터교회는 장례예식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장례에서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신앙과 장례행위 자체가 교회공동체의 봉사와 사랑의 행위라는 점, 그리고 죽은 자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이 강조되었다. 성공회는 대체로 모든 의식이 간결하게 축소되어 지속하다가 20세기에 이르러 다소 수정된다. 이에 비해 개혁교회와 청교도들은 장례예식에서 확고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의식보다는 신앙 자체를 강조하였으며, 장례는 집이나 교회 두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례를 제정하고 이를 지켰다. 죽은 이를 무덤으로 옮긴 후 예식 없이 매장하였으며, 다시 교회로 돌아와 목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로 유족들을 위로하고 장례식을 마무리하였다. 근대에 들어,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장례예식을 다룰 때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 초기에 전통적인 요소와 기독교적인 요소가 뒤섞여 많은 혼란이 생겼다. 선교사들의 일기나, 신자들의 별세를 전하는 당시의 신문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1924년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장례식서'를 채택하면서 혼란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교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임종예식·입관예식·발인예식·하관예식으로 정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구약성서』에서 죽음은 죄의 대가라고 인식된다. 즉 죽음은 죄의 결과인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시대가 되면서, 죽음은 하나의 사실로 인정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여준 신비에 근거하여 인식되었다. 아울러 예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은 부활로 가는 문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죽음을 통해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영혼은 여호와의 숨결(ruah jahwe)을 통하여 인간 속으로 들어오며,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인간이 죽을 때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 전통관념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이 되어 자손을 돌보거나 악귀가 되어 사람을 괴롭힌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개신교)에서는 이를 거부한다. 인간의 생사生死와 화복禍福을 주재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육신의 삶을 접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절차가 기독교(개신교)의 장례절차이다. 장례절차는 임종으로 시작된다. 임종은 죽음이 임박한 시간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곁에 자녀나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위로를 나누고 장송을 준비하는 것이다.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판단되면 소식을 전해 가족 친지들을 모은다.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는 지나치게 슬픔을 표현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유언을 청해 듣는 것이 좋다. 임종이 확인되면 조용히 눈을 감겨주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은 후 홑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이어 예식사, 기도, 찬송, 성경 봉독, 사도신경, 마지막 기도의 순서로 임종예식을 올린다.

대략 24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염습을 하고, 시신을 관에 정중히 모시는 입관을 하게 된다. 이때 얼굴을 가리기 전에 유족들과 마지막 대면을 하면서 입관예식을 한다. 입관예식은 교역자가 주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교인 가운데 대표자가 인도해도 무방하다. 순서는 임종예식과 같지만, 사도신경 다음에 입관을 하며 이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한다.

입관 후에는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예식을 준비한다. 빈소에는 영정과 촛대, 향로, 헌화대, 접수부 등을 설치하고 문상객을 위해 차나 음식을 준비한다. 문상객은 분향 또는 헌화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주는 빈소 옆에 일렬로 서서 조문을 받고 답례를 한다.

광의의 장례예식은 입관부터 하관까지의 모든 예식절차를 다 포함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영결예식만을 의미한다. 영결예식은 장례절차의 핵심으로, 집이나 교회가 원칙이나 병원 영안실 등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예식사, 기도, 찬송, 성경 봉독에 이어 집례자의 말씀증언, 고인의 약력, 조사와 조가, 찬송, 신앙고백, 사역자의 축도, 호상의 인사와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장지까지의 운구가 시작된다.

장지에 도착하면 하관예식을 한다. 영구를 안장하기 전에 집례자는 지실 위쪽에 영정을 든 사람과 함께 서고, 상주와 유족 및 문상객이 지실 둘레에 선 다음, 하관예식이 예식사, 찬송, 기도, 성경봉독, 취토, 마감기도와 축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관예배를 마친 뒤 하산하며, 집에 돌아와 상주들을 모아 놓고 위로예배를 드림으로써 장례절차는 끝나게 된다. 집에 돌아오면 상주들은 허전함을 크게 느끼므로 정성껏 위로예배를 드려 인도해야 한다. 순서는 간단하게 드리며 설교와 기도, 주기도문 등으로 마친다. 3일 만에 묘소를 찾는 것(일명 삼우제)은 가족적 분위기로 치르며, 2년 정도의 추모예배가 권장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 기독교(개신교)의 장례예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다. 장례예식 내내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절차는 한편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에 대한 의식도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절차가 교단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진행에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장례는 죽음이라는 엄숙한 현실 앞에서 죽은 이를 정중히 모시는 절차인 만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법이다. 사람의 사망으로부터 매장을 거쳐 탈상에 이르는, 상중에 행하는 일체의 예절을 상례라고 한다. 한국 기독교(개신교)도 상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고유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장례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용어의 사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임종, 염습 및 입관, 발인, 하관의례 등의 명칭이 기독교(개신교)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아 애매하다. 구체적으로 임종의 경우 임종의식, 임종예식, 임종예절, 임종예배 등의 용어가 뒤섞여 있다. 소천召天이라는 말 역시 그렇다. '소천'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지도 않은 용어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의미로 '소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기독교사전(한영제 편, 기독교문사, 1991), 기독교의 죽음관(김창영, 비교문화연구15, 부산외국어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2003), 한국기독교사(민경배, 기독교출판사, 1982), 한국 기독교 장례예식에 대한 목회자 인식도 및 개선 방안 연구(안옥현,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한국 기독교 장례예식의 변화와 토착화 연구(문정웅,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필자 김영수(金榮洙)

속절
俗節

정의 1년 중 시기마다 특별한 의미를 담아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제사일, 국가의 공적인 행사, 공휴일 등으로 활용되던 날.

역사 고대국가인 고구려에서는 3월 3일에 국중대회를 개최하여 유화柳花와 주몽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냥을 즐겼다. 신라에서는 8월 15일에 가배嘉俳라는 여성들의 적마績麻 경쟁으로 부족 간의 연합을 꾀했다. 이를 '속절'이라 칭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관행이라 하겠다.

더욱 명확한 속절의 활용은 고려시대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형법지」에서는 원정(1월 1일), 상원(1월 15일), 한식, 상사(3월 3일), 단오(5월 5일), 중구(9월 9일), 동지(12월 23일), 팔관(11월), 추석(8월 15일) 등의 '속절'을 금형일禁刑日로 지정하고 있다. 원정·상원·한식·팔관·추석은 태음력, 상사·단오·중구·동지는 태양력과 연관된다. 양력과 음력을 모두 포함하는 이

런 날들은 형 집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날로 간주되었다. 이외에도 다수의 날이 관료의 휴가일로 지정되었다. 『고려사』「직관지」 급가給暇조에는 매월 초1일·8일·15일·23일(매월 휴일), 원정元正, 납일臘日(동지 뒤 셋째 술일戌日, 7일 휴일), 상원上元, 한식寒食, 입하立夏, 하지夏至, 중원(中元, 7월 15일), 팔관八關(3일 휴일), 매월 입절일入節日(1일), 정월 내의 자일子日과 오일午日, 입춘立春, 인일人日, 연등燃燈(2월 15일), 춘분春分, 춘사春祀, 제왕사회諸王社會(삼월 삼짇날), 단오端午, 삼복三伏(각 1일), 칠석七夕, 입추立秋, 추석秋夕, 추사秋祀, 社稷祭日, 추분秋分, 수의授衣(9월 초하루), 중양重陽(9월 9일), 하원下元(10월 15일), 동지冬至, 일월식日月食(1일 휴일) 등이 수록되었다. 금형일과 중복되는 날 중 원정은 7일, 상원은 3일, 나머지 날들은 1일 휴가일이다. 이러한 날들은 공무公務가 쉬는 공휴일이므로 비단 관료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 하겠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崇儒抑佛이라는 사회이념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러한 날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었다. 관료의 휴가일은 위와 같은 '속절' 대신에 송나라의 삼순三旬을 채용하여 10일에 한 번꼴로 쉬게 하고 상사·중오·중양에만 특별히 휴가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수의 속절이 정치적 활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비유교적인 유래를 지닌 날이나 유교적 이념에 맞지 않는 관행이 시행되는 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교화가 진행됨에 따라 속절도 유교식 의례일로 대체되었다. 그중 많은 날이 제사일로 지정되었다.

수많은 속절 중 유교식 제사일로 간주한 날들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한다. 『가례』에는 "청명, 한식, 중오, 중원, 중양 등이 향속鄕俗에서 숭앙하는 날이다."라고 하였는데, 조선에서는 향속에서 중시하던 속절을 포함하여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등의 기수基數 날들과 1월 상원(1월 15일), 유두(6월 15일), 중원(7월 15일), 중추(8월 15일), 10월 1일, 욕불(4월 8일), 한식, 답청, 동지, 납일 등을 속절로 간주하였다. 이런 날들에는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었다. 정조(1월 1일), 한식, 단오(5월 5일), 추석은 세속에서 귀중하게 숭상하는 날이었다. 반면에 상원, 답청(3월 3일), 칠석(7월 7일), 중원(7월 15일), 중양(9월 9일), 납일, 동지는 가볍게 여기는 날들이었다. 이러한 경중의 차이에 근거하여 사명일四名日과 그 밖의 속절로 구분하여 예를 완성했다.

『주자가례』 통례조에 "사당에 제사를 올리는 날들을 속절이라 칭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속절에 사당에 제사를 올려야 하나, 속절에는 이전 시기의 비유교적인 관행이 여전히 실행되었으므로 『가례』에 입각한 예제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비록 황당무계하고 비루한 풍속이 있더라도 시대에 따라 풍속을 따르는 데에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주자는 제철에 나는 음식을 바치는 예를 만들었고, 공자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훈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일이 쓰이는 까닭입니다."라는 두 가지 인식론이 대두하지만, 결국 주자의 견해가 수용되었다.

그러나 『가례』의 규정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사당의 부재이다. 조선에서는 사명일에 상총上塚 제사를 올렸으나, 『주자가례』에서 사시제는 사당에서 거행하고, 상묘는 10월 초하루에 한다고 했다. 『가례』의 이론과 실제 상황이 달랐기에, 이를 절충하여 속절에 대한 제사가 완비되었다. 이이의 『율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에서는 사명일에는 참례參禮하고, 그 밖의 속절에는 천신薦新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수용됨에 따라 속절은 지금까지도 천신하는 날로 간주된다.

내용 우주가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계절의 변화를 비롯하여, 추위와 더위가 갈마드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날들이 의미를 부여받는다. 특별한 날들로는 고정불변의 태양력에 근거하여 15일 단위로 나눈 절기節氣를 비롯해, 시대마다 공휴일과 축제일, 제사일 등으로 활용되었던 특별한 날인 '속절'이 있다. 그런데 속절은 절기를 포함하기도 하므로 가장 광의의 용어라 할 만하다. 속절은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명절', '세시', '가절', '영절', '유명일', '명일', '절령', '절일' 등과 유사하다. 이 단어는 구어口語가 아니라 문어文語의 성격을 띤 용어로, 전근대사회에서 관찬 사서나 의례집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은 명절이라 통칭하지만 전근대사회에서는 각 용어가 조금 달리 사용되었다. '세시歲時'는 한 해를 단위로 반복되는 주기적 시간의 특정한 때를 통칭한다. 그러한 날들에 베풀어지는 행사의 길흉吉凶에 따라 흉

한 일을 행하는 날은 '속절'이라 하고, 길한 것을 행하는 날은 '세시'라 칭하기도 한다. '영절令節'은 국가로부터 명령[令]을 부여받은 날을 지칭하는데, 정사政事 즉 각 나라가 정한 경축일의 의미를 지닌다. '명절名節'은 오늘날 흔히 사용하지만, 전근대사회에서는 별반 그 쓰임이 없었다. 그래서 세시와 혼용되기도 하였지만, 세시의 쓰임이 더욱 많다. '명일名日'은 그저 이름 있는 날이라는 뜻이지만, 여느 세시와 달리 유독 이름이 난 날들로 특별한 의미를 담아 '삼명일', '사명일', '육명일' 등으로 구분했다. 조선시대의 '삼명일三名日'은 대표적인 경축일로 정조正朝·단오·동지를 말하며, '육명일六名日'은 선대 왕의 어진을 모신 곳이나 왕실 외가 조상의 분묘에 봉제하는 정조·한식·단오·중추·동지·납향臘享 등을 일컫는다. 반면에 세속에서 가장 귀히 여긴 날은 '사명일四名日'은 설·한식·추석·동지이다. '절일節日'은 세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영절이나 임금의 탄강일·성절일·춘추절 등으로 탄생일을 포함하여 더욱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속절'은 사신을 위한 잔칫날을 비롯하여, 시식時食을 올리는 날, 민간 상례와 연관되는 날, 국가의례와 관련된 날을 두루 포함한다. 조선에서 '속절'이라 할 때는 정조·상원·답청(3월 3일)·한식·단오·유두·칠석·중원·중추·중구·동지·납일 등을 두루 일컫는다. 고려시대에도 금형일禁刑日을 '속절'로 지칭했는데, 그것에 유두·칠석·중원·납일 등을 추가한 것이다. 조선의 '속절'은 고려의 금형일에 도교의 축일인 칠석과 중원, 수렵사회의 전통을 지닌 납일, 중국에 연원을 둔 유두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더욱 넓은 개념이라 하겠다. 속절에 담긴 개념의 폭이 넓은 것은 '속俗'자가 지닌 의미와 연관 깊다. '속'은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일컬으므로, '속절'은 거부감 없이 내재화되어 있고 특별히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뜻하며,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이나 국가의례일, 사대부의 묘사일, 민속축제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속절이 국가에서 임금, 사대부, 백성까지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시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때문에 속절은 칠석, 중원, 납일 등처럼 시대적 의미를 잃어버린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속절은 공식적인 의미를 지닌 세시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승되어 온 채로 그 의미를 상징하는 비공식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가장 광의적인 용어라 하겠다. 속절은 해당 시기에 이미 널리 알려져 익숙한 날들을 칭하므로 시대마다 그 대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징 및 의의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전근대사회에는 '속절'이라 불렀다. 자연의 움직임에 의존해 생활하던 시기에 속절은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날로 중시되었지만, 조선시대가 되면 제사일 혹은 민속 관행을 실행하는 날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속절은 자연의 주기를 인간 세상에 활용하는 한 방법이었기에 오늘날까지 그 의미가 축소된 채 전승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麗史, 沙溪全書, 牛溪先生集, 栗谷先生全書, 朝鮮王朝實錄, 朱子家禮, 泰村先生文集, 澤堂先生別集, 문헌으로 보는 고려시대 민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조선전기 속절의 명칭과 인식체계(김효경, 역사민속학53, 역사민속학회, 201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중세예사상연구(고영진, 한길사, 1995).

필자 김효경(金孝慶)

수성노인도
壽星老人圖

정의 인간의 수명壽命과 장수長壽를 관장한다는 노인성의 화신化身인 수노인壽老人을 형상화한 그림.

역사 수성노인도의 장두단신長頭短身 도상은 북송대北宋代에 나타난 키 작은 노인의 일화에서 기원을 찾는다. 또한, 시대별·지역별로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되며, 지물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노인성에 대한 제사가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더욱 성행하였다. 그에 따라 그림의 수요도 점차 증가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수노인도는 17세기 이후, 즉 조선 중기 이후의 작품이 남아 있으며, 20세기 후반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다.

내용 대상이 되는 별인 노인성(카노푸스, Canopus)은 천구의 남극 가까이에 위치한 별로 동양에서는 추분秋分 때에 관측되며, 하늘에서는 태양을 제외하면 시리우

수성노인도 | 김홍도 | 1779 | 국립중앙박물관

스에 이어 두 번째로 밝은 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의 수평선 근처에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다. 이 별은 초기에는 나라의 평안과 군주의 수명을 상징하다가,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개인의 수명과 장수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 노인성을 보면 오래 산다고 믿은 민간에서 널리 노인성을 숭배하여, 이 별의 화신化身인 수노인을 도상으로 그렸던 것이다.

수노인을 단독으로 그리기도 하나, 복福·녹祿·수壽 삼성三星과 함께, 혹은 군집한 신선과 함께 그리는 경우도 있다. 수노인의 기본적인 도상과 형식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공유했지만, 한국과 일본에 전래한 이후로는 국가별로 토착신앙과 결부되어 변형된 형식으로 발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노인의 기본적인 도상이 중국의 도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수노인이 토착신앙과 결합하여 그 도상이 칠성불화에 삽입된 예가 있다. 단독 도상單獨圖像이 많이 남아있다.

특징 및 의의 머리가 길고 몸이 짧은[長頭短信] 신선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노인성은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수복을 상징한다고 여겼으므로, 수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수성노인도를 그리고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시아 수로인도연구(조희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중국 고대 분야설의 성립과정(이문규, 한국과학사학회지21-2, 한국과학사학회, 1999).

필자 김윤정(金潤貞)

수시
收屍

정의 사망한 후 시신이 뒤틀리지 않도록 수습하는 일.

역사 예서禮書에는 수시라는 용어가 특정한 의절로 사용되지 않는다. 정약용丁若鏞의 『예의문답禮疑問答』에서 질문자가 "지금 사람들이 수시收屍를 할 때 양쪽 팔도 묶는데, 고례에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정약용은 "고례에는 손을 묶는다는 규정은 없다. 습을 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문식할 때에 이르러 「사상례士喪禮」에는 '망자의 손에 손싸개[握手]를 끼우고 그 끈을 손목에 맨 깍지[決]의 끈과 묶는다.'라고 하였다. 옛사람들은 충후하여 막 사망하였을 때 차마 손을 묶지 않았다. 그러나 손이 뒤틀리는 것이 발의 경우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평소 사용하는 띠 또는 수건으로 양쪽 손목을 묶어 뒤틀림을 막는 것도 괜찮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시는 사망 후 시신이 경직되는 과정에서 뒤틀림을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함飯含하기 위해 입이 닫히지 않도록 치아를 떠받치는 설치楔齒와 발이 뒤틀리지 않도록 묶는 철족綴足의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의례儀禮』「사상례」에서는 초혼招魂을 마치고 첫 번째 절차로 "반함할 수 있도록 시신의 치아를 받쳐 벌려 놓을 때는 '뿔 숟가락[角柶]'을 사용한다."라는 조항과 "발에 신발을 신길 수 있도록 다리를 일정하게 고정할 때는 연궤燕几를 사용한다."라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당대唐代 『개원례開元禮』는 물론 청대 『독례통고讀禮通考』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가례家禮』는 『서의書儀』의 영향을 받아 이 두 의절을 절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명대明代의 구준邱濬은 철족은 제외한 채, 설치의 조항만을 『가례』에 보완하였다.

내용 『가례』의 경우, 습의 과정에 반함하고 신발을 신기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설치와 철족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수록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서는 「사상례」에 따라 설치와 철족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의』는 "시신이 이미 차가워졌는데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하는 것이 어찌 차마 할 짓이겠는가?"라고 하여 설치를 반대하였다. 이는 이익李瀷과 정약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설치를 반대하는 정약용의 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예는 시대에 따라 변하므로 옛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의 마음과 눈을 아프고 참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설치와 철족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의식儀式의 층차일 뿐, 예의 본질적인 의미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후자는 인정人情이라는 예 구성의 기본적인 원리에 위배된다는 말이다. 「사상례」의 기문記文에서는 "모시던 네 사람이 모두 앉아 지체持體를 한다."라고 하였다. 이때의 '지체'에 대하여 정약용은 '숨이 끊어지면 손과 발이 뒤틀리게 되므로 모시고 있던 네 사람이 사지를 잡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본다. 즉, 당시 시속에서 '백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가닥가닥 찢어 꼬아서(헤진 베를 찢어 만든 가닥을 써도 된다) 사지를 고정하던' 수체收體와 동일하다고 파악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전북 지역에서는 '시신을 바르게 한다', '사족을 걷는다'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시한 뒤 입관하기 전까지는 백지나 짚 위에 눕혀 두고 절대 묶지 않는다. 충남 지역에서는 시신의 입과 코 그리고 귀 등을 햇솜으로 막고 사지를 주물러 편 다음 양팔을 배 위에 가지런히 놓고 손바닥을 마주한다. 그다음 엄지손가락을 창호지로 묶어 허리에 동여매며, 다리는 굽은 곳이 없이 바르게 편 뒤 발바닥을 바짝 치켜세워 엄지발가락을 나란히 맞댄 다음 창호지로 묶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두 지역에서는 대체로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례준칙」의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깨끗한 백지나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②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 뒤 머리를 높게 하여 괴고 손발을 바로 잡는다. ③나무판 위에 시신을 누이고 홑이불을 덮은 뒤에 시상尸床으로 옮겨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며 향을 피운다. 이러한 규정은 『가례』의 습襲의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점에 근거하면 현재 사용되는 '수시'라는 용어는 전통의례에서 설치와 철족으로 대표되는 의절에 습까지 포함해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의 전통상례와 죽음관 연구1(장하열 · 강성경, 종교교육학연구10,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장동우(張東宇)

수연례
壽宴禮

정의 사람이 태어나 60세 이후의 생신과 특별한 날에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벌이는 수연壽宴과 관련된 의례.

역사 수연례壽宴禮는 노인을 공경하고 받드는 경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풍속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베푸는 제도적 의미의 양로연養老宴에 관한 기록은 알려져 있으나, 개인의 의례인 수연례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전해지는 바가 없다.

조선 후기 이만영李晩永이 엮은 유서類書인 『재물보才物譜』(1798)에서는 회갑回甲을 "한 갑자가 돌아와 61세가 된 것回一甲子, 六十一歲也"이라고 풀이하고서, 주갑周甲·화갑花甲·환갑換甲도 회갑과 같은 뜻이라 밝히고 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는 환갑還甲·화갑華甲은 보이지 않는다. 최남선이 『조선상식朝鮮常識』(1948) 「의례편」에서 "근래에 혹 '환갑還甲'이란 字를 씀은 무론 구갑舊甲으로 돌아왔다는 의意를 취함이요."라고 적은 것까지 생각해보면, '환갑還甲'은 뒤늦게 쓰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화갑華甲'이라고 일컫는 경우는 '화華'를 파자하면 '육십일六十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래 화갑花甲으로 쓰던 것을 고상하게 바꾼 것[雅化]이라 한다. "회갑이라는 명칭은 후세에 생긴 것回甲之名, 起於後世"이라는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의 기록으로 볼 때, '회갑'도 후대에 만들어진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수연례와 관련해서 문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용어는 '환갑換甲'으로 『고려사高麗史』 1296년 (충렬왕 22)에 기록이 보이며, 같은 내용이 『동국통감東國通鑑』·『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에도 실려 있다.

고려 사회에서는 환갑을 운수가 사나운 해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어서 개인적 축수祝壽의례로서 환갑을 기피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에 이르러 성혼成渾(1535~1598)의 문집인 『우계집牛溪集』에도 "올해 61세이니, 세속에서 꺼리는 이른바 환갑이다今年六十一歲, 俗忌所謂還甲."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처럼 장수의 상징인 환갑이 드는 해를 오히려 운수가 사나운 해로 인식하여 기피하려는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고려 말에 '환갑換甲'과 '갑일축수甲日祝壽'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 후, 그에 관한 기록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기록이 다시 나타난 것은 조선 중기부터였다. 이때부터 여러 시문집에 관련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김성일金誠一(1538~1593)의 『학봉일고鶴峯逸稿』에서는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의 수연 잔치를 베풀었다慈闈一夕展壽筵."라고 했고, 정홍명鄭弘溟(1592~1650)의 『기옹만필畸翁漫筆』에서는 "마침 회갑날이 되어 술자리를 베풀었다適值初度設酌."라고 했으며, 정약용의 『다산시문집』에서는 "회갑을 맞아 축수의 자리 베풀었다重回甲子設芳筵."라고 하여 회갑잔치인 수연壽筵·壽宴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에 이르러 수연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효행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유교 윤리와 규범이 전파·정착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682년(숙종 8)에는 "민간의 미천한 백성도 부모의 회갑이 되면 술을 거르고 음식을 장만하여 친족을 모아 축하하니, 이는 곧 인정상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볼 때 조선 중기 무렵에는 민간에서도 회갑잔치가 널리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수연壽筵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61세 생일이 되면 회갑이라 하여 잔치를 열어 장수를 축하한다. 이날에는 친지와 친구들이 모두 모여 술잔을 올리며 하례를 한다. 자녀들은 비단옷을 입고 흥겹게 춤을 춘다. 부모는 비록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자신의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이 있긴 하지만, 자녀들의 정을 생각해서 혹은 억지로 받아들여서 자식들의 즐거움을 차마 빼앗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부모님의 생신날에는 삼가 공경히 엄숙하여 술잔치와 음악을 행하지 말며 단지 낳아서 길러주신 수고로움에 대한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님의 회갑날에 흥겨운 잔치를 벌이기보다 먼저 떠나신 조부모님을 생각해서 차분하고 경건하게 지낼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최익현崔益鉉(1833~1906)은 자신의 문집인 『면암집勉菴集』에서 회갑 날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어 구한말 당시 사람들의 회갑에 대한 인식과 회갑례 절차를 간단하나마 엿볼 수 있게 해준다.

> 이 세상을 마칠 땐 혹 20세·30세에 마치거나 40세·50세에 마치며 환갑까지 가는 사람은 대개 드물다. 그러므로 수壽란 오복의 하나요, 또 달존達尊의 하나라고 하니, 성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괴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마광司馬光의 『거가잡의居家雜儀』에서는 "어른의 장수 잔치를 큰일"이라 하였다. …… 가정이 평온하고, 육친이 무사하며, 약간의 음식을 장만하니, 손님들도 모였다. 돌아가신 내 부모님의 환갑과 비교하면 너

장수연 | 회혼례도첩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무 과분한 일이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한다면, 진실로 차마 환갑의 술잔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어찌 나의 소감만으로 자손들의 인정과 도리를 전연 무시할 수 있겠는가! 부득이하여 중당中堂에 자리를 펴고 나는 종제와 동쪽에 앉고, 부인은 형수와 함께 서쪽에 앉았으며, 그 밖에 일가들이 차례로 서서 술잔 드리기를 예절에 맞추어 하였다.

이유원李裕元(1814~1888)은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회갑 이후의 나이는 모두 하늘이 내린 것이다. 하늘의 은혜가 그처럼 넓고 크니, 다른 것이야 어찌 바랄 것이 있겠는가?"라고 적고 있는데, 이처럼 환갑 이후의 나이를 여분의 나이, 남의 나이로 인식하는 모습은 평균수명이 늘어난 지금까지도 간혹 남아있다. 그래서 대주의 나이 60세까지는 좋은 날을 잡아서 성주고사를 지내지만 환갑 이후부터는 남의 나이라 해서 성주를 모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환갑 이후의 나이는 모두 하늘이 내려준 여분의 나이, 남의 나이라고 하는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영조 이후에는 사람의 일생의례로서뿐 아니라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념의례로서도 회갑례가 행해졌다. 또한, 일찍 돌아가신 부모의 회갑이 되는 해[甲年]에는 향사享祀를 올리는 풍속, 즉 죽은 부모의 60주년 생신에 행하는 갑제甲祭와 만갑연挽甲宴도 성행했다. 이렇게 갑년甲年은 인생의 불가결한 대례가 되고, 부모의 회갑잔치를 베푸는 일이 자식의 일대 의무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내용 수연壽宴이란 사람이 태어나 "60세가 지나면 잔치를 베풀어 이를 축하하는 것壽過六十則設宴慶之"으로, 조선 후기 이만영李晩永이 엮은 『재물보才物譜』(1798)를 통해 알 수 있다. 수연의 대상이 되는 생신으로는 육순六旬(60세), 회갑回甲(61세), 진갑進甲(62세), 고희古稀(70세), 희수喜壽(77세), 팔순八旬(산수傘壽, 80세), 미수米壽(88세), 구순九旬(졸수卒壽 90세), 백수白壽(99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60세 이후의 특별한 생신을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는 그만큼 우리 민족이 60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평균수명이 짧아 80세 이상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심지어 70세까지만 살아도 아주 오래 산 것으로 여겨 중국 당唐나라의 시인 두보杜甫도 「곡강시曲江詩」에서 "사람이 70세까지 사는 것은 예부터 드물다人生七十古來稀."라고 하였다. 70세를 흔히 고희古稀라는 별칭으로 표현하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80세·90세의 경우에는 팔순·구순 외에 별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팔순을 '산수傘壽', 구순을 '졸수卒壽', 77세를 '희수喜壽', 88세를 '미수米壽', 99세를 '백수白壽'라 표현하는 것은 일본말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용어로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돌로부터 60주년이 되는 해인 회갑回甲 외에, 혼례를 치른 해로부터 60주년이 되는 해는 '회혼回婚', 과거 급제한 해로부터 60주년이 되는 해는 '회방回榜'이라 한다. 이러한 수연을 치르려면 적게는 61세부터 많게는 80~90세까지 살아야 한다. 그래서 회갑·회혼·회방은 『주자가례朱子家禮』·『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 나오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3대 수연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생의례의 하나로 행해졌다. 하지만 최근 80세가량에 이르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수연례도 그 의미가 크게 변모되었다. 그 대표적 양상으로 수연례를 하는 나이가 점차 늦춰지고 있으며, 환갑잔치보다 고희연이나 팔순잔치를 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노인들의 장수를 축하하는 의례인 수연례는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유교윤리인 효행사상을 보급하고 강화·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현대사회에서도 장수 내지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시기와 자녀들의 효행에 대한 인식 변화가 결국 수연례의 현대적 변화양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환갑을 기준으로 노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에 비하면 그 연령이 매우 늦춰지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자식의 공경과 효행의 상당 부분도 물질적인 도구 관계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모·자식·친지들이 직접 대면해서 치러야 하는 수연례의 빈도나 비중도 더불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부모대접을 받고, 돈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는 세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의학기술과 생활 여건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수연례의 주기도 점점 연장되고 있으며, 수연례가 본래 지

넘던 장수를 축하하고 기원하는 축수의 의미도 크게 변하였다. 따라서 환갑일·칠순일도 특별히 경사스런 날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친지·친구들에게 생일 미역국 한 그릇을 대접하고 하루를 즐겁게 놀거나, 수연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다는 정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수연례는 의식(ceremony)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통과의례 측면도 있지만,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유교적 사회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이 실천해야 할 '규범(norm)'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인류학적 통과의례는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이 사회적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의례'이다. 반면, 수연례를 포함한 가례는 가족주의에 기초하여 인간이 유교의 사회적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인간행위의 '규범'을 주로 하며, 부수적으로 '의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례의 이런 특성에 천부성·희소성이란 수연례만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관혼상제례冠婚喪祭禮와 구별되는 수연례만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한국사회에서 수연례는 '자식의 효심, 축수의 기원, 체면을 위한 과시, 품앗이 관행' 등이 작용하여 만들어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효행의 물질적 도구화, 평균수명의 연장, 실리적 사고경향, 품앗이 관행의 약화 등으로 오늘날 수연례는 ①환갑에서 칠순으로, ②잔치에서 여행으로, ③점차 남녀차별 없이, ④집에서 전문 뷔페로, ⑤이제는 부조 없이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무無부조의 경향성이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품앗이'라 불리는 부조문화를 간직해오고 있다. 그런데 수연례는 몸·물품·음식 부조에서 돈 부조 문화로 바뀐 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부조를 받지 않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는데서 오늘날 수연례 문화만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수연례를 통해 노인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의미는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수연례가 본래 지녔던 장수를 축하하고 기원하는 축수의 의미도 크게 변하였다. 즉, 수연례가 지니는 의례적 의미가 변하면서 환갑일·칠순일도 특별히 경사스런 날로 인식되기보다 단지 하루 즐겁게 놀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정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또한, 수연례를 통해 효행사상을 보급·전파하고 자식들의 효행을 담보한다는 규범적 의미도 많이 약화되었다. 이에 실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까지 늘면서 수연례는 임의적 의례로의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수복-장수를 바라는 마음(최순권 외, 국립민속박물관, 2007), 수연례의 변천에 관한 일 고찰(김인옥,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6-2,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2003),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인의 삶에서 수연례가 갖는 의미 분석(김만태, 실천민속학연구12, 실천민속학회, 2008), 한국인의 환갑의례 연구(최종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필자 김만태(金萬泰)

수연문
壽宴文

정의 장수를 축하하는 글로서, 노년의 만수무강과 생기복덕生氣福德을 축원하는 문장.

역사 중국학자 왕원이王雯怡에 의하면, 수시壽詩는 당대唐代에 비롯되었고, 수사壽詞는 송대宋代에 발흥했으며, 수서壽序는 원대元代에 시작되어 명대明代에 번성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중국 학자 장아이보張愛波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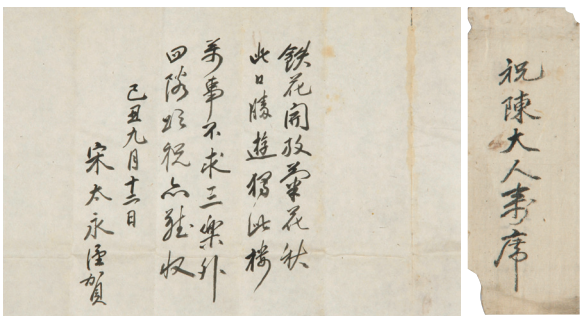

축수시 | 1889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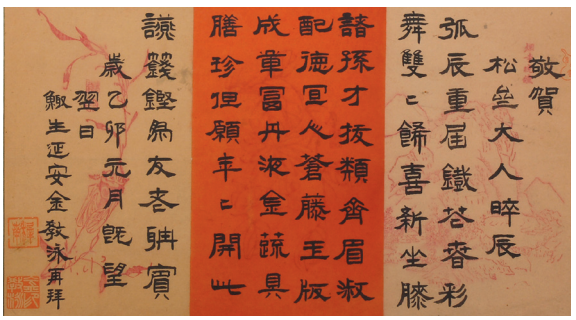

수연문 | 1885 | 국립민속박물관

서는 명대에 출현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조선시대 수서 필자들의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수서壽序는 증서문贈序文의 일종으로, 축수하기 위해 쓰인 문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서 창작은 조선 중기의 문인 장유張維(1587~1638)의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신익성申翊聖(1588~1644)의 『악전당집樂全堂集』 등에서 그 시원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중기(17세기)부터 수연壽宴이 성행하면서 수연문 창작 또한 20세기 초반까지 계속되어 왔다.

내용 수연문은 중국 고대의 전통적인 생일 축수의 문화가 수서라는 글쓰기 양식으로 형식화된 것인데, 조선 후기 문인 정원용鄭元容(1783~1873)은 「내자정경부인육십수서內子貞敬夫人六十壽序」에서 수서에 대해 "명대부터 세상에 성행한 문체로서, 지역마다 풍속이 같은데, 40세 이상부터 한 살씩 먹을 때마다 또는 10년 단위로 그 행동의 아름다움을 서술하며, 축원의 글을 쓰는 것이니, 이는 대개 칭송하는 문체自明代時, 盛行天下. 各省同其俗. 以自四十以上, 或以起一, 或以躋十. 而敍其行美. 寓祈祝之辭, 此盖贊頌之體也"라고 설명하였다. 조선시대 사대부와 문인들은 다소 화려하고 사치스러울 수 있는 수연문화를 비판하는 한편, 수연문을 통해 가부장 사회의 부모에 대한 효행을 표출하고, 수명장수, 생기복덕을 축원하는 수연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징 및 의의 수연문은 수시, 수사, 수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연문화 속에 형성된 문예적 전통으로서 장수를 축하하고, 복덕을 축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서는 주로 수연을 전제로 청탁을 통해 창작을 한다. 그래서 대체로 부와 명예를 겸비한 사대부 가문의 노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장수를 축수하고, 복덕을 축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연잔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친에게 수서만 청탁하거나 자손이 직접 수서를 써서 헌정하였다. 수연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수서를 써서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經山集, 노년기 여성적 삶의 공론장-17~19세기 여성 대상 수서(최기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조선시대(17~20세기 초) 수서의 문예적 전통과 수연 문화(최기숙, 열상고전연구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한국인의 환갑의례(최종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필자 최종호(崔鍾浩)

수유
授乳

정의 출산 후 산모가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

내용 일반적으로 출산 후 2~3일이 지나야 비로소 산모에게 젖이 나온다. 산모가 아이에게 수유할 수 있을 만큼 젖이 나오는 상태를 '젖이 돈다.'고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생후 2~3일간은 젖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며, 이때는 아이에게 수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 입술에 물을 찍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이 기간에는 또한 아이에게 산모의 젖을 자주 물려주어야 젖이 빨리 돈다고 한다.

3일까지 젖이 돌지 않으면, 아이에게 밥을 지을 때 생기는 밥물이나 쌀죽을 끓여서 만든 암죽을 먹인다.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에서는 백설기를 끓여서 암죽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돼지나 소의 족을 고아서 산모가 그 국물을 먹으면, 젖이 많이 돌게 된다고 믿었다. 이렇게 해도 젖이 부족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젖 타오기' 행위를 한다. 새벽에 우물가에 가서 두 개의 병(혹은 표주박)에 물을 담아 입구를 솔잎으로 막은 뒤, 병을 목에 거꾸로 걸고 물을 조금씩 흘리면서 집에 온다. 이후 병에 남은 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지앙상(삼신상)에 올려놓고 "어진 지앙님네(삼시랑님네) 울 애기 젖 좀 많이 타게 해주세요." 같은 말을 하며 비손한다. 이러한 젖 타오는 행위는 세부적으로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방법을 취해도 모유가 부족한 산모는 동냥젖을 먹인다. 하지만 젖동냥을 온 이웃에게 젖을 빌려주면 그 집 아이에게 복이 가버린다는 속신俗信이 있어, 부정을 가리는 집에서는 동냥젖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젖을 얻어 아이를 키우기란 쉽지 않다.

반면에, 산모의 유량乳量이 많으면 젖을 짜내 버리는데, 이때 버리는 장소는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우물가나 장독대, 또는 우물가의 배수구 등이었다. 이는 젖을 아무 데나 버리면 부정을 타서 젖이 완전히 말라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젖이 "(굴뚝에서) 연기 나오듯, (우물가에서) 물 내려가듯" 술술 잘

나오라는 의미도 있다.

수유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혹은 3세까지 계속하지만, 아이가 동생을 보게 되면(즉, 엄마가 임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단한다. 개인에 따라 7세 이상의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속신으로는 아이가 늦도록 젖을 떼지 않으면 멍청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징 및 의의 산모의 수유는 신생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향후 아이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젖이 부족한 산모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량이 풍부해지기를 기원했다. 특히, 우물가에서 젖을 타오는 행위는 용왕신앙과 결부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행해진 방법이었다. 이밖에 암죽을 끓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쌀을 이용하지만,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에서는 말린 백설기를 물에 불려 암죽을 끓일 때 사용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한미옥(韓美玉)

수의
襚衣

정의 상례喪禮 때 시신에 입히는 옷과 부속품[襲具]을 가리키나, 좁은 의미로는 시신에게 입히는 옷.

개관 시신을 관에 안치하고 무덤에 묻는 과정인 상례에서 사용되는 복식류는 습의襲衣, 염의殮衣, 보공의補空衣로 분류한다. 습의는 시신에게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습襲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복식으로 일반적으로 수의壽衣, 襚衣라고 한다. 수의는 시신을 옷으로 가리고 감쌈으로써 시신이 뒤틀리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며, 시신의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도 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대부분 '수의襚衣'로 표기되어 있으나, '수의壽衣'라는 표현도 있다. '수의襚衣'는 사전적 의미가 시신에게 입히는 습의襲衣이지만, 초상이 났을 때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부의賻儀로 사용하는 옷을 뜻하기도 한다. 수의(습의)는 망자의 옷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염의는 망자가 평상시 입었던 옷과 함께 가족이나 친구, 왕이 보내는 옷[襚衣]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20세기 이후 '수의襚衣'라는 용어보다는 '수의壽衣'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용 조선시대 수의는 평상시 입던 옷이나, 생시의 예복에 해당하는 옷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시대별로 유행하는 옷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옷의 종류, 즉 명칭과 형태가 달라졌다. 평상시에 입던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의의 옷감은 주로 명주나 비단 종류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출토 복식을 수습하면, 그 시대의 평상복을 수의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옷의 크기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18세기 후기까지는 평상시에 입던 옷을 수의로 사용하였으나, 1790년대를 즈음하여 수의의 크기가 매우 장대해졌다. 충북대학교 소장 전주이씨(1722~1792) 수의와 이연응李沇應(1818~1879)의 수의가 그 예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초·중반까지 수의는 평상시에 입던 옷을 사용하거나, 새 옷으로 수의를 만들어도 평상시의 치수 정도였지만, 18세기 후반부터는 남녀 수의를 매우 넉넉하게 큰 치수로 새로 장만하는 풍습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큰 치수의 새 옷 수의를 만들어도 여전히 옷감은 대부분 비단으로 만들었다.

1925년에 발간된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서는 중류 사회에서 보통으로 하는 수의를 표준으로 삼아, 복건幅巾과 과두, 망건網巾은 공단이고, 지요[地褥]와 베개는 자주와 흑색의 공릉이며, 그 외의 옷들은 세포를 사용했으며 색상은 백색과 분홍, 옥색, 남색을 썼다고 설명했다. 수의의 색의 경우, 청은 청듸물, 홍은 잇다홍, 황은 회나무 열매, 자주는 짓치, 분홍은 여지로 물들이기가 원칙이나, 염색이 불편하므로 소색素色의 세포로 많아 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베 수의는 일제강점기부터 널리 사용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수의를 구성하는 옷의 종류와 소재도 시대에 따라 변하였다. 2001년 사단법인 예지원과 한국출토복식연구회에서 '바람직한 상례절차와 수의문화의 정립을 중

남자 수의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여자 수의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단령 | 18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생시의 관복을 남자 수의로 사용.

철릭 | 1547 | 국립민속박물관
생시의 관복을 남자 수의로 사용.

명주 겹저고리 | 1500년대 말 | 국립민속박물관

습신 | 17세기 중반 | 국립민속박물관

저고리 | 명종대 | 국립민속박물관
생시에 입던 옷을 여자 수의로 사용.

배자 | 18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생시에 입던 옷을 여자 수의로 사용.

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소재의 수의를 제시하였다. 공단·명주·무명·운문사·삼베·모시 등으로 형편에 맞는 수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때 제시된 수의는 옷에 맞게 염색을 하였다. 공단 수의의 경우, 남자는 심의·복건·중치막·창의·바지·저고리이고, 여자는 원삼·당의·저고리 3벌·적삼과 치마이며, 남녀 공용의 습구는 겹이불·천금·지요·베개·멱목·악수·오낭·버선·습신·소모자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의는 삼베로 만든 것으로, 남자는 도포·두루마기·저고리·겹바지·속저고리·속바지이고, 여자용 수의는 삼베 홑원삼·겹저고리·치마·속저고리·속바지이며, 남녀 공용의 습구로 삼베 홑천금·지요·장메(긴 줄)·악수·면포·베개·버선·오낭이었다.

2014년 현재 장례업체들에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표준 수의로 제시하고 있는 수의는 다음과 같다. 남자 수의는 두루마기·도포·속바지·겉바지·저고리·속저고리, 여자 수의는 원삼·속바지·저고리·속저고리·속치마·치마이다. 그리고 남녀 공용의 수의 용품으로 천금(이불), 지금(요) 장매(염포), 모자, 버선, 악수, 오낭, 베개, 허리끈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1년 경기도박물관에서 조사한 『경기민속지』에는 "수의는 보통 윤달이 든 해에 미리 만들어 두기도 하지만, 돌아가시면 바로 베를 사다가 마을 아주머니들이 상갓집 마당에서 짓는데, 염을 하기 전까지는 모두 마친다. 수의나 상복을 만들 때는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장의사를 통해 구입해 쓴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 수의는 "자식이 하는 것이며 윤달 든 해에 만들어야 탈이 없는데 망자亡者의 것은 하루에 마쳐야 탈이 없고, 다 만들면 돌아가실 이가 입어 본다고 하며, 바느질할 때는 온 박음이나 뒷바느질, 매듭을 지어도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나 자식이 화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든 것은 좀이 쓸지 않도록 보자기나 고리짝에 넣고 안에 궁궁이 풀을 담아 두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좀약이나 신문지를 넣어두고 있다. 또, 좀이 슬지 말라고 어른들은 칠월칠석이나 백중날에 거풍하였다." "옷 위로 넘어다녀도 안 되고, 매듭을 지어도 안 된다." "뒷바느질도 안 된다. 앞으로만 가야 한다."와 같은 금기 사항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금기였다.

지역사례 1986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은 수의를 명주로 만들고, 강원도 춘천은 수의를 만드는 재료로 반드시 삼베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삼베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시는 자손의 머리가 하얗게 되며, 명주는 구더기가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어촌마을에서는 수의를 무명으로 만들고, 강원도 명주군 학산리 반가에서는 생시에 입는 비단옷으로 수의를 한다. 충청북도 진천에서는 대부분 명주로 만든다.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치마저고리는 모본단 본견에 명주 안을 받치며 바지, 겹바지, 핫바지, 고의 등 속옷도 명주로 짓는다. 경상남도 사천은 수의를 명주나 베로 만든다. 제주도는 수의를 '호상옷'이라고 부른다. 백색 마포나 명주로 만들고 무명이나 화학섬유는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한다. 무명은 시신이 썩을 때 새까맣게 되어 예부터 쓰지 않는다고 한다. 1986년 조사에 의하면, 수의의 소재는 명주가 대부분이고 지방에 따라 삼베를 쓰기도 했다. 2001년에 발간된 『경기민속지』에 의하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수의를 삼베로 만들고, 명주로 만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신에 명지(명주)들면 썩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 이천시 조사의 경우에도 수의를 만들 때는 윤달이 있는 해에 손 없는 날을 택하여 떡 한 말을 찌고 하루에 다 만들었다고 한다. 수의는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베목을 삼베로 만들어 몸에 붙지 않게 만들었다. 1989년과 2001년 조사를 살펴보면, 지방별로 수의의 옷감은 다양하며 2000년대 초까지는 명주가 더 많이 사용된 것 같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수의는 삼베로 만드는 것으로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 이는 매장보다 화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장례를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현재의 장례제도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수의는 돌아가신 분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옷으로, 시대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달라졌다. 20세기 후반과 비교하면, 2014년은 산업화로 인해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였고, 의례 가운데 가장 늦게 변화하는 상례마저 많은 부분을 장례업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장례도 매장보다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의의 재료로 삼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수의를 가정에서 직접 바느질하여 준비하던 풍습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일생의례(경기도박물관, 2002), 상장례-삶과 죽음의 방정식(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5), 염습의에 관한 연구(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김진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한국의 수의문화(박성실·정종수·이은주 외, 신유, 2002).

필자 송미경(宋美京)

수장
水葬

정의 주검 또는 주검을 화장한 뒤 남은 유골을 강이나 호수, 바다 등에 뿌리거나 물속에 안치하는 장례 방법.

역사 주검을 물속에 장사지낸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인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의 유골을 동해 감포 앞바다의 대왕암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문무왕의 주검을 화장한 후, 유골을 바닷가 암초의 바닷물 속에 넣은 것이다. 이러한 장례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일로, 문무왕릉 이외에 다른 예를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유골을 화장하여 하천이나 호수, 바다에 뿌리는 방법으로 이차장二次葬을 치를 때, 수장水葬을 택하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으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

내용 주검을 물속에 장사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먼저, 주검을 물속에 던져버리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주검을 관에 넣어 물에 던져 넣거나, 주검을 실은 배 또는 배 모양의 관을 표류시켜 물속에 저절로 가라앉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주검을 화장한 후 남은 재나 유골을 강이나 호수, 바다 등에 뿌리는 방법이 있다. 또한, 항해 중 배 위에서 사망했을 경우 주검을 육지로 옮기는데 시간과 비용 문제가 있거나, 위생상의 문제가 있으면, 바다에 던져 넣어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매장할 땅과 비용이 없는 가난한 자나 전쟁터에서 죽은 자들의 유골을 화장하여 특정 지역의 하천이나 호수, 바다에 뿌리는 방법으로 2차장을 치르는 방법도 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도들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주검을 화장한 후 유골이나 재를 갠지스 강에 뿌리는 수장을 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장은 종교적인 신념 또는 의식과는 무관하다.

특징 및 의의 주검을 물속에 던져 넣어 처리하는 방법은 특별한 상황, 또는 주검을 화장한 후 2차적으로 처리할 때 쓰는 방법이다. 오늘날 수장은 화장과 연계되어 행해진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영원한 만남 한국 상장례(국립민속박물관, 1990), 옛무덤의 사회사(장철수, 웅진출판, 1995), 장례문화의 이해(이수봉, 경인문화사, 2008).

필자 김영관(金榮官)

수조
受胙

정의 제사에 올렸던 술과 고기를 주인에게 나누어 받는 절차.

내용 수조受胙는 사시제四時祭, 길제吉祭, 녜제禰祭 등에서 행한다. 계문啓門의 절차가 끝나면 축관이 주인에게 하사嘏辭를 하며 술과 음식을 나누어 주고 주인은 이를 맛본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사시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집사자가 향안香案 앞에 자리를 펴면 주인이 나가서 북향한다. 축관이 고조高祖의 신위 앞에 나가서 술을 잔반盞盤에 거두어 들고 주인의 오른편으로 가면 주인이 꿇어앉는다. 축관 또한 꿇어앉으면 주인이 잔반을 받아 모삿그릇에 술을 조금 따른 뒤 맛본다. 축관은 숟가락과 반盤을 들고 각 신위의 밥을 조금씩 떠서 받든 다음, 주인의 왼편으로 나가서 주인에게 복을 받기를 빈다[嘏]. 그러면 주인이 술을 자리 앞에 놓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꿇어앉아 밥을 받아 맛보고 또 술을 받아서 다 마신다. 집사자는 꿇어앉아서 오른편으로 주인의 잔을 받아 주전자 곁에 놓고, 또 왼편으로는 밥을 받아서 그처럼 한다. 주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동쪽 계단 위에 서서 서향하고, 축관은 서쪽 계단 위에 서서 동향하여 이성利成을 고하고

수조(길제) | 경남 김해 장유면 화재 이우섭 | 국립민속박물관

내려와서 제자리로 간다. 참여자 모두 재배하되, 주인은 절하지 않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수조를 행할 때 축관은 주인에게 하사嘏辭를 하는데 "조고祖考께서 공축工祝에게 명하여 많은 복을 너의 효손에게 이르게 하였으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녹祿을 받고 밭에서는 농사가 잘될 것이며 눈썹이 세도록 오래 살아서 폐하지 말고 길이 하라."라는 내용이다. 사辭는 조상이 자손의 정성 어린 제사를 기쁘게 흠향하고 축관을 통해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다. 축문이 조상에게 드리는 자손의 효성을 표현한 것이라면, 사는 조상이 자손에게 내리는 자애慈愛와 강복降福의 표시이다. 이처럼 수조는 제사를 지내면서 신에게 무언가를 기원하고 그 보답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기禮記』「제통祭統」에서도 "현자賢者가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그 보답으로 복을 받으니,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다. 복은 '갖추어지는 것[備]'인데, 갖추어진다는 것은 만사가 순조롭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순조롭지 않은 것이 없는 상태를 '갖추어진 것'이라고 한다. 즉, 안으로는 자기에게 지극하게 하고, 밖으로는 도리를 따르는 것이다. 충신이 군주를 섬기거나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데에도 그 근본은 하나이다."라고 했다.

상례 과정 중 길제는 흉사凶祀에서 길사吉祀로 넘어가는 단계로, 길제를 지내고 나서 비로소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의식인 수조 또한 길제에서 반드시 거행된다. 한편,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르면 사시제四時祭, 초조제初祖祭, 선조제先祖祭, 녜제禰祭, 기일제忌日祭 중 기일제에만 수조의 절차가 없다. 이를 두고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기일은 삼가는 날로,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절차 역시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일제에는 수조와 준餕에 해당하는 음복飮福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예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수조는 제사에 올린 술과 고기를 주인이 맛보는 절차로, 조상으로부터 복福을 내려받는 행위이다. 오늘날 행하는 음복의 절차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유교의 상례에 관한 연구(최기복,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필자 김미영(金美榮)

수질 首絰

정의 상중에 상주가 머리에 두르는 둥근 테.

내용 수질首絰은 머리에 두르는 것으로 효孝를 상징한다. 삼과 짚을 꼬아 테를 만들어 남자는 두건·굴건屈巾과 함께 쓰고, 여자는 수질만 쓴다. 수질은 소상小喪이 지나면 벗는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변통고常變通攷』에 따르면, 수질의 소재와 형태는 다음과 같다. 참최斬衰의 수질은 저마苴麻(씨 있는 삼)로 만들며, 둘레가 9촌寸(치)이다. 삼의 밑동[麻本]의 위치는 이마의 왼쪽에 있으며, 이마 앞에서부터 오른쪽을 향하여 둘러 정수리로부터 목 뒤를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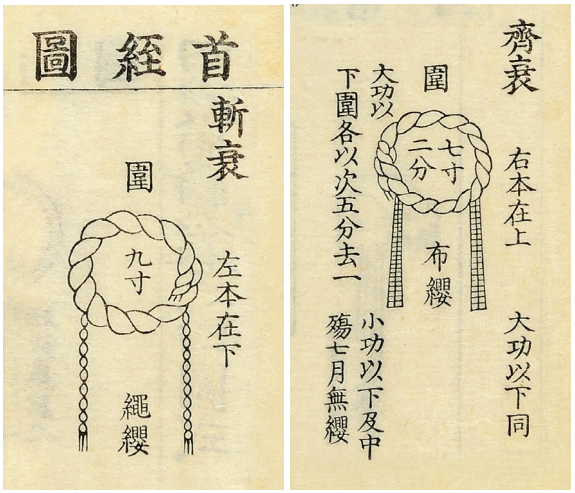

수질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수질 | 국립민속박물관

그 끝을 밑동 위에 올린다. 그리고 줄[繩]로 영纓을 만들어 관冠의 체제처럼 고정한다. 재최齋衰의 수질은 시마枲麻(씨 없는 삼)로 만드는데, 둘레가 7촌 남짓이다. 밑동의 위치는 오른쪽에 있으며, 끝을 밑동 아래에 묶고, 포布(베)로 영纓을 만들어 관의 체제처럼 고정한다. 장기杖朞·부장기不杖朞·오월복五月服·삼월복三月服도 모두 같다. 대공大功의 수질은 둘레가 5촌 남짓이며, 소공小功의 수질은 둘레가 4촌 남짓으로 재료는 재최와 같다. 시마緦麻의 수질은 숙마熟麻(누인 삼)로 만들며, 둘레가 3촌 남짓이다. 영纓도 역시 그와 같다. 여기에서 장상長殤(16세에서 19세 사이에 죽음) 9월은 영纓과 질絰을 하고, 중상中殤(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음) 7월은 영纓과 질絰을 하지 않는다는 기록을 통해, 재최에서 대공까지 포布로 영纓을 만들며, 소공 이하는 질에 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따르면, 수질은 두 가닥을 서로 교차하여 묶으며, 그 길이는 1척尺(자) 7~8촌이다.

특징 및 의의 참최의 질絰은 '저질苴絰'이며, 재최 이하의 질은 '무마질牡麻絰'이다. 저질苴絰은 밑동[本]을 왼쪽으로 하여 아래임을, 무마질牡麻絰은 밑동을 오른쪽으로 하여 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 밑동의 위치가 왼쪽인 것은 양陽과 아버지를 뜻하며, 밑동의 위치가 오른쪽인 것은 음陰과 어머니를 의미한다. 또한, 밑동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거운 복이 안으로 통섭됨을, 밑동이 위에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복이 밖으로 통섭됨을 의미한다. 즉, 참최의 수질은 좌본재하左本在下라 하여 양의 근본인 아버지와 가장 무거운 슬픔을, 재최의 수질은 우본재상右本在上이라 하여 음의 근본인 어머니와 참최에 비해 가벼운 슬픔을 나타낸다고 한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필자 조우현(趙又玄)

순장
殉葬

정의 특정한 인물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함께 묻는 장례 방법.

역사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와 『후한서後漢書』「동이전東夷傳」 부여조夫餘條에 "부여에서는 산 사람을 100여 명씩 죽여 순장殉葬한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3세기 무렵에 순장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동천왕조에 "왕이 죽으니 스스로 죽어 묻히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예의가 아니라 금지했으나 장사를 지내는 날에 무덤에 와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 나무를 베어 그 주검을 덮어주었으므로 마침내 그곳을 시원이라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고구려에서도 3세기 중엽까지 국왕이 세상을 뜨면 함께 따라 죽는 풍습이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신라본기」 지증왕조에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인을 순장하였는데, 이때부터 국가에서 순장을 금지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신라에서는 5세기까지도 국왕이 죽었을 때 순장이 공식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여의 순장은 강제로 사람을 희생시켜 묻는 풍습에 가까우므로, 순장 당한 사람들은 전쟁포로 같은 부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는 국왕이 죽자 자발적으로 따라 죽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나무로 덮어주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땅속에 묻거나 특별한 시설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5세기까지 국왕의 장례 시 남녀 각 5인을 공식적으로 순장하였다. 각지에서 발굴된 고분에서 순장 인골들이 발견됨으로써 문헌 기록이 사실이었음이 입증되었다.

고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순장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라고 인식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폐단이 발생하여 점차 금지되었다. 사람의 모양을 흙이나 나무로 본떠 만든 인형, 즉 토용土俑이나 목용木俑을 묻는 것으로 순장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삼국통일 이후에 순장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내용 순장은 사람을 강제로 죽여 묻거나, 자발적으로 죽은 사람을 묻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 묻는 순장이 일종의 인신공양人身供養의 성격을 강하게 띤 것이라면, 자발적인 순장은 이승의 인간관계를 저승에서도 이어가려는 당시 사람들의 생사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순장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지배와 피지배의 인간관계가 목숨과 결부되어 형성된 장례 방법이다.

순장의 실례로, 황남대총皇南大塚 남분에서는 왕 또는 왕비의 첩이나 시녀로 추정되는 여성 인골이 발굴되었다. 또한, 경북 경산 임당동, 경북 영덕 괴시동, 경북 의성 탑리, 대구시 화원, 경남 창녕 송현동고분 등에서 순장된 인골이 발굴되었다. 신라는 국왕뿐 아니라 지방의 세력가들도 순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발굴 결과이다. 가야지역에서도 경남 김해 대성동, 경북 고령 지산동, 경남 함안 도항리, 부산시 복천동, 경남 합천 옥전고분군 등에서 순장한 유골 및 순장 흔적이 확인되었다.

전쟁포로와 노예 같은 예속된 신분만 순장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 호위무사나 마부, 창고지기나 시녀처럼, 무덤의 주인공이 현생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릴 때 그를 곁에서 직접 모시고 받든 근시적近侍的 존재들도 대부분 순장을 당했다. 이들은 저승세계에서도 주인을 모시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강제로 죽임을 당하여 묻혔던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순장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특정한 인물을 매장할 때 함께 묻는 것으로, 왕이나 귀족 같은 특권계급이 죽었을 때 신하나 시종 등을 강제 또는 스스로 죽게 하여 묻었다. 죽은 이가 평소 아끼거나 사용하던 물건을 무덤에 함께 넣어 매장하듯이 거느리고 부리던 아랫사람도 부장품처럼 취급하여 묻은 것으로 매우 잔혹한 장례 방법이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志, 순장과 토용(권오영, 한국역사민속학강의1, 민속원, 2010), 옛무덤의 사회사(장철수, 웅진출판, 1995), 한국 고대의 순장연구(주용립, 손보기박사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을유문화사, 1988), 한반도 고대사회에서 순장의 사상적 배경과 그 성격(이성준, 대가야의 정신세계,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필자 김영관(金榮官)

시가례
始加禮

정의 관례를 행할 때에 첫 번째 관을 씌우는 예禮.

역사 성리학 도입과 함께 널리 보급된 관례의 시행 단계에서 행하는 시가례始加禮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부터 관례 관련 기록이 이미 등장한다. 즉, 『고려사高麗史』에는 광종·예종·의종대에 왕태자의 관례를 행한 기록이 보인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하면서 사대부 집안에서는 예서에 따라 관례를 행하였지만, 대부분 예서보다 간소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근래에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으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상투틀기라는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점차 사라졌다. 다만, 여자의 계례笄禮만 구식 혼례식에 흡수되어 명맥을 유지하였다.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1763)은 시가례·재가례再

加禮·삼가례三加禮 등 삼가三加를 하나로 합하였고, 축사祝辭 또한 한 번으로 그치게 하는 등 간소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고례古禮에 따라 이 셋을 분리하여 예禮를 행하게 하였다. 고례에는 치포관緇布冠(두꺼운 종이로 만든 검은 관)을 씌울 때 현의玄衣(검은 저고리)와 현상玄裳(검은 치마)을, 재가再加에는 피변皮弁을 씌울 때 소의素衣(흰 저고리)와 소상素裳(흰 치마)을, 삼가三加에는 작변爵弁을 씌울 때 순의純衣(색이 순일한 저고리)와 훈상纁裳(붉은 치마)을 입었는데,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초가初加에 심의深衣(선비들이 입는 소매가 넓은 흰 윗옷), 재가再加에 조삼皁衫(검은 색깔의 흑단령黑團領이라 부름), 삼가三加에 복두幞頭(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모로, 사모紗帽와 같이 두 단으로 되어 있으며, 뒤쪽의 좌우에 각脚이 달려 있다)와 난삼襴衫(녹색 혹은 검은색 예복, 유생·생원·진사 등이 입던 예복)을 입는다 하였다.

이렇듯 관례의 절차나 내용이 일정치 않은 것은 시대적 상황이나 시속時俗에 따라 관례를 다르게 실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관례」에서 가난한 선비와 경대부 집안에서는 관례의 예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던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관례」에 따른 시가례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빈賓이 장관자將冠者에게 읍揖하면, 장관자는 오른쪽 자리(북쪽 끝)를 향하여 선다. 찬자贊者는 빗과 망건을 들어 자리 왼쪽(남쪽 끝)에 놓고 일어나 장관자의 왼쪽에 선다. 빈이 읍하면 장관자는 자리에 나가 서향해서 꿇어앉는다. 찬자는 자리에 나아가 같은 방향으로 꿇어앉아 빗질하고 상투를 합한다. 빈이 내려가면 주인도 내려간다. 빈이 손을 씻으면 주인은 읍하고 올라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執事者가 관과 건巾을 놓은 쟁반을 올리면 빈은 층계 한 단을 내려가 관과 비녀를 받아 쥔다(오른손으로 뒤쪽을 잡고 왼손으로 앞쪽을 잡는다). 얼굴을 바로 하고 천천히 장관자 앞에 이르러(찬자는 건을 들고 따른다) 그를 향해 축사祝辭하고, 무릎을 꿇고 이를 씌운다(찬자가 대신해서 비녀를 꽂는다). 찬자가 무릎을 꿇고 건을 올리면, 빈은 이를 받아 씌운다. 찬자는 그 끈을 묶는다.

시가례 | 국립민속박물관

빈이 일어나 제자리로 가서 읍하면 관자冠者(이제는 관을 썼으므로, 관을 쓴 사람을 지칭함)는 방에 가서 사규삼四揆衫(아이가 입는 옷)을 벗고 심의深衣(선비가 입는 소매가 넓은 흰 윗옷)를 입고 대대大帶(남자의 심의나 여자의 원삼·활옷에 두르는 넓은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방을 나와 얼굴을 바로 하고 남향하여 한동안 선다. 종자宗子가 스스로 관을 쓸 때 빈은 읍하고 자리에 나가고, 빈이 내려가 손을 씻을 때 주인은 내려가지 않으며, 나머지 예식은 모두 같다. 시가례를 행할 때 축사식祝辭式(축하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 좋은 달 좋은 날에 처음으로 원복元服을 씌우니, 너의 어린 마음을 버리고 너의 성숙한 덕을 따라 길하게 오래 살고, 네 큰 복을 더욱 크게 하여라.

계례笄禮에서는 장계자將笄者(비녀를 꽂을 사람)에게 족두리와 비녀를 꽂아주고 배자背子를 입히는 의식을 거행한다. 비녀 꽂을 사람은 방에서 나오고 시자侍子는 자리 왼쪽에 빗을 놓는다. 빈이 손으로 이끌면 비녀 꽂을 사람은 자리에 나가 서쪽을 향해서 꿇어앉는다. 시자도 같은 방향으로 꿇어앉아 머리를 풀어 빗질

하고 머리를 합한다(쪽을 만든다). 빈은 층계를 내려가고 주부도 내려간다. 손을 씻으면 주부는 빈에게 먼저 자리로 돌아가기를 청한다. 시자가 족두리와 비녀를 담은 쟁반을 올리면, 빈은 비녀 꽂을 사람 앞에 나아가 축사祝辭하고 무릎을 꿇어 관을 씌우고 비녀를 꽂아 준 다음 일어나 제자리로 간다. 비녀 꽂은 사람은 일어나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면 시자가 빗을 치운다. 계자笄者는 상의인 배자를 입고 방에서 나온다. 이때의 축사식은 남자의 시가례와 같다.

특징 및 의의 관례의 절차는 준비, 시행, 종결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시가례는 시행 과정으로서 중요한 절차이다. 『주자가례』를 비롯한 정통적인 예서에서는 시가례·재가례·삼가례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성호 이익이 주창한 것처럼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시가례, 즉 초가례初加禮로 끝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빈객이 직접 관자의 머리를 풀어 상투를 조이고 망건을 씌워주고, 갓이나 초립을 씌워 준 뒤 도포와 전복을 입고 빨간 띠를 매게 한 다음 간단한 축사를 하여 끝내는 것으로 진행해 왔다. 이렇듯 관례의 시행 과정은 빈객과 관자, 찬자와 관자의 관계에 따라 진행한다. 또한, 반드시 축사가 매개되어야 한다. 이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신하, 사람의 형제로서 알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분수 있고 겸허한 행동과 됨됨이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관행에서는 대폭 간소화하여 진행해 왔는데, 앞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보다는 단지 육체적 성장에 따라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닌가 한다. 빈객의 조건과 선택 기준도 마을 안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던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與猶堂全書, 朱子家禮, 관혼상제(이민수, 을유문화사, 1975), 조선시대 관혼상제-1(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조선의 관혼상제(사회과학원, 중심, 2002),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필자 박홍갑(朴洪甲)

시다림
尸茶林

정의 불교에서 망자를 위한 상례喪禮 전반, 또는 망자를 위한 염불식.

역사 시다림이란 범어 Śītavana의 음역音譯으로, '시다파나림尸多婆那林' 또는 '시마사나림尸摩賒那林' 등으로 쓰이며, '시다림尸陀林, 屍陀林', '서다림逝多林'이라 쓰기도 한다. 의역意譯하면 '한림寒林'이라고 할 수 있는데 Śīta는 '서늘함[寒]'을, vana는 '숲[林]'을 뜻하는 단어이다. 원래 중인도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王舍城의 북쪽 숲을 지칭한다. 이 숲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린 곳이 있어, 성 사람들이 이곳을 시체를 안치하는 곳으로 사용했다. 그리하여 후일 사체死屍를 묻는 장소를 폄칭하여 한림寒林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또한, 독수리가 시신을 먹기 위해 모이는 곳이었으므로, 조장鳥葬의 예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사분율四分律』에 의하면, 시다림은 질병이 만연한 곳으로, 죄인들이 추방되어 머물렀다고 한다. 또, 『승지율僧祇律』에 의하면, 시다림에 들어가는 자는 두려움 속에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므로 한림寒林이라 칭했다고 한다. 시다림은 수행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십이두타행十二頭陀行 중 시신을 바라보며 무상관無常觀을 닦는 총간주塚間住는 시다림에서의 생활을 뜻하는 것이다. 8세기경 원측圓測의 제자 승장勝莊이 찬撰한 『금광명최승왕경소金光明最勝王經疏』에는 시다림 장소 및 독수리가 시신을 먹는 조장의 예가 소개되었다.

내용 1694년 금산사에서 간행된 『제반문諸般文』에 「시다림작법」 항목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삭발削髮, 목욕沐浴, 세수洗手, 세족洗足, 착군着裙, 착의着衣, 착관着冠, 정좌正坐, 시식施食, 입감入龕, 거화擧火, 하화下火, 창의唱衣, 습골拾骨, 기골起骨, 쇄골碎骨, 산골散骨 등이다. 이후의 의식집 『다비작법茶毘作法』과 동일한 내용인 점을 보면, 당시 시다림작법은 다비작법과 동일 명칭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918년 간행된 『조선불교통사』는 조선불교의 장

의법식葬儀法式으로 「시다림의문」과 「다비작법」을 제시하였는데, 삭발削髮로부터 산골散骨에 이르는 「다비작법」과 달리 「시다림의문」으로는 '오방불번'과 '십이불'을 들었다. 즉, 본격적 상의喪儀 이전의 정토염불을 시다림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1935년 간행된 『석문의범釋門儀範』의 경우, 오방례五方禮를 올린 후 십이불十二佛을 창唱하지 않은 채 무상계無常戒를 독송하는데, 무상계는 『원각경圓覺經』 「보안보살장普眼菩薩章」을 근거로 한, 태어남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 영가靈駕로 하여금 무상無常에 의해 인생관을 초탈할 것을 일깨워 주는 설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 따라 현재는 망자를 위한 염불 내지 설법을 '시다림' 또는 '시다림법문'이라 칭한다.

이렇듯 망자를 위한 설법 또는 염불로서 시다림은 『범망경梵網經』 중 "부모, 형제, 화상 아사리阿闍梨의 사망일에 대승 경율을 독송 강설하라."라는 규범에 따른 것으로, 경전을 독송하거나, 나무아미타불 십념十念 염불을 행하여 망자를 위한 추선追善을 행한다. 이로써 망자가 경전의 깊은 뜻을 깨닫고 불보살의 자비원력에 감념感念하여, 집착의 마음을 버리고 고통을 넘어 피안으로 향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데에 시다림의 의미가 있다.

망자를 위한 독송, 강설의 초기 형태를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복蛇福의 어머니가 죽자 원효元曉는 보살계를 주고 시체 옆에서 가로되 "나지 말지어다, 죽음이 괴롭다. 죽지 말지어다, 남이 괴롭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망자를 위한 설법, 염불로서의 시다림은 신라 이후 오늘날까지 널리 행해지는 추선追善의식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시다림은 망자를 위한 염불식 내지는 상례 전반에 대한 불교 특유의 행법으로, 망자가 집착의 마음을 버리고 피안을 향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장송례葬送禮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불교 상·제례를 통해 본 죽음과 사후인식(정각, 보조사상28, 보조사상연구원, 2007), 상장례에 나타난 왕생미타정토 행법(정각, 정토학연구6, 한국정토학회, 2003).

필자 정각(正覺)

시도기
時到記

정의 어떤 모임이나 경조사 등에 참석한 인원의 성명과 생년, 지참한 물품명 등을 적어둔 장부.

내용 '시도時到' 또는 '시도기時到記'라는 용어는 전통시대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현대에는 어느 사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말이 되었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때에 도착하다', '때에 도착한 사실을 적어놓은 기록'이라는 뜻으로서 전통시대의 각종 모임, 제향祭享, 경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성명姓名과 기타 사항을 간략히 기록해 둔 것을 말한다. 현대의 관습으로 보자면 방명록芳名錄과 일부 유사성이 있다. 지금도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문중의 각종 제향이나 모임에서는 시도소時到所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도를 맡은 인원을 지정하고 참여자의 인적 사항을 시도기에 작성하는 관습이 남아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시도'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시도기는 주로 종가, 문중, 서원, 향교 등에 전해내려온 고문서 가운데 많이 남아 있다. 시도기가 전통시대의 의례 관련 행사에서 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사 빈도가 높은 종가, 문중, 서원, 향교의 자료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외형은 일반적으로 한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여러 장 포갠 뒤 우측 가장자리를 끈으로 엮어 한 권의 책 형태로 만들었다. 표지에는 '시도기'라고 적거나 해당 모임이나 의식에 따라 제목을 별도로 덧붙이기도 하였다. 표지나 내용에 작성 연도를 표기했는데, 대부분 간지로 기재되어서 해당 시도기를 작성한 개인, 문중, 단체에 대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작성 연도 파악이 어렵다. 실제 시도기의 표지에 적힌 제목의 용례로는 '시도기', '초상시시도기初喪時時到記', '장사시시도기葬事時時到記', '소상시시도기小祥時時到記', '대상시시도기大祥時時到記', '봉안시시도기奉安時時到記', '향회시도기鄕會時到記', '추향시시도기秋享時時到記', '상언시시도기上言時時到記' 등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시도기는 대부분 17세기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시도기를 작성한 관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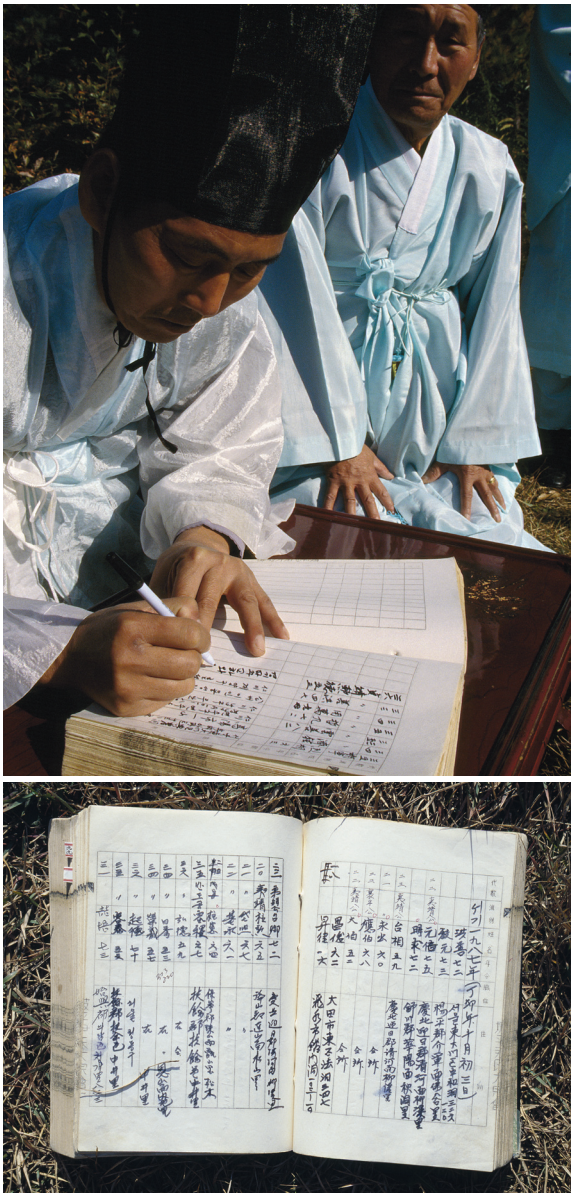

시도기(묘제) | 경기 파주 파평 윤씨 묘역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정확히 언제부터 정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교적 의례의 발달과 더불어 지금 확인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시도기 작성 관행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기에 적는 내용은 단순하게 성명에서부터 성명·생년(간지)·자字·거주지명·부조물의 명칭 및 수량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로, 시도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누구나 알만한 소규모 모임이나 으레 진행하는 모임의 경우 참석자의 성명만 기재해도 무방했겠지만, 경조사의 경우 어디에 사는 누가 왔다 갔으며 어떤 부조를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있어야만 이를 근거로 답례할 수 있었다. 또한, 향사와 같은 제사에서는 시도기에 기재된 성명·관향·자·생년 등의 신상정보를 근거로 집사분정執事分定을 했다.

민간에서 행한 일반적인 시도기와는 달리, 서원이나 향교에서는 심원록尋院錄이라는 대장을 비치해 두고 방문한 사람의 성명을 적어놓기도 하였다. 기재 내용은 시도기와 큰 차이는 없지만, 심원록에 기재된 인물과 심원록의 규모는 해당 서원이나 향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균관이나 사학四學 등에서는 도기到記를 마련해 두고 그 대장에 기재된 유생들의 출결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시도기는 전통시대의 기록물 가운데 하나로서 각종 모임이나 의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 또는 물명을 수록하였다. 작성 당시에는 참석자에 대한 현장 기록으로서 당시의 필요성에 의해 작성하였지만, 후대의 역사 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는 참석 인물에 대한 단순한 사실 확인으로부터 해당 시기에 이루어진 의례의 한 측면, 부조물로 사용된 물품과 그 규모 등 시도기가 작성된 시기의 사회상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사료이다. 시도기라는 한국의 전통 기록물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일본식 방명록芳名錄 문화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른 것도 하나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단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문서집성1~104(한국학중앙연구원, 1982~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필자 전경목(全炅穆)

시마
緦麻

정의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서 삼종三從 형제자매를 위해 상제가 입는 복服.

내용 망자가 사망한 지 4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과의 친소원근親疏遠近과 존비尊卑의 신분에 의거하여 유복친

有服親들은 참최斬衰, 재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오복五服을 착용한다. 시마의 복상 기간은 석 달이다. 정복正服은 종증조부와 종증조할머니, 증조의 형제나 자매, 소위 삼종 형제자매 그리고 증손과 현손 아울러 외손, 종모형제자매, 외형제, 내형제를 위하여 입는다. 강복降服은 서자 중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 의복義服은 족증조모, 남편 형제의 증손, 족조모, 남편 종형제의 손자, 족모(7촌 숙의처), 남편의 종조형제의 아들, 서손부, 서모, 유모, 사위, 처의 부모, 남편의 증조와 고조, 남편의 종조부모, 형제의 손부孫婦, 남편 형제의 손부, 남편의 종조부모, 종부의 형제의 자부子婦 등을 위해 입는다.

남자의 소공복小功服은 관冠·의衣·상裳·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신 등으로, 여자의 소공복은 소素족두리 또는 개두蓋頭·대수장군大袖長裙·전계箭笄(비녀)·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신 등으로 구성된다. 시마복緦麻服은 오복 중 가장 가는 삼베(극세숙포極細熟布, 표백한 베)로 만든다. 때가 낀 마를 빨아 손질하여 질대를 만들므로 시마라고 한다. 관冠은 의衣보다 조금 더 가는 베로 만들며, 굴건의 주름 3개를 접는 방향은 소공과 같이 왼쪽이다. 수질에 다는 끈[纓]은 없다. 머리에 얹는 수질의 둘레는 3촌寸(치) 남짓, 허리에 두르는 요질의 둘레는 2촌 남짓이다. 교대의 둘레는 소공복의 요질보다 좁다. 질絰은 숙마熟麻(누인 삼)로 만들고, 대帶는 베[布]로 만든다. 시마는 소공 이하이므로 길구吉屨(길복 때의 신)를 신는데, 신코 장식絇이 없으며, 남녀가 동일한 것을 착용한다.

특징 및 의의 남자의 의衣는 재최의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대공복과 같이 가슴의 최衰, 양쪽 깃에 부착하는 벽령辟領, 등에 다는 부판負版이 없다. 그리고 오복 중 가장 가는 소재를 사용한 시마복을 입고 평상시의 신발을 신는데, 이는 오복 중 가장 가벼운 복服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필자 조우현(趙又玄)

시묘살이

정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식이 묘 옆에 움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탈상할 때까지 묘소를 돌보는 일.

역사 공자孔子가 사망하자, 그의 제자들이 3년간 심상心喪을 지내고 돌아갔는데, 제자 중에서 자공子貢은 6년 동안이나 공자의 묘 곁에서 여막을 짓고 추모하였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의종대에 손응시孫應時, 명종대에 장광부張光富, 고려 말기에 하광신河光臣 김광재金光載, 하윤원河允源 등이 3년의 여묘廬墓 생활을 하였다. 또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의하면 최누백崔累伯은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서 복수하고 3년 동안 여묘에서 살았다. 경주에 살던 손시양孫時揚은 부모를 위해 각각 3년간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살았으므로, 국가에서 그에게 정문旌門을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성리학의 대가인 정몽주鄭夢周는 부모의 상에 각각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후 조선시대가 되자 시묘살이는 사대부에게 널리 유행하였다.

내용 시묘살이는 유학의 유행과 함께 널리 실행되었다. 유학은 효를 지상으로 하는 이념이므로, 유학자는 돌아가신 부모를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셔야만 했다. 그 때문에, 시묘살이 중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면 생명을 잃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묘살이는 유가의 보편적인 예서인 『가례家禮』 등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럼에도 조선시대에 시묘살이가 사대부가에 유행하게 된 것은 옛날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한 일이 중국에서 계승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대부가의 풍속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묘살이는 의례의 실천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시묘살이는 『가례』에 언급되지 않았음은 물론, 국가 의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도 없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편람四禮便覽』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다만 '반곡反哭'에서 이황李滉의 의견을 소개하는 정도였다.

이처럼 시묘살이가 예서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가례』에서 규정한 상례의 일정과 어긋나는 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장례가 끝나면 혼백을 집으로 모셔 와야 하고, 그런 다음에 망자의 신주를 사당에 들이게 된다. 그런데 상주가 묘소 옆에 거주하게 되면 혼백을 모셔오는 '반혼返魂'을 삼년상 이후로 미루어야 해서 예서의 일정과 어긋나게 된다. 예학자의 입장에서는 시묘살이를 명쾌하게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사례편람』의 인용문에 의하면, 퇴계 이황은 시묘살이에 대해서 "지금 여묘의 풍속은 성하고 반혼하는 예는 없어졌으니 한탄스럽다. 다만, 말세에 예법이 무너져 집으로 부모의 혼백을 모셔와 근신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면, 여묘를 행하여 혼잡을 피하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이李珥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지금 장례 후에 반혼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정말 바른 예이다. 다만, 세속 사람들이 잘못 본떠 여묘하는 풍속을 폐하되, 반혼 후에는 각기 제집으로 돌아와 처자와 한데 거처하면서 예법을 크게 무너뜨리니 심히 한심하다. 무릇 어버이 상을 당한 이는 스스로 헤아려보아 일일이 예를 따라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예에 따라 반혼하고,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면 옛 풍속에 따라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이황과 이이는 원칙적으로 반혼을 바른 예라고 규정하면서도, 만일 반혼으로 인해 효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시묘살이를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시묘살이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풍속을 현실로 인정하여, 시묘살이를 일부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이는 자신의 의견대로 현실에서도 시묘살이를 이행하였다. 본인의 연보年譜에 의하면, 그는 16세 때에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이 별세하자 3년간 여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이황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보에서 여묘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례편람』 이후로 시묘살이를 언급한 예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19세기에 유장원柳長源은 『상변통고常變通攷』에서 이를 소개하였다. 그는 '반곡'에서 '여묘의 잘못[廬墓之非]'라는 항목을 별도로 소개하면서, 주자와 이황의 말을 빌려 여묘가 잘못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의하면, 반혼은 본래 고인이 평시에 거처하며 편안히 여기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조금이라도 신혼神魂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데, 요즘 사람들은 체백體魄을 무겁게 여기고 신혼을 가볍게 여기니 무지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묘가 풍속이 되면서 반혼의 예가 마침내 폐기되었으니 통탄스럽다고 하였다. 결국, 앞서 성리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주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황, 이이, 이재李縡, 유장원 등은 시묘살이를 명쾌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시묘살이는 부모를 위한 최상의 효행으로 인식되면서 계속 이행되었다.

그런데 시묘살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사대부가 남긴 몇몇 일기에서 일부 내용만을 알 수 있다. 경상도 안동에 살았던 이정회李庭檜와 서울 서소문에 살았던 이문건李文楗의 경우에는 그들의 일기를 통하여 일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정회는 1578년 5월 1일에 모친상을 당하여 만 2년 동안 상제喪制의 몸으로 생활하였다. 그는 장사 후에 여막에 거주하면서 초하루와 보름에는 항상 삭망제朔望祭를 지냈다. 그러면서 여막에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였고, 틈틈이 농사일을 돌보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조상을 위한 사업에 몰두하였으니, 추수가 끝난 겨울에는 묘역에 표석標石이나 상석床石을 조성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이문건은 1535년 1월 5일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살이를 하였다. 당시 그의 집은 서울 서소문에 있었는데, 모친이 돌아가시자 양주 인근에 모셨다. 이문건도 상중에 묘역을 돌보는 일에 열중하면서, 사회적·경제적인 활동도 동시에 하였다. 그는 평상시처럼 전답을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소속된 노비를 관할하는 일 등을 이행하였다. 물론 일상생활의 하나인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도 거르지 않았다. 이문건은 시묘살이 중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는 상중 내내 감기 기침에 시달리곤 해서 간혹 조석곡朝夕哭을 생략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몸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삼이나 약을 복용하였고, 간혹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중에 금기시되는 술을 마신 것은 극도로 약화된 체력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주자朱子는 상중에 어른이 억지로 술을 권할 때, 만약 사양하기 어려우면 그 뜻을 따르는 것 또한 해로움이 없다고 하면

누백포호 | 오륜행실도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려 때 최누백이 아버지를 죽인 호랑이를 잡아 복수한 이야기.

광신여묘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하광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여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하였다.

서, 다만 술에 흠뻑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예기禮記』의 「상대기喪大記」에서도 거상 중에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문건이 약과 술을 복용한 것은 몸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으며, 예서에서도 제한적으로 용인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문건의 사례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중에 철저하게 소식素食하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매우 고통스럽게 생활하였다.

상중인 이들은 관직생활을 할 수 없었음은 물론, 먼 길조차 떠나지 못했을 정도로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계기로, 상제의 몸으로 생활하는 동안 학문에 몰두하여 저술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안동의 김성일金誠一은 43세 때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시묘살이를 하면서 부친의 행장, 묘지문를 작성하였으며, 1년이 지난 뒤에는 『상례고증喪禮考證』을 편찬하였다. 또한, 류성룡柳成龍은 60세 때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이때에 그는 『신종록愼終錄』, 『영모록永慕錄』, 『상례고증喪禮考證』 등 여러 편의 저술을 남겼다. 후대의 일이기는 하지만, 독립운동가인 이상룡李相龍도 15세 때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이때에 수많은 장서를 탐독하였고 천문天文, 지지地誌 등을 연구한 바 있다. 이처럼 상중임에도 면학에 몰두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그 외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조상들의 자료 및 문집 정리,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일 등에 열중한 이들도 있었다.

특징 및 의의 시묘살이는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생전에 못다 한 효도를 지속한다는 의미가 있다. 시묘살이는 『가례』나 『국조오례의』 등의 예서에는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의례행위라기보다는 사대부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전통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擊蒙要訣, 四禮便覽, 常變通攷, 사대부의 의례와 제사(김문택, 조선사회 이렇게 본다, 조선사회연구회, 2010), 상례와 시묘살이(김문택,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필자 김문택(金文澤)

시사전
始死奠

정의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처음으로 올리는 전奠.

내용 『가례家禮』에서는 습襲 이후에 시사전을 한다고 하였으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서는 대개 죽은 사람의 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북쪽을 향해 죽음을 외친 다음, 시체에 그 옷을 덮는 일인 고복皐復이 끝난 뒤에 전을 행한다고 하였다. 시사전에 대해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에서는 5품 이상은 복復한 이후에 하고, 6품 이하는 습襲한 이후에 한다고 하였지만, 『가례家禮』에서는 관품의 고하를 막론하고 습한 이후에 함이 마땅하다고 하여 습전襲奠이 시사전으로 되어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도 이를 따라 염습殮襲한 뒤에 시사전을 한다고 하였다.

효종 즉위년에 공조참판 김집金集이 올린 책자에 따르면, "시사전이 『국조오례의』에는 '염습한 뒤에 있는데, 고례古禮에는 복한 뒤에 즉시 설치하였다가 소렴한 뒤에 비로소 철수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사람이 죽으면 혼기가 흩어지기 때문에 즉시 전을 설치하여 혼백이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자식의 정에 당연한데, 아마도 고례를 정례로 삼아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였고,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도 "지금 혹 습과 염이 기간을 지나거나, 심하게 수일에 이르게 되면 그 사이에 신이 의뢰할 절차가 없게 되니, 고례를 따라 여기로 옮기고, 만약 술과 포 등이 없다면 별도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변통고常變通攷』에서도 "『가례』의 설전設奠은 『서의書儀』에 따라 염습한 뒤에 있다. 『상례보편喪禮補編』에서는 고례를 따른다고 하여 복을 한 뒤에 이어 놓았으니, 이제 이를 따른다."라고 하여 조선 후기에는 시사전을 복 이후에 하였다. 시사전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집사가 탁자에 포脯와 해醢를 놓고 조계阼階로 올라가면, 축은 손을 씻은 다음 잔을 씻고 술을 따라 시신의 동쪽 어깨쯤에 올리고 보로 덮는다."라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귀신은 형상이 없어서 전을 진설하여 의지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이 처음 죽었을 때, 예로써 보면 새것을 따를 겨를이 없고, 정으로써 보면 차마 옛것을 바꿀 수 없는 까닭에 찬장에 남아있던 포와 해로 전을 행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擊蒙要訣, 四禮便覽, 常變通攷, 孝宗實錄.

필자 최순권(崔順權)

시접
匙楪

정의 수저를 올려놓는 제기.

내용 시접은 대접과 모양이 비슷하다. 수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 뚜껑을 달기도 하였다.

제물 진설의 첫 순서는 합동노서盒東爐西로, 제사상 아래 향탁香卓을 설치하고 향합香盒은 동쪽에 향로는 서쪽에 놓는다. 다음은 강신잔반降神盞盤에 따라 주준상酒樽床에 술잔과 퇴줏그릇을 진설한다. 향탁 주변의 진설을 마치면 제1열에 술잔과 수저[匙箸], 초장과 소금 등을 차린다.

수저는 메와 갱 사이의 중앙에 차리는 형태와 서쪽에 진설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가례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메—잔반—시접—갱의 순서로 중앙에 놓는다. 『제의초(祭儀鈔)』에서는 시접—메—잔반—갱의 순서로 서쪽에 진설한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메—갱—시접의 순서로 생전과 반대 위치인 왼쪽(동쪽)에 수저를 진설한다. 이는

시저 한 벌과 시접 | 경북 안동 서애 류성룡 종가 | 국립무형유산원

메와 갱의 위치를 생전과 다르게 차리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의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종가에서는 메—잔반—시접—갱의 순서로, 시접을 중앙에 놓는다. 안동 지역 불천위不遷位 제사에서 전체 32사례 중 15사례는 메—시접(혹은 잔반)—잔반(혹은 시접)—갱의 순서이고, 11사례는 시접—메—잔반—갱, 나머지 6사례는 제1열에 시접—잔반(혹은 잔반만)을 차리고, 제2열에 메와 갱을 진설하고 있다. 등암藤巖 종가와 이우당二愚堂 종가에서는 제사상의 가장 앞쪽인 제5열(과일) 중앙에 시접을 놓는데 명확한 이유는 전하지 않는다. 전라남도 영광 입석마을 영월 신씨 종가에서는 삽시정저揷匙正箸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젓가락을 나란히 정리해 시접 위에 올리되, 손잡이가 신위의 오른쪽을 향하도록 놓는다. 일반적으로는 젓가락으로 '똑, 똑, 똑' 소리를 낸다.

청주한씨 서평부원군 한준겸韓浚謙 종가의 시접은 큰 사발 모양으로 뚜껑이 없다. 입지름 18.5㎝, 밑지름 9.5㎝, 높이 5㎝이다. 불천위제사는 합설合設이므로 시접에 남자용과 여자용 시저 두 벌이 올라간다. 남자 숟가락은 길이가 32㎝, 여자 것은 30㎝로 남자 것이 더 길지만, 숟가락의 폭은 여자 것이 조금 더 넓다. 그리고 여자 숟가락은 손잡이가 직선이지만 남자 숟가락은 손잡이가 휘어진 고식古式이다. 젓가락 길이도 남자 것은 31㎝, 여자 것은 25㎝로 남자 것이 더 길다.

특징 및 의의 이승과 달리 저승에서는 모든 것이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갱을 왼쪽, 메를 오른쪽에 차리는 것이 일반적 원칙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통상 오른쪽에 두는 수저를 왼쪽에 진설함으로써 이승과의 차별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관행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종가의 제례와 음식3-청주한씨 서평부원군 한준겸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3), 종가이야기(이연자, 컬처라인, 2001), 한국음식대관5-식생활 기명기구(윤덕인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필자 윤덕인(尹德仁)

시집살이

정의 여자가 시집가는 혼속婚俗과 거주 규정에서 비롯된 기혼 여성의 고된 생활.

역사 고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를 드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일반적이었지만, 조선왕조는 고대부터 지속되어 온 남귀여가혼의 오랜 전통을 버리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한 친영제親迎制를 추진하였다. 세종대에는 왕실 혼인을 친영의 예로 거행하면서 그 시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친영제는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남귀여가의 전통과 친영제를 합하여, 신부집에서 대례大禮를 치르고 3일 만에 시가로 신행해 가는 반친영半親迎의 절충안이 이루어졌다. 여성이 신행 후 시가에서 거주하는 시집살이 문화는 조선왕조가 주도한 이러한 혼속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 이후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시집살이 전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다.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동도 시집살이 전통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일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처가살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늘날은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 시집'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족관계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내용 시집살이는 혼인을 통해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가 남편의 집에 들어가 사는 거주 방식과 그 과정에서 겪는 힘든 경험과 고된 삶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다. 신랑이 혼인 후 처가에서 장기간 머무는 남귀여가와 달리, 시집살이는 신부가 홀로 자신의 가족을 떠나 남편의 가족과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고초가 따르기 마련이다. '시집생활'이 아니라 '시집살이'라고 한 것에서도 고난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일제강점기까지도 한국인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가부장 중심의 직계 대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경향이 강하였다. 장남과 맏며느리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차남 이하는 혼인 후 분가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대부분 가까이서 부모의 통제를 받고 살았

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은 모두 시집의 반경 안에서 직간접으로 시집살이의 경험을 겪게 된다. 이때 혼인이란 남녀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란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며느리에게는 시부모 봉양, 후사後嗣 출산,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과 같은 책무가 부여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쫓겨나기도 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다언多言이나 도벽 같은 허물이 있는 며느리는 쫓아내도 좋다는 '칠출七出'의 관행까지 있었다. 게다가 혼인한 딸들은 친정에서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취급되었으므로 기혼 여성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수행해서 반드시 시집의 사람, 곧 혼입내자婚入內者가 되어야만 했다.

시부모로서는 다른 가문에서 시집 온 며느리를 '자기 집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 엄격한 강제와 혹독한 시련을 가하기도 한다. 며느리의 훈육은 주로 시어머니가 맡았으므로 시집살이는 고부간을 중심으로 한 갈등관계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며느리에게는 오로지 순종과 인내의 미덕만 요구된다. 친정 부모들은 시집가는 딸에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라."든가, "개한테도 '예'하고, 소한테도 '예'하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시집에서 며느리의 지위는 남편과 동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집의 어떤 식구보다 낮았다. 며느리들이 자기보다 더 어린 시동생이나 시누이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삼종지도三從之道, 여필종부女必從夫란 말도 남성 가부장에 대한 순종의 미덕을 강조하는 가부장 담론이다. 때로는 경제적 빈곤이나 과중한 노동으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했다. 경상도에서는 며느리를 '정지꾼'이라 불렀는데, '부엌일하는 일꾼'을 의미하는 말이다. 조혼早婚을 많이 하던 시절에는 시조부모까지 모시는 일이 다반사였던 만큼, '층층 시집'이란 말도 있었다.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시어머니가 연로하여 주부권을 이양받게 되면 시집살이는 마침내 끝이 난다. 그러나 자신의 며느리를 맞으면 과거에 자신이 시집살이로 겪은 고통은 잊고 호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기도 했다. 많은 여성들은 '시집살이노래' 또는 '규방가사閨房歌辭'에다 시집살이의 아픔과 서러움, 친정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다. 시집살이에 관해서는 이러한 문학 담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시집살이를 담은 생애담 또는 생애사가 구술사의 관점에서 주목되면서 여성과 가족에 관한 역사학 및 사회학적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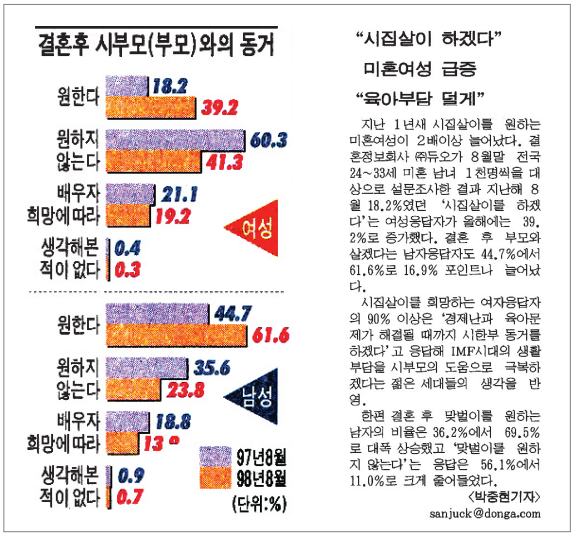

시집살이하겠다 | 1998. 9. 8 | 동아일보

특징 및 의의 시집살이는 한국여성사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독특한 문화이다. 시집살이는 불과 400년 남짓한 역사를 지녔을 뿐이지만, 조선왕조가 그것을 효열孝烈 윤리로 정치 이데올로기화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통인 양 뿌리를 내렸다. 부계 중심의 가문을 중요시하는 관념은 고대의 형사처수혼兄死妻嫂婚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성을 시집의 중문 안으로 가둔 것이나 다름없는 조선조의 시집살이 문화는 여성을 부계 친족과 문중을 위한 존재로 도구화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조선 중기까지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남귀여가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여성의 책무는 커진 대신, 지위는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대 이후의 여성사가 시집살이 전통을 타파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래로 여성의 삶과 의식을 지배해 온 문화였던 만큼, '시집살이노래', '규방가사'와 같은 탁월한 여성문학을 창출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시집살이노래와 말하기의 욕망(이정아, 혜안, 2010), 여성과 민요(임동권, 집문당, 1984),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필자 천혜숙(千惠淑)

식혜
食醯

정의 밥을 엿기름으로 삭혀서 감미가 나도록 만든 음료.

역사 식혜를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초록된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수로왕의 제사에 술·감주·떡·밥·차·와를 올린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실린 "행당맥락杏餳麥酪"의 '낙酪'을 식혜나 감주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1700년대인 영조대英祖代의 문헌 『수문사설謏聞事說』에서는 "송도의 식혜 맛이 아름답다."라고 하였으며, 온돌의 열을 이용해 식혜를 만드는 법이 기록되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사상에는 식혜의 밥알만을 건져 올렸다.

내용 술은 밥과 누룩을 섞어서 발효시켜 만들지만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엿기름을 사용하면 알코올은 생기지 않고 단맛이 강한 음료인 '식혜'가 만들어진다.

식혜는 멥쌀밥이나 찹쌀밥에 엿기름을 거른 웃물을 붓고 60~70℃에서 4~5시간 발효시켜 밥알이 뜨면 밥알은 체에 건져 찬물에 헹구고, 식혜 물은 설탕을 알맞게 넣고 끓인다. 끓여 식힌 식혜 물에 밥알을 띄운 것이 식혜이다. 감주는 밥알이 다 삭으면 밥을 건지지 않고 끓여 단맛을 진하게 한 것으로 식혜보다 색이 진하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의 학봉 김성일金誠一 종가에서는 엿기름에 삭힌 식혜의 밥만을 건져 제기에 산 모양으로 담고 북어를 가로 3㎝, 세로 2㎝ 크기로 잘라서 한 조각 올린다.

식혜 | 경북 경주 월성 손동만 종가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강원도 강릉에서는 식혜 대신 생선(북어포, 가자미 등)과 밥, 엿기름물로 삭혀서 밥식해를 담아 2~3일 삭혀서 제사상에 올리기도 한다. 고춧가루는 넣지 않는다. 전라남도 영암군 장암리 남평문씨 문익현文益顯(1573~1646) 종가에서는 제사에 술 대신 식혜를 올린다고 한다. 종손의 말에 따르면, 윗대 선조 모두 술을 전혀 못해서 술 대신 식혜를 올린다고 한다.

엿기름에 삭힌 식혜의 밥알만을 건져 담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리, 삭히지 않은 밥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경북 안동 운곡동에 있는 영천이씨 농암 이현보李賢輔 종가에서는 식혜를 엿기름에 삭히지 않고 둥근 접시에 밥을 담고 다시마를 잘라 고명으로 올린다. 경상남도 거창 강천마을의 초계정씨 동계 정온鄭蘊(1569~1641) 종가에서는 밥을 참기름에 비벼 담고 데친 문어를 고명으로 한 식혜를 올린다.

특징 및 의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진설도에는 식해—육장—김치—간장—나물—포의 순서인데, 본문의 내용 중 "청장으로 해醢 한 가지를 대신하여 써도 좋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해와 식혜를 모두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는 밥으로 한 식혜와 생선으로 한 어해, 즉 젓갈이다. 식혜를 생선젓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해를 대개 소금에 절인 조기로 쓰기도 한다. 해는 정식 제례에만 쓰고 차례에는 식혜를 쓴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수문사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통한식과, 농촌진흥청, 2010), 우리나라 식생활문화의 역사(윤서석, 신광출판사, 1999), 제사와 제례문화(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수실, 한국국학진흥원, 2005), 종가의 제례와 음식1-의성김씨 학봉 김성일 종가(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사, 2003), 종가이야기(이연자, 컬처라인, 2001), 통과의례음식(이춘자 외, 대원사, 19970), 한국식품문화사(이성우, 교문사, 1984), 한국음식대관5-제례(윤숙경,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필자 윤덕인(尹德仁)

신랑다루기

정의 장가든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르는 동안 신부집의 젊은 일가친척들이나 마을 청년들이 신랑에게 괴로움

을 주어 고초를 겪게 하는 의식.

역사 한자로는 '동상례東床禮, 東牀禮, 東廂禮'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중국 진대晉代의 명필인 왕희지王羲之가 장가를 들 무렵 그의 장인 될 사람이 그를 자기 집의 동상東廂(동쪽의 건물)에 두고 행동거지를 살핀 뒤 사위로 삼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사위를 '동상'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동상례라고 하는 말은 이 고사로부터 생겨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위를 동상이라 하지 않았고, 또한 중국에는 동상례라는 말이 없다. 신랑다루기 풍속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지방에 따라 행사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옛날의 신랑다루기의 모습은 조선 정조 때의 한양산인漢陽山人이 작성한 「동상기東廂記」에 잘 나타나 있다.

내용 신랑다루기 중에서 신랑매달기는 신부 집에서 치르는 것으로, 혼례식이 끝난 뒤에 여러 가족·친지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신랑·신부를 방안에 불러 앉히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대개 신랑과 가까운 친구들은 혼례식 이전부터 신랑에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으르기도 하지만, 친구 중의 한 사람이 주위를 돌아보며 "신랑의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어떠한고?"라고 짐짓 심문하는 투로 물으면,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음, 많이 부족하지."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긴 백포白布와 다듬잇방망이를 꺼낸 뒤 몇 사람이 달려들어 신랑의 한쪽 발을 추켜들고 방망이로 발바닥을 몇 차례 때린다. 그러면 옆에 앉아있던 신부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하게 마련이다.

신부는 부엌 쪽에서 자리를 함께하던 어머니에게 상을 차려오도록 부탁하여 성의를 표시하나, 이때는 으레 조그마한 상에 조촐하게 차린 음식과 술이 들어온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은 이 음식을 구경꾼들에게 나눠 먹게 한다. 그리고 아직도 새신랑이 예의가 부족하다면서 건장한 청년이 달려들어 신랑의 한쪽 발을 백포로 만든 고리에 넣어 묶은 뒤, 천정의 단단한 시렁 같은 곳에 걸어서 잡아당기는 시늉을 한다. 이런 때에는 더 많은 음식과 술이 들어오게 되고, 친지들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과 술을 들며 이제부터는 어른이라는

신랑다루기 | 국립민속박물관

덕담을 해주곤 한다. 이러한 것들은 결혼에 대한 축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여러 사람의 정이 가득 담겨있는 훈훈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경사로운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자리를 함께하여 여러 가지 소극笑劇을 연출하며 함께 즐긴다. 이는 경사의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경사스러운 날을 오래도록 간직하도록 서로가 깊이 배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신랑·신부 다루는 습속이 도가 지나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역사례 함흥과 그 인근 지방에서는 '장가턱'이라고도 한다. 신랑과 동년배인 청소년들이 몰려와서 한시漢詩 한 구절을 제시하고 신랑더러 거기에 알맞은 대구對句를 지으라고 한다. 신랑이 대구를 짓지 못하면 무식하다고 야유하고, 대구를 지어도 졸작이라고 트집을 잡아 신랑을 곤욕스럽게 한다. 또 장가턱 단자單子라 하여 술과 음식 그리고 금액을 적은 종이쪽지를 신랑에게 건네주고, 그 돈을 처가에서 받아내 오라고 강요한다. 신랑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게 되면 신부 집에서는 성찬으로 청년들을 대접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여 신랑의 곤욕을 풀게 한다.

평안도에서는 신랑에게 한시漢詩를 지으라고 강요하여 괴롭힘을 주는데, 만약 신랑이 한시를 잘 지어낸다면, 또 다른 시를 주고 몇 번이고 새로 지으라고 한다. 이러한 풍습 때문에 이 지방에서는 신랑집에서 한문에 능한 학우나 친척 남자를 신랑과 동반하게 한다. 동반자는 신랑이 말하는 것을 한문으로 표기한다. 신랑이

주위에 있는 것, 예컨대 천장에 거미집이 있는 것을 보고 "천장에 거무집"하면, 동반자는 "天長에 去無執", 즉 "하늘이 넓고 커서 잡을 수 없다."라는 뜻의 한자로 적는다. 화로에 겻불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화로에 겻불래"하면 동반자는 "花老에 蝶不來", 즉 "꽃이 시드니 나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뜻의 한자로 표기한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글 잘하는 유식한 사위를 맞았다며 성찬으로 향응을 베푼다.

경기도나 그 이남의 삼남지방에서는 신랑다루기에 시작詩作이나 시구 대응對應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신랑의 발목을 묶어 건장한 사람이 어깨에 거꾸로 매달고 다른 청년들은 방망이나 목봉으로 신랑의 발바닥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이 집에 "무엇하러 왔느냐?"라고 묻는다. 신랑이 장가들러 왔다고 해도 그런 대답은 무시하면서, "이놈은 필시 이 집 귀한 처녀를 도적질하러 들어온 놈이니,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며 발바닥을 다시 내려친다. 또 "이 집에 들어올 적에 문전에 숲이 많이 우거졌더냐? 문턱이 높더냐, 낮더냐? 안방이 깊숙이 있더냐? 생물이 많더냐 말랐더냐? 집은 새 집이더냐 헌 집이더냐? 들어가는데 애먹었느냐 쉽게 들어갔느냐?" 등 신방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비유로 꼬치꼬치 묻는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하라고 때리고, 모호하게 대답하면 분명히 말하라고 때리고, 거짓말을 하면 바른대로 대라고 때린다. 이때 신랑은 육체적 고통을 받아 심하면 보행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신부집에서 큰상을 차려 내오면 신랑다루기를 멈추고 청년들은 신랑과 함께 향응을 즐긴다.

특징 및 의의 신랑다루기는 신랑에게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례賀禮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즉, 경사를 더욱 즐겁게 축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사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신랑다루기는 역설적 하례라 할 수 있다. 신랑이나 신랑집 그리고 신부집이 인심을 얻지 못하였다든가, 사회적 덕망 또는 명성이 없으면 신랑을 다루려는 청년이 몰려오지 않는다. 신랑을 여러 번 다룬다는 것, 신랑다루는 청년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은 신랑이나 신부집이 명성과 덕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표징이 되므로, 이를 기뻐하고 만족하였다. 그러나 신랑다루기는 경하의 행사일 뿐 주술적 행사는 아니다. 신랑다루기의 변형으로 신부다루기가 있다. 신혼예식이 끝난 다음 날 신부집의 일가친척인 기혼 부녀자들이 신부 단독으로 또는 신랑과 함께 묶어놓고 여러 가지로 놀리면서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고 즐긴다. 신부다루기는 동상례라고 하지는 않는다. 한편, 신랑이 본가에 돌아와서도 마을의 동년배나 학우들에 의하여 신랑다루기가 행해진다. 그러나 신랑다루기가 시집의 마을 부녀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는 없다. 신랑다루기는 신랑의 사회적 지위를 승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신체적 시련, 이를테면 성인식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晉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민속(김성배, 집문당, 1980), 李朝社會の婚姻儀式に就て(完)(張承斗, 朝鮮292, 조선총독부, 1939).

필자 최인학(崔仁鶴)

신방엿보기

정의 혼례를 치른 첫날밤에 신랑·신부가 신방新房에서 나누는 행위를 훔쳐보기 위해 친척이나 이웃들이 방문에 구멍을 뚫고 엿보는 절차.

내용 대례大禮를 마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치를 수 있도록 신방을 꾸렸다. 신방에는 병풍을 치고 주안상을 준비해두었다. 신랑·신부가 방안에 들면 친척이나 이웃들은 신랑·신부를 훔쳐보기 위해 창호지 바른 문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았는데, 이를 '신방엿보기' 또는 '신방지키기'라고 한다.

신방엿보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된 옛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 이것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풍속임을 알 수 있다.

> 옛날에 백정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첫날밤에 신부를 잘 벗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대례를 치른 날 밤에 신랑·신부가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신부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다. 딸의 어머니는 방안에서 신부의 비명을 들으며 "본래

신방엿보기 | 국립민속박물관

첫날밤은 그리 아픈 것"이라고만 짐작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 신방에 기척이 없어 들어가 보니, 신랑은 신부의 옷을 벗기는 대신 살가죽을 모두 벗겨서 걸어놓고 있었다. '벗긴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신랑·신부가 첫날밤을 보낼 때 가족과 친척들이 몰려들어 신방을 엿보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설說일 뿐, 신빙성은 전혀 없다.

신방 엿보는 풍습은 조혼早婚의 풍속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조혼이 성행했는데 신랑은 열 살쯤, 신부는 열네댓 살쯤 혼인을 올렸다. 어린 나이에 혼인하다 보니 첫날밤에 뜻하지 않은 소동이 벌어지거나 신부가 간밤에 도망치는 일이 일어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가족들이 신방을 엿보는 풍습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 민족 가운데에는 처녀성을 신성시하여 이를 파괴하는 자는 악귀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믿음을 지닌 민족이 있는데, 우리 문화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 첫날밤 악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이 신방을 지키던 것이 신방엿보기로 변형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를 벗긴 뒤 겉옷을 벗기는데, 옷고름만 풀거나 버선 한 짝만 벗겼다. 그런 뒤 촛불을 껐는데, 이때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고 손가락으로 눌러서 껐다. 촛불을 끄면 신방 앞에 섰던 사람들은 모두 물러갔다. 잠자리에 든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도 머리를 먼저 만지면 상처喪妻한다는 말이 있고, 가슴을 먼저 만지면 유종乳腫을 앓는다고 하여 신부의 발을 가장 먼저 만졌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신방엿보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속으로 그 기원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의 조혼 풍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어린 나이에 혼례를 올린 신랑·신부가 첫날밤에 실수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친척들과 이웃들이 창호지 바른 문을 뚫고 엿보았던 것이다. 요즘에는 가옥구조의 변화는 물론,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혼례절차의 변화로 이러한 풍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참고문헌 사람의 한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디지털 진주문화대전(jinju.grandculture.net).

필자 조선영(曺善映)

신부가마

정의 신행길에 신부가 타고 가는 가마. 가마는 앞뒤에서 멜빵에 걸어 메고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조그만 집 모양의 탈것.

내용 신행新行 시 신부가마는 무명 샅바로 앞문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을 X자형으로 엮어 두르거나 호피를 뚜껑에 덮어 표시한다. 신부가마는 채색이나 술을 다는 등 화려하게 꾸몄는데, 짝지어 노는 새나 짐승·물고기 그림은 부부의 금실과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이때 "신부의 가마 채(다리)가 부러지면 백년해로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신부가마는 꽃가마라고도 불렸는데, 그렇다고 꽃가마가 모두 신부가마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한편 신행 시 신랑이 말을 타는 대신 가마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신랑가마도 있었는데, 신랑이 타는 가마는 꾸밈이 별로 없다.

가마[乘轎]는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이나 물건들을 실어 나르던 운반 수단의 하나였다. 크기는 다양한데, 신부가마인 경우 일례를 들면 길이 89.3㎝, 높이 105.3㎝, 폭 71.5㎝, 가마채 250㎝ 정도 되는 것이 있다. 신부가마는 앞뒤 각각 두 사람씩 한 줄로 서서 모두 네 사람이 메는 사인교四人轎로서, 멜빵에 장대를 걸어 어깨에 메게 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용하였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사라졌다.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엄격하던 시대로 수레나 가마도 차등을 두어 제한하였다. 교여지제轎輿之制에 의하면 평교자平轎子·사인교四人轎·초헌軺軒·사인남여四人籃輿·남여籃輿·장보교帳步轎의 6등급을 두었다. 평교자는 종일품이나 기로耆老, 사인교는 정이품에 해당하는 판서判書나 그에 상당하는 관원, 초헌은 종이품 이상의 관원, 사인남여는 종이품의 참판參判 이상, 남여는 정삼품 이상의 승지承旨와 육조의 참의參議 이상이 탈 수 있었다. 그리고 장보교는 위의 관원 이하의 벼슬아치가 현직에 있고 없고 간에 탈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신분과 용도에 따라 신여神輿·연輦·덩·가교駕轎·삿갓가마·팔인교八人轎·교여轎輿·용정자龍亭子·보교步轎·장독교帳獨轎·쌍가마·채여彩輿·혼여婚輿·상여喪輿·영여靈輿·견여肩輿·요여腰輿·가자[架子] 등 다양한 가마와 명칭이 있었다. 옛날 신분이 높은 사람이 길을 가는 것을 '행차'라 하였는데, 지체가 높은 귀인은 남녀 불문하고 공사 간에 반드시 가마를 타고 하인들을 따르게 하여 돋보이게 하였다.

전통혼례 시 신부가마의 행렬은 지체 높은 귀인의 행차와 흡사하다. 양반이 아닌 평민이라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귀인의 대접을 받아 가마를 타도록 했다. 신랑이 앞서고 혼여꾼婚輿軍이 메고 가는 신부가마 뒤엔 상객上客·수모手母·짐꾼·등롱군燈籠軍 등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 품계에 따라 철저히 규제했던 복식이나 품석品席, 품등品燈 등에서 모두 고관대작의 예우를 받았는데, 신부는 공주나 옹주처럼 활옷[闊衣]에 응장성식凝粧盛飾을 하고, 신랑은 관복인 단령團領에 사모관대를 하고 신행길에 올랐다. 벼슬의 등급에 따라 표피·호피·구피·양피 등 방석의 종별도 달랐는데, 신부가마는 뚜껑에 당상관이나 되어야 깔고 앉거나 드리우는 호피를 사용하였다. 벼슬 등급에 따라 등롱의 빛깔 또한 달랐는데, 신행길에는 정이품 이하 정삼품의 당상관이 사용할 수 있었던 청사등롱을 들고 갔다. 우리는 이러한 혼례가마[婚輿]의 습속에서 치자가 구현하고자 한 민본·애민사상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신부가마 | 조선시대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1960년대만 하더라도 "꽃가마 타고 아홉 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네."라고 하던 때는 지나가고, 가마에서 자동차로, 이제는 비행기로 신혼여행을 가는 시대가 되었다. 60년대 신행과 지금의 신혼여행은 방식과 의미가 달라 비교하기 어렵지만, 신행의 전통에 외래의 신혼여행이 접목된 것만은 틀림없다. 요즘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신부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신랑 집으로 가는데, 이는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리고 다음날 신행길에 오르던 풍습과 유사하다.

참고문헌 국학도감(이훈종, 일조각, 1970), 기러기 아범의 두루마기-한국의 통과의례와 상징(강재철,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87), 한국의례의 연구(송재용, 박문사, 2010).

필자 강재철(姜在哲)

신부대
新婦代

정의 혼인할 때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넘겨주는 재화.

내용 인류 혼인사에서 혼인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약탈혼과 매매혼 혹은 구매혼, 계약혼으로 구분하는데, 신부대新婦代는 신부를 사서 혼인을 한다는 구매혼의 핵심이다.

신부대는 신랑집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신부집에 지불하는 대가로서 혼인이 성립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신부대가 중요한 가치를 점하고 있는 사회에서 신부대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을 경우, 혼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부대는 신부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간주되어 신부대를 받지 못하는 신부의 경우 심한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신부대의 규모는 민족이나 시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 규모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신부대의 액수는 소액인 경우도 있고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대규모 유목 사회에서 신부대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상층의 경우 매우 많은 양의 가축을 신부대로 지불하였다. 신부대는 일반적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지급되었다. 법률에 기반한 당사자 사이 계약혼이 등장하고 종교적·의례적·정신적 합의에 따른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신부를 매매할 수 있다는 상징인 신부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신부대는 발견할 수 없지만, 조선 후기 일부 지역의 하층계급에 신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혼인할 때에 2백 냥에서 6백 냥 정도를 요구했다고 하며, 아이가 딸린 과부의 경우에는 1백50냥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는 신부대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못했고, 제한된 계층과 지역에 한정되어 존재했다.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신부대를 지불하는 관행은 신부집에서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는 관행과 대비되는데, 신부대와 지참금의 소유 문제나 지불 시기 등은 이 관행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이 된다.

특징 및 의의 신부대나 신부값은 신부에 대한 가치를 재화로 표현한 것으로 개인의 낭만적 선택에 기반한 계약혼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구시대의 산물로 여겨져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신부대는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여성 지위 향상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인류혼인사(Edward Westermack, 정동호·신영호 역, 세창출판사, 2013), Bridewealth and Dowry(Jack Goody·S.J.Tambia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필자 강정원(姜正遠)

신알례
晨謁禮

정의 주인이 매일 이른 아침에 단정하게 의관을 갖추고 사당에 가서 문안을 드리는 의식.

내용 『가례家禮』 사당조祠堂條에 "주인은 아침에 사당 대문 안에서 알현한다主人晨謁於大門之內"는 항목이 있어서 '신알례'라고 한다.

신알례는 자식子息이 저녁에는 잠자리를 돌보고, 아침에는 문안問安을 드린다는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의미로, 주인이 아침에 심의深衣를 입고 사당에 계신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때에는 제물을 차리지 않고 사당 외문外門 안에 들어가 두 섬돌 사이에 있는 향탁에 분향한 후 재배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도 분향 후 재배하지만,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분향의 절차가 없이 재배만 한다.

신알례는 주인이 주관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사당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오직 주인만이 동쪽 계단을 이용하며, 주부와 나머지 사람들은 비록 존장자尊長者라 하더라도 서쪽 계단을 이용한다. 그래서 함께 사는 자식과 동생 등도 홀로 사당을 배알할 수 없어서, 반드시 주인과 함께 배알을 해야 하며,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사당 대문 밖에서 행하도록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신알례는 상중喪中에는 행하지 않는데, 다만 기일忌日에만 제사를 지낸 후에 한다. 제사를 주관할 주인이 사망하거나 변고가 생겨서 제사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관하는 사람이 신알례를 행한다.

참고문헌 家禮, 擊蒙要訣, 四禮便覽, 常變通攷.

필자 최순권(崔順權)

신주
神主

정의 조상의 신령神靈을 나타내는 신체神體.

역사 신주가 목주木主로 대변되기까지 역사적으로 여러 형태의 신체가 존재해왔다. 시동尸童에서부터 목주木主(우주, 연주), 석주石主, 속백束帛, 추蓆, 중重, 복의復衣, 혼백魂帛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 재료별로 신체가 달랐다.

신주가 우리나라에 수용된 것은 삼국시대 이후로 보인다. 삼국시대에 시조묘始祖廟가 있었고, 신라에서는 종묘제를 오묘제五廟制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서 신주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시대에 당唐에서 들여온 문선왕文宣王(공자)과 10인의 철인哲人, 72제자의 영정을 대학에 안치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으로 보아, 아직 목주가 일반화된 것 같지는 않다. 고려시대에는 유교와 불교, 도교 등의 영향으로 종묘에서의 신주 이외에 소상이나 영정 등이 신체로서 모셔졌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신주는 중국에서와 같이 당나라의 『개원례開元禮』의 규정에 따라 천자나 제후의 격에 맞게 종묘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부터는 『가례家禮』의 수용으로 영당을 대신해서 가묘가 세워지고, 영정 대신에 신주를 모시도록 권장되었다. 조선 초기에도 외방에는 각각 주부군현州府郡縣의 공아公衙 동쪽에다 임시로 사당을 설치하여 명을 받고 나가는 수령이 적장자라면 신주를 받들고 부임하게 하였다. 또한, 윤회봉사 관행 등으로 일일이 신주를 받들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므로 대부분 지방이나 지표紙標 등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이르러 점차 사당이 사라짐에 따라 신주는 지방으로 대체되거나 요즘같이 사진으로 신주를 대신하여 조상에 대한 예를 보이기도 하였다.

내용 신주는 주周나라 때의 예를 따라 단단한 밤나무를 사용하여 만든다. 신주는 치장治葬 때에 만들었다가 하관한 후에 제주題主를 하여 모신다. 신주는 주신主身과 받침대[跗]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주신은 앞쪽[前身]과 뒤쪽[後身]으로 나뉘는데, 두 부분을 합쳐서 받침대에 끼운다. 신주는 주척周尺으로 높이 1자 2치(주척을 20㎝로 계산한다면 약 24㎝ 정도), 너비 3치(6㎝), 두께 1.2치(2.4㎝)인데, 그 두께의 3분의 1(4푼, 0.8㎝)이 전신이며, 3분의 2(8푼, 1.6㎝)가 후신이다.

후신의 위는 양옆을 5푼(1㎝) 정도 깎아 둥글게 이마를 만들고, 이마의 1치(2㎝) 아래에 두께의 3분의 1 정도를 깎아내어 턱을 만든다. 턱이 지게 깎아낸 다음, 그 속에 길이 6치(12㎝), 너비 1치(2㎝), 깊이 4푼(0.8㎝)의 함중陷中을 파고 양옆에 구멍을 뚫어 함중과 통하게 하는데, 그 구멍을 규竅라 한다.

전신前身은 후신의 턱 아래로 깎아낸 크기와 같도록 만드는데, 후신과 맞추어 받침대에 끼울 수 있도록 만든다. 전신과 후신의 이마에 붓으로 글씨를 쓰고 지울

신주식 | 가례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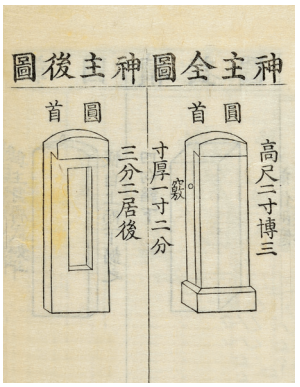

신주전도 | 사례편람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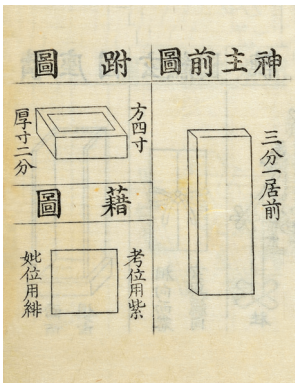

신주전도 | 사례편람
국립민속박물관

주독 안의 신주 | 경북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국립민속박물관

수 있도록 분칠을 하는데, 이를 분면粉面이라 한다.

받침대는 사방 4치(8㎝)에다 두께가 12푼(2.4㎝)이다. 전신과 후신을 맞추어 받침대에 끼우면 하나의 신주가 된다. 따라서 신주는 앞에서 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옆면 가운데에 금이 있고, 또 그 옆에 직경 4푼(0.8㎝)의 규라는 구멍이 있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가례』에 따르면, 신주의 함중의 제서 내용은 아버지이면 '송고모관모공휘모자모제기신주宋故某官某公諱某字某第幾神主'라 하고, 어머니이면 '송고모봉모씨휘모자모제기신주宋故某封某氏諱某字某第幾神主'라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및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의 예서에는 아버지는 함중에 '고모관모공휘모자모신주故某官某公諱某字某神主'라 하였는데, 『가례』에 있는 '제기第幾' 두 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생략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고모봉모씨휘신주故某封某氏諱神主'라 하여 본래 '자모제기字某第幾' 네 자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생략하였다. 새로운 신주가 들어오거나 추증의 경우 다시 고쳐 쓰는데, 함중의 내용은 고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전신의 분면에는 속칭屬稱을 쓴다. 『가례』에 속屬은 고증조고高曾祖考를 말하고, 칭稱은 관官 혹은 호號를 말하는데, 처사處士·수재秀才·기랑幾郎·기옹幾翁이 이에 해당한다. 즉, 아버지면 '황고모관봉시부군신주皇考某官封諡府君神主'라 하고, 어머니면 '황비모봉모씨신주皇妣某封某氏神主'라 하며, 관직이나 봉호가 없으면 생시에 부르던 것을 호칭으로 삼았다. 그러나 분면의 '황皇'자의 경우는 원나라 대덕大德 연간에 성부省府에서 '황'자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황'자 대신에 '현顯'자를 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례도』 신주식에 아버지는 '현고모관봉시부군신주顯考某官封諡府君神主', 어머니는 '현비모봉모씨신주顯妣某封某氏神主'라 쓰였고, 『국조오례의』 및 『가례집람』 등에서도 '현'자를 썼다.

관직명 표기에서도 중국에서는 실직實職을 먼저 쓰고 증직贈職을 나중에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직을 먼저 쓰고 실직을 나중에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관직이 없는 사람의 경우, 학생·처사·수재 등 각기 마땅한 바에 따라 쓰게 하였고, 부인의 경우는 9품직에 해당하는 유인孺人으로 쓰게 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부인의 경우 성씨만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씨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김씨 성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는 동성혼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주이씨', '경주김씨' 등으로 향관鄕貫을 써서 구별하기도 하였다.

그다음으로는 분면 아래 왼쪽면에 '효자모봉사孝子某奉祀'라 쓴다. 원래 『가례도』에 '효원손모봉사孝元孫某奉祀'라고 썼다가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부터 '효원손'을 '효자'로 바꾸어 썼다. 그런데 그 아래 왼쪽이라는 것이 신주의 왼쪽인지, 아니면 제주하는 사람의 왼쪽인지 논의가 있었다. 우성전禹性傳이 일찍이 신도神道는 오른쪽을 존위로 여기며 왼쪽을 하위로 여기므로 신주의 방제를 신주의 왼쪽에 쓰는 것이 옳다고 하자, 이황李滉은 중앙의 존위로 하면 방제는 어느 쪽이든 굳이 상하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김이정金履正이 동당이실同堂異室의 제도를 가지고 말하면 신주의 왼쪽에 쓰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이 되지만, 소목昭穆의 위차로 보면 도리어 위에 있는 것이 되어, 위나 아래나 논할 것은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황은 『이정전서二程全書』, 『문공가례도文公家禮圖』, 『대명회전大明會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신주의 오른쪽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씨何氏의 『소학도小學圖』에는 신주의 왼쪽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만약 의리에 해로운 것이 없다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설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황의 논의에 의해 방제는 제주하는 사람의 방향에서 신주의 왼쪽에 쓰게 되었다.

신주는 비단으로 만든 덮개[韜] 및 깔개[藉]와 함께 흑칠을 한 주독主櫝이나 양창독兩窓櫝에 넣어 사당의 감실龕室에 보관하며, 차례와 기제 때에는 신주를 내어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특징 및 의의 주자朱子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혼魂과 백魄을 불러서 중重을 설치하고 신주를 세우는 것은 항상 그와 접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안에 죽은 자의 정신精神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가례家禮』에는 초혼招魂하여 죽은 사람의 윗옷에 의탁하고, 그다음에는 습襲 후에 혼백魂帛을 접어서 의탁시키며 동시에 명정銘旌을 세웠다. 그리고 시신을 매장한 다음에는 신주를 만

들고 여기에 혼이 깃든 것으로 생각하여, 혼백은 초우제初虞祭 이후에 묘에 묻고, 신주는 4대가 지나면 묘에 묻었다.

참고문헌 家禮, 禮疑類輯, 退溪先生言行錄, 신주고(최순권, 생활문물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필자 최순권(崔順權)

신줏단지

정의 조상의 신령神靈을 모셔놓은 신체神體.

역사 조상제사祖上祭祀에서 섬기는 신체로서 신주神主는 사판祠版, 위패位牌, 패자牌子, 목주木主, 우주虞主, 연주練主, 지방紙榜, 지표紙票 등인데, 오늘날 '신주'라 하면 보통 종묘宗廟나 가묘家廟에 모셔진 목주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주를 받아들인 것은 유교가 수입된 삼국시대 이후로 보인다. 삼국시대에 시조묘始祖廟가 존재하였고, 신라의 경우 종묘제宗廟祭를 오묘제五廟制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서 신주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시대에는 오늘날 문묘에 모셔진 성현의 위패 대신 당唐나라에서 들어온 문선왕文宣王(공자의 시호)과 공문십철孔門十哲, 즉 10인의 철인哲人 및 72제자의 영정을 대학에 안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직 목주木主가 일반화된 것 같지는 않다.

고려시대에는 유교와 불교, 도교 등의 영향으로 종묘의 신주 이외에 소상塑像이나 영정 등이 신체로 모셔졌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중국처럼 당나라 『개원례開元禮』의 규정에 따라 천자나 제후의 격에 맞게 종묘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종묘에 한해서 신주가 사용되었다. 경령전景靈殿이나 진전眞殿 등에서는 왕과 왕비의 영정을 모셨고, 귀족들은 자기 조상을 위해 조상의 산소 근처에 원찰願刹이나 원당願堂을 지어 조상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고려 말부터 신주가 일반화된 가례의 수용으로 영당과 위호를 대신해서 가묘를 세우고, 영정 대신에 신주를 모시도록 권장하였다. 조선에서는 1401년(태종 원년)에 가묘 설립과 신주 사용은 물론, 신주가 없는 경우 지방紙榜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고, 외방으로 나가는 수령이 적장자가 아니면 또한 주현의 사당에서 지방을 써서 행례行禮하도록 하였다. 지방은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가례家禮』 소주에서는 "형이 제사를 지낼 때 동생은 집사로 참여하거나 혹은 물질로 돕는 것이 마땅하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형의 집에는 신주를 설치하지만, 동생은 신주를 세우지 못하니, 다만 제사 지낼 때만 즉시 신위를 설치하되, 지방으로 신위마다 표기하고 제사를 마치면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윤회봉사輪回奉祀 관행 등으로 일일이 신주를 받들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므로 대부분 지방이나 지표紙標 등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점차 사당이 사라짐에 따라 지방으로 신주를 대신하거나 요즘같이 사진으로 신주를 대신하여 조상에 대한 예를 행하였다.

내용 일생의례一生儀禮에서 조상의 신령을 모시는 단지를 신줏단지라고 하는데, 집안의 가신家神을 모시는 신체 역시 신줏단지라고 한다. 신주는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는 신체로 인식되어 사당이나 벽감壁龕에 모시고, 살아계실 때와 같이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드리며,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뢰기도 하였다. 이는 곧 신주를 조상으로 인식하여 함께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시동尸童이라 하여 할아버지의 제사에 손자를 제사상 위에 앉혀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기록에 따르면, "자제子弟로서 시동을 삼다 보니,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祖, 고考의 분별이 안 되어서 목주를 사용해서 알게 하였다."라고 한다. 반면, 중국 후한의 학자 허신許愼이 쓴 『오경이의五經異義』에서는 "대부는 비단을 묶어 신체를 나타내고, 사는 띠를 묶어 신체를 나타냈는데, 비단이나 띠가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로 대신했다."라고 했다.

신줏단지는 곧 신주를 모신 단지라 할 수 있다. 이는 유교적인 일생의례의 대상이자, 민속신앙의 대상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단지의 본래 뜻은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조그마한 항아리를 말한다. 성주단지, 조상단지, 삼신단지, 용단지 등 가신의 신체도 포괄적으로 신

줏단지라 할 수 있다. 조상을 의미하는 가신으로 조상당세기, 귀신당세기도 있는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신줏단지는 민속신앙의 가정신앙에서 신체인 동시에, 유교적인 일생의례를 받는 신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형태는 다르다. 유교의례의 신체는 목주이지만, 가정신앙에서는 그야말로 단지가 일반적이다. 유교의례에서 조상의 신령을 모시는 신체인 신줏단지는 항아리나 단지가 아니라 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두는 곳인 독櫝 또는 주독主櫝이다. 독은 이를테면 함, 곧 나무궤짝과 같은 것으로, 독좌櫝座와 독개櫝蓋로 구성되며 흑칠黑漆한다. 독좌는 사각의 다리 모양을 한 받침대 위에 앞면이 없는 세 편으로 둘러싸인 것으로, 그 안에 신주를 놓는다. 독개는 사면과 위가 막히고 아래가 없는 상자로 독좌를 덮는다. 주독은 항아리가 아니지만 신줏단지인 것이다.

사당에 모신 신주에는 4대에 걸쳐 매월 초하루와 보름, 명절 등에 차례로 제사를 지낸다. 기제나 시제 등에는 출주出主하여 정침이나 청사에 모셔 제사를 지낸 후에 다시 납주하여 사당에 모신다. 그러다가 새 신주가 사당에 들어와 5대가 되면 체천遞遷하여 최장방으로 옮기거나, 묘소에 묻어 묘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국가에 공이 있는 공신이어서, 또는 지방 유림이나 문중의 추대를 받아 불천위가 된 경우에는 사당에 계속 모시거나 별묘에 모시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신줏단지는 신주를 담는 독이지만, 가정신앙에서는 단지, 항아리, 버들고리 등을 신체로 한다. 가신이 그 안에 좌정해 있다고 생각한다. 일생의례에서 신주 역시 마찬가지로 조상의 혼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유교적인 일생의례에서는 신주 자체가 상징적인 신줏단지라 할 수도 있다. 이는 가정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조상신과 조상단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신주는 신령을 뜻하지만 이를 귀하게 말할 때 '신줏단지'라고도 한다.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하여 다루는 모양을 '신주 모시듯이' 또는 '신줏단지 모시듯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신주나 신줏단지는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신줏단지는 외경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일생의례에서뿐 아니라 민속신앙의 가정신앙의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사례 신줏단지는 사당에 모시지만, 사당을 갖추지 못하면 벽감壁龕이라 하여 대청 뒤의 상부를 밖으로 내고 위패가 담긴 감실을 모신다. 사당은 집을 지을 때에도 가장 먼저 터를 잡는 중요한 장소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김씨 종가에서는 문중의 큰일을 신줏단지가 모셔진 종가의 사당 앞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을 조상이 함께 결정하였고, 그 때문에 결정된 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신줏단지는 때로 신주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신주는 조상의 신령을 나타내는 신체를 뜻하는데, 신줏단지가 이러한 뜻을 지니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신앙의 예와도 같다. 가정신앙에서 조상단지나 조상고리 등은 조상신이 좌정한 신체를 뜻하면서 아울러 조상신도 뜻한다. 일생의례와 민속신앙의 수수관계는 다양한데, 신줏단지를 통해 유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일생의례와 민속신앙의 수수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상당세기 | 경북 포항 대보면 | 2002 | 김승찬

조상단지 | 경남 함양 중남리 | 2001 | 코리아루트

참고문헌 家禮, 三國史記, 민간신앙과 일생의례의 수수관계(김명자, 종교와 일생의례, 민속원, 2006),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창포마을의 가정신앙(김명자, 창포마을의 민속, 민속원, 2008),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집지키미(김광언, 다락방, 2000).

필자 김명자(金明子)

신행
新行

정의 혼례식을 마친 신부가 앞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시댁으로 길을 나서는 일.

내용 혼례식을 마치고 시댁으로 신행을 가는 시기는 매우 다양하다. 1년을 묵었다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신행, 한 달을 묵었다가 들어가는 신행, 사흘 만에 들어가는 신행, 그리고 혼례식을 하고 그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는 신행이 있다. 지역에 따라 1년을 묵혀 가는 신행을 '묵신행' 또는 '해묵이'라 하고, 달을 묵혀 가는 것은 '달묵이', 사흘 만에 가는 것은 '삼일신행', 혼례식 당일 들어가는 것은 '도신행'이라고 한다. 1950년대까지 농촌 여성들은 1년을 묵었다 신행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후에는 전통혼례를 한 경우에도 대부분 당일 시댁으로 들어갔다.

신행 기간 중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것을 '재행再行'이라고 한다. 신랑이 재행을 갈 때는 부모의 허락을 받은 후 떡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간다. 신부의 신행 기간이 길면 신랑은 몇 차례 신부 집에 재행을 간다. 혼례식을 올린 당일에 신행을 간 경우에도 재행을 가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이때 신랑의 재행을 "딸을 시집보내 섭섭해 하는 신부 부모의 눈물을 거두러 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신부가 신행 기간을 마치고 시댁으로 갈 때는 좋은 날을 받아 시아버지 도포 등의 혼수를 가지고 간다. 신행을 갈 때는 보통 신부 아버지가 상객上客으로 갔다가 신랑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돌아온다. 신부는 신행을 갈 때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간다. 가마는 신부 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빌린다. 가마꾼들은 품삯을 주고 사서 가는 경우가 많다. 신부집과 신랑집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 신부는 집에서 부터 가마를 타고 신랑집까지 간다. 그러나 신행길이 먼 경우에는 신부집 가마를 타고 중간까지 와서 신랑집 가마로 바꿔 타기도 한다. 현대적 교통수단이 발달한 이후, 신부집과 신랑집이 가마를 타고 오기 어려울 만큼 먼 거리일 경우에는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마을 초입까지 와서 가마를 탄다. 신랑집이 신부집 한집 건너 앞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마를 탔을 정도로 신행길에 가마는 지켜야 할 예로 인식되었다. 조선 후기에 쓰인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혼례 과정 중의 하나로 친영親迎이 소개되어 있다. "모姆(수모手母)가 색시를 모시고 나가 가마에 오른다. 신랑은 말에 타고 색시 수레에 앞서 간다. 신랑집에 이르면 색시를 인도하고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가마를 타고 오는 신부의 신행길은 무척이나 힘든 여정이었다. 사면이 막혀 있는 좁은 공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장시간을 앉아 있어야 했던 신부에게 신행길은 가마멀미를 비롯해 갖가지 힘들었던 기억들로 가득

신행 | 조선시대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의 혼례행렬 | 엘리자베스 키스 | 국립민속박물관

한 여정이었다. 가마를 타고 힘들게 신행 온 신부는 시댁으로 들어올 때도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신부를 태운 가마가 신랑집 마당으로 들어서면 가마꾼들은 신부를 가마에 태운 채 마당에 놓인 짚불을 넘어 들어온다. 이것을 보통 '양밥한다'고 하는데 신부를 쫓아 나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촌에서 신식혼례가 정착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까지 가마를 타고 짚불을 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다.

신부는 신행을 올 때 찹쌀을 요강에 담아 가마 안에 넣어 오기도 한다. 신부가 신행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이 찹쌀로 시어머니가 밥을 지어 식구들과 함께 먹는다. 찰밥은 "찐득하게 잘 살라고", "차지게 잘 살라고", "찰떡같이 잘 살라고" 먹는 것이다.

신부가 신행을 오는 날은 신랑집이 잔치하는 날이다.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과 집안 일가친척들이 마당에 솥뚜껑을 걸어 놓고 전을 부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한다. 마을 사람들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쌀이나 감주를 한 동이씩 가지고 와서 부조한다. 신랑은 신부가 신행을 오는 동안 집에서 손님들을 맞이한다.

특징 및 의의 신행 기간의 차이는 신부집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년 동안 묵었다가 가는 신행은 신부집의 경제적 사정이 좋아야 가능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한 가정의 수입이 한정되어 있다면 많은 식구 수는 그만큼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혼인으로 인한 식구 수의 감소는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통사회에서 가난한 집의 여성들은 일찌감치 집을 떠나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 혼인한 딸을 일 년 동안 친정에 머물게 하려면 그만큼 가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했다. 만약 신부집이 일 년 동안 딸을 데리고 있을 정도의 형편이 못 되었다면, 신부가 1년 동안 묵은 배경을 설명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신부집의 형편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배경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경북지역 중 길쌈이 유명했던 어느 마을에서는 많은 여성이 1년을 묵었다 신행을 갔다. 이들은 1년을 묵는 동안 길쌈을 해서 가정의 소득을 높이는 한편, 혼수

육례영상 | 평생도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로 가져갈 시어른들의 옷감을 만들기도 했다. 결국, 길쌈곳(길쌈을 많이 하는 마을) 출신 여성들이 묵은 1년은 어려운 집안 형편과 혼수 마련을 위해 길쌈하는 기간이었다. 신부가 어떠한 신행을 했는지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혼례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박동철,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한국민속학개론(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학연사, 1983).

필자 박동철(朴東喆)

신혼여행
新婚旅行

정의 결혼식 이후에 신혼부부가 함께 떠나는 여행.

역사 신혼여행은 전통혼례의 합궁례合宮禮에 해당하는 절차로 혼인의 궁극적 목적인 몸을 합치는 의식절차이다. 이러한 신혼여행의 역사는 190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일상화되지 못한 관습이었는데, 이는 혼인이 남녀 두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공동의 행사로 인식되어 의례절차과정에서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화기에 나혜석羅蕙錫의 신혼여행이 국내에서 처음 언급된 사례이며, 그 이후에 1938년에 발간된 『여성』이란 잡지에서 간간이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식혼례의 확산과 함께 광복 전까지 일부 특수계층에서만 행해지던 신혼여행은 1950년대와 1960년까지도 여전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경제적 여유를 가진 중산층 이상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신혼여행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결혼식 후 승용차를 타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호텔에서 1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신혼여행은 널리 보급되어 온양·경주·속리산·제주도 등으로 가는 일이 많아졌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신혼여행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이때부터 신혼여행은 해외여행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지구촌의 다양한 관광지로의 여행이 보편화 되었다.

내용 신혼여행은 일생에 한 번뿐인 여행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에는 다양한 신혼여행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가까운 온천에 머물다 오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제주도가 신혼여행의 최다 방문지로 떠올랐으며, 1990년부터는 해외를 많이 가게 되었다. 해외여행 초기에는 태국, 필리핀, 괌, 사이판 등의 동남아시아가 인기 지역이었으나, 그 이후 다양한 여행지가 개발되었다. 현재는 남태평양 지역, 미주·유럽 지역으로도 여행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은 단체신혼여행보다는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배낭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신혼여행 일정은 대체로 먼 지역을 가더라도 6일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거리 신혼여행의 경우에는 한 나라에만 국한하지 않고 최소 2개국에서 3개국을 연계한 일정으로 가기도 하나, 거리의 제약으로 많은 신혼부부가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신혼여행 비용으로는 상품구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동남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만 원 이상, 하와이의 경우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혼여행 기념사진 | 1962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신혼여행은 단적이며 상징적인 결혼식과 달리, 두 사람의 사적 결합을 이루는 것으로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중요성 외에 부부의 실질적인 결합이라는 의례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혼여행은 신혼부부를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 그리고 일상생활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킴으로써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의 탄생을 확인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참고문헌 신혼여행의 문화사(박부진, 한국문화인류학40-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7), 해외 신혼여행객과 국내 신혼여행객의 특성비교를 통한 국내신혼여행지의 Remarketing전략에 관한 연구(박철·손해식, 관광·레저연구 9-1, 한국관광·레저학회, 1997).

필자 이향숙(李香淑)

심상
心喪

정의 상중에 규정에 따른 상복을 입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근신하는 일.

역사 심상心喪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1085년(선종 2)에 개가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에 100일 휴가를 주고 3년간 심상하도록 규정한 기록이 있다. 조선 초기인 1428년(세종 10)에는 부친의 생시에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일년상을 지내고 심상 3년을 하도록 명하였다.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반포되면서 심상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런데 법전에는 없지만, 스승을 위해서도 3년간 심상하는 것이 일반 사대부가에 정착되었으니, 이는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을 위하여 3년간 심상을 했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세종 때에 길재吉再가 자신을 가르친 바 있는 권근權近이 죽자 3년을 심상하였고, 박분朴賁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했다. 조선 중·후기에 이르면, 스승을 위해서 제자가 심상하는 일이 널리 유행하였다.

내용 심상은 3년간 상복을 입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처럼 화려한 의복을 삼가고 연회를 금하며 자녀의 혼인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예기禮記』「단궁檀弓」에서는 심상心을 "슬픈 기색을 부친이 돌아가신 것과 같이하면서 복을 입지 않는 것[戚容如父 而無服也]"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가례家禮』에는 심상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국대전』의 '오복五服'에 포함되어 법제화하였고, 조선 후기에 간행된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등재되었으니, 이를 통해 심상이 당시 사대부가에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친이 살아 계시는데 모친이 돌아가시면 1년 만에 대상을 지내고, 3년 동안 심상하였다. 또한, 양자로 간 사람은 생부모 혹은 양부모에 대해서 심상을 해야 했다. 이를테면, 본래 낳아준 부모가 사망하면, 1년간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심상하였다. 그리고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데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1년간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심상하였다. 게다가 개가했거나 쫓겨난 생모를 위해서도 역시 1년간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심상해야 했다. 서자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계시면 생모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1년간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심상하여야 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가족 말고도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심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기』「단궁」에서는 이런 경우에 모든 제자에게 3년간 심상하라고 했다. 그렇지만 율곡 이이李珥는 차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스승과의 정情, 의리의 정도에 따라서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로 심상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스승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인물이 죽었을 때, 심상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임금을 위해서 혹은 가족이나 스승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이를 위해서 심상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상 때에 입도록 규정된 상복은 없었다. 그러나 일상복을 입을 수는 없었고, 소복素服 같은 다소 숙연함을 보여주는 옷을 입어야만 하였다. 부모를 위한 심상의 복장은 대개 대상 후나 담제禫祭 때의 복제에 따랐다. 1449년(세종 31)에는, 부친이 살아있는데 모친을 심상하려면 기년복朞年服을 마친 다음에 천담복淺淡服을 입도록 하였다. 또한, 『상변통고常變通攷』에서

는 백의白衣에 검은색 참립黲笠·참대黲帶를 언급하였는데, 퇴계 이황李滉 역시 『가례』의 담복禫服에 따라 참黲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백포직령白布直領을 입고 말총으로 짠 종망건騣網巾이나 황초립黃草笠·흑포립黑布笠을 써야 한다거나 혹은 참포黲布를 입고 치립緇笠을 써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반면에, 스승을 위한 복제는 소복素服 계통이었다. 본래 스승의 상은 아버지의 상을 당한 것처럼 하되, 복服은 입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복五服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대신 사복師服을 하라고 했으니, 조복弔服에 가마加麻를 하면 되었다. 즉, 소복素服을 입고 머리에는 흰색 두건을 쓰며 환질環絰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백포삼白布衫, 혹은 백포심의白布深衣 등을 입고, 삼으로 꼬아서 만든 끈인 환질을 만들어 두건에 둘렀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마加麻는 졸곡卒哭이 끝나면 제거하였고, 이후 상을 마칠 때까지 소복만을 입었다.

전라도 순창 사람인 양응수楊應秀(1700~1767)는 스승 이재李縡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용인에 거처를 마련하여 1년 동안 심상을 하였다. 그는 상중 기록인 「축장일기築場日記」를 남겼는데, 여기서 그는 하루 두 차례 묘소에 올라가 조석곡朝夕哭을 행하였고, 소식素食을 실천하였다. 그러다가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의원의 처방에 따라 약물과 고기를 먹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여러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교류하였고, 스승의 유고도 적극적으로 정리하였다. 당시 양응수는 같은 문하의 인물인 이행상李行祥과 함께 1년간 심상을 하였고, 강규康逵 등 5, 6인은 3년간 심상했다고 한다. 상복으로는 고례古禮와 율곡 이이의 설에 따라서, 처음에는 조복弔服에 가마加麻를 하였고 졸곡제를 기점으로 이를 제거하였으며, 그 뒤로는 소복에 흑립黑笠과 흑대黑帶를 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심상은 유교사회에서, 정리상으로는 상복을 입고 삼년상을 하고 싶지만 의리상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이행하는 절충적 성격의 예제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삼년상을 치르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양자로 간 사람이 생가나 양가 양쪽에 지나치게 예를 행할 수는 없었기에 이를 경계한 것이다. 스승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상喪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다만 생시의 은혜와 의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심상을 행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麗史, 四禮便覽, 常變通攷, 禮記, 朝鮮王朝實錄, 18세기 사복의 성격과 실제-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김윤정, 국학연구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간재 전우의 사복설의 연원과 의의(정길연, 인문학논총30,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필자 김문택(金文澤)

부록

색인
필자
분야별 표제어 일람표

색인

기역

가가례	22, 23
가래놀이	118
가래질소리	770
가례	24, 321, 497, 671, 696, 733
가례도감의궤	25
가례언해	26
가례오복	87
가례원류	27
가례의절	27, 28
가례증해	28
가례질서	29
가례집람	30, 483
가례향의	31
가마	730
가매장	197
가묘	161
가무극적	117
가문잔치	503
가복	31, 461
가빈	228
가상제놀이	118
가신	266
가정신앙	365
가정의례준칙	31, 32, 69, 273, 451, 553
가족묘지	164
가족장	452
가톨릭	472
간납	32
간랍	32
감모여재도	33
감실	35, 198, 587
감여가	601
갑사	229, 765
갑연	766
갑오개혁	541, 577
갑 지낸 노인	766
강복	38, 461
강신	38, 93, 163, 620, 670, 715
개도둔	226
개명정	157
개사초	318
개석	530
개장	501
개화기	447
객귀물리기	284
객사	528
갱	41, 718
갱기	41
갱물	41
거릿제	470
거사사당놀이	118
건전가정의례준칙	42, 451
격몽요결	43
견여	289
견전	43, 544
결혼	45
결혼기념일	44
겹사돈	237
겹이불	125
경국대전	121, 203, 369, 497, 566
경례유찬	45
경조사	209

계급내혼제 691
계녀서 46
계례 46
계문 48, 96
계반개 49
계반삽시 49
계빈 50
계적 613
고깔 449
고려사 예지 52
고문 559
고복 246
고비 708
고사 651
고사당 52
고손 579
고애자 545
고위 92, 708, 710
고유제 250
고이성 53
고인돌 59, 147
고임새 54
고자 579
고조고비 313
고종명 528
곡 56, 578
곡령 266
곡신 74
곡한 544
골호 478
공녀 577
공다 718
공동묘지 164, 533
공민왕릉 169
공원묘지 164
공창 477
공포 58, 179
과 249
곽 59, 70
관 60, 61
관곽색 528
관곽소 528
관넋이 513
관대벗김 63
관례 46, 50, 64, 507, 512
관례벗김 496, 634
관례홀기 66
관모 172
관상감 486, 600
관욕 243
관음시식 244
관직명 569
관혼상제 31, 66, 507, 688
광 39, 453
광목 747
광중 70, 661, 702
교대 465, 538, 621
교배례 71, 127, 707
교의 72
교환혼 73, 744
구고례 278
구슬 178
구이 542
구족 195
국가장 452
국가제사 74
국궁 74
국립묘지 164
국립현충원 165
국민장 451
국수 74
국수장국상 512
국장 451
국제결혼 76
국조오례의 78, 149
군례 321

굴건 60
굴건제복 61
굴신장 148
궁중 56
궁합 78
궂긴소식 207
궐명 80
궤연 175, 442
귀신 181
귀후서 511, 528
귀후소 511
규표 145
균분상속 489
극락왕생 624
근봉 705
근친 81, 540
근친혼 67, 82, 749
금강혼식 775
금관조복형 172
금기 253, 270, 653, 656
금정틀 70
금줄 83, 633, 654, 658, 713
급묘 85, 280, 453
급묘전 544
기도 470
기도문 559
기독교 648
기두 181
기러기 545
기럭아비 86
기신재 86
기신제 440, 694
기안 87
기일비망기 87
기일생신첩 87
기일재 295
기일제 553
기자 253, 266, 656
기자도끼 88
기자부적 89
기자속 90
기자의례 89, 506, 590, 662
기재 295
기제사 92, 304
기처 502
기호학파 23
길례 321, 696
길례요람 96
길상 138
길성 743
길일 40
길제 97, 280, 342, 544, 578
길지 153, 534
김성일 443
김장생 282, 483
김종대 487
깃발 58
까마귀 모른 식게 99
꼭두 294

니은

나경 486
나례 180, 181
나침반 486
나희 181
낙산 480
난산 253, 432, 657
날받이 444
남계선생예설 100
남계집 100
남귀여가 67
남귀여가혼 101, 176, 667
남근석 662

남녀유별 461
납골 201
납골당 201, 523
납골분함 478
납골상자 478
납골용기 478
납길 103, 444, 592
납주 96, 103, 629
납징 104, 592
납채 105, 499, 592, 593
납채서 107, 717
납채시루 205
납폐 108, 499, 593, 698, 706
납폐물목 110
납폐서 111
납폐함 110
내세 152
냉장실 529
넋건지기굿 625
넋대신 514
녜제 112, 342, 553
노제 113
놀이꾼 117
뇌주 39, 114, 586
누이바꿈혼 73
늑백 448
능묘 307
능비 166
능침제 694

디귿

다구질소리 770
다비 114
다비작법 117, 347
다산 258
다시래기 117
단군신화 274, 506
단문 168
단문친 168
단설 119, 708, 710
단자 246
단장 148
단체장 451
단헌무축 135
달구질 525
달묵이 69
담락연첩 520
담복 121, 131
담제 120, 280
당내 121, 584
당률 502
당목 748
당의 137
당일우귀 540
대갱 122
대곡 57
대공 38, 123, 194, 286, 321, 350, 461, 538, 547
대구리 226
대내림 514
대대 465
대도움 226
대돋움 226
대뜨리 226
대렴 124, 280, 286, 320, 447, 453, 511, 606, 623
대렴교 448, 450
대렴금 125, 324, 448
대렴전 544
대령 243
대례 126, 131, 248, 354, 358, 644
대례상 71, 128
대반 130

대사 54, 696
대상 131, 263, 280
대상문 283
대수장군 538
대여 289
대왕암 515
대제 149
대종 199, 234, 669
덧널 522
데릴사위제 200
도관 61
도빈 453
도신행 539
도적 133, 221
도참사상 41
도판 604
독축 134
돌 135, 139, 183, 185, 484, 658
돌띠 137
돌림제사 489
돌복 137
돌빔 137
돌상 136, 658
돌잔치 136
돌잡이 135, 139, 658
동고조 196
동기감응론 40
동뢰연 673
동상례 357
동전 246
동지 52
동천왕 151
돼지 503
두광족협형 61
두부 694
두불잔치 505
들돌 608
들돌놀이 608
딸수건 190
떡 140, 693
떡국 312

리을

류성룡 443
리 448, 538

미음

마을잔치 607
마을 제사 535
막편지 143
만가 144
만갑잔치 765
만수배 768
만시 144
만인문 629
만장 144
말 448
망갑제 229
망건 448
망상 768
망자 347
망전 544
망주석 145, 320
망차례 660
맞선 146
맞절 71
매장 147, 661, 711, 769
매태방 683
메 148, 175
메탕 41

멱목 149, 432
면 74
면기 150
면례 501
면리 501
면봉 501
면포 449
면포(명목) 448
명기 156, 179, 664
명당 153, 534
명당도 154
명목 448
명재선생의례문답 155
명절 615
명정 156, 179, 448
명주 126, 450
명주옷 190
모당 167
모란병 157
모발 460
모방주술 477, 547
모사 38
모사기 39, 158, 716
모시 450
모죽지랑가 559
목곽 60
목관 61
목기 41
목기러기 159
목묘 326
목욕 160
목용 345
묘 530
묘비 167
묘산도 154
묘소 179, 250
묘실 59
묘제 161, 553, 582, 777
묘지 163, 523, 605
묘지명 605
묘표 166
무굴관 60
무당 181, 268, 477
무덤 40, 164
무마질 344
무명 126
무복친 167
무속 513, 625
무시곡 57
무인석 168
무축단잔 650
묵신행 366, 540
문명 103, 169, 592
문무왕 515
문상 170, 212, 280, 665
문상객 483
문안 361
문안 인사 303
문인석 171
문자도 186
문중 173, 348, 584
문중묘지 164, 533
물레혼 73
미륵 663
미수 430
미역국 260, 269, 632
민며느리 67

비읍

박성원 459
반곡 174, 280, 570
반기 175
반닫이 552

반보기 81
반생 480
반장산 432
반친영 176, 354
반함 160, 178, 447
반혼 174, 640
발상 178
발인 43, 58, 113, 179, 280, 453, 513, 577
발인예배 327
발인제 451
밤달애 117
방가심 514
방목 145
방상시 179, 180
배냇머리 183, 187, 658
배냇머리자르기 183
배냇저고리 183, 184, 657, 684, 713
배위 119
백골양자 325
백년해로 76
백부 277
백수도 186
백수문 629
백수백복도 186
백일 183, 185, 186, 484, 658
백일떡 187
백일상 187
백일속도 186
백일옷 188
백채 264
백호 153
버드나무 178
버선 448, 449
벌초 188
베 450
베가르기 514
베개 448, 449
벽감 36
별전 189
병 140, 693
병원 528
병자성사 526
병풍 157, 326, 457
보공 190
보공의 339
보름 544
보삽 275
보쌈 541
보은 775
복 191
복건 150, 448
복두공복형 172
복반 779
복수결혼 192
복인 194, 285
복주 779
복차장 147, 196, 224
본종 167
봇뒤창옷 184
봉다 48
봉분 320, 770
봉사 234
봉사대수 197
봉사위 567
봉사자 488, 652
봉사조 203
봉사혼 199
봉선잡의 200
봉송 244
봉안 201
봉안단 201
봉안담 202
봉안당 201
봉안묘 202
봉안시설 201

봉안탑 202
봉제사 582
봉제사접빈객 203
봉치떡 205
봉치시루 204
부고 178, 205, 211
부귀 189
부모은중경 33, 775
부복 482
부신장 148
부여 345
부음 207
부의 207
부장품 151
부제 208, 280
부조 209, 746
부조록 210
부조묘 218
부케 210
부포 748
북두칠성 669
분골 515
분골용기 478
분릉 522
분면 363, 569
분묘 309
분상 211
분재기 212
분정기 213
분축 96, 214
분향 38, 215, 715
불교 117
불교의례 67
불교화혼식 216
불설정반왕반열반경 115
불식화혼법 216
불천위 218, 220
불천위기사 220
불천위대제 220
불천위제사 220
불천지위 220
비속 196
비위 92, 709, 710
빈 64, 224
빈례 321
빈상여놀이 226
빈소 228, 301, 622
빈장 224, 228, 639
뼈단지 478

시옷

사갑제 229, 458
사기 41
사당 52, 65, 208, 230, 236, 325, 361, 365, 587, 602, 618, 620, 622, 660
사당감실지도 36
사당도 34
사당방 36
사당제 233
사대봉사 173, 198, 234
사대부 483
사돈 236
사돈열맹 505
사돈음식 81
사돈잔치 503
사돈지 238
사례 507
사례집요 238
사례편람 106, 239, 369, 450, 483, 497
사마광 239
사마씨서의 239
사모관대 736

사분율 347
사비 167
사성 79, 444
사시제 240, 313, 342, 553, 614, 660
사신 96, 163, 242, 629
사십구재 242
사의 245
사자상 245
사제문 560
사주 78, 246
사주단자 63, 246
사주보 248
사찰 295
사처방 248
사초방 248
사회장 452
사후토 85
삭망곡 57
삭망전 249
삭망차례 660
삭장 297, 538
삭전 544
삭차례 660
산골 249, 515
산도 154
산모 653
산문 433
산바라지 713
산방 252, 654
산소 148, 533
산속 680
산신제 250
산실 252, 632, 657, 713
산실청 252
산역 148
산의 461
산전 656
산전금기 654
산전의례 253
산 제사 765
산치성 662
산통 433
산파 256, 713
산후 657
산후금기 654
산후의례 183, 258
산후조리 259, 654
삼 434
삼가 346
삼가례 64, 261, 346, 534
삼가르기 262
삼강행실도 733
삼국지 344
삼 나가는 날 683
삼날 682
삼내흠 262
삼년상 263, 673
삼베 341
삼베옷 190
삼불 434, 677
삼불거 502
삼색나물 264
삼신 266, 269, 662, 682, 713
삼신받기 267, 656
삼신상 136, 187, 267, 269, 632, 657, 714
삼신짚 269, 657, 714
삼실과 270
삼우제 271, 468
삼월장 483
삼일우귀 540
삼일장 272
삼제우지 586
삼줄 434
삼칠일 83, 258, 274, 633, 658
삼칠일속 186

삼할머니 256
삼헌 49, 430, 585, 646
삼헌고축 765
삽 275, 448
삽시정저 276, 631
상 538
상각 277
상객 277, 644, 777
상견례 277
상극 493, 599
상단권공 244
상대 530
상두계 302
상례 279, 507, 521
상례비요 282
상례언해 283
상문살 283
상변통고 284, 369
상복 61, 194, 285, 319, 673
상복법 285
상생 493, 599
상수 287
상수송서장 288
상식 288, 576
상신 480
상여 43, 289, 453, 456, 468
상여꾼 469
상여놀이 118, 227
상여장식 293
상엿소리 469
상용영반 295
상장 297
상장례 24, 250, 298
상제 491, 544
상조회사 530
상주 60, 170, 300, 727
상중 369
상차림 611
상청 301
상포계 302
상향 559
새벽문안 303
새앙낭자 725
새처방 248
새해 313
생기복덕 337, 599
생기일제 304
생신제 304
생여도듬 226
생채 265
생휘일제 304
서류부가 488
서류부가혼 173, 306
서수 145
서옥제 67, 101, 305
서운관 600
서원 348, 476, 780
석 448
석곽 60
석관 61, 478
석등 530
석문가례초 306
석문상의초 307
석물 307, 729
석상 320
석수 310
석양 310
석인 168, 320
석전 544, 576
석조물 307
석호 310
선덕여왕 157
선생복종 311
선정비 167
선조제 553, 607
선종 311

설날 52
설소과 609
설위 93, 119, 313, 710
설 차례 312
설찬도 610
성년식 314, 608
성년의 날 48, 316
성년의례 46, 608
성년의식 315
성명 569
성묘 188, 313, 317, 650
성복 280, 319, 544
성복전 544
성분 85
성분제 320
성사 578
성장의례 607
세거지 171
세계도 87
세골장 196
세종실록 477
세종실록 오례 321
세포 323
세호 145
소 249
소공 38, 123, 194, 286, 321, 344, 350, 444, 461, 466, 538, 548
소렴 280, 286, 322, 447, 510, 511
소렴교 323, 448, 450
소렴금 323, 448
소렴전 544
소목 324
소목계서 326
소묘 326
소병 326
소복 444
소사 54, 696
소산 480
소상 131, 263, 280, 326
소상문 283
소여 290
소적 613
소종 199, 234
소천 329
소천예배 327
소탕 610
소태방 683
속절 329, 650
속칭 569
손두둠 608
손모듬 226
손발톱 460
손신 480
솔서제 305
솜이불 124, 125
송시열 466
쇠 486
수노인 331
수레 144
수망굿 625
수목장림 515
수복 76, 138, 189
수성노인도 331
수시 332
수연 333, 772
수연문 337
수염 460
수유 338, 714
수의 126, 208, 339, 431, 447, 461, 510
수장 147, 342
수저 353
수조 342
수질 327, 343, 344, 538, 621
숙부 277
숙채 265

순산 433
순장 67, 151, 344
술잔 707
숭늉 42, 48, 631, 718
습 160, 280, 286, 447, 461
습구 149, 431
습 · 대렴 322
습 · 소렴 125
습의 339
습전 544
시가례 64, 345, 534
시다림 347
시다림작법 347
시도 348
시도기 348
시마 38, 123, 194, 286, 321, 344, 349, 350, 444, 461, 466, 538, 548
시묘살이 350
시사전 353, 544
시신 339
시아 139
시의전서 76, 542
시접 353
시제 240, 318, 440
시주 139
시집살이 354
시집살이혼 128
시향제 318
시혜소 528
식게 99
식초 641
식혜 356
신랑다루기 356
신방 358
신방엿보기 358
신부가마 359
신부값 361
신부대 360
신식결혼식 193
신알 233
신알례 361
신여성 447, 598
신위 54, 218, 242, 601, 604, 745
신전장 148
신주 36, 92, 202, 209, 220, 230, 313, 324, 362, 364, 455, 456, 570, 601, 603, 641, 648, 660, 745
신줏단지 364
신행 303, 354, 359, 366, 725
신혼곡 57
신혼부부 368
신혼여행 360, 368
신혼체백 455
실태 480
심상 369
심원록 349
십이지상 310
쌀 178
쌀뜨물 160
쑥탕 160
씻김굿 457, 625

이응

아놀드 반 게넵 687
아침저녁 544
아헌 93, 163, 241, 430, 670
아헌관 549, 779
악귀 182
악성 743
악수 150, 430, 448, 449
안사돈 238

안산법 432
안태 434, 683, 684
앙와신전장 148
앙와장 148
앙장 293, 436
애도 571
애물단지 438
애사 559
애산 432
애석장 437
애석총 437
애손 579
애자 579
애장 437
애장터 437
애총 437
약혼 439
약혼서 439
양로연 333
양수 595
양자 38, 496
양창독 588
어육 440, 675
어육기 441
어적 613
어탕 610
어포 700
엄광전 320
여 442
여막 442
여묘 442
여소 442
여차 442
역복 211, 444
역복불식 171, 444
역월단상제 523
연길 444, 497, 499
연길단자 63
연담 731
연도 471, 525
연복 327
연애결혼 447
연애혼 446
연옥 470, 471, 472
염 510
염습 323, 353, 430, 447, 461, 669
염습구 126, 448, 449
염습실 160, 529
염습용구 150, 432
염습의 448
염습제구 431
염신 74
염우 145
염의 339
염포 461
엽전 178
엿기름 356
영개울림 514
영거 179
영결식 451
영구 43, 85, 179, 453, 577, 599, 622
영구차 454
영남학파 23
영당 456, 601
영상 544
영실 514
영안실 528
영애 108
영여 455, 469
영역 40
영연 301
영정 455, 456
영조척 156
영좌 44, 457, 529, 640
영혼 242

영혼결혼식 457
예기 50, 458, 497
예물 705
예법 509
예의유집 459
예장 204
예제 245
오구굿 457, 625
오낭 448, 449, 460
오례 321
오륜행실도 733
오방색 138
오복 121, 350, 695
오복제 122
오복제도 67, 461, 547, 621
오복친 168, 286
오선생예설분류 463
오행 492
옷 190, 339
옹관 61
옹중 168
왕릉 530
왕릉지 533
외빈 228
외손봉사 173, 464
왼새끼 83
요여 455
요질 465, 538, 621
용재총화 182
우귀 499
우암경례문답 466
우인 466
우제 280, 467
운각 145
운감 779
운구 454
운구예식 526
운삽 275
운상 468
원문 559
원삼 736
위령기도 470, 526
위령미사 472
위령제 473
위령탑 475
위토 475
위패 230, 476
위호 477
유감주술 477, 547, 653, 679, 682
유거 289
유골 249
유골용기 478, 515
유기 41
유량 338
유림장 451
유복자 621
유사고 52
유산 253
유산법 480
유세차 559
유소 294
유식 93, 241, 482, 631, 708
유언 510
유월장 224, 273, 483, 524
유인 156
유장원 284
유허비 167
육낭 460
육례 666
육아의례 484
육적 49, 613
육탈 197, 522
육탕 610
육포 700
윤달 341
윤도 486

윤증 155
윤회봉사 488
윤회사상 627
은전 249
은혜 776
음다 42
음복 343, 490, 675
음식금기 653
음양 491
음양설 682
음양오행 486, 491, 624, 679
의 538
의려 442
의례 494
의례경전통해 494
의례문해 495
의례용 장치. 83
의례준칙 451, 495
의리 495
의복 461, 495, 496
의양 496
의양단자 63, 496
의장계 581
의절 502
의혼 497, 593
이난수 283
이레잔치 503
이문건 351
이바지음식 499
이상재 451
이성 53
이승 125
이언적 200
이이 351
이익 345
이장 500
이재 239, 483
이정회 443
이중장 522
이진상 238
이차장 147
이항복 144
이혼 502
이황 350, 692
인도 144
인륜지대사 69
인생고비 687
인재행 81
인형 152
일곱이레 484
일년복 444
일뤠잔치 503
일생의례 365, 506, 608, 656, 687
일월오봉병 492
일차장 147
임신부 676
임종 289, 509
임종예배 327
입관 125, 448, 510, 511, 669
입맛 511
입매상 768
입맷상 511
입사의례 315
입장 148
입향조 161
잉태 676

지읒

자관자례 64, 512
자리걷이 513
자연장 250, 480, 515
자연장지 515
자유연애 447

자유연애혼 279
자최 194, 538
자침 486
작명 517
작수성례 192
작위 569
잔대 38, 39, 519
잔반 39, 519
잔치 520
잡귀 719
장가턱 357
장골 522
장골용기 478
장관자 346
장국상 512
장례 521
장례미사 472, 525
장례식장 69, 160, 527, 528
장메 449
장메(교포) 448
장명등 530
장사택일지 531
장송 522
장송의례 525
장수 76, 138, 186, 189
장유 461
장의사 528
장의업 454
장지 532, 702
장태 434
장태방 683
재가례 64, 345, 534
재계 534
재궁 511
재사 559
재실 536
재우제 271, 468, 537
재최 38, 123, 321, 344, 350, 461, 466, 538, 547
재최관 538
재최복 31
재최삼년 264
재행 366, 539
재혼 540
저승 125
저승돈 190
저승사자 245
저장 297
적 542
적기 543
적장자 52
전 544
전계 538
전녀위남 682
전안례 126, 159, 545, 666
전유어 32
전의 208
전죽석 145
절치성 662
접촉주술 478, 546, 684
정령신앙 572
정몽주 499
정방 645
정복 31, 463, 538, 547
정신대 578
정자석 530
정종 509
정침 191, 453, 509, 511, 548, 660
정화 160, 447, 535
정화수 269, 586
제 544
제관 549, 619
제구 609
제기 353, 550, 609
제기함 552

제례 25, 72, 250, 507, 552, 647
제례홀기 557
제망매가 559
제목주 85
제문 544, 559, 665
제물 245, 560, 611, 719
제복 563
제사 610
제사공동체 583
제사도구 565
제사분할 566
제사일 329
제삿밥 175
제상 326, 567, 629
제수 550, 609, 610
제오방문 559
제주(祭酒) 568
제주(題主) 569
제주(祭主) 670
제주전 544, 570
제찬도 610
제청 301
젯메 175
조 280
조매 570, 648, 669
조문 559, 571
조발낭 160
조상 362, 364
조상굿 477
조상숭배 473, 572
조상신 163, 299, 475, 572, 574
조상제사 470
조석곡 57
조석전 576
조선여속고 80
조율시이 586
조장식 87
조전(弔奠) 544
조전(祖奠) 544, 576, 577
조전(朝奠) 544, 576
조현명 169
조혼 359, 577
존비 461
졸곡 133, 280, 444, 483, 578
졸곡제 209
종가 348, 579
종계 173, 581
종묘 36, 149
종법 171, 234, 575, 583, 584
종법제도 234, 579
종부 580
종손 580
종헌 93, 163, 585, 670
종헌관 549, 779
좌임 448
좌장 148
좨주 586
주과포 586
주당맥이 118
주독 36, 365, 554, 587
주례 588
주병 589
주술기자 590
주신 145
주안상 635
주육례 105, 592, 635
주인 300
주자가례 106, 176
주자사례 593
주자성리학 166, 308
주작 153
죽음의례 514
준 96, 594
중구 595
중구 차례 595
중대 530

중매인 146, 596
중매혼 596, 598
중사 54, 696
중상 598
중양절 595
중의 538
증보사례편람 534, 599
지관 486, 532, 600
지남반 486
지남철 486
지문 604
지방 457, 601, 603, 620
지방함 603
지사 601
지석 604, 664
지요 448, 449, 606
지청 301
지팡이 297
직각장군 168
직계존속 196
직지장 148
진기 93, 607
진다 42, 718
진도다시래기 227
진도만가 771
진사턱 608
진새내기 608
진새례 607, 608
진설 93, 607, 609
진설도 610
진설법 611
진세턱 608
진습의 431
진오기굿 457, 514, 625
진적 613
진찬 93, 163, 614
진찬도 610
질명 80
집가심 514
집사자 549
집안치성 662
짚불 470
짚신 246

치읓

차례 615
차반 81
차비 114
차사본풀이 99, 190, 288
찬기파랑가 559
참례 233, 618
참사자 619
참신 93, 163, 241, 620
참최 123, 194, 297, 321, 344, 350, 461, 466, 538, 547, 621
참최복 31
참최삼년 264
채단 204, 706, 747
처가 539
처당 167
처사 156
처처혼 102
천개 461
천거정침 548
천구 280, 453, 577, 622
천금 448, 449, 461, 623
천기대요 624, 686
천도굿 624
천도재 242, 627
천문학 486
천신 233
천원지방 145, 486
천인천자문 629

천장 501
천주성교예규 471
철 96
철상 163, 629
철시복반 631
첨작 631
첫국밥 632, 657, 713
첫나들이 633
첫날밤 634
첫돌 137
첫돌의례 137
청기 592, 635
청룡 153
청사 453, 559
청장 636
청첩장 637
청혼 497, 638, 731
청혼서 638
체석 530
체천 639
초례 64, 126
초분 197, 228, 639
초사 559
초상화 456
초우제 271, 468, 640
초접 641
초조제 313, 553, 607
초종 85, 286, 509, 510, 642
초하루 52, 544
초행 131, 545, 644
초헌 93, 163, 241, 646, 670
초헌관 549, 779
초헌례 134
초혼 179, 191
촛대 647
촛대석 145
총부봉사 464
최장방 639, 647
추길 444
추도식 648
추모 76
추모식 474
추석 188
추석 차례 650
축관 549, 640, 653
축문 214, 559, 651, 653
축의금 210
축판 653
출산 653, 657
출산금기 653
출산의례 655
출생의례 655, 656
출입 233
출입고 52, 659
출주 93, 659
출주고사 660
출타 170
충이 150, 432, 448, 660
취토 661
측와장 148
치성기자 662
치아 460
치장 280, 664
치전 544, 665
치제문 560
친빈전 544
친소 461
친영 177, 592, 593, 666, 696
친영혼 128
친전 113
친진 639, 669
칠거지악 502
칠성판 606, 669
칠출 502
칠태도 677
침주 670

키읔

큰상	511, 699, 768, 772
큰상물림	288
큰상받기	671
큰상의	287

티읕

탈상	350, 513, 673
탑비	167
탕	674, 675
탕기	675
탕병	74
태	256, 434
태교	253, 254, 655, 676, 677
태교신기	678
태몽	253, 656, 679, 681
태반	256, 682
태봉	436
태실	434
태아	676
태옹	684
태장경	435
태점	253, 680
태제	683
태처리	682, 683
태항	684
태항아리	684
태호	684
택일	64, 143, 444, 496, 531, 532, 685
택일기	143
택지	531
탯줄	256, 547, 655, 682
토속지	690
토용	345
토장	147, 522
토지신	776
토테미즘	572
통과의례	316, 655, 687, 688, 766
통과의례(책)	507, 508
통혼권	690
퇴계상제례답문	692
퇴계상제례답문변의	693
퇴주기	693

피읖

파시조	161
판석	604
패철	486
편	693
편기	693
편산	432
편적	694
편청	142
평생도	695
평생의례	507
평토제	770
폐백	449, 696, 722
폐백음식	698
포	249, 700
표목	145
풍수	486, 492, 600, 601
풍수가	601
풍수사	601
풍수사상	534
풍수지리설	153
풍수지리술	40
풍장	147, 701
풍차바지	137

프레이저	477
피막	714
피성	743

히읗

하관	70, 85, 174, 661, 702
하대	530
학생	156
한식	161, 188, 317, 703
한식 절사	703, 704
할급휴서	503
함	705
함중	569
함진아비	645, 706
합궁례	368
합근례	707, 713
합문	93, 708
합사	708
합설	119, 708, 710
합장	148, 711
합환주	712
항표	145
해	249
해막	714
해묵이	69, 366
해산	713
해산방	252
해산의례	713
햇세배	319
행위금기	654
행전	538
향	716
향교	348, 476
향로	715, 716
향사	780
향상	716
향안	716
향음주례	491
향탁	716
향탕	160
향합	716
허리	465
허전	245
허혼	497, 731
허혼서	717
헌관	549
헌다	718
헌수	772
헌수례	765
헌수주	767
헌식	719
헌작	613, 693, 720
헌주상	768
현구고례	238, 303, 500, 699, 722
현무	153
현손	647
현우사당	65
현주	609
현충일	474
현훈	448
혈식군자	726
혈연	575
호상	727, 771
호석	729
호피	730
혼담	638, 731
혼례	24, 101, 507, 732, 777
혼례복	645, 736
혼례식	739
혼례홀기	741
혼반	743
혼백	39, 180, 351, 455, 456, 457, 640, 745

혼백상자 455
혼사 732
혼사계 746
혼서지 705, 706
혼속 354
혼수 705, 747
혼여꾼 360
혼인 502, 749, 758
혼인 방식 446
혼인법 752
혼인성사 754
혼인신고 756
혼인여탐굿 758
혼주 759
홀기 588
홑이불 125
화갑 334
화리 502
화사 530
화삽 275
화상 202
화연 766
화장 117, 147, 250, 342, 515, 760
화장법 522
화장장 523, 762
환갑 334, 765, 766
환갑연 766
환갑의례 766
환갑잔치 765
환력 766
활옷 736
황금가지 477
회갑 764, 765, 766, 772
회갑상 766
회갑연 767
회격 70, 769
회곽 60
회다지 525, 770
회혼 772
회혼례 696, 771, 772
횡산 432
효 775
효건 61
효대 465
효손 579
효자 545
후토신 40
후토제 163, 776, 777
후행 130, 644, 672, 777
휘장 778
흉례 321
흉사 343
흉행 211
흠향 54, 594, 652, 708, 779
희생 726, 780

필자

강재철 姜在哲 단국대학교

봉치시루 204
신부가마 359
호피 730

강정원 姜正遠 서울대학교

교환혼 73
근친혼 82
봉사혼 199
신부대 360
유감주술 477
접촉주술 546

고부자 高富子 전 단국대학교

배냇저고리 184

고영진 高英津 광주대학교

가례도감의궤 25
가례언해 26
가례원류 27
가례의절 27
급묘 85
대렴 124
세종실록 오례 321
소렴 322
영구 453

구미래 具美來 불교민속연구소

불교화혼식 216
사십구재 242
산골 249
상용영반 295
천도재 627
화장 760

권삼문 權三文 여헌기념관

갱기 41
교의 72
모사기 158
소병 326
앙장 436
잔반 519
제기 550
제기함 552
제사도구 565
제상 567
주병 589
지방함 603
촛대 647
탕기 675
퇴주기 693
편기 693
향로 715
향탁 716
향합 716
휘장 778

권순형 權純馨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옥제 305
이혼 502
재혼 540
조혼 577

김만태 金萬泰 동방대학원대학교

궁합 78
수연례 333
연길 444
음양오행 491
작명 517
천기대요 624
칠성판 669
택일 685

김명자 金明子 전 안동대학교

기자의례 89
상문살 283
설 차례 312
신줏단지 364
일생의례 506
조상신 574
주술기자 590
차례 615
추석 차례 650
치성기자 662

김문택 金文澤 서울역사박물관

삼년상 263
시묘살이 350
심상 369
여막 442
유월장 483

김미영 金美榮 한국국학진흥원

고이성 53
단설 119
불천위제사 220
사당 230
소목 324
수조 342
영정 456
위패 476
정침 548
제문 559
제사분할 566
조매 570
준 594

진설 609
체천 639
최장방 647
친진 669
합사 708
합설 710
혼백 745

김상보 金尙寶 대전보건대학교

갱물 41
고임새 54
대갱 122
대례상 128
도적 133
떡 140
메 148
삼색나물 264
상수 287
어육 440
이바지음식 499
적 542
큰상받기 671
편적 694
폐백 696
폐백음식 698
회갑상 766

김시덕 金時德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가가례 22
감모여재도 33
관혼상제 66
목욕 160
묘제 161
문상 170
봉사대수 197
분상 211
빈 224
삼일장 272
상례 279
상장례 298
아헌 430
염습 447
영결식 451
오복제도 461
이장 500
종헌 585
중상 598
진설법 611
초헌 646
취토 661
치전 665
합장 711
헌작 720

김시황 金時晃 경북대학교

가복 31
강복 38
관례 63
의복 495
정복 547

김영관 金榮官 제주대학교

곽 59
관(棺) 61
매장 147
복차장 196
빈장 228
수장 342
순장 344
초분 639
풍장 701
회격 769

김영수 金榮洙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복수결혼 192
선종 311
소천예배 327
위령기도 470
위령미사 472
장례미사 525
추도식 648
혼인성사 754

김영순 金永順 한국민속촌

불천위 218
혈식군자 726
흠향 779
희생 780

김영재 金永才 국립민속박물관

제복 563

김윤정 金潤貞 국립민속박물관

백수백복도 186
수성노인도 331

김지욱 金志昱 경기문화재연구원

노제 113
빈상여놀이 226
사갑제 229

김창호 金昌鎬 국립민속박물관

기자도끼 88
기자부적 89
별전 189

김태수 金泰水 삼척시립박물관

생신제 304
헌식 719

김혜숙 金惠淑 제주대학교

막편지 143
일훼잔치 503
함 705

김효경 金孝慶 한남대학교

산후조리 259
속절 329
안산법 432
유산법 480

나경수 羅景洙 전남대학교

다시래기 117
잔치 520
진새례 607

도민재 都民宰 청주대학교

가정의례준칙 31
건전가정의례준칙 42
관례홀기 65
독축 134
의례 494
의례경전통해 494
의례문해 495
의례준칙 495
제례홀기 557
축문 651
축판 653
혼례홀기 741

박경하 朴京夏 중앙대학교

상포계 302
종계 581

박동철 朴東喆 한국국학진흥원

신행 366
연애혼 446
중매혼 598
혼사계 746

박성용 朴晟慵 영남대학교

국제결혼 76
의혼 497
청혼서 638
혼담 731

박정혜 朴廷蕙 한국학중앙연구원

모란병 157
평생도 695

박종민 朴鍾珉 부천시박물관

상여 289
영구차 454

박태호 朴台浩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묘지 163
봉안 201
유골용기 478
자연장지 515
장례식장 527
화장장 762

박혜인 朴惠仁 계명대학교

혼례 732

박홍갑 朴洪甲 국사편찬위원회

계빈 50
삼가례 261
성년식 314
성년의 날 316
시가례 345
자관자례 512
재가례 534

배도식 裵桃植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상객 277
애장 437
우인 466
태교 676
후행 777

배영동 裵永東 안동대학교

감실 35
금줄 83
기제사 92
명기 151
벌초 188
봉제사접빈객 203
사대봉사 234
성묘 317
제관 549
제물 560
종가 579
지석 604
참사자 619

백민영 白旻永 국립민속박물관

삼신상 269
새벽문안 303

변혜민 邊慧敏 국립민속박물관

상여장식 293
석수 310

서해숙 徐海淑 전남대학교

산파 256
육아의례 484

송미경 宋美京 서울여자대학교

대렴금 125
소렴금 323
수의 339
염습구 448
염포 449
지요 606
천금 623
충이 660

송재용 宋宰鏞 단국대학교

근친 81
길제 97
삼우제 271
우제 467
재우제 537
초우제 640

윤덕인 尹德仁 관동대학교

면기 150
반기 175
삼실과 270
시접 353
식혜 356
어육기 441
적기 543
제주(祭酒) 568
주과포 586
청장 636
초접 641
탕 674
포 700

은현정 殷賢貞 국립민속박물관

부케 210
청첩장 637

이관호 李官浩 국립민속박물관

중매인 596
초행 644

이길표 李吉杓 성신여자대학교

납채서 107
사주단자 246
첫날밤 634
허혼서 717
현구고례 722

이민식 李敏植 수원화성박물관

망주석 145
묘표 166
무인석 168
문인석 171
석물 307
장명등 530
호석 729

이상현 李相賢 안동대학교

부조 209
부조록 210
사돈지 238

이용범 李龍範 안동대학교

영혼결혼식 457
자리걷이 513

이창기 李昌基 영남대학교

문중 173
사돈 236
윤회봉사 488
통혼권 690

이필영 李弼泳 한남대학교

삼신 266
삼신받기 267
안태 434
첫국밥 632
출생의례 655
태교신기 678
태처리 682
태항아리 684

이해준 李海濬 공주대학교

기일비망기 87
납폐물목 110
종법 583
천인천자문 629

이향숙 李香淑 동부산대학교

결혼기념일 44
맞선 146
신혼여행 368
약혼 439

필자

이희재 李曦載 광주대학교

계반개 49
국궁 74
궐명 80
기신재 86
납주 103
사신 242
위호 477
음복 490
재계 534
좨주 586
진적 613
철시복반 631
침주 670

임민혁 任敏赫 한국학중앙연구원

가례 24
개영역 39
견전 43
곡 56
담제 120
대상 131
발인 179
부고 205
분축 214
사시제 240
산신제 250
설위 313
성분제 320
재실 536
진기 607
천구 622
철상 629
치장 664
탈상 673
한식 절사 703
후토제 776

장동우 張東宇 대진대학교

광중 70
무복친 167
발상 178
복 191
복인 194
부의 207
상주 300
성복 319
수시 332
임종 509
장사택일지 531
조문 571
초종 642
하관 702
호상 727

장병인 張炳仁 충남대학교

남귀여가혼 101
반친영 176
친영 666

장장식 張長植 국립민속박물관

명당 153
명당도 154

전경목 全炅穆 한국학중앙연구원

경례유찬 45
계녀서 46
고려사 예지 52
국조오례의 78
길례요람 96
남계선생예설 100
당내 121
명재선생의례문답 155
봉선잡의 200
분재기 212
분정기 213
사례집요 238
사례편람 239
사마씨서의 239
사의 245
시도기 348
증보사례편람 599

전경욱 田耕旭 고려대학교

방상시 180

전경수 全京秀 中国 贵州大学 东盟研究院 特聘教授

통과의례 687

정각 正覺 중앙승가대학교

다비 114
석문가례초 306
석문상의초 307
시다림 347

정긍식 鄭肯植 서울대학교

위토 475
혼인법 752
혼인신고 756

정연학 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산실 252
함진아비 706

정종수 鄭鍾秀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공포 58

만장 144
명정 156
반곡 174
부제 208
삽 275
상청 301
소상 326
역복 444
영여 455
영좌 457
입관 510
장례 521
졸곡 578

정현미 鄭賢美 국립민속박물관

간납 32
국수 74
입맷상 511

조선영 曺善映 전 국립민속박물관

신방엿보기 358
첫나들이 633

조우현 趙又玄 성균관대학교

관(冠) 60
대공 123
상복 285
상장 297
소공 321
수질 343
시마 349
요질 465
재최 538
참최 621

조현숙 趙玄淑 국립민속박물관

멱목 149
악수 430
오낭 460

조희진 趙熙眞 인천대학교

돌 135
돌잡이 139

주영애 朱英愛 성신여자대학교

납폐 108
납폐서 111
상견례 277
혼례식 739
혼수 747

지두환 池斗煥 국민대학교

강신 38
계문 48
계반삽시 49
뇌주 114
분향 215
삼내흠 262
삽시정저 276
유식 482
진찬 614
참신 620
첨작 631
출주 659
합문 708
헌다 718

천진기 千鎭基 국립민속박물관

윤도 486

천혜숙 千惠淑 안동대학교

대례 126
대반 130
백일 186
사처방 248
산후의례 258
시집살이 354
재행 539
출산금기 653
혼반 743
혼인 749

최길성 崔吉城 히로시마대학교

조상숭배 572
효 775

최배영 崔培英 성신여자대학교

납길 103
납징 104
납채 105
문명 169
주육례 592
주자사례 593
청기 635

최순권 崔順權 국립민속박물관

계례 46
고사당 52
녜제 112
사당제 233
삭망전 249
시사전 353
신알례 361
신주 362
전 544
제례 552
제주(題主) 569

조석전 576
조전 577
주독 587
지방 601
진설도 610
참례 618
출입고 659

최운식 崔雲植 한국교원대학교

관대벗김 63
교배례 71
반함 178
사자상 245
주례 588
합근례 707
합환주 712
회혼례 771

최원석 崔元碩 경상대학교

장지 532
지관 600

최은수 崔銀水 국립민속박물관

돌복 137

최인학 崔仁鶴 인하대학교

기럭아비 86
목기러기 159
신랑다루기 356
전안례 545
혼주 759

최종호 崔鍾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연문 337
회갑 764

표인주 表仁柱 전남대학교

운상 468
위령제 473
회다지 770

한기범 韓基範 한남대학교

가례증해 28
가례질서 29
가례집람 30
가례향의 31
격몽요결 43
상례비요 282
상례언해 283
상변통고 284
예기 458
예의유집 459
오선생예설분류 463
우암경례문답 466
퇴계상제례답문 692

한미옥 韓美玉 전남대학교

수유 338
중구 차례 595

한양명 韓陽明 안동대학교

삼가르기 262
삼칠일 274
외손봉사 464
태몽 679
태점 680
해산의례 713

현승환 玄丞桓 제주대학교

까마귀 모른 식게 99
보공 190
상식 288

홍나영 洪那英 이화여자대학교

의양 496
혼례복 736

홍태한 洪泰漢 중앙대학교

천도굿 624
혼인여탐굿 758

황경순 黃慶順 국립문화재연구소

배냇머리자르기 183
산전의례 253

분야별 표제어 일람표

관혼상제 66

일생의례 506

통과의례 687

출생의례

출생의례 655

산전(産前)

산전의례 253
기자의례 89
유감주술 477
접촉주술 546
주술기자 590
치성기자 662
기자도끼 88
기자부적 89
별전 189
삼신 266
삼신받기 267
안산법 432
유산법 480
태교 676
태몽 679
태점 680
택일 685

해산(解産)

해산의례 713
금줄 83
산실 252
산파 256
삼가르기 262
안태 434
첫국밥 632
출산금기 653
태처리 682
태항아리 684

산후(産後)

산후의례 258
산후조리 259
삼신상 269
삼칠일 274

육아(育兒)

육아의례 484
배냇머리자르기 183
배냇저고리 184
수유 338
작명 517
첫나들이 633
백일 186
돌 135
돌복 137
돌잡이 139
천인천자문 629
잔치 520

아이의 사망

애장 437

관·계례

성년식 314
성년의 날 316

관례(冠禮)

관례 63
계빈 50
시가례 345
재가례 534
삼가례 261
자관자례 512
관례홀기 65
진새례 607

계례(笄禮)

계례 46

혼례

전통의례절차

의혼 497
혼담 731
납채 105
택일 685
연길 444
납폐 108
고사당 52
초행 644
대례 126
전안례 545
교배례 71
합근례 707
관대벗김 63
큰상받기 671
첫날밤 634
신방엿보기 358
신행 366
현구고례 722
새벽문안 303
재행 539
신랑다루기 356
근친 81
일뤄잔치 503
혼인여탐굿 758

현대의례절차

맞선 146
상견례 277
약혼 439
혼례식 739
신혼여행 368

의례도구

함	705
봉치시루	204
청혼서	638
납채서	107
사주단자	246
납폐서	111
의양	496
허혼서	717
막편지	143
혼례홀기	741
납폐물목	110
혼수	747
목기러기	159
모란병	157
신부가마	359
호피	730
사돈지	238
청첩장	637
부케	210
부조록	210
혼례복	736

의례음식

고임새	54
국수	74
대례상	128
이바지음식	499
입맷상	511
폐백음식	698
합환주	712

용어

결혼기념일	44
교환혼	73
국제결혼	76
궁합	78
근친혼	82
기럭아비	86
남귀여가혼	101
납길	103
납징	104
대반	130
문명	169
반친영	176
복수결혼	192
봉사혼	199
부조	209
불교화혼식	216
사돈	236
사처방	248
상객	277
상수	287
서옥제	305
시집살이	354
신부대	360
연애혼	446
영혼결혼식	457
우인	466
음양오행	491
이혼	502
잔치	520
재혼	540
조혼	577
주례	588
주육례	592
주자사례	593
중매인	596
중매혼	598
청기	635
친영	666
통혼권	690
평생도	695
폐백	696
혼례	732
함진아비	706
혼반	743
혼사계	746
혼인	749
혼인법	752
혼인성사	754
혼인신고	756
혼주	759
후행	777

수연례, 회혼례

수연례(壽宴禮)

수연례	333

회갑(回甲)

회갑	764

회혼례(回婚禮)

회혼례	771
백수백복도	186
수성노인도	331
회갑상	766
평생도	695
폐백	696
수연문	337

상장례

의례

상례	279
장례	521
상장례	298

의례절차

초종	642
임종	509
수시	332
복	191
발상	178
사자상	245
곡	56
전	544
- 시사전	353
- 조석전	576
- 삭망전	249
- 조전	577
부고	205
염습	447
목욕	160
반함	178
소렴	322

대렴 124
입관 510
보공 190
빈 224
성복 319
상식 288
조문 571
문상 170
분상 211
부의 207
치장 664
개영역 39
천구 622
견전 43
영결식 451
발인 179
운상 468
노제 113
급묘 85
하관 702
회다지 770
취토 661
제주(題主) 569
반곡 174
우제 467
- 초우제 640
- 재우제 537
- 삼우제 271
졸곡 578
부제 208
소상 326
역복 444
치전 665
대상 131
탈상 673
담제 120
길제 97
후토제 776
성분제 320
산신제 250
위령제 473
다시래기 117
빈상여놀이 226
자리걷이 513
천도굿 624
장례미사 525
선종 311
위령기도 470
소천예배 327
다비 114
시다림 347
사십구재 242
천도재 627

신체

영구 453
영정 456
혼백 745

의례도구

여막 442
염습구 448
대렴금 125
- 소렴금 323
- 천금 623
- 지요 606
- 염포 449
- 멱목 149
- 악수 430
- 충이 660
- 오낭 460
수의 339
관(棺) 61
칠성판 669
곽 59
유골용기 478
상복 285
- 관(冠) 60
- 요질 465
- 수질 343
- 상장 297
상여 289
상여장식 293
영구차 454
방상시 180
명정 156
영여 455
공포 58
만장 144
삽 275
윤도 486
명당도 154
명기 151
지석 604
석물 307
- 문인석 171
- 무인석 168
- 호석 729
- 묘표 166
- 석수 310
- 망주석 145
- 장명등 530

의례문서

분정기 213
시도기 348
장사택일지 531
제문 559

의례장소

광중 70
묘지 163
상청 301
영좌 457
자연장지 515
장례식장 527
장지 532
화장장 762

용어

오복제도 461
- 참최 621
- 재최 538
- 대공 123
- 소공 321
- 시마 349
- 정복 547
- 가복 31
- 강복 38
- 의복 495
당내 121
회격 769

택일 685
음양오행 491
중상 598
상문살 283
상주 300
복인 194
무복친 167
호상 727
지관 600
상포계 302
삼일장 272
유월장 483
삼년상 263
시묘살이 350
심상 369
명당 153
매장 147
풍장 701
수장 342
화장 760
순장 344
산골 249
초분 639
복차장 196
빈장 228
합장 711
이장 500
봉안 201

제례

의례

사시제 240
사당제 233
- 신알례 361
- 출입고 659
- 참례 618
- 고사당 52
녜제 112
기제사 92
묘제 161
- 산신제 250
한식 절사 703
차례 615
- 설 차례 312
- 추석 차례 650
- 중구 차례 595
불천위제사 220
사갑제 229
생신제 304
성묘 317
기신재 86
상용영반 295
추도식 648
위령미사 472
위령제 473
까마귀 모른 식게 99

의례절차

재계 534
설위 313
진기 607
진설 609
출주 659
참신 620
강신 38
- 분향 215
- 뇌주 114
진찬 614
헌작 720
- 초헌 646
- 아헌 430
- 종헌 585
- 침주 670
- 좨주 586
- 진적 613
- 계반개 49
독축 134
유식 482
- 첨작 631
- 삽시정저 276
- 계반삽시 49
합문 708
계문 48
- 헌다 718
- 삼내흠 262
수조 342
고이성 53
국궁 74
철시복반 631
사신 242
납주 103
분축 214
철상 629
음복 490
- 준 594
헌식 719

의례장소

사당 230
감모여재도 33
정침 548
감실 35
재실 536

신체

불천위 218
신주 362
신줏단지 364
위패 476
주독 587
지방 601

의례물품

제사도구 565
교의 72
모사기 158
소병 326
앙장 436
제상 567
촛대 647
축판 653
퇴주기 693
향로 715
향탁 716
향합 716
휘장 778
지방함 603
제기 550
갱기 41

면기 150
반기 175
시접 353
어육기 441
잔반 519
적기 543
제기함 552
제복 563
주병 589
초접 641
탕기 675
편기 693

의례음식

제물 560
간납 32
갱물 41
국수 74
대갱 122
도적 133
떡 140
메 148
삼색나물 264
삼실과 270
식혜 356
어육 440
적 542
제주(祭酒) 568
주과포 586
청장 636
탕 674
편적 694
포 700
희생 780

용어

효 775
조상숭배 572
조상신 574
봉사대수 197
사대봉사 234
종법 583
제관 549
참사자 619
종가 579
문중 173
봉제사접빈객 203
당내 121
종계 581
위토 475
소목 324
체천 639
최장방 647
친진 669
조매 570
속절 329
흠향 779
혈식군자 726
윤회봉사 488
제사분할 566
외손봉사 464
합사 708
합설 710
단설 119
위호 477
벌초 188
가가례 22
궐명 80
고임새 54
진설법 611

의례문서

기일비망기 87
분재기 212
분정기 213
시도기 348
제례홀기 557
진설도 610
축문 651

관내 자문위원

김영재
이관호
정연학
정현미
최순권
최은수

관외 자문위원

고영진(광주대학교)
구미래(불교민속연구소)
김명자(전 안동대학교)
김상보(대전보건대학교)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나경수(전남대학교)
박혜인(계명대학교)

감수위원

이길표(성신여자대학교)
이범직(건국대학교)
이필영(한남대학교)
지두환(국민대학교)